

濟州島流人傳

金 奉 鉉 지음
洪 性 穆 번역

제주문화

서 문

지금 제주도는 삼다도(三多島)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대명사가 생겨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19세기 이전, 조선시대에는 제주도를 “원악도(遠惡島)”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면 곧 유배(流配)의 섬을 의미했다. 유형(流刑)은 곧 사회로부터 격리(隔離) 시키는 형벌이었고 제주도는 왕경에서 가장 멀리 게다가 바다 밖에 떨어져 있으므로 유배지로는 최적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이미 중세 때부터 몽골이나 명(明)나라의 유배인들을 받아드리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유배 1번지(流配一番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유배된 사람들 가운데는 고려시대에는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나 패란해대왕(孛蘭奚大王) 백백태자(伯伯太子) 달달친왕(達達親王)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와 같은 왕이나 왕자, 왕손들이 대거 도배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도 광해군(光海君)을 비롯하여 수많은 왕자, 왕손들이 유배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어머니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 노씨(盧氏), 철종의 부마 박영효(朴泳孝),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오빠 민무구(閔無咎) 형제, 장희빈(張禧嬪)의 오빠 장희재(張希載) 등 왕의 친인척들도 적잖게 도배된 것을 볼 수 있다.

김정(金淨) 이세번(李世蕃) 유희춘(柳希春) 보우(普雨) 정온(鄭蘊) 홍무적

(洪茂績) 이경여(李敬輿) 송시열(宋時烈) 김진구(金鎭龜) 민암(閔黯) 김춘택(金春澤) 유혁연(柳赫然) 이건명(李健命) 신임(申鎰) 조관빈(趙觀彬) 서지수(徐志修) 조정철(趙貞喆) 김정희(金正喜) 유언호(兪彦鎬) 김덕원(金德遠) 최익현(崔益鉉) 김윤식(金允植) 이승오(李承五) 박영효(朴永孝) 이승훈(李昇薰) 등 한 시대의 정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를 움직인 인물들이 거의 제주도에 유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화(士禍)가 일어날 때마다, 옥사(獄事)가 터질 때마다 제주도는 영락없이 그 연루자들의 유배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유배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도였다. 따라서 제주도의 유배사를 편찬해야한다는 것은 역사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은 너무나 당위성을 지닌 요청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김태능(金泰能)선생의 연재를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친 신문연재가 있기는 하였지만 단행본으로 유인전(流人傳)을 낸 것은 김봉현(金奉鉉)선생이 처음이었다. 필자도 벌써부터 이 방면의 자료를 수집해온 터였지만 너무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 그것을 선생이 한발 앞서 세상에 내 놓은 것이다. 더구나 선생은 일본에 체재하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 작업을 완성하였으니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봉현선생은 이 유인전 말고도 <제주도역사지(濟州島歷史誌)> <제주도 피(血)의 역사> <제주도의 지명고(地名考)> 등 역작들을 내놓은 무게있는 재일 역사학자였다.

김봉현(金奉鉉)선생의 <제주도유인전(濟州島流人傳)>은 처음 일어판으로 1981년 일본 도쿄 국서관행회(國書刊行會)에서 발행하였다. 이것을 최근 홍성목(洪性穆)한라일보 논설고문이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이제

제주문화사가 제주문화총서로 출간을 보게되었다.

이 유인전은 고려시대말에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국사범(國事犯·정치범)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이 유배된 사건, 그 배경, 전말(顛末) 등이 거의 헤집어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인전을 읽으면 유배인들의 한 많은 귀양살이뿐 아니라 당시 당쟁의 양상과 시대의 동향까지 읽어볼 수가 있다.

특히 이 유인전은 당초 일본에서 출판한 원본에서는 오자(誤字)와 그릇된 내용들이 적잖게 발견되었는데 이번 번역 재판과정에서 거의 바로잡아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역자 홍성목고문과 홍성호사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저자 김봉현선생에게 새삼 경의와 찬사를 드리고 싶다.

2005년 5월 일

수정마을 담수헌(膽樹軒)에서

홍 순 만

머 리 말

예부터 양(洋)의 동서를 가릴 것 없이, 어느 나라이든 인민지배를 위한 법이 존재하여,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형벌의 하나로 유형(流刑)이 적용돼 왔다.

유형은 사죄(死罪)에 다음가는 중형이지만, 유형지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들이, 대개의 경우, 바다에 떠있는 뇌옥(牢獄)이 되어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옛날, 나폴레옹 1세가 세인트 헬레나섬에, 고토바상황(後鳥羽上皇 : 일본 제82대 천황)이 오키도(隱岐島)에, 광해군(光海君)이 제주도에 유배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남해 멀리에 떠있는 절해고도 제주도만큼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크게 변한 섬도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역사의 섬, 시(詩)의 섬, 전설의 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같은데, 1세기 전까지는 다사제제(多士濟濟)한 정객(政客)의 유형지 썸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었다. 옛날 제주도는 본토와는 다른 이풍(異風)의 섬으로, 권력자들에게는 「바다의 끝」으로 여겨졌고, 특히 조선조 봉건시대에는 제주도에의 유형이라고 하면, 사죄에 버금가는 중죄로 간주하여 글 그대로 「창살없는 감옥」이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전해지지 않았고, 역사가 가운데서도 단편적으로 밖에 논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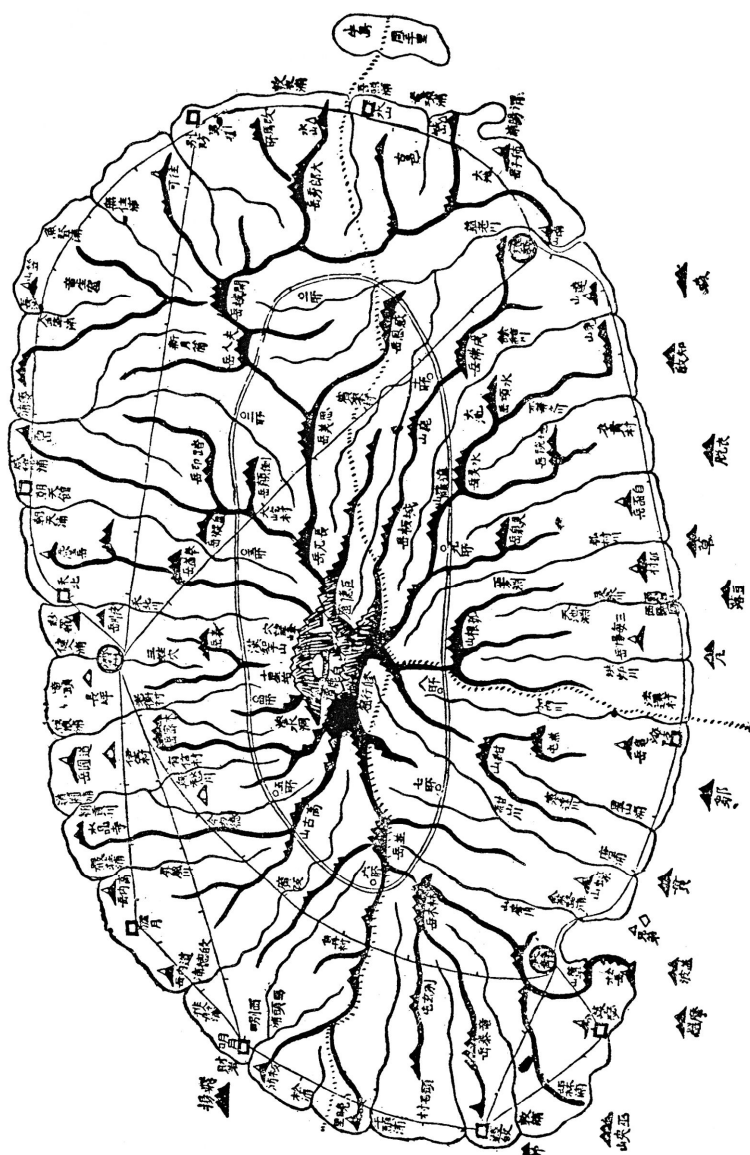
려해서 나는 역사의 암흑면(暗黒面)은 동시에 역사의 광명에도 이어지는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고려 말기로부터 조선조말까지에 걸친 정변(政變)이나 참렬(慘烈)을 극한 사화(史・土禍)・당쟁에 패배하여 정치적 보복으로서, 「유삼천리(流三千里)」의 형률(刑律)의 이름을 빌어 제주도에서의 유배를 선고받은 수 많은 정객 가운데서,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여기에 남김없이 수록했다. 그래서 당사자의 정치적 범과(犯科)와 그에 관련된 정쟁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재검토하여 당시의 피비린내나는 참극을 차례로 되풀이한 권력투쟁의 실태와 그에 따른 형벌제도의 변천을, 배후로부터 역사를 살펴봤다. 그것은 조선의 왕조시대에 있어서의 정쟁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이 섬에 유배된 자의 죄인(罪囚)을 자세히 살펴 볼 때, 유배시키는 자, 유배 당하는 자의 역사는 너무도 치참했다.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잔혹하기도 했다. 또 정치와 법이 교착(交錯)해서 만들어낸 잔인함도 있었다. 지금와서 그 실정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구명(究明)하여 앞으로 새로운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도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조선사나 제주도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어떠한 참고가 된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 바랄게 없다.

출판에 대해서 언제나와 같이 흔쾌히 도와주신 국서간행회의 사토(佐藤今朝夫) 사장과 편집을 도와주신 다카시나 에이지로(高科榮次郎) 씨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1981년 1월 10일

저자 김 봉 현



목 차

서문	3
머리말	5

제1장 조선의 유형제도에 대해서

- 유형의 기원 / 17
- 고려조의 유형제도 / 19
- 조선의 유형제도 / 21
- 유형의 범주 / 25
- 연좌제(緣坐·連座制) / 30
- 사면제도 / 32
- 유형의 등분(等分), 가감(加減)과 폐지 / 34
- 유형의 집행 / 37
- 유배지의 선정 / 39
- 유인의 처우(處遇) / 42

제2장 고려조에 유배된 사람들

- 몽고·운남인(蒙古·雲南人) / 45
- 충혜왕조(忠惠王朝) 승·학선(僧·鶴仙) / 47
- 고종조(高宗朝) 송길유(宋吉儒) / 50
- 충숙왕조(忠肅王朝) 조익청(曹益淸) / 53
- 충목왕조(忠穆王朝) 조득구(趙得球) / 55
- 공민왕조(恭愍王朝) 충혜왕의 서자·석기(釋器) / 58
 김용(金鏞) / 62 임군보(任君輔) / 62
- 공양왕조(恭讓王朝) 한천(韓臧) / 69

제3장 조선조 시대에 유배된 사람들

- 유배의 역사적 배경 / 73
- 태조조(太祖朝) 김만희(金萬希) / 79 이미(李美) / 81
- 태종조(太宗朝) 강영(康永) / 83
- 예종조(睿宗朝) 사화(史禍)에 대해서 / 85 민수(閔粹) / 86
- 연산군조(燕山君朝) 김순손(金舜孫) / 91 홍유손(洪裕孫) / 92
 홍상(洪常) / 95 유현(柳軒) / 99
- 중종조(中宗朝) 김정(金淨) / 101 이세번(李世蕃) / 118
 김세한(金世翰) / 121
- 명종조(明宗朝) 유희춘(柳希春)·손홍적(孫弘績) / 122
 이희손(李希孫) / 128 요승·보우(妖僧·普雨) / 130

제4장 당쟁(黨爭)의 개요

- 선조조(宣祖朝) 소덕유(蘇德兪·祐) / 141
- 광해군조(光海君朝) 이홍노(李弘老) / 147 조직(趙稷) / 153
정온(鄭蘊) / 156 진릉군 이태경(晉陵君 李泰慶) / 165
이익(李穡) / 167 송상인(宋象仁) / 171
김제남(金梯男) 부인 노씨(盧氏) / 172
- 인조조(仁祖朝) 폐주(廢主) 광해군 / 178 박승조(朴承祖) / 185
인성군(仁城君)의 가족 / 187 이견(李健) / 192
이덕인(李德仁) / 194 원중(元宗) / 196 서신(徐紳) / 198
홍무적(洪茂績) / 199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세 아들 / 204
신득연(申得淵) / 205 이경여(李敬輿) / 206
김응주(金膺珠) / 209
- 현종조(顯宗朝) 환성지안(喚醒志安) / 211 신명규(申命奎) / 213
이지달(李枝達) / 216
- 숙종조(肅宗朝)
소현세자의 손·임창군(臨昌君) 혼(焜) 동생 옥(煜) / 217
송시열(宋時烈) / 220 김예보(金禮寶) / 230
김덕원(金德遠) / 231 유혁연(柳赫然) / 233
김진구(金鎭龜) / 237 장희재(張希載) / 240
오시복(吳始復) / 244 김춘택(金春澤)과 가족 / 245
김삼달(金三達)과 가족 / 253 이진상(李震尙) / 254
이현명(李顯命) / 254
이동설(李東嵩) 등 4인의 내관(內官) / 254
송상주(宋尙周) / 255

제5장 배유요인의 제상(諸相)

- 과거제도에 대해서 / 257
- 숙종25년의 과옥(科獄)에 연루된 고군(雇軍) / 260
 - 구성희(具星喜) 등 6인 / 261 유항(柳抗) / 263
- 노론(老論)과 소론(少論)과의 대립 / 264
- 경종조(景宗朝) 신임(申鎰) / 264 조정빈(趙鼎彬) / 268
 - 조성복(趙聖復) / 269 조성집(趙聖集) / 272
 - 유성추(柳星樞) / 273 김수천(金壽天) / 273
 - 학손·이수민(鶴孫·李壽民) / 274 이시필(李時弼) / 275
- 영조조(英祖朝)
 - 탕평책(蕩平策)에 대해서 / 276
- 「신임무옥(辛壬誣獄)」을 일으킨 선봉자(先鋒者)들
 - 윤지(尹志)·이현장(李顯章) / 279
 - 서종하(徐宗夏)·김요경(金堯鏡) / 280
 - 이거원(李巨源) / 281 임징하(任徵夏) / 282
 - 김유경(金有慶) / 286 이진유(李眞儒) / 288
 - 이의철(李宜哲) / 290 김성탁(金聖鐸) / 292
 - 심내복(沈來復) / 294 조관빈(趙觀彬) / 295
 - 김원재(金遠材) / 298 이규채(李奎采) / 301
 - 이존중(李存中) / 302 이증(李增) / 304
 - 조중명(趙重明)·최학령(崔鶴令) / 306
 - 임관주(任觀周) / 307 권진응(權震應) / 307
 - 한광조(韓光肇) / 308

- 은언군(恩彦君)과 은신군(恩信君) / 310
- 정조조(正祖朝) 심상운(沈翔雲) / 312
 - 왕의 총희(寵姬) 문녀(文女)의 어머니 / 313
 - 단혜(丹惠) · 덕순(德順) / 315 이최중(李最中) / 316
 - 혜암유장(惠庵疏藏) / 317 조정철(趙貞喆) / 318
 - 안조환(安肇煥) / 323
 - 천주교의 박해(迫害) 권일신(權日身) / 329
 - 순조조(純祖朝) 이치훈(李致薰) / 330
 - 황사영(黃嗣永)의 처 정소사(丁召史) / 331
 - 헌종조(憲宗朝) 강시환(姜時煥) / 336 김정희(金正喜) / 336
 - 철종조(哲宗朝)
 - 세도정치의 파탄
 - 이하전(李夏鎔) / 351
 - 이명혁(李明赫) · 최봉주(崔鳳周) / 353
 - 엄희영(嚴羲永) / 354 백낙신(白樂莘) / 354
 - 김시연(金始淵) / 357
 - 고종조(高宗朝) 심이택(沈履澤) / 362 정만식(鄭晩植) / 365
 - 최익현(崔益鉉) / 367 조병창(趙秉昌) / 384
 - 김평묵(金平默) / 389 이태현(李泰鉉) / 391
 - 이재선(李載先) / 393 백낙관(白樂寬) / 396
 - 안효제(安孝濟) / 400
 - 이민평(李敏宏) · 이충구(李忠求) · 전우기(全佑基) · 노흥규(盧興奎) / 402

- 서주보(徐周輔) · 정병조(鄭丙朝) · 김경하(金經夏) ·
 이범주(李範疇) · 이태황(李台璜) / 407
- 이근용(李根潑) · 김낙영(金洛榮) · 김사찬(金思燦) ·
 장윤선(張允善) · 이용호(李容鎬) · 한선회(韓善會) / 410
- 김윤식(金允植) / 412 이승오(李承五 · 奎瑞) / 416
- 이원금(李源兢) · 여규형(呂奎亨) · 지석영(池錫永) ·
 안기중(安沂中) / 422
- 순종조(純宗朝) 박영효(朴泳孝) / 427
- 이승훈(李昇薰) 이하 20여명 / 432

후기(後記)에 대신해서

- － 제주의 인맥과 유인(流人)문화에 대해서 －
- 제주인맥의 형성과정 / 437
- 탐라국의 종말 / 442
- 원인(元人 · 몽고)과의 혼혈 / 443
- 탐라(耽羅)를 제주로 개명 / 445
- 정쟁(政爭)에 의한 유배와 낙향(落鄉) / 445
- 유인문화의 문제점 / 446
- 유배인의 호송경로 / 458
- 맺는 말 / 460
- 찾아보기 / 463

제1장 조선의 유형제도(流刑制度)에 대하여

유형의 기원(起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왕(既往) 이천재(二千載)에 단군왕검 있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세워,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호칭했다.…… 옛날 환국(桓國·帝釋의 연유임)이 있어 서자(庶子) 환웅(桓雄), 언제나 천하를 생각, 인생을 탐구(貪求)하려 했다. 애비가 자식의 뜻을 알고…… 인간을 홍익(弘益)해야 한다고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수여했다.…… 곡(穀)·명(命)·병(病)·형(刑)·선(善)·악(惡) 등 거의 3백60여가지 일을 주재(主宰)하고 세상에서 이화(理化)했다.…」고 하는 단군의 개국신화가 있다.

결국 환웅천왕의, 인간세계에 있어서 거의 3백60여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을 이화(理化)한다고 하는 관념 표상(表象)은 이미 어느 일정한 지배관계와 연결되어 지어진 신화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형」이란, 형벌제도를 의미하며, 「선·악」이란 사회의 윤리규범을 말하는 것

임으로, 조선민족은 이미 일찍부터 고대 조선사회에서 법치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형벌관(刑罰觀)은 테러적 등가관(等價觀)에 바탕을 둔 형벌관과 속죄적(贖罪的) 형벌관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형벌제도에 있어 유형의 정확한 기원을 더듬어 낼 수는 없지만, 단지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記)에 「모반(謀叛)을 일으킨 자, 적진에 임하여 퇴군(退軍)한 자, 살인한 자는 참수(斬首)되며, 또 훔친 자는 유형에 처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선의 유형은 이미 삼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 57~917)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의 법제화는 고려시대(918~1391)부터이다. 「고려사」 형법직제에 신우(辛禰) 3년(1377) 2월, 「영중외입결옥 일준지정조격(令中外人決獄 一遵至正條格)¹⁾이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고려조에서는 친원(親元) 외교정책에 의해 순제지정(順帝至正·1354)에 발표된 원대의 법전률(法典律)인 「지정조격」을 준수해 왔지만 고려말에 이르러 명(明)의 정치세력의 팽창에 따라 친명(親明)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명률준용(明律準用)의 의논이 일어난다. 이 때 고려말에 정령(政令)이 혼란해진 것을 보다 못한 정몽주(鄭夢周 1337~92, 號는 圃隱)가 공양왕 4년(1392)에 원의 「지정조격」과 「대명률」을 참작해서 새로운 법률을 찬진(撰進)한 일이 있는데 마침 그 해에 이성계(李成桂·태조)가 즉위하는 사태가 생겼다.

최초에 유형이라는 형벌제도는 7세기 전후의 수·당(隨·唐)의 형벌체형의 5형(刑), 즉 태·장(笞·杖: 신체형)·도·류(徒·流: 자유형)·사(死: 생명형)의 흐름에 따른 대명률²⁾을 준용한 것으로 「고려사」 형법의

1) 서울과 지방의 범죄자에 대한 판결은 원대(元代)의 법전인 지정조격에 따른다.

서문에 「어시유건의 잡용원조의형역람 대명률 이행자(於是有建議 雜用元朝議刑易覽 大明律 以行者 : 이 때에 건의가 있어서 원나라의 의형이람을 섞어 쓰되 대명률로써 시행할 것)」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증시(證示)하는 것이다.

고려조의 유형제도

따라서 고려조의 형법도 당률(唐律)의 영향을 받아, 유형의 등급을 유배지의 원근(遠近), 말하자면 거리의 차에 의해 책정되었지만, 유배에 속형(贖刑·換刑)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에는 유형(자유형)의 기준을 죄의 경중에 의해, 2천리·2천5백리·3천리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고려사」 형법 유형조(流刑條)에 의하면

- (1) 2천리의 외지(開城 이외의 땅)에의 유형자에게는, 태(笞 : 매) 17대를 가한 위에 징역 1년에 처함과 동시에 속동(贖銅 :贖罪) 80근을 징수한다.
- (2) 2천5백리 외지에의 유형자에게는 매 18대를 가한 위에 징역 1년에 처함과 동시에 속동 80근을 징수한다.
- (3) 3천리 외지에의 유형자에게는 매 20대를 가한 위에 징역 1년에 처함과 동시에 속동 1백근을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형자에 대한 환형조치로서 속죄제에 의한 기간제(期間制)를 가미(加味)하고 있다.

2) 14세기말, 중국 명조에서 제정된 법률.

참고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5형(刑)의 표를 게재해 둔다.

<표 1> 대명률직해의 5형

태형(笞刑)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가벼운 죄에는 찔리 매로 볼기를 친다.
장형(杖刑)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큰 가시나무로 볼기를 친다.
도형(徒刑)	1년 징역과 곤장 60대, 1년반 징역과 곤장 70대 2년 징역과 곤장 80대, 2년반 징역과 곤장 90대 3년 징역과 곤장 1백대, 다소 무거운 죄에 적용
유형(流刑)	곤장 1백대를 치고 2천리 밖으로 내보낸다. 곤장 1백대를 치고 2천5백리 밖으로 내보낸다. 곤장 1백대를 치고 3천리 밖으로 내보낸다.
사형(死刑)	교형(絞刑), 참형(斬刑)

유형표의 설명과 같이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을 과하기엔 무겁고, 그렇다고 도형에 과하기엔 가벼움으로, 그 중간형(中間刑)을 채택, 원지(遠地)에 내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중신형을 시행한 것이다.

아무렇든 이러한 법제화는 「삼국지(三國志)」 예전(濊傳)에 전해지는 「살인은 죽음으로써만 보상된다」고 하는 원시씨족공동체의 「피의 복수」나 형벌노예제의 혹형(酷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종래 어떤 형벌의 주된 계열화에 놓여지기 마련이었던 유형³⁾과 태형⁴⁾·장형⁵⁾이

3) 자유형의 1종.

4) 죄인의 신체를 매로 치는 형.

5) 범인의 등을 때리는 형.

특히 내놓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진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선조의 유형제도

그것이 조선조에 들어 이태조(李太祖·재위 1392~98)가 즉위교서(卽位敎書 1392)에 「서울로부터 지방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범(公·私犯)은 반드시 대명률에 따른다」고 선언, 그 후 모든 것을 율문(律文)에 따르게 하고 도(徒)·유(流)·속형(贖刑·換刑)도 또한 실시하긴 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전조(前朝)와 그다지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조는 즉위하자 즉시 「의장법제(儀章法制)는 모두 전조의 고사(故事)에 따른다」고 포고한 것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 원칙에 따라 태종 2년(1402) 9월 대명률에 준하여 형벌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 조선의 국정(國情)에 어울리는 도형⁶⁾·유형⁷⁾·속형을 정하여 명률과 조화한 것 그 자체가, 명률에 규정하는 유형의 이수(里數)를, 조선의 이수로 계산기로 결정하여, 속전(贖錢)의 일부를 감액한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유형은 「대명률 직해」의 도(徒)·유(流)·천사지방조(遷徙地方條)에 「유3등 조의지리원근 정발각처황무급빈해 주현안치(流三等 照依地理遠近 定發各處荒蕪及瀕海 州縣安置)」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형은 거친 불모의 벽지나 해변의 주·군·현(州·郡·縣)으로 보내어 안치(安置)⁸⁾는 해도 도형과 같은 노역은 부과하지 않았다.

6) 섬지방에 보내어 중노동시키는 일종의 징역형.

7) 섬으로의 유배.

그런데 앞의 2천5백리·3천리 등의 유형규정은 국토가 넓은 중국에 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토가 좁은 조선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으로 유형의 원근은 세종 12년(1430), 형조(刑曹)⁹⁾의 가르침에 따라 유배지방을 다음과 같이 정했던 것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 ① 경성(京城)·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유후사(留後司)의 「유3천리(流三千里)」의 자는 경상·전라·함길(咸吉)¹⁰⁾·평안도의 병해각관(浜海各官)¹¹⁾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는 전라·경상·평안·함길도의 각관, 또는 강원도의 병해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의 시면(始面)¹²⁾ 각관, 또는 강원도의 중앙각관에 배치한다.
- ② 황해도의 유3천리의 자는 경상·전라도의 중앙 각관, 평안강계도(平安江界道·평안북도) 의주(義州)¹³⁾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의 자는 전라·경상·평안·함길도의 시면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충청도의 병해 각관, 또는 강원도의 중앙 각관에 배치한다.
- ③ 평안도의 유3천리의 자는 충청도의 병해 각관, 또는 함길도의 중앙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의 자는 충청도의 중앙 각관, 강원도·함길도의 시면 각관에 배치한다.
- ④ 충청도의 유3천리의 자는 평안·함길도의 중앙 각관, 또는 경상·전라도의 병해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의 자는 평안·

8) 유배형의 하나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제한하는 형.

9) 법률·소송·노비를 담당.

10) 함경도의 옛 명칭.

11) 州·郡·縣의 地方官의 총칭. 본문은 그 郡內를 말한다.

12) 범죄인의 거소로부터 처음에 도달하는 면이 있는 군·현.

13) 지금의 신의주.

함길도의 시면 각관, 또는 강원·황해도의 중앙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전라·경상도의 중앙 각관, 또는 황해·함길도의 시면 각관에 배치한다.

- ⑤ 전라도의 유3천리의 자는 경상좌도(지금의 남도)의 병해 각관, 또는 함길·평안도의 중앙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의 자는 황해도의 시면 각관, 혹은 강원도의 중앙 각관, 또는 경상좌도의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강원도의 시면 각관, 혹은 충청도 상면(上面) 각관, 또는 경상우도(북도)의 각관에 배치한다.
- ⑥ 경상도의 유3천리의 자는 전라우도(북도)의 병해 각관, 혹은 평안도의 중앙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의 자는 충청·강원·전라도의 중앙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충청도의 시면 각관, 혹은 전라좌도(남도)의 각관에 배치한다.
- ⑦ 함길도의 유3천리의 자는 전라·충청·전라우도의 병해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충청·황해도의 중앙 각관, 전라·경상도의 시면 각관에 배치한다.
- ⑧ 강원도의 유3천리의 자는 전라·경상우도의 각관, 혹은 황해도의 병해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5백리의 자는 전라·경상도의 중앙 각관, 혹은 충청·황해도의 병해 각관, 또는 평안도의 시면 각관에 배치한다. 유2천리의 자는 시면 각관, 혹은 경상·전라좌도의 병해 각관에 배치한다... 고 되어있다.

이와같이 유배지의 원칙은 세워졌지만 정치범이나 특수범죄인에 대한 유배지의 선정은 왕정(王政)의 정책적 배려로부터 일부의 예외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또 환형(換刑·贖)의 비율에 대해 「대명률직해」 명례율(名例律), 5형에

관한 규정 속에 유형의 3종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유2천리·장(杖) 1백에 대한 속동전(贖銅錢) 30관(貫)은 5승포(升布)¹⁴⁾ 1백65필(疋)¹⁵⁾에 환산한다. 유2천5백리·장1백에 대한 속동전 33관은 5승포 1백65필로 환산한다. 유3천리·장1백에 대한 속동¹⁶⁾ 전 36관은 5승포 1백80필로 환산한다.

이와같은 「대명률직해」에 규정된 환산율이 그대로 시행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태종 2년(1402)에 실질적인 속전의 3분의 1을 감하고 있다. 즉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따르면 우선 중국과 조선의 이수(里數)를 재어 명률에 규정하는 유형의 최원거리(最遠距離) 3천리와 조선의 최원지와를 비교하여, 조선의 최원지인 경원부(慶源府: 함경북도)는 1,680리로서 3분의 2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를 3분의 2에 두고 그 다음의 2천5백리 이하의 지방을, 또 3분의 2로 하고 이에 준하여 3분의 1을 감한 것이었다. 즉 경원부는 1,680리임으로 명률의 3천리·속전 36관을 3분해서 3분의 2를 갖고 3천리의 형으로 하고 속전은 1분(分)을 감하여 24관으로 하여 5승포 360필로 환산했다.

그 다음은 2천5백리에 대한 속전인데 동래현(東萊縣)¹⁷⁾은 1,330리임으로 이것을 2천5백리의 형으로 하여 속전 33관의 1분을 줄여 22관으로 정하고 5승포 330필로 환산했다. 최후의 유2천리에 대한 속전 30관은 전라도의 축산(丑山)은 1,065리임으로 이것을 2천5백리의 형으로 하고 속전은 그 3분의 2로서 20관으로 하여 5승포 3백필로 환산했다.

이와같이 조선의 속제(贖制)는 명률에 비교해서 제정한 것이지만, 이

14) 포는 綜의 精粗로써 가치를 정하여 5승포를 화폐로 대응했다.

15) 필은 일정한 길이의 布地의 단위.

16) 律로 官人들에게 실행을 科하는 대신에 상당액의 동을 납부시켰던 일.

17) 지금의 부산시.

법도 또한 과중하여 조선의 민정(民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종 7년(1425)에 명률의 속동전의 액을 3분의 1로 감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 왕조의 유형제도는 명의 유형제도를 모방하여 삼형류제(三刑流制)를 시행, 유형의 등급을 2천리 장 1백, 2천5백리 장 1백, 3천리 장 1백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유형의 경중을 유배지의 원근거리차에 의해 결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유형제도는 고려조에 있어서의 유형제도와 마찬가지로 유형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중을 논의하는 것과는 달리, 유배지의 원근거리에 의해 그 경중을 책정하고 유형기간으로서의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중신형으로 되어있다. 더구나 유형에 처해지는 범죄인은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중죄인으로서 감일등(減一等)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이러한 범죄인은 정치범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범으로서 단죄(斷罪)되어 유배된 유형수는 사면령이 내린다든가, 그렇잖으면 정치정세의 변동이 일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생 귀향(歸鄉)할 수는 없었다.

유형의 범주(範疇)

유형제도의 실제 운용현상에 있어서는 유배지의 원근 거리차에 의해 유형의 경중을 책정하는 방법 외에도, 조선 고래(古來)의 관습에 따라 절해고도나 험준한 산중, 또는 국경변방(國境邊方) 등지에 유배함으로써 형을 가중하는 방법을 채택, 절도안치(絶島安置)·본향(本鄉)안치, 위리(圍籬)안치, 또는 충군제도(充軍制度)¹⁸⁾를 채용하게 됐던 것이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사(遷徙·全家徙邊)·부처(付處：中途付處)·안치 등을 유형의 일종으로 보느냐 여떠냐는 것이다.

그것을 「예종실록(睿宗實錄)」에 보면, 예종 원년(1468) 2월, 「논팔도관찰사왈(論八道觀察使曰) 경국대전내(經國大典內) 범도류(凡徒流)·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정역(充軍定役)·사민도망자참(徙民逃亡者斬)…」이라고 되어있어 부처·안치·충군·사민 등이 도형(徒刑)·유형과는 다른 일종의 독립형으로 보이지만, 광해군 9년(1617) 12월, 「합사재계(合司再啓)에 답하여 가로되 부처¹⁸⁾·안치는 유형임으로 논하지 않는게 좋다」(광해군일기)고 되어있음으로 부처·안치 등도 유형의 일종인 것이다. 물론 충군형도 또 도형의 일종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에 의해서만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모든 정형(正刑)은 5형(笞·杖·徒·流·死)의 범주 안에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 ① 천사형(遷徙刑)은 「천리향토(遷離鄉土) 일천리 밖」이라고 해서 범죄인을 고향으로부터 천리 떨어진 원지(遠地)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천사는 마치 당률(唐律)의 이향(移鄉)제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당률의 이향제도가, 피해자의 근친으로부터의 복수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조선의 천사는 침해적(侵害的) 성격을 갖는 자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천사제도의 운용상 가장 가혹한 것은 전가사변(全家徙邊)이다. 그것은 범죄인과 함께 전 가족을 멀리 떨어진 불모의 산간벽지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유형은 이른 바 죄가 삼족(三族)에 미친다고 하는 가족연좌형(緣座刑)의 일종이라

18) 군역에 편입.

19) 섬으로의 유배보다 가벼운 죄.

고 볼 수 있다. 천사형은 중종 4년(1509)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형벌이 과중하다고 하여 그 후 몇 번이나 개정되고 있다.

- ② 부처(付處·중도부처라고도 한다)는 관리의 형벌의 일종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하여 거기에 머물도록 했다. 유배된 지방관에게 책임을 지워 그 조치를 맡기는 형인데, 그것은 유생(儒生 : 유학자)에 대해서도 관리에 준하여 이 형벌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부처형에 처해진 자가 가죄(加罪)되어 노비로 삼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성종 21년(成宗 : 1490) 10월, 「부처형에 처해진 자, 8명이 예문관(藝文館)²⁰⁾의 노비로 삼아졌다」(성종실록)는 기록은 그 예증(例證)이다.
- ③ 안치에 대해서는 모로하시(諸橋 : 일본의 한학자)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 속의 「육부성어형부(六部成語刑部), 안치주해(安置註解)」에 유·도형의 죄인에게 공작(工作)시키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즉 안치의 형은 배소(配所)의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제한하는 유형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형벌은 왕족이나 고관·현직(顯職)의 자에 한하여 적용됐던 것이다. 더구나 그 안치형에 있어서도 그 죄질에 따라, 특별히 은전을 베푸는 처분으로서 본향(本鄉) 안치가 있으며 그와는 정반대로 과혹(過酷)한 격리조치로써 절도(絶島)안치·위리안치가 있다.
- ④ 본향안치는 죄인을 고향에 윤편(幽閉)시키는 제도와, 일단 유배되어 있는 자를 환향(還鄉)시켜서 고향에 윤편시키는 제도의 두 종류가 있었다.
- ⑤ 절도안치는 유형 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격리조치로, 무인도 등에

20) 왕의 교서 등을 製撰하는 관청.

보내지는 유형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중죄인에 대한 응징(膺懲)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심한 경우에는 독사(毒蛇)나 독충이 서식하는 곳에 안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절도편배(絶島編配)²¹⁾는 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도 「절도에 관수(官守)가 없는 곳에는 죄인을 편배 않는다」²²⁾고 되어있어 제주삼읍(제주·대정·정의)에는 「죄명이 특히 무거운 자가 아니면 정배않는다」, 「추자도와 제주목(牧)에는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정배않는다」고 규정하여 절도편배를 제한하고 있다.

- ⑥ 위리안치는 적사(謫舍)의 주위를 가시가 달린 고목(枯木)으로 둘러싸서 그 안에 윤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연금(重軟禁)에 해당되는 형이다. 고목이 주로 전라도지방에 많았으므로 중죄인들은 전라도의 섬에 많이 보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위리안치는 「불가여가속혼처(不可與家屬混處)」라고 해서 가족과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명률직해」에는 「범범류자(凡犯流者) 처첩종지(妻妾從之) 부조자손욕수자청(父祖子孫欲隨者聽)」이라고 가족과의 동거를 인정하고 있다. 즉 일반의 유형자에 처·첩의 동행을 인정하고 또한 부조(父祖)나 자손에 대해서 가고싶다는 간청이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고 한 것에 비하면 혹형(酷刑)이었던 것이다.

또 일단 안치형에 처해왔던 자라 해도, 상황이 바뀌면 그 위에 죄를 가해서 위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21) 徒·流案에 기록해 놓는다.

22) 흑산도와 같은 험악한 지역에는 특별히 왕의 교지가 없으면 정배(定配)않는다.

⑦ 충군형(充軍刑)에는 장 1백대에 처해진 다음 군역에 복무하는 것과,

장 1백 뒤에 변경(邊境)에 보내져 변방 수호군에 배정되는 것과,

장 1백 후에 수군(水軍: 해군)에 편입된다는, 세 종류가 있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제주 삼읍인으로서 유죄를 범한 자는 삼읍 안에서 상호 정배한다」고 되어있으며 또 「제주삼읍인으로서 도망 또는 허가없이 다른 지방에 이주한 자는 죄를 치른 다음 원적(原籍)에 되돌려짐과 더불어 허접자(許接者)²³⁾는 장 1백대가 가해진 뒤에 3천리의 먼 곳에 유배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 「병전(兵典)」에는 「당번이 돌아와서 그를 대신한 자도 또한 1년간 변경지방에 보내어져 군에 배치된다」고 되어있으며 또 「병조(兵曹)²⁴⁾의 색리(色吏)²⁵⁾가 만일 자진하여 채무(債務)를 맡아 타인으로 하여금 당번을 대신 세운 경우에는, 당사자는 제주도에 도(徒)3년의 형에 처하여 충군시킨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군무에 복역케하는 충군형은 유형임과 동시에 도형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과 관련되는 것에 방귀전리(放歸田里)·방축향리(放逐鄉里)²⁶⁾·문외출송(門外黜送)²⁷⁾ 등이 있다. 이러한 처분은 배소(配所)에서 석방하는 대신에 귀경을 금지하는 조치로 유형의 일종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보안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3) 도망자를 감취준 자.

24) 6조의 하나로 국방 담당.

25) 監營 혹은 郡衙의 吏員.

26) 모든 벼슬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내리쫓던 형벌.

27) 관직을 빼앗고 한양 밖으로 추방하는 일.

연좌제(緣座・連座制)

이것은 후세(後世)에 말하는 연좌(緣座)의 법으로, 사전적 해석으로는 친족의 연(緣)으로해서 덩으로 벌 받는 일. 일본의 역사에도 「연좌(連座)」의 사례가 적시되고 있는데, 이 연좌형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에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형벌제도였다. 그것이 조선봉건사회에서는 유교의 형식적 가족주의의 영향과 사회정치적 불안에 의한 정책적 요구에 의해 가족적 연좌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말하자면 삼족(三族)연좌형제가 시행된 것이다.

범죄의 성립에 고의(故意)・과실(過失)을 요건으로 하는 한, 형사책임도 행위자의 한 몸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의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삼자에 대해서도 과형(科刑)한다. 더욱이 연좌(緣座・連座)에서는 책임조건이 없어도 벌을 받았다. 「가인범법(家人犯法)・죄급가주(罪及家主) : 집안 사람이 범법하면 죄가 가주에게 미친다」고 하는 법언(法諺)이 말해주고 있다.

모반대역(謀反大逆)・모반(謀反)・살일가비사죄삼인(殺一家非死罪三人)・채생절할인(採生折割人)・조축고독감이살인(造畜蠱毒堪以殺人)등의 중죄를 범했을 경우, 범죄의 실정을 모르는 가족이나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 대해 과형(科刑)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위협주의적인 형사정책의 표시이다. 즉 지배권력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타낸 위협의 효능과 그 형에 의해 당연히 원한을 갖는 일족의 복수의 뿌리를 잘라낸다는 이중의 방위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① 「모반대역・모반(謀反大逆・謀反 : 謂謀危社稷)・대역(大逆 : 謂謀毀宗廟山陵及宮闕)죄」에 있어서는 범인은 주범・종범을 구별 않고 능지처참(陵

遲處斬²⁸⁾하고 연좌형으로서 범인의 애비와 자식은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형(絞刑)²⁹⁾에 처하며 15세 이하의 자와 모친·여식·처·첩·조상·손자·형제·자매 등은 공신(功臣)의 집에 노비로 보내지고 재산은 관에 몰수된다.

그러나 남자로 80세 이상인 자와 여자로 60세 이상인 자, 병자에 대해서는 연좌를 면제하고 있다.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은 호적이 동일하든 않든, 3천리의 먼 곳에 보내어져 안치되었던 것이다(「大明律直解 刑律」).

② 「모반죄(誣謀背本國)」에 있어서는 주범이든 종범이든 모두 참형(참수형)되었다. 연좌형으로서 범인의 처·첩·자녀는 공신의 집에 노비로 되었고 재산은 관에 몰수되었다. 부·모·조·형·제는 호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2천리의 먼곳에 유배되어 안치형에 처해졌던 것이다(同書)

③ 「살인 3인(殺人 三人) 지해인(支解人: 팔·다리를 자르는 일)」의 죄에 있어서는 범인은 능지처참되고 범인의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상하며 처나 자식은 유2천리의 형에 처해진다.(同書)

④ 「채생절할인(採生折割人)의 죄」에 있어서는 범인은 능지처참하고 범인의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의 가족에 보상하며 처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해도 유2천리의 형에 처해진다.(同書)

⑤ 「조축고독살인(造畜蠱毒殺人)·교사죄(敎唆罪)」에 대해서는 범인은 참형에 처해지고 재산은 몰수된다. 처자는 비록 그 실정을 몰랐다고 해도, 유2천리 안치의 형에 처해진다는 「대명률직해」의 규정이 있다. 이 밖에도 「대전회통」에 「거병(擧兵)한 역괴(逆魁)의 형제·처·첩은 모

28) 신체의 살을 잘게 썰어서 죽이는 것과 같은 극형.

29) 목을 줄라 죽이는 교수형.

두 좌주(坐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좌제는 너무도 가혹한 때문에 정조(正祖·재위 1776~1800)가 즉위한 해에 처자에 대한 연좌제의 추가실시를 완화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조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가족근친의 연좌제는 유교적 윤리관에 바탕을 둔 혈연적 유대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이 혈연적 연좌의 형률은 조선 전기(全期)에 걸쳐 설 새 없이 되풀이된 피비린내 나는 정쟁(政爭)과 얽혀 정적(政敵) 일파를 주살(誅殺)하는 데 남용된 것은 널리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이 연좌제는 고종 31년(1894) 6월에 「일죄인자기외(一罪人自己外) 연좌율(緣座律) 일체물시사(一切勿施事)」(고종실록)라고 되어있는 것과 같이 「죄인의 연좌제를 폐지한다」고 규정해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을 확립했다. 그리고 동년 8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³⁰⁾는 이 규정을 단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면제도(赦免制度)

사면제도도 명의 사면제도를 본 떠서 사면을 대사(大赦)³¹⁾·특사(特赦: 개인사)·곡사(曲赦)³²⁾로 구분하여 시행했던 것이다.

대사가 행해지면 십악(十惡)³³⁾의 범죄와 육죄(六罪)³⁴⁾에 해당하는 범

30) 1894년 7월 일본의 요구로 신설된 최고 의결·집행기관.

31) 一般赦 또는 天下赦.

32) 개인 또는 어느 지방에 한해 죄인을 사면한다.

33) 십악사상(十惡思想)은 유교에 입각한 가족주의적 윤리관에 바탕을 둔 해악관(害惡觀)으로 십악에 해당하는 죄는

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모든 기결·미결수는 석방되고, 미발각·미체포자는 불문에 부쳐진다.

그래서 사면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관계로서 국호(國號)제정을 경축하기 위한 국호제정사, 공신의 수훈을 칭송하는 의미의 공신사, 전승(戰勝)을 축하하기 위한 토평사(討平赦) 등이 있으며 둘째로는 왕족관계로 왕이 즉위했을 때의 즉위사, 왕세자나 왕세손의 책봉 시에 내리는 책봉사(冊封赦), 왕자·왕손 등의 탄생을 축하하는 탄신사, 왕자 등의 관혼례(冠婚禮)를 축하하기 위한 관례사, 왕의 장기 재위를 경축하는 의미 아래 내리는 왕의 재위사(在位赦), 왕이나 왕족들의 질병 때나 회복 때에 내리는 불예평복사(不預平復赦) 등이 있다. 셋째는 국민생활의 민속관계에 있어서 풍수해나 한발 때 내리는 대우·한발사(大雨·旱魃赦), 천재지변 때 내리는 구제사(救濟赦), 혹한·혹열 때 내리는 혹한·혹열사(酷寒·酷熱赦), 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권농사(勸農赦)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개의 경우 대사에 해당하는 사면이다.

따라서 특사나 곡사 등에 있어서는 각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에서 보는 사면의 이유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조선왕조의 사면제도는 세도적(勢道的)·당파적 정치에 좌우되어, 극도로 정실적·정략적으로 남용된 때문에 시면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다할 수는 없었다.

①모반(謀反: 국가사직에 대한 모반) ②모대역(謀大逆) ③모반(謀叛) ④악역(惡逆) ⑤부도(不道) ⑥대불경(大不敬) ⑦불효(不孝) ⑧불목(不睦) ⑨불의(不義) ⑩내란(內亂)
34) 조선시대의 사면제도에 있어서 육범(六犯)의 개념은 1907년이 되어 비로소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었다. 즉 육범은 모반(謀叛)·강도·살인·강간·절도·협편(脅騙: 지금의 공갈죄)를 말하는 것이다.

유형의 등분(等分), 가감(加減)과 폐지

건국 초기에 여러번 법전 편찬의 경험을 쌓은 후, 이른 바 「만세불변(萬世不變)의 성법(成法)을 지향하여 편찬된 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그것은 조선 초기에 있어서의 법제(法制)의 발전을 뜻함과 동시에 그 통치규범이 확립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국대전」은 세조(世祖)시대(1455~68)에 최항(崔恒·1409~74) 등에게 명해서 찬수(撰修)시킨 것이지만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정(校正)이 가해져 겨우 성종(成宗) 2년(1470) 정월에 완성되어 준수·시행이 공포되었다. 이에 의해 조선왕조의 문무관료체제와 사회·경제체제가 확립됐을뿐 아니라, 그 후 약간의 부분적인 보수가 행해졌다고는 하나, 이른 바 「조종(祖宗)의 법으로서 조선왕조 5백년간의 기본적인 통치규범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그 후 영조(英祖 : 재위 1724~76)는,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함에 즈음하여 특히 형전(刑典)에 주의하여, 그 결과 형전은 가혹한 법으로부터 차츰 관대한 법으로 옮기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영조 때에 법 외의 고문형(拷問刑) : 압슬형(壓膝刑)³⁵⁾ · 태배형(笞背刑)³⁶⁾ · 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³⁷⁾ · 낙형(烙刑 · 炮烙刑)³⁸⁾ · 난장형(亂杖刑)³⁹⁾ 등이 금지되었던 것으로도

35) 압슬형(壓膝刑)이란 양쪽 경골(脛骨)의 앞면을 나무막대로 강하게 압찰(壓擦)하는 형벌.

36) 태배형(笞背刑)이란 매로 등을 난타하는 형.

37) 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이란 두 다리를 속박(束縛)해서 그 안에 2본의 주장(朱杖)을 삽입해서 마치 가위를 벌리는 것과 같이 좌우로 벌리는 형.

38) 낙형(烙刑)이란 화형(火刑)의 일종으로 기름을 바른 동주(銅柱)를 불 위에 걸쳐 죄인이 그것을 건너도록 하는 형.

39) 죄인의 신체를 어디든지 사정 없이 난타하는 형.

※ 이들 외에도 사형(私刑)으로서 월(刖 : 다리 자르기) · 의(剕 : 코 베기) · 경(黥 :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뒤에도 조선 자체의 실정에 맞는 형률이 마련되어 「대전회통(大典會通: 1869)」도 간행되어 일단 법체제는 정비되었지만 아직도 형벌의 전단(專斷)이 행해져, 남형(濫刑)의 폐는 뒤가 끊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전(正典)에 정해진 법률은 전혀 무시되고 형정관료(刑政官僚)의 독단적 자의에 의해 행해졌던 것이다. 유형에 있어서도 생존불능의 불모지 대나, 영국의 거주유형제도(家洲流刑制度)를 연상케 하는 변방접경지대의 영주(永住)조치, 또는 무인도 유배 등의 가혹한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집행하는 장기사형집행(長期死刑執行)의 현상을 연출해냈던 것이다.

그런데 고종 32년(1895)이 되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근대적 형법인 「형법대전」이 공포(1905)되면서부터 비로소 과형의 근본적 변경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원근거리제의 유형제도는 광무연대(光武年代·1898~1906)에 와서 비로소 기간제(期間制) 유배제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결국 고종 32년(1895) 4월 16일에 유형등분(流刑等分) 및 가감(加減)을 제정하여 유형을 삼등분하고 있다. 1등 유종신(流終身), 2등 유15년, 3등 유10년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현행 율령(律令) 중에 있는 유3천리를 종신 유형에, 유2천5백리를 15년의 유형에, 유2천리를 유10년의 유형에 과하도록 했던 것이다. 「신규 형사법규대전 상(上)」(1895년 4월 16일·법률 4호)

이것은 배소까지의 거리의 원근에 의해 경중을 분별했던 것을, 형기제도 개정, 수형(受刑)기간의 장·단에 의해 경중을 분별한 것이다.

이어 동년 4월 29일, 징역처단령을 제정하여 통상범죄에 대한 유형

刺字)형이 행해지고 있었다.

을 폐지했다. 즉 통상범죄에 과하는 도형·유형을 징역형으로 환산해서 처단하는데, 유종신(流終身)은 종신, 유15년은 15년, 유10년은 10년, 도(徒)3년은 3년, 도2년반은 2년6개월, 도2년은 2년, 도1년반은 1년6개월, 도1년은 1년의 징역으로 환산한다. 그러나 국사범(國事犯: 정치범)의 유형은 그대로 존속시켜 도형을 징역으로 환산, 추역(就役)을 폐지한 것이다.

더욱이 그 뒤해의 4월 4일, 법률 제3호에 의해 형률명이 제정되었는데 형을 사형·유형·역형(役刑)·태형(笞刑)의 4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형은 종신·15년·10년·7년·5년·3년·2년반·2년·1년반·1년의 10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유형은 국사범으로 역형 1년 이상의 형률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하며, 일반범죄자라도 칙지(勅旨: 황제의 말씀)를 받들었을 때엔 역형을 유형으로 바꾸는 일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그 후 광무 9년(1905) 4월 29일, 법률 제2호로 제정·공포된 「형법대전」은 그 범례에 「본 법률은 대전회통과 대명률과 신반률(新頒律)을 참작해서 집대성했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 형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법대전」에 따르면 형은 주형(主刑)과 부가형(附加刑)을 구별하여 주형은 사형·역형·금옥형(禁獄刑)·유형·태형의 5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은 반란에서 사죄(死罪)를 제외한 자와 관원의 공죄(公罪)로 금옥(禁獄)에 과중한 죄를 범한 자에게 시행하며 도지(島地)에 보내 보호한다고 되어있다. 단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배선(流配先)의 감옥에 수금(囚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유배의 적용범위를 넓혀, 종신형으로부터 1년까지의 10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융희(隆熙) 3년(1909)에 사법권이 일본에 박탈당하자, 유형은 일본 형법의 금고형으로 간주하여 유형제도는 드디어 폐지되었던 것이다. 또 유형의 명칭에 배(配)·적(謫)·찬(竄)·방(放)·천(遷)·도(徙) 등의 용어가 사적(史籍)의 여러 곳에 산견(散見)된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인의 신분·죄상·배치 등의 차이에 따라 각각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에서는 원도유배(遠島流配)·유배·정배(定配) 등을 일반적으로 「귀향(歸鄉)」이라고 해서 그 사용구분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귀향이란 유배·도배·찬배·정배의 총칭이지만 원래는 고려시대의 율명(律名)으로서 조선의 방축향리(放逐鄉里)와 같은 것이지만, 후세에서 잘못하여 앞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유형의 집행

유형 내지 도형의 판결을 받아 정배되어가는 사람 가운데 금오천극죄인(金吾荐棘罪人)⁴⁰⁾과 정2품 이상의 고관이면 도사(都事)⁴¹⁾가 배소까지 호송하며 그 이하의 죄인은 서리(書吏)⁴²⁾나 나장(羅將)⁴³⁾이 호송한다. 또 형조(刑曹)의 죄인으로서 도배 이상의 죄인이면 경역자(京驛子)⁴⁴⁾가 압송하여 다음의 역리에게 인계함으로써 유배지까지 보내도록

40) 의금부에서 가극(加棘)에 해당하는 죄인을 국왕의 특지(特旨)에 의해 유죄인의 집을 가시로 둘러싸 죄인이 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위리안치의 죄인을 말한다.

41) 義禁府의 중5품관.

42) 하급관리.

43) 武官廳의 사령.

44) 驛吏.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인의 호송역에 임명된 자가 만일 그것을 기피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해임하여, 기피사유를 문책 받는다. 또 도·유·부처·안치·정배된 자는 형조에 기록되며 타사(他司) 및 외방(外方)⁴⁵⁾에 정배되어 있는 자도 또한 형조에 이문(移文: 조회)해서 기록해 두었다가 후일 범죄인의 검거자료로 한다. 경·외(京·外)의 죄인이 유형지에 호송되면 관내의 도관찰사(道觀察使)는 즉시 그 자의 죄목과 도착일자를 열거하여 왕에게 상주(上奏)한다.

그래서 유인의 감시책임은 관내의 수령(守令)이 맡는다. 「조선실록」에 따르면 수령⁴⁶⁾이 감시를 게을리하여 유인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수령은 문책되어 파면당했던 것이다. 또한 유배자도 당시 정권의 정책적인 요청에 의해 배소를 다른 지방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정상을 참작하여 죄인을 수도 가까운 지방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 때 전자는 「이배(移配)」, 후자는 「양이(量移)」라고 일컬어졌다.

이제 일례를 들면,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인조(仁祖) 16년(1638) 4월, 「비변사」⁴⁷⁾로부터 왕에게, 역적의 자식이 연령미만(未滿)이면서 연좌제에 처해져 남방에 정배되어 있지만, 지금은 성장했음으로 제주

45) 서울 이외의 지방.

46) 수령이란 목사·부윤·군수·현령·현감 등 지방관을 총칭한다.

47) 비변사(備邊司)를 「비국(備局)」 또는 「주국(壽局)」이라고도 한다. 중종(中宗) 때, 북방은 여진(女眞), 남방은 왜구(倭寇) 때문에 침략 당함으로 변사(邊事)에 정통한 사람을 모아 변방사무(邊防事務)를 토의했는데 명종10년(明宗·1555)에 이르러 한 청(廳)을 마련하여 사무를 관장했는데 처음엔 삼품아문(三品衙門)이었지만 임진왜란 후 국방문제가 빈번해짐으로 끝내 정1품아문으로 높여 중·외군국 기무(中·外軍國機務)를 총령(總領)하여 팔도를 흥관(匈管), 전국의 정무(政務)를 행했다.

도에 가까운 진도(珍島)·장흥(長興) 등지의 정배인과 마찬가지로 의금부(義禁府)⁴⁸⁾로 하여금 다른 섬으로 이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으로 여기에 감히 주달(奏達)한다」고 한 것에 대해 왕은 그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와같이 조선조 봉건시대에는 때에 따라서는 왕명이 법률이 되며, 행정지시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왕은 최고재판관임과 동시에 수사의 최고지휘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유배지의 선정

조선조시대에 있어서의 유배지 선정은 대충 원류(遠流)와 도류(島流)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류라고 해도 어떤 기준을 책정하여 배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때 그 때의 정치정세나 죄인의 신분 차이와 죄상의 경중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찰(推察)되지만 아무래도 자세한 사정은 뚜렷치 못하다.

당시 유인들을 처리했던 실례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벽원지(僻遠地)로 유죄(流罪) 당한 자 보다는 섬으로 유배된 쪽이 어쩐지—심정적인 면도 있지만—훨씬 중죄인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섬에 유배된 자가 사일등(死一等)이 감면되어 본토로 이배(移配)된 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지에 정배됐던 자가 배소를 떠났었다는 이유로 장(杖)에 처해진 위에 또 어떤 섬으로 전배(轉配)된 예가 적잖기 때문이다.

48) 조선조시대의 최고의 사법기관.

이러한 모순은 조선의 형벌제도의 결함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골육상쟁하는 봉당정치(朋黨政治)에 이용된 쪽이 훨씬 컸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유형 가운데 최극형(最極刑)이라고 일컬어지는 절도안치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은 봉건국가의 권력적 질서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조선봉건왕국이 원배(遠配) 보다는 도배(島配)를 중시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서울로부터 가장 먼 곳이라고 하면 함경북도의 경원(慶源)·삼수(三水)·갑산(甲山) 등지인데 유배는 대개의 경우 교통이 극히 불편한 벽원지로 보내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었다. 어쩌다가 서울에 가까운 강화도 교동(江華島喬洞)으로 유배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정책적 배려에 의한 특례인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原州)·홍천(洪川)·춘천(春川) 등지, 충청도의 공주(公州)·보은(報恩)·충주(忠州)·청주(淸州)·해미(海美) 등지, 경상도의 김해(金海)·밀양(密陽)·상주(尙州) 등지로도 배적(配謫)되어있지만 그것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한했었다.

이어 조선조 중기로부터 말기에 걸쳐서의 유배 경향을 보면, 변경지방이나 내륙지에서의 유배는 극히 드물고, 거의가 유인도·무인도를 가릴 것 없이, 물도 솟지 않고 생활수단조차 없는 절해의 고도에 보내지고 있다.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권력망자(權力亡者)의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피로 피를 씻는 조선의 당쟁을 생각해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대상의 섬이라고 하면 서울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강화도(경기도)·백령도(白翎島)·철도(鐵島: 황해도) 등 도처에 많은 섬이 있지만

거기에 유배된 자는 극히 적고, 대부분은 전라도·경상도·평안도 지방에 점재(點在)하는 절도(絶島)에 유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흑산도(黑山島)·진도(珍島)·임자도(荏子島)·금갑도(金甲島)·지도(智島)·군산도(郡山島)·고금도(古今島)·완도(莞島)·신지도(薪智島) 등 전라도 연안의 여러 섬이 찬류(竄流)의 대상지로 되어있었다. 「팔역지(八域誌)」에 「조정진신 다찬어차(朝廷摺紳多竄於此)」라고 되어있다. 즉 정부의 고관대작이 이 섬에 많이 유배되었다고 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당세의 명류(名流)가 유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에 있어서도 다른 섬과는 결코 비할 수 없을만큼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영광과 고뇌의 섬」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영조 33년(1757) 2월 1일, 전라도 감사(監司: 도지사) 이창수(李昌壽)⁴⁹⁾가 「유인이 제주목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연좌인들을 제주삼읍에 분배하고 싶은데 어떨가」고 「비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 그것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유인이 계속 늘어 「도민은 그 때문에 매우 곤혹하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또 적객(謫客) 김윤식(金允植)⁵⁰⁾이 「제주적인(謫人)⁵¹⁾이 하루 하루 많아져 드디어 섬에 넘칠려고 한다고 일단은 웃고 또한 탄식했다」(「續陰晴史」)고 했던 것 같이 조선말기로 내려옴에 따라 그 경향은 더욱 더 심해져 갔다. 더구나 중앙정계에의 영향력이 강한 자일수록 이 섬에 강제 격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원류된 적객은 폐왕 광해군(光海君·재위 1608~23)을

49) 호는 恥齋. 定宗의 현손.

50) 1841~1920. 호는 雲養.

51) 귀향살이 하는 사람.

비롯 왕족·정객·장상(將相) 기타 문인묵객(墨客) 등 그 모두가 제1급의 정치범죄자 뿐이었다.

그 옛날 「제주도는 해로(海路) 9백리, 중죄대벌(重罪大罰)이 아니면 감히 여기에 부처(付處)하지 않는다. 조야(朝野) 모두가 그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했던 것과 같이 당시의 양반지배계급자들은 제주도에의 유배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라고 하면 곧 「유형의 섬」이라고 사람들은 연상해 버린다. 그 시비는 어떻든, 제주도는 조선조시대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유배지였다는 것은 사실(史實)이 보여주는 바이다.

더구나 이 섬에 유배된 자는 몇몇 특례를 빼고는 종신형인 자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도형(徒刑)⁵²⁾도 또한 당시에 이렇다는 감옥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가 원류당하여 있었다.

유인의 처우(處遇)

유인의 대우도 또한 일률적이진 않았다. 말하자면 배소에서의 생활은 배지(配地)의 수령의 성질과 자유재량에 의해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비록 위리안치라는 정치상의 중죄인이라 해도, 배소를 이탈하든지 또는 목사⁵³⁾·현감⁵⁴⁾ 등에게 원한을 사고 있는 자가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각별히 구속 당하지 않는 생활이 허용되어, 부근의 자제들에게 읽고 쓰기와 시문(詩文)을 가르쳐 그 일용의식(日用衣食)에

52) 지금의 징역형.

53)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지방장관. 사법·병권(兵權)을 겸한다.

54) 현의 지방장관.

대해서는 집안의 자력(資力)이 이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이를 보내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벌이와 섬사람의 정에 의해 한서(寒暑)를 견디어냈다. 대개 그들은 명문의 서울사람이었으므로 섬사람들도 적객을 좋게 대하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만약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주삼읍이라면 「절제사(節制使)⁵⁵⁾가 우선 그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관찰사⁵⁶⁾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또 왕에게 상주(上奏)한다」(경국대전)고 규정되어있는 바와 같이 관찰사는 유형 이하를 직재(直裁)하고 수령은 태형(가벼운 죄) 이하를 직단(直斷)했다. 그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역할도 담당했다.

이어 제주도(추자도 포함)에의 유배자의 배치를 보면, 고려 말기로부터 조선 중기에 걸쳐서는 제주목⁵⁷⁾·대정현⁵⁸⁾으로 비교적 동일하게 할당하고 있지만 조선조 말기가 되면 대정, 정의 지방은 상당히 제한되고 주로 제주목에 유배되어 있다. 이들 수 많은 유인들은 섬에 도착하면 우선 당국이 정해준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머물 곳을 정하여 기식(寄食)하며, 밤 낮으로 사사(賜死)·참형(斬刑)의 가죄(加罪)에 떨어서 불안하고 외로운 유적(流謫)생활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와서 그 음침한 당쟁이나 궁중의 칙칙한 갈등 사이에서 수많은 자가 실의(失意)하고 보복당하여 이 섬에 유배당한 정치범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새삼스러히 배소에 있어서의 비참한 생활을 가슴 아프게 회상하는 것이다.

확실히 제주도는 태풍·풍해 또한 한해 등으로 항상 기근에 위협

55) 정3품의 군관으로 지방관을 겸하는 수도 있다.

56) 지금의 도지사, 종2품.

57) 지금의 구좌읍으로부터 한경면까지.

58) 대정읍으로부터 옛 중문면까지.

받으며 유인의 생활은 혹독했지만 본토와는 달라, 따뜻한 섬이며 바다와 산의 수확물이 풍부하고 도민들도 유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다른 섬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만큼 살기 좋은 섬이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당시의 서울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제주도는 멀고 먼 타향이었다.

본토의 친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적객은 「물 길는 여자」라는 명목의 내연의 처에게서 자식까지 얻었지만 지원(支援)도 없고 직업도 없는 유인은 도민의 정에 의지하는 거지 꼴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유인을 차별하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유적생활 중에 정변(政變)이 돌발한다든가, 그렇잖으면 대사(大赦)라는 행운을 입어 무사히 귀향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개중엔 사사나 장사(杖死), 병사(病死)하여 섬의 흙이 되어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이 섬에서 구축한 사람도 적잖다. 이와 같이 이 섬에서의 유인의 어둡고 슬픈 드라마는 헤아릴 수 없다.

참고문헌

삼국유사·삼국사기·고려사·이조법전고(李朝法典考)
대전회통(大典會通)·조선실록

제2장 고려조(918~1392)에 유배된 사람들

몽고·운남인(蒙古·雲南人)

제주도는 조선의 왕도(王都)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남단의 고도이며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대 왕조는 유3천리의 형률의 이름을 빌어 유형지로서 이용했다. 최초 몽고(蒙古·元)가 삼별초(三別抄)의 난¹⁾ 때, 이 섬을 점령하자 재빨리 정책으로서 1275년과 77년에 도적·죄인 등 2백여명을 이 섬에 보내었고, 충숙왕(忠肅王) 9년(1332) 9월에 원은 휘정원사(徽政院使)를 내려보냈으며 충혜왕(忠惠王) 원년(1340) 2월에 패난해(李蘭溪)대왕을 유배하고 있다. 우(禡:廢王) 8년(1382) 7월 명(明)도 또한 운남(雲南·동남아시아)을 평정했을 때, 운남왕(원)의 백백태자(伯伯太子)와 그 아들 육십노(六十奴) 및 내시 복니(內侍 卜尼) 등을 보냈으며 그 후 귀순한 원의 왕족 달달친왕(達達親王) 등 80여호를 이 섬에 보내고 있다.

더욱이 공민왕(恭愍王) 3년(1391), 명의 황제는 운남현왕의 자손 애안

1) 1270~73년에 강화도의 삼별초가 몽고 세력에 반항하여 일으킨 반란.

첩목(愛顔帖木) 등을 제주에 안치하여 원의 왕족인 백백태자 등과 동거 하도록 했다. 이 때 많은 종자(從者)가 따라와서 지금의 조천읍 원당봉(元堂峰) 부근에 정착해 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이 섬에 뼈를 묻고 있다.

「탐라지(耽羅誌)」에 「양(梁)·안(安)·강(姜)·대(對), 雲南의 大明初, 平定雲南 徙梁王家族, 安置于濟州」라고 되어있으며 또 「동국여지승람」에 부씨(夫氏)는 「초보성군지복성현인(初寶城郡之福城縣人) 내서간고씨(來婿干高氏) 기자손유계고씨위왕자(其子孫有繼高氏爲王子)」라고 되어있다. 또 조(趙)·이(李)·석(石)·초(肖)·강(姜)·정(鄭)·장(張)·송(宋)·주(周)·진(秦)의 10성은 원인(元人)이 귀화한 것, 양·안·강·대의 4성은 명의 초기부터 온 것으로 삼별초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섬의 인구 구성과 성씨의 변화는 현저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원으로부터 명으로의 교대기에 이들의 많은 유배인에 의해 대륙문화가 이 섬에 전래되고 있다. 조선조 초기에 정부가 제주도로부터 금은기(金銀器)나 악기류를 징발해 간 것도 그들이 갖고 들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조선에 있어서의 이 섬에의 유배형은 천학(淺學)이긴 하지만 필자가 문헌을 더듬은 한에 있어서는 고려 말기로부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기재 내용은 시대와 이름만으로, 죄명의 기입이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해당자의 범과(犯科)라든지 사건의 관련 등에 이르면 상당한 큰 사건의 연좌자가 아닌 한, 내용이 불분명한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죄는 사죄(死罪)에 잇따르는 중형을 의미하고 있지만, 범죄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일로 원도(遠島)가 되느냐고 고개를 기울이게 되는 것도 적잖다. 만일 본문에 애매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충혜왕조(忠惠王朝 재위 1339~44)

승·학선(僧·鶴仙)

...왕을 업수이 여긴 무군무도죄(無君無道罪)에 의해...

고려말기라고 하면 불교의 난숙기로 불사법령(佛寺法令)의 남설(濫設)은 국가의 재정·경제면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불사의 유형은 승려를 안일타약(安逸惰弱)케 하여 학문이나 신앙의 결여와 덩달아 부패타락으로 이끌었다. 그것이 원인으로 승려가 정치에 개입하여 횡포를 다하고 더구나 왕사(王師)·국사(國師)에 이르면 국가와 국왕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아, 왕의 고문으로써의 최고의 영예를 자랑했다. 그 대표적인 승이라면 신돈(辛旽·?~1371)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상에 나타난 제주도예의 최초의 유배인은 역시 충혜왕조의 승·학선(僧·鶴仙)이었다. 학선의 출신이나 행적은 뚜렷치 않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혜왕 3년(1342) 6월, 왕이 홍법사(洪法寺)에 행차하여, 학선에게 장수의 비결을 문의했던 바, 그는 대답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수명이란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그것을 넘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업(惡業)을 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고 왕에게 가볍게 훈계했다.

이어 왕은 술사(術士)²⁾의 말을 믿어 지금 숭교사(崇敎寺)³⁾의 철거를

2) 의술·풍수·점술에 뛰어난 사람.

3) 목종은 불교에 대한 신앙이 두터워 생모 헌애왕후(獻哀王后·千秋太后 皇甫氏)의 원당(願堂)에 진관사(眞觀寺)를 창건하고 자신의 원당에 숭교사를 세웠다.

고려중이라고 했다. 학선은 눈을 둥그렇게 하면서 이유를 물었다. 왕은 그에 대해 「서운관(書雲觀)⁴⁾에 이 땅에 절이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역신(逆臣)이 나타난다고 말해지고 있으므로 나는 조적(曹積)⁵⁾과 같은 반역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움으로 숭교사를 철거하고 싶은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학선은 그것에 불안을 느꼈는지 즉시 「숭교사는 이미 목종조(穆宗朝·998~1009)부터 있는 절입니다만 그동안 몇 명의 역신이 배출됐습니까?」고 강하게 반문했다고 한다.

또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에 따르면 그는 슬(瑟·거문고)·그림·의술을 잘 하고 한문이나 몽고어를 잘 해득했다. 그 때문에 왕은 그를 존경하여 사부(師傅)⁶⁾로 기용하여 승려로써 국가의 최고권위를 그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정치에도 관여시켰다.

그러자 그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배신하여 마치 권력을 한 손에 쥔 것과도 같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궁전에 나가도 왕에게 숭경(崇敬)의 마음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왕에게 예의에 벗어난 행태를 부리는 등 갖가지 음모를 꾸몄다. 그 때문에 그는 많은 신민(臣民)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노여움을 샀다.

학선은 승으로부터 이례(異例)의 출세를 한 사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질투하는 자도 많았다. 그는 그 후에도 무뢰(無賴)함이 심해져,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명이라면서 마음대로 수인(囚人)을 방면하는 등,

4) 현재의 기상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1327년부터의 관청이름.

5) 조적은 의흥군(義興郡)의 역리(驛吏)라고 전해진다. 충선왕조(忠宣王朝)에 우상시(右常侍), 충숙왕조에 밀직(密直)이 되어 충숙왕 부자를 이간시켜 심왕고(瀋王高)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 그는 오랫동안 심왕고의 부하가 되어 도당을 짜서 충해왕을 습격했지만 관군에게 사살된 역적이다.

6) 국왕의 고문.

왕을 업수이 여기는 전행(專行)이 다반사로 행해졌다. 그 지나친 폭거(暴舉)에 끝내 참지 못하게된 왕은 감찰사(監察司)⁷⁾에 명하여, 그를 체포하여 그의 속내를 엄히 추궁토록 했다. 왕명을 받은 감찰사는 즉시 그를 붙잡아 그의 배신의 죄를 엄중히 추궁한 바,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깨끗히 인정했다. 그 결과 그는 무군무도(無君無道)의 죄명 아래 드디어 제주도로 찬류되는 몸이 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일 밖에 알 수 없지만 생각하건대 학선이라는 승이 야심을 품어 사부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끝내는 왕위(王位)까지를 찬탈하려고 한 어떤 조직적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 아닐까? 그가 그 후 석방되었는지, 그렇잖으면 제주에서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분명치 않다.

어느 세상이든 인간이 허영심에 쫓겨 날뛰면 끝내는 자아(自我)를 잃고 이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을 역사가 뚜렷히 증명하고 있다.

<고려사·근역서화징>

7) 뒤의 司憲府.

고종조(高宗朝 · 재위 1213~59)

송길유(宋吉儒)

...백성을 괴롭힌 죄상(罪狀)에 의해...

그 옛날 추자도에 유배된 송길유(宋吉儒)는 주정뱅이로 불량배와 같은, 악명 높은 혹리(酷吏)였다. 극히 음험하여 탐욕 · 잔인하기 짝이 없는 자이지만 권력을 생각하여 상사에 대해서는 아첨을 매우 잘 했다. 그 때문에 세상사람이 사갈(蛇蝎)과 같이 무서워 했다.

고종조에 최항(崔沆⁸)에게 빌붙어 야별초(夜別抄⁹)의 지유(指諭)가 된다. 그는 죄인을 고문할 때는 잔인한 방법을 택해, 반드시 두 손의 엄지를 단단한 끈으로 동여매어 시렁위에 묶고 또 두 발목을 함께 묶어, 큰 돌을 땅위 1척 쯤 되는 곳에 매달아 놓은 채 불을 땀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채의 분형(焚刑)이다. 그래서 곤봉을 쥔 병졸을 양쪽에 세워, 흔들리는 두 발에 교대로 곤봉 세례를 가한다. 그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물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가 행한 잔학(殘虐)의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체력이나 의지가 강한 자라 해도 그 독형(毒刑)을 견디어낼 수가 없어 술술 털어놓는다고 한다. 이렇듯 그는 비인간적인 법외(法外)의 고문을 끊이지 않으면서 죄없는 백성을 괴롭혔던 것이

8) 972~1061, 고려초기의 명신.

9) 최씨집권시대에 최우(崔瑀 : 怡)가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한 군대. 삼별초는 이 야별초에서 비롯된다. 뒤에 좌 · 우별초로 나뉘었다.

다. 이렇게 냉혹한 극악인(極惡人)이라도, 당시의 위정자에게는 필요한 존재였는지, 그는 장군(領의 지휘자)으로 발탁되어 어사중승(御使中丞)¹⁰⁾에 임명되어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해당기관에서는 천민 출신이라고 해서 고신(告身)¹¹⁾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는 최항의 압력에 의해 서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 대장군(大將軍)¹²⁾이 되어 경상도 수로방호별감(水路防護別監)의 직책을 갖고 야별초를 이끌고 주·현(州·縣)을 순찰하면서 백성을 독려, 해도(海島)를 지키도록 했다.

이 때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박살(撲殺)하고, 또는 긴 새끼줄로 사람의 목을 잇따라 묶어 별초(別抄)들로 하여금 물 속에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숨이 끊어질만 하면 끌어내어 겨우 숨을 되돌리게 되면 다시 혹독하게 괴롭혔다. 이런 일이 몇 번씩이나 되풀이 된다. 그 뿐 아니라 백성들이 재물을 애껴 내놓지 않는다고 여겨 그 가옥이나 전곡(錢穀)에 불을 질렀음으로, 열 사람 가운데 8,9명이 불 타 죽었다고도 한다.

또 백성의 전토(田土)나 재물을 위협하여 빼앗는 등, 엉뚱한 포학(暴虐)을 보다 못한 안찰사(按察使)¹³⁾ 안언상(安彦祥)은 그의 횡포를 통렬히 탄핵하여 도병마사(都兵馬使 : 都堂)¹⁴⁾ 회의에 보고했다. 그러자 그와 한편인 김준(金俊) 등이 남몰래 대사성(大司成 : 弘文館의 정3품관) 유경(柳璥)과 시제(侍制)¹⁵⁾ 유능(柳能)이란 자에게 「송길유는 우리들과는 친교(親

10) 어사대(御司臺 : 사헌부)에 속하는 종4품관.

11) 사령장·직첩(職牒)이라고도 했다.

12) 三軍六衛의 최고지휘자.

13) 지방장관.

14)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곳.

15) 고려조의 관직명. 예종 때, 청연각(淸燕閣)을 보문관(寶文館)으로 개칭했을 때의 관직명. 공민왕 31년에 폐지.

것이 깊다. 안찰사의 탄핵서가 이미 도당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 만일 그 탄핵서가 지금 돌연히 공개되면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여겨짐으로 우리들이 기회를 봐서 영공(令公 : 崔誼)¹⁶⁾에게 잘 말씀 드리면 보아줄 것이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한다.

유경 등은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었는가? 그 부탁을 받아들여 탄핵서를 켜 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없어 그것을 최의가 알게 되어, 송길유는 추자도로 유형에 처해졌다고 「고려사」에 기재되어 있다.

16) 최항의 아들, 학정(虐政)을 하여 한편에게 주살(誅殺) 당함. 최씨 60년의 정권은 이것으로 종말을 고한다.

충숙왕조(忠肅王朝 · 1313~30, 1332~39)

조익청(曹益淸)

…참소(讒訴)에 의해 폄류(貶流)됨…

조익청(曹益淸)은 창녕(昌寧) 사람, 고려 충숙왕조에 중랑장(中郞將)¹⁷⁾이 된다. 충혜(忠惠)가 왕위에 올라 원(元 : 몽고)에 있을 때, 정승(政丞)¹⁸⁾ 정방길(鄭方吉) 등이 왕의 부자 사이를 이간하여 심왕 · 고(瀋王 · 曷 : 延安君)를 왕으로 세울려고 남몰래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 때 익청이 충혜왕 곁으로부터 서울에 돌아왔다. 충숙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왕이 나의 종신(從臣)의 직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비록 심왕으로써 왕을 삼는다해도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내가 원(元)에 가서 이러한 무모한 처지에 대해 원제(元帝)와 담판하고 싶은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익청은 자세히 부자상전(父子相傳)의 법을 설명했다. 그 말이 구체적이며 더구나 도리에 맞는 것이었으므로 충숙은 그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신뢰해서 받아들였다. 그 후 그는 대호군(大護軍)¹⁹⁾에 승진하자 대언(代言)²⁰⁾ 윤환(尹桓)과 손을 잡고 충혜왕 측의 간신배(奸臣輩)를 배제하려한 것이 홍장(洪莊) 등의 무리의 원망을 사게 되어 이번엔 거꾸로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조작되어 끝내 그는 제주안무사(按撫

17) 정5품의 무관.

18) 議政의 대신, 종1품.

19) 종2품의 무관.

20) 왕의 비서직.

使²¹⁾로 폄류(貶流)²²⁾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유배가 풀려서 중앙에 소환(召還)되어 다시 원으로 들어가 충혜왕의 탐학부도(貪虐不道)를 극언(極言)하여 정동행성(征東行省)²³⁾을 고려에 세워서 민생의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문서로써 원제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충정왕(忠定王 : 1348~51) 때 좌찬성사(左贊成事)²⁴⁾의 직을 받고 공민왕(1351~74) 초기에 좌정승(左政丞)²⁵⁾이 되어 하성부원군(夏城府院君)에 삼아지고 정1품의 공신호(功臣號)를 받았다. <고려사>

※ 행성(行省)은 정동행성을 말한다. 그것은 원의 고려내정통제기관(高麗內政統制機關)이다. 여기서 입성(立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완전히 원의 지방행정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원으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언제나 원에게 아첨하는 고려인으로부터 제시되었다. 충혜왕은 고려로 보내어진 타적(朶赤) 등 6명의 사신에게 폭행 당한 후, 원도(元都)로 납치 당하는 도중에 죽었다.

21) 명을 받고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직.
22) 관직을 내려 멀리 유배하는 일.
23) 원의 관서.
24) 門下府의 정2품관.
25) 종1품의 대신 격.

충목왕조(忠穆王朝 · 1344~48)

조득구(趙得求)

...남의 처를 강간한 자의 계략에 걸려서...

조득구(趙得求)가 제주도(流)된 것은 강윤충(康允忠)의 무함(誣陷)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 경위를 얼핏 살펴보면 이렇다.

강윤충은 본디 신분이 낮은, 음흉스러운 자였지만, 충숙왕(1332~39)에게 빌붙어 호군(護軍)²⁶⁾이 된다. 어느날, 그는 지위를 거들먹거리려 부하의 낭중(郎中)²⁷⁾ 백유(白儒)의 처를 능욕했다. 남편의 고발에 따라 감찰사는 그를 국문(鞫問)한 바, 그는 그대로 범행을 자백했다. 그래서 왕에게 처벌을 요구했지만 응해주지 않았다. 왕의 거부 이유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번엔 감찰·참의(僉議)·전법(典法: 刑曹)등과 보조를 맞춰 각기 상소하여 격렬히 그의 비도(非道)를 논죄(論罪)했지만, 그래도 왕은 좀처럼 결심을 하지 않았다. 그에 견디다 못한 감찰사는 판결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무를 전면적으로 정지하고 왕의 재정(裁定)을 강하게 촉구했다. 일의 중대함에 놀란 왕은 드디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윤충을 장형(杖刑)한 위에 멀리 유배시키라」고 유죄 판결을 선언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적(曹頤)의 난(1339) 때 충혜왕에게 시종(侍從)한 공이

26) 정4품의 무관.

27) 行中書省의 종5품관.

있다고 해서, 얼마없어 배소선(配所先)으로부터 소환되어 공일등(功一等)으로 기록되고 밀직부사(密直副使)라는 요직에 다시 중용(重用)되었다. 그 때 왕은 노비문제를 중시하여, 그 책임관에 강윤충과 민환(閔煥)의 두 사람을 임명했다.

이어 강윤충이 양광(揚廣)²⁸⁾·전라·경상도의 삼도문민질고사(三道問民疾苦使)로 임명되어 현지에 부임했던 바, 놀랍게도 민환이 무뢰한(無賴漢)들을 각도에 내보내어 빈고(貧苦)에 허덕이고 농민들로부터 염치 없이 금품을 빼앗고 있었다. 강윤충은 노발대발하여 그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 순군옥(巡軍獄)에 처넣었다.

그는 그 위에 충목왕(忠穆王) 때 찬성사(贊成事)²⁹⁾에 임명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조득구가 왕후(王后)³⁰⁾를 데려 원나라로 가서 정치사업(政治事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 석상에서 조득구가 왕후에게 「강윤충은 연소한 왕의 곁에 있으면서 국정(國政)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정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고 귀뜸했다.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강윤충은 그에 대해 매우 분개하면서 「이놈 두고보자, 언젠가는…」하고 마음에 복수를 맹세했다. 그런데 충목왕 3년(1347), 토지와 노비에 대한 불법 점탈(占奪)을 적발하는 전민변정치도감(田民弁整治都監)이라는 임시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 전토를 정비하도록 했다. 그런데 동년 3월, 기황후(奇皇后)³¹⁾의 족제(族弟)가 되는 기삼만(奇三萬)이 남의 토지를 강탈한 사실을 도감이 적발하여 기삼만은

28) 경기도.

29) 문하부의 정2품관.

30) 桂林君公.

31) 元順帝의 繼妃.

재판을 받고 장형이 가해진 끝에 투옥되었지만 불가사의한 것은 그가 얼마없어 옥중에서 급사(急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것이 끝내 정치문제가 되어 정치(整治)사업은 추진 안되게 되었다. 조득구는 이렇듯 흑독한 정치정세를 우려하여 그 사정을 원제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 때 강윤충은, 조득구가 원제에게 자신의 일을 나쁘게 보고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는 않을까고 겁을 먹어 왕을 부추겨 조득구를 탐라(耽羅)로 폄류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말로는 이러한 것이다.

공민왕조(恭愍王朝 · 재위 1352~74)

충혜왕의 서자(庶子) 석기(釋器)

...왕위 찬탈을 책모(策謀)했다고 해서...

충혜왕은 사자(嗣子)가 없고 단 한사람의 서자 밖에 없었다. 즉 왕이 사기그릇장수인 임신(林信)의 딸에게 반하여 생겨난 아들로 석기(釋器)라고 불리우는 자가 바로 그것이다. 덕분에 임신은 은천군(銀川君)에 봉해져 대호군(大護軍 : 장군)에 임명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속칭 「사기옹주(沙器翁主)」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충정왕(忠定王 · 재위 1349~51)은 석기를 승려로 하기위해 삭발하고 가사(袈裟)를 입혀 만덕사(萬德寺)에 맡겼다.

그런데 공민왕조에 원나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석기를 소환하겠다고 알려왔으므로 왕은 할 수 없이 그를 절에서 데려왔다. 공민왕 5년(1356) 6월, 왕은 전호군(前護軍)³²⁾ 임중보(林仲甫)가 석기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를 순군(巡軍)³³⁾에 잡아놓아 이들의 사실관계를 들이밀면서 추궁하는 가운데, 뜻 밖에도 그의 공술(供述) 속에 전 정승(政丞 : 수상) 손수경(孫守卿) · 전 밀직(前密直)³⁴⁾ 홍준(洪峻) · 감찰대부(監察大夫)³⁵⁾ 손용(孫湧) · 황

32) 정4품의 무관직.

33) 순군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약칭. 포도(捕盜) · 난금(亂禁)을 담당한 고려조의 관청. 관원에는 도만호(都萬戶) · 상만호(上萬戶) · 만호(萬戶) · 부만호(副萬戶) · 진무(鎭撫) · 천호(千戶) · 제공(提控)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의금부(義禁府)로 개칭되어 있다.

숙(黃淑), 전교령(典校令)³⁶⁾ 정세공(鄭世功)·이년(李年)·강불화(姜不花), 전 반서(判書)³⁷⁾ 홍계(洪桂)·김성(金成), 내원승(內園丞)³⁸⁾ 박란(朴蘭) 등 10여명의 거물 고관의 이름이 크게 떠올랐다. 그 때문에 이들 연루자를 일제검거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 손용이 감찰대(監察臺)³⁹⁾에 앉아있자 포리(捕吏)들이 달려들어 그를 포박·연행하려고 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전전궁궁 떨고 있었는데 오직 한사람 지평(持平)⁴⁰⁾ 김우상(金遇祥)만이 의연한 태도로 말했다.

「대관(臺官)⁴¹⁾은 어떠한 죄가 있어도 감찰대의 일이 끝나지 않으면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다. 얼른 나가거라!」고 외치면서 그의 연행을 막았다. 그래서 손용은 일을 마쳐놓고 순군옥(巡軍獄)에 출두하자, 옥관(獄官) 임중보에게 「너는 손용을 아는가?」고 따져들었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무죄가 되어 당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손수경·홍계·김성·임중보 등은 어쩔 수 없이 참형⁴²⁾에 처해졌고 찬성사⁴³⁾ 강윤충(康允忠)은 동래현령(東萊縣令)⁴⁴⁾으로

34) 樞密院의 개칭, 종1품관.

35) 사헌부의 정3품관.

36) 정9품관으로 校墔이라고도 함.

37) 감찰사의 정3품관.

38) 종8품관.

39) 사헌부.

40) 사헌부의 정5품관.

41) 대관은 사헌부의 대사헌으로부터 지평까지의 관원들을 총칭한다.

42) 사형 가운데서 참형(斬刑)이 교형(絞刑)보다 무겁다고 여겨지는 것은, 「참」에서는 목과 몸뚱이 떨어져, 떨어진 이상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다. 「교」쪽은 목이 이어져 있으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형벌도 「교」쪽이 가볍다고 여겼으며, 상당한 중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참형에 처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43) 門下府의 정2품관.

강등되었으며 한양윤(漢陽尹)⁴⁵⁾ 홍중원(洪仲元)·강찬(姜贊)·장만(張萬)·임주운(林朱雲) 등은 장형(杖刑)⁴⁶⁾에 처해졌다. 이들은 석기를 왕으로 옹립하는 음모를 꾀하여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손수경(義昌府院君)의 일당이다.

그래서 석기는 제주도에 안치하기로 하고, 이안(李安)과 정보(鄭寶) 두사람이 그를 호송하는 도중에 바다에 쳐넣어 수형(水刑)에 처하기로 되어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된 판인지, 석기는 살아남아 어딘가에 은신(隱身),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공민왕 12년(1363), 서북면도순무사(西北面都巡撫使) 전록생(田祿生)의 보고에 「석기라고 불리는 자가 평양부에서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경흥부 임견미(慶興府 林堅味) 등을 현지에 급파해서 석기를 체포토록 하는 한편 각도에 사람들을 보내어 군대를 모집, 엄계태세(嚴戒態勢)를 취하도록 했다.

전록생⁴⁷⁾과 서해도(西海道)⁴⁸⁾ 도순부사⁴⁹⁾ 김유(金庠)가 석기라고 자칭하는 자를 포살(捕殺), 목을 베어 송도(松都)에 보내왔으므로 「이것을 대역인(大逆人)의 목이다」고 거리에 효수(梟首)했다. 또 은천옹주(銀川翁主)⁵⁰⁾ 아버지 임신과 이안·정보·김대(金大)·서천길(徐天吉) 등 그

44) 지방관.

45) 지금의 서울시장.

46) 곤봉으로 등을 때리는 형.

47) 전록생(1318~75)은 공민왕의 무신으로 일찍이 제주의 사록(司錄)에 보해진 적도 있다. 1375년, 박상충(朴尙衷) 등과 사건에 연좌해서 장류(杖流) 당하는 도중에 죽었다.

48) 현재의 황해도.

49) 고려조의 외관직(外官職), 1389년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개칭되어 주·부(州·府)의 장관을 겸했다.

50) 충렬왕이 임신의 딸에게 반하여 은천옹주에 봉했던 것이다. 왕의 처를 왕후, 첩을 부인(夫人)이라고 했다. 그 밖을 궁주(宮主)·원주(院主)·옹주(翁主)라고 했다.

일당의 목을 모조리 베었다고 한다.

그러나 석기의 사건은 사실이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도당(徒黨)도 미처 모이지 않았는데 돌연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을 놀라게 하고 곤혹스럽게 했다.

그 때문에 왕은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사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교서(敎書)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석기는 서자(첩의 자식)일 뿐 아니라, 바로 단양대군택(丹陽大君宅)의 시비(侍婢)의 소생이다. 손수경 등이 그를 옹립해서 군사쿠테타를 획책하려 했지만 이미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이 참에 화근(禍根)을 철저히 잘라내야한다는, 많은 신하들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으나 짐으로서는 도저히 석기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 이안·정보에게 명하여 제주도의 수정사(水精寺)⁵¹⁾에 안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석기는 승전할 때 바다에 떨어져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짐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이미 송도와 지방에 그 사실을 포고(布告)하고 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왕의 서자 석기는 모반죄로 제주도에 유배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도망친 끝에 결국은 밀직부사(密直副使)⁵²⁾ 조인벽(趙仁璧)·최인철(崔仁哲) 등에게 피살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예부터 반체제파의 리더격이 유형되는 대상지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극의 최대원인은 왕건(王建)의 「훈요(訓要)」 10조에 적자·

51) 수정사는 제주시의 도근천(都近川)(옛날엔 水精川·朝貢川이라고도 했다)의 서안(西岸)에 있었다. 고려조에 있어서의 제주도민요, 이재현(李齋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소악부(小樂府)속에 한시절구(漢詩絕句)로 번역되어 있다. 「도근천퇴제수방 수정사리역창랑(都近川顔制水坊 水精寺裏亦滄浪)」이라고.

52) 종2품관.

적손(嫡子·嫡孫)에 의한 왕위 계승을 명기(明記)해 있는 것과 같이 적·서(嫡·庶)의 차별, 말하자면 첩의 자식은 서얼(庶孽)이라고 부르며 자자손손에게까지 그 대우에 차별이 가해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金鏞)

…삼년상(三年喪)을 강제한 죄에 따라…

김용(金鏞·?~1363)은 고려말기의 무인으로서 안성(安城) 출신이다. 그 사람됨을 가리켜 음험간사(陰險奸邪)한 자라고 했다.

몽고는 1271년 국호를 원(元)으로 바꿨다. 원은 고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혼인정책을 써서, 두 나라 사이에 혈연관계를 맺었다. 또 왕자는 독로화(禿魯花)⁵³⁾로 해서, 원의 수도(北京)로 가서 체류, 원제(元帝)의 부마(駙馬)⁵⁴⁾가 되어 고려의 왕위를 계승했다. 그것은 왕실뿐이 아니라 귀족의 자제 가운데서도, 원의 독로화로서 원의 수도에 입경(入京)하는 자가 있었고 또 고려조정에서는 왕비⁵⁵⁾·환관(宦官)⁵⁶⁾·벽신(嬖臣)⁵⁷⁾ 등이 권세를 부렸으므로 원실과 이에 추종하는 자만이 영화와 권세를 자랑할 수가 있었다. 이래서 공민왕이 원자(元子)⁵⁸⁾로서 원의 수도에 숙위(宿衛)하게 되자, 김용은 이에 쫓아 시종(侍從)⁵⁹⁾의 공로가 있다고 해서 대호군(大護軍)⁶⁰⁾에 승진되었다. 그래서 공민왕이 왕

53) 인질.

54) 사위.

55) 元室의 왕녀.

56) 궁중안에서 봉사하는 자.

57) 왕의 애첩.

58) 왕의 막내아들.

59) 왕의 곁에서 근무하는 일.

위에 오르자,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⁶¹⁾을 수여하고 원의 조정에 주상(奏上)하여 행성원외랑(行省員外郎)⁶²⁾에 서임(敍任)되었다.

원의 승상(丞相) 탈탈(脫脫)이 사신을 보내 왕에게 「소인(小人)을 쓰는 일이 없도록」 타일렀다. 그 때 찬성사⁶³⁾ 조일신(趙日新)⁶⁴⁾과 지신사(知申事)⁶⁵⁾ 최덕림(崔德林)이 그 사신에게 김용과 승지(承旨)⁶⁶⁾ 유숙(柳淑)·김득배(金得培) 등이 왕의 측근으로서 국정(國政)을 농단(壟斷)하고 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자는 그 말을 왕에게 전했다. 그래서 왕은 유숙·김득배 등을 해직했지만 김용 만은 바로 총행(寵幸)의 절정에 달해 있었으므로, 쉽게 그만 두게 할 수 없었다.

그 즈음 원의 감독관청인 행성(行省：征東行中書省理門所)의 많은 관리들이 지방의 주·군(州·郡) 주민에게 가렴주구(苛斂誅求)⁶⁷⁾를 마음대로 하여 국가의 재정을 크게 소모했을뿐 아니라 기강(紀綱)을 흐트러지게 하고 인민의 생활을 도탄(塗炭)의 괴로움에 빠뜨렸다. 더구나 선사(宣使：행성의 하급관리) 엄숙(嚴淑)이 영주·아양(永州·阿陽)지방에 가서 공해(公廩)의 전세(田稅)를 징수하고 또 종포(綜布) 600필을 모아 이것을 서울로 역수(驛輸)했다.

왕은 이것을 듣고 크게 진노(震怒), 즉시 김용을 불러들여 「행성 관리의 외지(外地：수도 이외의 지방)출장은 금지시킨지가 오래인데 어째서

60) 대장군의 개칭, 종3품의 무관직.

61) 국왕의 친위군, 정3품의 군관.

62) 종6품관.

63) 문하부의 정2품관.

64) ?~1352. 공민왕조의 반역자.

65) 密直司의 정3품관.

66) 종3품관. 代言이라고도 했다.

67) 「오대사(五代史)」에 「주구기민, 적화천만(誅求其民, 積貨千萬)」으로부터 유래한다.

법을 농(弄)해서 백성을 소요(騷擾)케 하느냐」고 질책함과 동시에 유숙을 순군의 옥에 가두었지만 얼마 없어 이를 석방했다. 김용은 시종의 공이 1등으로 기록되고 토지나 노비를 하사 받아 밀직사부사(密直司副使)⁶⁸⁾에 임명되고 윤충분의공신(輪忠奮義功臣)의 칭호가 수여되었다.

조일신이 반란을 일으켜 행궁(行宮)⁶⁹⁾을 침범했을 때 많은 숙위관(宿衛官)이 피살되었지만, 김용은 그 때 대전에 숙직하여 혼자 화를 면했고 또 방어태세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물의(物議)가 분분했다. 왕은 또 이것을 의심하여 그를 해남(海南)으로 장류(杖流)했다.

그런데 왕의 3년(1354), 원의 순제(順帝)는 한족(漢族)의 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 사신을 고려에 보내 명장과 원군(援軍)의 파견을 요구해 왔다. 왕은 할 수 없이 그를 유배지에서 불러들여 안성군(安城君)으로 봉하고 전지(戰地)로 파견했다.

이듬 해, 귀환하자, 김용은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⁷⁰⁾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김용은 정세운(鄭世雲)·홍의(洪義)·전 찬성사 김보(金普) 등과 정치상의 권력과 왕의 총애를 둘러싸 격렬한 싸움을 버렸다. 마침 그 때 김보가 모친상을 당하자,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남몰래 행성도사(行省都事)⁷¹⁾ 최개(崔介)를 꼬드겨 상서(上書)해서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3년 상(喪)을 행하도록 할 것을 간청해놓고, 김용 등이 이를 왕명이라고 속여, 그 글을 도평의사(都評議司)⁷²⁾에게 내려보내 그것을 실시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했다.

68) 정2품.

69) 임금의 별궁.

70) 知門下省事의 종2품관.

71) 종7품관.

72) 都兵馬使의 개정

이윽고 왕이 그 실정을 알게되어 김용은 왕을 기만한 참월행위(僭越行爲)에 대해 왕으로부터 엄히 신문 받았다. 그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으므로 제주도로 유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배되어서의 생활상황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는 얼마 없어 제주도로부터 소환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관에 되돌아와 첨의(僉議)·평의(評議)·순군만호(巡軍萬戶)등의 중책을 역임했다. 그가 제주도에 유배됐을 무렵, 3년거상제도(居喪制度)도 폐지되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그는 원에 체류하고 있는 최유(崔濡·1072~1140)와 결탁해서 공민왕을 제거하려고 변란을 일으켰다. 역시 원에 체류하고 있는 충숙왕(忠肅王·재위 1313~30)의 동생 덕흥군(德興君⁷³)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획책한 것이다. 최유와 내통한 김용은 임시행궁이 되어있는 흥왕사(興王寺)를 습격, 공민왕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왕이 탈출해버린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고 우정승(右政丞: 右相) 홍언박(洪彦博·1309~63)을 살해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결국 김용은 주살(誅殺)되어 그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다.

임군보(任君輔)

…부정 임관(不正任官)의 죄로 제주목자(牧子)로 보내졌다…

임군보(任君輔)는 풍주(豊州)사람. 공민왕 초기에 밀직지신사(密直知申事: 정3품관)에 임명되었다. 당시의 환관 김백안첩목아(金伯顔帖木兒)가

73) 이름은 塔思帖木兒.

왕의 명령이라고 속여 임군보를 내승제조관(內乘提調官)에 임명했던 일이 발각되었다. 그 죄로 김백안첩목아는 장형(杖刑)에, 임군보는 태안군(泰安郡)에 유배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임군보가 유형의 길에 오르기 전에, 무슨 때문인지 유배지가 바뀌어 이번엔 제주도에 유배되어 목자(牧子)⁷⁴⁾의 노역(勞役)에 부쳐졌던 것이다. 그것은 공민왕 4년(1355) 10월의 일이었다. 그 새에 공민왕은 왕권의 회복정책을 단행했다.

즉 공민왕은 즉위한 후 즉시 무인정권의 거점(據點)이었던 정방(政房)⁷⁵⁾에 속해 있던 권신의 실권을 말살하고, 그들의 발호(跋扈)를 억압해서 배제하려고 도모했다. 그래서 고려에 있어서의 원의 세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 본래의 체제로 복귀하도록 노력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원에 의지하여 권세를 자랑하던 기철(奇徹·?~1356) 등의 친원분자(親元分子)를 일거에 주살할 계획을 세워, 일부러 궁중에서 곡연(曲宴)⁷⁶⁾을 열어 그들 포만(暴慢)한 악당들을 초대했다. 우선 어깨에 힘을 주면서 들어서는 기철과 대사성(大司成)⁷⁷⁾ 권겸(權謙)을 때려 죽이고 군대를 보내 노정(盧禎·慶陽府院大君)을 살해한 후, 수도에 계엄령을 포고하고 그 잔당을 모조리 포살(捕殺)했다.

이 때, 임군보는 이미 죄에서 풀렸었는지, 제주도의 배소로부터 서울로 돌아와있었던 것이다. 기철의 일당이 추포(追捕)되자 임군보는 머리를 짧게 깎아 삼각산⁷⁸⁾에 숨어있다가 포박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

74) 제주도의 국영목장에서 우마의 사육에 종사하는 천역(賤役)을 말한다.

75) 관료의 전형과 임면을 관장한다.

76) 왕명에 의해 궁중에서 베풀어지는 연회.

77) 지금의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됨.

78) 서울의 북쪽에 있는 산.

보는 가운데서 장형에 처해졌었다. 그것으로 보면 임군보는 제주도의 어딘가에서 거의 1년여의 유적(流謫: 流人)생활을 보낸 것으로 된다.

공민왕은 14년(1365)에 흐트러진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둔(辛 鈍·?~1371)이라고 개명한 무명의 중 편조(遍照)를 등용하여 귀족의 세 력을 내쫓고, 귀족에게 빼앗긴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준다는지 노비 를 해방시키는 등, 주목할만한 혁신정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왕은 그를 신뢰한 나머지 정치를 모두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신둔은 절대적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 덕으로 임군보는 다시 밀직부 사(종2품관)에 등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둔이 정권을 독점하여 마음대 로 전횡(專橫)을 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내면서 불교행사에 몰두하 고 있는 것을 증오하여, 오히려 그를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말했다. 「나라 안에 아무리 인재가 귀하다해도 어찌서 천한 중으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여 천하의 웃음을 사느 냐」고. 하지만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군보는 깨끗하게 관을 그만 두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대대로 의관(衣 冠)을 갖고 다행히 상은(上恩)을 입으며 주제님게도 정부에 참여해 있 으면서도, 무식한 중으로 하여금 그 간사함을 멋대로 자행케 했으니 후세(後世)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고 개탄했다.

뒤에 간관(諫官)⁷⁹⁾ 정추(鄭樞)와 정언(正言)⁸⁰⁾ 이존오(李存吾) 등이 신 둔의 비(非)를 「요물이 나라를 못쓰게 하고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격렬히 비난한 때문에 정계로부터 쫓겨났지만, 그 때에도 임군보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 그 때문에 신둔은 더욱더 그

79) 司諫院의 관원을 총칭한다.

80) 사간원의 정6품관.

를 미워해서 끝내 임군보를 재판도 없이 여흥(麗興)에 유배시켰다고 「고려사」에 보인다.

또 같은 책의 열전(列傳), 정세운조(鄭世雲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정세운은 광주장택현(光州長澤縣) 사람. 공민왕을 좇아 원에 들어가 숙위(宿衛)⁸¹⁾하며 관직을 거듭해서 대호군에 이르렀다.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 공이 1등으로 기록되고 김용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받았다.

양광도(揚光道)⁸²⁾ 안렴사(按廉使)⁸³⁾ 김남득(金南得)이 홀적중랑장(忽赤中郎將) 정곡(鄭谷)을 때려눕혀 모욕을 가했으므로 정곡의 친구인 권석화(權石和) 등이 왕에게 그를 고소했다. 그 때 정세운과 김용은 김남득과 친한 사이였으므로 왕에게 꾀망(詭妄)해서 권석화 등을 매질해서 해도(海島)로 유배했다. 또 정세운은 김용과 손을 잡고, 밀직부사 임군보가 왕의 총애를 얻는 것을 질투하여, 있지도 않는 죄를 씌워서, 왕명이라고 속여 임군보를 제주도로 유배했다고도 전해진다.

81) 숙직하고 보위함.

82) 경기·충청도.

83) 지방장관.

공양왕조(恭讓王朝 · 재위 1389~92)

한천(韓蕡)

...고려의 재흥(再興)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이씨조선을 세운 태조(太祖)⁸⁴⁾는 단순히 탁월한 군인이었뿐 아니라 내외 정국의 동향을 예민하게 통찰(洞察)할 줄 아는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다.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는 원제국(元帝國)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견(豫見)과 왜구를 격퇴했던 경험으로 위화도(威化島)⁸⁵⁾ 회군(回軍)⁸⁶⁾을 단행하여 친원파(親元派)의 최영(崔瑩)⁸⁷⁾과 우왕(禔王 · 재위 1374~88)을 추방하여 우왕의 아들 창(昌 · 재위 1388~89)를 옹립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 때 조준(趙浚)⁸⁸⁾에 의한 구체적인 전제개혁안(田制改革案)이 제시되자, 구가세족(舊家世族)이나 그 추종자는 명렬히 그것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성계는 그 정책반대자들을 정계로부터 추방하여 전제개혁의 기초작업을 강행했다. 그뿐 아니라 이성계 일파는 우왕의 창(昌)이 왕씨가 아닌 신돈의 자식이란 것을 주장하여 「폐가입진론(廢假立眞論)을 부르짖으며 창왕을 폐하고 신종(神宗 · 재위 1197~1204)의 7세손이 되는

84) 李成桂. 재위 1392~98.

85) 압록강 하류의 中洲中之島라고도 했다.

86) 1388년 5월, 군을 되돌린다.

87) 1316~88, 팔도도통사.

88) 1346~1405. 호는 松堂.

왕요 공양왕(王瑤 恭讓王)을 옹립해서, 자기세력에 의한 왕권 교대를 감행했다.

이성계 일파의 왕위폐립(王位廢立)에 대해 일부의 유신(儒臣)은 반발했지만 거꾸로 이는 이성계가 그 반대파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이성계 일파는 구가명신(舊家名臣)이나 전제개혁 반대자들을 관계로부터 대거 추방한 후 즉시 공사전적(公私田籍)을 소각했다. 그것은 공양왕 2년(1390)의 일이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구가세족의 세력기반을 박탈한 결정적 사건으로, 왕위폐립 뒤에 있어서의 정치세력의 완전한 교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성계는 그 이듬해, 새로운 군사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즉시 전제개혁을 단행, 과전법(科田法)⁸⁹⁾을 실시했다. 그래서 반대세력으로 최후까지 남아있던 정몽주(鄭夢周)·우성범(禹成範)·한천(韓臧) 일파를 완전히 배제하고 처음부터 실권이 전혀 없던 공양왕을 원주(原州)⁹⁰⁾로 추방, 조준·정도전(鄭道傳)·남은(南閔·1354~98) 등의 모의에 의해 이성계는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이성계는 이 때까지에 고려의 구 귀족세력을 근절하고 또 유신(儒臣)속의 일부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살해·유배·파직 등의 수단으로 봉쇄(封鎖)를 끝내고 있었다. 이 때 고려의 구 세력이 산간에 도피해서 신정권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고려의 재흥(再興)을 노렸다는 이유로 제주도(濟州島)에 유배된 자가 많이 있다.

우선 한천(韓臧)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아호를 노재(怒齋)라고 하며 고향은 청주(淸州)이다. 그는 공민왕 20년(1371)에 경상도 도순문사

89) 관리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여하는 토지.

90) 강원도.

(都巡問使)⁹¹⁾에 임명되어 공양왕 3년(1391)에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⁹²⁾로 근무했으며 동왕 말년에는 예문관(藝文館)⁹³⁾ 대제학(大提學)⁹⁴⁾이 되어있다.

대제학인 한천은 고려가 이성계에 의해 멸망하자, 그에 반감을 품고 고려를 재흥시킬려고 그의 사촌동생 한리(韓理)⁹⁵⁾와 함께 단양군 우성범(丹陽君 禹成範)과 진원군 강준계(晉源君 姜準季) 등과 밀의(密議), 정몽주⁹⁶⁾를 중심으로 하는 대관료들과 상통(相通)하여 고려조의 중흥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여의롭잖게 정몽주는 이방원(李芳遠)의 문객(門客)인 조영규(趙英珪)에게 피살되고 이어 회빈문(會賓門) 밖에서 우성범과 강준계 등도 참살되고 말았다. 명분론(名分論)의 관점에서 후의 유자(儒者)들은 그들의 충절을 칭송했지만 당시로서는 시대착오라고 무시될 뿐이었다. 이 때에 찬성사⁹⁷⁾ 성석린(成石隣)·정당문학(政堂文學)⁹⁸⁾ 이원굉(李元紘)·청성군(靑成君) 강시(姜蓍)·대제학 한천·밀직제학(密直提學)⁹⁹⁾ 성석용(成石溶) 등의 고려 충신은 섬으로 유배되었다. <고려사>

그 때, 이성계의 등극에 끝내 불복한 한천은 공양왕 4년(1392) 7월, 제주도정의현에 추방됐던 것이다. 이성계가 구 세력을 모조리 처분하여 불복 중신 70여 명을 숙청할 때에도 한천을 극형에 처하지 않은 것은, 한천의 종질(從姪)¹⁰⁰⁾ 한상경(韓尙敬)¹⁰¹⁾이 신정권에 협력한 개국

91) 주·부의 장관.

92) 지금의 시장급.

93) 관리의 辭令을 관장하는 관아.

94) 정2품의 관직.

95) 忠簡公.

96) 1337~92, 호는 圃隱.

97) 문하부의 정2품관.

98) 고려조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 속했던 종2품관으로, 조선 초기에 의정부문학(議政府文學)으로 개칭되었다.

99) 정3품관.

훈신(開國勳臣)으로서의 힘이 큰데 이에 더하여 태조비인 신의(神懿)왕후가 한씨였기 때문에 다소 봐줬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한천은 사면이 되지 않았는지 또는 살기 좋은 섬으로 여겼는지, 아무튼 그는 섬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내어 표선면가시리에 정착, 섬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얻어 30년이나 40년을 장수하면서 사장(射場: 射的場)이나 서당을 열어 지방 자체의 학문 향상과 신심 단련에 노력하는 등 도민의 문화 발전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제주도의 한씨가 이 분을 입도시조로 숭상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지금도 가시리에 있는 그의 유서 깊은 유허(遺墟)에는 서당 유지(遺址)가 있어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¹⁰²⁾이 그의 유허비명(遺墟碑銘)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100) 사촌의 아들.

101) 太宗 때 영의정.

102) 1833~1906. 제주도 적객.

제3장 조선조시대(1392~1910)에 유배된 사람들

유배의 역사적 배경

조선왕조의 창건사업은 처음부터 이성계를 둘러싼 신흥 유신(儒臣)들의 영지(英知)와 뛰어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주자학(朱子學 : 유교)의 정치이념을 신봉했으므로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¹⁾을 강행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군(人君)으로서 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두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과전법의 실시를 본 것도, 또 광대한 공신전(功臣田)의 급부를 받아 그 세습권(世襲權)을 인정받는 것도 모두 그들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보장(相互保障)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회적 가치를 주자학적으로 규범화(規範化)해서 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

1)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뜻.

다. 그들 사이에서는 「예(禮)」가 형식과 명분을 갖춘 최선의 사회적 질서이며 그것도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인 가치(질서의 유지)는 어디까지나 「경세치국(經世治國)」²⁾에 있었다. 모든 정책의 입안(立案)과 시행은 그들의 영지와 실천에 걸려있었으므로, 정치의 실권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 왕권의 신장도 그들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정변(政變)에 의해 일부의 권신은 다시 배제되어 갔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어떤 자는 이 섬에 유배되고, 어떤 자는 신정권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아, 도원경(桃源境)과 같이 이상사회를 유지했다고 하는 두문동(杜門洞) 등 절신(節臣)들이 이 섬에 망명해 온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죄를 저질러 도망해 온 자나 또 승려에 대한 군역(軍役)이 없고 사원(寺院)에서 우대했으므로 승도(僧徒)들도 대량으로 입도해 왔다. 그 때문에 세종(世宗·재위 1418~50) 시대에는 이 섬의 인구가 6만3천여명으로 불어나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바로 유배인 후예의 증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왕조 개창(開創) 당초와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정치적 이유로 이 섬에 건너온 인물 가운데 저명하고 지금도 자손이 번창하고 있는 씨족 으로서는 허징(許懲)의 동생, 양천허씨 손(陽川許氏 遜), 전라도 감사(지방 장관)였던 곡산강씨 영(谷山康氏 永), 이 사람은 태종 2년(1402)에 신덕(神德)왕후의 지친(至親)이라고 해서 이 섬에 폄류(貶流)되고 있다. 광산 김씨 약시(若時), 앞에서 말한 청주 한씨 천, 개국공신 김인찬(金仁贊)의 아들, 경주 김씨 검룡(儉龍)·군위(해주) 오씨(軍威·海州吳氏)·김해 김씨

2)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

(金海 金氏)·연주 현씨(延州 玄氏)·진주 강씨(晉州姜氏)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당초는 형기를 마친 절도범을 이 섬에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섬의 소 말을 도살(盜殺)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성종(成宗·재위 1477~94) 시대에 절도범의 섬 보내기를 중단, 그 뒤는 오로지 정치범의 유형지로서 이용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유형의 역사적 배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되풀이 되지만 태조 이성계가 퇴폐한 고려조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조선 왕국을 창건한 것이지만 그 나라 만들기의 기초를 굳게한 것은 성종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도 있고 해서 일단 신생왕국의 면목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미 세종조(世宗朝)에 북방 영토를 확립하여 훈민정음을 창작하고 금속활자의 주조·측우(測雨)·측후(測候)의 천문학, 역학(曆學)의 발명, 전적(典籍)의 간행, 건축·회화·공예의 각 방면에 현란한 문화가 출현해서 왕조 초기의 문화적 황금시대를 만들었다.

그 반면에 정치상의 움직임을 보면, 표면상의 번영과는 전혀 틀리게 오히려 암흑면의 암담한 양상을 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국초(國初) 유교입국(儒敎立國)의 정책을 강인하게 추진한 결과, 중종·선조조(中宗·宣祖朝)에는 학설의 대립·학문의 파벌을 낳아 그것이 나아가 정권의 다툼으로까지 발전해서,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당쟁(黨爭)」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갔지만 특히 연산군조(燕山君朝)에 이르러는 항간에 유타퇴폐(遊墮頹廢)의 풍조가 싹 터, 국민의 도덕적 관념이 저하해서 왕조의 번영에 어느덧 쇠퇴의 그늘이 드리워져갔다.

이 시기부터 궁정과 지배계급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격화하고 당파와 파벌이 세분화되어 사화·당쟁의 당옥(黨獄)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교 그 자체가 차츰 공허화(空虛化)해져서 문화의 쇠퇴와 피해를 유발하게 되었다. 더구나 조선(선조·광해군·인조) 중기의 50년은 외적의 침공이 격심하여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련이 횡단한 시대였다. 임진·정유왜란의 전화(戰禍)는, 전국토가 전장화(戰場化)한 때문에 신라 이래의 문화·예술을 파괴해버려 아름다운 국토가 폐허로 화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왕조는 칩거(蟄居)·동면(冬眠)을 일삼고 지배계급의 당쟁만이 오로지 심각해져 파벌적 혈전을 되풀이했다. 질투·음모·무고(誣告)·사옥(邪獄)·고략(拷掠)·처참(處斬)·사약(賜藥)·유배(流配)·파면(罷免)·도배(徒配)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역사적 사실이 가는 곳마다 보이게 된다.

그 원인을 이견창(李建昌)³⁾는 「당의통략(黨議通略)」에 다음의 여덟가지로 들고 있다. 즉 도학(道學)의 태중(太重)·명義(名義)의 태엄(太嚴)·문사(文詞)의 태번(太繁)·형옥(刑獄)의 태밀(太密)·대각(臺閣)의 태준(太峻)·관직의 태청(太淸)·별열(閥閥)의 태성(太盛)·승평(昇平)의 태구(太久)가 당쟁의 8대 원인이라고 한다.

이어 정조(正祖) 8년(1784)에는 천주교(가톨릭)가 조선으로 들어와, 그 교리(敎理)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전국에 전파되었다. 천주교의 창궐은 드디어 정치적으로 문제화되어 교도가 사옥(邪獄)의 죄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아, 사형이나 유형에 처해졌다. 같은 시기에 열강제국의 함선이 자주 조선의 연안을 위협하면서 개항(開港)을 강요했다. 왕조는 격동하는 세계적 대세 앞에 언제까지나 쇄국적 정책을 고집할 수가 없어 고종 13년(1876) 일본과의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개국

3) 1852~98, 호는 寧齋.

의 길이 열려, 역사의 일대전환을 획책하게 되었다.

조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도(勢道 : 세력있는 문벌) 정치의 대두이다. 18세기 중엽, 영조(재위 1724~76)는 변화하는 사회 정세 속에서 격렬한 당쟁이 전체의 지배체제를 허물어뜨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탕평(蕩平)」 정책을 실시한 이후, 대신해서 세도가 새로운 형태로 싹트기 시작, 외척(外戚)⁴⁾ · 귀족계급의 전횡이 멋대로 퍼져 그 정치적 부패와 타락이 말기적 증상으로 발전했다.

홍경래(洪景來)의 반란⁵⁾ · 동학당의 창건(1860) · 삼남(三南)⁶⁾ 지방의 민란, 이들 각지에서의 민중의 봉기는, 정치의 문란과 경제의 파폐, 사회적 불안이 요인이 되어 발생했다.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 부산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고종 원년(1863) 그 아버지인 이하응(李昰應 · 1820~98)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⁷⁾의 집권에 따라 지금까지의 적폐(積弊)를 개혁하려는 의욕이 발상됐지만 그 기운(機運)은 당시의 내외 여러 정세로부터 보면, 문제가 안될 정도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원군의 집정기는 쇄국보다 개국으로 발전하는 국책의 전환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고종 13년(1876) 2월 한·일 강화조약(江華條約)에 근거하여 국내의 각 항만이 개방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본은 이미 구미(歐美) 문화를 자기 것으로 소화·흡수해서 근대국가의 발전에 여념이 없는 과정이었고 조선은 청국과 일본의 문물을 통하여 겨우 근대국가를 모색하는 계기를 파악, 또 그 의욕이 불타기 시작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 · 갑

4) 왕비의 일족, 이것을 세도라고 한다.

5) 1811~12, 평안도 농민봉기.

6) 충청 · 전라 · 경상도.

7) 흔히 대원군이라고 약칭했다.

신정변(甲申政變·1884)은 바로 그 나타남이었다. 이 왕조는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는 일·청 양국의 각축(角逐)을 겪었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진보세력의 대립이 과열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에 이끌렸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쟁은 결렬하여 실각(失脚)과 보복이 되풀이 되었고 유형은 조선의 종언(終焉)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태조조(太祖朝 · 1392~1398)

김만희(金萬希)

...왕명을 배반한 죄에 의해...

김만희(金萬希)는 다른 이름을 경흥(景興)이라고도 했다. 자(字)를 여운(汝雲)이라 하고 김해(金海)의 사람이다. 고려 충정왕조(忠定王朝)에 등제하여 진사(進士)⁸⁾에 합격하고 헌납(獻納)⁹⁾으로 근무했다. 공민왕조에 대관(代官 : 承旨)으로서 자제위(子弟衛)¹⁰⁾를 거쳐 삼중대광(三重大匡)¹¹⁾ 도첨의좌정승(都僉議左政丞 : 首相級)까지 뛰어 올랐지만 시사(時事)가 곤란함을 보고 정계로부터 은퇴하여 시골로 돌아가 오로지 후배 교육에 전념했다.

이태조는 1392년 7월 17일 개경(開京 : 개성)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한 후, 전조(前朝)의 유신(遺臣)을 달래어 신정권에 될 수 있는대로 영입하려고 노력했으나 자성강직(資性剛直)한 김만희는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절의(節義)를 굳게 지켜 신왕조에 봉사할 것을 거부하여 끝내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기성체제에 배반하여 왕명에 따르지 않는다고 끝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처음 도착한 곳이 애월포(涯月浦)로 주거를 괵지악(郭支岳)에 정했다. 유배인에게 있어 제주도는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형지인가?

8) 고등문관시험 즉 과거(科擧)의 예비시험 합격자.

9) 사간원의 정5품관.

10) 공민왕 21년(1372) 10월에 설치했다. 향대부(鄉大夫)의 자제로서 나이가 젊고 건강 한 미청년을 골라 왕의 좌우에 배치하여 지키도록 했다.

11) 종1품의 품계.

그는 그곳에 정착하여 자손도 크게 번성했다고 한다.

도회시(韜晦時)¹²⁾에 노래를 만들어 읊었다.

唐虞¹³⁾世考兮 嗟余焉歸
願從夷齊¹⁴⁾兮 薄言採薇

당우의 시대인데
아,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원컨대 백이숙제를 따라
고사리나 캐러가야지

이어 섬의 중앙에 솟아있는 한라산을 조망하면서 시를 지어 읊었다.

擎山何以古西山 海變桑田人已矣
孤竹清風遠莫攀 出門欲往小瀛寰

한라산이 어찌 서산(백이 숙제가 숨어살던 산)과 같으리오
바다가 뽕밭으로 변했으니 그만둘 수밖에
고죽(백이숙제의 고향)의 맑은 바람은 아득하여 따를 수 없으니
문밖에 나가 소연주산(한라산)에나 오를 수밖에

그래서 김만희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불렀던 이름을, 유배인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좋잖다고 해서 「경흥(景興)」이라고 고치고 호도 또한 입도한 지명에 따라 「월포(月浦)」라고 했다고 한다. 제주도의 김해김씨 좌정승공파(左政丞公派)는 이 분을 입도조(入島祖)로 여긴다.

12) 낙향 때.

13) 요(堯)와 순(舜)의 시대, 중국역사상의 이상적 태평시대를 말한다.

14) 주(周)의 현인(賢人). 백이·숙제(伯夷·叔齊)의 두 사람

이미(李美)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죄에 의해...

이미(李美)의 자는 중인(仲人), 호를 서제(西齊)라고 한다. 태어난 곳은 경주(慶州)이다. 진사에 합격하여 교리(校理)¹⁵⁾로 근무했다. 그는 정권이 고려로부터 조선로 옮기는 시기에 퇴관하여 독서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태종조(재위 1400~18)에 교리로 서임되었으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제주 향리(鄕吏: 戶長)로 폄류되었다. 이제 그의 도회(韜晦)때의 시 한 수가 전해지고 있다.

海島雖云陋 莫非率土滨
此中胆舊日 肯肯二心人

바다섬이 비록 누추하다 하지만
어찌 우리 임금 땅이 아니리오
이곳에서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두 마음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그는 귀양살이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門弟)를 육성·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큰형 이신(李伸)은 고도에서 외로운 유적생활을 하는 동생을 생각한 나머지 정부에 간청하여 제주도 도안무사(都按撫使)로 부임해 왔다. 그래서 동생에게 고향에 돌아가도록 설득했지만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15) 홍문관의 정5품관.

여기에 뼈를 묻힐 생각입니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형 이신은 동생을 강제 출륙시키기 위해 화북포(禾北浦)까지 데려갔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어 높은 풍랑 때문에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출항하지 못해 끝내 단념하고 말았다고 한다.

태종조(太宗朝 · 재위 1400~98)

강영(康永)

...왕자의 난 때 신덕(神德)왕후의 친척이라고 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강영(康永·瀛岩)은 제주도에 흐터져 사는 신천강씨(信川康氏)의 입도조라고 일컬어 진다. 그렇다면 그가 제주도에 유배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 보자.

그는 문관시험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해서 여러 가지 관직을 역임한 다음, 전라감사가 된다. 그런데 태조 7년(1398) 8월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신덕왕후¹⁶⁾의 친척이란 데서 무턱대고 사건에 연좌(緣座)하게 되는 것이다. 즉 태조(父王)의 창업에 공로가 있으며 비범한 재능을 지니고 있던 방원(芳遠)¹⁷⁾은 태조가 즉위 직후에 배다른 동생인 방석(芳碩)¹⁸⁾을 세자¹⁹⁾로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러다가 태조 7년에 이르러 방원의 일파에서 세자의 교육·지도를 맡고있던 정도전(鄭道傳)²⁰⁾·남은(南閔·1354~98) 등이 방원 형제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습격 살해하고 이복형제인 방석·방번(芳蕃)²¹⁾까지도 죽여버렸다. 이태조의 창업 도상에 있어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

16) 太祖의 繼妃.

17) 1367~1422. 태조의 다섯째 아들, 나중의 太宗.

18) 1382~98 · 태조의 여덟 번째 아들, 宣安大君.

19) 왕자 중의 왕위계승자.

20) 호는 三峰.

21) 1381~98 ·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 撫安大君.

서 일어난 왕자들 사이의 골육상쟁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새 왕조의 창건에 가장 공로가 컸던 정도전·남은이 죽은 다음, 방원은 음모의 혐의를 받게될 것을 고려하여 사퇴했으므로 왕위는 결국 방과(芳果)²²⁾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1398년 9월에 즉위한 정종(定宗·1398~1400)이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즉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의 몸에, 방서(芳西)·방과(芳果)·방의(芳毅)·방간(芳幹)·방원(芳遠)·방연(芳衍)의 6남이 있었고 신덕왕후 강씨의 몸에는 방변·방석의 2남이 있었다.

거기서 강씨 소생의 형제가 방원의 일파에게 참살 당한다는 비극이 연출되고있는 만큼, 강씨의 근족이 무사할 리가 없었다. 비록 신덕계비(繼妃)가 난의 2년 전에 이미 타계했다고는 하나 한 사람의 죄로 삼족²³⁾이 주살 당하는, 험악한 세상이었으므로 사촌 형이 되는 강영은 결국 사건에 연좌되어 관직을 박탈당한 다음, 태종 2년(1402)에 제주도로 멀리 유배되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그는 위해를 피하기 위해 제주도에 도망쳐 온 망명객이라고도 전해지지만, 어간의 사정은 자상하지가 않다. 어쨌든 간에 그가 최초로 제주도에 도착한 곳이 조천읍 함덕포라고 한다. 가족을 고향에 남기고 온 것이 무엇보다 슬픈 일이었지만, 지금이 되어서는 어쩔 수도 없어 섬에 정착할 결심을 하여 현지 여자를 아내로 얻어 세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곤란을 극복하면서 생활기반을 개척, 향리에 있는 자제들을 교육해서 학문의 전통을 잇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미친, 그의 반골적(反骨的) 정신과 학문적 영향은 적잖다고 지금도 말해지고 있다. <태조실록>

22) 1357~1419·태조의 둘째아들.

23) 부·모·처의 일족.

예종조(睿宗朝 · 재위 1468~69)

사화(史禍)에 대해서

사적(史籍)의 찬술출판(撰述出版)이 왕성했던 것은, 이것 또한 조선문화의 일대특색이다. 유교적인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학문이란 바로 유학(儒學)을 의미하며, 정치원리로서의 유학과 대립하는 독립된 과학으로서의 학문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중에도 역사는 정치의 귀감(龜鑑: 거울)이 되는 것으로서 경학(經學)과 함께 특히 존중되었다. 국가가 역사의 편찬과 그 보전에 극력 노력을 경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왕조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초기부터 역대의 실록(實錄)이 편찬되었다. 춘추관(春秋館)이라는 관청에 사관(史官)을 배치해서 실록을 편찬할 때의 자료가 되는, 평소의 정사(政事)를 기록·수집시켰다. 그래서 왕이 사망한 다음에 별도로 편찬관을 두어 그 치적(治績)을 수록시켜 편찬에 임하게 했다. 그것은 후대의 왕이 정치를 할 때 귀감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조선의 유교정치에 있어서는 공자의 춘추²⁴⁾가 갖는 정치적 의미-역사는 실제적으로 정치적 비판의 기초가 되는 것, 바꿔 말하면 사필(史筆)은 문치(文治)주의의 과사현정(破邪顯正)의 이검(利劍)에 다름 아니었다. 인군(人君)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늘이며 이(理)에 합치되는 사필이다. 말하자면 「만세(萬世)의 홍규(弘規)」이다.

사(史)는 군주의 언행정사(言行政事)를 직필(直筆)하여, 제왕이라 해도

24) 역사서로서 五經의 하나.

이 사관(역사편찬관)의 특권을 인정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기위(忌諱)해서 직언(直言)을 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초(史草)」²⁵⁾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엄한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함이며, 역사 기술의 엄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태조가 사초를 보려고 하여 정종(1398~1400)은 한 때 사관을 멀리 하고, 태종(1400~18)도 또한 사관의 근시(近侍)를 폐했지만, 모두가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한채 끝나고 있다.

민수(閔粹)

…사화(史禍·역사서에 쓴 것에 의한 筆禍)를 입고…

그러면 「민수(閔粹)의 사옥(史獄)」에 대해 한 마디 해보자.

민수는 여흥(驪興) 사람. 세조(1455~68) 원년, 소과(小科)²⁶⁾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동왕 4년(1459)에 검열(檢閱)²⁷⁾이 된다. 예종 원년(1469) 4월 한명회(韓明澮·1415~87), 신숙주(申叔舟·1417~75) 등이 춘추관(史館)에서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세조 즉위 후 춘추의 직을 지닌 자로 하여금 사초를 들여놓도록 했다. 이 때 봉상첨정(奉常僉正)²⁸⁾인 민수는 이것을 들여놓고, 사초(史草)에 모두 본관(本官)의 성명을 썼을 때, 대신들이 그 직서(直書)를 보아 어떠한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남몰래 봉교(奉敎)²⁹⁾ 이인석(李仁錫)·첨정 최명손

25) 실록의 자료.

26) 보통문관시험.

27) 예문관의 정9품관.

28) 봉상사의 정4품관.

29) 예문관의 정7품관.

(僉正 崔命孫)에게 그 사초를 일단 돌려달라고 부탁해 봤지만 둘이 그것을 사정 없이 거절함으로, 이번엔 기사관(記事官)³⁰⁾ 강치성(康致誠)에게 부탁한 바, 그 고본(稿本)을 감춰서 돌려 주었다.

민수는 기위(忌諱)에 저촉될만한 부분을 고쳐 썼고 정언(正言)³¹⁾ 원숙강(元叔康)도 또한 많이 수정해줬지만 그것을 정사(淨寫)할 여가도 없어 그대로 급히 그 초고를 원 장소에 들여넣어 두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검열 양수사(楊守泗)와 최철관(崔哲寬)의 두사람이 그 수정된 것을 보고, 참의 이영근(參議·李永根)³²⁾에게 고하자, 영근은 또 이것을 당상(堂上)³³⁾에게 전했다. 그러자 당상은 깜짝 놀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즉시 이 일을 왕에게 고해 바쳤다.

그 때 정언 원숙강이 상계(上啓)하여 가로되 「사초에 성명을 쓰는 것은 고례(古例)에도 없었다. 아마도 직필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 성명을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왕은 윤허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제학(副提學)³⁴⁾ 김계창(金季昌)이 원숙강이 사필 도개(史筆 塗改)가 많다고 고했으므로 드디어 셋은 옥에 갇혀지고 일이 중대한만큼 친국(親鞫)³⁵⁾당했다.

왕의 심문에 대답했다. 「신이 쓴 것은 모두 대신에 관한 일들 뿐으

30) 춘추관의 정7품관.

31) 司諫院의 정6품관.

32) 육조(六曹)에 소속하는 정3품관.

33) 홍문관에 속하는 정3품관, 당상관을 말한다. 말하자면 장관 또는 국장급 간부.

34) 정3품관, 지금의 대학 학부장급.

35) 왕이 직접 죄인을 취조하는 일. 친국은 무거운 정치범을 취조할 때 행해진다. 그 때에는 시임대신(時任大臣)·원임대신(原任大臣)·의금부당상관(義禁府堂上官)·사헌부·사관원의 관원, 좌·우포도청의 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신 속에서 한 사람의 위관(委官 : 재관관)을 선정해서 신문한다. 친국의 장소는 경희궁의 금상문(金商門), 창덕궁의 숙창문(肅章門), 창경궁 내의 사복사(司僕寺) 등이었지만 특별히 지시가 있으면 의금부에서도 행해졌다.

로, 이들은 모두 현재 실록청상(實錄廳上)에 있어 언젠가 중상(中傷) 당하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고쳐 썼습니다」고 솔직히 범행을 인정한 뒤, 왕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신은 독자입니다. 바라건대 목숨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고 달달 떨리는 두 손을 합쳐 조명(助命)을 애원했다. 왕은 측은히 말했다. 「솔직하군, 짐이 동궁(東宮)의 서연(書筵)³⁶⁾에 있을 무렵, 너의 사람됨을 알고 있노라」고. 특히 명하여 사형을 면하고 제주도로 유배하여 관노(官奴)로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치성과 원숙강은 그 때 처형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민수가 제주도에서 언제 석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후 관에 복직하여 봉정겸예문관응교(奉正兼藝文館應敎)³⁷⁾에 이르렀다고 되어있다.

이 민수 사옥을 계기로 해서 사초에 기인(起因)하는 사화(史禍)는 이어지는데 희대의 폭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산군(燕山君 · 1494~1506) 등은 만세의 홍규라고도 할 사필(史筆)의 규정을 어겼다. 사소한 사원(私怨) 때문에 중대한 불문율을 범한 것이다. 연산군은 어린 때에 생모 윤씨가 측실(側室)들과의 세력 싸움에서 패하여 사사(賜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왕으로서의 이성(理性)을 깨끗히 잊고 왕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평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간언(諫言)³⁸⁾ · 직언을 하면서 왕의 행동을 한층 견제하려고 하는 사림파(士林派)³⁹⁾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 즈음,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신구귀족(新舊貴族)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즉 고려 말의 길재(吉再)⁴⁰⁾의 흐름과 맞춰서 새로이 조정에

36) 왕세자 교육을 위한 講書.

37) 정4품관.

38) 왕에 대해서 충고하는 일.

39) 유학자.

출입하여 관직에 붙게된 사림파의 대표격인 김종직(金宗直)⁴¹⁾와, 일찍이 조정에 세력을 갖는 관학과(官學派)로서 대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훈구파(勳舊派)의 유자광(柳子光·?~1512)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유자광은 학문이 없는 위에 거들먹거리, 남을 모함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종직은 마음 속으로부터 그를 비하(卑下)했다.

어느 날, 유자광이 함양(咸陽)으로 놀러갔을 때 남긴 시의 현판(懸板)을 김종직이 함양군수에 부임하자 떼어버렸다. 자광은 그것을 듣고 오로지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얼마없어 기회는 도래했다. 연산군 4년(1498) 성종실록의 편집이 결정되어 훈구파의 이극돈(李克墩)⁴²⁾이 당상(堂上)⁴³⁾이 되었는데 이 때 그는 김종직의 문하에 있는 김일손(金翺孫)⁴⁴⁾의 사초 속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유(比喩)로 비난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이 많고 더구나 고(故)김종직의 의제(義帝)를 조문하는 글이 삽입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이상하다고 즉시 그 뜻을 유자광에게 전했다. 그러자 유자광은 이를 문제 삼아, 이것은 암암리에 세조를 비방하는 것이라면서 선성부원군 노사신(宣城府院君 盧思愼)⁴⁵⁾·파평부원군 윤필상(坡平府院君 尹弼商·1427~1504) 등과 더불어 상계해서 「종직이 세조왕을 혈뜬은 죄는 마땅히 대역무도(大逆無道)로서 다스려야 하고 그의 문집은 모조리 태워없애 세상에 유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의(猜疑)⁴⁶⁾의 늪에서 허덕이는 연산군은 본디가 학문을

40) 1353~1419, 호는 治隱.

41) 1431~92, 호는 佔畢齋.

42) 1435~1503, 戊午史禍의 원흉.

43) 장관 또는 국장급 간부.

44) 1464~98, 호는 濯纓.

45) 1427~98, 호 葆眞齋.

좋아하지 않고 유학자들을 크게 싫어하여 항상 「나로 하여금 자유를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이들 학사배(學士輩)들이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계가 크게 뜻에 맞아, 즉시 유자광 등에게 명하여 김일손 등 사림과⁴⁷⁾를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래서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 경우(權景祐)·이목(李穆)·허반(許盤) 등을 「간악한 도당과 짜서 선왕을 치욕(恥辱)했다」면서 사형에 처하고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⁴⁸⁾하고 문집도 불태워졌다. 더구나 종직의 문인(門人)은 말할 것 없고, 그의 친척 친지 등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는 자는 이에 동조·묵인했다는 죄명 아래, 모조리 사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지고 면직(免職)되었다. 이에 의해 성종시대에 등장했던 영남(嶺南) 출신의 신진 사류(士類)들의 일파는 극소수를 제외해서 모두 정권으로부터 배제되고 말았다. 바로 「음모·중상·모략」의 악순환의 시대였다는 것을 선명히 떠올리고 있다.

이 대옥(大獄) 사건은 연산군 무오의 해(1498)에 일어났으므로 「무오사화(戊午士禍)」라고 하며, 일의 발단이 사초에 기인했으므로 「戊午史禍」라고도 한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방목(榜目)·예종실록조야회통(睿宗實錄朝野會通)>

46)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

47)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48) 관에서 시체를 끌어내어 목을 자르는 형.

연산군조(燕山君朝 · 재위 1494~1506)

김순손(金舜孫)

...왕의 난폭을 읍간(泣諫)한 것이 죄가 되어...

김순손(金舜孫)은 중종반정(中宗反正 · 1506)에 의해 폐위된 연산군시대의 내관(宦官)이었다. 성종(1469~94)이 붕어(崩御)하자 막내인 연산군이 나이 19에 그 왕위에 올랐다. 그는 이름 난 폭군이라고 지목되듯이 선천적인 방랑자로, 더구나 복상(服喪)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눈을 속여 주색에 빠지고 무참한 행동을 일삼아 쉴 새 없이 왕위(王威)를 떨어뜨림으로 김순손은 내관으로서 그것을 눈여겨 볼 수가 없어 어느 날 그는 왕의 부덕행위를 눈물로써 강력히 타일렀다.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그 간언(諫言)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왕은 그를 불러세워 수염을 잡아끌면서 「왕을 업수이 여기는 불충한 놈!」이라고 욕지거리를 퍼부은 다음 음침한 감옥에 쳐넣어 버렸다. 불만은 있었지만 공공연히 입에 올릴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매일과 같이 갖가지 고문을 받았는데 결국은 법의 제재는 커녕, 이렇다는 명분도 없이, 그는 연산군 2년(1495) 2월, 서천(舒川)에 유배되었다가 얼마없어 제주도 대정현의 어느 벽촌에 이배(移配)되었다.

그 때 더 비길 데 없는 폭군은 제주도의 각 수령(守令)에게 대해 김순손을 군역의 중노동에 취역시키고는 조금의 사정(私情)을 베풀어도 안된다고 엄명함과 동시에 그 복무상태를 보고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돌연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그것이 왕의 광기(狂氣)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삼사(三司)⁴⁹⁾에서는 동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여러 차례 상계(上啓), 그가 왕을 능멸한 죄가 크다고는 하나, 그것은 악의(惡意)가 아니라 어쩌다 실수로 입을 놀린 것에 불과한데 극형이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폭군이랄지 만 어쩔 수 없이 삼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덕택으로 그는 위기일발(危機一髮)을 넘겼다. 그래서 이듬해 3월에 제주 민호(民戶)에 편입되어 제주백성으로서의 정역(定役)에 따랐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중노동은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오랜 고역(苦役)에 기진 맥진, 주위 사람들이 껴 안 듯 해서 배소(配所)에서 고민하다 죽었다.

<제주도지>

홍유손(洪裕孫)

...김종직 일파로 억지 조작되어...

홍유손(洪裕孫)은 호를 조충(篠叢) 또는 광진자(狂眞子)라고도 했다. 남양(南陽)사람. 부리·홍순치(府吏·洪順致)의 아들이다. 가세는 대대로 청빈했지만 품성(稟性)은 대범하여 자잘한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남양태수(南陽太守·지방관)는 그가 시문(詩文)을 잘 했으므로 특히 이역(吏役)을 면했다고도 한다.

그는 일찍이 시인·김종직(金宗直)에게 수학(修學)하여 세상을 뜻대로 고답(高踏)하여 허망한 작록(爵祿)을 바라지 않았다. 동료인 남효온(南孝溫)⁵⁰⁾은 언제나 그를 평해서 「문(文)은 칠원(漆園)같고 시는 산곡(山谷)

49) 사헌부·사간원·홍문관.

을 넘나든다」고 했다. 어릴 적에 원각사(圓覺寺)⁵¹⁾에서 기식(寄食)했다. 김수온(金守溫)⁵²⁾·서거정(徐居正)⁵³⁾ 등이 조관(朝官)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되어있던 어느날 그를 보고 「운(韻)」을 불렀다. 유손은 이에 응하여 그 중련(中聯)에서 「청산녹수오가향 명월청풍취주장(靑山綠水吾家鄉 明月淸風就主張)」⁵⁴⁾고 했다. 거기 동석하고 있던 김시습(金時習)⁵⁵⁾이 이것을 보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며 사가정을 향해 강(剛)⁵⁶⁾ 자네 「이것을 잘 하는가」고 했다. 유손의 이름은 세상을 덮어 한 때의 명공(名公)과 거경(鉅卿)⁵⁷⁾들이 그와 교유(交遊)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성종 13년(1482)에 남효온·우선언(禹善言·楓厓)들과 일종의 동지회를 만들어 동대문 밖의 대나무 밭에 가끔 모여 시가(詩歌)나 담론(談論)을 통해 불안과 동요가 집중하고 있는 당시의 정사(政事)와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더러운 근성에 대해 생각 나는대로 비판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권력과 명리(名利)를 초월한 초속적(超俗的)인 청담파(淸談派)⁵⁸⁾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문인그룹이었다. 그들의 반체제적인 언동은 지배권력층에 있어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다. 그 때문에 연산군 4년(1498)의 「무오사화」 뒤, 훈구파의 우두머리이며 간신인 유자광이 그들을 김종직⁵⁹⁾의 일파라고 상소하여 죽림(竹林)⁶⁰⁾의 일당은

50) 1454~92, 호 秋江.

51) 1446년에 건립, 탑동공원에 있다.

52) 1409~81, 호 乖厓.

53) 1420~80, 호 四佳亭.

54) 청산녹수가 나의 고향이요 명월청풍을 좇아 내 뜻을 내세운다.

55) 1435~93, 호 東峯.

56) 서거정의 字.

57) 尊貴者.

58) 조선 초 유학계의 4대학파의 하나.

괴설(怪說)로 사림(士林)⁶¹⁾의 풍습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그 그룹의 리더격인 홍유손이 호를 「현현현(軒軒軒)」이라고 한 것은 어떤 역의(逆意)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무고하여 일대 의옥(疑獄)을 불러일으켰다.

유감스럽게도 암우(暗愚)한 폭군은 유자광의 모함을 진실로 알고 크게 격노하여 말했다.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함은 이들 문사(文士)들이다」고, 명하여 이들을 즉시 붙잡아 추궁토록 했다. 이러한 광기(狂氣)어린 폭거는 다름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하는 요소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자는 전부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까닭없이 정신이 멀어질 때까지 문책 받았다. 혹독한 고문을 못이겨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홍유손·우선언 등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이렇게 해서 홍유손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역의(逆意)를 품었다는 엉뚱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원류되었다. 그것은 연산군 4년(1498) 9월의 일이었다.

그는 거기서 온갖 신산(辛酸)을 겪으면서 중종반정(1506)까지의 8년간의 오랜 유적생활을 보냈다. 처음엔 그저 멍하니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나날을 보냈지만, 얼마없어 정신을 차려 서책에 몰두하고 인생의 살아 있는 보람을 찾아서 지방의 유생이나 자제들의 교육에 주력, 그 시문이나 인격을 통해서 섬의 교육 진흥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중종반정이 되어 겨우 유배에서 풀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나이 76이라는 고령이 되어 처음으로 아내를 얻어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름을 지성(志誠)이라고 했다.

59) 영남학파의 巨頭.

60) 죽림파는 조선 초기 유학계 4대학파의 하나.

61) 유인의 계층.

일찍이 김시습과 더불어 산수간(山水間)을 방랑하고, 남효온과 금강
산에 갔을 때, 높은 나무에 올라, 절벽(絶壁)에 이웃하여 시를 읊었다.

先生檀帝戊辰歲 服及箕王號馬韓
留與永郎遊水府 偶牽春酒滯人間

단군보다 먼저 무진년에 태어나
기자에게 복속되어
국호를 마한이라 하였네
영랑이 놀던 마을이
아직 남아있어서
봄술을 마시며 사람을 머무르게 하네

이라고 끝내고 그 나무를 자르고 그 뿌리를 뽑아 여기를 평평하게 했
다. 효온이 이를 보고 색다르다면서, 이것을 「비선(飛仙)의 시」로 삼았
다고 한다. <제주도지·人物考>

홍상(洪常)

...갑자사화(甲子土禍)에 연좌해서...

사화(土禍)의 참극(慘劇)

이 「무오사화」가 일어나서 6년째에 다시 일대 의옥(疑獄)이 발생했
다. 그것은 왕의 척신(戚臣)⁶²⁾과 훈신(勳臣)들 사이의 대립에 의한 것이
었다.

연산군의 사치와 낭비를 극한 생활은 국가재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62) 왕실의 인척이 되는 관리.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수납하는 공물(貢物)의 양을 다시 증액한다든지, 공신에게 주어졌던 전지(田地)와 노비(奴婢)를 흡수하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공신들은 이에 반대하여 무절제한 궁중생활을 규제하려고 했으므로, 이번엔 왕실과 공신과의 사이에 대립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연산군 10년(1504)에 「무오사화」의 연장이라고도 할 「갑자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대옥(大獄)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보면, 연산군의 생모 윤씨는 성종 11년(1480)에 「교사투기(驕肆妬忌)의 죄」로 폐비(廢妃)되어 이어 사사(賜死)되었지만, 즉위의 10년 4월, 윤씨를 추숭(追崇)하여 왕후로 하고, 이를 성종의 묘(廟)에 배사(配祀)하려고 했다. 그러자 「선왕(先王)의 뜻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에 극력 반대한 응교(應敎)⁶³⁾ 권달수(權達手)는 처형되고 이행(李荇)은 「추숭(追崇)의 전(典)은 예(禮)로서 이미 정해졌다. 지금와서 덧붙여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것이 왕의 노여움을 사, 충주(忠州)에 장류(杖流)되었다. 그뿐 아니라, 또 윤씨 폐사(廢死)에 찬성한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성준(成浚)·이세좌(李世佐)·권주(權柱)·김굉필(金宏弼)·이주(李胄) 등 10여명이 무참히 처형되고, 심한 경우에 이르러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한치향(韓致享)·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어세겸(魚世謙)·심회(沈滄)·이과(李坡)·정여창(鄭汝昌)·남효온(南孝溫) 등은 부관참시(剖棺斬屍)에 처해진 뒤에, 후세에 말하는 연좌(緣座)의 법으로,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각각 지독한 형벌이 가해졌다고 하는 피의 숙청이 몰아쳤다. 말하자면 일찍이 왕비를 폐해서 사형에 처한 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된 기성세력과 이전의 박해 때, 그 화를 면한 신진 사류(士類)의 잔존세력을 포함하는, 수 많은 자가 사형·유형·면직되었다. 홍상은 이 사

63) 홍문관의 정4품관.

건에 연좌, 사형을 면하고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홍상(1457~1513)은 자(字)를 자강(子剛)이라 하고 시호(諡號)를 소이(昭夷)라고 했다. 본관은 남양으로 좌의정(부수상격) 응(應)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 성품이 온후해서 도량이 넓고 수골(袖骨)이 단정함으로 세조가 한 눈에 그를 사랑해서 드디어 덕종(德宗·追尊)의 딸 명숙(明淑)공주에게 장가 들도록 했다. 즉 그는 덕종의 부마⁶⁴⁾인 것이다. 그 후 조양군(曹陽君)에 봉해져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⁶⁵⁾이 되어 오래도록 금병(禁兵)⁶⁶⁾을 통할했다.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일컬어 「장자(長子)」라고 했다. 그가 제조(提調)⁶⁷⁾가 되자 국가의 방임(傍任)이 두터워 여러 의빈(儀賓)을 바라지 않았다. 연산군 때 승록대부(崇祿大夫·종1품)의 위계에 올라, 의빈(儀賓·駙馬都尉)의 최상급에 이르렀다.

그가 제주도로 유배되어갈 때 「제주는 해로(海路) 무려 9백리, 중죄대벌(重罪大罰)이 아니면 굳이 여기로 보내지 않는다. 조야(朝野)의 모두가 이 때문에 무서워 한다」고 했지만, 홍상만은 별로 개의(介意)치 않고 종용(從容)히 유죄(流罪)의 길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섬의 어디서 어떻게 생활했었는지는, 이렇다는 기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어떻든 간에 「갑자사화」는 역대의 사화 중에서도 가장 잔학했던 것이었다. 성종 때부터 신진의 사류에게 소인배라고 배척 당했던 임사홍(任士洪)⁶⁸⁾·유자광 등이 이 사옥(土獄)을 조작하고 또 피죄인(被罪人)

64) 왕의 사위.

65) 오위(五衛) : 義興·龍驤·虎賁·忠佐·忠武의 병력을 통할하는 정2품의 군관.

66) 서울을 수비하는 부대.

67) 각사(各司) 또는 각청(各廳)의 관제장관(官制長官)이 아닌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긴 직위로, 관계(官階)가 제1품의 경우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 제3품인 당상관의 경우는 (좌·우의정이 겸임)제조라고 칭했다.

이 가죄(加罪) 당한 것을 보면 「무오사화」의 연장이라고도 할만큼, 당쟁의 형적(形迹)도 있지만, 그러나 연산군 자신의 광폭한 행동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두 번에 걸쳐서 비참이라는 말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해, 연배(年輩)·신진(新進)의 관료세력을 살해와 유형으로 정권으로부터 추방한 연산군의 방자(放恣)한 생활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국민부재(國民不在)의 폭정이었다. 드디어 분노가 폭발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가 왕위에 오른지 12년째 되는 1506년 9월, 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박원종(朴元宗) 등 일부 관료의 쿠데타에 의해 드디어 연산군은 폐위·추방되고 동시에 궁중의 측근세력(척신)도 배제되어 새로이 왕의 이복제(異腹弟)인 진성대군(晉城大君)·역(驛·中宗)이 즉위했다.

중종(1506~44)이 왕위에 오르자 제빨리 대사령이 내려졌다. 덕분에 홍상은 제주도로부터 소환되어 특히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공이 하사되고 더구나 왕의 권우(眷遇)가 두터와 세절(歲節)과 생신 때마다 반드시 중사(中使)⁶⁸⁾를 보내어 사찬(賜饌)이 계속되었다. 홍상은 제주도에서 거의 1년 반의 유적생활을 보내었지만 생활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人物考·연산군일기·燃藜室記述>

68) ?~1506, 세도가.

69) 내밀한 특사.

유헌(柳軒)

...갑자사화를 야기시킨 간흉(奸凶)의 상(狀)을 통론(痛論)한 때문에...

유헌(柳軒)도 또한 「갑자사화」에 연좌하여 유형에 처해진 한 사람이다. 자를 백여(伯輿), 호를 낙봉(駱峯)이라고 했다. 전주 사람. 성종 17년(1486) 사마시(司馬試)⁷⁰⁾에 합격하여 동왕 20년(1489)에 등제(登第)했다. 성격이 엄의(嚴毅)하고 기국(器局)⁷¹⁾이 뛰어난 인물 같았다. 삼사(三司)⁷²⁾의 요직을 역임했지만 정직 그 자체는 조금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연산군 초, 만언(萬言)⁷³⁾의 소(疏)를 상주(上奏)했다가 크게 시위(時諱)에 거슬려 충청수사(忠淸水使)⁷⁴⁾로 좌천되었지만, 갑자년(1504)에 대사헌(사헌부의 장관)에 등용되었다. 당시 형조판서(법무대신) 신수영(愼守英) 등이 나직(羅織)⁷⁵⁾해서 사화를 야기시켰다. 유헌은 이에 대해 상소(上疏), 그 비법(非法)을 날카롭게 논했다. 그 논지(論旨)는 이들 화옥(禍獄)을 불러 일으킨 주모자인 임사홍과 유자광 등의 간흉(奸凶)스러움을 통론(痛論)하고, 한편 이극균(李克均)⁷⁶⁾이 아무 죄도 없이 참살된 원죄(冤罪)에까지 언급하고 있다.

70) 생진과(生進科)라고도 한다. 진사·생원시험, 즉 소과(小科)를 말한다. 초시와 복시(覆試)의 2단계가 있다.

71) 재능과 도량.

72) 사헌부·사간원·홍문관.

73) 조선 정조 때 安馨煥이 지은 가사.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

74) 수사(水使)는 「수군절제사」의 약칭. 해군 지방군사령관.

75) 나직(羅織)이란 죄 없는 자까지도 범망 속으로 끌어들여 그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76) 1435~1504, 좌의정.

그 정론(正論)이 포학무도한 연산군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어 끝내 그는 제주도로 유형에 처해졌다. 중종반정(1504)이 일어나자 그는 방환(放還)되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 수몰(水沒)했다.

이와같이 연산군조에 일어난 「무오·갑자사화」를 살펴볼 때, 전자에 있어서는 그 화옥(禍獄)이 모두가 유림에게 겨냥되어 당시 우세한 지위에 있었던 김종직학파의 유사(儒士)였던 데 반해, 후자에 있어서는 옥사(獄事)가 조정내의 항쟁·배제(排擠)에 의해 야기되어 주살이나 유배당한 자는 당시의 상신(相臣)⁷⁷⁾·중신이었다. 물론 이 때에도 화옥의 여파는 유림에게도 미쳐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2대화옥으로 유학은 대타격을 입어, 유림은 한 때 병식(屏息)⁷⁸⁾이 불가피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연산군의 폭정을 비방하는 투서가 한글로 쓰여있다고 해서 한 때 한글 사용을 금지한 때문에 자연히 국문학(한글)의 발달은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물고·연려실기술>

77) 영의정과 좌·우의정.

78) 겁이 나서 숨을 죽이다.

중종조(中宗朝 · 1506~44)

김정(金淨)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좌되어...

중종은 연산군에 의해 극도로 문란해진 정치질서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전통적인 유교정치를 회복하려고 도모했다. 중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차 신진사류(新進士類)를 등용했지만 그 중에도 조광조(趙光祖)⁷⁹⁾는 혁신정치를 강력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신진사류⁸⁰⁾의 스승인 김종직(金宗直)의 제자에게서 수학하여, 그 학통(學統)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주자학자(朱子學者)로서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도덕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시책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는 우선 유교적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미신을 타파하고 그 때까지 전승(傳承)되어 왔던 도교(道敎)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제례(祭禮)를 폐지했다. 또 한편으로는 촌락(村落)집단의 상호 부조를 꾀하기 위해 이른바 「향약(鄉約)」⁸¹⁾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민중생활의 윤리적인 규범

79) 조광조(1482~1519)는 중종조의 성리학자.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최종 관작은 대사헌. 「기묘사화」 때 능주(綾州)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사사되었다. 죽음에 임하여 「愛君如愛父, 爲國如爲家, 白日臨下地, 昭昭照丹衷(임금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나라를 집과 같이 위하라)」고 읊조리고 있다. 38세로 사사되었다. 그 후 영의정으로 추서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

80) 선비들의 세계, 「진서(晉書)」에 의하면 「倣儔不羈 爲士類所稱」이라고 했다.

81) 촌락집단의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도, 향약(鄉約)의 4대항목 ①덕업상권(德業相勸) ②예속상교(禮俗相交) ③과실상규(過失相規) ④환난상휼(患難相恤).

의 확립을 기했다.

그러한 그가 정치적인 반발을 받게 된 것은 인사제도를 쇄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종래의 시험제도(科擧) 대신에 주로 천거(薦擧)제도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요직에 있는 자로 하여금 직접 유능한 인재를 추거(推擧)시켜 왕의 친림(親臨) 아래, 간단한 시험 한번만으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로, 종래의 과거에 대해 이것을 「현량과(賢良科)」라고 했다. 이 방법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조광조 일파인 김정·김식(金湜)·박상(朴祥)·김구(金絿)·한충(韓忠)·이자(李耜)·박훈(朴薰)·안처근(安處謹)·기준(奇遵) 등의 청년학자가 관계로 진출해서, 정부의 중요 포스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기성의 세력자들은 학문적으로도 사장(詞章: 詩文)을 주로 하는 주자학 본래의 학문의 경향에서 떨어진 사람들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미 확고한 기반(地盤)을 갖는 연배자(年輩者)들이었다. 이들 인사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농장(農莊)을 더욱 확대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공헌청부(貢獻請負)의 이득을 얻으려고 꾀했으므로 신진 사류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기성세력과 신진사류와의 사이에는 그 자세의 차이에서 학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부지불식 중에 대립감정이 양성(釀成)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조광조와 그 일파는 정국공신(靖國功臣)⁸²⁾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공신의 작위(爵位)가 수여되고 전지(田地)⁸³⁾와 노비를 하사받은 자의 수가 너무도 많았으므로, 부당하게 수여된 76명의 공신의 작위와 전지·노비를 반환하도록 주장했다. 이에 놀란 훈신

82) 중종반정의 공신.

83) 功臣田.

(勳臣)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 대한 중상·모략에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조광조 일파가 화를 입게된 직접적 원인의 하나이다. 「수수편(遂睡篇)」에 「조광조는 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너무 서둔 나머지 화를 자초(自招)했다」고 되어있으며, 「당적보(黨籍譜)」에는 「김정은 건의(建議)함에 있어 의기(意氣)가 지나친 나머지 노골적으로 가시가 돋혔으며, 일을 서둔 나머지 조금하게 구는 잘못을 면할 수가 없었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지나친 급진적 경향에 대해서는 중중 자신도 내심 혐오하게 되었다.

중종 14년(1519) 11월, 도총관(都總管)⁸⁴⁾ 심정(沈貞·1471~1531)·예조판서(禮曹判書)⁸⁵⁾ 남곤(南袞·1471~1527)·공조판서(工曹)⁸⁶⁾ 김전(金詮)·호조판서(戶曹)⁸⁷⁾ 고형산(高荊山)·남양군 홍경주(南陽君 洪景舟)등의 훈신 재상(宰相)들은 그것을 반격의 기회로 포착해서 젊은 유생들이 현실을 무시해서 봉당(朋黨)⁸⁸⁾을 만들어 정치를 혼란케 하고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중에 밀고 「기묘사화」를 불러일으킨 조광조 일파를 정권으로부터 추방했다. 그 결과 조광조 일파는 역시 사형·유형·파면 등의 형을 받고 배제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어떤 사화에 있어서는 화를 입은 것은 초야로부터 일어난 젊은 신진사류였음에 반하여, 화에 미리 대비한 것은 훈구파(勳舊派)였다.

여기서 이 「기묘사화」로 화를 입어 제주도에 유배된 후 1년만에 사사(賜死)된 김정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84) 五衛都總管府에서 軍務를 총괄한 최고군직, 정2품.

85) 문교대신.

86) 상공대신.

87) 재무대신.

88) 동료들만이 모인 단체, 조(組)를 짜서 당외자(黨外者)를 배척하는 단체(전국책 : 戰國策).

김정(1486~1520)은 경주 사람. 자를 원신(元伸)이라 하고 호를 충암(沖庵)이라고 했다. 불과 10세에 사서(四書)⁸⁹⁾를 독파(讀破)하고 젊은 나이에 과거의 갑과(甲科)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는 관도(官途)에 오르기 전에 시인으로도 유명했다. 여기 예를 들면 「기묘사화」를 야기시킨, 참모격인 남곤이 직제학(直提學)⁹⁰⁾으로 있을 때, 김정은 아직 유생의 신분이었다. 어느 날, 친구집에서 우연히 그와 만나게 되었다. 김정은 취해서 들어누워있었는데 남곤이 와도 취한 척 해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이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문득 일어났다. 둘은 인사를 나눈 다음, 남곤이 오늘 소생의 손에 「망천도(輞川圖)」⁹¹⁾ 병풍이 들어왔는데 바라건대 뛰어난 시편(詩篇)을 얻어 거기에 써놓으려고 합니다고 하면서 종을 시켜 곧 그 병풍을 가져오도록 했다. 김정은 취중에 붓을 들고 아무런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또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시 한 수를 단숨에 써놓았다.

江南有樂地 夜裡夢逍遙
自買花村酒 分明過此橋

강남에 즐거운 곳 있어
밤 들면 꿈 속에 노니네
화촌의 술을 스스로 사올 때는
분명 이 다리를 지나겠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 술병을 손에 들고 다리(橋=脚)를 건너간 것을

89) 논어·맹자·중용·대학.

90) 홍문관의 정3품관.

91) 王維의 그림.

지적하는 것이지만 남곤은 그것을 이해 못했는지, 몇 번이나 읽어보고는, 잘 됐다고 칭찬해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표면상으로는 저자세로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신진사류에 대해 적개심(敵愾心)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부렁이로 엉뚱한 얘기를 날조하여, 심정(沈貞)과 더불어 신무문(神武門)⁹²⁾으로 들어가서 변이 일어났다고 왕에게 고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린 것이다.

얘기는 되돌아가지만, 김정은 중종 10년(1517), 아버지를 귀양(歸養)하기 위해 청원하여 순창군수(淳昌郡守)에 보(補)해졌다. 그가 우선 피죄(被罪)한 것은 장경왕후(章敬王后)⁹³⁾가 사망하자, 전라도 담양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⁹⁴⁾과 연명하여 폐비신씨(廢妃愼氏)의 복위(復位)를 호소했다. 말하자면 「첩으로 하여금 처로 삼는, 비방(誹謗)을 단절해주길 청한다. 그래서 말한다. 박원종(朴元宗)⁹⁵⁾ 등은 군부(君父)를 강제하여 어머니를 내쫓은 만세(萬世)의 죄인이다. 지금 죽는다 해도 그 죄를 확실히 바로잡아 후세로 하여금 작열(灼熱)로써 분의(分義)⁹⁶⁾를 범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는 논지의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즉 신씨는 중종이 진성대군이었던 때 맞이한 본처로서, 중종반정의 날, 박원종·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 등 3대장(大將)⁹⁷⁾에게 참살당했다. 연산군의 벽신(壁臣) 신수근(愼守勤)의 누이동생이다. 신씨는 중종의 즉위와 동시에 궁중에 맞아들여져, 아직 왕비 책봉의 예는 정식

92) 경복궁의 복문.

93) 仁宗의 어머니.

94) 1474~1530, 호 訥齋.

95) 1467~1510, 중종조의 영의정.

96) 분수에 알맞게 지켜 나가는 도리.

97) 이를 三勳이라고 한다.

으로 올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궁의 위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데도 3대장은 중궁을 추대하자 얼마 없어 신씨를 궁중으로부터 폐출(廢黜)했던 것이다. 왕도 할 수 없이 윤여필(尹汝弼)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 이것이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章敬王后)이다. 거기서 김정 등은 하나하나 대의명분론을 갖고 3대장의 국모를 폐출한 죄를 논하고, 또 명(明)에게 왕의 고명(誥命)⁹⁸을 청할 때의 실패(失態)를 논하고 그 관작을 추탈(追奪)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관료의 부정과 실정을 규찰(糾察)하는 사헌부의 관원들은, 이 소문(疏文)은 사론(邪論)으로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련되는 것이라면서, 김정은 보은(報恩)에, 박상은 남평(南平)에 도배(徒配)의 죄로 처했던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탄압에 대해, 조광조는 중종 10년(1515) 11월, 왕에게 언로(言路)⁹⁹를 열도록 상소했다.

「言路之通塞 最闕於國家 通則治安 塞則亂亡 人君務廣言路 上自公卿百執事 下至閭巷 市井之民 俾皆得言……爲臺諫者 能皆言路然後 可謂能盡其職也……」

언론이 막히고 트이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데 크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언로가 트이면 편안히 다스려지고, 막히면 어지러워 망합니다. 임금은 언로를 넓히는 데 힘 써서, 위로는 공경대부와 여러 벼슬아치로부터 아래로는 여염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대간이 된 사람은 언론을 다한 뒤에야 그 직책을 다 했다 할 것입니다.

98) 명 황제의 曉論文.

99) 왕에게 建言・諫請의 길.

『사간원청과양사계(司諫院請罷兩司啓)』중의 하나의 내용이다.

지금의 위정자들에게 있어서도 그의 교훈은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롭다. 더구나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상소제도를 이해하는 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언론의 자유는 국가발전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언론이 자유스러우면 치안이 확보되며 폐쇄(閉塞)되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 인군(人君)은 널리 언론을 개방하는데, 그것도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는 시정(市井)의 백성에게까지 개방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언관(言官)¹⁰⁰직에 있는 자들은 모름지기 그 언로가 개방되어야만 직무를 다 할 수가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훈구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뿐 아니라, 조광조 일파가 주장하는 「박순채납(博詢採納)」·「광문수(廣聞收議)」라고 하는 훌륭한 민주적 정치이념을 받아들일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광조는 상소해서 김정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한 「대간(臺諫)」¹⁰¹들의 대사헌(大司憲)¹⁰² 권민수(權敏手)와 대사간(大司諫)¹⁰³ 이행(李荇) 등은 즉시 경질되었다.

중종 12년(1517), 김정은 특사되어 다시 관계에 복귀, 도승지(都承旨)¹⁰⁴·이조참판(吏曹參判)¹⁰⁵ 겸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¹⁰⁶·대사헌·형조판서(刑曹判書)¹⁰⁷ 등의 중요 포스트를 역임했다. 김정은 이 특별대

100)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의 총칭.

101) 사헌부·사간원의 총칭.

102) 사헌부 즉 감찰부의 제1관위.

103) 왕에게 간언하는 역할의 하나.

104) 시종장.

105) 내무차관.

106) 종2품관.

107) 법무대신.

우에 감격하여 조광조 등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적폐(積弊)를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삼대(三代)¹⁰⁸⁾의 왕도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수구파인 심정¹⁰⁹⁾·남곤¹¹⁰⁾ 등의 모함으로 끝내 18명이 투옥되고 말았다.

드디어 세간의 동정은 흡연(翕然)히 그들 위에 모아졌다. 이것을 듣고 광화문 밖에 모여든 1천여명의 태학생(太學生)¹¹¹⁾이나 신명인(申命仁)¹¹²⁾ 등이 조광조 등의 무죄석방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법도를 어기면서 왕궁의 앞뜰에 밀고 들어가 앉아서 칙허(勅許)를 얻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 때의 곡성(哭聲)은 대문을 뚫고 퍼졌다. 그 때문에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명을 훈적(勳籍)으로부터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중종은 교시하면서 가로되 「궐정(闕廷)에서 호곡(號哭)하는 것은 천고(千古)에 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을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신명인이 대중 앞에 나서면서 목청을 도꾸며 말했다. 「옛날엔 양진(楊震)이 붙잡히자 태학생 3천여명이 궐을 지켜 호읍(號泣)한 일이 있었다. 전하(殿下), 오늘의 일은 참으로 천고에 없던 일」이라고 격렬히 다투었다. 그러자 왕은 태학생이 시사(時事)를 논하고 짐에게 의견을 구신(具申)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도, 시비를 결정하는 것은 태학생이 아니라 조정이다, 고 질책했다. 결국은 왕명에 의해 한 사람씩 차례차례로 투옥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옥은 초만원이 되어

108) 夏·殷·周.

109) 1471~1531, 호 逍遙亭.

110) 1471~1527, 호 止亭.

111) 성균관의 掌議 이하의 생원·진사의 총칭.

112) 신명인의 자는 영중(榮仲), 호는 귀봉(龜峰). 조광조 일파의 구명운동이 실패하자, 스스로 풍류광객(風流狂客)이라 칭하여 시와 술로 방랑하고 있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났다.

수용할 장소가 없었다고 한다.

김정은 조광조 등과 하옥되어 있었는데 얼마없어 금산(錦山)으로 장배(杖配)되었다. 그는 보은현에 있는 노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배소(配所)까지 전해지자 금산군수이며 감시인이기도 한 정웅(鄭熊)에게 노모의 병 문안을 신청하여 2일간의 배소이탈(配所離脫)을 허락받았다. 그 덕으로 그는 어머니의 병상(病狀)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의 관리들은 가끔 일어나는 정변(政變)으로 언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므로 그러한 정치범과 같은 유배인에 대해서는 적당한 온화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웅도 김정의 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여행을 허가하고 그 위에 감자(柑子)¹¹³⁾와 꿩에다 술까지 덧붙여 위문품으로서 김정에게 갖고 가도록 했던 것이다. 그 때 김정을 진도(珍島)로 옮기기 위해 김오랑(金吾郎)¹¹⁴⁾이 서울로부터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금산배소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이듬해 정월에 진도로 이배되었다.

그런데 김정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었던 심정·남곤 등의 무리가 김정 어머니의 문병을 놓칠 리 없었다. 흉악한 음모를 획책하고 있던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새라 김정을 서울로 호송했으며 배소이탈의 망명죄로 국문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나온 금산군수 정웅은, 추관(推官)¹¹⁵⁾에게 영합해서 원죄(冤罪)의 가해자로 탈바꿈, 「충암의 토주는 본관이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며, 하물며 밀감이나 꿩과 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 그가 말하는 것은

113) 밀감.

114) 의금부의 관리로 왕명에 의해 죄인을 체포하는 사람.

115) 取調官.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고 했다. 이 위증(僞證)으로 해서 김정에게 사죄(死罪)가 논해지고 끝내 처형이 확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¹¹⁶⁾ 등의 적극적인 구명운동 덕으로 위기일발에서 죽음을 면하여 동년(1520) 8월에 가죄(加罪)되어 곤장 1백대를 맞은 다음 제주도로 배치되어 안치(安置)되었던 것이다.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는 도중, 해남(海南)의 바닷가 노송(老松) 그늘에서 휴식할 때, 곁에 있던 나무 껍질을 깎아 시 한 수를 써놓았다.

바닷가 바람이 불면, 구슬픈 솔바람 소리 멀리 퍼지네.
산 끝쪽에 달이 오르면 가지만 앙상한 소나무의 그늘,
사막에 외롭구나.
직정(直情)¹¹⁷⁾이 뿌리, 지하에서와 같이 지상으로 퍼져,
상설(霜雪) 맞은 다음, 보이게 하지 않아도 잠시 살피게 된다.
가지는 꾸부러지고 잎사귀는 여자의 형클어진 머리.
도끼에 상한 몸, 사막에 드리누어,
가엾구나,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지난날의 희망도 헛되이.
버터있는 채로 해선인(海仙人)의 떼배에라도.
.....

이 해남 해송(海松)의 시는 그 뒤의 사림사화(士林士禍)에 애송(愛誦)되어 기골(氣骨)이 있는 선비¹¹⁸⁾들을 적잖게 울렸으며, 또 「해선(海仙)의 떼배」는 과거¹¹⁹⁾에 시의 운(韻)으로서 자주 출제되었다. 앞의 신명인은 김정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갈 때 다음과 같은 송시(送詩)를 짓고 있다.

116) 1462~1538 호는 守天.

117) 꾸밈없는 생각.

118) 학덕을 겸비한 사람에 대한 고풍스러운 敬稱.

119) 문무관의 등용시현.

松窓岑寂日西遲 世路風波不自知
 一壑清川鳴歷耳 蒲團座到月明時
 月澗渡海至耽羅

송창에 고요한 봉우리, 해는 서쪽에 기울고
 세상 일이 풍파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한 골짜기 맑은 시내 소리 귀를 스치는데
 달 밝은 밤 부들 풀 방석에 앉았는데
 월간(月澗)바다를 건너 탐라에 이르렀네

김정은 배소에서 이 시를 애송했다고도 한다. 그는 제주도로 향할 때, 배 안에서 「청풍대(淸風臺)」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一髮耽羅望漸開 長風送我日邊來
 南中風味如相聞 橘柚清香入酒盃

바라보면 탐라섬이 한가닥 열렸는데
 긴 바람이 나를 하늘 끝까지 불어 보냈네
 남쪽지방 생활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꿀유의 맑은 향기 술잔으로 들어온다고

김정의 적사(謫舍)는 성내¹²⁰⁾ 가락천(嘉樂泉) 동안(東岸)에 있던 금강사(金剛寺)라는 험떨어진 작은 서당이었다. 통용문(通用門)의 담장을 가 시렁굴로 둘러싸서 뇌옥(牢獄)을 만들어 거기에 유폐(幽閉)격리 되었다. 충암 김정이 제주에 도착해서 열흘째의 밤, 꿈에 한 백발노인이 나

120) 지금의 제주시.

타나서, 그대의 시문을 시험해보겠다고 연구(連句)를 청하는 것이었다.

(老人) 積雨和清後 (金淨) 新涼樹梢生
(") 夜深幽戶靜 (") 月近小空明
(") 詩魄枕邊頭 (") 琴從膝上鳴
(") 此間清意味 (") 難得小人評

(노인) 계속되던 비 맑게 개인 뒤
(김정) 가을 바람이 나뭇가지에 불어온다
(노인) 밤은 깊어 고요한 창문에
(김정) 달이 가까이 오니 하늘도 밝구나
(노인) 시혼은 배갯머리에 감돌고
(김정) 거문고는 무릎 위에서 운다
(노인) 이 곳의 맑은 뜻을
(김정) 어찌 소인들이 얻어들이라

「비관잡기(裨官雜記)」에 김충암은 시문을 잘 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고 되어있으며 그 유회시(遺懷詩)에

海口恒陰翳 荒村盡日風
知春花自發 入夜月臨空
鄉思千里外 殘生絕島中
蒼天應有定 何用哭途窮

바다 포구는 항상 어두침침
거친 마을엔 종일 바람만

봄이면 스스로 꽃핌을 알고
 밤이 들면 달은 하늘에 뜨네
 천리 밖의 고향을 생각하며
 여생을 절해고도에서
 저 하늘의 뜻이 정해져 있거늘
 어찌 곤궁한 길을 슬퍼하리오

其山雨詩日

蕭蕭山雨下茅庵 秋老荒城晩色酣
 故國山川魂自往 不知身在海天南

그 산에 비올 때의 시
 쓸쓸한 산 비는 초가집에 내리고
 늦가을 거친 성에 저녁노을 짙어지니
 마음은 고향산천에 가 있어
 자신이 남쪽 바다에 있음을 잊었네

적객(謫客)에게 있어 제주도는 「낙원」이라고도 할만한 유형지였지만, 섬의 생활에 익숙할 때까지의 1,2년이란 것은 구로시오(黒潮)¹²¹⁾에 씻기는 해변에 서서 하얀 물결이 일렁이는 대해원(大海原)을 바라보고 있으면, 태어난 고향이 머리에 떠오르고 사랑하는 처자식이 생각나서 이대로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인가고 바다를 향해 울며 외쳤을 것이다.

김정은 내일의 운명도 모를, 완전히 우수(憂愁)에 잠긴 유배의 생활이었지만, 도민의 이속적(異俗的)인 문화생활을 잘 이해하여 오로지 흥학교화(興學敎化)에 진력했다. 더구나 그 한편으로는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저술하여 이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섬의 치열한 풍토를 국

121) 일본열도 남쪽을 흐르는 난류.

내·외에 소개하여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그 불후(不朽)의 공적에 대해 섬 사람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고제(高弟)에는 제주교수(教授) 김양필(金良弼)과 문세걸(文世傑) 등이 있다.

그런데 뜻 밖에도 이듬해 10월, 김인손(金麟孫)¹²²⁾·채소권(蔡紹權) 등이 또다시 김정(金宗瑞)의 배소(配所)이탈 문제를 끄집어내어 왕에게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 때문에 중중은 할 수 없이 그에게 사사(賜死)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흉보(凶報)가 도민에게 전해지자 그의 최후를 살피고자 모여든 많은 군중들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죽음을 마음 속으로부터 슬프게 여겨 차탄(嗟嘆)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왕명을 들었어도 신색(神色)을 조금도 변하는 일 없이, 그리고 드디어 사지(死地)에 임해서도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고 술을 불러 조용히 쾌음(快飲)한 다음, 형제 앞으로 「노모의 효양(孝養)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한 장의 종이에 써서 목사 이운(李耘)에게 맡긴 다음, 다음과 같은 비통한 초사풍(楚辭風)의 「사세절명사(辭世絕命辭)」를 적어놓은 다음, 한을 천추에 남기면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어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絕 命 辭

投絕國兮作孤魂	遺慈母兮隔天倫
遺斯世兮隕余命	乘雲氣兮曆帝閭
從屬原兮逍遙	長夜冥冥兮何時朝
耿炯衷衷兮理華來	堂堂壯志兮中道摧
嗚呼千秋萬歲兮我哀	

122) 1479~1552, 예조판서.

절 명 사

절국에 던져진 몸 외로운 혼이 되면서
어머님만 남겼으니 천륜이 멀어졌네
이 세상 남겨두고 나의 명 다하니
구름을 타고 제향으로 올라가서
굴원을 따라 소요하려니와
캄캄한 긴 밤 언제면 아침이 올는지
경경한 충성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는데
당당한 장한 뜻이 중도에 꺾이었네
아아 천추만세 나의 슬픔이여

※ 절국 :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 절역 · 절경(絶域 · 絶境)이라고도.

억울하게 죽는 인간의 애수(哀愁)가 남김없이 스며나오고 있다.

즉 「흐림없는 이 단심(丹心), 초장(草場)에 묻혀, 흔들림없는 장지(壯志), 절반은 말하다가 꺾이면, 아아 천추만세의 뒤,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눈물을 흘릴 것이다」고 하는 것인데 그가 배소에서 자결한 것은 중종 16년(1521) 10월 17일의 일이었다. 나이가 아직 36이라는 젊은 청춘의 몸이었다.

김정은 청명(淸名)이 높은 문사(文士)일뿐 아니라, 조광조와 더불어 혁신파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식견(識見)이 초매(超邁)하여 효우(孝友)¹²³⁾에 두텁고 정치의 길도 가장 올밭랐다. 언제나 종일 단좌(端座)하여 문정(門庭) 소연(蕭然)하여 영달을 즐기지 않고 항상 급류(急流)에 용퇴(勇退)하는 의지가 있었다.

김정으로부터 유서를 맡았던 제주목사 이운(李耘)은 다음과 같이 영

123)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

탄(詠嘆)했다.

絶口無相問 孤臣棘室圍
夢如關塞近 僮作弟兄依
憂病共侵鬢 風霜未授衣
恩君若明月 天來寄遙輝

입을 닫고 서로 묻지 않으며
외로운 신하의 집을 가시로 둘렀네
꿈은 변방이 가까운 듯 하였고
머슴을 형제 같이 의지했네
근심과 병이 수염을 범했고
바람서리에 겨울옷 보내오지 않았네
임금님 은혜 밝은 달 같아
하늘 끝에서 아득한 빛 보내오리

왕이 이황(李滉)¹²⁴⁾에게 「기묘사화」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황은 조광조를 존경하고 있었고, 그들 일파의 무실(無實)의 죄는 용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중종이 3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조광조·김정·김식·기준 등과 마음을 합쳐 사방에 바람을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는 심정·남곤 등의 계략에 걸려들어 제재당한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고 상주했다.

그에 따라 선조(宣祖·1567~1608)는 심정·남곤 등의 관작을 박탈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김정의 제사를 올렸으며 시호(諡號)를 「문간(文簡)」이라고 하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유골은 그 뒷해의 겨울, 청

124) 1501~70, 호는 退溪.

주 주안현(淸州 朱雁縣)으로 이장되고, 인조조(仁祖朝)에 특명에 의해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김정이 배소에서 사망해서 50여년 후인 선조 11년(1578)에 그가 잠시 머물렀던 가락천 부근에 충암묘(沖庵廟)를 세워 그 유덕(遺德)을 기리고 그 후 이 묘의 이름을 굴림서원(橋林書院)으로 고쳐,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던 유현(儒賢)인 송인수(宋麟壽)·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송시열(宋時烈) 등도 여기에 봉사(奉祀)되었다.

그 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없어지고, 1892년에 지방의 유생들이 그 터에 단(壇)을 만들어 다섯위(五位)의 영을 모시기에 이르렀다. 이 오현단(五賢壇)에 충암유적비(遺跡碑)를 옮길 때, 실수로 떨어뜨려 비는 둘로 쪼개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반쪽도 망실해버려 「충암김정선생적려(沖庵金淨先生謫廬)」라고 되어있는 나머지 위쪽 반의 비만이 오현단 한 구석에 서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이 왕명을 받아 자결할 때까지, 그 가락천(속칭 가락콧물)의 곁에 그가 음료수로 마시던 샘이 「판서정(判書井)」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최근까지 남아있었는데 10여년 전에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판서정에 대해서

「성문 안에 판서정이 있다. 즉 충암(김정)선생의 적려(謫廬) 앞이며 적려에는 유허비(遺墟碑)가 있어 지붕으로 이것을 덮고 있다. 앞에는 내가 있고 내 가운데에 횡석(橫石)이 있어 판서정(判書井)의 세 글자가 새겨져있다. 생각하건대 옛적엔 우물이었던 것이 지금은 변하여 내가 된 것일 것이다」고 「속음청사(續陰晴史)」에 실려 있다.

송인수(宋麟壽)¹²⁵⁾가 중종조에 대간(臺諫)에 있을 때, 김안로(金安

¹²⁵⁾ 1487~1547, 호는圭庵.

老)¹²⁶⁾의 재집권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그 때 「차충암적해운(次沖庵績海韻)」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있다.

孤忠輕性命 短棹任沿浮
日落芳洲遠 招魂意轉悠

외로운 충성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작은 배는 연안에 맡겼네
해 떨어지자 꽃다운 물가 아득하고
혼을 부르니 생각은 오히려 아득해라

<沖庵集・中宗實錄・海東名臣錄>

이세번(李世蕃)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좌해서...

이세번(李世蕃)¹²⁷⁾은 고부(古阜)¹²⁸⁾ 사람이다. 태어나면서 품성(稟性)이 영명강직(英明剛直)해서 확실한 풍격(風格)을 갖춘 사람같았다. 일찍이 조광조 등과 더불어 김굉필(金宏弼)¹²⁹⁾의 문인으로서 성리학(性理學)¹³⁰⁾을 공부하고 특히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 투철했다.

중종 8년(1514)에 「알성시(謁聖試)」의 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사간언의 정언(正言)¹³¹⁾ 등 많은 관직을 역임한 다음 의금부¹³²⁾의 도사(都事)¹³³⁾

126) 1481~1537, 호는 希樂堂.

127) 호는 白山.

128) 全州.

129) 1454~1504, 호 塞喧堂.

130) 朱子學.

131) 정6품직.

가 되었다. 그 때, 다시 말해서 중종 14년(1519) 11월 15일에 76명의 위훈(僞勳) 삭제문제가 발화점이 되어, 신·구과 대립의 권력투쟁이 단숨에 표면화, 드디어 「기묘사화」가 폭발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남곤·심정¹³⁴⁾·홍경주·김전(金銓)¹³⁵⁾ 등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파가 혁신정치세력인 조광조·김정·김식(金湜)¹³⁶⁾ 등에게 복수의 철퇴를 가한 정변이었지만 그 때문에 화를 입게된 자가 매우 많아, 사약(死藥)을 받든가, 장살(杖殺)되든가 원류(遠流)되는 등의 화는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 때, 조광조 등의 도학소장파(道學少壯派)는 모조리 대궐로 끌려들었다. 남곤 등 반도집단(反徒集團)은 이 때 정적을 일거에 말살하기 위해 발을 구르고 팔을 흔들어대면서 「그 자리에서 놈들을 때려죽여라!」고 소란을 피웠다.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 병조판서¹³⁷⁾ 이장곤(李長坤)¹³⁸⁾·좌의정¹³⁹⁾ 안당(安塘)¹⁴⁰⁾ 등은 중재에 나서 비법적(非法的)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도록 왕에게 애원하고, 영의정(수상) 정광필(鄭光弼)¹⁴¹⁾도 또한 「신진의 젊은 선비들이 현실을 무시해서 옛 제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실시한 것일뿐」이라고 눈물로 설득한 것이 화근이 되어 투옥되는 등 강압의 폭풍이 불어왔었다. 그들은 굶은 늑대의 무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132) 왕명에 의해 고관을 치죄하는 고등재판소.

133) 종5품직.

134) 1471~1531, 호 逍遙亭.

135) 1458~1522, 호 懶軒.

136) 1482~1520, 호 沙西.

137) 국방대신.

138) 호는 琴齋.

139) 부수상 격.

140) 1460~1521, 호 永慕堂.

141) 1462~1538, 호 守天.

그래서 이세번 등은 그 지독한 수법에 분개했고 즉시 성균관의 태학생(太學生)들과 경향 각지의 유생들이 광화문(경복궁의 정문) 밖에 잇따라 몰려들어 밤낮으로 호곡(號哭)하면서 조광조 등의 무실(無實)을 계속 직소(直訴)했다. 그러나 신경질적인 증중은 그 격심한 항의의 폭풍도 되돌아보지 않고 어디까지나 신흥세력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이세번 등을 조광조의 일파로 밀어붙이고 투옥했다.

그래서 이세번은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받은 다음, 이렇다는 죄명도 없이 「기묘사화」의 이듬해인 증중 15년(1520) 제주도 둔개(屯浦)¹⁴²⁾에 장류(杖流)되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초법률적인 단죄라고도 할만하다.

그는 여기서 이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정쟁(政爭)에 심한 혐오감을 느껴 이제부터의 흥학(興學)의 교화(敎化)에 일생을 바칠 결심을 해서 많은 경서를 읽어지고 삼다도의 배소로 건너갔다. 그래서 그는 유폐된 흙땅에 앉아 독서에 몰두,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세월의 흐름을 잊었다. 그러다가 병상에 눕게 되어 적거 7년째인 증중 21년(1526) 마을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에 넘친 생애를 조용히 마쳤다. 부음(訃音)을 듣고 처자들도 배소로 건너왔지만, 현모양처로 이름이 높았던 석씨(昔氏)부인도 아픈 상심(傷心)을 지닌 채 타계하고 말았다. 아들인 충현(忠賢)은 사마진사과(司馬進士科)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성균관의 별칭) 유생으로서 수학중(修學中)이었지만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그대로 그 땅에 정착하여 주변의 주민을 가르치고, 마을의 개척에 헌신했다.

그의 높은 학덕과 효심은 지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교학진흥과

142) 지금의 新桃里.

문화발전에 특필할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 후 이세번은 제주도에
흐터져 사는 고부 이씨(古阜李氏)의 입도조로서 경모(敬慕)되고 그 후예
들은 대정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다. 인조 원년(1544), 조광조 등
이 신원(伸冤)¹⁴³⁾됨과 동시에 이세번도 또한 다시 관작이 추복(追復)되
었던 것이다.

김세한(金世翰)

...조부의 죄에 연좌해서...

심연원(沈連源)¹⁴⁴⁾이 부제학(副提學)¹⁴⁵⁾으로부터 제주목사로 전근해
왔을 때, 옥중에서 억양(抑揚)이 없는 남자의 곡성(哭聲)이 먼 산울림과
같이 아스라이 들려왔다. 목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귀를 기우려
듣고 보니 현인(賢人)이 돌아갔다! 현인이 돌아갔다!고 하는 어찌면 자
포자기로 들리는 중얼거림이기도 했다. 그것은 적인(謫人) 김세한(金世
翰)의 곡성이었다. 목사는 남몰래 사람을 보내어 우는 까닭을 들어보
니 현인인 왕부(王父)¹⁴⁶⁾의 부음을 듣고 우는 것이라고 눈물 지었다.

세한은 기사(騎射)를 잘 하고 근골(筋骨)이 건장하여 힘이 센 점에 있
어서는 무사의 제1인자였다. 관직은 병조정랑(兵曹正郞)¹⁴⁷⁾이었다. 그런
그가 조부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그 후 방면
되어 재차 관직에 돌아가 병사(兵使)¹⁴⁸⁾가 되어 있다. <寄齋雜記>

143) 원죄가 풀리는 일.

144) 1491~1558, 호는 保庵.

145) 홍문관의 정3품관.

146) 할아버지.

147) 정5품관.

148) 병마절도사, 지방의 군사령관.

122 濟州島流人傳

명종조(明宗朝 · 1545~67)

유희춘(柳希春)·손홍적(孫弘績)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좌해서...

조광조 일파에 의한 혁신정치는 실패로 끝났다. 그로부터 20년 간은 권신(權臣) 사이에서 정권의 쟁탈이 음습(陰濕)하게 되풀이 되고, 그것은 또 권신 간의 쟁투가 되어 격렬히 전개되었다. 즉 그것은 중종의 이복형제 사이에 일어난 왕위 계승문제를 둘러싸고, 외척사이에서 전개된 분쟁이었다.

1544년에 중종이 사망하자 중종의 제1계비(繼妃) 장경(章敬)왕후 윤씨 소생의 인종(仁宗 · 재위 1544~45)이 왕위를 계승했다. 따라서 장경왕후의 오빠, 말하자면 인종의 외숙인 윤임(尹壬 · 大尹) 일파가 권력을 잡게 되자, 숨을 죽이고 있던 많은 사류(士類)가 정부의 중추에 등용됨과 동시에, 뛰어난 문학자인 이언적(李彦迪)¹⁴⁹⁾ · 유관(柳灌)¹⁵⁰⁾ · 성세창(成世昌) 등이 대신으로 중용되어 사림유생은 한 때 기세를 만회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인종이 불과 재위 8개월만에 홍거(薨去)하자, 이번엔 중종의 제2계비 문정(文正)왕후(尹元衡의 누나) 윤씨 소생의, 불과 12세의 명종(明宗)이 왕위에 오르게되어 형세는 완전히 역전, 정권은 윤원형(尹元衡)¹⁵¹⁾의 수중에 들어갔다.

149) 1491~1533, 호는 晦齋.

150) 1484~1545, 호는 松庵.

151) ?~1565, 小尹의 長.

그러나 이들 왕의 외척 간에는 중종의 재위 당시, 이미 왕위의 계승권을 둘러싸서 대립과 알력이 생겼다.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¹⁵²⁾하게 되자, 정권을 잡은 명종의 외척 일파는 그 반대세력인 인종의 외척 일파를 정권으로부터 추방하는 의옥(疑獄)을 야기시켰다. 그것은 외척세력 간의 권력 다툼을 위한 대립·암투였지만 역시 양반관료들도 이에 관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일방적이긴 하지만 학벌과 정치이념 상의 문제가 개재한 관료 사이의 대립이, 끝내는 순전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상호 투쟁으로 전환해 간 것이었다.

조정의 공기는 일변했다. 따뜻한 분위기는 모습을 감추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궁정의 안팎은 건잡을 수 없는 뜬 소문으로 들끓었다. 형조판서(법무대신) 윤임¹⁵³⁾이 좌의정(부수장)인 유관과 이조판서(내무대신)인 유인숙(柳仁淑) 등과 짜서 신왕을 배척하고 봉성군(鳳城君)¹⁵⁴⁾을 세울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한다. 예조참의(문교차관) 윤원형을 둘러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¹⁵⁵⁾ 정순명(鄭順明)·병조판서 이기(李芑)·호조판서 임백령(林百齡)·공조판서(상공대신) 허자(許磁) 등은 대운파(大尹派)를 박멸하기 위해 매일과 같이 윤원형의 저택에 모여 밀의(密議)를 했으며 원형의 첩 난정(蘭貞)은 난정대로 대왕대비를 만나서는 설 새 없이 귀뜸을 한다. 윤임과 그 일파인 유관·유인숙 등을 반역음모죄로 처단하라는 밀지(密旨)를 내리도록 유도했다.

152) 왕비나 왕대비가 발 넘어로 군신(群臣)을 접견하면서 정사(政事)를 보는 일. 옛날 중국에서 남녀의 구별을 엄하게 하기 위해 황태후(皇太后)·태후 등이 군신과 만날 때에 그 앞에 발을 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153) 1484~1545, 大尹의 長.

154) 중종의 6남, 熙嬪홍씨의 아들.

155) 중추부의 우두머리·정2품관.

이 때 대사헌 민제인(閔齊仁)·대간(大諫) 김광준(金光準)·집의(執義) 송희규(宋希圭)·사간(司諫) 박광우(朴光佑)·장령(掌令) 정희등(鄭希登)·이언침(李彦枕)·지평(持平) 김저(金儲)·민기문(閔起文)·헌납(獻納) 백인걸(白仁傑)·정언(正言) 유희춘(柳希春)·김난상(金鸞祥) 등 대간(臺諫)들이 이 꺼림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회의를 열었다.

거기서 민제인이 먼저 발언했다. 「지금의 대신 2,3명을 자전(慈殿·왕모)이 의심하고 있는 바이다. 밑지가 있어 만일 그 일단(一端)을 고발한다면 매우 두려워할만한 화를 나라에 남기게 될 것이다」고 하자 좌중의 모두가 분연(憤然)히 말한다. 이것은 곧 간인(奸人)이 화를 꾸며낸 것, 결코 목인할 수는 없다고 입을 맞춘다. 이어 김저가 말한다. 「그것은 다시 남곤·심정 등의 짓을 되풀이하는 것이다」고 하자 잇따라 송희규가 말한다. 「내 뼈가 가루로 부서진다 해도 단연코 그에 따르지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같이 대사헌인 민제인이 여러 날에 걸쳐 양사(兩司)¹⁵⁶⁾의 언관(言官)들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윤원형 일파의 모략이라고 처음부터 거절했다. 그 때, 윤원형·이기¹⁵⁷⁾ 등은 광화문에 회합하여 계략을 자세히 세운 다음, 양전(兩殿)을 충순당(忠順堂)으로 맞아 윤임 등의 죄를 의결했다. 그 자리에 있던 정언(正言)¹⁵⁸⁾ 유희춘도 집의¹⁵⁹⁾ 이하의 관원들과 더불어 그 추악한 음모와 책략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고 분연히 자리를 차고 퇴출했지만, 헌납(獻納)¹⁶⁰⁾ 백인걸만이 뒤에 남

156) 사헌부·사간원.

157) 1476~1552, 이 두 사람을 二凶이라고 한다.

158) 사간원의 종3품관.

159) 사헌부의 종3품관.

160) 사간원의 정5품관.

아 최후까지 항계(抗啓)했다. 이에 문정왕후는 크게 노하여 즉각 백인
걸을 하옥함과 함께 송희규 등을 해직하는 것이었다.

그 때 좌찬성(左贊成)¹⁶¹⁾ 이언적이 진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실의
죄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신하되는 자,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해서
사악(邪惡)한 마음 같은 걸 품는 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윤임(尹任)
을 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서 밀지를 승지원(承知院)¹⁶²⁾에 내리지 않
고, 다른 곳으로 내리신 것은 어떤 때문입니까? 또 신하의 길은 우리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선왕(先王)에 충성을 다
한 사람을 어떻게 벌하실 수가 있는지요…」라고. 그 위에 병조판서¹⁶³⁾
권발(權撥)도 「…널리 중의(衆議)를 모아 공명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간절히 대비에게 진언했지만 어느 것도 주효되지 않았다. 결국 윤임·
유관·유인숙 등은 윤원형·이기 등이 기도한대로 「대역무도죄」로 꾸
며져 유배당하는 도중, 사사(賜死)되었던 것이다. 또 계림군(桂林君)¹⁶⁴⁾
은 윤임의 조카임으로 그것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고하지 않았던 죄로 서소문 밖에서 4두(頭)의 우차(牛車)에 찢겼다.

이상이 을사년, 말하자면 명종이 즉위한 해(1545)에 일어난 화옥(禍
獄)인데 그 여열(余熱)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5~6년간에 걸쳐, 윤임
등을 지지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죄명 아래 1백여명의 적대세력이 살
해와 유배형에 의해 정권으로부터 추방되고 있다. 그야말로 의심은 의
심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르는, 세상의 흐름이었다.

「을사사화」의 이듬해 건원지간(犬猿之間)이었던 윤원로(尹元老)와 원형

161) 의정부의 종1품관.

162) 大臣府.

163) 李芑는 우상으로 승진.

164) 璫. 성종의 손자.

의 두 형제는 죽음을 걸고 권력을 다투었는데 드디어 형이 패하여 유배된 다음 사사되었던 것이다. 또 그 이듬해의 괴벽사건(怪壁事件)¹⁶⁵⁾에 관련하여 또 다시 많은 유생계급의 사람들이 참화를 입었던 것이다.

즉 1547년 9월, 부제학 정언각(鄭彦敬)이 딸과 사위가 전라도로 떠나는 것을 전송하기 위해 양재역(良才驛)까지 갔는데, 거기에 의심스러운 글이 나붙어 있었다. 보아하니 붉은 염료로 쓰여있는데, 물론 서명은 없다. 내용은 「여왕 위에 권세를 잡고 간신 이기(奸臣 李芑) 등이 밑으로 권력을 놓(弄)한다. 나라가 이제 망하려는 것을 서서 보는 것 같다. 어찌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때는 중추(仲秋)의 회일(晦日 : 그믐)」이라고 되어있다.

정언각은 그 침부물을 떼내어 갖고 돌아와 왕께 전달했다. 왕과 대비는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편찮아, 작년과 재작년의 죄인에 대한 처벌이 따뜻미지근했다. 그 일당의 처사에 틀림없다고 간단히 결정, 즉시 윤인경(尹仁鏡)·이기·정순명·김광준·윤원형·허자 등의 측근을 불러모아 그것을 보이면서 노발대발했다.

그러자 이기·윤원형·정순명 등은 이러한 사론(邪論)은 을사옥(乙巳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증거라고 격노했다. 그래서 피에 굶주린 살인자들은 윤임파의 잔당(殘黨)이라고 여겨지는 자는 모조리 근절할 작정으로, 우선 봉성군(鳳城君)¹⁶⁶⁾·송인수·이약빙(李若氷)·임형수(林亨秀)¹⁶⁷⁾ 등은 처형되고 권발·이언적·정자(鄭磁)·노수신(盧守愼)·

165) 벽에 정부를 비난하는 뼈대를 붙인 사건.

166) 중종의 서자, 8남, 峴.

167) 임형수(1504~47), 자는 사수(士遂), 호를 금호(錦湖)라고 했다. 부제학으로부터 제주목사로 좌천되어 명종2년(1547)에 일어난 정미벽서사건(丁未壁書事件) 때, 사사되었다. 임종 때 자식들을 불러모아 유언으로 「너희들은 결코 학문을 하지말라, 더구나 관리는 되지말라」고 한 얘기는 유명하다.

김저·박인걸·유희춘 등 20여 명은 매를 맞인 뒤 유배되었다. 주인의 죄를 조작하기 위해 살해된, 이름도 없는 하인들의 목숨은 새끼줄과도 같았다. 또한 잔혹하게도 윤임·유관·유인숙의 무덤을 파헤친 다음 시체를 끄집어내어 갈기갈기 토막내었을뿐 아니라 일족 중 남자는 목매달아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보내졌다.

즉 유희춘은 「을사사화」 때 이미 화를 입어 벽서(壁書)의 옥(獄·丁未士禍)이 일어나자 윤임의 여당(餘黨)으로 지목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그가 제주도의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뒤에 종성(鐘城)으로 이배되어 있다.

유희춘(1513~77)은 자를 인중(仁仲), 아호를 미암(眉岩)이라고 했다. 선산(善山)사람.

중종 33년(1538) 문과(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정언이 된다. 적거(謫居)19년. 선조 원년(1567) 대사령에 의해 방환(放還)되었다. 선조가 잠저(潛邸)168)에 있을 때, 희춘에게 배웠다. 선조의 특명에 의해 부제학에 서수(敍授)되었다. 그 후 그는 관에서 물러나서 야인이 되어 시골에 있으면서도 군주를 연모하여 이렇게 읊었다.

미나리 한 뿌리 뽑아서 씻었다.

다름 아닌 임금님께 바치려한다.

맛은 얇아도 씹으면 맛이 좋아

※ 미나리는 조선의 가는 곳마다 있어 봄으로부터 여름에 걸쳐 좋아해서 먹는 야채.

그는 널리 경학(經學)에 정통하고 특히 주자학에 조예가 깊었다. 너무 청렴결백해서 그 날 그 날의 양식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죽

168) 왕세자 때 있던 저택.

은 다음 찬성(贊成)이 추서되고 시호를 「문절(文節)」이라고 했다. 저서에 「미암일기」가 있다.

을사사화·불온한 벽서사건의 여파는 이어져 한양은 공포의 도가니로 화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사죄(死罪)가 되고 또 태형(笞刑)을 당한 위에 여기 저기 변방으로 유배되는 도중이었다. 썸이 없는 대미나 윤원형의 눈에는 이제 형제도 없을만큼 광기(狂氣)에 차 있었다. 천하가 피바다가 될 때까지 방해되는 자는 남김없이 목을 베려했던 것인가? 이듬해 2월에 무리난제(無理難題)를 퍼부어 박사(博士: 홍문관의 정7품관) 안명세(安名世)를 사형시킨 것을 계기로 시작된 피의 선풍(旋風)은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와도 그칠 줄을 몰랐다. 조박(趙璞)은 매를 맞고 유배되었으나 도중에서 죽고 손홍적(孫弘績)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손홍적의 자는 언성(彦盛), 밀양 사람이다. 중종 35년(1540) 생원과(生員科: 진사)에, 동 38년 문과에 올랐으나 끝내는 윤임의 여당으로 간주되어 명종 3년(1546) 제주도로 장배(杖配)된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알 수 없다.

<明宗實錄·朝野輯要·국사대사전>

이희손(李希孫)

...왜구의 침범을 방비(防備)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이희손(李希孫)의 자는 공망(公望), 종실(宗室) 양녕대군(讓寧大君)지(祗)의 현손이다. 중종 26년(1531)에 생원과(明經科)에 급제하여 2년후 문과에 올라 검열(檢閱)¹⁶⁹⁾을 시작으로 내외에 역관(歷官)하여 광주(光州)를 다스렸다.

169) 예문과의 정9품관.

그 즈음인 16세기 중엽, 조선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과 그 선원수에 대해 그 때까지 이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 후 다시 경상도·전라도의 연안 일대에 포박무도한 왜구(일본의 해적)가 만연하기 시작, 명종 10년(1555)에는 수십척의 해적선이 전라도 연안을 침공해 왔다.

그 때 이희손은 강진현(康津縣)을 분어(分禦)하고 있었는데, 본디 남방의 병사들은 힘이 약해 해적선단의 맹공(猛攻)에 떨어져 분탕(焚蕩)¹⁷⁰⁾을 격퇴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이희손은 패인(敗因)의 책임을 추궁받아 충군형(充軍刑)에 처해졌다. 그 결과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한 방호소(防護所)의 군역에 종사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듬해의 5월, 이번엔 왜구의 40여척이나 되는 대선단이 제주도의 연안을 강습(強襲)해 왔다. 선원들이 차례 차례로 불법 상륙, 인가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함과 동시에 별도진(別刀陣: 禾北)을 점령한 다음 제주성을 포위·공격해 왔다. 그러자 이희손은 즉각 군에 자원하여, 군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전(善戰), 3백여명의 적을 때려 죽이고 적선 5척을 격침, 1백여척을 나포하는 등의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그는 참군(參軍)의 공(功)이 1등으로 기록되어 면죄됨과 동시에 귀경, 다시 무관에 임명되어 오위장(五衛將)¹⁷¹⁾에 발탁 등용되었다.

170) 불 살라진 흔적이 없어진다.

171) 도성을 수비하는 정3품의 무관직.

요승 보우(妖僧 普雨)

…불교 재흥(再興)의 이름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죄에 의해…

명종(明宗·1547~67) 초, 왕후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자 승불(崇佛) 정책이 되살아나, 시대에 역행을 생각해 하는 것이 있었다. 보우(普雨)는 명종 초의 승, 선종판서도대선사(禪宗判書都大禪師)로서 호를 허응당(虛應堂) 또는 나암(懶庵)이라고도 했다. 인제백담사(麟蹄百潭寺)의 승이라고 하고 또는 강원도 양양 신흥사(襄陽 神興寺)의 승이라고도 해서, 그의 정체가 자세하지 않다.

문정왕후가 대단히 불교를 숭상해서 널리 명승(名僧)을 찾아내도록 하명하자, 강원도 감사(監司)¹⁷²⁾ 정만중(鄭萬鐘)이 보우를 추천했다든가, 또는 보우 자신이 그런 소식을 듣고 금강산으로부터 봉은사(奉恩寺)로 옮겨 가, 행동을 차분히 하여 고승답게 처세했으므로 내수사(內需司)¹⁷³⁾의 유사(有司)가 이 자를 왕후에게 계달(啓達)했다는 등의 설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가 왕후에게 접근해 간 경위는 아무래도 확실치가 않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그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僧徒之首普雨也 雨初寓金剛山爲水陸齋 遠近雲聚 唯其所言 得貨如山 雨以奸猾之賊 資廣長之舌 雖土流亦 有交遊書

보우는 중들의 우두머리이다. 보우는 처음에 금강산에 살면서 수륙재를 하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이 모여들었다. 오직 그는 말하는 것으

172) 지금의 도지사.

173) 관아의 하나.

로 재물을 산과 같이 얻었다. 보우는 간활로써 (사람들) 해치는데 장광
설을 자료로 하였으므로 비록 선비라 하여도 사귀어 노는 글이 있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그의 발신(發身)은 금강산이며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서담일기(西潭日記)」에

初僧普雨以設無遮大會 爲僧俗所推敬 聲聞干闕上關文定王后
因之得勢 誑惑世人 大張佛寺設兩宗禪科 普雨稱得道 居處僭擬大內

(처음에 중 보우는 무차대회를 베풀어 중과 세속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명
성과 문망이 궁궐까지 퍼져 문정왕후에 이어짐으로써 세력을 얻어 세상사람
들을 현혹시켰다. 절을 크게 일으키고 양종의 승과를 설치하였다. 보우는 득
도하였다고 일컬어 참람하게 대내에 거처하였다.)

라고 쓰여있는 바와 같이 보우는 문정왕후의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세
력을 획득하여 스스로 불도(佛道)를 닦아 깨우쳤다고 자랑하고 크게 불
법을 확장해서 승속(僧俗)이 추경(推敬)하는 바가 되었다. 내전(內殿)에 있
어서 선·교양종제(禪·敎兩宗制)와 선과(禪科)를 부활하여 거의 문과(문관
시험)를 흉내 내고 또 승의 도첩(度牒)¹⁷⁴⁾을 발급했다.

그러나 명종 5년(1550) 문정왕후가 보우의 진언을 받아들여 양종의 승
과를 부활시키자, 양반의 사류(士類)들이 소리 높이 상소(진정)해서, 보우
는 요승(妖僧)이므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도록 절언(切言)하고 있다.

유신들이 불교가 유교의 교리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배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의 숭불정책의 덕택으로 전국8도의 사찰은 갑작스
리 숨을 되돌렸다. 따라서 보우는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정

174) 승려가 되는 증명서.

능(靖陵)의 봉은사를 수선사(首禪寺)로 하여 선종과 교종(敎宗)의 양종의 판서(判書)로서 여기에서 주지(住持)를 하면서 팔도의 선·교 양종의 종무(宗務)를 다스렸던 것이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문정왕후 매우 불사(佛事)를 숭상하다. 승 보우라는 자, 글을 잘 하여 불교를 풀었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보우는 불학(佛學)에 있어서도 당시 중승(衆僧)에 탁월했던 것 같다. 당시의 장령(掌令)¹⁷⁵⁾ 이충탁(李忠卓)이 요승 보우의 죄상을 논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도 그가 야심가이며 음모가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의 앞길에는 이미 어두운 구름이 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로 더구나 왕사(王師·國師)의 융성함에 비할 것도 없던 보우도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마치 시궁창의 쥐와도 같이 얼마없어 간신(諛臣)들의 진언에 의해 절에서 추방되어 서울 근교의 사찰에 출입하는 것을 엄금(嚴禁) 당했다.

선조 25년(1592)에 제주목사로 임명된 이경록(李慶祿·1533~1599)도 어릴 적에 보우의 무례에 분격하여 그를 때렸는데 그의 제자들이 재빠르게 둘러싸여 협박 당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운명의 날이 각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것을 탐지한 보우는 남의 말을 훔쳐내어 힘껏 달렸지만 강원도 인제군에 도착했을 때 붙잡혔다.

유생들이 그를 요승이라고 해서 즉시 주살(誅殺)해야한다고 잇따라 상소했지만 왕은 좀처럼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 이이(李珥)¹⁷⁶⁾가 상소하여 말했다. 「생모의 양암(諒闇)¹⁷⁷⁾중에 그 애신(愛臣)을 처형한다는

175) 사헌부의 정4품관.

176) 1536~84, 호는 栗谷.

것은 참기 어려운 일, 아무쪼록 먼 곳으로 찬류(羶流)할 일」이라고. 명중은 그의 관대한 처치방법을 받아들여 드디어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우는 제주도에 유배된 다음 제주목사 변협(邊協)에게 장살(杖殺)당하고 있다. 사류들은 이것을 흔쾌하게 여겼다고 하지만, 목사에게 장살 당한 것이 아니라 40여명의 무사들 주먹에 맞아 죽은 것 같다.

유몽인(柳夢寅·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보우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보우는 요승이다. 많은 경서(經書)에 밝고 시·서(詩·書)도 잘 했다. 춘천 청평산(淸平山)에 거처를 정하자, 원근에 있는 불도들이 존숭(尊崇)해서 환영하지 않는 자 없었다. 가정연간(嘉靖年間)178)에 봉선(奉先)·봉은(奉恩)양사의 무차대회(無遮大會)179)를 봉선사에서 열었던 바, 수백석의 식량을 내놓아 승려들을 먹였을뿐 아니라 장식이나 규모가 대단하여 여기에 모여든 승려의 수가 자그만치 수천을 헤아렸다. 보우는 명주로 만든 화사한 가사(袈裟)를 걸치고 수만의 승려가 옹위(擁衛)하는 가운데 상좌로 올라갔다.

이 때 한 사람의 노승이 나타나서 말석에 앉았다. 보아하니 몸에는 누더기 가사를 걸치고 겨우 선장(禪杖)에 의지하고 있었다. 상좌에서 거들먹거리던 보우가 그 노승을 보자 얼굴 빛을 바꾸며 허겁지겁 내려와서 절을 한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박고 쳐다보지도 못한다. 보아하니 보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 땅을 적시는 것이었다. 노승

177) 상중에 있는 사이.

178) 1522~66, 명종조.

179) 무차(無遮)란 사안을 관용(寬容)해서 차단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원각경(圓覺經)」에 「惟願不捨無遮大悲爲諸菩薩開秘密藏」이라고 되어있으며 「능엄경(楞嚴經)」에 「如來開闡無遮度諸疑謗」이라고 되어있다. 이 의미에 있어서의 범령을 말한다.

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아! 나는 네가 이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재빨리 사라졌다.

많은 승들이 그 모습을 이상케 여겨 노승의 도호(道號)를 물었더니 지행(智行)이라고 했다. 보우는 고승 일선(一善)에게 도(道)를 구하려고 정중한 예물을 갖고 마중하러 갔는데 일선 또한 아무말도 없이 시 한 수를 크게 써서 던질 뿐이었다.

雲橫奏嶺家何在 雪橫藍關馬不前

구름이 고개를 가로지르니 내집은 어디에 있는가?
눈이 평평내려 앞길을 막으니 말은 전진할 수 없다

면서 일선은 최후까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 일이 실패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보우는 한계사(漢溪寺)의 암굴(岩窟)에 몸을 숨겨 있었는데 이내 발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도목사는 보우를 객사(客舍)¹⁸⁰⁾의 청소부 일을 시켰으나 매일 힘센 무사 40여명으로 하여금 한 차례씩 주먹으로 때리도록 했다. 그 때문에 보우는 끝내 주먹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아무튼 간에 「교만한 자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듯, 그의 마지막은 보기에조차 참한 것이었다.

<조선불교사>

180) 중앙의 관리를 맞아들이는 집.

제4장 당쟁(黨爭)의 개요(概要)

이상 네 번의 사화가 되풀이되는 중에 봉건지배계급 사이에 권력 항쟁은 더욱 심해져 선조 초기부터는 드디어 당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중종 이후의 외척 분쟁 중에 이미 동서분당(分黨)의 잠재세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요컨대 폐왕 연산군 이래 조사간(朝士間)에 얽혀진 항쟁·배제(排擠)의 기분과 왕권의 쇠미(衰微) 등이 당파의 분쟁을 양성(釀成)하기에 이른 원인의 주된 것이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의 중엽에 걸쳐 되풀이 된 정쟁과 의욕은 사류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뿐 아니라 양반관료체제 그 자체를 크게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조선봉건사회의 유교적인 정치체제 아래서는 유학(儒學)을 수업(修業)하는 이외에 입신출세와 영달의 길은 없었다. 따라서 학문과 덕행이 관리로 발탁되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었음이 틀림 없으나, 어느덧 모든 양반사대부의 자제에게 그 신분과 학문만으로 출세영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치 정세는 양반 관료들 사이에 순전히 정권 쟁탈을 위한

권력 투쟁을 불러일으켰을뿐 아니라 대다수의 관료에게 명예로운 고루(孤壘)를 지킬 수 없도록 하여 대립된 세력의 어느 쪽인가에 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된 것은 16세기의 후반기에 들어선 다음의 일로 이제 이것은 관료 사이의 대립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분열이었다. 이른바 「당쟁」이라고 하는 것의 발단은 다름 아닌 「관료천국(官僚天國)」이라는 인사권을 둘러싼 관료 간의 알력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그 추이(推移)를 말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당쟁」이 정책수행이나 정치쇄신의 수단으로 쓰인 게 아니라 「권력을 위한 권력」으로 타락해 갔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동서분당의 시작은 선조 8년(1575)부터이다. 선조(재위 1567~1608) 때, 심의겸(沈義謙)¹⁾과 김효원(金孝元)²⁾의 둘이 「전랑(銓郎)」 추천 문제에 관해서 반목질시한 것이 당쟁·분당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전랑」이란 내·외관의 인사권을 관장하는 요직이지만 「팔역지(八域誌)」에 따르면 삼공(三公)³⁾·육향(六鄉)⁴⁾을 둔다고 해도, 내·외의 서수(叙授)는 삼공에서 하지 않고 오로지 이를 이조(吏曹·내무부)에 속하도록 했다. 또 이조의 권한의 편중을 고려하여 당시 가장 중시(重視)되었던 삼사(三司)⁵⁾의 인선은 이조판서의 아래인 정랑(正郎)⁶⁾·좌랑(佐郎)⁷⁾이 시행하고 판서는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전랑」은 그 직계(職階)는 정5품에 지

1) 1535~87, 호는 巽庵.

2) 1532~90, 호는 省庵.

3) 영의정·좌·우의정.

4) 육조판서.

5) 홍문관·사헌부·사간원.

6) 정5품, 국장급.

7) 정5품, 과장급.

나지 않았으나 그 실권은 대단히 강대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관직을 이임할 때에는 그 후임을 스스로 추천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관직에 추거(推舉)시킨 자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져 있었다.

이와같이 인사권을 둘러싸서 심·김 양가가 반목한 것이 기성의 관료세력과 신진관료의 분열로 되어 확대되어 나갔다. 그래서 동인·서인·남인·북인이란 것은 각 파의 영수(領袖·영도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붙여진 당파의 칭호이다. 더구나 당파의 분열은 학문상의 견해의 차이나 사제(師弟)·교우(交友)라고 하는 인간관계까지 얽히고 설리게 되어 당쟁은 더욱 격화의 일로를 더듬게 된다.

조선조시대에 있어서 정치상 및 사회상(社會上) 가장 현저한 사상(事象)의 하나로서 나타난 당쟁이란 것은 조선 519년 중 거의 3백여년에 걸쳐 치열하게 되풀이 되었던 것으로 그 사안이 복잡하고 또한 참담한 것을 여기서 해명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정책의 방법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자잘한 예절·상례(喪禮)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격렬히 다투어 그 파벌항쟁은 뜻밖이라고 할만큼 무서운 사회적 참극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이윽고 피로서 피를 씻는 당쟁으로까지 발전하여 끝내는 그 패자들은 사형·유형·장형·태형·과직, 그리고 사사(賜死)한다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당쟁의 주체를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관인층(官人層)의 사류(士類)였다. 어떤 포박한 박해를 받고 아무리 얻어맞아도 속속 뒤따르는 사류의 저력(底力)과 그 당파적 결합이 「당쟁」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들은 많은 사화와 중상·모략에 의한 유혈의 참학(慘虐)을 경험한 것이다. 한번 분열하면 육친이라고 해도 시기·반목하여 적대

당(敵對黨)과의 인척관계는 고사하고 교제조차 꿈에도 바랄 수 없었다. 당쟁은 말할 것도 없이 중앙정권의 탈취가 중국의 목적이었다. 수단을 고를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국왕이 암우(暗愚)한 때는, 그것을 자기 편으로 감싸, 왕위·왕비·세자 책봉의 인선이나 왕실의 경조시(慶弔時)의 기간·복장 등을 규정하는, 형식적 예의론에 목숨 걸고 항쟁하여 무익한 살육이 쉴 새 없이 되풀이 되었다. 그 때문에 많은 우수한 인재는 차례 차례 제거 당하고, 정국은 안정하지 못해 외족(外族)의 침구(侵寇)와 더불어 정치는 혼란하여 나라는 망하여 갔던 것이다.朋黨(朋黨)은 동인·서인으로 나뉘져 싸우다가 동인은 남인·북인으로 재분파(再分派)하고 얼마없어 그것은 더욱 세분화되어 서인도 몇개의 당파로 나뉘졌다. 이제 당파의 소장(消長)과 그 주된 당파는 대체로 다음 표와 같은 것이었다.

<표 2> 조선당쟁의 개관표(概觀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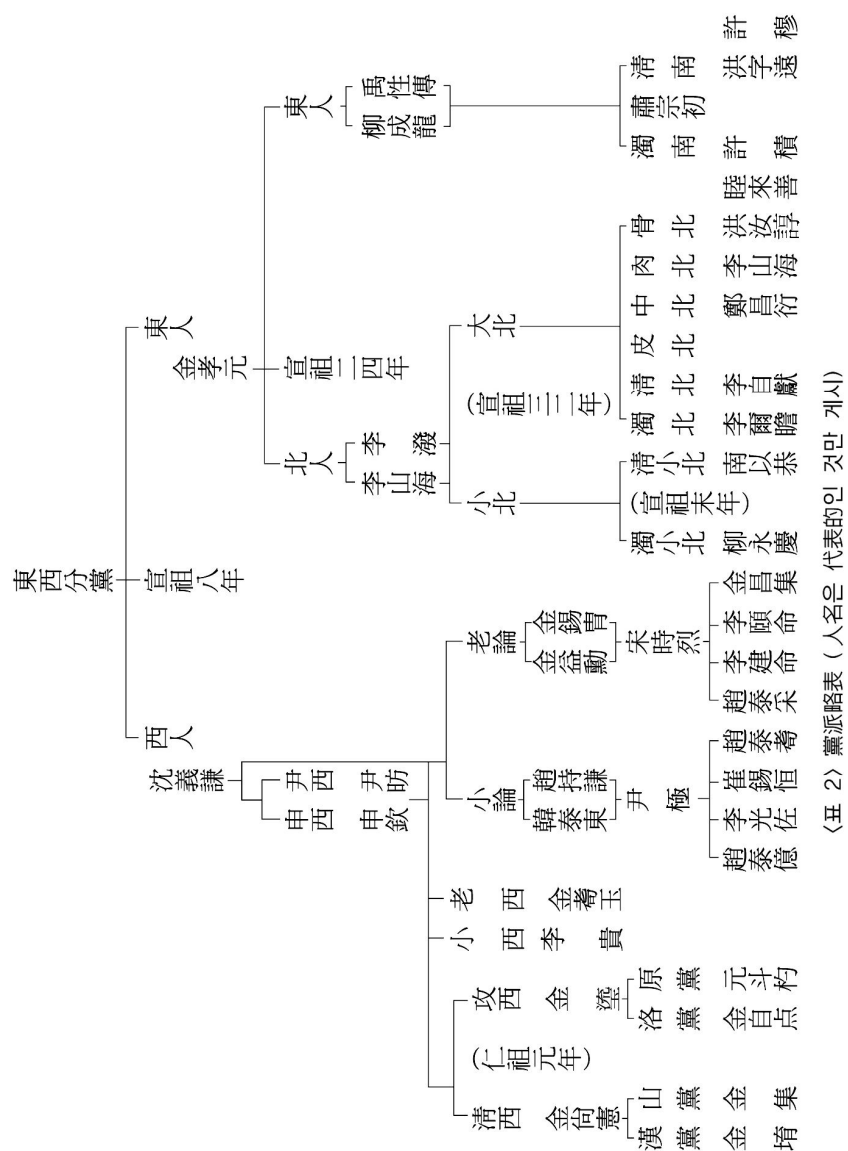
제14대 선조 8년(동서분당 1575) ~제15대 광해 15년(1622)	약 50년간(동인우세 남인·북인 분열)
제16대 인조원년(1623) ~제18대 현종 15년(1674)	약 50년간 서인우세
제19대 숙종원년(1675) ~숙종 20년(1694)	약 20년간 서인·남인 싸움
제19대 숙종20년(1694) ~제20대 경종 4년(1724)	약30년간 노론·소론 싸움
제21대 영조원년(1725) ~제22대 정조 24년(1800)	약 80년 탕평·노론 우세
제23대 순조원년(1801) ~제27대 李王 4년(1910)	약 110년 노론 우세

이와 같이 심의겸과 김효원 두 사람의 사적 감정의 불화·대립이 도화선이 되어 붕당(朋黨)으로까지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일단 분당이 확실해지자 양자는 일 있을 때마다 충돌하여 서로 논란배척(論難排斥), 정적을 죄에 빠뜨려 끌어뜨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자연히 원한이 쌓이고 쌓여 끝내 그 사태를 타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 말의 학자 이건창(李建昌)⁸⁾은 「동한(東漢)·당(唐)·송(宋), 어느 때에나 붕당이란 게 없지는 않았으나 어느 것이나 일부 사람들의 다툼으로서, 그 시기도 짧고 또 그 정사(正邪)도 뚜렷하다. 그런데 조선은 한 나라가 몽땅 둘이 되고 셋이 되며 넷이 되어 200여년의 오랜 세월 에 걸쳐, 합해지지도 않고 사정순역(邪正順逆) 또한 명언정론(明言定論) 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古今(古今) 붕당의 지대(至大)·지구(至久)·지난(至難)한 것이 아닐까」고 말하고 있다. 바로 그대로이다.

<東國朋黨源流·黨議通略·李朝黨爭史話>

8) 1852~98, 호는 寧齋.



선조조(宣祖朝·재위 1567~1608)

소덕유(蘇德兪[祐])

…정여립(鄭如立)의 모반사건에 연좌했다고 해서…

정여립(鄭如立·?~1589)은 선조 4년(1571)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이(李珣⁹⁾)의 문하에 출입했지만 선조 17년(1584)에 율곡이 병사하여 동인파(東人派)의 정치세력이 우세해졌으므로, 그는 권력에 빌붙고자 동인에게 가담, 수찬(修撰)¹⁰⁾에 취임했다. 그런데 까닭도 없이 이율곡을 비난 공격함으로써 드디어 왕의 노여움을 사, 그는 관직을 사퇴해서 고향인 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고향에서 많은 유생들과 교제하는 사이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드디어 야망을 품게 되어 끝내는 무력에 의한 정권 탈취를 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용의주도한 계획 아래 대동계(大同契)·동지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비기(秘記)·참설(讖說) 등으로 인심을 현혹케 하면서 반란 준비를 착착 갖춰 나갔다.

그로부터 나주(羅州)의 길삼봉(吉三峰)을 비롯하여 태인(泰仁)·고부(古阜)·남원(南元) 등지에서 많은 동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서서히 누설되어 사람들에게 차츰 알려지게 되자, 그들은 재빨리 예정을 변경하여 선조 22년(1594)의 겨울을 기하여 전라·황해 양도에서 일제히 일을 일으켜 단숨에 서울을 공략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안악군수(安岳郡守) 이축(李軸)이 그 음모를 제빨리 포착, 동년 10월,

9) 1536~84, 호는 栗谷.

10) 홍문관의 정6품관.

재령군수(載寧郡守) 박충황(朴忠僉)과 신천(信川)군수 한응인(韓應寅) 등이 황해감사(監司·지방장관) 한준(韓準)을 통해서 변(變)을 위에게 고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반란계획은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사건의 관련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 때 정여립은 관군에 쫓겨 자해하고 아들인 옥남(玉男)은 생포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동인파는 혹독한 탄압·박해를 받아 이발(李潑)·이호(李浩)·백유양(白惟讓)·유몽정(柳夢井)·최영경(崔永慶) 등 쟁쟁한 인물들이 학살 당하고, 정언신(鄭彦信)·정언지(鄭彦知)·정개청(鄭介淸) 등은 원류되었으며 노수신(盧守愼) 등은 파직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인은 대타격을 입어 전라도는 한 때 「반역향(反逆鄉)」으로 간주되어 서북인과 더불어 관계(官界) 진출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

이 「기축옥사(己丑獄事)」에 연좌하여 제주도에 유배된 자 가운데 소덕유(蘇德兪)라고 불리우는 자가 있었다. 소덕유의 경력은 기록이 없어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익산(益山) 태생으로 정여립과 숙질간이란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한 친척관계로 숙부의 역모사건에 관련을 갖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는 정여립의 반란사건이 일어난 기축년(1594)에 붙잡혀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그 후 김운절(吉雲節)이란 자가 제주도에 잠입하여 선조 35년(1601) 7월께 적인(謫人) 소덕유와 해남(海南)의 승 전수(專修) 등과 밀모(密謀)하여 지방민인 문충기(文忠基)·홍경원(洪敬源) 등 10여명을 끌어들여, 위정자의 높은 세금 공세나 무거운 부역(賦役), 게다가 권력자들의 착취압제(搾取壓制)와 빈곤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부추겨 목사를 비롯 삼읍수령(三邑守令)¹¹⁾을 모살(謀殺), 도민 전체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획책했다.

11) 제주·정의·대정 등 삼읍의 행정을 관장하는 지방관.

길운절은 경상도 선산(善山) 사람. 장령(掌令·사헌부의 정4품관)까지 지낸 길희(吉誨)의 아들이다. 「난중잡기(亂中雜記)」에 따르면 길운절은 정여립의 역모에 주동적 역할을 했던 길삼봉(吉三峰)이 틀림 없다고 한다. 말하자면

己丑逆謀有吉三峰者而不得捕 今此雲節頭有三角 兒號三云則無此疑
(기축년 역모사건에 길삼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체포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길운절이라는 자는 머리에 삼각이 있어 어릴 때에 삼운이라 불렀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정여립의 아들 옥남을 국문(鞠問)했을 때의 공술(供述)에, 길삼봉은 「권고즉파(拳叩卽破)」¹²⁾라고 했듯이 그는 상당한 팔 힘을 가진 건장한 남자 같았다. 그래서 사건에 얽힌 용의자 전원을 조사해본 바, 모두가 한결 같이 「우리들은 길삼봉을 상장군(上將軍)¹³⁾으로 내세워 반란 준비를 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정부는 놀라 수사원을 동원하여 그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찾았으나 그의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길운절이 길삼봉으로 변명(變名)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무튼 간에 길운절이 정여립의 잔당이란 것만은 거의 틀림없다. 그렇다는 것은 그새 그가 추적자의 눈을 교묘히 벗어나 제주도로 도망해서 도민의 봉기를 조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일을 약속하여 거사(學事)하기에 앞서 소덕유의 처가 그 음모를 알고 남 몰래 관에 고발했다. 당시의 제주목사 조경(趙敬)은 즉

12) 주먹으로 때리면 터진다.

13) 정3품의 무관, 전군의 총대장.

시 이 변사(變事)를 조정에 급보함과 동시에 덕유·운절·충기 등 20여 명을 한꺼번에 붙잡아 서울로 계송(械送)¹⁴⁾했다. 그 결과 그들은 궁정 마당에서 심하게 고문 당한 후 주모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살되고 정상이 무거운 자들은 과형(科刑)에, 단지 추종했던 데 지나지 않는 자들은 무죄방면 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본도병사(本道兵使) 안위(安衛)와 전 수사(水使)¹⁵⁾ 김억(金億) 등도 소환되어 사건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그래서 묘당(廟堂·議政府)에서는 제주도 백성의 질고(疾苦)를 구제하기 위해 현지에 어사(御史)¹⁶⁾ 파견을 왕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성균관¹⁷⁾의 전적(典籍)¹⁸⁾으로 있는 김상헌(金尙憲)¹⁹⁾이 어사로 뽑혔다. 그 때 비변사(備邊司)²⁰⁾에서는 특히 사목(事目) 17개조항을 만들어, 왕의 재가를 얻고 어사로 하여금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14) 죄인을 꿩꿩 묶어서 보내는 일.

15) 兵馬·水軍節制使의 약칭, 지방에 놓였던 정3품의 무관직, 巨鎮을 통솔했다.

16) 왕명을 띄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의 관직.

17) 당시의 국립중앙대학.

18) 정6품관.

19) 김상헌(金尙憲·1570~1652) 아호는 청음(淸陰). 문인이며 정치가. 김상용(金尙容)의 동생. 병자난(丙子亂)에 왕(인조)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청인(淸人)의 공격을 견딜 수 없어 드디어 중신들이 화의(和議)의 글을 썼을 때, 곁에서 이것을 보고있던 그는 화의의 글을 찢어버렸다. 이윽고 왕이 청에 항복하여 남한산성을 나올 때, 그는 태백산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청은 그를 척화파(斥和派·항복에 반대하는 파)의 거두라고 붙잡아 그대로 심양(瀋陽·盛京)으로 데려가 3년간 구류시킨 다음 풀려나 겨우 귀국할 수가 있었다. 제주목사로 온 일도 있으며 「제주오현(濟州五賢)」으로 모셔지고 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이 시는 그가 청병의 강송(強送)으로 서울을 떠날 때의 작품으로, 고결한 기성(氣性)이 넘쳐 오늘날까지 애송되고 있다.

20) 군무처리소.

「그 첫째는 과거 및 현재의 수령의 현부(賢否)에 대해 심방(尋訪)한
 번을 계문(啓聞)²¹⁾할 것. 둘째는 본주(本州)의 피수(被囚)의 죄인을 심문
 한 바를 계문하여 조정의 처지를 기다린 위에 그 가운데서 대체로 관
 계가 약한 것은 즉시 석방할 것. 셋째는 각아(各衙)에 근무하는 관원으로
 서 공사(公事)를 핑계 삼아 사사(私事)를 영위하는 자는 가차없이 적
 발해서 금지시킬 것. 넷째는 수령이 멋대로 잡물(雜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여 궁전(弓箭)²²⁾을 만드는 일에 전념토록 할 것. 다섯째는 산성(山
 城)의 형세, 민정(民情)의 편부(便否)에 대해 방문해서 얻은 바를 계문
 할 것. 여섯째는 본주의 대변선(待變船·군선)의 증감과 편부에 대해 계
 문할 것. 일곱 번째는 국마(國馬)의 필수를 점검해서 계문할 것. 여덟
 번째는 목자(牧子)²³⁾의 호수(戶數)를 조사하고 또 폐막(弊瘼)²⁴⁾을 물어
 본 결과 계문할 것. 아홉 번째는 본주인(제주인)으로서 내지(內地·육지
 부)로 옮긴 자에 대해 호적을 자세히 조사해 볼 것. 열 번째는 정배(定
 配)²⁵⁾된 죄인이 현재 몇 명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계문할 것. 열한번째
 는 삼읍의 군액(軍額)²⁶⁾과 호구(戶口)²⁷⁾에 대해 확인한 바를 계문할 것.
 열두번째는 삼읍의 군기(軍器)·군량(軍糧)·성지(城池)·기기(器機)·전
 선(戰船)·격군(格軍·船夫)에 대해 사찰한 바를 계문할 것. 열세번째는
 본주 출신의 금군(禁軍)²⁸⁾에 대해 재예(才藝)있는 자를 시험해서 채용

21) 문서로 써서 上奏한다.

22) 활과 화살.

23) 국영목장에서 말의 사육에 종사하는 자.

24) 제거하기 곤란한 폐해.

25) 일정한 장소에 유배하는 일.

26) 兵數.

27) 호수와 인원수.

28) 近衛軍에 속한 병사.

한 바를 계문할 것. 열네번째는 본주의 유생의 고강(考講)과 제술(製述)²⁹⁾은 어사로 하여금 등제(登第)해서 계문토록 할 것. 열다섯번째는 황어천(黃魚川)에 복병(伏兵)을 머물게 하여 분시보변(焚柴報變)³⁰⁾의 설비를 부활시키는데 대한 편부를 고찰하여 계문할 것. 열여섯번째는 본주의 관속(官屬)³¹⁾과 백성의 공역(工役)은 특별히 정식(定式)³²⁾에 따르도록 할 것. 열일곱번째는 수령 및 통정(通政)³³⁾ 이상은 계문한 위에 치죄(治罪)하는 것으로 하고, 통훈(通訓)³⁴⁾ 보다 아래는 장(杖) 80을 때려 스스로 처단하며 감색(監色)³⁵⁾에 대해서는 죄상을 취조한 위에 과형(科刑)할 것」이 이상이다.

이들 일련의 일을 종합해 볼 때, 정여립 역당(逆黨)의 잔도(殘徒)가 제주도에서 잠입해서 얼마나 큰 규모로 봉기태세를 취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黨議通略·국사대사전·南槎錄>

29) 시문을撰하는 일.

30) 불을 지펴 변을 알리는 일.

31) 郡衙의 屬吏나 下僕.

32) 일정한 規式.

33) 통정대부를 말함. 정3품의 당상관.

34) 통훈대부, 정3품의 당하관.

35) 관아의 하급관리인 감관과 郡衙의 吏員인 色吏의 合稱.

광해군조(光海君朝 · 1608~1623)

이홍노(李弘老)

...왕을 업수이 여겼다는 무고죄(誣告罪)에 의해...

이홍노(李弘老)는 연안(延安)사람. 자는 유보(裕甫) · 호는 판교(板橋)라고 했다. 선조 13년(1579)에 진사과(進士科 : 製述科)에 합격하고 동 17년(1583)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兵曹正郎 · 국방국장)에 취임, 동인에 속해 있었다.

선조 8년(1575), 드디어 동인 · 서인이라고 하는 두 당파의 성립을 보게 되자, 그 폐해를 우려하여 양파의 조정(調停)에 노력한 것은 이조판서(吏曹判書 : 내무대신)까지 지낸 이이(율곡)이었다. 선조 17년에 그가 병사하자 동 · 서 조화의 희망은 완전히 두절, 사류는 동 · 서 어느 쪽인가의 당에 붙지 않을 수 없는 정세가 되었다. 이율곡의 문인들은 거의 서인이었으므로 그 자신도 또한 서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는 이산해(李山海)³⁶⁾가 대신 이조판서가 되었고 노수신(盧守愼)³⁷⁾은 영의정, 유성룡(柳成龍)³⁸⁾은 예조판서(문교대신)가 되었다. 이 셋은 모두가 동인의 쟁쟁한 인물로, 서인은 차츰 일소되고 동인의 세력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동인에는 이황(李滉)³⁹⁾의 문인이 많아, 초기엔 우세했었지만 임진왜란(1592)의 전 해,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했다. 그것은 서인 정철(鄭澈)⁴⁰⁾이 건저(建

36) 1539~1609, 호는 鵝溪.

37) 1515~90, 호 蘇齋.

38) 1542~1607, 호는 西厓.

39) 1501~70, 호는 退溪.

儲)⁴¹⁾운동에 실패하여 유배형에 처해졌을 때 동인의 내부에서 그를 공격하는 태도에 완급(緩急)의 차가 생겨, 그것이 내부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지만, 그 보다도 동인인 정여립이 불러일으킨 「기축옥사(己丑獄事·1598)」의 연루자가 1천여명이나 되어 여기에서 동인의 세력은 심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동·서 양당의 분열이 생긴 다음, 정부는 인사권과 관련이 있는 조선(吏曹)의 낭관(郎官)⁴²⁾의 그 특수한 권한을 폐지했지만 그 조치에 관계없이 당쟁은 더욱 격화해 갔다.

그 즈음 일본에서도 그 국내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국내의 통일에 성공하자, 그 정복욕(征服慾)은 국외로까지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592년 봄, 히데요시는 약 15만의 대군을 조선으로 파견, 바다를 건너 부산을 공격해 왔다. 허를 찔린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그것은 총과 활의 대전(對戰)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부산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병력을 3방면으로 나눠 북상했다. 조선정부는 즉시 명장 신립(申唼)⁴³⁾을 도순변사(都巡邊使)에 임명하여 침략군의 북상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신립이 충주(忠州)에서 패했다는 보고가 전해지자 수도 서울을 방어할 전의(戰意)마저 잃고 말았다.

선조와 측근의 관료들은 의주(義州)⁴⁴⁾를 향해 피난했고 두 사람의 왕자를 강원·함경 양도로 보내 의병(義兵)을 모으도록 했다. 동인인 이흥노가 왕을 호위해서 경기도 파주(坡州)에 이르자 왕이 「성혼(成渾,

40) 1536~93, 호는 松江.

41) 왕세자 책봉.

42) 일반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육품관(六品官)을 말한다. 첩의 자손은 능(陵)·전(殿)·묘(廟)·종부사(宗簿寺) 등의 낭관(郎官)이 될 수 없었다.

43) 1546~1592, 자는 立之.

44) 지금의 新義州.

1535~98, 호는 牛溪)의 집이 이 근처라고 하는데 어디 쯤인가?」고 묻자 이흥노가 재빨리, 그럴 듯 하게 야인(野人)의 집을 가리키면서 「저기 보이는 집이 바로 성혼의 집입니다」고 하면서 강가에 있는 어떤 마을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것은 성혼이 있는 부락이 아니었다. 왕은 미심쩍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어쩌서 마중 나오질 않는 것인가! 나를 만나지 않을 작정인가?」고 반문했다. 이흥노는 그럴 듯 하게 「이 위기에 즈음하여 그가 무슨 낮으로 왕을 만나 뵈울 수 있겠습니까」고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그 때 서인 성혼은 좌찬성⁴⁵⁾ 겸 비국당(備局黨)⁴⁶⁾으로 있을 때 명의 총독 고양겸(顧養謙)이 일본과의 화의(和議)를 종용하자 영의정 유성룡⁴⁷⁾과 더불어 그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선조는 반대파의 의견을 들어 화의를 배척했다. 때 마침 화의를 주장한 전라감사 이정엄(李廷諱)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간청했던 바, 왕이 격노했으므로 성혼은 관직을 그만 두고 귀향하고 있을 때였다. 왕의 거가(車駕)가 파주에 도착했을 때, 성혼은 집에 있긴 했으나 왕의 일행이 파주를 떠난 다음에 처음으로 파천(播遷)⁴⁸⁾했다는 말을 들어, 곧 뒤를 쫓았지만 이미 때를 놓쳐 왜군이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도를 피해서 산길을 더듬어 갔다. 그런데 다행히 광해세자(光海世子)도 이천(伊川)에 와 있었다. 성혼은 광해세자의 부름을 받고 이천에 가서 광해세자를 만난 다음 영변(寧邊)에 가서 선조에게 알현한 것이다. 바로 곁에 앉아있던 이흥노는 또 참소(讒訴)해서 말했다. 「성혼이 이번에 온 것은 다름 아

45) 의정부의 중1품관.

46) 備邊司.

47) 남인의 領袖.

48) 왕이 난을 피해서 수도를 떠나는 일.

나라 광해세자를 위해 선위(禪位)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고 그럴 듯하게 고했다. 왕은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때가 비상시인 만큼 모든 것을 꺾 참아서 성혼에게 국난(國難)에 힘을 다하라고 부탁했다.

또 왕의 일행이 개성에 이르자, 문백성들이 앞을 가로막고 「서인인 정철을 유배소로부터 불러들이십시오…」라든지 「이산해를 유형에 처하십시오…」라는 등의 탄원이 잇따르고 심한 경우는 돌팔매질을 하고 악언매도(惡言罵倒)까지 한다. 왕이 도읍을 떠나면서부터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선조도 할 수 없이 민중의 소리를 받아들여 이산해·유성룡 등을 파면하고 정철·윤두수(尹斗壽)⁴⁹⁾ 등을 사면해서 곁으로 불러들였다.

바로 국가의 위급존망(危急存亡)의 때를 맞아 의병을 민간에서 모집하고 충절에 죽은, 저 유명한 조헌(趙憲)⁵⁰⁾·김천일(金千鎰)⁵¹⁾·고경명(高敬命)⁵²⁾ 등등은 모두가 서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의 등용에 대한 불만을, 동인인 이홍노는 상소해서 말한다. 「지금 정권을 담당한 대신들이 도성(都城)을 방어하지 않고 서쪽으로 피난하도록 왕에게 권고한 자를 처벌하고 이산해를 「오국적(誤國賊)」이라고 다그친다면, 반대로 지금의 대신들이 난이 일어난 당일에 대신이 되어있었다면 과연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적군을 저지하고, 도성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 그렇잖고 적군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어 도성을 떠나 여기 없었더라면, 왕을 도검(刀劍)이나 탄황의 폭풍우 속에 내쫓아, 그것으로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왕을 압록강의 강변에 쫓아놓고는

49) 1533~1601, 호는 梧陰.

50) 1544~92, 호는 重峯.

51) 1538~93, 호는 健齋.

52) 1533~92, 호는 齋峯.

나 몰라라고 유연(悠然)히 대처(對處)하여 오로지 자파 세력의 확대강화를 위해 불꽃을 튀기고, 국운(國運)이 단석(旦夕)에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들이 갑자기 왕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국정(國政)을 오도(誤導)한 것은 이전의 대신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대신들인가, 도대체 누구의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인가?」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왕의 일행이 의주에 도착하자 윤두수가 홍여순(洪汝諄)⁵³⁾과 이원익(李元翼)⁵⁴⁾을 탄핵하려고 했다. 성혼은, 원익은 탄핵 당할 죄가 없다고 반대했다. 양사(兩司)⁵⁵⁾에서는 「동인인 홍여순·이홍노·송언신(宋言愼)·임몽정(任蒙正·雲湖)·유영길(柳永吉·月蓬) 등을 유형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하면, 반대파의 이홍노 등은, 윤두수 등을 유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렇듯 국가의 운명과는 거리가 먼 항쟁을 동서로 나누어 격화했다. 슬프구나! 그것은 왜란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었다.

선조는 이 추태를 보고 용만(龍灣·義州)에 이르러 시 한 수를 짓고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보냈다.

國事蒼黃日 誰能郭⁵⁶⁾李忠
去邠⁵⁷⁾存大計 恢復仗諸公
痛哭關⁵⁸⁾山月 傷心鴨水風

53) 1547~1609, 병조판서.

54) 1547~1624, 호는 梧里, 左相.

55) 사헌부와 사간원.

56) 중국 당의 시대,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평정해서 국권을 회복한 명장 곽자의(郭子儀)·이광필(李光弼).

57) 중국의 섬서성(陝西省)에 있는 지명.

58) 국경지대의 산.

朝臣今日後 寧復更⁵⁹⁾西東

국사 다급해진 날
누가 궤자의 · 이광필과 같이 충성을 다 할 수 있을까
분관을 떠나가며 대계를 세우고
여러분을 의지하여 회복하려 했는데
관산의 달 아래서 통곡하고
압록강 바람에 마음 상한다.
조신들은 이 다음부터
어찌 다시 동인 · 서인이라 할 것인가

그러나 권력의 맹자집단(盲者集團)은 왕의 뜻도 개의치 않고 당파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항쟁에 낮과 밤을 보내며 양반관료의 무능을 유감없이 들어 내었다. 히테요시의 오만스러움과 탐욕에 의해 도발된, 전후 7년간에 걸친 이 전란은 종말을 고했지만, 전란에 의한 사회상태의 악화란 것이 양반관료 간의 분열과 파벌 싸움을 더욱 격화시켜 갔다. 유성룡은 화의를 주장하고 사(私)를 도모했다고 해서 북인인 남이공(南以恭)⁶⁰⁾에게 단단히 혼이 나고 끝내 관작을 박탈 당했다. 그 결과 남인은 순식간에 실각(失脚)하고 북인이 이에 대신하여 정치를 잡게 되었다. 남인의 실각 후, 북인의 세력은 더더욱 왕성해져 동인의 이름은 드디어 사라지기에 이르렀지만 북인 사이에는 곧 불화질시(不和嫉視)가 생겨 대북(大北) · 소북(小北)이 되고 대북은 다시 나뉘져 중북(中北) · 육북(肉北) · 골북(骨北)으로 세분되었다.

선조의 만년에는 소북의 영수 유영경(柳永慶)⁶¹⁾이 영의정이 되었다.

59) 동인 · 서인을 말한다. 즉 사색당쟁(四色黨爭)을 지칭한다.

60) 1565~1640, 호는 雪簑.

「동국봉당원류(東國朋黨源流)」에 「이흥노·홍여순 등이 국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왕을 업수이 여기고 이율곡을 탄핵해서 조정(調停)을 불능케 했을 뿐 아니라 성혼·박순(朴淳)⁶²⁾·정철과 같은 군자들을 공격하여 결국은 정여립의 모반까지 야기시켰던 것이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이흥노는 사실을 왜곡하여 왕에게 고하고 성혼을 무고한 죄로 광해군 원년(1608)에 제주도로 유배된 후 얼마 없어 사사(賜死)된 것이다.

선조·광해군 때의 군인이며 정치가인 이덕일(李德一)⁶³⁾은 조신(朝臣)간의 당파 싸움에 혐오감을 느껴서 퇴관(退官), 산림에 은거하면서 「당쟁비가(黨爭悲歌)」 28수를 만들어 개탄하고 있다. 그 한 수에

끊일줄 모르는 이 싸움을
나라를 위해서라고 누가 말하리
진세(塵世)의 영광을 찾는
까닭도 없는 다툼은
그래도 멈추지 않아 나 또한 할 말도 없다.

라고 입만 살아있는 무리들의 허망하고 분별없는 일을 「나라를 위해서라고는 누가 말하리」라고 통탄(痛嘆)하고 있다. <人物志·黨議通略>

조직(趙稷)

...광해군의 폐모(廢母)를 신랄히 비판한 때문에...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은 조선 전 국토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그

61) ?~1609, 호는 春湖.
62) 1523~89, 호는 思庵.
63) 호는 漆室.

인적·물적 손상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일본군의 침략 직후부터 정권의 자리에 앉은 북인들의 사이에 분열의 징조가 나타나, 그 알력은 왕위 계승문제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더욱 노골화되었다. 즉 선조의 왕비는 왕자를 낳지 못한채 일찍 서거했기 때문에 세자에는 빈(嬪: 恭嬪金氏)이 낳은 광해군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황폐한 전쟁 후의 수습기에 광해군이 즉위했다. 이왕조 27인의 왕 가운데 「조(祖)」나 「종(宗)」이 붙지않는 왕은 제10대인 연산군과 15대인 광해군만으로, 그들은 희대의 폭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조선의 당쟁은 정책상의 대립에서가 아니라 그 대부분은 왕위계승 문제나 예론(禮論)⁶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것이다. 왕정(王政) 아래서는 왕을 옹립하는 일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며, 또 윤리적인 유교정치에 있어서의 예론은 기본적인 정치규정과 관련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선조의 말년이 되어 계비김씨(繼妃金氏·仁穆大妃)에게서 왕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탄생함에 이르러 세자 변경의 문제가 생겨, 유영경(柳永慶)이 이끄는 소북파는 영창대군을 세우려 하고 한편 이이첨(李爾瞻)⁶⁵⁾ 등의 대북파는 광해군에 붙어 여기에 저위(儲位)⁶⁶⁾ 문제를 둘러싼, 각 파의 얹히고 설킨 각축(角逐)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문제는 선조의 급사(急死)에 의해 기정(既定)의 세자인 광해군이 왕위를 세습함으로서 해결되어 정권은 소북파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광복한 광해군의 치세(治世)에는 적잖이 경계를 요하는 반대파의 책모(策謀)

64) 왕실의 喪服制.

65) 1560~1623, 호는 觀松.

66) 왕세자 책봉.

가 숨겨져 있어, 그 반대파의 배제를 위해 잇따라 참담한 비극사건이 궁중을 중심으로 속발(續發)했다. 북당은 우선 의옥(疑獄)을 일으켜 역모 죄라는 죄명을 씌워 김제남(金梯男)⁶⁷⁾을 죽이고 그 세 자식과 사위를 좌사(坐死)시켰으며 부왕(父王)이 사랑했던 궁인(宮人)을 모조리 죽였다. 불과 8세 밖에 안된 영창대군은 강화도의 밀실에서 열 살(熱殺)되었으며 이어 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는 폐출(廢黜·廢母)되었다. 또 왕의 실형인 임해군(臨海君·垺)을 죽이고 이복동생인 정원군(定遠君)⁶⁸⁾의 아들, 능창군(綾昌君·佺)의 애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즉 권력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모조리 말살된 것이다. 그 이래, 이 잔혹한 얘기는 넓은 권력의 비정스러움을 나타내는 고전적인 고례(古例)로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해군을 이용해서 자파 세력을 부식하려고 하는 대북파의 정인홍(鄭仁弘)⁶⁹⁾·이이첨 등의 악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잔인스러움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들에게 반대하는 자는 인정사정없이 피살되던지 유배 당하는가 하면 파직되어 나갔다. 즉 조금이라도 반체제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말살한다는, 피에 굶주린 폭거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반대파의 사필(史筆)이 전하는 바와 같은 암군(暗君)은 아니었다. 또 그 왕족 육신에 대해 취했던 방법은 반드시 광해군이 즐겨했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단지 불행하게도 왕 자신이 이 당쟁의 소용돌이를 헤집어 나갈 수 없었던 희생자의 한사람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 왕을 보좌해서 지방을 순시

67) 영창대군의 외조부.

68) 稱.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仁祖의 아버지.

69) 1535~1623, 호는 萊菴.

하면서 백성들에게 구국(救國)을 위해 꺾기하도록 불러세우는 등 국난 타개를 위해 눈 부신 활약이나 즉위 후의 치세, 특히 대청외교(對淸外交) 등에 있어서의 적확(的確)한 판단이나 수완 등은 실로 비범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운의 왕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당쟁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골육상쟁의 비극사건을 일으킨 일 자체가 인륜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참사이며 특히 대비(母后)를 폐한 일은 뒤에 광해군의 최대의 죄악으로 지적되지 않으면 안될 사건이다.

그래서 유생 조직(趙稷)은 광해군 5년(1613)에 직제학(直提學)⁷⁰⁾ 김준업(金峻業, 東溪)과 더불어 광해군의 부당한 폐모와 항쟁하여 그 비(非)를 극언(極言)했다. 그것이 광해의 노여움을 사게되어 조직은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전고대방(典故大方)」 광해계축사화조(光海癸丑土禍條)에 따르면 「조직유생 소진대의 피찬제주(趙稷儒生 疏陳大義 被竄濟州)」⁷¹⁾고 되어있으며 김준업이 「여수동계여조직항소(汝修東溪與趙稷抗疏)」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말함이다. <典故大方·조선의 전설>

정온(鄭蘊)

...광해군의 비도(非道)를 간쟁(諫諍·注告·戒告)한 때문에...

정온(鄭蘊·1569~1641)은 자를 휘원(輝遠)이라 하고 호를 동계(桐溪)라고 했다. 초계(草溪)사람. 일찍이 정인홍(대북의 영수)의 문(門)에 따르고 그 업(業)을 받았다. 선조 40년(1606) 진사⁷²⁾가 되고 그 이듬해 사간원

70) 홍문관의 정3품관.

71) 대의를 상소했다가 제주로 귀양보내졌다.

의 정언(正言)이 된다. 언사(言事)가 왕지(王旨)를 거역하여 배척 당해 종성판관(鐘城判官)⁷³⁾이 된다. 병자호란⁷⁴⁾ 때, 적과의 화의를 단호히 배척하여 출성(出城)에 즈음해서 배를 가르려고 했을 만큼의 강경한 척화(斥和)론자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한 선비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바로 옛 사람들 가운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선조의 말년, 정권을 잡고 있던 북인은 대북·소북으로 분열되고, 당시의 집권자는 유영경을 중심으로 하는 소북파로서, 반대로 이이첨·정인홍 등의 대북파는 언제나와 같이 선조에 반감을 가져 왕의 사후에는 영창대군을 폐하고 광해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했다. 결국은 광해군이 선조의 뒤를 이어, 유배형의 도상(途上)에 있던 이이첨 등이 정권의 좌에 되돌아오자 지금까지의 구원(舊怨)이 일거에 불을 뿜었다. 말하자면 권력 투쟁에서 패했던 자들이 복귀하여 지난 날의 정적(政敵)을 마름질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광해군 5년(1613) 조령(鳥嶺)에서 붙잡힌 도둑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 등의 서열(庶孽)⁷⁵⁾ 일당을 힐문(詰問)한 바, 영창대군을 옹립한다는 얘기가 있어, 「진룡미기 가호광명(眞龍未起 假狐光鳴)」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진짜 용은 영창을 가리키고 가짜 여우는 광해를 말하는 것이지만……격문(檄文)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대북당의 이이첨 등의 무리가 그들과 미리 짜놓은 계획인데, 이이첨 등 악한(惡漢)은 그들의 공술(供述)이나 격문을 방패삼아 유생 이위경(李偉卿)으로 하여금 영창대군을 「역모죄(逆謀罪)」로 처단해야한다고 상소케 했다.

72) 科擧의 예비시험 합격자.

73) 목사의 지휘하에 있는 지방의 守護代役.

74) 1636년 淸太祖의 侵寇.

75) 고관의 첩 자식.

광해군은 그것을 듣자 타고난 포학성을 노골화하여 즉시 영창대군을 폐하여 서인(庶人)⁷⁶⁾으로 강등한다는 교지를 내렸다. 그것은 계축년(1613) 7월 2일의 일이었다. 그 결과 7세의 어린 영창대군은 어머니 품에서 강제로 떨어져 손을 뒤로 묶인채 궁정 문 밖에 끌려나가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거기엔 조정의 백관이 늘어서 있고 부근엔 구름과 같이 구경꾼이 몰려 있다. 그 가슴아픈 광경은 참열한 많은 백성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지만,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조명탄원(助命嘆願)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그 때 사직(司直·재판관)인 정온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무심한 이이첨 등 잔인무도한 악당들에게 거친 말투로 말했다. 「겨우 7세의 어린이가 그런 대역모같은 걸 꾸밀 리가 없잖은가, 들리는 바로는, 대비는 평상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잖고 대군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대군이 죽으면 이 어미도 죽겠오』라고 하고 계시다. 만일 대비에게 불행이 있으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고 심하게 따지자 이이첨은 성난 어조로 소리를 높여 「이제 바로 대비를 폐하려 하고 있다. 불가하다고 하는 자, 누구인가」고 거칠게 군다. 정온은 그 위에 은사인 정인홍을 향해 영창대군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례하다」고 호통을 친다.

드디어 영창대군은 냉혹비정한 권력의 횡포에 의해 강화도로 위리안치(圍籬安置)당한 뒤, 이이첨 등 간신의 지시에 의해 당시의 부사 정항(府使 鄭沆)과 병장 이응표(兵將 李應彪) 등 악당에게 열 살(熱殺)되었다. 그것이 광해 7년(1614) 2월 9일의 일이다.

「소대기년(昭代紀年)」에

76) 관위가 없는 보통 사람.

불을 때어 방을 뜨겁게 하니 뜨거운 기운이 벽까지 이어졌다.
미끄러져 방 가운데 떨어져 손톱이 타고 말라 절명하였다.

고 당시의 잔학스러움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철
없고 사랑스러운 7세의 영창대군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 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불쌍히 여겨 마을 이름을 「살창리(殺昌里)」라
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륜과 천명에 어긋나는 만행(蠻行)에 대해, 소북의 정온
은 사직(司直)으로써 기다란 봉서(封書)로서 항소(抗疏)했다. 그것은 천
근의 무게가 있는 항의문이었다. 「전하가 인륜의 변(變)을 만나 처변
(處變)의 길을 다하려고 손을 악독(惡毒)한 무부(武夫)들에게서 빌린 것
은 그 성덕에 누(累)를 끼치는 바 심대(甚大)하다고 앓을 수 없다. 가령
역적의 자손이라도 때를 기다려 치죄(治罪)하는데 하물며 어린 동생을
때를 기다림이 없이 남몰래 형을 집행했으니……이미 강화도에 위리
안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 그가 성장한 후 그 행동 여하를 잘 살
펴서 처단해도 늦지 않은데, 어째서 그리도 급하게 죄없는 동생을 죽
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만일 전하께서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을
정항(鄭沆)의 무리들이 죽였다면, 당연히 그를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안되며 왕명으로 죽였다고 한다면 전하로 하여금 대순(大舜)과 같은 국
왕으로 모시지 못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국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상, 죄없는 백성을 죽여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왕
의 동생을 죽인 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컨대, 만일
정항을 참형(斬刑)에 처하지 않으면 아마도 전하께서는 선왕(先王)의 종
묘(宗廟)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가 영창의 호(號)를

회복시켜 대군의 예로써 장사 지내면 위는 선조왕의 영혼을 달랠 수가 있으며 아래로는 전 국민의 의혹을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그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은 대비⁷⁷⁾가 설령 전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어찌서 대비를 생각 않는 것입니까? 영창은 이미 죽어있으며 이제 와서 대비가 무슨 이심(異心)이 있을 것입니까.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참소(讒訴)나 무고(誣告)가 있으면 법에 비취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구나 전하 자신도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조속히 아버지와 자식의 정을 되찾는 것이 지난 날의 상처를 깨끗이 씻쳐내는 것입니다. 정조(鄭造)·윤인(尹訥)·정호관(丁好寬) 등 극악무도한 악인들이 우선 폐비와 살제(殺弟)의 뜻을 제창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의 지친(至親)⁷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출세·영달의 먹이로 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짐승을 쫓는 자가 사람을 밀쳐서 동혈(洞穴)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셋을 곧 치죄해야만 이 세상에서 사언(邪言)이 없어져 삼강오륜(三綱五倫)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됩니다」고 서술한 다음 다시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되풀이 않도록 왕에 대해 간쟁(諫諍·戒告)한 것이었다. 광해군은 이 상소문을 다 읽고나자 독기를 품은 이마에 푸른 띠줄을 세우고 그것을 접수한 승지(承旨·비서관)를 불러 그 자리에서 파면했다. 왕이 하는 것이 다소 광기(狂氣) 넘치고 있었다.

정온은 남몰래 강화도로 건너가, 정항 등이 영창대군을 소살(燒殺)한 진상을 상세히 조사하고 돌아와 이 항소를 올린 것이었다. 광해는 곧 정온을 대역죄로 처형하려고 국청(鞠廳)⁷⁹⁾을 마련하여 국문을 개시했다.

77) 영창대군의 어머니.

78) 선조의 7남, 靜嬪閔氏의 소생.

그러나 그의 답변은 실로 담담하고 명쾌한 것이었다. 그 때 정온의 생명을 염려하는 좌상(左相)⁸⁰⁾ 정창연(鄭昌衍)·우상 기현(右相 奇獻)·이원익(李元翼)·심희수(沈喜壽) 등이 그의 처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쯤되자 광해군도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동왕 6년(1614) 7월 2일, 그는 엄형(嚴刑)의 추고(推考)를 받은 다음,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

정온이 대정현의 배소(配所)에 도착한 것은 이듬해 8월이며 나이 45의 때였다. 배소는 대정현 안성리(安城里)⁸¹⁾에 있었다. 집 둘레에는 높이 10여척의 가시울타리가 쳐지고 보기에다 삼엄한 뇌옥(牢獄) 그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정현감(지방장관) 김정원(金庭元)은 적사(謫舍)의 경내에 2간(間) 정도의 서재를 만들어 주는 등 그에게 대해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정온은 유배인이라는 재미없는 생활을 독서로서 보내었다. 그 사이 사이에 「덕변록(德弁錄)·자성록(自省錄)·자계잠(自戒箴)」을 써내고 있다.

제주도는 예부터 산과 바다의 생산물이 풍성했지만 풍해·수해·한발 등으로 농작물이 망쳐진 해에는 식량부족의 영향을 먼저 받는 것이 유배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역소(役所)로부터 유배인에게 나눠지는 식량의 부족을 걱정하여 하인들이 경작한 식량을 죄수들에게 나눠줘 급한 고비를 넘겼다. 그는 그만큼 인간생활의 기지(機知)를 알았던 사람이며 더구나 재야적(在野的) 저항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또 시인이기도 했다. 「문조(聞潮)」·「야음(夜吟)」·「정중음(靜中吟)」 등은 유명하다. 「동계집(洞溪集)」에 그가 적소에 있을 때 지었던 작품으로 「촌녀저

79)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장소.

80) 수석대신.

81) 속칭 막은골.

가(村女杵歌)의 1장(章)이 있다.

土俗無春鑿 村娥抱杵歌 高低如有調 斷續似相和
欲解須憑譯 頻聞慚不歌 清涼曉月下 遠客鬢先皤

섬의 여자들은 절구공이를 들고 방아를 찧으면서
새벽녘까지 구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통역이 없으면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주 물으면 부끄러워서 노래
를 불러주지 않는다. 그러나 애조(哀調)는 스스로 멀
리서 온 손님의 수염을 희게 한다

는 것이다. 그는 섬 여자들이 애고처산(哀苦淒酸)하게 부르는 절구와 연
자방아의 노작요(勞作謠)를 잘 이해하고 있다. 언어나 풍속 상(風俗上)으
로 마치 타국이라고도 여겨지는 섬의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의 2,3년
간은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박순정(素朴純情)의 마을 농민들과 신산(辛酸)을 맛보면
서 속세와 멀리 떨어진 이 섬에서 일상을 보내려고 했는지, 섬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이듬해부터는 익숙잖은 들일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여
가만 있으면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세월의 흐름을 잊었다.
그런데 정온이 제주도에 유배되어있는 사이, 광해군의 치세(治世)는 10
여년 계속되었지만, 드디어 광해 15년(1622) 3월 12일 몰락의 때가 왔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서인파가 일어섰다. 정원군(定遠君·瑄)의 아들
능양군(綾陽君·倅)을 받든 이귀(李貴)⁸²⁾·김류(金瑬)⁸³⁾ 등 서인의 일파는
거병하여 돌연히 왕궁에 침입, 대비의 명(命)을 갖고 왕을 폐하여 능양

82) 1557~1633, 호는 默齋.

83) 1571~1648, 호는 北渚.

군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것이 새로운 왕인 인조(仁祖)이다. 서인파는 계비(繼妃)의 폐위를 주장하고 있던 대북파를 남김없이 정계로부터 추방해서 정권을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그 때문에 복인은 두 번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이 군사쿠데타(仁祖反正) 덕분에 정온은 인조원년(1623) 5월, 대사(大赦)에 의해 서울로 돌아갔다. 그 때 마을사람들은 마을 경계까지 전송하며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는 관계에 다시 돌아가 사간원의 헌납(獻納)⁸⁴을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⁸⁵으로 승진, 이괄(李适)의 난⁸⁶이 진정(鎮定)된 후 대사간(大司諫)⁸⁷이 되었다. 그 어간에도 정적(政敵)인 정인홍의 사죄(死罪)를 구원해주려고 노력했고 또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는 인성군(仁城君)의 유가족을 빨리 석방하도록 청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그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뚜렷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정·관계의 거물이 대정성 안에서 10년이란 긴 유적(流謫)생활을 보냈으니, 말할 것도 없이 문화교육면에 있어서 그의 정신적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유생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헌종(憲宗) 8년(1842),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⁸⁸가 적사유지(謫舍遺趾)에 「동계유허비(洞溪遺墟

84) 정5품관.

85) 내무차관. 정3품.

86) 인조반정 후, 논공행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집권당인 서인파 안에서 반목이 생겨 이괄(李适)은 평안병사로 좌천되었다. 이것에 불만을 가진 그는 반란을 계획했다. 이것을 알게된 인조는 그들의 체포를 명했다. 이괄은 귀성부사(龜城府使) 한명련(韓明璉) 등과 더불어 인조 2년(1624) 1월 24일 1만여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함락, 선조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興安君·璉)을 왕으로 세웠지만 2월 11일 관군에 반격 당해 피수(魁首) 9명은 피살되고 잔당은 이산되어 반란은 진압되었다.

87) 왕에게 간언하는 역할의 하나.

88) 1792~1871, 호는 癡窩.

碑)」를, 이듬해에는 대정서당의 경계(境界)에 송죽사(松竹祠)를 세워 그를 모셨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를 궤림(橋林書院)에 모셔 정조(正祖) 22년(1797)에는 대정현감 부종인(夫宗仁)이 그의 적사유지에 대정서당을 개설하고 있다. 그의 유허비는 지금 보성초등학교의 마당 한구석에 옮겨져 있지만 그것이 단 하나의 그의 생전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객사동헌(客舍東軒)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大靜東門有弊廬 十年曾是逐臣
寒松四箇應盈丈 叢竹千竿相蔽除
人事浮沈何足問 世間榮辱本來虛
瀛州一曲留殊域 試命歌兒唱酒余
※ 瀛州=제주도의 옛이름

대정고을 동문에 헤어진 초가
십년이나 쫓겨온 신하 살던 곳
겨울 소나무 네그루 장(丈)이 넘었고
무더기 대 천그루 뜰을 덮었네
사람의 일 부침을 어찌 물을 것인가
세상의 영화와 욕됨이 본래 허무한 것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영주 한 곡조
노래하는 아이에게 술 끝에 불러보게 한다

그는 열렬한 애국자였다. 호란(胡亂·1636) 때, 남한산성에서 죽어서 국은(國恩)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마음속 깊이 개탄하여 시골에 돌아가지 않고 끝내 덕유산(德裕山)에 숨어서 과란만장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한다.

사후(死後) 이조판서를 추서받고 있다. <광해군일기·인조실록·桐溪集>

진능군 이태경(晉陵君 李泰慶)

…김직재 옥사(金直哉 獄事)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무고 당해…

진능군(晉陵君)은 본래 이향령(李享齡)의 셋째 아들이다. 이향령의 자는 수원(壽元), 종실(宗室)의 하원군 이성(河原君 李鐸)의 아들이다. 나이 13세 때 익성정(益城正)에 봉해졌다.

1592년의 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 대명(大名·領主)을 동원해서 15만의 군세로 기슭,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했다. 허를 찔린 집권관료는 선조를 호위해서 의주(義州)로 피난했다. 그 때 향령은 아버지를 따라 북방으로부터 간헐적으로 걷길 수개월, 겨우 왕의 소재지에 도착했다. 선조는 크게 기뻐하고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달포가 지나기 전에 명군의 내원(來援)이 있어, 이어 화의가 성립, 적군은 철퇴했다. 선조는 즉시 명령하여 그를 서울로 데려가도록 했다. 그래서 익성군(益城君)에 봉해지고 광해 3년에 1품의 계급에 올랐다.

선조(1567~1608) 때, 왕자 순화군(順和君)⁸⁹⁾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선조는 이향령의 제3자 진능군(태경)을 양자로 맞아 뒤를 잇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해군 5년(1612) 김직재(金直哉·?~1612)의 옥사(獄事)가 돌발했다. 그것은 대북파가 소북파를 끌어뜨리기 위한 무고였다.

황해도병사 유공량(柳公亮)의 장계(狀啓)⁹⁰⁾에 「김직재의 아들 백함(百

89) 광해군의 형.

90) 관리가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

臧)이 적의 수괴입니다만 함경도 외의 7도(道)에 걸쳐 만연하고 있습니다」고 되어있으며 또 동년 봄, 봉산군수(鳳山郡守) 신율(申慄)이 병조의 문서를 위조해서 사용한 김경오(金景五)를 체포해서 엄격하게 추궁했던 바, 진술 속에 김직재의 부자가 병사를 모아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 때문에 황해도 병사 유공량과 감사(監司) 윤선(尹暄)은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함과 동시에 김직재 등을 포박하여 왕옥(王獄)으로 압송했다. 왕은 즉시 국청을 개설하여 친국⁹¹⁾했다. 그는 매를 견딜 수 없어 「전승지(承旨) 황혁(黃赫)과 짜서 일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진능군(鎭陵)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고 다시 무고했다. 그뿐 아니라 이호민(李好閔·延陵府院君)·윤안성(尹安性·전 감사)·송상인(宋象仁·전 좌랑)·정호선(丁好善·전 군수) 등이 진능군을 옹립해서 권력 탈취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이이첨·이창준(李昌俊)·유영근(柳永謹)·송순(宋諱) 등의 대북 일파를 정계로부터 제거하려고 했다고 입을 맞췄다.

당시는 의심은 의심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르는 세상, 면직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세상은 아니었다. 면직 다음에 오는 것이 유죄(流罪),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없앤 다음 흙 속에 묻어야 겨우 마음이 놓인다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었다. 역적들은 대개 자신과 원한이 있는 자를 공모(共謀)했다고 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무서워서 함부로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무고에 의해 김직재 등은 환형(輓刑·車裂刑)되고 소북파의 거두들은 처형됐으며 1백여명은 인정 사정 없이 처단되었다. 그 때문에 진능군은 동년 10월 12일 제주도로 쫓겨 가는 도중에 사사되었던 것

91) 왕 스스로 죄상을 취조하는 일.

이다. 그뿐 아니라 향령 및 5인의 가족까지가 연좌되어 원류(遠流)의 쓰라림을 견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는 정적이란 것은 엉뚱한 죄를 씌워서 다음에서 다음으로 마구 매장되어져 갔던 것이다. 인조가 즉위하자, 즉시 대사령을 내려, 광해 당시의 원죄(冤罪)에 연좌되어 유배되었던 모든 죄인까지 방환(放還)되고 복권되었던 것이다.

<광해군일기·조선당쟁史話>

이익(李瀼)

...광해군의 폐모(廢母)를 반대했다고 해서...

이익(李瀼)은 자를 형여(洞如), 호를 왕포(王浦) 또는 간옹(艮翁)이라고 했다. 경주 사람. 광해군 5년(1612) 생원진사과⁹²⁾에, 이어 문과시험에 급제해서 한원(翰苑)⁹³⁾에 들어갔다가 인조 17년(1639) 전적(典籍·성균관의 정6품관)으로 승진했으며 이어 사간원의 정언에 영전하고 있다.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大妃·선조의 계비)를 창덕궁으로부터 서궁(西宮·慶雲宮)에 유폐시켜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로 하여금 윤직(輪直·교대로 당직함)시켰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은 「역모」라는 죄명에 의한 것이지만 또 반역의 주모자라는 명목으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⁹⁴⁾을 죽이고, 인목대비는 그들의 역모에 동조·묵인하고 더구나 광해군을 저주(詛呪)했다고 하는, 있지도 않은 풍설(風說)을 내세워 우선 서궁으로 옮겨

92) 보통문관시험.

93) 藝文館의 별칭.

94) 인목대비의 아버지.

놓고는 곧 모후를 폐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대북당의 「폐모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인목대비가 역모에 동정했다든지 광해군에게 몹시 욕을 퍼부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북당의 이이첨·정인홍 등의 간신배가 정권 탈취의 도구로 쓰기 위해 조작한 책략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익은 왕의 불륜을 통렬히 비판하고 정적인 대북당의 불순한 무리들이 할거(割據)하는 관계(官界)를 포기하고 표연히 고향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사론(時事論)을 날카롭게 논란한 때문에 크게 비위를 거슬리게 된다. 드디어 광해군이 진노, 그를 불러들여 「알랑거리는 자는 누구냐, 안팎에서 결탁하다니 무슨 일이냐. 또 몇 사람의 사주를 받았느냐…… 숨김없이 있는대로 대답해라」고 보기에도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이것은 국민감정이 일치하는 바, 시사를 논하고 의견을 구신(具申)한 것은 애군(愛君)애국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찌서 대관(臺官)⁹⁵⁾이나 된 자가 남의 말같은 것을 들으리요, 나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살만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고 가슴을 펴고 일체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말하자면 둘이 칠문(七問)해서 칠대(七對)하는 격렬한 대화가 교환되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용기를 내어 또한 척완(戚畹)⁹⁶⁾의 독단 전횡을 날카롭게 비난(批難)했다. 광해군은 그것을 듣자 노발대발하여 즉시 그에 대한 추국(推鞠)⁹⁷⁾을 명했다. 화가 이제 막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전환될 것 같이 그의 생명은 위협했다. 그것을 우려한 좌의정 기자헌(奇自獻)⁹⁸⁾이 그의 무실

95) 대사헌으로부터持平까지의 관원의 총칭.

96) 왕의 외척.

97) 왕의 특별교지에 의해 의금부(義禁府)에서 중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

98) 1562~1624, 호는 晩全.

을 강력히 호소하는 탄원을 재삼 되풀이 하고, 그도 또한 병환을 이유로 국청에 출두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 덕에 형신(刑訊)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 11년(1611)에 이르러 흉론(凶論)은 더욱 심해지고 누설(縲紲·불잡힘)되는 자, 혹은 장사(杖死) 당하는 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 해에 이익은 본래였다면 당연히 사형 당할 것이었지만 특지(特旨)로써 사형을 일등 감하여 유죄(流罪)에 처해져 제주도 대정지방에 강제 격리되었다. 배소에서 그는 성리학을 탐구하고 향시 주계(主啓)로써 주춧돌 삼고 밤낮 조용히 앉아서 독서에 빠졌다.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정온·송상인 등도 대정지방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병상련으로 서로 시문(詩文)을 교류하며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다. 멀리 떨어진 좁은 섬에서 쉴 새 없이 감시의 눈이 돌려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단조로운 생활을 매일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될 유배인의 고뇌를 얼버무려 준 것은, 그것이 양반 문화유배인의 공통의 생각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는 적거중에 도민들에게 학문과 예법을 가르치는 한편, 김만일(金萬鎰·獻馬功臣)의 딸을 얻어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름을 인제(仁濟)라고 했다. 이 사람이 경주이씨국당파(慶州李氏菊堂派)의 실질적인 제주도 조상인 것이다. 문인에는 김진용(金晉鎔·明道庵선생)·고홍진(高弘進)⁹⁹⁾ 등의 학자도 배출되고 있다.

그는 인조 원년(1623) 3월 12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면의 통지가 있어 서울로 돌아가 사예(司藝)¹⁰⁰⁾에 복직했지만, 관의 세계에는 자기가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달포 남짓만에 퇴관하고 있다. 그 후

99) 등제해서 興籍.

100) 성균관의 정4품관.

그의 사람됨을 아쉽게 여겨 몇 번이나 관에 나오도록 조정에서 불렀지만 모든 것을 사양해서 시골로 돌아가, 얼마 없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한다. 피로써 피를 씻는 당쟁, 그리고 제주도에서 10년이라는 오랜 유적생활에 몸도 마음도 모조리 피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숙종 15년(1689)께 이익의 손자 이윤(李潤)이 제주군교(軍校)¹⁰¹⁾로서 내도해서 그 후 천총(千總)¹⁰²⁾을 거쳐 별장(別將)¹⁰³⁾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윤의 자식인 중발(重發)과 중성(重成)의 형제는 제주성안에서 공부했다. 스승은 제주에 적거해있던 판서 김진구(金鎭龜)였다고 전해진다.

이익은 「한라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出門避塵囂 望山新面目
歸雲亦有知 使我藏踪跡

문을 나서 세상 먼지 피하며
산을 바라보니 면목이 새롭구나
구름이 건힐 것을 또한 알겠지만
나로 하여금 종적을 감추게하네

그는 죽은 다음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¹⁰⁴⁾을 추증받고 있다.

<人物考>

101) 하급무관.

102) 각 軍營의 將官職의 하나. 정3품관.

103) 龍虛營의 主將, 중2품관.

104) 중3품.

송상인(宋象仁)

...계축사화(癸丑士禍)에 연좌했다고 해서...

송상인(宋象仁, 1569~1631)은 자를 성구(聖求), 호를 서곽(西郭)이라고 했다. 여산(礪山) 사람. 동래부사 상현(東萊府使 象賢)의 동생이다. 임진왜란 때의 사절명신(死節名臣)이다. 상인은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해서 물욕(物慾)에 치우치는 일이 없고 교우(交友)에는 매우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다.

선조 38년(1605) 문과에 합격하여 광해군 때 형조좌랑(刑曹佐郎)¹⁰⁵을 지냈다. 광해군 시대는 대북파가 정권을 쥐어 「소청(訴請)하면 덮어놓고 보상(報償)을 해준다」는 선전으로 많은 비극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북당의 행동에 동조하는 자는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입신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반대하는 자는 처형이나 유형 또는 파면 당하는 것이 마치 국법(國法)과 같이 되어있었다. 그래도 정온·이익·송상인 등과 같이 학식이 풍부하고 청렴결백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어디까지나 정론(正論)을 주장하여 반국민적인 공포정치에 있으면서도 광해의 부당한 「폐모(廢母)」를 단호히 규탄했다. 그 때문에 그는 위기 일발에서 사형에서 감행되어 정온·이익 등과 더불어 제주도로 유배되어 10년이라는 오랜 유배생활을 보냈던 것이다.

인조반정(仁祖反正·1623) 이후 성균관직강(直講·정5품관)으로 소환(召還)되었다. 병조(兵曹)·예조참의(禮曹參議·次官) 등의 요직을 받았지만 관계(官界)를 포기, 오로지 학문의 세계에 몸을 던져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서민생활에 투철했다. 그 때문에 죽어서도 장사 지낼 돈이 없

¹⁰⁵) 법무과장.

어 벋들이 돈을 모아 보잘 것 없는 장례를 치러줬다고 한다. 그 당시로서는 지위욕(地位慾)·재물욕(財物慾) 밖에 없는 양반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존재였다. <人物考>

또 신희업(辛喜業)이란 자도 「계축사화」에 연좌, 광해군 4년(1611) 4월에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이와 전후해서 이정경(李楨慶)과 김춘언(金春彦)은 대정현에, 김덕룡(金德龍)은 정의현에 각기 정배(定配)되고 있다.

김제남부인 노씨(金梯男夫人 盧氏)

...남편의 원죄(冤罪)에 연좌해서...

김제남(金梯男·1562~1613)은 선조(宣祖)의 국구(國舅·장인), 자는 공언(恭彦)이라고 했다. 연안(延安)사람. 영의정 전(詮)의 증손이다. 선조 30년(1597)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이른다. 임인(壬寅·1602)에 선조가 그의 둘째 딸을 비(妃)로 삼았다. 즉 인목대비(仁穆大妃)¹⁰⁶⁾가 제남의 차녀이다. 그 연고로 제남은 영돈녕(領敦寧)¹⁰⁷⁾부사로 서임되어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해졌다. 딸이 이미 영창대군을 낳아있었으므로 제남의 일족은 날로 세력을 신장시켜 나갔다.

이 때 선세자(先世子)¹⁰⁸⁾ 광해군은 차남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명나라의 칙허(勅許)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유영경(柳永慶)이 이끄는 소북(小北)의 일파는 영창대군을 세우려 하고¹⁰⁹⁾, 소북 때문에 퇴출된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는 광해군에 붙어, 이

106) 영창대군의 어머니.

107) 別格高官의 하나로, 왕비 또한 황태후에게 주어지는 직위.

108) 다음 왕이 될 왕세자.

109) 조선의 왕가에서는 嫡出의 왕을 대군이라 하고 庶出은 군이라고 했다.

로써 양파가 왕위 계승을 둘러싸서 일대암투(一大暗鬪)가 연출되기에 이르렀다.

왕은 자연의 인정으로 지위를 막내의 대군에게 전해지길 바랐지만, 왕이 병으로 도저히 전쾌(全快)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대북파의 이이첨 등이 강력하게 왕위를 세자인 광해군에게 전수할 것을 간청했다가, 그는 유배의 명을 받아 도성에서 퇴거당했다. 그런데 그가 미처 배소에 도착하기 전에 선조임금이 급사, 이이첨 등은 유명(遺命)으로 도성에 소환되었다. 그래서 광해군이 등급하여 이이첨 등이 정권을 잡자 즉시 소북당의 유영경¹¹⁰⁾ 등은 유형에 처해진 후 살해되었다. 이 변전(變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돌발했으므로, 선조는 광해군이 권한 약밥을 먹고 죽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이다.

이이첨 등의 대북당이 일단 득세하자 광해군 5년(1613), 이이첨·정인홍 등 간신들이,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무옥(誣獄)¹¹¹⁾을 제기했다. 그 즈음 고관대작의 첩복(妾腹)의 자식인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이경준(李耕俊)·박치인(朴致仁)·박치의(朴致毅) 등이 고난에 찬 풍설(風雪)을 함께 하겠다고 서로 맹서해서 소양강변에 살며 「강변칠우(江邊七友)」라고 칭했다. 이들이 어느 날 동래(東萊)의 은(銀)상인을 문경세제에서 살해한 혐의로 포도청(捕盜廳)에 붙잡힌 것인데, 박응서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 하자 이이첨의 복심(腹心)인 포도대장 한희길(韓希吉)과 정항(鄭沆)의 둘은 일부러 국문하지 않고 유인(誘引)해서 말하기를 「네가 국문 받을 때, 이러 이러 답하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110) ?~1609, 호는 春湖.

111)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해서 일으킨 獄事.

공을 세우게 된다」고 감언(甘言)을 하는 바람에 그는 「우리들은 도둑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거사(擧事)하기 위해 양식과 무기를 준비한 것으로, 연흥부원군 김제남과 자주 연락하면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공술(供述)하자 정향은 그 일을 왕에게 고하여 광해군이 드디어 친국(親鞫)했다. 모든 게 그대로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모두 이이첨 등이 짜맞춘 줄거리인데 광해군은 사간원의 상소를 받아들여 외조부인 김제남을 하옥하고 끝내는 서소문(西小門)¹¹²⁾의 단두장(斷頭場)에서 참수했다. 그에 멈추지 않고 제남의 자식인 군수 래(郡守 瑤)와 진사 규(珪), 선(瑄)¹¹³⁾의 3형제도 역적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여버려 제남의 일가는 하루 아침에 온 집안이 통곡의 바다로 화했다. 이 때 겨우 살아남은 제남의 며느리 정씨(鄭氏)와 남자 손자들의 은 언제 또 재난이 덮칠까를 두려워해, 정씨는 생각 끝에 천석(天錫·제남의 손자)이 급사했다는 소문을 내게한 후 장례를 치르고 관(棺)을 선영(先塋)에 묻었다. 그로부터 천석은 삭발하고 가사(袈裟)를 걸쳐, 중이 되어 산야를 헤메이길 10여년, 인조반정(1623) 후 처음으로 사복(士服)으로 갈아입고 돌아와 어머니와 눈물의 재회를 했다. 인조는 특히 명하여 관직을 주고 조부의 제사를 모시도록 했다.

또 이이첨과 정조(鄭造) 등 악당의 책략에 의해, 이수(李隨)로 하여금 김제남의 처 노씨(盧氏)를 국문한 후, 노씨를 사죄(死罪)에 처하라고 되풀이 상소토록 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씨를 제주도로 유배해서 위리안치의 형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노부인은 제주도의 배소(配所)에서 생계의 방편이 없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이웃

112) 죄인이나 訟狀을 내어보내는 문.

113) 14세의 어린이.

집에서 지게미를 사다가 그것을 물에 푼 다음, 다시 그것을 물에 섞어 걸른 탁주를 판다는, 그야말로 도민의 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도민들은 그것을 마시면서 「모주(母酒)」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 「모주」라고 하는 명칭은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포학무도한 광해군이 왕좌에서 쫓겨나 드디어 인조반정이 이뤄지자, 인조는 제빨리 승지(承旨·비서관) 정립(鄭立)·예조참의 목대렴(睦大斂)·중관(中官·내시) 김충립(金忠立)에게 명하여 연흥부인¹¹⁴⁾을 제주도의 배소로부터 돌아오도록 했다.

연흥부인은 10여년의 오랜 유배인 생활을 했지만 그 동안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텃마루 끝에 걸터앉아있으려니 한 마리의 까치가 처마 끝에 날아와 무엇인가를 고하듯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귐다. 그 소리는 어쩐지 다정스럽기조차 했다. 노부인은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가파인망(家破人亡)¹¹⁵⁾인데 내게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고 오히려 한숨을 쉬었다.

섬사람들도 까치가 바다 동물이 아니므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제주도 속담에 까치가 남쪽 나뭇가지에 집을 만들면, 반드시 영화롭고 드날리게 된다고 한다. 아니나다를까, 며칠 안돼서 노부인을 마중하러 승지 정립(鄭立)의 일행이 조천관(朝天館)¹¹⁶⁾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노부인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얼마없어 노부인을 태운 배

114) 인목대비의 實母.

115)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사라지다.

116) 조천의 지방관아에 부설된 객사·숙박장소.

가 출범하려고 닳을 올리는데 또다시 한 마리의 까치가 날아와 돛대 위에 앉았다가 배가 출항하자 이별의 아름다운 소리를 지르며 날아갔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노부인이 적소에 있는 동안에 제주목사 양호(梁濩)가 적신(賊臣)들의 지시를 쉴 새 없이 받으면서 노부인에 대해 눈꼴 사나운 모욕과 박해를 가했다. 그것은 관속(官屬)¹¹⁷⁾보다 몇 배나 심한 것이었다. 일례를 들면, 양호는 술만 취하면 반드시 하인을 보내 「대비어머니! 술 한잔 갖고와」라고 하는 식으로 무엇인가에 트집잡고 행패를 부렸다. 다행히 노부인이 기숙하고 있는 집의 하인 전량(全良)이라는 사람이 노부인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에 동정하여 자신의 처로 하여금 부인의 노역을 대신해주는 등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악관(惡官)의 극악무도한 짓에 대단한 마음 고생을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조반정이 이뤄지자 인조(仁祖)는 재빨리 특별 예관(禮官)을 제주도로 보내어 데리고 오도록 함과 동시에 삼도감사(三道監司)¹¹⁸⁾로 하여금 호행(護行)토록 했다. 그 때, 전량은 노부인의 부탁에 응하여 동행했다.

인조는 전량을 특별히 우대해서 첨사(僉使)¹¹⁹⁾직을 수여, 포상하고 금부도사(禁府都事)¹²⁰⁾를 제주로 파견해서, 노부인을 이유없이 구박하고 도민을 괴롭힌 목사 양호의 목을 잘라 효수(梟首)한 후, 전 재산을 몰수했다. 도민은 쌍수를 들어 기뻐했다고 한다.

이 사변(事變)으로 대북파의 대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각료는 역모(逆謀)로 쫓겨나, 처형·유형·파직 등을 당했다. 그 때문에 조정 안은

117) 하급관리와 사용인.

118) 전라·경상·충청도의 지방장관.

119) 각 鎭營에 속하는 무관.

120) 의금부의 중급관리.

텅텅 비게 되고 선조를 모셨던 궁인들도 갖가지 죄명 아래 거의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듯 김제남의 의옥(疑獄)은 실로 참담한 것이었다. 이때 소북당은 폐모론에 반대해서 싸웠지만 힘이 미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청소북(淸小北)·탁소북(濁小北)으로 나뉘어져, 대북당 때문에 거의 남김없을 정도로 대타격을 입어, 겨우 몇몇이 존재하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광해군 일대(一代) 동안은 대북당의 천하였던 것이다.

또 이 해에 죄명은 확실치 않지만 함양(咸陽) 사람, 박몽준(朴夢俊)이란 자가 제주도로 유배되어 노비가 되었다. <燃黎室記述·李朝黨爭史話>

인조조(仁祖朝 · 재위 1623~49)

폐주 광해군(廢主 光海君 · 재위 1608~23)

...자상(自喪)한 죄에 의해...

조선 15대의 왕, 휘(諱)는 혼(琿), 선조의 셋째 아들, 공빈(恭嬪)김씨의 소생이다. 광해군으로 봉해지다. 선조 26년(1592) 세자로 봉해졌다가 1608년에 즉위했다.

보기드문 폭군이라고 전해지는 광해군은 내정(內政) · 외교에 있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전후부흥사업(戰後復興事業) · 대동법(大同法)의 실시, 사고(史庫)의 건립,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등 많은 서적을 편찬하는 등 문화사업에 다대한 것을 남겼다. 그러나 이이첨 · 정인홍 등의 대북파는 광해군을 옹립해서 전행(專行)을 마음대로 했다. 임금이 임금 같잖고, 신하는 신하 같잖았으며, 따라서 나라는 나라 꼴이 아니라는 정경(情景). 그 때문에 언로(言路)는 막히고 직언(直言)이나 감언(敢言)하는 자는 재판이란 것도 없이 없애지고 뇌물정치는 공공연히 판 쳤다. 「조도사(調度使)」라고 하면, 매관매직(賣官賣職)의 행상인이며 외관(外官 · 지방관)과 서반(西班 · 무관직)은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었다.

계축화옥(癸丑禍獄 · 1613) 이후 매관매직이 성행했는데 그것도 금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직의 차등(差等)이 정해졌다. 방백(方伯 · 지방장관)과 같은 것은 값이 1천여량(兩), 군수 · 수사(水使)는 3백량, 급제(及第)는 30량, 진사는 20량 정도로, 이것이 당시 관직매매시장의 공정가격으로

되어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비꼬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明經賢士盛於斯 二百年來始見之
七大文通從自願 暗中蹤跡鬼神知

선량한 현인(賢人)이 이렇게도 많은건가, 2백년 이래 처음으로 본다. 기뻐할 일이다. 칠대문통을 스스로 원했다고해도 누가 그것을 알리. 남이 모르는 종적은 단지 신(神)만이 안다

는 내용인데 당시 이와 같이 암흑의 세상을 풍자한, 다음과 같은 시문이 많았다.

清香旨酒千人血 細功珍羞万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맑고 향긋한 술은 1천인의 피이며 상에 올려진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땀과 기름이다. 환락의 밤의 양초가 불타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흐르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한의 소리 높다

고 한 것은 당시의 국내 정황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다. 「춘향전」 속의 봉건지배계급의 부패상을 매도(罵倒)한 유명한 한시도 실제로는 조도사(趙都司)의 시의 6~7자를 고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목대비가 광해의 죄상(罪狀)을 거론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예거(例擧)하면 「..... 선조에게는 적자(嫡子)가 없어 한 때의 권도(權道)로 장(長)과 차(次)의 순서를 넘어 광해를 세자로 세웠던 바, 이미 세자 때 실덕(失德)했기 때문에 선조는 만년에 후회의 빛을 감추지 않았다. 광해가 왕위에 오

르면서부터의 「반도패리(反道悖理)」¹²¹⁾는 하나 하나 들춰낼 겨를이 없지만 그 중요한 것을 거론해 보면, 내가 비록 부덕하다고 해도, 천자의 고명(誥命·유언)을 받은 선조의 배우자로서 국모의 지위에 오랜 세월 있었는데, 선조의 자식인 광해가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았고 특히 참적(讒賊)의 사언(邪言)을 믿어 시극(猜隙)을 낳게 하여 나의 아버지를 형륙(刑戮)하고 내 종족을 짓밟으며 어린 영창을 열기로 죽게하는가 하면 모후(母后)를 유폐인옥(幽閉因辱)하는 등 인륜에 거슬리는 짓을 감행했다.…… 수천호의 민가를 철거시켜 양궐(兩闕)¹²²⁾을 조영(造營)했지만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완성 안되고 있다.……」고 하는 바와 같이,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광해군은 왕으로서 형제나 외조부 등을 죽이고 모후를 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 위에 의리에 반하는 외교정책도 또 정쟁(政爭)거리가 되었다. 광해군 8년(1616), 여진족(女眞族)의 수령 누루하치(奴兒哈赤)가 제위(帝位)에 올라 국호를 후금(後金)¹²³⁾으로 했다. 1618년에 후금은 명에 대해 선전포고하면서 조선에도 이를 통고, 중립을 지키도록 요청해 왔다. 한편으로 명은 조선에 대해서 대일전(對日戰)의 협력을 대상(代償)으로 원군을 요청해 왔다. 명에게 의리를 세우면 신흥국 후금의 분노를 사 침략의 구실을 마련해 주게 된다. 무엇보다 의(義)를 무겁게 여기는 조선은 괴로운 입장에 놓여졌다.

조정에서는 의논이 분분했지만 대세는 명의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광해는 될 수 있으면 거병(擧兵)을 하지 않

121) 도리에 배반하는 일.

122) 인덕궁·경덕궁.

123) 나중에 淸으로 했음.

고 아무렇게나 그 입장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드디어 강홍립(姜弘立·1560~1627, 호는 耐村)을 총사령관(五道都元帥)으로 2만의 군을 내보내 압록강변에 포진(布陣)했다. 이 전투에서 명은 대패하여 강홍립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다. 이것은 파병 때 광해군이 남몰래 강홍립을 불러, 형세를 봐서 투항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금과의 우호관계는 잠시 계속되었다. 국가민족을 살리기 위해 명분론을 버리고 실리외교(實利外交)를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광해군 사대모화(事大慕華)의 천리(天理)를 버리고 만족(蠻族)과 통해 동방예의지국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혹독하게 규탄당하게한 것이다.

이귀(李貴)·김자점(金自点)¹²⁴⁾ 등 향명파(向明派) 서인(西人)의 쿠데타(인조반정)에 의해 광해는 드디어 왕좌에서 쫓겨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왕기설(王氣說)」로 피살된 정원군(定遠君)¹²⁵⁾의 아들 능양군(陵陽君)이 서인들에 의해 옹립되었다. 능양군 인조는 계해년(1623) 3월 13일, 대비의 명을 받들고 창덕궁에서 즉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당쟁이 외압(外壓)을 부르고, 외압이 내분(內紛)을 초래한다는 악순환의 도식으로 좀처럼 항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년 3월 21일에 광해와 4인의 가족은 「혼란무도·실정백출(昏亂無道·失政百出)」이라는 죄명 아래 인목대비의 명령에 따라 강화도로 추방되어 안치(安置)되었다. 그 후 광해는 다시 교동(喬洞)으로 옮겨졌지만 또 제주도로 옮겨져 성안(城內)¹²⁶⁾에 존극안치(尊極安置)되었다.

124) ?~1651, 洛西派.

125) 광해군의 이복동생.

126) 지금의 제주시.

교동에서 제주도로 옮겨질 때 광해는 선상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風吹飛雨過城頭 瘴氣薰陰百尺樓
蒼海怒濤來薄暮 碧山愁聲帶清秋
歸心厭見王孫草 客夢頻驚帝子洲
故國存亡消息斷 煙波江上臥孤舟

바람에 날리는 배 성두(城頭)를 지나가고 높은 다락에도 장기가 덮쳤다.
저물 녀에 창해의 파도 밀려오고 맑은 가을에 푸른 산의 구슬픈 소리
돌아갈 마음에 왕손초는 보기 싫고 나그네는 「제자의 땅」을 꿈 꾀 자주
놀란다
고국 존망의 소식 끊기고 아지랑이가 낀 강 위 외로운 배에 누웠네

광해군이 제주도로 옮겨질 때 그 행선(行先)을 광해군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배에 태워진 다음에도 배의 사망에 장막을 쳐 가는 방향조
차 모르게 하고 있었다. 배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비로소 쳐있던 장막
이 걷혀지고 경호역인 별장 이원로(李元老)가 제주도라고 말씀드리자,
광해군은 매우 놀라 「어째서 여기에! 왜 여기에…」라고 되풀이 말하고
는 개탄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인조 15년(1637) 6월 6일의 일이었다. 광해군의 일행은 어등
포(於等浦)¹²⁷로부터 상륙하여 거기서 일박하고 뒷날 성내에 도착했다.
즉시 망경루(望京樓) 서쪽에 있는 안치소에 격리되었다.

그 때 마중나온 제주목사가 「공자(公子)¹²⁸가 만일 왕위에 계실 때
간사스러운 신하들을 멀리하여 환관(宦官)이나 여관(女官)들이 정사에

127) 구좌읍 행원리.

128) 광해군을 지칭함.

관여하지 않도록 했었다라면 어쩌서 이와 같은 원도(遠島)에 오시게 됐겠습니까. 임금이 덕을 닦지 않으면 ‘주중적국(舟中敵國)’¹²⁹⁾이란 말을 알고 계시는지요」라고 말씀드리자 광해는 주르르 눈물을 흘릴뿐이었다고 한다.

광해군의 안치소에는 동오군(東伍軍·유사시의 지방군)이 배치되어 30명의 군대가 교대로 지켰다. 광해군이 제주의 안치소에 살고 있을 때, 그 시중을 위해 궁중으로부터 따라와있는 하인 중에 성질이 거친 자가 있어, 자칫하면 광해군에게 말대꾸하기도 해서 어느 날 광해군이 이를 꾸짖자 그 하인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소리를 높이면서 「당신님께서 국왕이었던 시절엔 아무런 부자유없이 마음대로 편안히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와서 무엇이 부족해서 수치도 모르는 상놈들에게 반찬타령까지 하셔서 침채(김치)판서(沈菜判書)라든지 잡채판서(雜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고 비꼬았다. 「당신님이 사직(社稷: 국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분들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저를 꾸짖으시다니.....마음 속으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님이 왕위를 쫓겨난 것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입니다만 저희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이 가시로 둘러싸인 속에 윤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고 지껄여 대었다.

광해군은 그것을 듣자 얼굴을 숙여 아무말도 없이 그저 흐르는 눈물이 두볼을 적셨다고 한다. 이것은 이시방(李時昉)¹³⁰⁾이 제주목사로 부임한 후의 일이다.

129) 「舟中敵國」이란 같은 편 안에도 적이 있다는 비유로, 「史記」에 「君不修德 則舟中之人 盡敵國」이라고 되어있는 것에서 유래한다.

130) 1594~1660, 호는 西峯.

이시방목사가 맛있는 음식을 올리자 광해는 기뻐하며 늙은 궁인에게 말했다. 「이는 필시 지난 날,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이다」고 하자 노궁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광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고 반문하자, 궁인이 「당신님이 신하들을 내쫓을 때 후궁(왕의 첩)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행했는데 제주목사가 만일 후궁을 통해 부정한 은혜를 입은 자 라면 반드시 옛날 왕을 반대하여 지난 날의 자신의 숨겨진 행적을 감추려 할 것임으로 이렇듯 성의를 다한 대우는 아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자, 광해는 머리를 숙여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그 당시 제주적사(謫舍)에는 궁첩(宮妾)과 궁인을 데리고 왔으며 시위자(侍衛者)와 그 밖의 종자(從者)들도 있었으므로 주성(州城) 안은 마치 이궁(離宮)이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또 어떤 왕족의 궁가(宮家)가 살고 있는 것도 같았다. 인조도 유적중(流謫中)인 광해에 대해서는 구휼(救恤)을 애끼지 않고 후대(厚待)했다고도 한다. 특히 도민은 광해의 적거에 의해 왕족의 예절과 생활양식의 일단을 직접 견문할 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고관들이 빈번히 왕래했으므로 본토의 실정을 직접 조정에 반영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인조실록」에 「仁祖十九年辛巳 光海君卒濟州園內 年六十七 郎接鎖開門 斂殯以禮 朝議以爲非 而識者是之 光海之自喬洞 遷濟州也」라고 되어있는 것과 같이 광해군은 인조 19년(1641) 7월 1일 제주적사에서 병몰하고 있다. 그 때 나이가 67세였다. 인조는 부음을 듣고 3일간 조회(朝會)를 중지, 5일간을 소찬(素饌)으로 지냈고 신하들은 4일간 조식(粗食)으로 각각 조의를 표했다고 한다.

제주목사 이시방은 광해가 사망하자 곧 삼읍 수령에 전달, 섬안의

제관(諸官)을 이끌어 적사로 가, 스스로 습렴(襲殮)해서 일반도민에게도 근신하도록 했다. 광해군은 6월 30일에 중병을 얻어 7월 1일에 기절(氣絶), 초3일에 소렴(小殮)을 하고 4일에 입관하고 있다. 그리고 호상(護喪)을 하기 위해 동월 27일 정부로부터 예조참의¹³¹⁾·정랑(正郎)¹³²⁾·중사(中使)¹³³⁾·별감(別監)¹³⁴⁾·서리(書吏) 등이 파견되어 왔다. 그 뒷날 빈소(殯所)를 관덕정으로 옮겨 장례를 지낸 다음, 8월 18일에 유체(遺體)를 싣고 제주를 출항, 시체를 양주(楊州)에 묻었다. 「제주도 민요해설」에는 「칠월도 초하루는 대왕이 돌아가신 날, 별이 쨍쨍한데도 비가 내리고 있다」는 민요를 수록하여, 광해군이 돌아간 음력 7월 1일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전설을 적고 있다.

<耽羅紀年·李朝黨爭史話·瓶高 李衡祥研究>

박승조(朴承祖)

...큰 형 승종(承宗)의 액수자살(縊首自殺) 사건에 연좌되어...

박승조(朴承祖)가 제주도로 유배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광해군 11년(1618)에 영의정(수상)직에 있던 큰 형 박승종(朴承宗)의 액수(縊首)자살사건에 연좌한 때문이다. 박승종¹³⁵⁾은 밀양사람으로, 판서 계현(啓賢)의 아들이다. 폭군의 대표자라고도 할만한 광해군 11년에 영의정이 되어 밀양부원군(密陽府院君)¹³⁶⁾의 작위가 수여되고 있다.

131) 교육차관급.

132) 육조의 관직 정5품.

133) 내밀의 칙사.

134) 중종의 경호관.

135) 1563~1623, 호는 退憂亭.

136) 정1품의 공신.

때마침 광해군 6년(1613)에 인목대비(仁穆大妃)¹³⁷⁾에 대한 폐모(廢母)의 문제가 일어나자 승중은 수상으로서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래서 대북파의 이이첨 등 악당집단이 경운궁(慶運宮·덕수궁)에 난입하여 모후를 시해(弒害)하려하자 승중은 많은 하인을 이끌고 궁에 들어가 이를 보호했다. 그 덕분에 모후는 암살의 마수로부터 가까스로 난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인조 원년(1623), 서인의 일파가 능양군인조(陵陽君仁祖)를 옹립하여 무장 쿠데타를 감행, 광해군 및 집권당인 대북파를 정권으로부터 추방했다. 그 때문에 승중은 경기도관찰사(觀察使)로 있는 자식인 자흥(自興)과 말을 달려 선묘에 이르러 액수(縊首)자살을 기도했다. 결별에 즈음하여 옷에 글을 적었다. 「임금님을 바르게 보좌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무슨 면목으로 선왕을 뵈일 것인가. 늙은이에 빠져 스스로 죽음으로써 천지 귀신에게 사죄하리라」고, 또 그는 항상 오리알 정도의 비상(砒霜)을 패낭(佩囊) 속에 넣고 다니며 말했다. 「때로 불행을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죽음을 기다림에 어찌 이것이 없을 수 있을까」고.

그는 이렇듯 격렬한 권력투쟁의 폭풍속에 말려들어 언젠가는 죽는다는 각오를 미리 하고 있었다. 더구나 광해군의 아내가 박자여(朴自興)의 딸, 왕과는 인척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박승중은 수상으로서 왕을 바람직잖은 방향으로 이끈 책임을 통감해서 자해(自害)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인조반정에 의해 광해는 강화도로 유배되고 대북파의 이이첨 등 수십명은 어쩔 수 없이 참형(斬刑)되었으며 2백여명은 유배 당했는데 그의 일족도 또한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 연루(連累)는 즉시 연안부사(延

137) 선조 35년 왕비로 책봉.

安府使)로 있는 동생 승조에게 미쳐, 광해군이 쫓겨나 얼마 없어 제주도 애월면 곽지리(涯月面郭支里)로 찬류(竄流)되었다.

그는 큰 형의 무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장남인 자한(自韓)과 석별하고 막내인 자호(自好)만을 데려서 한 많은 유배의 길에 조용히 올랐다. 도배(到配)후 그는 혹독한 풍토 속에서 10여년간의 비참한 유적생활을 보냈다. 인조 13년(1636)에 유죄(流罪)가 겨우 풀려 한양으로 소환되었다. 그 때 그는 가족을 그대로 곽지리에 남겨 눈물로써 섬을 떠났다. 왜냐면 아들 자호가 이미 결혼하여 일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이 박자호를 「곽지박씨(郭支朴氏)」입도조라고 하는 것이다.

인성군(仁城君)의 가족

...인성군의 모반죄(謀反罪)에 연좌하여...

인성군(仁城君·?~1628)은 선조의 제7남. 선조의 후궁 정빈(靜嬪)의 소생으로 그의 부인은 판서 윤승길(尹承吉)의 딸이다. 인성군이 모반죄라는 무실의 죄를 씌워져 사사(賜死)되자 가족은 죄도 없이 제주도로 유배되고 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인성군은 광해군의 「폐모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인조반정(1623)후 정부로서는 폐모론의 가부(可否)를 질문받았을 때, 「수의(收議)」¹³⁸⁾와 「정청(廷請)」¹³⁹⁾에 가담한 자의 죄를 논하여 죄형의 경중에 응하여 각각 처벌했다.

이 정변(政變)에 있어서 재정(裁定)된 형의 종류와 인원을 보면, 정

138) 관리의 의견을 수집한다.

139) 궁정에서 직접 왕에게 알현을 청하는 것.

형(正刑·사형) 16명, 복주(伏誅) 69명, 위리안치 68명, 원류(遠流) 116명, 중도부처(中途付處)¹⁴⁰⁾ 80명으로 되어있어 기타 관직을 삭탈 당한 자, 면직된 자, 사판(仕版)¹⁴¹⁾된 자를 합치면 대충 1천명을 넘는다. 따라서 광해군을 섬기던 대북당의 고관들은 모조리 숙청됨과 동시에 대북당이라는 명칭조차 사라져버렸다.

그 때 인목대비는 인성군을 폐모추진론자로서 치죄(治罪)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인조는 지친(至親)¹⁴²⁾이라고 그것을 거부, 인성군의 죄행(罪行)을 관대히 사면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찬부 양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날카롭게 싸웠다.

그런데 그 후 계해년(癸亥年·1623) 10월 이유림(李有林) 등의 쿠데타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그 일당이 구금되었다. 뜻 밖에도 적도(賊徒)의 공술(供述) 속에 「인성군(璘)을 추대하려고 했다」고 되어있고 또 박홍구(朴弘壽) 등의 모반 미수사건 때도 역시 그 아들들의 공초(供招)¹⁴³⁾ 속에 「인성군을 옹립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 때문에 이번엔 삼사(三司) 및 2품 이상의 제관(諸官)이 상소해서 인성군의 치죄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인조는 완강히 그에 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인조 5년(1627) 9월 28일, 강원도횡성(橫城)에 사는 이인거(李仁居)라는 자가 수백의 도당을 이끌고 군청을 습격, 군기고(軍器庫)로부터 무기를 탈취하여 옥문을 부수고 수인(囚人)을 석방하는 등 정부 전복의 군사행동을 착착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원주(原州)목사 홍보¹⁴⁴⁾가 이 음모를 탐지하여 즉시 조정에 연락함

140) 유형의 일종.

141) 관리의 명부에서 삭제된 자.

142) 인성군은 선조의 7남으로 인조의 숙부.

143) 범죄사실의 진술.

과 동시에 이인거 등의 일당을 체포해서 서울로 압송했다. 그들은 즉결재판에 붙여져 처형됐지만, 그 뒤해의 정월, 전 승지 유효립(柳孝立)·전 세마(洗馬) 허정(許遠)·전 좌랑(佐郎) 정필(鄭泌)·전 전적(典籍) 김택(金澤)·진사 유두립(柳斗立) 등 대북당의 잔당이 광해군의 복위를 도모하기 위한 모반을 꾀하여 도감초관(都監哨官) 윤계륜(尹繼倫) 등이 이인거 등의 꾀기에 호응하기로 되어있었다.

그 후도 광해군 복위음모사건은 잇따랐다. 인조 7년(1629), 전 훈도(訓導) 임경은(任慶恩)이 도군초군(都軍哨軍) 손대손(孫大孫)·이선신(李善信)·하의생(河義生)·김룡(金龍)·박춘남(朴春南) 등과 결탁하여 연산(連山)을 도읍으로 정해 광해군을 옹립하려고 했다. 임경은은 내포(內浦)로 가서 해로(海路)를 차단하고 이선신 등은 서울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했지만 훈련국 포수(訓練局砲手) 김예정(金禮正)의 고발로 결국은 사전에 실패, 그들은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복위음모사건이 속발(續發)했으므로 광해군은 제주도라는 먼 섬에 유배되어 위리안치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건 그렇다치고 인조 6년(1628) 3월 죽산(竹山)에 사는 전 부사 허적(許滴)이 유효립(광해의 척신)·허정 등의 흉계를 고발했다. 「허정 등이 궁궐을 습격한다」고. 이 보고를 받은 비국(備局)¹⁴⁵⁾은 군대를 발동해서 동·남문의 주변에 복병, 그들이 침공해오는 것을 닥치는대로 포박하는 한편, 도사(都司)를 보내어 유효립을 붙잡아왔다. 이들을 고문한 바 누구할 것 없이 「강화도에 있는 광해군의 밀지(密旨)를 받아 인성군이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라든지 또는 「인성군이 인목대비의 밀지를 받들어 흉도(凶徒)들을 모았다」고 했다.

144) 1583~1641, 호는 月峯.

145) 備邊司의 별칭, 군국사무처.

이 허위공술 때문에 인성군은 처음 간성(杆城)에 유배된 다음, 원주로 옮겨져 있었지만 얼마 없어 육성선(陸性善)의 상소에 의해 소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인성군의 이름이 자주 역도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조는 더욱 괴로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인성군의 이름을 악마와 같은 반역배가 입에 올림으로 인조는 더더욱 괴로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인성군의 이름을 악마와도 같은 반역배가 입에 올림으로 삼사를 비롯해서 문무백관이 한결같이 인성군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인조의 반정공신(反正功臣)인 이귀(李貴)¹⁴⁶⁾는 「공(珙)¹⁴⁷⁾이 일찍이 폐모의 수의(收議)에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알면서도 조작된 인목대비의 밀지를 구실로 해서 흉도를 모았으므로 그 정상은 헤아려 알만합니다. 따라서 인성군의 흉상(凶狀)을 국문하여 국민에게 대비가 무고당한 연유를 알려야만 비로소 대비는 안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珙)으로부터 한 마디도 듣지 않고 공술서를 불태워 없앴 것은 인목대비의 무고를 변명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고 상소하여 인성군의 국문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사간인 정온(鄭蘊)은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어제는 영창대군의 처형을 간청하고 오늘은 인성군의 치죄를 요구한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틀려있는 것일까요?¹⁴⁸⁾ 만약 의리상 정당한 가부(可否)와 진위(眞僞)를 차분히 따지지 않고, 단지 적도들의 공술만을 믿게 되면 언제까지나 역옥(逆獄)을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성군을

146) 1557~1633, 호는 默齋.

147) 인성군.

148) 영창은 광해의 동생, 인성은 인조의 숙부.

없앤다고 해서 또다시 인성군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선왕(先王)의 자손이 없어질 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패상난륜(悖常亂倫)의 행위가 전조(前朝: 光海)와 변함없이 왕의 실덕(失德)은 광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질 않겠습니까?.....광해가 비록 폭정(暴政)했다고는 하나, 형제를 죽이지 않고 모후를 유폐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전하(殿下·인조)가 지인성덕(至仁盛德)이라 해도 아마도 이 자리에는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봐도 삼사의 요청이 영간(倭奸)들의 구실의 재료가 된다 해도 종사(宗社)의 율타리가 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고 상소. 왕의 자중(自重)을 촉구함과 더불어 서인들의 무모(無謀)를 날카롭게 규탄했다.

하지만 인조는 본의가 아니라고 하나 반정의 훈신(勳臣)·삼사(三司)·백관(百官)의 강박에 드디어 굴복, 인성군의 징벌을 인정한 것이다. 「난중잡록(亂中雜錄)」에

禁府啓 珙之送狀 不一而足 仁城君出置啓 議于大臣
百官三司 方以按律論之 姑先出置 于濟州旌義縣

의금부에서 아뢰길 공을 보내는 문서는 한결같지 않아도 됩니다. 인성군을 귀양보내는 글은 대신과 백관과 삼사에서 의논하여서 안률(귀향)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정의현에 내보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의금부¹⁴⁹⁾에서는 인성군의 유배지를 제주도 정의현으로 결정했지만, 인조는 너무 멀다고 해서 진도(珍島)로 유배하

149) 왕명에 의해 고관을 치죄하는 고등재판소.

여 가족도 동거하도록 했다. 그래서 중사(中使·국왕의 칙사)로 하여금 진도까지 호송하도록 명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또다시 대신·백관의 강한 주청에 의해 결국 인성군은 동년 5월 20일 사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6월에는 인성군의 유가족인 부인 윤씨와 세 아들, 딸 하나의 5인가족은 진도로부터 제주도로 이배(移配)되었다.

인성군의 3남인 이건(李健)¹⁵⁰⁾은 그 때 겨우 15세였다고 한다. 그는 8세 때 이미 소학·대학¹⁵¹⁾ 등을 읽어낸 수재이다. 인성군의 유가족은 경오년(庚午年·1630) 4월 대사헌인 정온의 눈물겨운 상소에 의해 드디어 무죄가 밝혀져 인조 13년(1635) 감형되어 세 형제는 강원도 양양(襄陽)으로 옮겨지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유배인으로서의 불안·초조·고독·망향의 염(念)으로부터 해방되어 겨우 8년 만에 그리운 향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아마도 감개 무량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건은 제주 적거 중에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를 써내고 있다. 일찍이 제주에서 사사(賜死)된 김정(金淨)이 썼던 「제주풍토록」과 함께 제주도의 고대문화를 내외에 널리 소개했다. 그 쌍서(雙書)는 오늘날에도 제주도 풍토의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존재가 되어있다.

이건(李健)

그는 집거하면서 그 「풍토기」 속에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강조밥(粟飯)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갈(蛇蝎·뱀과 전갈)이다. 가장 슬픈 것은 파도소리이다. 하물며 왕도의

150) 1614~1662, 호는 葵窓.

151) 宋 이후 四書의 하나.

소식, 고향의 음신(音信)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몽혼(夢魂)에나 붙여보는 수 밖에 들을 길이 없다. 병이 들면 그저 손을 묶어 죽음을 기다릴뿐, 침이나 약을 베풀 방법이 없다. 이야말로 통국(通國·전국)의 죄지(罪地)이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국가가 유죄인을 이 땅에 내쫓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탐라는 통국의 죄지로서, 유찬(流竄)은 국가의 중형이다. 10년은 세월의 최대(最大)로서 불녕(不佞)¹⁵²⁾은 사람중에 가장 약한 것이다.

사람 중에 가장 약한 몸으로 유찬의 중전엄형(重典嚴刑)을 받고 탐라의 죄지에 적거 당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드디어 바다고기 밥을 피해 왕의 슬하로 되살아나 종반(宗班)¹⁵³⁾의 끝에 덧붙여져 태평의 세상에 서 앉아 먹게 된 것은 오직 성조생성(聖朝生成)의 은혜와 조상의 적선(積善)의 경사가 아닌 것은 없다. 밤 중에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떨어진다. 무릇 나의 자손은 여기에 있으면 세세대대(世世代代) 더욱 충효(忠孝)의 절개를 다하라. 이게 내가 바라는 바이다」고.

이건은 효종 8년(1657)에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졌다. 그는 본디 화미(華美)를 기뻐하지 않고 명리(名利)와 재화(財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독서에 뜻을 두고 책을 손에서 놓는 일이 없었다. 시를 하는데 노두(老杜·두보)를 배우고 붓을 잡으면 곧 글이 된다. 필법(筆法)이 아름답고 더구나 화서(畵書)도 또 뛰어나고 있어 세상에서는 그를 삼절(三絶)이라고도 했다. 저서에는 시문집(詩文集)이나 규창집(葵窓集) 등이 있다.

<광해군일기·인조실록·國朝實鑑·조선당쟁사화>

152) 채주가 없는 사람.

153) 왕실의 일족.

이덕인(李德仁)

...왕으로 추대된 혐의에 의해...

이덕인(李德仁·懷恩君)은 인조조(仁祖朝·1623~49)의 왕족이다. 그는 난 폭하기 그지없는 광해군의 학정(虐政) 때문에 국내의 정치정세가 악화하고 국운(國運)이 차츰 쇠퇴해지는데 깊은 우려하여 인조반정(1623) 당시 심기원(沈器遠: 靑原府院君)을 요직에 천거한 일이 있다. 그 후 심기원은 인조반정의 공신으로서 정사(靖社)¹⁵⁴⁾의 훈(勳)에 기록되어 좌의정까지 뛰어오르고 더구나 수어사장관(守禦使長官)까지 겸하게 되었다. 그러자 야심가인 그는 이번엔 대권(大權)의 장악을 노려 복심(腹心)의 장사들을 호위대(扈衛隊)에 배치함과 더불어 전 지사(知事) 이일원(李一元)과 광주부사(光州府使) 권억(權億) 등과 결탁해서 비밀리에 회은군을 신왕으로 추대,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 탈취의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막하(幕下)의 한 사람이 훈련대장¹⁵⁵⁾ 구인후(具仁堧)에게 그 추지를 고해버렸다. 그 때문에 심기원의 주모자들은 사전에 붙잡혀 주살(誅殺)되었다. 나라에 재난을 초래하고 백성을 강압한 자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결국 이덕인은 그들의 밀의(密議)를 알고도 왕의 추대에 응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잔류되어 엄한 감시 하에 놓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에게 사약을 내리기 위한 전주곡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유적생활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인조 23년(1645) 제주로부터 조

154) 조선 인조 때 김류(金瑬) 등 50인이 반란을 평정한 공을 포상하기 위해 주어진 훈공(勳功)을 말한다.

155) 훈련도감의 중2품 무관, 主將.

정에 호송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심기원의 오천(誤薦)문제가 마지막까지 화를 미쳐 끝내 사약을 받고 죽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가산(家産)까지 몰수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20년 후인 숙종 2년(1675)에 왕에 대한 충절과 결백성이 인정되어 명예가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덕인의 아들 팽형(彭馨)은 선조 28년(1592)에 사마시(司馬試)¹⁵⁶⁾에 합격, 가까운 장래에 입신영달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정치 조류(潮流)의 파장(波長)을 피부로 느껴 불안과 의심암귀(疑心暗鬼)가 끊이질 않음으로 선조 30년(1597), 21세의 젊음으로 이미 제주도에 낙향하고 있다. 그는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고 여겼는지, 절해고도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섬에 아버지가 유배되어 왔다는 것은 아이러니 라고 할 밖에 없다.

이팽향이 제주도로 낙향해서 정착한 곳은 제주시 이도동(두목골)이다. 그는 외출하는 일 없이 오로지 후학을 위해 전념(專念)했다. 그 때문에 그는 학문과 덕을 겸비한 젊은 유자(儒者)라고 숭앙을 받고 제자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어, 글방으로부터 낭송(朗誦)의 소리가 마치 여름날의 매미소리와 같이 울려 퍼졌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는 임윤화(任允化)의 딸을 맞아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름을 득춘(得春)이라고 하며 인조 원년(1623)에 정국공신에 기록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¹⁵⁷⁾를 수여받고 있다. 불행하게도 팽형은 나이 30으로 요절하고 있다. 이 사람을 전주이씨계성군(全州李氏桂成君)¹⁵⁸⁾과의 제주입도조라고 한다. 말

156) 성균관 진사.

157) 종2품의 종친의빈문무관(宗親儀賓文武官)의 계급을 말한다.

하자면 「을사사화(1545)」 때 원죄를 덮어쓴 계림군(桂林君)¹⁵⁹의 증손이다. 당시 사림(士林)의 공론에 의해 이류(李瑠)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대정읍 안성에 있는 향현사(鄉賢祠)이다. 이평형의 일가는 증조로부터 4대에 걸쳐 그야말로 골수에 박히는 수난의 역사를 더듬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조실록>

원중(元棕)

...허균(許筠)의 반역죄에 연좌해서...

원중(元棕)은 자를 성보(誠甫)라고 하며 원주(原州) 사람이다. 선조 40년(1607) 진사에 올라 문과에 등제(登第), 정랑(正郎)¹⁶⁰직을 받았다. 허균(許筠)¹⁶¹이란 자가 광해군의 폭정 하에 대북당에 참여, 반역을 기도해서 동지를 규합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광해군 9년(1617) 기준격(奇俊格)의 고발에 의해 그의 동지인 하인준(河仁俊)이 체포되고 이어 허균도 붙잡혀 혹독한 고문 끝에 뒷해 8월 반역죄로, 무참한 방법으로 참형에 처해졌다.

그 때 대북과 소북 사이에 증상·모락이 퍼져 도전과 보복이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대북당의 영수(領袖)로서 예조판서인 이이첨은 허균 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해서 소북당에게 단단히 혼쭐 났는데 그때

158) 成宗의 둘째 아들.

159) 瑠. 성종의 손자.

160) 정5품관.

161) 허균(1569~1618)은 조선 중기의 문신. 자를 서보(瑞甫), 호를 문산(蚊山)이라고 했다. 형조판서·의정부 참관의 요직을 역임하여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도 「홍길동전」은 그의 사상을 잘 표현한 사회소설이며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의 구문(口文)소설로서 문학사적 의의는 크다.

마다 광해군은 이이첨을 극력 옹호했다. 그 때 삼사의 관원은 모두 중북당(中北黨)이었다. 삼사의 합계(合啓)¹⁶²⁾에 따르면 「……이첨은 교활하고 흉악한 수괴이며 언제나 하는 일의 표면만 번질하게 하여 세인을 현혹시킨다……역균(逆筠)¹⁶³⁾에 있어서는 자기 집에서 당배(黨輩)를 키우고 불온한 격문을 기초(起草)한 일이 하인준의 공술로 뚜렷히 떠올랐다. 따라서 이 음모에 참가한 모든 죄인의 공술을 빠짐없이 허균의 입에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매 한 번 때리지 않고 입을 열게 하지 않은 채 사경(死境)에 이르게했다. 이것은 허균의 입으로부터 자신의 죄상(罪狀)이 백일하에 폭로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원흥(허균)은 이제 뼈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여액(餘厄)이 있을 터, 그 자는 원종이다. 허균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했던 흉모(凶謀)사실을 원종으로부터 끌어낼려고 했으나 이이첨 등은 다시 방해해서 그를 사문(査問)할 수 없게 했다. 그 때문에 옥당(玉堂)¹⁶⁴⁾이 사건의 규명에 나서자 무법천만의 이이첨 등은 왕의 탐전(榻前)¹⁶⁵⁾에서 소리를 가다듬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옥당의 관리를 노려보면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허균의 역모는 이이첨 등 대북당의 암암리의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

어떻든 원종은 허균의 역모사건에 연좌하여 광해군 9년(1617) 제주도 정의현에 정배(定配)된 후, 인조 원년(1623) 2월에 주살당한 것이다.

<榜目・조선당쟁사화・조선인명사전>

162) 사간·사헌·홍문관 가운데 둘의 관청이 연명해서 上奏하는 啓辭.

163) 허균의 반역.

164) 홍문관의 별칭.

165) 좌석 앞.

서신(徐兢)

...최후까지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한 이유로 해서...

광해군 4년(1611) 12월 인목대비의 서관유폐(西官幽閉)에 대한 반교문(頒敎文)¹⁶⁶⁾이 발표되자 영의정인 이원익(李元翼·1547~1643)은 개탄의 상소문을 상주(上奏)했다. 이어 동학(東學)¹⁶⁷⁾의 유생들이 폐모의 부당성을 논하고 그것을 조작한 삼적(三賊)¹⁶⁸⁾을 참수해야한다고 연일 상소가 잇따랐다.

「청야만집(靑野謾輯)」에 심희수(沈喜壽)¹⁶⁹⁾는 당시의 감상(感傷)을 다음과 같이 읊조리고 있다.

辛丑年間事 追思倍愴傷
分明太史筆 千古樹綱常

지난 신축년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슬퍼질
뿐이다. 뚜렷한 태공의 붓만이 천고의 강상(綱常)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고 세상의 무정을 개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모반대론이 잇따랐으므로 흥악무도한 대북당의 권모술수로도 이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광해군 9년(1616)의 가을, 또 다시 폐모론을 재연(再燃)시켜 서신(徐兢)·송문규(宋文奎)등의 간도(奸徒)는 이이첨 등의 뜻을 받들어 「폐모」를 단행해야 한다고 하는 상소문

166)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국민에게 발표하는 교서.

167) 四學의 하나, 지금의 官吏學校와 같음.

168) 李偉卿·鄭造·尹訥.

169) 1548~1622, 호는 一松.

을 설 새 없이 상주했다. 그 때문에 계축년(1623)에 인조반정이 이뤄져 서인이 집권하자, 폐모를 주장한 대북당 일파는 토죄(討罪)되고 서신은 동년 4월 17일 제주도 정의현에 정배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다.

<榜目·조선당쟁사화>

홍무적(洪茂績)

...왕의 불륜한 조치에 저항했다고 해서...

홍무적(洪茂績·1577~1656)은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라 칭했다. 조선 중기의 명신이다. 광해조에 이른바 삼적이라고 일컬어진 이위경·정조·윤인 등 이이첨의 복심들이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주창하자 대간(臺諫)¹⁷⁰⁾인 홍무적은 「정조 등 간신들이 자전(慈殿)¹⁷¹⁾대비를 국모로 대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 말대로 한다면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이냐? 계모라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취지의 상소문을 올려 그들의 불륜성을 지적, 왕의 맹성(猛省)을 촉구했다.

당시는 대북당이 정권을 쥐어있었으므로 그들에게 협조하는 자는 부귀영달을 하고 그에 반대하는 자는, 크게는 목숨을 잃고 작게는 섬으로 유배되는 것이 결과였다. 그래도 감연히 부정에 저항하여 직언(直言)이나 감언(敢言)을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충군애국의 발로(發露)라고도 할만 한 것이다.

결국 홍무적은 폐모론에 반대한 죄로 거제도¹⁷²⁾로 찬류되고 정택퇴(鄭

170) 사헌부·사간원.

171) 인목대비.

澤雷)는 또 그의 유죄(流罪)에 반대했다고 해서 남해로 유배되었다. 인조반정 후 홍무적은 석방되어 창녕현감(昌寧縣監)이 되었고 인조 21년(1643)에는 대사헌(172)을 배명(拜命)했다. 그 때 황익(黃翼)이 장군이 되어 군사를 사역(私役)에 썼다. 홍무적은 그 부정행위를 상계(上啓)해서 그를 효수형(梟首刑)에 처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그 때 이익이 그것은 심기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무적은 그 말을 받아들여 심기원(沈器遠)(173)의 탐잔무행(貪殘無行)의 상황을 날카롭게 따졌지만, 인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조 22년(1644) 명을 받들어 심양(瀋陽)(174)에 사절로 가, 상사(上使·正使) 이경여(李敬輿)(175)와 함께 구류되었다가 얼마없어 풀려서 귀국, 다시 대사헌에 복명되었다. 그 전에 인조 14년(1636)에 일어난 「병자호란(丙子胡亂)」(176) 때 삼전도(三田渡)에서의 굴욕적 항복식 후, 왕위계승자였던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177) 등 왕자들이 청의 도성 심양에 인질로서 연행되어 갔다. 인질이라고는 하나 왕자들 일행은 대단한 세대(世帶)인 것 같았다. 정부 고관을 비롯 종자(從者)가 3백 여에 이르러 주거도 광대하게 신축했다. 심양관소(瀋陽館所), 흔히 말하는 심관(瀋館)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청은 조선에 대해 갖가지 무리난 제(無理難題)를 제기했다. 그것은 작게는 호란(胡亂) 때의 포로의 탈주·

172) 사헌부 즉 감찰부의 제1관위.

173) 심기원(?~1644)의 자는 수지(遂之), 인조반정의 공신. 인조20년에 좌의정이 된다. 동 22년에 전 지사 이일원, 광주부사 권익 등과 짜서 회은군 덕인을 옹립해서 모반을 기도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밀고 당해, 구인후·김류 등에게 체포되어 토살(討殺)되었다.

174) 지금의 奉天省.

175) 1585~1657, 호는 백강(白江).

176) 淸太宗의 제2차 침략.

177) 인조의 차남, 뒤에 孝宗.

송환에 관한 문제, 크게는 「정명(征明)」을 위한 원군(援軍)이나 물자의 조달 등으로, 그것을 강요받은 조선은 그 때마다 갖가지 굴욕을 겪었다. 특히 조선정부가 비밀리에 명(明)과 내통한 사실이 들통나 당시의 수상이나 대신들이 사문(査問)을 받았고 대표적인 반청론자인 김상헌(金尙憲)¹⁷⁸ 등이 체포되었다.

이른바 「심양사옥(瀋陽事獄)」 등은 왕자들의 입장을 더더욱 괴롭게 했다. 이들 갖가지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소현세자는 청의 황족이나 고관에 대해 막대한 뇌물이나 공물(貢物)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본국에서 반청기운(反淸氣運)이 높아감에 따라, 인조는 소현세자¹⁷⁹를 「친청론자(親淸論者)로 의심했던 것이다.

인조 23년(1645) 봄, 소현세자 등의 눈물젖은 8년의 유폐생활이 풀려 그리운 조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 때 청주(淸主) 누루하치(奴兒哈赤)가 세자와 대군에게 소회(所懷)를 물었다. 그러자 세자는 청주 앞에 있는 「벼루(龍硯)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 대군은 「조선에서 붙잡혀온 전원을 데려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인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 어리석은 놈아! 벼루를 어디에 쓸 작정이냐!」고 욕을 퍼부으면서 벼루로 세자의 이마를 두드렸다. 이 탓인지, 세자는 사흘을 앓다가 어처구니 없는 급사를 했다. 뜻 밖의 일에 놀란 양사(兩司)는 세자의 사인에 의문을 품어 의관(醫官) 이형익(李馨益) 이하의 추국(推鞠)을 계청(啓請)했을 정도였다. 웬지 인조의 세자에

178) 1574~1652, 호는 淸陰이라 했고 제주목사도 지냈다.

179) 소현세자(1612~45)는 인조의 장남, 인열왕후 한씨의 소생. 빈은 우의정 강석기(姜碩期)의 딸, 민회빈(愍懷嬪). 인조 3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인질로서 심양(瀋陽)에 있을 때 서역원정(西域遠征)에 출전했다. 귀국할 때 천문학에 관한 서양의 문물과 성교정도(聖敎正道)에 관한 번역서적·지구의(地球儀)·천주상(天主像) 등을 갖고 돌아왔다.

대한 증오(憎惡)는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 세자의 사후(死後) 왕위계승자를 결정할 때에도 상도(常道)에서라면 소현의 적남(嫡男)인 세손 경선군(慶善君)으로 결정해야 할 터인데 나란히 앉아있는 대신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차남인 봉림대군을 왕위계승자로 결정했다.

그뿐 아니라 인조는 이듬해 3월 세자의 처인 강빈(姜嬪)과 자식 둘까지 죽여버린 것이다. 권력은 마물(魔物)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부모자식 형제간에 피로서 피를 씻는 듯한 권력 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세자 사이에 「세자빈 강씨는 성질이 거친 위에 남편이 급사하자 더욱 더 원한의 기색을 노골화함으로 인조는 마음 속에서 머누리를 대단히 미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바람직 하지 않게도 어느 날 인조의 밥상의 군 전복에 독이 뿌려진다는, 이상한 치독(置毒)사건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대사간(大司諫)인 조경(趙綱)은 상소해서 「범인을 적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고 진언(進言), 왕의 자중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권력으로 세자빈의 소행이라고 홀담으며 세자빈을 폐하여 서민¹⁸⁰⁾으로 격하(格下), 무리하게 친정으로 돌려보낸 다음 사약을 내리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까닭없는 혈족간의 살륙이 무자비하게 진행되어, 어제의 총신(寵臣)도 오늘은 극형이라고 하는 살벌한 세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호란 이래의 반청 풍조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박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헌인 홍무적은 이 불륜한 조치에 크게 분개, 대간을 대표하여 왕에게 상계(上啓)했다. 「……신은 본디 우직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주군의 노여움을 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당 때문에 전하를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위에 오르신 후 20여년간 법의 운

180) 官品이 없는 보통사람.

용에 있어 공평무사를 좌우명으로 했기 때문에 천레하졸(賤隸下卒)조차도 조금의 원한을 갖는 일도 없고 하물며 심기원과 같은 대역죄조차도 반정(인조반정)의 공로를 배려하여 전시(傳示)¹⁸¹⁾를 애끼지 않았잖습니까. 강빈이 비록 전하에게 의리상 어떻게 잘못을 범했다 해도 전하는 그 옛날 슬하의 자은(慈恩)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되는대로 고백한 도적에게 징벌을 가하듯 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강빈을 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죽이는 일 같은 게 있어서서는 아니됩니다. 그래도 죽이고 싶으면 먼저 신을 죽인 다음에 죽여주십시오……」라고 강하게 간정(諫淨)했지만 왕은 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보다도 인조는 강빈의 불순한 행위는 홍무적 일당의 배후세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던 것이다.

그 후 인조는 홍무적 등이 강빈을 강력히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자점(金自点)¹⁸²⁾에게 의견을 구했다. 김자점은 그에 대답했다. 「홍무적은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강빈의 사사(賜死)명령 철회를 요구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대간이라는 중책의 직무에 있는만큼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고, 왕은 그 조언조차 무시하고 인조 25년(1647) 강빈의 궁인 「신생(辛生)의 옥(獄)」(1647)이 일어나자 홍무적은 그 해 3월에 제주도 정의현에 유배되어 위리안치의 혹형에 처해졌다.

홍무적 등의 이러한 거들된 조명 탄원에도 불구하고 강빈은 끝내 사사되고 친정 일족은 파멸의 비운을 맞이했다. 홍무적은 그 후 갑산(甲山)으로부터 홍천(洪川)으로 이배됐었지만 효종이 즉위하자 사면되어 다

181) 상벌에 관한 王旨를 받아서 그 관아에 전달하는 일.

182) ?~1651, 호는 洛西.

시 대사헌에 복위, 우참찬(右參贊)¹⁸³이 되던 해에 죽었다.

<人物考·인조실록(靑丘學叢)·李朝黨爭史話>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세 아들

...어머니 사건에 연좌해서...

소현세자의 부부가 원죄로 피살된 후 인조 25년(1647) 5월 강빈사건이 또 문제가 되어 불쌍하게도 그 세 아들이 제주도로 보내어져 강제적으로 격리된 것이다. 그 때 장남인 석철(石鐵)은 12세, 차남 석린(石麟)은 8세, 3남 석견(石堅)은 4세라는 천진난만한 아들이었다.

정언황(丁彦璜)¹⁸⁴ 등이 국왕의 인정적인 처치를 탄원했지만 영의정 김자점¹⁸⁵ 등의 간신에 의해 탄핵된 때문에 그것은 헛일이었다. 죄없는 왕손이 절해고도로 유배된 것이 아무리 당쟁의 부산물이라고는 하나 이런 난폭비정한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소현세자의 일가가 파멸의 비운에 맞춰진 것은 모두가 김자점의 조작에 의한 것이며 그에 휘둘린 인조의 무모한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일반의 사류(士類)들은 김자점을 사갈(蛇蝎)과 같이 미워해서 원두포(元斗杓)¹⁸⁶·이후원(李厚源)¹⁸⁷에게 속하게 되어 원당(原黨)과 낙당(洛黨)으로 분열해 대립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드디어 소현세자의 유아(遺兒) 3형제가 제주에 안치되게 되자, 인조

183) 의정부의 정2품관.

184) 1597~1672, 호는 默拙.

185) 효종이 청을 침공하려 하고 있다고 믿고한 때문에 처형됨.

186) 1593~1664, 호는 灘叟.

187) 1598~1660, 호는 迂齋.

는 제주삼읍¹⁸⁸⁾에 유배되어 있는 자 가운데서 사대부(士大夫)¹⁸⁹⁾ 전원을 타도로 옮기도록 명했다. 그에 의해 홍무적은 겨우 1년만에 남해로 옮겨진 것이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에 유배되면서부터 고아와 조금도 닮음없는 비참한 삶,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신산(辛酸)과 고난을 다 겪었다. 굶주림과 상심(傷心)의 아픔을 참을 수 없어 드디어 석철과 석린은 배소에서 어린 나이로 타계해버리고 막내인 석견만이 목숨을 보전하여 본토로 옮겨졌다.

다행히 효종 때 사면되어 한양으로 소환되었다. 그 후 그는 경안군(慶安君)으로 봉해져 자를 「회(檜)」라고 했다. 그가 죽자 현종(顯宗)은 매우 슬퍼하고 특명에 의해 정성껏 장사 지냈지만 의관 박균(朴榘)은 치료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먼 섬으로 유배되었다. <인조실록·국사대사전>

신득연(申得淵)

...이계(李桂) 사건에 관련해서인가?...

신득연(申得淵)의 자는 정오(靜吾), 현포(玄圃)가 호이다. 고령(高靈) 사람. 광해 3년(1601) 문과에 올라, 한림(翰林)을 거쳐 도승지(都承旨), 경기감사(京畿監司)에 이른다.

득연은 조카 이계(李桂)사건(인조 20년. 1642), 즉 이계¹⁹⁰⁾가 선천부사(宣川府使)로 있을 때 명(明)의 상선과 암거래한 일이 탄로 나 명의 관헌에 체포되어 바로 사형 전야(前夜)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국투생

188) 제주·대정·정의.

189) 문무 兩官에 임명된 귀족계급.

190) ?~1643, 호는 鳴臯.

(賣國偷生)¹⁹¹의 계책(計策)을 위해 나라의 음사(陰事) 12건을 들추어 최명길(崔鳴吉)¹⁹²은 중을 보내 명나라와 통신하고 이경여(李敬輿)는 청나라의 숭덕(崇德)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으며 신익성(申翊聖)¹⁹³·이조판서 이명한(李明漢)¹⁹⁴도 또 명을 위해 절의(節義)를 지키겠다고 고해서 이듬해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청주(淸主)는 그에게 「망군부국(忘君負國)」의 죄가 있다고 해서 본국으로 송환했다. 평안감사 구봉서(具鳳瑞)가 이계를 매국역적(賣國逆賊)이라고 해서 가두자 그의 일당이 비밀리에 청국에 뇌물을 보내 구명운동을 했지만 이미 때를 놓쳐 구봉서는 청나라가 간섭하기 전에 이규를 참살해버렸다. 거기서 신득연은 조카인 이계사건에 관련하여 그 일당으로 간주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어 있었지만 소현세자 세 아들의 제주 안치 때문에 남해로 옮겨져 거제도에서 원한 속에 죽고 있다.

<조선인명사전>

이경여(李敬輿)

…인조의 이저(易儲·왕세자를 바꾸는 일)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경여(李敬輿·1585~1657)은 자는 직부(直夫), 호를 백강(白江) 또는 봉암(鳳岩)이라고 했다. 인조 14년(1636) 호란(胡亂)의 형세가 있음을 예견(豫見)하고 구습(舊習)을 조속히 개혁하여 정사(政事)를 닦고 현제(賢才)를 등용하여 병승(兵乘)을 단련하고 기계(器械·대포)를 갖추는 것을 왕에게 진언했다. 아나나다를까, 그 해 12월에 호병(胡兵)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와

191) 나라를 팔고 목숨을 애끼는 일.

192) 1557~1661, 호는 杏園.

193) 1588~1644, 호는 樂全堂.

194) 1595~1645, 호는 白洲.

별 수 없이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난을 피했다. 그는 앞에서 말한 이계(李桂)사건에 관련하여 심양(瀋陽)에 억류됐지만 수개월만에 사면되어 귀국했다. 또 1644년에 왕사(王使)로서 심양에 부임했다가 앞의 일로 다시 구류되었지만 이듬해 사면되어 소현세자를 따라 돌아왔다.

인조 22년(1645), 강빈(姜嬪)¹⁹⁵⁾이 인조의 후궁 조소용(趙昭容)을 저주한 사건에 수 많은 자가 연좌해서 차례 차례 붙잡혀 처형이나 유형을 당했다. 그때 강빈의 궁녀 신생(辛生)만은 인조에게 밀고한 대상(代償)으로 죽음을 면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빈의 사후 인조는 신생이 「저주사건」에 대해서 또 여죄(餘罪)를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 신생을 붙잡아 혹독하게 따지자 그녀는 궁정에 인골(人骨)이나 동인(銅人)¹⁹⁶⁾을 묻어있는 곳이라든지 관련자의 이름을 남김없이 고백해버렸다. 그 때문에 관련자 13명은 옥에 갇히고 소현세자의 유아(遺兒)까지도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당한 것이다.

집념 깊은 인조는 그것에 흡족하지 못하고 이경여도 이 사건에 한 몫 끼어있을 것으로 여겨 연좌인의 진술에서 이경여의 이름을 끌어내려고 철저히 털었지만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그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모반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인조는 이경여가 봉림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¹⁹⁷⁾ 이경여는 이저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신하고 있다. 「……좌상(수석대신) 홍서봉(洪瑞鳳)¹⁹⁸⁾의 말은 만고의 대경(大經)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도(權道)를 행사할 때에는 우선 심려성찰(深慮

195) 세자의 처.

196) 동으로 만든 사람의 모형.

197) 국왕의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의 부원장 격.

198) 1572~1645, 호는 鶴谷.

省察)하여 도리에 합치(合致)시킨 다음 밀어 가야 될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도(大道)를 행하면 다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보는 일도 있습니다만, 경솔하게 권도를 행사하면 질서를 문란하고 화란(禍亂)을 초래하게 됩니다. 옛날 제왕도 일을 진행시킬 때는 신중한 태도로 임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냉정하게 지난 일을 상고(詳考)하고 시비득실(是非得失)을 잘 살펴 차분히 구상한 다음에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전부터 국민의 상하가 원손(元孫)¹⁹⁹⁾을 따랐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세자를 바꿔버리면 결국은 국법을 무시하게 되어 윤서(倫序)의 상실이 이 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침을 공포하면 인심이 동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저(易儲)의 일은 경솔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고 간절히 왕을 타일렀다.

왕세자의 책봉문제는 한 사람의 이경여뿐 아니라 육경(六卿)²⁰⁰⁾ 모두가 일제히 반발하여 「원손을 저사(儲嗣)²⁰¹⁾로 세우는 것이 대경(大經)이며 정도(正道)이다」고 계속 호소했지만 인조는 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사도(邪道)를 밟아, 봉림대군을 세자로 봉했다. 과연 그 후 강빈의 화옥(禍獄)이 있었고 김자점(金自点)의 변(變)²⁰²⁾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이경여는 강빈을 옹호하고 봉림대군의 책봉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된 것이다.

드디어 소현세자의 세 아들의 제주도 안치(安置)가 결정되자 인조는 다시 그를 의심하여 진도로 옮겨졌다. 그에 따라 이경여의 제주 유배 생활은 극히 짧은 것이었다. 그 후 삼수(三水)²⁰³⁾로 옮겨져 적지(謫地)

199) 소현세자의 아들.

200) 육조의 대신.

201) 왕세자.

202) 효종 2년의 옥사.

에 있길 3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孝宗)이 왕위에 오르자 김상헌이나 여러 대신의 진언으로 1650년 그는 석방되어 돌아와 이경석(李景奭)²⁰⁴⁾과 교체하여 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병환 때문에 관계를 떠난 다음에는 세상과의 교섭을 끊고 백마강 부근에 복거(卜居), 하나의 서당을 차려 문을 닫아 영욕(榮辱)의 밖에서 초연했다고 한다. 문장을 만드는데 명백조창(明白條暢), 시도 또 고결아건(高潔雅健)했었다고 사서(史書)는 전하고 있다.

<인조실록·國朝名臣錄>

김응주(金膺珠)

…사화(士禍)에 연좌되어…

김응주(金膺珠)는 김해(金海)사람이다. 그는 직제학수찬관(直提學修撰官)²⁰⁵⁾ 재직중에 폐륜행위가 많았던 광해군이 저지른 사화(士禍)에 연좌하여 제주도로 유배되고 있다. 그래서 그가 탄 작은 배가 물결 속에 흔들리며 겨우 도착한 곳이 조천면 함덕포(咸德浦)였다고 한다. 그래도 일족 사람들에게 큰화가 미치지 않아 같은 항렬(行列)²⁰⁶⁾인 김완(金完·鶴城君)의 자손들은 대대로 현직(顯職)에 붙어있다. 그래서 그 아들 여수(汝水)는 해미현감(海美縣監)²⁰⁷⁾을 거쳐 제주목사가 된다. 인조 26년

203) 백두산에 가까운 지방.

204) 1595~1671, 호는 白軒.

205) 직제학은 규장각(奎章閣)의 일직(一職·당상 정3품, 또는 종2품), 홍문관·예문관의 일직(정3품). 수찬관이라고 하면 춘추관의 일직으로 승지가 이를 겸한다. 정3품관을 말한다.

206) 친족의 항(行)과 열(列)을 말하는 것으로 친족간의 사이가 같은 계급일 경우, 이름의 어느 한 글자가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207) 종6품.

(1649)에 부임해온 그는 재임중에 홍화각(弘化閣)²⁰⁸을 중수(重修)하여 흥학(興學)에 노력하는 등 선정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 2년간 제주목사로 있으면서도 함덕촌에서 유폐생활을 하는 노경의 김응주²⁰⁹를 가끔 찾아와 신고(辛苦)와 고적(孤寂)을 위로하고 배후에서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들리는 바로는 제주도의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일찍이 적객(謫客)이었던 김응주를 사군파(四君派)²¹⁰의 입도조라고 하는데, 그는 유배생활이 해제된 다음에도 그대로 그곳에 정착, 섬 여자에게 장가들어 많은 자손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208) 節制使의 營廳.

209) 숙부가 된다.

210) 金益卿을 중심으로 하는 監務公派.

현종조(顯宗朝 · 재위 1659~74)

환성지안(喚醒志安)

...대법회를 무구(誣構) 당해서...

지안(志安)의 속성(俗姓)은 정씨(鄭氏), 아호를 환성(喚醒)이라고 했다. 현종 5년(1664) 춘주(春州)에서 출생했다. 15세에 출가하여 야지산(彌智山)에 있는 용문사(龍門寺)에 들어가 계(戒)를 상봉정원(霜峰淨源)²¹¹⁾에게 받아 17세 때, 법(法)을 풍담(風潭)의 적전(嫡傳)²¹²⁾ 월담설제(月潭雪霽)²¹³⁾에게서 찾았다. 안골상청엄(安骨相淸嚴)²¹⁴⁾ 음수영랑(音頭靈朗)²¹⁵⁾ 언간(言簡)²¹⁶⁾ 색화(色和)²¹⁷⁾한다. 월담은 이것을 큰 그릇이라고 해서 드디어 의발(衣鉢)을 맡겼다. 그래서 그는 침식을 잊고 안내전(安內典)을 깊이 연구했다.

17세 때, 그는 모운언대사(慕雲言大士)가 법회를 금산 직지사(金山 直指寺)에서 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찾아가 모운의 가르침을 청했다. 모운은 그에 경복(敬服)하여 거기 모인 수백의 중도(衆徒)들 앞에서 「나는

211) 설봉정원(雪峰淨源)은 속성은 김씨, 인조5년(1627)영변에서 태어났다. 33세 때, 풍담(楓潭)의 문을 두들겼다. 화엄대경(華嚴大經)에 정통하고 또 과문(科文)을 지었다. 입적(入寂)에 임하여 문인들에게 유계(遺戒)하여 계(偈: 불가의 詩詞)를 썼다. 「雪白和雲白 松風帶露靑(하얀 눈은 하얀 구름과 조화되고 솔바람은 맑은 이슬에 이어진다)」고 붓을 던져 기쁜 표정으로 갔다. 향년 83세.

212) 정통에서 정통으로 이어지는 것.

213) 월담설제는 13세 때 출가하여 만년에 금화산(金華山)의 정광사(澄光寺)로 옮겼다. 숙종 30년(1704) 이연(怡然)히 입적했다. 향년 72세.

214) 나의 골상은 맑고 엄하며.

215) 소리는 신령스럽고 명량하다.

216) 말씨는 간결하여.

217) 얼굴빛과 조화.

여지껏 사자좌(獅子座)²¹⁸⁾에 머물고 있다. 너희들은 예를 갖추어 이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조용히 나가 다른 산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지안은 드디어 대중을 자기에게 끌어들여 횡설수설(橫說豎說)을 종횡무진으로, 바로 강하(江河)가 흘러가듯 법해(法海)를 풀어놓았다. 그에 따라 종풍(宗風)은 크게 진작되고 신도가 사방팔방으로부터 왕창 모여들었다. 그는 설법(說法)이 알량할뿐 아니라 교지(教旨)에 있어서도 심원(深遠)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교지라면서 개중에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조차 나왔다. 어느 날 우연히 낙안(樂安)의 정광사(淨光寺)에 허주(虛舟)가 당도했다. 속을 들여다보니 육조(六祖)²¹⁹⁾ 이래 주해(註解)하는 바의 제경(諸經)이 1천1백여 상자 가량이 들어있었다. 갖고 와서 이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과연 지안의 말과 부계(符契·割符)가 합치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중도들은 크게 경탄했다.

지안은 국내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일찍이 지리산(智異山)에 살았다. 어느 날 트릿한 한 도인(道人)이 나타나 「바라건대 선사님,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멀지 않아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고 한다. 과연 수일 뒤에 절에 큰 불이 있었고 또 금강산의 정양사(正陽寺)에 머물었을 때 종일 강풍이 몰아쳤는데 그는 모두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흠뻑 젖으면서 산을 내려갔다. 우연히 산기슭에 있는 장자(長者)의 집에 머물고 가라고 권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어떤 오두막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그런데 그날 밤 절간과 장자의 집은 흙탕물에 끌려가고 말았다.

218) 고승의 자리.

219) 선가(禪家)에서 종파가 생기기 전의 6인의 조사(祖師). 즉 달마(達摩)·혜가(慧可)·승찬(僧璨)·도신(道信)·홍인(弘仁)·혜능(慧能)을 말한다.

현종 6년(1665) 화엄종(華嚴宗)의 대법회를 금구(金溝)의 금산사(金山寺)에서 마련한 바, 무려 1천4백여명의 신도가 모여들어 연일 이상스러울 정도로 북적거렸다. 지안은 대중을 위해 정열을 기울여 설법했다. 듣는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미증유의 성황이라고 입을 맞춘다. 그런데 을유년(1669)에 들어 그 법회에 대해 무구(誣構)²²⁰⁾하는 자가 있어 지안은 지리산에서 붙잡혀 전라도의 옥에 갇혔다. 그러나 얼마없어 용서를 받았지만 도신(道臣)²²¹⁾이 붙잡아서 안된다면서 끝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도의 배소에 도착해서 불과 7일만에 죽었다.

지안이 일찍이 말했다. 「살아서 보시(布施)에 탐익하고 죽어서 중력(衆力)을 괴롭힌다는 것은 내가 설 곳이 아니다. 오히려 절역수경(絶域殊境)²²²⁾에서 죽음만 같지 못하다」고.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 즉 지안이라는 고승은 66세 때, 제주의 유배지에서 조용히 이 세상에 이별을 고한 것이다.

<朝鮮佛教通史>

신명규(申命奎)

...능역관리(陵役管理)를 태만한 죄로...

신명규(申命奎·?~1689)는 자를 원서(元瑞), 호를 묵재(默齋)라고 했다. 평산(平山)사람. 그는 현종 3년(1662)에 문과시험에 급제하여 삼사(三司)에 근무, 집의(執義)²²³⁾가 되었을 때 효종릉(孝宗陵:寧陵)의 석역(石役)을 관장했다.

220) 죄 없는 일을 죄 있는 것처럼 속임.

221) 관찰사.

222) 멀리 떨어져있는 곳.

223) 사헌부의 종3품관.

현종 14년(1673) 5월 영림부령 익수(靈林副令翼秀)의 상소에 따르면 「영능의 석물(石物)에 금이 가 빗물이 고일 우려가 있고 또 능이 북측도 어긋나, 매년 수리할 역사(役事)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영능 천이(遷移)문제가 논해졌을 때, 능의 석축(石築)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신명규는 주관의무의 수행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정부 안에서 그에 대해 크게 논의되었지만 결국은 남인파에게 쫓기게 되어 그는 대역죄²²⁴⁾로 문책 당해, 사형 극전의 딱한 입장에 놓였지만 다행히 한발이 심한 때인지라 사형은 불가하다고 구명을 간청한 자가 있어 감일등(減一等)하여 제주도대정현에 찬류되었다.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현종 14년(1673) 4월 초에 신명규가 영능의 석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죄안(罪案)²²⁵⁾이 되자 현종은 즉시 좌의정 김수항(金壽恒)²²⁶⁾을 현지에 파견해서 공사현장을 검증케함과 더불어 능역관장관(陵役管掌官)인 신명규와 감조관(監造官)인 이승기(李昇基) 등의 관계관을 옥에 가두었다. 이어 5월초에 영능봉심관(寧陵奉審官)인 김수항도 또한 문책 당해 관작까지 박탈당하고 능을 읍기기로 의결했다. 그래서 5월 11일에는 신명규의 제주유죄(流罪)판결이 확인되었다. 그 전에 신명규와 이승기는 사형의 가부가 논단(論斷)되었지만 마침 한발이 계속돼 도저히 사형은 안된다고 해서, 특혜에 의해 제주도로 찬류되었던 것이다.

그는 동년 7월 13일 별도포(別刀浦)²²⁷⁾에 도착하면서 그 발로 주성(州

224) 종묘·산능·궁궐을 훼손한 죄.

225)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일.

226) 1629~89, 김상헌의 손자.

227) 지금의 화북포.

城)으로 직행했다. 한데 마침 배당된 적사(謫舍)가 수리중이었으므로 배소로 되어있는 중문면예리(中文面貌里) 이해길(李愛吉)의 집에 도착한 것은 9월 중순이었다. 그는 권력의 음모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여겼음인지 재적중(在謫中)에 적사로부터 한 걸음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주변에 감시의 눈이 뻗히고 있어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 가죄(加罪)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숙종 4년(1678) 대사헌이었던 최이헌(崔而憲)이 제주목사로 좌천되어 왔다. 그와는 관도(官途)에 나선 다음부터 서로 마음을 터놓을 사이였지만 단 한번도 따뜻한 손길을 뻗히는 일이 없었다. 「사람이 일단 초라해지면 이토록도 냉정해지는 것일까!」고 자신의 처참한 신세를 한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피부에 맞지않는 바닷바람에 괴로움을 당해, 눈물도 얼어붙는 매일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실어 교학에 노력, 유능한 인재 양성에 있는 지혜를 다 썼다. 문인 속에는 문과에 급제한 정의(旌義)사람 오정빈(吳廷賓)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적거중에 자신의 유적생활상태와 제주도의 인정·풍속·견문(見聞) 등을 적은 「묵재기문록(默齋記聞錄)」을 저술하고 있다. 그가 이 섬에 보내져 온지 7년 쯤인 숙종 6년(1680)에 「경신환국(庚申換局)」²²⁸⁾이라는 대정변이 일어나, 남인의 거의가 실각하고 정권은 서인에게로 바뀌었다. 그 덕분으로 그는 진도로 양이(量移)²²⁹⁾되었다. 그래서 명규의 아들 신임(申鉞)

228) 숙종 6년(1680) 남인 일파가 대량으로 추방된 정치적 사건을 말한다. 현종 15년(1670) 예론(禮論)에 이겨 정권을 잡은 남인들은 숙종조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다. 그 때 허견(許堅·許積의 서자)이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 등과 공모하자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김석주(金錫冑) 등이 무고한 것으로 해서 대옥사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남인의 거두들은 처형되고 나머지 일당은 각기 처벌되어 정권은 서인의 손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229)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은 아버지의 원죄(冤罪)를 밝혀내기 위해 신문고(申聞鼓)를 때려 남인들이 아버지에게 무실의 죄를 덮어씌웠던 사실을 장황히 논하며 조속히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명규는 방환되어 숙종 14년(1689)에 병몰(病沒)했다. 사후 이조판서를 추증(追贈)하고 있다. <號譜>

이지달(李枝達)

...당쟁의 「엉뚱한 벼락」을 맞고...

지금부터 3백여년 전, 현종조(顯宗朝, 1659~74)의 일이다. 지배계급 사이에 정권 탈취를 둘러싸고 피나는 당쟁이 치열하여 정국은 잠시도 안정되지 않고 나라의 기강은 난마(亂麻)와 같이 흐트러졌다. 그 때 이지달(李枝達)은 어느 새언가 귀신에게 홀리듯 당쟁에 끼어들어 끝내 제주도 멀리 보내졌다. 그의 배소는 대정현감산리(柑山里)²³⁰⁾였다. 정변은 언제나 생각지도 않는 형태로 찾아들어 정쟁은 흑심하고 보신과 입신출세욕이 엇힌 때문에 죄없는 자까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보통이었다.

지달이 유배되어 올 때 심부름꾼으로 아들 시호(時皓)가 아버지를 따라왔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시호는 어느 새 젊은이로 성장해서 오씨 가문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름을 보운(寶雲)이라고 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도내에 거주하는 수안(遂安)²³¹⁾이씨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 후 이지달의 부자는 유죄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보운만은 제주에 잔류하여 현재의 인맥을 형성했다고 한다.

²³⁰⁾ 지금의 서귀포시 중문동 감산리.

²³¹⁾ 황해도.

숙종조(肅宗朝 · 재위 1674~1720)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손자 임창군(臨昌君 · 焜), 동생(煜)
...당쟁의 먹이가 되어...

옛날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많은 재앙을 초래한 것은 인간이다」고 한 것과 같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3남 경안군(慶安君 · 檜)의 아들 「훈(焜)」과 「욱(煜)」의 형제가 또다시 아버지의 비극²³²⁾을 맞아 제주도로 안치되었다. 이러한 불행이 비록 봉당(朋黨)의 선물이라고는 하나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 무신경한 무리들의 잔인한 처사라고 말하면 지나칠 것인가.

그러면 임창군(臨昌君) 등이 제주도로 유배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말하자면 송상민(宋尙敏)²³³⁾이란 자가 효종 10년(1659) 이래의 예론의 전말을 자세히 정리한 소책자를 왕에게 올렸다. 그 속에 「효종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상복을 입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구가 있고 더구나 어떤 투서 속에는 「당화(黨禍)가 이렇게까지 격화한 것은 결국은 적서장유(嫡庶長幼)라는 종통(宗統)의 질서를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현세자의 손자인 임창군은 적통(嫡統)일뿐 아니라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표(師表)로 삼을 만한 인물이므로 될 수 있으면 제공(諸公)들이 임창군을 추대하면 국민은 기쁘게 환영할 것이다」는 취지문이 적혀 있다.

이것을 보고 숙종은 크게 분개하여 즉시 친국이 개시되었다. 송상민

232) 제주유배를 말함.

233) 호는 石谷, 恩律의 유생.

은 말할 것 없고 상소문을 기초한 박세휘(朴世徽), 투서한 이정(李溍) 등은 그 자리에서 장살(杖殺)되고, 이렇다는 명분도 없이 많은 사람이 유배형에 처해졌다. 때는 바야흐로 남인의 세상. 세간에는 임창군(혼)이 왕에 추대되고 있다는 억측과 유언이 향간에 넘쳐 인심을 흔들었다. 그 혼란을 핑계삼아 서인파의 김석주(金錫胄)²³⁴⁾ 등이 호시탐탐 정권 탈취를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불온한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허적(許積)²³⁵⁾을 비롯한 남인파의 여러 대신은 임창군의 조치에 대해 「흉서(凶書) 안에 단지 추대의 문구는 있지만 별로 이렇다는 공모의 흔적이 없는 것을 보면, 임창군 등이 그에 관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고 그의 무실(無實)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서인파가 무슨 짓을 할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때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과감히 임창군의 형제를 먼 섬으로 추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책입니다... 관용의 수단은 언젠가 불상사를 일으켜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고 했다. 이것은 그들이 임창군에게 무실의 죄를 덮어 씌우려는 흉계이다.

이에 대해 왕은 침통한 목소리로 「그들은 아직 천진난만한 어린이, 그렇게 무서운 음모 같은 걸 생각할 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절해고도로 보낼 수 있을까...」고 마음 속에서는 한탄하면서도 문제가 너무 중대한 만큼 왕은 잇따라 말한다. 「생각컨대 실의(失意)의 불평분자들이 언제나 종통(宗統·嫡統)의 소재(所在) 운운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어쩌면 앞으로도 그들이 임창군을 종통이라고 떠들어댈 우려도 있고 더구나 임창군이 변절(變節)할 나이이기도 하므로 본의는 아니지만

234) 1634~84, 이조판서.

235) 1610~80, 영의정.

대신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둘을 제주도에 안치시키라」고 명했다. 실로 통탄스러운 얘기지만 고뇌의 결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왕은 하교해서 어머니나 의관(醫官)도 따라가도록 제주목사에 명하여 의료(衣料)와 먹거리에 부족이 없도록 했다.

임창군의 형제는 제주도유배라는 왕명을 듣고 깜짝 놀라 공포에 떨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잘도 불운한 별아래 태어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지었다. 그 때 경안군 일족이 다시 비운에 휩쓸렸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하나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들 일족의 제주에서의 유적생활에 대해 「숙종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제주목사는 쓰러져가는 좁다란 집에 높은 가시울타리를 치고 집안 출입에도 반드시 수병(守兵)이 미행,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왕은 그 보고를 듣고 「그것은 내 뜻에 반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말기를 바란다. 서민과 차별없이 자유롭게 해줘라」고 명하고 있다. 또 「목재기문록(默齋記聞錄)」에는 「당시의 목사는 최이헌(崔而憲). 그는 노복(奴僕)의 출입조차 엄금했을 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와 모욕을 가한다. 지독한 일례를 들면 적사(謫舍)가 성 아래 있었으므로 부하 관원들을 시켜 성 위로부터 적사를 향해 오줌을 뿌리는 등의 악랄한 짓도 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더러운 모욕에 분한 생각이 가슴 가득 치밀어올라 드디어 울부짖었다」고도 쓰여있다. 슬프구나! 죄는 삼죽에 미친다고 한다. 혈죽에 대한 형(刑)의 확대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겹치는 비운이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듬해 정언(正言) 박치도(朴致道) 등이 임창군 일족의 도배(島配)는 너무도 냉혹하므로 「될 수 있는대로 하루라도 빨리 방환(放還)시켜야

한다」고 상소(진정)했지만 간사한 역신들에게 흔들린 숙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종 10년(1684) 2월이 되어 그들은 겨우 청천백일하의 몸이 되어 그리운 옛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다.

다행히 이듬해 6월 특명에 의해 그들 형제는 관에 등용되어 「훈」은 임창군(臨昌君)에, 「옥」은 임해군(臨海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혈족은 남인과 서인과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에 휩쓸려 갇은 박해와 모욕에 시달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뿐인 유적생활을 보냈던 것이다.

<숙종실록·默齋記聞錄>

송시열(宋時烈)

...예론(禮論)에 깨어져서...

송시열(宋時烈·1607~89)은 자를 영보(英甫), 호를 우암(尤庵) 또는 우재(尤齋)라고도 했다. 은률(恩律)사람. 조선 중기의 대정치가이며 도학(道學)과 문장에 있어서도 또 저명한 학자였다. 수옹 갑조(睡翁 甲祚)의 셋째 아들로써 일찍이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주자(朱子)는 후의 공자(孔子)이며 율곡(栗谷)²³⁶⁾은 후의 주자이다. 주자학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율곡부터 시작해야 되느니라」고.

송시열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교훈을 잘 지켜 끝내 성현(聖賢)의 학(學)으로써 자임(自任)하고 조선의 예학·유학의 태두(泰斗)를 이루었다. 그는 일찍부터 김장생(金長生)²³⁷⁾을 스승으로 삼음으로써 율곡으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것을 터득했던 것이다. 인조 11년(1633) 사마시(司

236) 李珥의 호. 주자학의 대가.

237) 1548~1631, 호는 沙溪.

馬試)²³⁸⁾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경릉참봉(敬陵參奉)²³⁹⁾이 되고 이어 효종 잡저(孝宗潛邸)²⁴⁰⁾의 사부(師傅)²⁴¹⁾가 된다. 이것이 애당초 출세가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수재 중의 수재로 날카로운 재능은 마치 면도 날과 같다는 정평(定評)이 있었다.

병자호란(1636~7) 때, 그는 남한산성에 호가(扈駕)²⁴²⁾했지만 화의가 성립되자 관을 사퇴하고 미련없이 향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인조의 말년(末年), 집권당인 서인이 더욱 분열하여 공서(功西)는 원당(原黨)과 낙당(洛黨)에, 청서(淸西)는 산당(山黨)과 한당(漢黨)으로 분열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의 산당이다. 이 당파는 충청남도 연산(連山)의 학자 김장생의 아들 김집(金集)²⁴³⁾을 주로 하는 것이었다. 김집은 실로 아버지에 이어 조선예학(禮學)의 태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학자이다.

그래서 연산·회덕(懷德)의 사람은 모조리 이에 붙었고, 사계의 문제(門弟)였던 송시열·송준길(宋浚吉)²⁴⁴⁾ 등도 산당을 도와 타파에 길항(拮抗)했다. 이 때 훈신(勳臣)의 잔물(殘物)로서 영상의 직에 있으면서 또한 왕가의 친척²⁴⁵⁾으로서 권위를 조야(朝野)에 기울이고 있던 것이 김자점(낙당의 영수) 그 사람이었지만 송시열 등은 이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서인에는 많은 분파가 생겼지만 인조 일대(一代) 동안은 어

238) 진사·正員을 채용하는 과거.

239) 종9품관.

240) 세자가 세자가 되기 전에 살고 있던 私邸.

241) 侍講院의 정1품관.

242) 王軍에 따라간다.

243) 호는 獨愼齋.

244) 1606~72, 자는 明甫, 호는 同春堂.

245) 김자점의 손자가 인조의 딸에게 장가 들.

땡든 이를 웅립한 훈신의 일파가 정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그런데 인조가 죽고 오랫동안 심양(瀋陽)에 인질로 있던 제2왕자 봉림대군이 돌아와 왕위에 오르자 서인의 형세는 갑작스리 일변했다. 효종(孝宗)은 청(淸)에 대해 매우 적개심이 강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에 보복하길 바랐다. 그 때문에 친정파인 김자점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송시열은 효종에게 소환되어 장령(掌令)²⁴⁶⁾이 되고 김자점은 바로 탄핵 받아 멀리 유배되고 그 일파는 정계로부터 추방되었다. 따라서 효종으로부터 현종에 이르는 동안은 송시열 일파가 정권을 주물렀던 것이다. 거기서 매국적인 김자점은 악랄하게도 「신왕인 효종은 반청분자(反淸分子)를 등용, 명(明)과 짜서 바로 청에게 항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밀고했다. 그 때문에 명은 국경지대에 군대를 집결시켜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명과의 밀약(密約)을 추궁했다. 그 때 송시열은 책임을 지고 관을 사퇴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에게 여러차례 서임(敍任)의 얘기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효종 9년(1658) 가을, 다시 조정에 들어가 찬성(贊成·의정부의 종1품관)을 거쳐 이조판서가 된다. 효종이 대청정책(對淸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와 의논할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

이듬해 5월 효종의 병환이 위험해져 영의정 정태화(鄭太和)²⁴⁷⁾와 더불어 소환(召喚)돼 마치 고명(顧命)²⁴⁸⁾이 있을 것 같아 입대(入對)²⁴⁹⁾해서 보니 이미 붕어(崩御)하고 있었다.

246) 사헌부의 정4품관

247) 1602~73, 호는 陽波.

248) 왕의 유언.

249) 參內해서 알현하는 일.

요컨대 인조·효종의 치세 하에서 남인은 아무런 세력도 없고 완전히 서인의 배하(配下)에 굴복하는 형태였다. 이 때, 남인 외에는 소북(小北)이 있었지만 그 세력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었고 대북(大北)은 이미 전멸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인·남인·소북의 3파로 되어 당시 이를 삼색(三色)²⁵⁰⁾이라 칭했다. 그 후 서인이 소론·노론의 두 파로 나뉘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삼색시대에는 송시열 등은 서인에 속해 있었다. 효종 다음의 현종조에 이르러 생각지도 않게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절(즉 喪服)문제로 일대 논쟁이 야기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우선 첫째는 현종 초년에 사망한 자의대비(慈懿大妃)²⁵¹⁾의 상에 따라 국왕이 입어야 할 상제(喪制)에 대하여 송시열은 고례(古禮)에 의해 기년(基年·1년)설을 주창하고 정태화·송준길·이유태(李惟泰)²⁵²⁾ 등 서인들이 동조했다. 그 이유는 효종이 본래 인조의 차적(次嫡)으로서 장자는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남인의 윤휴(尹鑄)²⁵³⁾·허목(許穆)²⁵⁴⁾ 등은 3년설을 주장했다. 그 근거는 「예서(禮書)에 따르면 장남이 죽어 차남을 세우면 그 또한 장자라고 하는 것이므로 효종의 승하(昇遐)에 따른 저사(儲嗣)²⁵⁵⁾문제가 바로 이 글과 합치(合致)한다」는 것이다. 남인들이 이를 지지했다. 거기에는 현종의 말년에 죽은 인선대비(仁宣大妃)²⁵⁶⁾의 상(喪) 때, 국왕이 입어야 할 상제에 대해서 송시열은

250) 삼파의 뜻.

251) 효종의 형, 和顯세자의 배 姜씨.

252) 호는 草廬.

253) 1617~80, 호는 白湖.

254) 1595~1682, 호는 眉叟.

255) 왕세자.

256) 효종의 비 張氏.

대공설(大功說)²⁵⁷⁾을 주장하고 윤휴 등은 기년설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와같이 현종의 상복제(喪服制)에 대해 남인과 서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가부의 논쟁은 날카롭고 공방전은 끝 없이 전개됐지만 왕은 윤휴의 설에 기울어져, 장령(掌令) 허목은 상소해서 「체이부정(體而不正)」²⁵⁸⁾이란 말은 첩복(妾腹)의 자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효종은 대비의 적자인데 어찌서 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고 했다.

그에 의해 서인은 차츰 정권으로부터 배제되고 남인은 더욱 더 세력을 뻗었다. 그러나 윤휴는 송시열이 대의설(大義說)을 주장했다고 해서 칭찬했다고도 한다. 현종 말년에는 남인인 허적이 수상이 되고 이어 왕이 서거하여 숙종이 즉위하자 남인은 더욱 세력을 얻어 맹랑하게 송시열을 공격했으므로 뛰어난 송시열도 드디어 관작을 삭탈당하고 장기(長鬢)²⁵⁹⁾로 유배되어 당대의 진신(搢紳)²⁶⁰⁾으로 유배된 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는 마침 숙종 원년의 일이었다. 당시 남인 중에서도 서인에 대한 태도의 경연(硬軟)으로해서 청남(淸南)·탁남(濁南)의 두 파로 분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인의 집권기간은 짧았다. 왜냐면 그 후 남인의 발호(跋扈)와 전횡(專橫)이 왕의 불신을 샀을 뿐 아니라 숙종 6년(1680)에 「경신환국(庚申換局)²⁶¹⁾이라는 음모사건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인파가 정계에 재등장하게 되자 송시열은 배소로부터 방환되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²⁶²⁾로서 화려하게 관계에 되돌아왔다. 당시 74라는 노구

257) 9개월.

258) 자신이 태어나 있지만 정당한 적자(嫡子)는 아니다.

259) 경상북도.

260) 정부의 고관.

261) 허적의 서자 堅의 음모사건으로 남인의 대량 추방.

262) 중추부의 정1품 최고관직.

였지만 정계의 대로(大老)²⁶³⁾라고 칭해지면서 명망이 온누리를 덮쳤다.

그런데 그는 숙종 9년(1683),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은 효종의 세실(世室)²⁶⁴⁾을 정하자고 제의함과 동시에 또 이태조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1388)) 3백주년을 표양(表揚)하여 태조에게 「소의정론(昭義正論)의 시호(諡號)를 가상(加上)하도록 하고, 더불어 「신의(神懿)²⁶⁵⁾·원경(元敬)²⁶⁶⁾ 등 두 사람의 왕후 위복(位服)에만 「만왕태후(萬王太后)」라고 쓰여있으므로 「태(太)」의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여러 대신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헌신적인 젊은 그룹은 송시열이 다시 조정에서 면, 국민이 바라는 바에 역행했던 지금까지의 폐정(弊政)의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의 요망에 응해주리라고 크게 기대했었는데 쓸데없이 종묘의 전례(典禮)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를 지금까지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던 소장파는 완전히 실망하여 윤승(尹拯)²⁶⁷⁾·박세채(朴世采)²⁶⁸⁾ 등의 문신은 그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태조회년(太祖回年)의 일은 대의에 가차(假借)해서 그 “화가위국(化家爲國)”의 사업으로 한다. 아직은 반드시 존주(尊主)의 성(誠)이 나오질 않고 오늘 신이 감히 이를 지적 않는다 해도 다시 이를 표장(表章)할 필요는 없다」고 그의 건의에 강력히 반대했다.

여기에 노론·소론 두 파 사이에 있어서의 대립 암투는 격렬해질대로 격렬해져 유혈의 참사가 잇따랐다. 그 때문에 노론은 송시열을, 소론은 윤극(尹極)을 각기 영수(領袖)로 앉혀 논쟁의 불꽃을 튀겼다. 양파

263) 송시열의 존칭.

264) 제사하는 종묘의 방에 위패를 설치한다.

265) 태조의 왕비 한씨.

266) 태종의 왕비 민씨.

267) 1525~69, 호는 明齋.

268) 1632~95, 호는 玄石.

의 이와같은 대립 갈등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렀다. 송시열은 국가의 원조로써 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서서 괴산군(槐山郡)에 은퇴했다.

그런데 남인과의 재집권은 다시 정쟁의 불씨를 뿌렸다. 그것은 숙종의 정비(正妃)에 계사(繼嗣)가 없고 총희(寵姬) 장소의(張昭儀)의 배에 왕자 「균(均)」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왕은 「균」을 후계자로 세워 비(妃) 김씨를 폐하려고한 때문에 숙종 15년(1689)의 2월, 송시열은 고향에서 상소하여 왕세자 책봉의 인선은, 왕비 민씨가 아직 젊음으로 시기 상조이며 까닭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숙종이 그 상소문을 읽고 진노하자 남인과의 이현기(李玄紀)·남치훈(南致勳)·윤빈(尹彬) 등은 기세를 맞춰 송시열의 상소를 심하게 논박했다. 숙종은 그 후 승지나 옥당(玉堂)²⁶⁹⁾의 전원을 비상소집해서 반복 하교(下敎)하고 명하여 송시열의 관작(官爵)을 깎아내리도록 했다. 여기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이 연서(連署)하여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명목이 이미 바로잡아지고 분수도 정해져있다. 굳이 소문(疏文)을 낸다는 것은 민심을 현혹시키는 것…… 변방의 가시울타리 안에 가두도록 청한다」고 상소했다. 이에 이어 공조판서(상공대신) 오정위(吳挺緯)·권대운(權大運) 등 남인의 상소가 잇따랐다. 이렇게 해서 송시열은 남인과의 권력 투쟁에 패배하고 제주도로 위리안치되는 극형에 처해진 것이다.

오정위가 상신했다. 「송시열을 제주도로 이배할 때, 금부도사(禁府都事)²⁷⁰⁾가 6일에 출발하고 있지만 보은(報恩)에 있는 시열의 동생 시수(時壽)는 이미 이틀 전에 장기로 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서울

269) 홍문관의 별칭.

270) 의금부의 중급관리.

에서 서로 연락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것으로 판단해봐도 시열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의 시열을 없애는 게 신들에 어떤 이익이 있어 이렇게까지 고쟁(苦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고 탄핵하며 시열의 단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게 어수선했던 정쟁 가운데 시열의 제자인 이기홍(李箕洪)²⁷¹⁾은 40여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올라가 스승의 무실을 직소(直訴)했다. 그것이 왕의 꾸중을 받게 돼 그는 안녕(安寧)에 5년간 유배되었다. 이렇게 해서 송시열의 세자책봉문제에 대한 시기상조론에 동조한 자들은 모조리 정권으로부터 배제되고 그에 대신하여 남인파의 목내선(睦來善)²⁷²⁾·김덕원(金德遠) 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자 남인들이 관계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거기서 또 송시열을 제주도에서 데려와서 재심사해야한다는 소리가 요란스리 올랐다. 왕도 할 수 없이 그것을 인정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금오랑(金吾郎)²⁷³⁾ 권처경(權處經)이 자원하여 명을 받들고 제주도로 건너 갔다.

송시열은 그 소식을 듣고 유서를 제자인 권상하(權尙夏)²⁷⁴⁾에게 기탁했다.

그는 금오랑을 따라 해남(海南)에 이르고 이어 정읍(井邑·전라북도)에 도착하자 사사(賜死)되었다. 문인인 권상하·김만애(金萬埃)의 손을 잡고 뒷일을 부탁했다고 한다. 「인통함원부득이 함소입지(忍痛含冤不得已 含笑入地)」²⁷⁵⁾고 말한 다음 천천히 약을 마시고 드러누 다음 숨을 거두었다.

271) 1641~1708, 숙종조의 학자.

272) 1617~1704, 좌의정.

273) 의금부의 관리로서 왕명을 받아 죄인을 체포하는 사람.

274) 1642~1721, 호는 遂庵.

83세의 노령으로 그는 과연 당인(黨人)다운 최후를 맞았다. 이 때 서인의 주된 자들은 거의 피살되고 기타는 정계에서 퇴출 당했다. 이것을 칭해서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고 한다. 이들 모두가 숙종 15년(1689)의 일이었다. 사건의 결말은 너무도 무참했다. 그 후 숙종 20년(1694), 남구만(南九萬)²⁷⁶⁾을 영수로하는 서인 내각이 부활함으로써 송시열은 명예가 회복되고 문정공(文正公)의 시호를 받았으며 이전에 참살된 서인도 모두 관작이 복위(復位)되었다. 이것이 숙종 20년(1681) 4월의 일이다. 그러자 정국은 일변하여 전적으로 노론·소론 2당의 싸움이 되었다. 이 기간은 그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

송시열은 숙종 15년(1689) 2월 6일 제주도로 유배되어갔지만 배는 태인(泰仁)²⁷⁷⁾에서 출항하고 있다. 그는 「탐라주중(耽羅舟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逐客孤舟去 鯨波万里深
平生伏忠義 虞廟不須尋

쫓겨난 손의 외로운 배 떠나니
큰 물결 만리에 깊구나
평생 충의에 얹드려 왔는데
우임금 사랑을 찾지 않으랴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어갈 때 가족뿐 아니라 노복(奴僕)까지 데리고 갔으며 동생인 시수(內侍교관)도 또 따라가 있다. 적사는 주성 안 속칭

275) 아픔과 원통함도 부득이한 일, 웃으며 땅 속에 들어가노라.

276) 1629~1702, 소론의 거두.

277) 지금의 충남서산군.

「산지목골」에 있었다. 완전히 격리된 별천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절망적인 나날이었을 것이란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는 옛날의 지위나 영화를 잊기 위해서도 서물(書物)로 우울함을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箋疑)」·「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어류소분(語類小分)」·「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攷)」·「역학(易學)」등을 섭렵(涉獵)하고 1백일 간이라는 짧은 재적중에 「문의통고(問義通攷)」를 저술하고 있다.

그는 또 배소에서 자신의 생활심경을 이렇게 읊고 있다.

弟兄孫子侄 天外喜同堂
自首何丘首 他鄉似故鄉

적사에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므로
고향의 생활과 별로 다름이 없다

고 술회하고 있지만 지난 날의 호화스러운 생활감정을 벗어던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송시열 일족의 제주에서의 유적생활은 겨우 백일에 지나지 않지만 섬 유생들에게 미친 사상적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그는 유림(儒林)의 거두이며, 문장가로서 이름있는 사람을 섬에 맞이했으니 제주유생들에게는 그 이상 없는 영예이며, 그것이 유학이라고 하지만 학문과 정신면에 있어서 크게 계발(啓發)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기 때문에 섬의 유생들은 숙종 21년(1695)에 그를 귤림서원(橘林書院)에 모신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명류(名流)가 당쟁에 패배하여 이 섬에 잇따라 유배되어옴에 따라 그에 영향받은 섬사람들은 교육진흥

을 지향하여 각지에 서당·서원을 세웠다. 제주 성내에 굴림서원·향현당(鄉賢堂)·삼천서당(三泉書堂)·장수당(藏修堂)을 비롯해서 명월(明月)성지에 월계정사(月溪精舍)·우학당(右學堂), 애월면상가리에 서학당(西學堂), 정의현에 월계정사 등 서민의 교육기관이 속속 마련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權尙夏誌狀>

김예보(金禮寶)

...기사환국(己巳換局)의 화를 입고...

김예보(金禮寶)는 임진왜란(1592~98) 때, 자주 전공(戰功)을 세운 공으로 부원수(副元帥)까지 된 명장 김경서(金景瑞)²⁷⁸⁾의 현손이다. 김예보는 숙종조에 가선대부(嘉善大夫)²⁷⁹⁾까지 되었지만 기사환국(1689)의 화를 입어 제주도에 유배됐던 것이다. 그 후 유죄(流罪)는 풀렸지만 그는 이젠 정치의 세계에 설 곳이 없다고 체념하여 현지에 머물고 새로운 인생의 토대를 쌓기 위해 피땀 흘리며 산업을 개발, 자재를 모아 교학(敎學)에 힘썼다. 특히 그의 문장은 뛰어나 지방유생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도 고로(古老)들은 말한다. 그래서 이 분이 김해김씨 양의공(襄毅公)김경서파의 제주도조(濟州島祖)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삼현파(三賢派)²⁸⁰⁾ 가운데 김근한(金近漢)을 입도조로 하는 일파가 있다. 김근한은 성종조(成宗朝·1469~94)에 문과에 합격하여 교검(校檢)²⁸¹⁾ 등의 관직을 거쳐 한성부윤(漢城府尹)²⁸²⁾까지

278) 처음 이름은 應瑞.

279) 조선의 관계(官階), 종2품.

280) 金克一·金駟孫·金大有.

281)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관.

승진하고 있다. 그 때, 정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파쟁이 싹 터 시대가 흐름에 따라 국정(國政)이 썩어 문드러져 감으로 그는 그것을 우려하여 국정의 개건책(改建策)을 성종에게 상소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왕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로 유적된 것이다.

김덕원(金德遠)

…갑술옥사(甲戌獄事·숙종 20년, 1694) 때 배제되어서…

남인인 김덕원(金德遠, 1634~1704)은 자는 자장(子長), 호는 휴곡(休谷)이라 했고 원주(原州) 태생이다. 현종 3년(1662)에 등제하여 승문원(承文院)²⁸³ 부정자(副正字)²⁸⁴을 시작으로 형(刑)·호(戶)·예(禮)의 3조판서를 거쳐 숙종 17년(1691) 영의정이 된다.

숙종 15년(1689) 장희빈(張禧嬪)의 배에서 태어난 왕자 「균(均)」²⁸⁵의 책봉문제를 둘러싸고 「균」을 세울려고 하는 남인과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서인과의 사이에 「기사환국」이라고 하는 일대정쟁이 전개되었지만 서인이 참패하여 수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이 때 장희빈의 무고에 의해 인현왕후(仁顯王后)²⁸⁶는 폐위당해 서민으로 격하됐다. 김덕원은 남인이지만 왕명에 따르지 않고 백관의 선두에 서서 그 가부를 다투었다. 이어 학사(學士)²⁸⁷ 박태보(朴泰輔)²⁸⁸도

282) 현 서울시장.

283)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곳.

284) 종9품관.

285) 뒤의 景宗.

286) 숙종의 계비 민씨.

287) 중추원의 종2품관.

288) 1654~89, 숙종조의 문신.

유생인 때문에 간소(諫疏), 스스로 붓을 들고 그 불륜난행을 날카롭게 규탄했다.

그것이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바가 되어 그는 즉시 친국 당했다. 박태보는 소두(疏頭)²⁸⁹인 판서 오두인(吳斗寅)²⁹⁰을 향해 말한다.

「글을 정하고 소(疏)를 사(寫)함은 모두 내손에서 이뤄졌다. 어찌 그런 일에서 면피(免避)하라」고 마지막까지 불의에 굽히지 않고 항변했다. 그 담담한 태도, 논지(論旨)의 명석(明皙)함엔 좌우의 보고 듣는자들이 얼굴 빛을 바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왕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가혹한 고문을 받은 뒤 진도로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요절했다. 그 때 김덕원은 국청(鞠廳)에 달려들어 국왕의 인정있는 조치를 탄원하면서 그의 구제에 전력을 다했으나 왕의 난폭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무력을 자조(自嘲)하면서 하야하고는 지체없이 양천(陽川)으로 가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 우의정에 복위되어 주로 박태보 등의 관 복직을 청원했다. 그 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²⁹¹에서 영의정까지 승진했다.

그런데 「기사환국」 이후 숙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폐비(廢妃)의 전비(前非)를 후회, 차츰 남인들을 멀리하게되자 그 기회를 타, 소론의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赫) 등이 폐비의 복위(復位)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을 남인들이 알게되어 끝내 고발되었다.

여기서 「기사환국(1689)」으로 정권을 잡은 남인의 영수이며 우상(右相)이었던 민암(閔黯)²⁹²과 훈련대장(육군총사령관) 이의징(李義徵) 등이

289) 상소의 대표자.

290) 1624~89, 호는 腸谷.

291) 중추부의 종1품관.

292) 1636~94, 호는 叉湖.

이를 계기로 반대당인 서인파를 궤멸(潰滅)시키려고 김춘택 등 20여명을 검거해서 국문했다. 그들은 매를 견디지 못해 우선 한춘택이 그것을 자백했다. 그러자 민암은 이것을 정치적 음모의 구실로 해서 문제를 일부러 확대시켜 소론의 대두(擡頭)를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 숙종은 민비를 생각한 나머지, 남인의 야심적인 정치모략에 불신감을 가져 민암에게 사사(賜死)하고 권대운·목내선·김덕원 등 남인의 대신을 유배형에 처했다. 그 때 김덕원은 관위를 박탈 당하고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에 대신하여 남구만·박세채·윤지완(尹趾完) 등의 소론파가 등용되었다. 「기사환국」 때 왕비가 된 장씨-장소의(張昭儀)는 희빈으로 복귀되었다. 이것을 「갑술옥사(甲戌獄事)」 또는 「갑술경화(甲戌更化)」라고도 칭한다. 김덕원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4년만에 해남으로 옮겨졌지만 숙종25년(1699)에 방환되어 양천으로 돌아가 71세에 사망했다.

<星湖文集·숙종실록·국사대사전>

유혁연(柳赫然)

...숙종 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만나...

국민부재(不在)의 권력투쟁은 끝없이 이어진다. 외관상으로는 모두가 학식 풍부하고 청렴결백한, 국가의 안위(安危) 밖에 안중에 없는 대인으로 보이지만 뱃속을 더듬어보면 지위욕(地位慾)·재물욕(財物慾) 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양반사대부들의 정체(正體)였던 것이다.

유혁연(柳赫然·1616~80)은 자를 회이(晦爾), 호를 야당(野堂)이라고 했다. 진양군 효걸(晉陽君 孝傑)의 아들이다. 어릴 적부터 울창한 숲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단상(壇上)에서 지휘하면서 병정놀이를 하는데 군율(軍律)이 엄했었다. 어느날 한 아이가 군율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혁연은 낫을 들고 당장 제재를 가하려고 했다. 거기 있던 늙은이들이 크게 놀라 낫을 빼앗아 말렸다는 에피소드를 갖는 무골인(武骨人)이다.

병자호란(1636~7) 때, 부친인 효걸이 전사하고 남한산성이 위급하다고 들어 형제 모두가 옷소매를 걷어부치고 일어나 앞을 다투어 양천으로 향했다. 도중에 낙성(落城)의 소식을 듣고 귀가, 뒤뜰에 있는 배나무를 부여안고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마을사람들은 그 충성심에 감격하여 그 나무를 「유공수(柳公樹)」라고 명명했다는 내력이 있다.

인조 22년(1644)에 무과에 급제, 특명으로 덕산현감(德山縣監 : 군수)에 서임되었다. 임진왜란 때 선천부사(宣川府使)를 하고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²⁹³ · 어영대장(御營大將)²⁹⁴ · 포도대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숙종조에 이르러 훈련대장을 거쳐 공조판서에 영전했다.

현종 15년(1674)의 예론(禮論)에 이겨 정권의 자리에 앉은 남인들은 숙종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영의정 허적(許積 · 1610~80, 호는 默齋)의 「유악남용사건(油幄濫用事件)」²⁹⁵은 그 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남인의 영수 허적은 현종비(顯宗妃) 김씨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 현종의 고명(顧命)을 받아 숙종을 보좌했다. 숙종은 즉위 때 나이 불과 14세인 위에 질병이 많고 또한 종실(宗室)의 연장자도 적잖은 상황이었는 데 허적은 이들과도 결탁하여 권세를 떨친 때문에 차츰 인망(人望)을 잃어, 그 때까지 허적을 도왔던 병조판서 김

293) 경상 · 충청 · 전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장.

294) 어영청의 主將, 종2품의 무관.

295) 허적의 조부 허찬(許澣)이 시호(諡號)를 받아 연회를 베풀 때, 궁중의 기름을 허가없이 갖고 갔다는 일을 말한다.

석주(金錫胄)²⁹⁶와의 사이에 금이 생겼다.

이 때 허적의 서자인 허견(許堅)이 홍문관²⁹⁷의 교서정자(校書正字)²⁹⁸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권세를 업고 방탕했으므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김석주도 또 남인을 타도하기 위해 김익훈(金益勳)²⁹⁹ 등과 짜서 음험한 수단으로 쉴 새 없이 남인에게 죄를 씌우고 또 널리 밀고의 문을 열어 몹쓸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서인 중의 소장파는 김석주의 난폭하기 짝이 없는 행위에 반대하여, 이 즈음부터 나누어져 두파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석주·김익훈 등의 일파를 「노론」이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조지겸(趙持謙)·한태동(韓泰東) 등의 일파를 「소론」이라고 했다.

숙종 6년(1680), 김석주 등이, 허견이 왕족인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 3형제와 공모하여 복선군을 추대하려 하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하여 대옥사를 야기했다. 그 때문에 복창군 3형제와 허견은 말할 것 없고 허적·윤휴(尹鑄) 등 남인의 거두는 주살되고 여당의 많은 사람이 사죄(死罪) 또는 태형(笞刑)으로 처형 당한 위에 여기 저기 변방으로 유배된 다음 사사되었다. 보신(保身)과 입신출세욕에 얽힌 때문에 죄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인, 뒷맛이 씁쓸한 사건이었다.

그 결과 남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정계로부터 일소되고 정권은 서인의 손에 장악되는 바가 되어 김수항(金壽恒)³⁰⁰은 영의정에, 김석주는 우의정에, 김익훈은 어영대장에 취임했다. 이것은 숙종 6년(1680)

296) 1634~84, 호는 息庵.

297) 內府의 經籍 및 文翰 등을 관장하는 곳.

298) 정9품관.

299) 金長生의 손자.

300) 1629~89, 호는 文谷.

즉 경신년의 일임으로 이것을 「경신대옥(庚申大獄)」이라고 한다.

당시 어영대장 자리에 있던 유혁연은 경신년에 있어서의 남인의 대 추방을 만나 처음엔 영해(寧海)로 찬류되었다가 얼마없어 제주도대정현에 이배(移配)된 후 사사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불행한 일이었다고 앓을 수 없다. 그는 남한산성의 굴욕과 만나, 이듬해 세자 동궁(東宮)이 인질로 심양에 강송(強送)되게 되자 모화관(慕華館)에 들어가 「서강세우군신루(西江細雨君臣淚) 북궐응운부자정(北闕凝雲父子情)」이라고 시 한 수를 읊었다. 즉 「서강에 내리는 비는 군신의 눈물이요, 북쪽 하늘에 피어나는 구름은 부자의 정이다」고 읊어 충군우국(忠君憂國)의 지정(至情)을 다한 인물이다.

그와는 반대로 김석주는 생전 자신의 죄업(罪業)에 떨어 하루 밤에 몇 번이나 침실을 바꾸는 형편, 끝내는 죽음의 자리에서 「허적과 유혁연은 내가 죽었다. 지금 그들이 나를 죽일려고 뛰어 들어오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또 갑자년(1684)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밤의 꿈에 「유혁연이 군복을 입고 검을 휘둘러 돌아다니며 김석주·윤선거(尹宣舉)³⁰¹⁾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거친 숨소리에 놀라 눈을 깨어보니 거리에서는 청성군(淸城君·김석주)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고 「몽예집(夢藝集)」에 실려 있다. 그는 생전에 정적이나 인민에게 상당히 잔인무도한 악행(惡行)을 한 것 같다.

유혁연은 죽은 다음 신원(伸冤)³⁰²⁾되어 영의정이 추증되고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숙종실록·國朝實鑑>

301) 1610~69, 호는 美村.

302) 원통함을 푸는 일.

김진구(金鎭龜)

...인현왕후의 폐출(廢黜)을 반대한 때문에...

김진구(金鎭龜)³⁰³, 국구(國舅)³⁰⁴ 광성부원군 김만기(光城府院君 金萬基)의 아들이다. 숙종 6년(1680) 문과에 급제하여 형(刑)·공(工)·호(戶)의 삼조의 판서, 우좌참찬(右左參贊)³⁰⁵·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³⁰⁶ 등의 요직을 역임하고 있다. 흰칠하게 큰 키에 어두운 그늘이 없는 밝은 얼굴, 누구에게도 숨기는 일이 없는 활달한 인품인 것 같았다.

인현왕후의 오빠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은 한 발 물러서서 그늘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대로 요직을 피하여 또 승진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궁정을 둘러싸서 권력을 탈취하려는 사악한 목적아래 당파로 나뉘어 조직적이며 또한 조작된 대원죄(大冤罪)에 의해 죄도 없는 많은 사람이 숙청되어져 갔다.

슬프구나! 인현왕후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그 때문에 숙종은 궁녀 장소의(張昭儀)를 가까이 하여 숙종 14년(1688)에 아들 하나를 얻었다. 왕은 기뻐하여 「균(均)」이라 명명하고 세자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서인파는 건저(建儲)³⁰⁷의 상조론(尙早論)을 내세워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도 왕은 남몰래 남인파를 이용해서 「균」³⁰⁸을 세자로 책봉했다. 남인들은 이 기회를 붙잡아 장희빈(昭儀)을 부추겨 정권의 탈취를 도모했다. 왕도 또 장희빈의 참소나 책동에 빠져들

303) 1651~1704, 호는 晩求窩.

304) 왕비의 아버지.

305) 三議政의 보좌관.

306) 의금부의 최고장관.

307) 왕세자 책봉.

308) 뒷날의 景宗.

어갔다. 드디어 숙종 15년(1689)에는 인현왕후를 폐출(廢黜)하고 이듬해 11월에는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해서 민비(閔妃)의 자리에 앉도록 했다. 이와같은 왕비 추방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즉시 전 형조판서 오두인(吳斗寅)과 응교(應敎)³⁰⁹⁾ 박태보(朴泰輔)가 소두(疏頭)가 되어 전 참판(중2품관) 이세화(李世華) 등 80여의 조관(朝官) 연명으로 국모 폐출의 부당성을 지탄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거기에는 늠름(凜冽)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왕은 그 상소문을 읽고 크게 진노하여 「이러한 괴상한 상소는 폐비 민씨와 내통하고 있으며 그 위에 주상을 비방하는 것이다」고 해서 이 상소사건을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엄중히 심리시켰다. 그러자 남인파의 대사헌 육창명(陸昌明)·좌의정 목내선(睦來善)·판의금부사 민암(閔黯) 등은 기회가 왔다고 왕을 찾아뵈어 「이 상소는 조신(朝臣)에게 있어서도 전적으로 통분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흉참(凶慘)을 초래할 악질적인 흉소(凶疏)입니다」고 마구 나무라면서 왕의 비위를 맞췄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만족, 즉시 관계관을 비상소집하여 임시 법정을 마련하고 우선 소두인 3인을 옥에서 끄집어내어 친국을 개시했다. 중신들이 늘어서 있는 앞에서 이래도 아니냐면서 개패뚫 때렸는데 피를 토하면서도 그들은 바른 자세를 흐트림이 없이 자론(自論)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이 친국을 마쳐 거리로 나가자 도성의 선남선녀들이 마치 순교자의 얼굴을 보겠다는 듯 연도를 매꾸어 환호성을 지르며 배웅했다고 한다.

김진구는 이 사건에 연좌하여 아버지가 사망하자 동평군(東平君 杭) 등 반대파의 무고로 죄 없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³⁰⁹⁾ 예문관의 정4품관.

39세의 젊은이였다고 한다.

그의 배소는 성내 가락천(嘉樂泉) 부근의, 주기(州妓) 오진(吳眞)의 집이었던 것 같다. 그는 1689년부터 94년까지 거의 5년간에 걸쳐 제주에서 냉혹한 유폐생활을 보냈던 것이다. 그 사이 제주의 자제를 교육하고 유생들에게 경사(京師)의 학풍(學風)을 지도해서 후일 전시(殿試)³¹⁰에 등제하는 영광을 얻어내도록 했다. 그는 적객(謫客)이라고는 하나 섬의 문화향상과 인재양성에 적잖이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으로 이중발(李重發)·오정빈(吳廷賓)³¹¹·고만첨(高萬瞻)³¹²·김덕항(金德恒)³¹³ 등은 문과에 급제하여 오정빈은 현감, 별좌(別佐)³¹⁴에, 고만첨은 사예(司藝)³¹⁵에 임용되었던 것이다.

숙종 20년(1694)에 장희빈의 최숙빈(崔淑嬪)에 대한 독살음모사건이 발각되자 숙종은 그 비(非)를 추궁하여 장비를 서인으로 격하시키고 폐위된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남인파에 대신하여 서인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에 따라 김진구는 그 해 4월에 방환되어 호조참판이 되었다. 만년이 되면서 성망(聲望)은 더욱 높아갔지만 정적도 또 많았던 것 같다.

<人物考·숙종실록>

310) 왕의 임석하에 치러지는 科擧 최후의 시험.

311) 旌義 興叔.

312) 정의 万秋.

313) 柑山里 千摠.

314) 종5품관.

315) 성균관의 정5품관.

장희재(張希載)

...누나의 복위(復位)를 기도했다가...

장희재(張希載)는 장희빈의 오라비로 본디가 비천한 몸으로 거리의 건달과도 같은 자였다. 그것이 다행히 누나가 궁녀³¹⁶⁾가 되어 용모가 아름다웠는지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모으게되자 비로소 그에게 출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장희빈이 왕자를 낳아 세자로 책봉되자 인현왕후는 폐해지고 누나가 왕비가 되었다. 덕분에 그는 그 물결에 타서 누진(累進) 출세해서 포도대장에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득의(得意)의 정점에 서자 마치 최고사법권을 쥔 것과 같은 거만함이 눈썹 사나운 것이 있었다. 그 때문에 기강은 흐트러지고 민심은 동요했다. 그는 남인파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동평군(淸)과 손을 잡고 속임수를 써서 정책의 말살을 위한 갖가지 음모를 꾸며 난폭한 짓을 멋대로 했다.

그런데 숙종 20년(1694) 3월 피에 굶주린 장비는 「방해자는 없애라」는 식으로 왕의 씨를 뺏 최숙빈(崔淑嬪)³¹⁷⁾을 질투, 가혹한 린치를 가해서 태아를 없애려고 한 현장을 왕에게 들켜, 두 사람의 목숨은 아슬아슬하게 난을 피했다.

질투에 미친 독부(毒婦) 장비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오라비 희재로 하여금 김해성(金海成)을 매수하여 최숙빈의 독살을 기도했다. 이것도 또한 사전에 적발되었다. 그 사실은 김인(金寅)·박귀근(朴貴根)·박의길(朴義吉) 등의 상소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왕은 이를 듣고 크

316) 왕비의 女官.

317) 英祖의 생모.

게 노하여 동년 4월 희재의 지위를 박탈하고 옥에 가두어 엄하게 친국했다. 그러자 그는 매를 이기지 못해 그 음모사실을 남김없이 고백했다.

거기서 왕은 그를 사죄(死罪)에 처하려 하자 모든 대신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영의정 남구만(南九萬)³¹⁸⁾ 혼자 그에게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희재와 세자와는 『팔의(八議)』³¹⁹⁾의 관계에 있어 경솔하게 죽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국문(國文: 한글) 편지를 갖고 별하면 반드시 사건은 희빈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희빈이 불안해지면 세자의 지위도 또 불안하고 세자가 불안해지면 국가나 황실도 또 위태로와지지 않겠습니까…」고 강조하며 생각을 멈추도록 했다. 왕도 생각 끝에 만일 세자에게 화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위의 반대를 무릎쓰고 그의 사형을 감일등(減一等)하여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하라고 선지(宣旨)를 내렸다. 동시에 장비는 희빈(禧嬪)으로 되돌려져 별궁으로 쫓겨났다. 그 때 「지금부터는 빈(嬪)에서 후비(后妃)로 승격할 수 없도록 국법을 제정하는 게 좋다」는 왕명이 내려져 국민은 쌍수를 들고 그것을 환영했다고도 한다.

그즈음 인구에 회자한 「미나리 노래」 속에 「미나리는 사계절의 꽃이지만 봄나물은 한 계절의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 노래는 장비가 권세를 떨쳤던 전성기에 불렸던 것이다. 즉 희빈은, 무나 봄나물의 줄기는 한 계절에 지나지 않지만 최후의 승리는 연중 향기 높은 미나리의 새잎과 같은 민비(閔妃)에게 있다고 하는 정치 풍자(諷刺)의 의미

318) 1629~1711, 호는 藥泉.

319) 최고의 특별감형을 할 때의 여덟가지 종류, 즉 의친(議親)·의고(議故)·의현(議賢)·의능(議能)·의공(議功)·의귀(議貴)·의근(議勤)·의빈(議賓)을 말한다. 원문은 주례소사관(周禮小司冠)에 있다. 희재가 세자의 의친에 해당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의 집념을 결코 떨쳐버리지 않았다. 지금은 희빈에 강등되었다고는 하나 세자의 인연으로 한 때는 입김이 닿았던 자도 적잖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지척 사이에서 보아왔던 왕의 우아한 용모는커녕 세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세간의 비난도 거세다. 그 초라한 모습은 지난날의 민비보다도 더욱 불쌍했다. 오라비인 희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어도 누구도 오라비에게 동정해주질 않고 장비의 운명을 개탄해주지도 않는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뿐, 쇠약해지는 육체와 고독감, 마음은 초조해지고 사념(邪念)만이 떠 오른다.

장씨는 날로 살기(殺氣)가 더해 갔다. 그로부터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숙종 20년(1701) 8월 10일 병상의 인현왕후가 급서했다. 놀라지 말라! 그것이 장희빈과 대정(大靜)유배중인 희재가 짜서 일으킨 독살이라는 것이 김춘택(金春澤·北軒)의 고발로 판명된 것이다. 장씨는 별궁에 있으면서도 중전(인현왕후)을 시기해서 원망한 나머지 3년전부터 살해(殺害)를 기도, 영숙궁(永肅宮)에 천의신당(天儀神堂)을 마련하여 무당으로 하여금 중전이 빨리 죽도록 밤낮 기도케 하는 한편 중전의 화상(畫像)을 천정에 매달아 궁녀가 매일 세 번씩 활로 그것을 맞춰 종이가 찢어져 떨어지면 비단옷을 입혀 못 주변에 묻는 등 주술을 부렸다. 특히 희재의 처는 창기(唱妓) 출신임으로 요술(妖術)이 공교로왔다. 둘은 잔재주를 부려 허수아비 등을 만들어 남몰래 중전의 침전(寢殿) 밑에 묻어 주술로써 중전의 죽음을 3년간이나 기도했다. 일찍이 이토록 무섭고 흉악한 범죄는 없었다. 희빈은 정말로 사악(邪惡)하다는, 그런 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여자였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마지막 발버둥질로 궁인을 매수해서 독약을 중

전의 밥 상에 섞도록했다. 오라비인 희재도 또 굉장한 내용의 한글편지로 궁인의 악덕배와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왕후의 살해를 모의한 증거가 그 편지에 뚜렷히 나타나 있었다.

「당의통략(黨議通略)」에 의하면 무고(巫蠱)³²⁰⁾의 옥사를 친국한 바, 희빈의 비복(婢僕)의 공술 속에 신당(神堂)의 얘기가 확실히 떠올라 모든 죄악이 드러났다고 되어있으며 그 때문에 무당·잡배 등 10여 명은 용서없이 처형되고 국문을 방해한 하인들도 모두 이곳저곳의 변방에 유배되었다고 한다. 또 「지양만록(芝陽漫錄)」에는 동년 9월 24일의 전지(傳旨)³²¹⁾에 「제주죄인 장희재를 우선 참형에 처하고 희빈 장씨는 자진(自盡·자살)하라」고 되어 있다.

드디어 왕명을 받은 장희빈은 동년 10월 10일 독약을 마셔서 죽었고 희재도 제주도의 배소로부터 서울로 되돌려진 다음 동월 29일 군기고(軍器庫) 앞에서 대중에게 보이기 위해 공개주살되고 가산도 일체 몰수되었다. 그 위에 희재의 노비·업동과 많은 친척이 주륙(誅戮)되었다. 그 죄는 삼죽에 미친다는 멸족에 가까운 참담한 것이었다. 장희재는 대정지방에서 5년간의 유배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의 주민에 대해 학문적인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도시의 문화·언어·습속의 자극은 다소나마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자는 지금까지의 적객(謫客)과는 전혀 색다른 대조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숙종실록·仁顯王后傳·黨議通略>

320) 사람을 해치기 위한 요술에 의해 일어난 옥사를 말한다. 즉 무(巫)는 무당, 고(蠱)는 사악한 사람을 가리킨다.

321) 상벌에 관한 왕명을 받아서 관할 관청에 전하는 일을 말한다.

오시복(吳始復)

...장희빈의 복위(復位)를 기도한 이유로...

오시복(吳始復·休谷)은 현종조에 문과에 올라 삼사(三司)·이랑(吏郎)·사인(舍人)³²²⁾을 거쳐 관행(官行)은 이판(吏判)에 이른다. 숙종 6년(1680) 강릉부사(江陵府事)에 임명되었지만 미처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허견(許堅)³²³⁾이 왕족인 복선군을 옹립하여 권력 탈취의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고 김석주 등에게 무고 당하자, 오시복은 허견의 손님이었기에 판(版)³²⁴⁾에서 깎이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숙종 15년(1689)에 복관(復官)하여 유수(留守)³²⁵⁾에 복귀했다. 그래서 그는 숙종 20년(1694)에 일어난 장희빈과 희재가 흉모(凶謀)한 최숙빈의 독살미수사건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 희재의 편지를 찾아낸 김인(金寅)의 고변(告變)에 따르면 「희재가 김해성(金海成)을 매수하여 최숙빈을 독살하려 했던 일, 윤희(尹禧)와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 오시복과 육창명(陸昌明) 등이 긴밀히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윤희가 일부의 대신과 연락하고 있다」는 서면이 증거로써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그 후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남인인 오시복은 권중경(權重經·靜默堂) 등과 짜서 장희빈의 복위를 도모했다. 그들이 연서해서 복위의 상소를 올리려고 하자 그 전에 이상징(李象徵)은 희빈의 인현왕후에 대한 복제(服制)를 갖고 상소하여 왕의 의향을 타진하기로 했다. 그 상소문 중에

322) 의정부의 정4품관.

323) 수상 허적의 서자.

324) 관리의 명부.

325) 종2품관.

「적의수공(翟儀遂空)」³²⁶⁾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바가 되어 오시복은 동년 5월 제주도 대정의 무인도에 유배되었다. 거기서 굶어죽었다. 이 때 많은 남인이 연좌되어 인정 사정 없이 처형·유형·파면 당하고 있다. <號譜·숙종실록·黨議通略>

김춘택(金春澤)과 가족

...세자에게 가해(加害)하려 했다고 무고 당해...

김춘택(金春澤)³²⁷⁾은 광주(光州)사람. 광성부원군 김만기(光城府院君 金万基)의 손자, 일찍이 제주도에 유배된 일이 있는 김진구(金鎭龜)의 아들이다. 초란(髻亂) 때 의지가 이미 넘쳤었다. 어느 날 김수항(金壽恒·文谷)이 제(題)를 내와 장률(長律)을 짓도록 했다. 날이 미쳐 저물기 전에 8편을 만들었다고 하는 시문의 대가였다.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가정소설)」을 한역(漢譯)했을 뿐아니라 한글 작품을 탐독해서 국문학의 가치를 정당히 평가한 선각자이기도 했다. 참으로 기재(奇材)라고 사람들이 칭할 만큼 총명하고 권모술수에도 능하며 더구나 활달한 성격으로, 언제나 김석주의 사람 되기를 바랐었다. 그는 민중전(閔中殿)의 복위를 이룩하기 위해 일부러 규방원한(閨房冤恨)을 제재(題材)로 한 김만중(金万重)³²⁸⁾의 소설을 한역하여 「사씨남정기」를 궁인을 통해 왕에게 헌상함과 동시에 은화를 모아서는 궁인의 자매 등을 매수, 남인의 출입과 궁내의 정보 수집의 루트를 확보했다.

326) 왕비의 침전(寢殿)이 공간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27) 1670~1717, 호는 北軒.

328) 1637~92, 호는 西浦.

정적인 우상 민암(閔黯)과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 등이 춘택의 암약을 포착하자 즉시 함의완(咸義完)으로 하여금 그 비밀을 고발시켰다. 그 때는 이미 왕이 폐비(廢妃)한 것을 깊이 반성하여 「사씨남정기」를 읽고 나서는 한층 더 그것을 통감하고 드디어 폐비의 복위를 결심했을 때이다.

그 때, 김춘택 등을 국문한 바, 우선 한중혁(韓重赫)이 폐비 복위를 도모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남인인 민암 등은 그것을 근거로 연대(筵對)³²⁹를 요청했다. 그러자 왕은 돌연히 폐비사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잘못을 회개하겠다는 교서를 내려 민중전을 정식으로 복위 시킴과 동시에 신뢰감이 완전히 사라진 남인의 민암·판의금부사 유명현(柳命賢) 등의 무리를 정권의 자리에서 내쫓았다.

김춘택과 남인과는 이전부터 견원(犬猿)의 사이였다. 숙종 15년(1687)에 인현왕후가 폐해지고 남인이 집권하기에 이르러 김춘택의 가족은 사사건건 조작된 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춘택은 다섯차례 영해(嶺海)에 유배되고 세차례 감옥에 넣어져 척축(斥逐)·유리(流離)하길 30년이라는 변전(變轉) 그지없는 생활에 밝고 저물어, 하루라도 평온 무사한 날은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들 까닭없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우군애국(憂君愛國)의 정열을 불태우며 언제나 말했다. 「장희재의 죄는 신이 반드시 토멸(討滅)할 바로서, 남구만이 이를 옹호하고 끝내 고살(蠱殺·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의 화를 부렸다. 곧 남구만도 또 하나 희재이니라」고. 또 「어머니를 폐하는 일도 또한 같다. 지금의 남인은 이이첨³³⁰의 무리와 무엇이 다르랴」고 직언(直言)

329) 경연(經筵·왕의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에서 왕에게 알현하여 직접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 일 등은 그 당시 유명한 얘기였다. 이러한 강한 신념과 윤리관에 바탕을 두어 김춘택은 서인의 횡행과 도량(跳梁)을 눌러 민비의 복위를 실현했다.

그렇다면 김춘택이 어째서 제주도에 유배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더듬어 보자.

숙종 31년(1705)에 이르러 왕의 안질이 갑자기 악화하여 돌연 선양(禪讓)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이에 당황한 대신들은 관민을 이끌고 대규모의 집단시위행동으로 왕명의 취소를 요청함과 동시에 선양논의자(禪讓論議者)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중지시키도록 했다. 그 일 때문에 정국은 매우 혼란하고 인심을 동요케 했다. 마침 임부(林漣)가 결성(結城)에 있을 때의 얘기로서, 이듬해 6월에 상소해서 말했다. 「숙종 27년(1701), 인현왕후의 모살사건을 취조했을 때, 희재의 벗인 윤순명(尹順命)의 공술 가운데, 장희재가 대정배소(大靜配所)에서 장녀(張女) 앞으로 보낸 편지 속에 김춘택이 희재의 처와 치정(痴情) 관계를 맺어 자신을 없앤 후, 세자(후의 景宗)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국청(鞠廳)의 청취서에는 그러한 공술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 위관(委官)³³¹⁾이 윤순명의 공술서를 폐기해 버렸는가, 또는 임부의 조작인가, 그것은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이 상소문에 있는 「세자모해(謀害)」의 흉언이 끝내 정치문제로 발전했다.

우선 이 문제의 소재(所在)에 대해서 유생 임부와 이잠(李潛)이 상소

330) 이이첨(1560~1633)은 선조의 폐비사건 등 생살폐치(生殺廢置)를 마음대로 했지만 역적의 말로는 비참한 것으로 끝내는 참형에 처해지고 있다.

331) 재관관 金昌集.

해서 논쟁했다. 그 가운데 이잠의 상소문은 왕을 매도하는 격렬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제 동궁(세자)과 춘택과의 세불양립(勢不兩立)³³²⁾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궁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가 반드시 모두 충신일 리 없으며 또 김춘택을 위해 동궁을 되돌아보지 않는 자가 모두 역적은 아닐 것입니다……전하께서는 동궁을 옹호하는 자를 내쫓고 춘택 도당에게 편드는 사람은 뒷받침 한다. 춘택 도당보다 동궁을 애고(愛顧)하지 않는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더구나 지금 전후좌우로부터 동궁에게 비수가 겨누어지고 있는 것을 왕께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고 왕의 언동을 날카롭게 비난했다.

왕은 이것을 보고 크게 격앙(激昂)하여 임부를 긴급체포해서 국문하는 한편, 국청의 심문조서와 국관(鞫官)을 더하여 재심사가 개시되었다. 그 때문에 김춘택은 숙종 32년(1706) 8월, 유배선인 해남으로부터 호송되어 왔다. 김춘택은 힐문 받자 그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신사옥사(辛巳獄事·1701)」 때, 장희재의 한글편지 속에 희재의 처·자근아기(者近阿只)³³³⁾가 서인을 통해서 춘택과도 접촉했다는 얘기는 엉터리도 심하며, 그것은 윤순명이 나를 죄에 연루케 하기 위한 조작이다. 나는 그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무실의 죄를 뒤집어쓰고 원류(遠流) 당한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 때 나의 무실을 밝히기 위해 동생 보택(普澤)이 원소(冤訴)를 거듭했으므로 당국은 그것을 엄중 심사한 결과, 윤순명의 공술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저를 석방하지 않았습니까고 불복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춘택은 제주목에 유배되고 가족도 또 정의현으로 정배되었던 것

332) 형세가 양립하지 않음.

333) 제주의 방언 작은 애를 말함.

이다. 그것이 동년 9월의 일이다. 적사는 성내의 동천동(東泉洞)³³⁴⁾에 사는 주기(州妓)³³⁵⁾ 오진(吳眞)의 집이었다. 그는 지독한 고독감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을 넘기기 위해 유생들을 집에 모아 열심히 가르쳐 도민의 문화향상에 전력을 다했다. 그 한편으로 「수해록(囚海錄)」을 써내고 있다.

그 위에 그의 두 번째 제주유배의 이유는 여지껏 뚜렷치 않지만, 그의 저서 「북헌집(北軒集)」에 따르면 숙종 40년(1714) 겨울, 흉인(凶人)의 화를 입어 다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고 되어있다. 아마도 다음의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다. 즉 같은 해에 성주(星州) 사람 김상현(金象鉉)이 상소하여 왕세자에게 양위토록 건의했다. 왕은 그것을 보고 그의 배후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고 여겨 즉시 붙잡아 취조한 바, 뜻밖에도 숙종의 사후(死後), 김춘택이 왕위를 찬탈할 우려가 있어 상소했다고 한다. 거기 불심(不審)한 점이 있어 더욱 따져들자, 이 말은 김노현(金老鉉)과 성주(星州)에 사는 진사 김석경(金石經)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이 둘을 붙잡아 조사해본 바, 그 공술이 새빨간 거짓이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김상현은 악질적인 고의의 「무고죄」로 어처구니 없게도 처형되었다.

그의 두 번째 배소는 대정지방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은 「서재집감록(西齋集柑錄)」에 백우(伯雨)³³⁶⁾가 적거중에 석례(石禮)라는 노기(老妓)가 임징하(任徵夏·西齋)를 찾아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일절을 노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임징하는 영조 3년(1727), 대정현 감산

334) 지금의 일도동.

335) 官妓.

336) 춘택의 字.

리(柑山里)에 적거한 사람으로 춘택의 매제가 된다. 김춘택은 수십년이라는 오랜 신고(辛苦)의 유적생활에도 지지않고 문학작품에 전념해서 한글로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을 창작하여 송강(松江)³³⁷의 서사(西詞)³³⁸에 답했다.

吾家西浦翁手寫一冊書 其目曰諺經 余來濟州又以諺
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

우리집 서포옹³³⁹이 손수 두 노래³⁴⁰와 한 권을 책을 써서
제목을 언경이라 하였다. 나도 제주에 와서 언문으로 별사미
인곡을 지어 송강(정철)의 두 노래에 화답하였다.

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래의 시상(詩想)은 기본적으로 송강의 “사미인곡”과 닮았지만 예술성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해도 시어(詩語)가 그보다 훨씬 평이(平易)하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김만중(金萬重)³⁴¹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또한 유적중에 창작한 시는 많으며 그것은 남김없이 그의 저 「북헌집」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소견(濟州所見)」이라는 제목으로

靑木綿裙短布禪 癸田閣氏淚潛吞^{*}
朝朝約伴攬筐公 採得畦頭首蓓根

※ 섬에 피는 꽃 이름

337) 鄭澈의 아호.

338) 사미인곡・續美人曲.

339) 김만중.

340) 정철의 사미인곡・속사미인곡.

341) 김만중(1637~92), 호를 서포(西浦)라고 했다. 대제학・관서를 역임했다. 저서에는 「구운몽(九雲夢)」・「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서포만필(西浦漫筆)」 등이 있다.

색 바랜 찢어진 치마 몸에 걸치고 계전(癸田)의
여자들은 눈물 젖어 살아간다. 아침 일찍부터 대바
구니 옆에 끼고 들과 산으로 가서는 풀뿌리를 파낸
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제주 적거시(謫居時)에 만든 노래

疾病三秋劇 流遷載強
海山堂座近 霜髮共秋長
幽蛰同蚯蚓 飛騰愧驪驪
焉能乘逸興 林屢入青蒼

가을 들어 병은 더욱 악화하고 섬에 유배되어 어
느덧 3년이 지났네. 집 근처에 바다나 내가 있고 추
상(秋霜) 깊어감에 따라 백발은 느는구나. 혼자 유배
되어 지렁이 같이 산다. 뛰어 돌아다니는 말, 그 기
상(氣象)이 대단하구나. 언제가 될지, 나도 흥을 돋
구어 푸른 산이나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或有宦遊客 留連不憶歸
醇醪添氣象 紅粉倍光輝
良馬常多取 潛珠亦暗飛
島氓何所望 御史有霜威

여기 부임해 오는 관리들은 머물러서 돌아가려
않는다. 맛있는 술로 흥을 돋우고 미녀들과 희희낙
락한다. 양마(良馬)를 많이 받고 진주를 또 남몰래
뇌물로 받는다. 이래서 섬사람들은 무엇을 바랄 것

인가. 위엄있는 어사(御史)³⁴²⁾가 섬에 들어오면.

彈丸孤島內 民事自艱難
不料秋蝗作 還承夏兩乾
逐臣江水遠 葛屨曉霜寒
向者祚穰苦 村村謾築壇

탄환과도 같은 작은 섬이고 보면 백성들의
삶은 자연스리 괴롭다. 가을엔 해충으로 작물이
여물지 않고 여름이 되면 비나 가뭄으로 해를
입는다. 아득한 강수(江水)의 주변에 유적(流謫)
의 몸, 차거운 서리가 내리면 내마음이 아파온
다. 풍년이 되어다오, 간절히 빈다. 마을마다 제
단을 모시는 그 심정 불쌍하도다.

<북헌집 · 黨議通略 · 속종실록>

342) 어사는 암행어사의 약칭으로 조선시대, 지방관의 비행을 조사하기 위해 왕명에 의
해 비밀리에 파견된 일종의 밀정(密偵)이다. 관고(官庫)를 봉하고 군관(軍官)을 즉
시 면관시킬 권리가 있는데 장원(壯元)된 자가 많이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민요에는 이렇게 있다.

저 관장(官長)은 젊으셔서 / 수절도(首切刀·목 자르는 칼)가 / 갈리는 것도 몰라
이 노래는 섬에서 오래된 요(謠)지만 여자들은 악관(惡官) 처벌의 통쾌스러움
을 지금도 되풀이 해서 노래한다. 언제부터였는지, 한 사람의 악명 높은 관장이
갓가지 실정(失政)으로 백성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했다. 어느 날 왕 직명(直
命)의 지방관 규찰(糾察)의 중관(重官), 암행어사가 거지 차림으로 비밀리에 들어
왔다. 경험이 많은 섬의 할미들이 제빨리 알아차렸다. 어사가 들어오면 관의 악정
(惡政)을 폭로하여 관은 부월(斧鉞) 아래 목숨을 잃게될 것이라고. 그런데 애송이
관장은 그것을 알 턱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저녁 이것을 방아짓는 노래로
불렀다. 오랫동안 관장과 같이 있던 한 관리가 이 노래를 듣고 괴상하게 여겨 할
미를 납치해다가 심문해서 크게 놀랐다. 급히 선교방편(善巧方便)을 다해 어사를
매수했고 그 때문에 관장은 무사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만큼 관리들은 암행어
사를 무서워했던 것이다.

김삼달(金三達)과 가족

...궁 안의 기밀을 누설시킨 죄인가?...

숙종 11년(1685)의 9월, 비망기내관(備忘記內官)³⁴³⁾ 김삼달(金三達)과 그 전 가족이 제주목에 정배(定配)되고 있다. 유죄의 원인은 자세하지 않다. 애초 내관직이라고 하면 궁중에 근무하는 역직(役職)이었으므로 혹 이면 궁중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유배되지 않았을까?고 추정된다. 그것은 「숙종실록」에 따르면 「김삼달은 성격이 교활·광폭하여 남에게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으며 흉악무도하기가 짝이 없다. 그 위에 대단한 허풍장이로 나무래어, 이렇듯 소행 불량한 자를 왕의 곁에 두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록은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는 장희빈이 왕의 총애를 독점하여 남인이 권력을 떨치고 있을 때인 만큼 사건의 내용이나 전후의 경위로부터 판단해서, 후궁이나 궁녀에 관한, 말하자면 궁중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시킨 혐의를 받아 유배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는 법이고 재판이고 없이 제멋대로의 죄명 아래 「적대분자(敵對分子)」라는 뱃말이 부쳐져 괴로움을 맞본, 이름도 없는 하급관리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숙종실록>

343) 왕명을 기록하여 승지에게 전하는 내관.

이진상(李震尙)

...미친 소리(狂言)에 의한 무고죄...

숙종 16년(1690)의 12월, 이진상(李震尙)이란 자가 궁정에 침입하여 의외의 상변(上變)을 고했다. 그래도 거동이 수상함으로 즉시 그를 붙잡아 그 사실을 엄격히 취조한 결과, 아니나다를까.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엉터리였음이 판명되었다. 당연히 무고죄로 문책되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조정은 정신병자로 간주하여 사형을 낮추어 제주도로 유배에 처했을 뿐이다. <前掲書>

이현명(李顯命)

...「시사극론죄(時事極論罪)」로 문책되어...

숙종 22년(1697) 8월 유학(幼學)³⁴⁴ 이현명(李顯命)이 시사문제에 언급하여 장장 논한 상소문을 올렸다. 그 내용이 너무도 과격하여 상도(常道)를 벗어났다고 해서 「시사극론죄」로 문책(問責)되어 동년 9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前掲書>

이동설(李東嵩) 등 4명의 내관

...몸가짐이 패악(悖惡)한 죄로...

숙종 26년(1700) 2월 초하루 저녁 내관³⁴⁵ 이동설(李東嵩) · 신우석(申遇石) · 김준원(金俊元) · 박중경(朴重慶) 등 4인이 궁중에서 방자(房子)³⁴⁶

344) 관직이 없는 유생.

345) 환관과 내시.

넷과 중전 문밖의 한 구석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명랑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남의 눈을 끌었다. 그게 아무래도 미심쩍어 관계관이 그들을 불러 사정을 들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맞춰, 우리들은 일찍부터 의리형제의 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다정하게 편지도 교환했을 뿐 아니라 가끔은 길동무도 했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듣기에 가소로운 얘기지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바가 되어, 그들은 궁내에서 허가없이 밀회했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되어 형조(刑曹)로 송검(送檢)되었다. 거기서 지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4인의 내관은 「지신패악(持身悖惡)」³⁴⁷⁾이라는 이상한 죄명 아래 동년 2월초에 제주도대정현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후 석방되었는지, 혹은 그곳에서 죽었는지,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숙종실록>

송상주(宋尙州·周)

…선비(先妃)를 업신 여긴 죄로…

송상주(宋尙州)는 선비를 업신 여겨 왕후를 속이는 듯한 음험(陰險)하기 짝이 없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 왕의 격노를 사, 국문의 결과 유죄(流罪)가 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어 흉악죄인으로 취급되었다.

숙종 28년(1702) 5월 정부는 그를 감형하여 만기(滿期)라고 해서 즉시 방면을 결정했다. 그런데 관료의 부정과 실정(失政)을 규찰(糾察)하는 「사헌부」에서는 그에 이의(異議)를 주창하여 즉시 상고했다. 「송상주의 죄는 사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가 현재 절해고도에 도배(徒配)되

346) 왕실 女婢의 일종.

347) 몸가짐이 도리에 어긋나서 나쁘다.

어서부터 이미 실효(失効)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기라고 해서 석방하는 것은 부당 천만이다」고 그 조치에 강력 반대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월 18일 그를 제주도로부터 냉엄한 불모의 극변지(極邊地)에 이배(移配)했다. 그러나 송상주가 언제쯤 제주도대정현에 유배되어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前揭書>

제5장 배류요인(配流要因)의 제상(諸相)

과거제도에 대해서

우선 참고로 과거제도(科擧制度)에 대해 한 마디 해 두겠다. 조선에서 과거¹⁾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신라의 원성왕(元聖王) 4년(789)으로 이 때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제를 법제화시킨 것은 고려시대의 광종(光宗) 9년(958)으로 이것을 주도(主導)한 것은 후주인(後周人)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雙冀)였다. 과거에는 처음 제술과(製述科)²⁾와 명경과(明經科)·의(醫)·복과(卜科)가 있었는데 그 후 과거제도가 개혁과 발전을 거듭해 인종(仁宗) 14년(1136)에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많이 등용되었다. 처음에는 매년 과거시험을 실시했으나 성종대(成宗代·1469~94)가 되어서는 3년에 한번(2년식), 현종(顯宗·1659~74) 때는 격년제, 그 뒤는 매년 또는 격년제

1) 문관의 등용시험.

2) 進士科라고도 했다.

로 했다.

과거시험은 중앙과 지방에서 1차시험을 시행했지만 중앙에서 1차시험에 합격한 것을 토공(土貢), 지방에서 합격한 것을 향공(鄉貢), 중국인으로서 합격한 것을 빈공(賓貢)이라고 칭했다.

이와같이 1차시험에 합격한, 이른 바 삼공(三貢)은 국자감(國子監·지금의 대학에 상당함)에서 재시험을 치른 결과로 합격한 자, 국자감에서 3년 이상 공부한 자, 관도(官途)에 올라 3백일 이상 된 자에 대해 소정의 시험과목에 의해 최종시험을 시행했다. 이것을 감시(監試)라고 칭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동당시(東堂試), 1등합격자를 “장원(壯元)”, 2등을 “아원(亞元)” 또는 “방안(榜眼)”, 3등을 “탐화(探花)”라고 했다. 때에 따라 감시에 합격한 자를 모아 왕이 다시 시(詩)·부(賦)·논(論)을 친히 시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복시(覆試) 또는 염전중시(簾前重試)라고 했다. 이것은 성종 때 실시되었지만, 그것은 상례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고급관리의 등용문인 제술·명경과는 양반의 자제만이 응시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주(州)·군(郡)·현(縣)의 차관(次官)인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자제를 기준으로 해서 응시시켰다. 그리고 잡과(일종의 기술직)의 응시자격은 일반서민에게 주어졌다.

조선에 이르러서의 과거제도도 전조(前朝)와 비슷했다. 태조 원년(1392)에는 재빨리 과거제도를 제정하여 성균관³⁾에서 시험을 시행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자 33명을 조선(吏曹)⁴⁾에 보내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등용하여 의(醫)·음양(陰陽)·잡과(雜科) 등을 마련했다. 3년에 1

3) 당시의 국립중앙대학.

4) 인사관계의 관서.

회씩 과거를 실시했지만 시행하는 해는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문과의 첫 시험이었다.

문과의 초시(初試)는 서울에서 실시되는 한성시(漢城試), 성균관에서 행해지는 관시(館試), 각도에서 시행되는 향시(鄕試)의 세가지가 있었다. 이 초시합격자는 뒷 해의 봄에 소집되어 2차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복시(覆試)라고 했다. 이 복시합격자는 궁전안의 전정(殿庭)에서 왕이 친히 시험을 시행, 이것을 전시(殿試)라고 했다. 무과(武科)는 궁술(弓術)·총술(銃術)·강서(講書)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이것을 초시·복시·전시의 수순(手順)으로 치르도록 했다. 이와같이 조선은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했다. 과거는 3년에 1회씩 시행하는 2년식이 원칙이었지만 태종 때는 증광시(增廣試)라고 해서 왕이 수시로 시행했다. 또 세종 11년(1429)의 알성시(謁聖試), 세조 13년(1457)의 별시(別試) 등을 비롯 외방별시(外方別試)·종친과(宗親科)·현량과(賢良科)·도기시(到記試)·황감시(黃柑試)·춘당대시(春塘臺試)·기로과(耆老科)⁵⁾ 등 수시로 과거를 시행하는 풍조가 생겨 이미 등용된 문신들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합격자를 한층 중용(重用)한 일도 있었다. 나중에도 과거가 너무 빈번히 시행된 결과, 관에 좀처럼 등용되지 않았으므로 뇌물을 써서 엽관(獵官)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당파나 정실에 의해 등용이 좌우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 때문에 순조(純祖) 18년(1819) 5월에 성균관의 사성(司成: 종3품 관) 이형하(李滢夏)가 「과거의 팔폐(八弊)」⁶⁾를 지적하고 개혁의 방법을 상

5) 60세 이상만 시행.

6) ①차술차작(借述借作: 남의 문장을 빌어서 만드는 것) ②수종협책(隨從挾冊: 시험장에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 ③입문유린(入門蹂躪: 시험장에 누구나가 들어가는 것), ④정권분환(呈券紛還: 시험지를 바꿔서 제출하는 것), ⑤외장서입(外場書入: 밖에서 써서 제출하는 것), ⑥혁체공행(赫躋公行: 시험문제를 사전에 누설하는 일), ⑦이졸환면출입(吏卒換面出入: 이졸이 대신 출입하는 일), ⑧자축자의환롱(字軸恣意幻弄:

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과장구폐절목(科場擧弊節目)」⁷⁾이 나온 것이다.

숙종 25년의 과거에 연루된 고군(雇軍)

세조(世祖) 3년(1457)에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추방된 단종(端宗·재위 1452~55)이, 죽은 후 숙종 25년(1699) 10월에 복위되었다. 왕은 그것을 경하하기 위해 증광시의 전시를 시행했다. 그 때 한세량(韓世良) 등 34명의 합격자를 보았지만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 부정의 방법은 「부동역서(符同易書)」⁸⁾나 고군(雇軍)⁹⁾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영하가 지적한 「정권분환(呈券紛還)」과 「이졸환면출입(吏卒換面出入)」에 해당하는 부정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 의해 시험지를 몰래 바꾼 서리(書吏) 이제(李濟)·윤귀설(尹貴說) 등은 3년의 충군형(充軍刑)에 처해지고 고군을 대리로 세우게 한 위장소(衛將所)의 서원(書員) 안귀서(安龜瑞)·최석기(崔錫基) 등은 가족과 함께 추방되고 응시자들의 하인으로, 주인을 위해 고군이 되었던 자들은 모두 제주도로 보내져 충군(充軍)형¹⁰⁾에 처해졌다. 이 사건을 흔히 「기묘과옥(己卯科獄)」이라고 한다.

<숙종실록>

과거때 글을지어 올린 글장을 조작해서 하는 일.

7) 순조 18년 과거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비변사(備邊司)에서 왕에게 건의한 규정. 그 주된 내용은 시험관이 일단 시험장에 입장하면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제술(製述)은 제목을 주어서 3시간 내에 써내지 않으면 안된다.

8) 시험지의 교환.

9) 고용한 군인.

10) 군역 복무.

구성희(具星喜) 등 6인

...고종조(高宗朝)에 있어서의 과시(科試) 부정사건에 의해...

순조(재위1800~37) 이 후 왕실의 외척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그 척족(戚族) 일문에 의해 정부의 고관·현직(顯職)이 독점되고 관직의 매매와 뇌물이 공공연히 횡행, 정치기강을 더욱더 혼란케 했다. 따라서 과거제도도 19세기에 들어서면 그 난맥상이 한층 더 심해졌다. 그래서 수험자격에 대한 철저한 신분제도는 붕괴하고 뇌물에 의한 시험합격증의 남발 등이 성행하여 시험의 공정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고종조(재위 1864~1906)에 제주도에 유배된 자 중에는 제주도 출신의 특전을 역이용하여 과거시험에 부정이 있다고 해서 유배된 자가 6명 있다. 그 이름과 부정사실을 예거(例擧)하면

- (1) 구성희(具星喜)는 고종 원년(1864) 경과정시(慶科庭試) 문과에 수험했을 때, 어떤 연유인지 본적이 강화도이면서 제주출신이라고 사칭하여 합격했다. 그것이 발각되어 충군형을 받아 제주도로 보내졌던 것이다.
- (2) 김성복(金性復)은 청풍김씨(淸風金氏)의 후예로 경기도 과천(果川)사람. 그는 고종 12년(1875) 4월 별시문과전시(別試文科殿試) 병과(丙科)에 합격하였지만 이틀 뒤 초시와 별시를 수험했을 때 거주지를 속였다고 예조(禮曹)로부터 왕에게 보고되었다. 왜냐면 그는 과천에 있으면서 거주지를 경상도 승천(昇川)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종은 「학자들의 이러한 부정은 종잡을뿐더러 따지고보면 왕을 속이는 것으로 단정됨으로 법에 비추어 처리하라」고 하명했다.

그 때문에 그는 매를 맞은 뒤에 제주목에 정배된 것이다. 4년 후에 소환되어 관에 서임됐지만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¹¹⁾나 선전관(宣傳官)¹²⁾ 등 하급관리 밖에 할 수 없었다.

- (3) 이희당(李禧堂)¹³⁾, (4) 남정호(南廷皓)¹⁴⁾, (5) 박영훈(朴泳薰)¹⁵⁾, (6) 민영서(閔泳序)¹⁶⁾ 등의 4명은 고종 16년(1879) 3월 경과정시 문과를 수험했다. 남정호는 갑과(甲科), 민영서는 을과(乙科), 박영훈·이희당의 둘은 병과에 각각 합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거주지를 모칭(冒稱)했다고 해서 합격이 취소되었다. 말하자면 이희당은 거주지가 평양인데 제주 유학(幼學)¹⁷⁾이라고, 남정호는 서울인데도 춘천(春川)이라고, 민영서는 경주인데도 상주(尙州)라고, 박영훈은 서울인데도 나주(羅州)라고 거주지를 사칭했던 것이다. 이들은 과시부정죄(科試不正罪)에 의해 동년 3월 충군형(充軍刑)에 처해져 제주목으로 정배되었다. 충군형은 본디 죄인을 정규군에 편입시키지 않고 천역(賤役)에 종사시키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유배인보다 훨씬 가혹한 노역(勞役)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듬해 1월에 방환되어 관직에 붙긴 했지만 충군형이란 전과가 마지막까지 꼬리를 물어 하급관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종실록>

11) 정7품관.

12) 정3품부터 종9품까지의 관리.

13) 丹陽李氏, 1855년생.

14) 본관은 宜寧, 1833년생.

15) 본관은 羅州, 1848년생.

16) 본관은 驪興, 1838년생.

17) 아직 관에 붙지 않은 학생.

유항(柳抗)

…상소문이 절지(切至)하다고 탄핵되어…

유항(柳抗)의 자는 직재(直哉), 문화(文化)의 사람. 일찍부터 공거(公車·兵車)로 마다하고 산수간(山水間)에 기거하면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글을 읽는, 성실한 학자의 거울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충실한 실행력과 조예(造詣)의 정미(精微)는 한 고을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하고 귀감(龜鑑)으로 삼았다. 주(州)·목(牧)·인(隣)의 큰 무리가 예방(禮訪)해 와도 도롱이를 걸치고 종일 담론(談論)해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 실로 춘풍태탕(春風駘蕩)의 인품이었다.

그 반면에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로 임한다는 기골(氣骨)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숙종 40년(1701), 동궁¹⁸⁾을 보호해야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마침 남인인 이잠(李潛)¹⁹⁾의 상소문과 같이 그 내용이 매우 절지(切至)를 극했던 모양으로 양사(兩司)²⁰⁾로부터 준열(峻烈)하게 탄핵되어 끝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8년만에 겨우 풀려 귀향했다. 진정으로 포의(布衣)²¹⁾로서 대언항소(大言抗疏)한 것은 이잠과 유항뿐이라고 한다. 그는 8년간이나 제주도에서 재미없는 유적생활을 보냈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섬의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嶺南人物考>

18) 후의 景宗.

19) 星湖 李瀾의 형.

20) 사간원과 사헌부.

21) 관직이 없는 사람.

노론(老論)과 소론(少論)과의 대립

경종조(景宗朝 · 재위 1702~24)

신임(申鉉)

...소론파의 횡포를 규탄한 때문에...

숙종 20년(1694) 남인파가 병식(屏息)해서 정권은 재차 서인의 손아귀에 돌아갔다. 그러자 즉시 정국은 일변해서 오로지 노·소(老·少) 2당의 정쟁이 되었다. 이 기간은 그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

그 후 20여년의 재위기간엔 노론이 국정을 좌지우지하여 소론은 퇴출되었지만 경종(景宗)이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소론이 일어섰다. 그러나 경종이 병약하여 이미 왕자의 가망도 없고 청정(聽政) 또한 곤란함에 따라 경종 원년(1721) 8월,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 · 昫)을 세제(世弟)로 하여금 대리케 하려는 소청(疏請)이 노론파로부터 제출되었다.

당시 노론파의 4대신이었던 영의정 김창집(金昌集)¹⁾, 좌의정 이건명

(李健命)²⁾,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 · 조태채(趙泰采)³⁾ 등을 비롯 노론파는 모조리 이에 찬성하고 왕도 또 비답(批答)⁴⁾을 조정에 내려 이를 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론파의 우의정 조태구(趙泰耆) · 사간 유봉휘(柳鳳輝 · 晩菴) 등은 남인들과 국구(國舅)⁵⁾ 어유귀(魚有龜) 등에게 붙어 건저(建儲)⁶⁾의 시기상조론을 들고나와 앞서가는 노론에게 맹렬히 반발, 논쟁은 격렬해졌지만 노론파가 드디어 패배, 김창집 등은 모조리 쫓겨나고 조태구(素軒) 등의 소론파가 대신 요로에 섰다.

그런데 소론파 중의 야심가이며 음모가이기도한 참판 김일경(金一鏡)⁷⁾ 등 악당은 내시 박상검(朴尙儉)등과 짜서 세제(世弟)를 기울이게 하려던 것이 탄로 나, 상검과 궁비(宮婢) 등이 형륙(刑戮) 당하는 실패를 저질렀지만, 곧 이듬해에는 이진유(李眞儒) · 윤성시(尹聖時) · 박필몽(朴弼夢) · 서종하(徐宗夏) · 정계(鄭楷) · 이명의(李明誼) 등을 회유하여 김일경이 소수(疏首)⁸⁾가 되어 엉터리 상소문을 올려 건저를 주장한 4대신을 사흉(四凶)이라고 꾸짖고 “기(冀)⁹⁾ · 현(顯) · 망(莽) · 조(操)”에 비기면서 탄핵했다.

1) 1648~1722, 호는 夢窩.

2) 1663~1722, 寒圃齋.

3) 1675~1728, 호는 二憂堂.

4) 상소문에 대한 왕의 회답문. 「조야취요(朝野聚要)」에 「집정이상유장주청 칙강비답 이하칙강조(執政以上有章奏請 則降批答 以下則降詔)」라고 되어있음에 유래한다.

5) 왕후의 아버지, 부원군.

6) 세자책봉.

7) 소론의 거두.

8) 대표자.

9) 기(冀)는 양기(梁冀), 후한(後漢)의 대장군, 자신의 왕을 죽인 대역적. 현(顯)은 광현(霍顯), 한선제(漢宣帝) 때 광광(霍光)의 처, 허후(許后)를 죽여서 자신의 비(妃)로 했다. 망(莽)은 왕망(王莽), 전한성제(前漢成帝)의 종제, 위군자(僞君子)로서 모든 일에 주공(周公)을 흉내내어 남을 속였다. 조(操)는 조조(曹操), 위의 수상, 삼국지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김일경은 목호룡(睦虎龍)을 부추겨 노론파의 역모죄를 무고토록 했다. 여기에서 대옥(大獄)이 갑자기 일어나 국청이 열려 국문이 개시되었다. 좌참찬(左參贊)¹⁰⁾인 최석항(崔錫恒)¹¹⁾이 위관(委官)¹²⁾이 되어 포도대장에는 이삼(李森), 일경은 금부당상(禁府堂上)¹³⁾이 되었다. 이 때 4대신을 비롯한 노론파에서 주찬(誅竄)된 자가 60여명에 이르렀다. 이거야말로 노론파가 입은 일대타격이었다. 이를 세간에서는 「신축옥(辛丑獄) 또는 「임인(壬寅)의 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권모술책에 의해 소론파가 정권을 잡자 탄압의 폭풍이 휘몰아쳐 차례차례로 죄없는 자를 체포하여 고문이나 협박을 가해 많은 범죄를 만들어 내어 선량한 관리는 모조리 쫓겨났다. 거기서 사직(司直)으로서의 신임(申鎰)¹⁴⁾은 소론파의 이러한 폭거를 차마 볼 수 없어서 죽음을 걸고 항소(抗疏), 그 정치적 편견에 의한 탄압과 박해를 즉시 중단하도록 날카롭게 논란했다. 그 때문에 그는 노론파의 일당으로서 정적(政敵)분자라는 뱀띠가 부쳐져 경종 2년(1722) 5월 제주도 대정현(감산리)에 보내져 위리안치라는 극형에 처해졌다. 그제 84세의 노령 때였다. 그는 늙은 몸으로 제주바다를 건너 멀리 떨어진 배소에 당도하자 우선 마을의 안정을 얻기 위해 집의 남벽(南壁)에 「안정와(安定窩)」라 쓰고 천정에는 「남극남인성(南極南人星)¹⁵⁾을 볼 수가 있다는 소망을 담고 「읍노헌(攄老軒)」이라고 썼다. 거실 벽에는 즐겨해서 수심을 잊으면 스스로 기쁨이 온다 「낙이망우 이연자득(樂而忘憂 怡然自得)」이라고

10) 의정부의 정2품관.

11) 1654~1724, 호는 損窩.

12) 재관관.

13) 의금부의 장관.

14) ?~1725, 문신.

15) 壽星.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함.

써서 마을의 평정(平靜)을 유지했다고 한다.

신임은 일찍이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신명규(申命奎)의 아들이다. 자를 화중(華中)이라 하고 호를 한죽(寒竹) 또는 죽리거사(竹里居士)라고 했다. 숙종 12년(1686) 문과에 급제하여 일찍이 연안태수(延安太守)가 되어 치적이 많았다. 돌아와서 승정원의 승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¹⁶⁾, 대사헌 등의 요직을 역임하여 나이 80에 자헌(資憲)¹⁷⁾에 오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된다. 기로소(耆老所)¹⁸⁾에 들어가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공조판서가 된다. 신임이 제주도에 유배되어 4년 후, 영조(英祖)가 즉위하자 그는 즉시 사면되어 돌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월에 사면 소식이 있어 3월 초 승선했지만 바다에서 큰 비바람을 만나 5일만에 물에 올랐으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 끝내 해남면(海南面)의 우관(寓館)에서 숨을 거두었다. 부음을 듣고 왕은 놀라 특히 영의정을 추증하고 충경(忠景)을 시호(諡號)로 했다.

그가 일찍이 대정현예리(貌里)에 적거중인 아버지를 찾아 제주도로 건너 갔을 때, 섬의 실경(實景)에 접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유시 백일용등천 무수청산마입운(有時白日龍騰天 無數青山馬入雲)」¹⁹⁾이라고, 바로 천고(千古)의 절창(絕唱)이라고 할 수 있겠다. <人物考·東國朋黨源流>

16) 시장급.

17) 정2품의 문관.

18) 1년 7일 이상으로서, 정2품 이상인 자는 기로소에 들어가 「기로(耆老)」라 칭하고 나라의 우대를 받는다.

19) 해가 있을 때는 용이 하늘로 오르고 닢따란 산야엔 말이 구름같구나.

조정빈(趙鼎彬)

...부친의 원죄(冤罪)에 연좌되어...

조정빈(趙鼎彬)은 앞에서 말한 조태채(趙泰采)의 장남이다. 조태채는 숙종 12년(1686) 문과에 급제하여 옥구현감(沃溝縣監)·평양감사(平壤監司)를 거쳐 우의정(대신)이 된 사람이다. 경종초(景宗初) 노론과 4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경종 즉위 후 연잉군(延礽君, 후의 英祖)의 세자책봉 문제에 대해서 소론과의 책략으로 화를 입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끝내 사사되었던 것이다. 그 화는 태채의 가족에게까지 미쳐 장남인 정빈은 제주도 대정현에, 차남인 관빈(觀彬)은 나도(羅島)에, 3남인 겸빈(謙彬)은 거제도에, 처는 흑산도(黑山島)에, 온 가족이 갈기 갈기 찢겨서 유배된다는 비운(悲運)을 만난 것이다. 그 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끔찍한 원죄의 흑막으로서 김일경을 참형하고 이듬해 3월에 흥당(凶黨)을 척출(斥黜)하여 옛 신(臣)들을 소용(召用)함과 동시에 신임화옥(辛壬禍獄)에 얽힌 유배인 전원을 방환토록 했다.

전 참판 정호(鄭濤)²⁰⁾ 등이 배소선(配所先)에서 돌아와 우의정이 되자마자 노론인 민진원(閔鎭遠)등과 협력해서 신임화옥 때의 4대신과 제신(諸臣)의 원죄를 소진(疏陳)하여 원사자(冤死者)의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영조는 명하여 작위(爵位)를 되살리고 제사를 올려 태채의 가족을 배소선인 절도(絶島)로부터 방환토록 했다. 정빈은 그 덕택으로 도민의 정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지나 마찬가지인 유배인생활로부터 겨우 해방되어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人物考·景宗實錄>

20) 1648~1736, 호는 文嚴.

조성복(趙聖復)

…세제(世弟)의 대리청정(聽政)을 요청했다고 해서…

조성복(趙聖復·退修齋)은 풍양(豐壤)사람. 숙종 28년(1702) 문과에 합격하여 사헌부의 집의(執義)²¹⁾로 근무했다. 그의 사람 됨됨이를 이재(李穡·陶菴)의 「삼관기(三官記)」는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사극(士克)²²⁾은 나보다 한 살 아래. 책(策)으로써 등제했다. 말은 더듬지만 재조는 기민하다. 오래 함께 있었지만 글을 논하는 외에 범속(凡俗)한 말은 없다. 서로 섭섭함이 없이 지냈다. 어느 날 숙종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문신의 강(講)을 시도했다. 숙종은 갑자기 하교(下敎)해서 가로되 임강(臨講)은 몇 년에 시작하는지 알지 못하나 첫째로 그 잘못을 답습(踏襲)하지말라, 오늘부터 새로이 배강(背講)했다고, 명경과(明經科)의 새로운 합격자 외는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때 마침 혹한(酷寒)으로 해서 성복은 난모(暖帽)도 쓰지 않고 귀가 실렸지만 즉시 서전(書傳) 1편을 암송하고 낭연(琅然)히 한 자의 틀림도 없었다. 보는 이들이 칭찬하고 기이(奇異)하다면서 모두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의 자성(資性)과 재지(才智)를 잘 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경종의 세자책봉문제를 둘러싸서 노론과 소론과의 대립이 격화하여 당쟁이라도 대화옥(大禍獄)으로 발전할지 모를 험악한 정세 속에서 경종 원년(1721) 10월에 상소하여 「각료회의 때 정사(政事)를 결정할 경우에는 왕세제(王世弟)²³⁾를 참청(參聽)시켜야 할 것」이라고 우선

21) 종3품.

22) 성복의 字.

23) 후의 영조.

섭정(攝政)의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당일 전교(傳敎)를 내렸다. 「짐은 일찍부터 건강이 좋지않아 도저히 정무(政務)에 견딜 것 같지 않다. 그 때문에 대소의 국사(國事)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일체의 정무를 왕세자가 처리하도록 하여 짐이 안심해서 양생(養生)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향을 전했다.

왕의 요망에 대해 소론파는 모두 다 맹렬히 반발했다. 호조참판(戶曹參判)²⁴⁾ 조태억(趙泰億)과 사직(재판관) 박태항(朴泰恒) 등 30명이 상소해서 노론의 4대신과 조성복의 잘못을 날카롭게 규탄했고 이어 사직 이광좌(李光佐)·한배하(韓配夏)·형조참판²⁵⁾ 조선(李肇)·부사과(副司果) 한세량(韓世良) 등이 「왕위를 비밀리에 옮기려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탄핵했다. 뿐만아니라 4일간에 걸쳐 전교(傳敎)²⁶⁾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유봉휘(柳鳳輝) 등이 세제에게 상소하여 섭정의 사퇴를 강요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동월 17일 그 성명(威命)²⁷⁾을 취소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소론파가 정권의 자리에 앉자 즉시 정적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강구되었다. 동년 12월 지평(持平)²⁸⁾ 윤성시(尹聖時)가 상소하여, 김창집등의 4대신과 조성복을 「무군부도죄(無君不道罪)」로 논죄했다. 특히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은 조성복으로, 남달리 혹독했다. 그 때문에 그는 구금되어 국문 당했다. 그는 고문에도 굽히지 않고 어디까지나 불복을 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내는 뒷해 5월 제주도정의현에

24) 재무차관.

25) 법무차관.

26) 왕의 명령.

27)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결정적인 명령.

28) 사헌부의 5품관.

위리안치의 극형에 처해졌다. 경종 2년(1722) 3월 세제책봉주청사(世弟冊封奏請使)로서 중국을 방문한 이건명(李健命)이 귀국했다. 이로써 세제책봉의 전례(典禮)는 갖추어진 것인데 김일경 등의 악당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목호룡으로 하여금 「지금 적당(賊黨·노론)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고변(告變)케 했다.

그는 고변 속에 삼수(三手)의 음모를 말한다. 즉 「대급수(大急手)²⁹⁾, 소급수(小急手)³⁰⁾·평지수(平地手)³¹⁾라는 삼급수의 방법을 써서 왕의 시살(弑殺)을 도모하는, 일찍이 없었던 흉악무도한 반역을 하려 하고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무쪼록 빨리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국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고 하는, 그럴듯한 참언(讒言)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왕은 바로 그것을 믿어 즉시 정부·의금부·양사(兩司) 관원들의 참석 하에 재판이 개시되었다. 목호룡이 역적이라고 지적한 백망(白望) 등 60여 명이 심판의 마당에 끌려 나왔다. 백망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이것은 소론파와 남인파가 왕세제를 모함하기 위한 조작에 지나지 않다고 강력히 항변했지만 심문을 맡고 있던 남인들은 누구 하나 그것을 들으려 하는 자가 없었다.

그 때문에 돌연 대옥(大獄)사건이 터져 나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고 가혹한 탄압선풍이 불어젖혀 붉은 피가 대지를 물들여갔다. 이 사건을 흔히 「임인무옥(壬寅誣獄)」이라고 하는데 그 때 60여 명이 투옥되었고 그 가운데는 장살(杖殺)된 자도 있는가하면 제주도를 비롯한 먼 섬으로 유배된 자가 15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지독한 모

29) 힘으로 한다.

30) 약을 쓴다.

31) 廢黜을 꾀한다.

락이었다.

그 전에 제주도 정의현에 유배되어있던 조성복은 또다시 이 역모사건에 관계하고 있다고 해서, 대사헌인 김일경이 동년 10월 성복에 대한 재심(再審)을 왕에게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 때문에 그는 뒷해 정월에 정의현으로부터 의금부로 호송되어와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지독한 고문을 받은 다음, 사형 판결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그는 악당들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겨 옥중에서 독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어디까지나 자신의 결백을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도암(陶菴)이 「삼관기」에 「사람들이 말한다. 사극(士克)은 반드시 매를 이기지 못하고 화가 막 미치려 하고 있다. 나 자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사극은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철석인(鐵石人)이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는 강직하고 수정(水晶)과 같이 청결한 사람이었다.

그 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파가 다시 정권을 잡자, 그는 명예가 회복되어 이조판서가 추증(追贈)되고 충간(忠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는 언제나 「나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내 말을 실천하고 그 후에 국사(國事)를 다루라」고 해 듣는 이들이 장(壯)하다고 했다.

<조선인명사전·黨議通略·東國朋黨源流>

조성집(趙聖集)

...동생의 원죄(冤罪)를 강소(強訴)한 때문...

성집(聖集)은 앞에서 말한 조성복의 형이다. 성집은 동생의 원죄(冤罪)에 노여움의 불꽃을 태워 불의의 무리들과 몸을 던져 조정에서 항쟁했다. 그것으로 정적인 소론파의 미움을 사게돼 제주도로 유배되는 신세

가 되었다. 더구나 유적중에 질이 나쁜 장종병(腸腫病)을 얻어 남의 어깨에 의지하여 발을 옮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 병으로 끝내는 제주의 적소에서 무념(無念)가운데 죽었다. 그들 형제는 재민(才敏)하고 의리에 강해 대인관계는 유연하지만 내면은 매우 심지가 강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유성추(柳星樞)

...임인무옥(壬寅誣獄)에 연좌됐다고 해서...

경종시대의 「임인무옥」도 또 상상을 뛰어 넘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 무옥에 연좌되어 매를 맞고 제주도로 유배된 사람은 의외로 많다. 전 통제사(統制使) 유성추(柳星樞)는 무과 출신. 9회에 걸쳐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역임하고 세 번 통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말하자면 역전(歷戰)의 강자(强者)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이 무옥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 심판의 마당에서 정신을 잃을만큼 고문 당해 한 때는 절명상태에 빠졌으나 겨우 숨을 되살려 끝내는 제주도로 유배되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죄가 가벼웠던 것인지 얼마없어 방면되고 있다.

김수천(金壽天)

...편지 연락을 했다는 조작으로...

김수천(金壽天)도 또 「임인무옥」의 비극에 연좌되어 동년 4월 제주도에 유배됐었다. 이유는 김수천이 백망(白望)이라는 자에게 편지를 연락

했다는 조작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백망은 연잉군(延昞君)³²⁾의 응사(鷹師)³³⁾였다.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에 따르면 「김용택(金龍澤)이 백망에게 보검(寶劍)을 들도록 하여 국상(國喪) 날, 궁중에 쳐들어가 대급수(大急手)를 쓰고 또 궁인을 매수해서 소급수(小急手)를 쓰도록 했다…」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백망은 김일경의 흉도(凶徒)로부터, 말하자면 왕세제 살해자로 꾸며져 있던 것이다. 그는 재판 받을 때, 악의에 찬 조작극이라고 강하게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것이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드디어 그는 피에 물든 손을 가진 일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고 자해(自害)로써 자신의 결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조작한 간사한 무리, 김일경 등은 그의 시신을 옥에서 끄집어내어 무참한 방법으로 참수형에 처했다.

<黨議通略>

학손(鶴孫)·이수민(李壽民)

...앞과 같은 죄로...

학손(鶴孫)은 백망(白望)의 하인이었던 것 같다. 이 자도 백망의 편지를 공모자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동년 4월, 제주도대정현에 유배되어 있으며 김춘택의 가족도 제주와 정의에, 그리고 서반(西班·무관) 이수민(李壽民)도 정의에 정배되어 있다.

32) 후의 英祖.

33) 매를 돌보는 사람.

이시필(李時弼)

...향국흉언죄(向國凶言罪)에 의해...

의관(醫官)인 이시필(李時弼)은 「향국흉언죄(向國凶言罪)」로 사형이라는 아슬아슬한 입장에서 감일등(減一等)되어 경종 4년(1724) 1월, 제주도정 의현에 찬류되어 있다. 드디어 경종이 병몰하고 이어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 1월에는 「신·임화옥(辛·壬禍獄)」에 관련된 유배인 전원이 석방되고 이어 3월에는 「임인무옥」의 죄인을 소결(疏決)³⁴⁾하여 전원 방면했다. 그 결과 이들은 만 3년만에 석방되어 귀향했던 것이다.

34) 죄인을 관대히 처분하는 일.

영조조(英祖朝·재위 1724~76)

탕평책(蕩平策)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술해온 바의 대충을 보아도 당파적인 정쟁이 얼마나 국가의 근본을 부식(腐蝕)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정치는 본디 권력을 다투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권력투쟁을 외면한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 문제는 권력을 지향하는 자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과로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그것에 의해 시비가 판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영조(英祖)는 당쟁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노론·소론 쌍방의 인재에게 관직을 배분하고 또 쌍방 영도자 사이에 들어가 화목하도록 권했다. 이 방침은 정조(正祖)에게도 계승되어, 정조는 남인의 영도자를 중용했다. 이렇게 해서 18세기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과 문화의 진흥 기운이 올라갔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반 세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노력과 관직의 배분만으로는 양반 지배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모순이 확대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관직의 배분정책은 정치기강을 더욱 혼란에 빠뜨려 양반들 사이에 취직경쟁의 악습을 야기시켰을 뿐이었다. 조선왕조를 확립시키기 위한 정치철학이었다던 유교의 이념과 그 규범은 이미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능을 그 이상 지속해서 발휘할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영조는 원년(1725)의 1월, 우선 교지를 내려 신민(臣民)을 납득시켰다. 그 내용은 이렇다. 「당파의 폐단이 요즘처럼 심한 때는 없다. 처음에

는 유학문제 때문에 말썽이 일어났는데 지금와서는 한쪽 편 사람들이 역적당파에 다 물리게 되었다.

세 사람이 가는데도 어진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법인데 어떻게 한쪽편 사람이 똑 같을 수 있는가. 가혹하게 한테다 또 심각하게 하고 유형에 처했다가 다시 귀양을 보내으니 그 가운데에 어찌 억울한 사람이 없겠는가. 한 아낙네가 원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이다. 그런데 더구나 여러 도(道)에 모조리 쫓겨가 있는, 한쪽편의 여러 신하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등용된 사람들이 당파사람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야 공정한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겠는가.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인 것이다. 아버지에게 여러 아들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는데 저 아들을 누르고 이 아들을 취하면 그 마음이 편하겠는가, 편치 않겠는가. 높은 관리와 하급 관리들은 은혜에 보답할 방도와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 조정 안에서 서로 공격만을 일삼고 있으며 한 방안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고서야 나라가 장차 어떻게 계속 유지되겠는가. 이제 해가 바뀌고 새 기원이 다시 돌아오는 때를 당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니 낡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세워서 새해와 함께 새봄을 맞이 할 의향이 왜 없겠는가」고 했다. <영조실록>

당쟁의 아픔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만저만한 노력과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조 치세의 처음에는 소론파가 정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임인무옥」의 진상이 백일하에 들어나자, 왕은 진노하여 그 수괴들을 주살, 소론의 무리를 내쫓아 노론파의 사람을 등용했다. 그러나 왕은 당파간의 정치세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탕평책(蕩平策)에 바탕을 두어 오랫동안 일당에 정권을 맡기는 일 없이,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각 파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공평히 임용하는 한편 소론(少論) 불평의 무리들이 난리를 피우면 단호한 태도로 임하고, 「임인의 옥」에 관련된 자를 엄벌했다. 이래서 겨우 양당의 조화가 이뤄져 왕의 16년(1746)에는 당쟁의 원인(遠因)이라고도 할 전랑(銓郎)³⁵⁾의 규례(規例)도 폐지되었다.

탕평이란 「상서(尙書)」 속에

무편부당(無偏不黨) 왕도탕탕(王道蕩蕩)
무당무편(無黨無偏) 왕도평평(王道平平)

이라고 되어있다. 즉 「편(偏)하는 일없고 당(黨)하는 일 없으면 왕도 탕탕하며 당하는 일없고 편하는 일 없으면 왕도 평평이니라」고 되어있는 말에서 취한 것으로, 말하자면 「불편부당」을 의미한다. 숙종초년 남인과 서인과의 정쟁은 절정에 이르고 서인의 분열과 노론의 전제지배(專制支配)가 행해지면서부터는 다른 군소당파의 관계 진출은 봉쇄되고 왕권이 상대적인 약체화를 초래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반세력이 균형을 잡힌 때만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왕정(王政)이나 원래의 유교 관료 정치도 파탄을 제거하고 왕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탕평책인 것이다. 이에 이르러 당쟁은 크게 완화되고 지난 날과 같은 격열(激烈)함이 사라진 것은 영조와 그것을 이어받은 정조의 덕이라고 해도 좋다.

35) 관리의 임면을 관장하는 관.

「신임무옥(辛壬誣獄)」을 불러일으킨 선봉자들

윤지(尹志)·이현장(李顯章)

…김일경(金一鏡)의 패거리라고 해서…

영조는 즉위(1725)하자 곧 부패·문란한 서정(庶政)을 일신하기 위해 우선 「신임무옥」을 불러일으킨 주모자인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을 국정문란죄(國政紊亂罪)로 처형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말로였다. 또 뒷해 3월에는 「임인청대(壬寅請對)」³⁶⁾사건에 관여하고 그 위에 접옥(接獄)에 연좌(連坐)한 수찬(修撰)³⁷⁾ 이현장(李顯章)은 제주도로 유배되고 이어 6월에는 이 또한 「임인옥」에 연좌한 지평(持平)³⁸⁾ 윤지(尹志)도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

윤지는 10여년간 대정현에 적거했었는데 영조 12년(1736)에 감등(減等)되어 나주(羅州)로 옮겨왔다. 그러나 그는 20여년이라는 유적생활 때문에 국왕에게 불평불만을 품어, 집권당인 노론을 타도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아들인 광철(光哲)과 나주목사 이하징(李夏徵) 등과 모의해서 광범위에 걸쳐 동지를 모았다. 여기에는 소론파의 요인과 반정부분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윤지는 거사하기 전에 우선 민심을 혼란케 하기 위해 영조 31년(1755) 1월, 국왕을 비방하는 문서를 나주목객사(羅州牧客舍)³⁹⁾에 내

36) 급한 일로 왕에게 알현을 청한다.

37) 홍문관의 정6품관.

38) 사헌부의 정5품관.

39) 관리가 머무는 여관.

다 붙였다. 수사 결과, 그것이 윤지의 짓임이 밝혀졌다. 전라감사 조운규(趙雲逵)는 즉시 병졸을 동원해서 그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그는 반역죄로 고문 받던 중 학살되었던 것이다. <영조실록·朝野輯要>

서종하(徐宗廈)·김요경(金堯鏡)

...영조의 세제책봉(世弟冊封)을 반대했다고 해서...

서종하(徐宗廈)의 자는 비세(庇世), 대구 사람이다. 숙종 25년(1699) 문과에 등제하여 양사를 거쳐 참의(參議)가 된다.

그는 김일경⁴⁰⁾의 수하(手下)가 되어 연잉군⁴¹⁾의 세제책봉(世弟冊封)을 극력 반대하여 정적인 노론파를 타도하기 위해 일부러 「임인무옥(壬寅誣獄)」을 야기시킨 계략의 참모적 역할을 연출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는 토죄(討罪)된 다음 제주도대정현창천리(倉川里)에 정배되어 있었는데 영조 16년(1740) 재심에 부쳐진 다음 형륙(刑戮)⁴²⁾되었다. 그 때 김일경의 지지를 받아 4대신⁴³⁾을 사흉(四凶)이라고 탄핵한 이진유(李眞儒)·윤성시(尹聖時) 등도 장살(杖殺)되고 뒤에 다시 역률(逆律)⁴⁴⁾도 추시(追施)되었다. 김요경(金堯鏡)은 영조 3년(1727) 7월 제주도의 배소에서 방면되어 있다. <人物考·黨議通略>

40) 소론의 거두.

41) 후의 영조.

42) 사형.

43)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44)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

이거원(李巨源)

...목호룡의 책훈문(策勳文)을 제진(製進)한 때문에...

이거원(李巨源)의 자는 이준(彝準), 한산(韓山) 사람이며 대사간 이봉년(李鳳年)의 아들이다. 숙종 44년(1717) 문과에 우등으로 급제하여 옥당(玉堂)⁴⁵⁾을 거쳐 부사(府使)로 영전하고 있다.

경종 2년(1722) 목호룡이 김일경의 지시를 받아 노론파의 역모를 무고한 공으로 그는 부사공신(扶社功臣)에 올라, 동중추부사의 벼슬을 받고 동성군(東城君)에 봉해졌다. 이거원은 김일경 등의 충실한 부하로 지제교(知製敎)⁴⁶⁾로서 명을 받아 목호룡의 책훈문(策勳文)을 제진(製進)해서 왕에게 올렸다.

김일경과 목호룡을 친국한 결과, 노론파의 요인이 희생된 「신임무옥」이 소론파의 김일경·목호룡 등의 악당이 대규모로 조작한 「음모」란 것이 확실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당 이거원·승지 이명익(李明諠) 등 부하들은 그들의 친구(伸救)에 노력, 「이것은 하나의 망발(妄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대역죄가 될 리가 없다」고 그들이 저지른 중죄를 극력 변호했다.

아무튼 그는 목호룡의 책훈문이 화근이 되어 관을 퇴출당하고 금고(禁錮)에 처해졌다. 영조 31년(1756) 제주대정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후에 군문처참(軍門處斬)의 형에 부쳐졌다. <영조실록·인물고>

45) 홍문관.

46) 왕의 교서 작성을 관장하는 관으로 홍문관의 중급관 등이 겸했다.

임징하(任徵夏)

...탕평책을 반대했다고 해서...

임징하(任徵夏)는 자를 성능(聖能), 호를 서재(西齋)라고 했다. 충청도 아산(牙山) 사람. 숙종 초에 제주목사를 지낸 임홍성(任弘聖)의 손자이다. 징하는 숙종 4년(1678)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의 지평(持平)·장령(掌令)을 지냈으며 더구나 시문을 잘 했다. 풍채가 청수(淸秀)하고 자식(資識)이 혜오(慧悟)한 사람이었다. 10여년간 춘관(春官)⁴⁷⁾의 동몽강(童蒙講)에 대응하여 문의랑철(文義朗澈)함으로 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했다.

영조 2년(1726) 2월, 그는 장령에 임명된 다음 병조정랑(兵曹正郎)·시강원(侍講院)의 사서(司書)⁴⁸⁾로 전임되었을 때, 영조가 의능(懿陵)과 명능(明陵)을 전알(展謁)⁴⁹⁾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자(識者)들은 「3년의 상중(喪中)의 예(禮)는 묘(廟)에 들어가지 않고, 성묘도 전례가 없다」고 했다.

징하는 그들의 의견에 크게 반발, 과격한 문장으로 상서하여 명능에 성묘할 것을 청했지만 대신에게 그 비(非)를 지적 받게 된다. 또 그가 장령으로 있을 때, 영조는 사류(士類)의 지론이 매우 날카로운 것을 우려하여 탕평책을 썼으나 그것을 비판하는 자가 없었다. 징하는 그것을 한탄해서 탕평책의 불가(不可)를 논하고 소론과의 토벌(討伐)을 강조했다. 또 경종(景宗)의 부덕을 극언(極言)하고 갖가지 폐정(弊政)을 소리

47) 예조의 옛이름.

48) 정6품관.

49) 省墓.

높이 외치면서 특히 왕의 시무(時務: 국가 및 사회의 현실문제)에 대한 병폐를 솔직히 지적했다.

그러면 그의 육조(六條)의 소(疏)는 어떤 것이었는가.

1. 성지(聖志)를 크고 넓게해서 더욱 대본(大本)을 세운다.
2. 궁금(宮禁⁵⁰)을 엄격히 하여 간도(奸徒)를 없앤다.
3. 천토(天討)를 시행하여 국시(國是)를 정한다.
4. 속론(俗論)을 파(破)하고 실정(實政)을 행한다.
5. 치용(侈冗⁵¹)을 억제해서 국용(國用)을 편다.
6. 수령을 골라서 이로써 궁민(窮民)을 보호한다.

이런 소문(疏文)이 수천 마디에 이르고 사어(辭語)가 격렬했으므로 보는 이가 혀를 내둘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는 왕의 서정방침에 대한 진언(進言)이 결국 왕의 격노를 사서 해직되어 순안(順安)에 원류(遠流)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반대파가 기회를 얻게되어 그를 논척(論斥)하는 상소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왕이 말하기를 「징하의 본의(本意)는 오직 숨기지 않는데 있다. 징하가 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너희들이 무고를 하고 있다」면서 역으로 소자(疏者)들을 엄척(嚴斥)해서 멀리 국경 가까운 곳에 잔적(竄謫)한 것이다. 그 때 징하도 순안에 유배되었다.

영의정 정호(鄭湖⁵²)·이관명(李觀命⁵³) 및 승정원·삼사가 잇따라 논구(論救)하여 그를 덮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헌부의 계청(啓請)에 의해 제주도 대정읍으로 옮겨져 위리안치되

50) 궁궐.

51) 사치스러운 것.

52) 1648~1736, 호는 丈巖.

53) 1661~1723, 호는 子賓.

었다. 그는 영조 3년(1727) 7월 초에 제주 이배(移配)의 명을 받자 곧 순안을 출발, 8월 17일 밤에 별도포(別刀浦)⁵⁴⁾에 도착하고 있다. 제주까지 3천리라고는 하나, 대폭풍을 만나 해상에 난파하는 등 혼났다는 것이 항해 소요일수로부터 상상할 수 있다.

그의 적소는 안덕면 감산리(柑山里), 적사(謫舍)의 주인은 고제영(高濟英)이었다. 드디어 유배인 생활이 시작되자, 그는 재빨리 지방의 자체와 유생을 적사에 모아 가르치며 그 나날을 많은 생각을 다하며 후진들을 위해 정열을 기울였다. 그게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스스로 문인됨을 수치스럽게 여겨 쓸모없는 작문을 즐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유배중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 때 노론의 민진원(閔鎭遠)⁵⁵⁾·정호 등은 노론의 죄악을 철저히 밝혀내려고 했다. 이에 대해 왕은 「짐도 너무 속았으므로 유감스럽고 증오의 염(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모함당한 것을 바로잡고 섭섭함을 씻어주면 되는 것이지 보복까지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정치보복을 비난했다.

그래서도 노론파 거두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으므로 영조는 노·소양파간의 항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계에서 추방하고 소론의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 등을 기용했다. 이것을 「정미환국(丁未換局)」이라고 한다. 영조 4년(1728), 이광좌⁵⁶⁾ 등의 청에 의해 3월 25일 돌연 의금부도사 김류(義禁府都事 金鑾)가 제주도로 건너가 임징하를 연행해 와서 수개월에 걸쳐 국문했다. 그해 7월에 그는 끝내 장살(杖

54) 지금의 禾北浦.

55) 1664~1736, 호는 丹巖.

56) 1674~1740, 영조조의 대신.

殺)되었다. 보기에도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는 도사가 배소에 와서 의금부로 압송되어갈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전하고 헤어져갔다고 한다.

讀聖賢書所學何事 要使此心俯仰無愧
往古以來人誰不死 橘林在傍百世可俟
嗟小子毋以我戒 閉門讀書益勤無怠

성현의 책을 읽어 배운 것이 무엇인가
올려다보나 내려다보나 마음에 부끄러움 없기만 바라지.
예부터 누구라 죽지 않았으리
굴림서원 곁에서 백세를 기다릴만 하다
아, 너희들은 나로써 경계삼고
문닫고 책읽길 부지런히 하여 게을리 하지 말지어다.

징하는 일찍이 국문 받길 3년간에 전후 악형(惡刑)받길 30여회에 이르렀는데 시종 일관해서 불복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그가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한 비판정신과 강인한 의지의 사람이었나는 헤아릴 수 있다. 정종조(正宗朝)가 되어 겨우 원죄(冤罪)가 밝혀져 순조(純祖) 때 이조참판⁵⁷⁾이 추증되었다. <梅山集·黨議通略·영조실록>

57) 내무차관.

김유경(金有慶)

…구신(舊臣)을 내쫓은 시사(時事)를 논한 필화(筆禍)에 의해…

김유경(金有慶)⁵⁸⁾은 경주 사람.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춘방(春坊)⁵⁹⁾ 설서(說書)⁶⁰⁾을 시작으로 삼사(三司)에 출입하고 대사간·대사헌·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⁶¹⁾의 현직(顯職)을 거친 다음 오조참판(五曹參判)에 누진했으며 외관(外官)⁶²⁾으로서는 의주판윤(義州判尹)·황해감사를 역임했다. 성품이 강직·냉철했고 언제나 정론을 토하여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숙종 때 사간원에 들어가자, 숙종 35년(1709) 조태억(趙泰億)⁶³⁾이 통신사로서 일본에 갔을 때 국가의 명예를 떨어뜨린 죄를 혹독하게 탄핵하고 이어 숙종에게 아첨했던 정신(廷臣)들을 격렬히 탄척(彈斥)했다.

그 위에 그는 영조 때, 시골에 있으면서 구신(舊臣)의 토역(討逆)을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대량으로 교질(交迭)한 실정을 상소하여 정사(政事)의 존재양식을 통론(痛論)했다. 그것이 왕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 대정에 위리안치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뒷해에 영광(靈光)으로 양이(量移)⁶⁴⁾되어 겨울에 귀경, 영조 6년(1730) 가을, 형조참판에 서수(敍授)⁶⁵⁾되었다.

58) 1669~1748, 호는 龍州.

59) 세자 侍講院의 별칭.

60) 정7품관.

61) 경연청의 중2품관.

62) 지방관.

63) 1675~1728, 영조조의 좌상.

64) 유배인이 대사(大赦)를 얻어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는 일, 구당서(舊唐書)에 「대사 천하(大赦天下) 재강관양이근처(在降官量移近處)」라고 되어있다.

65) 왕이 직접 임명하는 일.

그 때 나라에 재화(災禍)가 발생하고 왕이 그 대책에 대해 유경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그것에 응해서 상소하여 말했다. 김일경 잔당의 근절과 왕정 안정을 위한 정치적 노력(탕평책)의 폐(弊)를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그 요점을 얼핏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탕평의 논(論)이 가장 세도(勢道)의 해(害)가 된다. 역(逆)을 거꾸로 충(忠)으로 하고 충을 거꾸로 역으로 한다. 시(是)도 전시(全是)로 하지않고 비(非)도 전비(全非)로 하지 않는다. 주의(注擬)⁶⁶와 참반(參半)⁶⁷에 노력하고 출척(黜陟)⁶⁸은 반드시 그 상태를 구한다. 이를 놓고 “구(旧)를 새로이 하고 신(新)을 꺾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군심(群心)을 압복(壓伏)하고 일세(一世)를 변화시켜, 이로써 무편무당의 정치를 하려고해야 하지 않은가……」고 논하며 왕의 불투명한 정치신조를 바르게 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왕은 이 소문(疏文)을 보고 크게 진노(震怒)하여 당장 불태워 버렸다. 그 후 부제학(副提學)⁶⁹이 되어서도 앞과 같은 상소를 되풀이하고 도승지(都承旨)⁷⁰ 때도 역시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재삼 상소해서 탕평의 해를 극언했다.

이와같이 그는 전후 논술하는 바가 가끔 위엄을 헐뜯었지만 그것이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왕이 알게되어 승록대부(崇祿大夫)⁷¹에까지 특진되었던 것이다.

<조선인명사전>

66) 관리 등용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

67) 반반씩 짜맞추는 것.

68)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뽑아 쓰는 것.

69)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급.

70) 왕의 비서장, 정3품관.

71) 문관에게 수여하는 중1품관.

이진유(李眞儒)

…신임무옥(辛壬誣獄) 때, 중핵적(中核的)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진유(李眞儒)⁷²⁾는 전주 사람. 숙종 33년(1707) 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을 거쳐 이조참판이 됐다. 그는 명의상 논의가 매우 날카롭고 일찍이 남구만(南九萬)⁷³⁾을 가리켜 결코 「남상(南相)」이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만한 사람인 것 같았다.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무사다병(無嗣多病)함으로 속히 왕세자(왕자 즉의 왕위계승자)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집권당인 노론의 4대신(大臣)이 그것을 제안한 바가 그래로 받아들여 드디어 연잉군(延祔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할 단계에 이르자, 소론파의 조태구(趙泰壽)·유봉휘(柳鳳輝)·이진유 등이 격렬히 반대하여 김일경을 소수(疏首)로 하는 이진유 등의 6명이 상소해서 4대신을 공격하는 한편 목호룡으로 하여금 노론파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무고토록 했다. 이어 김일경의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이 나왔다. 그 글월 가운데 「회도종무(懷刀鐘巫)」⁷⁴⁾·「금도접혈(禁塗蝶血)」⁷⁵⁾이란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간(大諫)인 김동필(金東弼)이 상소하여 「일경이 전하의 글월을 제진(製進)해왔지만 보아하니 잡소리가 많고 문장이 잡연(雜然)

72) 1669~1730, 호는 北谷.

73) 소론의 우두머리로 영의정.

74) 「종무(鐘巫)」란 조선이 단골(丹骨) 즉 무격(巫覡) 같은 것. 우부(羽父)가 종무와 내통하여 노(魯)의 은공(隱公)을 죽이고 그 동생 장공(壯公)을 세운 것을 말하며 「회도(懷刀)」란 종무가 칼을 품안에 넣어 들어왔던 고사(故事)를 말한다.

75) 「금도(禁塗)」는 금중(禁中)의 길, 「접혈(蝶血)」은 피를 밝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唐)의 태종이 형인 건(建)과 동생인 원길(元吉)을 살해했을 때, 금중의 길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해서 오류투성이, 더구나 인용문이 난해(難解)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상하다고 한다. 또 거의 모든 관리들이 탐욕·횡포해서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 방해가 되는 자를 머리부터 배척·비방한다」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그것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켜 조정 공론이 크게 분규했다. 그 때문에 이조참의⁷⁶⁾인 이명언(李明彦)이 김동필을 지방관으로 좌천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이진유가 이명언으로부터 이조참의의 직을 빼앗아 직권을 마음대로 휘흔들게 되자, 유수항(柳壽恒)은 예안현감(禮安縣監)에, 김동필은 광주(光州)목사로 좌천되어 지방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최석항(崔錫恒)⁷⁷⁾이 상소하여 이진유가 제멋대로이고 노회(老獪)함을 보이는 것은 지난날의 악도(惡徒)·김석주(金錫胄)와 하등 다르게 없잖느냐고 쏘아부쳤다.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정권을 잡자 정국은 일변하여 「신축소(辛丑疏)」에 참여한 이진유 등 6명은 거의 유배가 결정되어 있었다. 그 때 백관이 손발을 맞춰 유봉휘·이진유 등의 사형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계(庭啓)⁷⁸⁾가 3년간에 38회나 열렸다. 그 때 이광좌가 상소하여 그를 옹호하여 말했다. 「박상검(朴尙儉)의 변(變)에 진유가 울면서 경조(景朝)에 고하길, 전하가 이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무슨 낮으로 선왕(先王·경조)의 빈전(殯殿)⁷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고 했고 또 임인(壬寅·1722)에 북사(北使)⁸⁰⁾가 세자책봉 때 만일 왕에게 계사(繼嗣)가 생기면 곧 알려달라고 진유가 먼저 입을 열어 한번 명호(名號)가 정해지면 후

76) 내무차관보.

77) 당시 소론의 대신.

78) 「정계(庭啓)」란 세자나 대신이 백관을 이끌고 궁으로 가 큰 일을 왕에게 알려서 하교(下敎)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정청(延請)이라고도 한다.

79) 「빈전(殯殿)」이란 발인할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을 두는 곳.

80) 명(明)의 사신. 북쪽에서 온 사신이란 뜻.

일에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다시 알려졌습니까고 대답한 것은 바로 적심(赤心)의 나타남입니다」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를 변호했다. 그러나 양사(兩司)로부터의 계장(啓狀)⁸¹⁾이 있고 거기에다 거듭되는 유형(流刑)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진유는 왕명에 의해 추자도(楸子島)로 유배된 것이다.

그는 그 전에 사신으로서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귀국 도중, 그 명을 받고 배소로 직행했다.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은 그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서 화(禍)를 만나 추자도에 유배되어가는 경위와 적소 생활의 상황이나 심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가사(歌詞)의 이름을 「속사미인곡」이라고 붙인 것은 정철(鄭澈·松江)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 영향 받았다는 의지겠지만 그 주도적인 사상적 지향은 군주에의 충절과 신의의 영원불변(永遠不變)이다. 예술적 성과는 도저히 「사미인곡」에 미칠 수 없다.

그 후에도 노론파가 추궁의 손을 늦추지 않았던 때문인지, 그는 영조 16년(1740) 재심에 부쳐져 우의정 이집(李璡·醉村)에게 취조를 받았을 때 급소를 맞아 민절(悶絶)하고 말았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취조 중에 죄인이 한 두사람이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다.

<人物考·黨議通略·歌詞選集>

이의철(李宜哲)

...이광좌(李光佐)의 제자, 이종성(李宗城)의 재상(宰相)됨을 반대해서...

이의철(李宜哲·1703~78)의 자는 원명(原明), 호는 문암(文菴), 용인(龍

81) 관리가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

仁) 사람. 어려서 심중(深重), 독서를 즐겼고 성동(成童: 15세 소년)일 때 이미 육경(六經)⁸²⁾·자사(子史)에 통하고 이재(李穡·陶菴)에게서 배웠다. 영조 3년(1727) 진사에 올라 장능참봉(長陵參奉)⁸³⁾에 보임되고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⁸⁴⁾을 역임, 영조 24년(1748) 정시(庭試)에 뽑혀 검열(檢閱)을 거쳐 사간(司諫)의 정언이 된다.

어떤 때문인지 그는 생각지도 못하는 해프닝으로 왕에게 상소해서 이종성(李宗城)⁸⁵⁾이 「일찍이 흉괴(凶魁)인 이광좌(李光佐)에게 배웠기 때문에 대신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유배되어 세상의 차가운 눈길을 받아야 했다. 영조가 「이종성은 충성심이 두텁고 서연(書筵)⁸⁶⁾에 출입하여 세자도 또 이를 경원(敬遠)한다. 그 대용(大用)은 짐이 뜻하는 바이다」고 칭찬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덜되게 용훼(容喙)한 때문에 왕의 머리에 온 것이겠지.

그러나 그는 뒷해에 방면되어 귀경, 정언으로 복관(復官)되었다. 그 후 착착 승진하여 예조참판·홍문관해학(中2품)에까지 이르러 나이 76세에 사망했다. 그는 「문암집(文菴集) 20권」 외에 많은 저작을 남기고 있다.

<歸恩堂集·조선인명사전>

82)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춘추(春秋)·예기(禮記)와 악경(樂經)을 육경이라 하고 자류(子類: 老子·荀子·莊子)와 사류(史類: 史記·漢書) 등을 말한다.

83) 종9품.

84) 종9품.

85) 1692~1759, 영조 중기의 영의정.

86) 왕세자가 책을 講讀하는 곳.

김성탁(金聖鐸)

...은사의 원죄(冤罪)를 호소했다고 해서...

김성탁(金聖鐸·霽山)은 의주(義州) 사람이다. 경종의 뒤를 이어 영조가 즉위하여 왕세제(王世弟) 책봉을 주장한 노론파가 정권을 잡자 배척당한 소론의 잔당은 호시탐탐 정권 탈취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영조 3년(1727) 7월 1일 노론의 일부가 실각하자 뒷해 3월 이인좌(李麟佐)·김영해(金寧海)⁸⁷⁾·정희량(鄭希良) 등의 역도(逆徒)가 주동이 되어 밀풍군(密豐君·坦)을 옹립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인좌는 우선 청주성(淸州城)을 습격해서 병사(兵使) 이봉상(李鳳祥)⁸⁸⁾을 죽여 스스로 대원수(大元帥)가 되어 왕대비의 밀지를 받아 경종의 원수를 갚고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적파손(嫡派孫)인 밀풍군을 왕으로 세워 왕통(王統)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격문을 각지로 보내는 한편 모든 병사에게 백의를 입혀 마치 경종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것 같이 행세하면서 평안병사 이사성(李思晟)·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금군별장(禁軍別將) 남태징(南泰徵) 등과 비밀리에 내통하여 내외 호응해서 정부의 전복을 기도했다.

마침 그 때, 용인(龍仁)에 은퇴해있던 최규단(崔圭端)⁸⁹⁾이 즉시 그것을 조정에 고변(告變)했다. 그 때문에 반란계획은 허망하게 붕괴하고 새로이 임명된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明恒)의 관군에 진압당했다.

그 때 김성탁은 창의소(倡義所)에 달려들어 글을 만들고 사방을 납득

87) 김일경의 아들.

88) 李舜臣의 손자.

89) 1655~1735, 소론의 원로.

시켰다. 글뜻이 실로 엄정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했다. 그래서 영남 안핵사(按察使)⁹⁰⁾ 오광운(吳光運)은 조정에 돌아가 그를 천거해서 참봉에 서(叙)했다. 또 영남감사(嶺南監使) 조현명(趙顯命)은 그 문학식해(文學識解)를 높이 평가하여 영사(嶺士)의 교초(翹楚)⁹¹⁾로 천거, 다시 참봉으로 서했지만 모두 고사(固辭)해서 시골로 돌아갔다. 그러자 감진어사(監賑御史) 이종백(李宗白)이 또 별천(別薦)하여 사과별제(司果別提)⁹²⁾로 그를 기용했다.

영조는 그를 만나 치평(治平)의 요점을 물었다. 성탁은 고금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치세(治世)의 일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말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만면에 희색을 띄우며 “과연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로써 그의 성망(聲望)은 날로 높아져갔다. 영조 11년(1735)에 그가 문과에 등제하자 되돌아보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그 다음 다음 해, 그가 홍문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 당국에 아첨하는 영·호(嶺·湖)⁹³⁾의 유생 이해자(李海者)와 신광(申鑾) 등이 이전부터의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 남몰래 소(疏)를 던져 중상(中傷)했다. 그 화는 사문(師門)에 미쳤다.

남인인 김성탁은 그 간계에 분개하여 즉시 상소, 은사인 이현일(李玄逸)⁹⁴⁾의 원상(冤狀)을 강력히 호소했다. 그게 어떻게 된 셈인지 성탁은 「역상(逆狀)을 옹호했다」는 죄명으로 옥에 갇혀 연일 인정 사정없는 고문에 시달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낙행(樂行)은 금오(金吾)⁹⁵⁾의 문

90) 지방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되는 관직(官職)을 말한다.

91) 拔群의 사람.

92) 정6품.

93) 경상도와 전라도.

94) 1627~1704, 호는 葛菴.

밖에 엮드려 아버지의 무실(無實)을 호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길 5개월, 때로는 혼절하기도 했다. 시정(市井)사람들이 그에 감동, 달려들어 간호하는가 하면 술을 갖고 와 입을 행귀주고, 원수로 여기는 당로자(當路者)들조차 측은히 여겨 “효자의 거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때 조현명(趙顯命)⁹⁶⁾이 항소(抗疏)함으로써 비죄(非罪)로 되어 옥에서 내놓아 제주도정의현에 안치(安置)⁹⁷⁾되었다. 낙행이 아버지를 도와 배소에 이르고서는 물길기·장작패기·부역일 등을 하인처럼 맡아 했고 틈만 나면 독서강질(讀書講質)해서 아버지 마음을 푸는 것이었다. 이를 견문한 도민들은 그 효심에 감동 않는 자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그 이듬해 광양(光陽)으로 양이(量移)되었지만 끝내 그곳에서 원죄의 한을 품고 죽었다. <영조실록·嶺南人物考·東國朋黨源流>

심내복(沈來復)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참가한 죄로…

심내복(沈來復)은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에 참가한 죄로 제주도에 유배됐던 것이다. 그는 유배인의 신세이면서 제주도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사전에 관에 발각되어 결국 실패로 끝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반란은 비교적 유배자나 도망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 적잖다.

95) 의금부.

96) 1690~1752, 당시의 영의정.

97)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조관빈(趙觀彬)

...탕평책을 비판한 때문에...

조관빈(趙觀彬·1691~1757)는 자를 국보(國甫), 호를 회현(晦軒)이라고 했다. 양주(楊州)사람. 숙종 40년(1714) 문과에 급제하고 있다. 그는 김일경 등의 소론이 조직적 정치살인을 한 「신임무옥(辛壬誣獄)」 때, 소론으로부터 지탄받아 진도에 유배된 다음 사사된 노론의 우의정 조태채(趙泰采)의 차남이다.

그도 경종 2년의 「임인무옥」에 연좌, 일족이 화를 입어 나로도(羅老島)⁹⁸⁾에 유배되어 있다가 영조 원년(1725)에 방면되어 다시 조정에 서용(敍用)⁹⁹⁾되었다. 영조 7년(1731) 10월, 대사간으로서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 우선 이광좌(李光佐)¹⁰⁰⁾에 대한 준열한 상소문을 올렸다. 주된 내용은, 우선 신인(辛寅)무옥 이래의 의리를 개진(開陳)하여 시정(時政)을 극론(極論)한 다음 이인좌 등의 반란사건의 감난록(戡亂錄)을 얻어서 보면, 이인좌와 정희량(鄭希良)¹⁰¹⁾ 등의 십적(十賊)만을 수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반을 꾸밀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검은 일당의 흑막(黑幕)으로서 움직였던 이광좌 등이 실질적인 역괴(逆魁)란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영의정인 이광좌를 날카롭게 탄핵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였다.

그러나 현명한 영조는 피로써 피를 씻는 당쟁의 폐를 없애고 정치의 안

98) 전라남도.

99) 죄가 있어 면직당했던 사람을 다시 쓰는 일.

100) 소론의 거두로, 영의정.

101) 대정현에 유배되어 있던 鄭蒞의 손자.

정을 기하기 위해 정사(政事)의 시비를 논하는 상소를 정지시키고 될 수 있는대로 각 당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노론 1인에, 소론 1인, 거기에다 남인과 소북을 덧붙인다고 하는 파벌 균형인사인 탕평책을 실시해서 겨우 밝은 전망이 열린 때인 만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이번엔 탕평책의 존재 자체에 언급, 「전하가 지금 당파를 해소시키려 하고있습시다만, 그것이 오히려 2당 외에 1당을 보태어, 말하자면 음(陰)도 아니고 양(陽)도 아닌 것을 합쳐 3당을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고 대답 솔직하게 비판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왕을 다그쳤다.

승정원에서는 왕의 탕평책에 협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불온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정치문제라면서 즉시 그 상소를 왕에게 전달했다. 영조는 이것을 보고 크게 진노,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그 상소문을 각하시킴과 동시에 그를 환문(喚問)해서 탕평책의 가부를 추구(推究)했다. 그 결과 그는 파벌적 대항의식이 강하고 탕평책을 비방했다고 해서 끝내 제주도대정현에 폄류(貶流)되었다. 그것은 영조 7년(1731) 7월 11일의 일이었다.

그는 동년 11월 20일경 서울을 출발, 10일만에 강진(康津)에 도착, 12월 17일 그곳을 떠나 제주로 향했는데 향해 도중 날씨가 나빠 12월 29일이 되어 겨우 제주 별도포(禾北)에 도착한 것이다. 그의 적소는 대정현 성북(城北) 문 밖의 김호(金蒿)의 집이었다고 한다. 뒷해 6월에 죄가 완전히 풀려 관계로 되돌아 예조판서·판증추부사(종1품)로 근무했다. 그는 대정 성내에 있어서의 유적생활은 불과 6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제주도를 눈으로 본 시문(時文)의 작품은 상당수에 이른다. 그것은 「회헌집(晦軒集)」에 모두 수록되어있다.

그는 그 해의 4월에 한라산에 오르고 있다. 「산정(山頂)에 올라가 보니 향나무가 울창하게 번무하고 있어 그 아름다움은 마치 그림과 같았다」면서 뜻 밖에도 백록(白鹿)이 뚝 주변을 지나가는 기이(奇異)한 현상도 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잠녀(潛女)¹⁰²⁾를 탄(嘆)한다」라는 고시(古詩)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해녀들은 추위도 무릎쓰고 이 바닷가 저 바닷가에서 잠수하여 전복을 따는데 자주 잡다보니 전복도 적어져 진공(進貢)의 양에 차지 않는다. 그런 때에는 관부(官府)에 불러들여져 매를 맞고 심한 경우는 부모도 붙잡혀서 질곡(桎梏)에 신음하고 남편도 매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과된 수량을 모두 납부하기까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녀는 드디어 무리를 해서 바다에 들어간다. 때문에 낙태를 하는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고생이 단지 국가에의 진공을 위한 것일뿐 아니라 관장(官長)들의 상사에 대한 뇌물로 쓰기 위해서다. 이것을 왕에게 호소하려 해도 왕문(王門)이 겹겹이 단혀 도달할 방법이 없다. 나도 지금 축신(逐臣)이 되어 이 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해녀들의 신세를 생각하면 전복을 먹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나의 밥상에 전복을 올려놓지 말라!」고, 당시의 제주해녀의 생활을 적절히 그렸으며 해녀들의 진상(進上)의 괴로움이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탐라잡영(耽羅雜詠)」 중에서 한 수를 소개해 보자.

村女露身裾不成	遠泉汲處負瓶行
兩妻一室生涯苦	日暮杵歌多怨聲

102) 해녀.

시골 아낙 옷깃없이 알몸을 드러내고
병(허벅)을 지고 먼곳의 물을 길어오다
두 아내가 한 집에 있으니 생활이 곤란한데
저물녘 방아소리에 원성도 많구나

이것은 도민의 풍속을 읊은 것이지만 방앗소리도 괴롭고 원망스러운 것은 섬의 부녀들의 생활이 본디 고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조실록·晦軒集>

김원재(金遠材)

…숙종의 위시(僞詩)를 비장(秘藏)했다고 해서…

김원재(金遠材)는 용택(龍澤·孤松軒)의 아들, 대제학(大提學)¹⁰³ 김만중(金萬重)의 증손이다. 영조 16년(1731) 10월, 우의정 조현명(趙顯命)¹⁰⁴이 우연히 민형수(閔亨秀·士長)에게 「이천기(李天起)와 김용택 등이 신축년(1721)에 동궁(왕세자)를 보호했다는 것은 잘 알고있지만 그 전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고 말을 걸자, 형수는 「그건 그렇잖아요. 숙종이 이이명(李頤命)으로 하여금 김용택 등에게 뜻을 전하여 칠신(七臣)에 유언을 해 왕자의 일을 부탁했다. 비록 이원기(李元紀)·김용택 등이 포의(布衣: 관직이 없는 사람)라고는 하나 이미 밀의(密意)를 받은 이상, 그렇게 생각않을 수가 없겠죠」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현명이 이어 「그렇다면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라고 넘겨짚었다. 그런줄을 모르고 형수는 태연스럽게 「숙종의 어사시(御賜詩)가 용택의

103) 홍문관의 상위직.

104) 1690~1752, 호는 歸鹿.

집에 소장되어 있다고 종형인 익수(翼洙)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이현명은 이 일을 왕에게 고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고 물었다. 그러자 영조는 「김용택의 집에 숙종 어사(御賜)의 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조(先朝)¹⁰⁵⁾의 명에 의해 성공(聖躬)¹⁰⁶⁾을 보호한 사람을 어째서 역안(逆案)에 넣은 것일까」고 의심하여 우선 참판인 민형수를 불러 그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형수는 「신이 그 시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종형인 익수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한 다음, 다음의 시를 읊었다.

東國大賢沙溪¹⁰⁷⁾翁 至行又有河西¹⁰⁸⁾公
河西之後有金公 忠孝節義乃祖同

우리나라 대현은 사계옹이며
더 없는 선행을 한 사람으로 하서공이 있다.
하서공 이후엔 김공이 있어
충효와 절의는 선조(先祖)들과 같구나

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음미해보니 숙조의 어제(御製)가 아닌란 것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김용택의 집으로부터 그 시를 압수해와서 빈청(賓廳)¹⁰⁹⁾에서 불태워 없앤 다음 용택의 아들 김원재의 신병을 구속

105) 숙종조.

106) 경종을 말함.

107) 사계(沙溪)는 조선의 학자 김장생(金長生)의 호. 그는 형조판서까지 역임했으나 관직을 떠나 후는 향리에서 후세교육에 힘 썼다. 경서판의(經書辦擬)등 저서를 남겼다.

108) 하서(河西)는 조선의 문신이며 성리학자인 김인후(金麟厚·1510~1560)의 호. 그는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歷) 등에도精通했다. 「하서집(河西集)」,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의 저서를 남겼다.

109) 궁중의 고관들의 집회 겸 회의장소.

해서 국문을 시작했다, 그 때 민형수는 송인명(宋寅明)¹¹⁰⁾의 도움으로 혐의가 충분치 않다고 추궁을 면했다.

김원재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이 어찌 위시(僞詩)란 것을 알겠습니까. 전하가 위시라고 하신다면 전하 자신이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고 되받아 쳤다. 그러자 왕은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위작한 것이 아니라 목호룡(睦虎龍)이나 이희지(李喜之)가 만든 것」이라고 다그쳤다. 김원재는 근거도 없는 위시를 감추고 있었다는 죄명으로 제주도 유배가 하명되었다. 그 때 그는 32세였다고 한다. 왕은 또 돌연히 김복택(金福澤)을 붙잡아 국문했다. 이유는 피비린내 나는 「임인 무옥」 때 대신들 거위가 죽었을텐데 어째서 너만이 살아남았느냐, 더구나 김용택과는 사촌간 친척으로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위시에 대한 용택의 저의(底意)를 모를 리 없다면서 「역적은 장살(杖殺)됨이 당연한 귀결이다」고 옥을 퍼부우면서 심하게 친국(親鞫)했다. 복택은 고문을 견딜 수 없어 「신은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죄명은 무엇입니까」고 물고 늘어지자, 왕은 「네가 일찍이 짐을 남몰래 찾아와 두 개의 「불자(不字)」를 말하지 않았는가, 또 「복침(復寢)」이란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고답적으로 퍼붓는 매도(罵倒)에 복택은 눈살을 찌푸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쌍하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장살 당했다. 군주는 곧 법이니 신하는 마음 한 구석에 무도(無道)를 느끼면서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김원재는 아버지의 위시사건에 관련되어 동년 11월에 제주도로 보내져 유배되었지만 그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영조실록·黨議通略>

110) 1689~1746, 호는 藏密軒.

이규채(李奎采)

...당파의 색채(色彩)가 너무 짙다고 해서...

영조 16년(1740)의 10월말께, 김용택의 위시(僞詩)사건이 발생하자 유봉휘(柳鳳輝)와 이광좌(李光佐)¹¹¹⁾가 연명하여 상계(上啓)하려 했다. 그러자 사간원의 이윤신(李潤身)은 지금와서 일을 착잡하게 할 게 있느냐고 상소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집의(執義)¹¹²⁾ 이규채(李奎采)는 그것은 월권행위라고 이윤신을 나무랐다. 그 책임을 통감한 이윤신은 할 수 없이 왕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그러자 영조는 그 이의(異議)는 규채의 오해로, 그 책임은 짐에게 있으므로 사직할 필요는 없다고 윤신을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거꾸로 이규채가 책임을 지고 사직토록 해달라고 탄원했다.

영조는 이러한 추악한 대립과 충돌을 보고 개연(慨然)히 말했다. 「오늘날 신하된 자가 당리당락으로 해서 의지(意地)의 충돌이 심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강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이규채를 파면한 뒤 전교(傳敎)해서 말했다. 「이 일로 봐서도 이규채는 김용택의 위시사건과 김복택 등의 당파적 행동을 그들에서 성원(聲援)하고 있으니 그를 단단히 문책한 후 극변지(極邊地)로 유배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하명(下命) 뒤에는 사사(賜死)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사라는 최악의 사태라고 판단한 대신(大臣) 제공(諸公)은 조명(助命) 탄원의 긴급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 덕으로 그는 어찌 어찌 사사만은 면했지만 그 대신 유배는 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동년 11

111) 모두 소론파의 거두.

112) 종3품직.

월2일. 제주도대정현에 위리안치되는 비운을 맞게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 대신 등의 계속적인 감형운동으로, 그는 이듬해 12월 감형되어 본토로 양이(量移)된 것이다. <영조실록>

이존중(李存中)

…대훈(大訓·탕평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이존중(李存中·1703~61)은 자를 민이(敏以), 호를 척암(楊菴)·하당(荷堂)이라고 했다. 종실(宗室)의 광평대군(廣平大君·璵)의 후예, 혜정공(惠定公·濡)의 손자이다. 사마양장(司馬兩場)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정릉참봉(貞陵參奉)·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¹¹³)을 역임했으며 또 서연(書筵¹¹⁴)에 출입하여 수 많은 의견을 대담 솔직하게 개진하고 있다. 영조 26년(1750) 전시(殿試)에 장원 급제, 통정대부(通政大夫¹¹⁵)에 올라 여주(驪州) 목사 병조참지(兵曹參知)를 거쳐 부승지가 된다.

원(院) 안에서 여러 대신과 말하다가 윤심형(尹心衡¹¹⁶)의 거취(去就)의 당부(當否)를 논함에 있어 이조판서 김상로(金尙魯¹¹⁷)와 의견이 대립됐다.

이존중이 영조 27년(1751) 3월 대사간(大司諫)이 되자 김상로 형제를 논핵(論劾·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영조가 그 상소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대훈(大訓·탕평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 왕은 이

113)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최고관직.

114) 세자 교육을 위한 講書.

115) 정3품, 당상관의 문관.

116) 1698~1754, 부제학.

117) ?~1702, 호는 霞溪.

에 불끈하여 그를 불러내어 소리 높이 말했다. 「네가 대훈을 비난하니 당치도 않다」고 욕한 후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듯, 너는 대훈을 멀리했을뿐 아니라 아직도 당파적 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소론과 남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는 다시 그들을 추방하려고 있지 않은가」고 날카롭게 따져들었다.

그에 대한 힐문(詰問)이 끝나자 영조는 곧 전교해서 말했다. 「이존중은 당파적 색채가 매우 강하여 지도적 대신들을 모욕했다. 그 죄에 의해 즉시 거제도에 정배(定配)·압송하라」고. 이는 끝없는 당쟁과 욕심에 눈이 어두운 권력맹자(權力盲者)들의 항쟁극(抗爭劇)을 중지시키기 위해 인사의 배분(配分)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조로서는 불가피한 처벌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거제도로 유배되었는데 그 뒤 얼마없어 동년 10월 「제주도정의현으로 이배(移配)하라」는 왕명이 새로이 내려졌다. 자기에게 덤비는 자는 이런 변을 당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형(刑)이었다. 압제자의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가는 양(洋)의 동서를 가릴 것이 없다.

그는 이배의 명을 받아 즉시 강진(康津)에서 배를 타, 제주의 유배지로 향했다. 그것은 슬픔과 분개가 치솟는 출범(出帆)이었다. 노도 속에 나무 잎사귀처럼 흔들리는 배가 난바다로 나간 순간, 뱃머리에 홀연히 한 마리의 교룡(蛟龍)이 흰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다. 무서운 형상에 뿌리가 돌아있었다고 한다. 그 때 갑자기 폭풍이 불고 번개가 쳐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는데 그만은 태연자약했었다고 전해지듯 그는 뱃장 있는 사람이었다.

적소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가 주역(周易·易經)을 읽는 소리가 높고 혹은 낮게 흘러 주위에서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그 뒷해 3월 아버지

가 돌아가자 그는 특지(特旨)에 의해 귀장(歸葬)이 허락되었다. 그 때 의금부가 「재적조상(在謫遭喪) 허령귀장(許令歸葬)」이라는 법전(法典)에 비추어 그에게 귀장을 허락하자는 요청을 왕에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 장사를 마치자 바로 정의의 적지에 돌아와 있었는데 이듬해인 29년(1753)에 특사로 귀향했다. 그 후 그는 예조참의에 서임되어 조정으로부터 몇 번이나 관에 나오도록 권유됐지만 그는 끝내 취임을 사양하고 만년에는 강교(江郊)에 살며 풍류인의 모습으로 산수간(山水間)에, 혹은 편주(扁舟)로 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등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는 생전에 사색당과의 폐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김상로의 전횡을 날카롭게 탄핵한 공로로 죽은 다음 이조판서·대제학이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이 있다.

<영조실록·梅山集·人物志>

이증(李增)

...한 통의 투서가 끝내 정치문제화해서...

이증(李增)은 영조의 근친이다. 영조 24년(1748) 11월의 어느 날 밤, 이증의 저택에 있는 사당의 감실(龕室)¹¹⁸에 생각지도 않는 한 통의 투서가 날라들었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즉각 청대(淸對)¹¹⁹를 요청하며 자세한 내용을 왕에게 고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나자, 맑지 못한 표정으로 짐의 근친은 혼자 경(卿) 밖에 없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인심은 좀처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우

118) 신주를 모시는 작은 방.

119) 급한 용무로 왕에게 면회를 요청하는 일.

선 삼군문(三軍門)¹²⁰의 대장과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¹²¹에게 의뢰하여 집을 엄중히 경계토록 하라고 타일러서 그를 돌려보냈다. 어찌된 셈인지 그것이 후일 이증에 대한 정치문제로까지 발전하여 이육고 삼사(三司)로부터 이증의 처벌을 강하게 주청해 왔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을 경계하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 그들에 대해 이증이 월권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고 추측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떻든 이듬해 4월에는 사간원에서 이증의 관작을 박탈하고 서울로부터 퇴거해야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또 7월에는 사헌부에서 이증의 절도안치(絶島安置)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왕은 양사(兩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불안하게 여긴 삼사(三司)는 공동전선을 펴서 동궁(東宮)¹²²을 배면(拜面)하여 이증의 죄명을 하나 하나 거론하면서 그의 숙부인 해능군(海陵君)과 더불어 국청을 개설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나 왕세자는 부왕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곧 그것에 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영조는 그 보고를 듣고 즉각 삼사를 소견(召見)해서 말했다. 「이증이 이 문제를 선처하지 못해, 만일 법에 저촉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그만 과실로써,.....의 옹립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이증의 입장을 눈물로 옹호했다. 그래도 여러 신(臣)들이 완강히 법의 원칙은 굽힐 수 없다고 주장한 때문에, 왕은 마지못해 「이증을 제주도로 안치하라」고

120) 조선의 삼군영(三軍營), 즉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을 말하며 대장(大將)이란 종2품의 무관직.

121) 포도대장은 수도(首都)의 경시총감에 해당된다. 둘이 있어 각각 좌우포도청을 지휘했다.

122) 왕세자가 정부의 일부를 대행했다.

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조는 그가 제주도로 유배되어 갈 때, 특별히 배려해서 통과하는 각읍(各邑) 수령들에게 의료품(衣料品)이나 약품의 보급을 지시했을뿐 아니라, 제주도의 수령에 대해서도 의료품(衣料品)이나 약품…… 등의 보급을 명하고 있다. 이중의 배소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영조가 그의 신상을 대단히 걱정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모든 면에 편리한 제주 성내였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그에 대한 그 후의 일은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다.

<영조실록>

조중명(趙重明)·최학령(崔鶴令)

…당파적(黨派的)이라고 해서…

전 장령(掌令)¹²³⁾ 조중명(趙重明)도 또한 당파적인 자세를 견지(堅持), 어느 쪽이나면 그의 언행은 당리당락적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영조 33년(1757) 9월 신유대훈(辛酉大訓)¹²⁴⁾에 배반한 죄가 문책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는 극형에 처해졌다. 최학령(崔鶴令)도 또한 영조 32년(1756) 정월 23일에 1차의 엄형(嚴刑) 후 정의현에 정배되고 있다.

<영조실록>

123) 사헌부의 정4품관.

124) 蕩平策.

임관주(任觀周)

...대신들의 무능을 논척(論斥)했다가...

전 승지(承旨) 임관주(任觀周)는 영조 43년(1767) 2월, 시정(時政)에 대해 격렬하게 논하고 또한 대신들의 무능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것이 마침내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게되어 그는 제주도안덕면창천리(倉川里)에 적거(謫居)된 것이다. 다행히 동년 9월 5일 유죄(流罪)가 사면되어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의 유적(遺跡)으로서는 창천리의 창고천(倉庫川)의 암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있다.

始出荊門日 先尋枕下川
蒼岩三曲立 短瀑晚楓邊 (濟州道誌)

처음 가시문을 나서던 날
먼저 가까운 시내를 찾았더니
푸른 바위가 굽이굽이 서 있고
짧은 폭포는 늦가을 단풍에 걸렸구나

권진응(權震應)

...상소문의 내용이 대훈(大訓)에 저촉되어...

권진응(權震應)의 자는 형숙(亨叔) 호는 산수헌(山水軒), 안동(安東)사람. 그는 덕성이 순박하고 조심스러우며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자의(諮議)¹²⁵에 서임되고 있었다. 우연히 시사(時事)에 대한 상소문을 올

렸던 바, 그 내용이 탕평책에 적대하는 것이라고 날카로운 말로 따진 뒤 이렇다고 시비곡직을 따지는 일도 없이 그는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배소는 안덕면창천리의 강필발(姜弼發)의 집인데, 그 곳을 「창주정사(滄洲精舍)」라고 칭하여 시골에 있는 유생들을 교화했다. 이 조치는 결국 대훈 비판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왕권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영조 48년(1772)에 배소에서 방환(放還)되어 있다. 지금도 적려유허비(謫廬遺墟碑)가 있다고 한다. <號譜>

한광조(韓光肇)

…반교반(頒敎班)에 열석(列席)하지 않았다고 문책되어…

한광조(韓光肇)는 자는 자치(子治), 호는 남정(南庭)이라고 했다. 청주(淸州)사람으로 선조 때의 우의정 한응연(韓應演)의 후손, 판서인 사득(師得)의 아들이다. 영조 때에 등제하여 현직(顯職)을 거쳐 간약(簡約)을 스스로 지켰다.

영조·정조시대인 18세기에는 노론파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정정(政情)은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할 수가 있었다. 영지(英知) 탁월한 영조의 숭문(崇文)정치와 탕평정책이 양반관료 내의 과격한 대립을 견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왕위의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실 내의 스캔들은 다시 관료 간의 대립을 초래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었다.

영조는 정성왕후서씨(貞聖王后徐氏)와, 계비(繼妃) 정순왕후김씨(貞純王后金氏)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고 영빈이씨(映嬪李氏)와의 사이에 효장(孝

125) 侍講院의 정7품관.

章)세자¹²⁶)와 장헌세자(莊獻世子)¹²⁷)가 있어 영조는 25년(1749)에 장헌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케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어 학문을 게을리 하고 궁녀와 내시를 함부로 죽이는가 하면 기녀(妓女)나 여승(女僧)과의 나쁜 짓 등 행동거지가 매우 좋지않았다. 그래서 노론과 중에서도 영의정 김상로(金尙魯)¹²⁸)와 이조판서 홍계희(洪啓禧)¹²⁹)의 둘을 인간적으로 증오하여 가끔 욕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 둘은 참언해서 양궁(兩宮)¹³⁰)과 정순왕후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었다.

그런줄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모의에 부하녀동했었을뿐 아니라 한광조의 친구까지도 또한 그에 동조함으로 광조는 그것을 보고 크게 분개, 벗들에게 곧 생각을 고치도록 엄중 경고했다.

이와같이 김상로의 무리들이 쉴 새 없는 모함으로 장헌세자는 병적인 발작과, 정순왕후와의 불화를 구실로 해서 그들로부터 날마다 격렬하게 비난 받게 되었다. 그 때문에 영조는 38년(1762) 5월 13일 드디어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해서 잔혹한 죽음을 맞게 했다.

그것은 한광조가 소조(小朝)¹³¹)의 분약방(分藥房)¹³²) 제조(提調)로써 창덕궁에 있는 때였다. 그는 그 변(變)을 듣자, 즉시 상전(上殿)하여 눈물로서 「신은 분약방 제조입니다. 전하가 어째서 부녀와 환관들의 참언(讒言)을 갖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고 호소했다. 그러나 영조는 그것

126) 일찍이 죽었다.

127) 思悼세자.

128) 1702~?, 호는 霞溪.

129) ?~1771, 호는 淡窩.

130) 영조 부자.

131) 세자.

132) 궁중의 병원 같은 것.

을 듣지 않고 일갈해서 그를 내쫓았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쉼 아래로 물러나 반교(頒敎)의 열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대관(臺官)¹³³⁾으로부터 고소 당해, 끝내 유배의 선고를 받고 제주도로 보내졌다. 그 후 사면되어 귀경했지만 조정은 그에게 관직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는 특히 그를 승지(承旨)¹³⁴⁾으로 서임했다. 그는 참판¹³⁵⁾에 이르러 장절(壯絶)한 일생을 마치고 있다. 장헌세자의 아들 정조(正祖)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의 학살에 반대했던 공으로 이조판서를 추증받았다. 시호는 충정(忠貞). <恩坡遺稿>

은언군(恩彦君)과 은신군(恩信君)

...왕의 무모한 학대에 의해...

또 영조 때, 영조의 손자 은언군(恩彦君)·은신군(恩信君)¹³⁶⁾의 가족은 한 때 강화도로 옮겨 살고 있었는데 이 강화도의 종실(宗室)을 추대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그들 둘은 제주도대정현으로 안치되었는데 불행히도 은신군은 적거중에 사망하고 있다. 어쨌든간에 조선에는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책논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당리당락에 의해 불리일으켜진 「임인무옥(壬寅誣獄)」을 비롯한 수 많은 화옥(禍獄)에 걸려들어 이 섬에 유배된 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 유형자 중에는 섬에서 적사(謫死)한 자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133) 監察司의 관원들.

134) 侍從長級. 경3품관.

135) 차관급 종2품관.

136)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실록」에 의하면 「우참찬(右參贊)¹³⁷⁾ 원경하(元景夏)¹³⁸⁾의 보고문에 호남(전라도) 연해지방을 순시했을 때의 견문(見聞)으로서, 신임무옥 때 제주도에 유배된 자 중에는 다행히 살아서 돌아온 자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섬에서 죽어서 해변가에 묻힌 사람도 적잖다. 제주인이 그들의 가묘(假墓)를 하나 하나 가리키며 불쌍하다고 한탄하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되어있다. 원경하는 그것이 너무도 가련하게 보여 돌아가자 곧 「그들을 고향땅에 돌려보내 장사 지내줘야 한다」고 왕에게 진언하고 있다.

이러한 한조각의 기록으로도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자가 노심초사했던 처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고 섬의 고혼(孤魂)이 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137) 정2품관.

138) 1698~1761, 호는 肥窩.

정조조(正祖朝 · 재위 1776~1800)

심상운(沈翔雲)

...범상부도죄(犯上不道罪)에 의해...

심상운(沈翔雲 · 1732~76)은 자를 봉여(鳳汝)라고 했다. 효종(孝宗)의 부마(駙馬 : 사위)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의 현손이다. 영조 41년(1772)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맡았었다. 상운은 그 때 정후겸(鄭厚謙)¹³⁹⁾의 집에 출입했었는데 후겸은 어머니와 더불어 영조의 대단한 총애를 받았다. 그 때문에 후겸의 권력은 하루 아침에 승천(昇天)의 기세로 펼쳐 세상을 농락하는 것과도 같았다. 대체로 대신 이하의 인물을 진퇴시킬 때엔 후겸의 의향이 크게 좌우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한마디 고정(苦情)을 토하는 자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속이 검고 간지(奸智)에 능한 심상운은 후겸의 하수인이 되어 장헌세자의 섭정(攝政) 반대 음모의 참모격으로써 중심적역할을 다했다. 영조 50년이라면 왕의 나이 80이라는 노령, 도저히 정무(政務) 같은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세손(世孫)¹⁴⁰⁾의 왕권대행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로의 무리인 홍인한(洪麟漢)¹⁴¹⁾ 등이 강하게 이에 반대하고 영의정 한익모(韓翼謨)¹⁴²⁾ 등도 그에 동조했다.

그래서 심상운 등과 짜서 정조의 즉위를 반대했지만 영조의 결단으

139) 1749~76, 영조의 여자의 의붓자식.

140) 후의 정조.

141) 1722~76, 장헌세자의 장인.

142) 호는 靜見.

로 왕세손의 섭정이 드디어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정후겸 등 악당들은 이젠 이것으로 구제 받을 길은 없다고 여겨, 이번엔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다. 홍인한 등과 공모(共謀)해서 심상운으로 하여금 동궁(왕세손)의 관리 전원을 비밀리에 암살할 방도를 꾸민 다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작성한 흉서(凶書)를 상주했다. 그것은 왕세자의 정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소동이었다. 그러나 왕세손은 그것이 악랄하기 그지없는 음모임을 제빨리 간파하여 즉시 심상운 등을 잡아들여 제주도로 보내 위리안치의 극형에 처했다.

영조가 52년(1776) 3월 5일에 승하하고 왕세손(정조)이 즉위하자, 제빨리 삼사(三司)로부터 재심(再審)의 요구가 잇따랐다. 그 때문에 그는 제주도로부터 의금부에 호송되어와 결국 「범상부도죄(犯上不道罪)」로 주살된 것이다. 그 때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정후겸·홍인한 등도 인정사정없이 주살되고 장헌세자 학살에 가담한 고급관리들도 모조리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동생인 익운(翼雲)도 절해고도에 정배되어있다.

<明義錄>

왕의 총희(寵姬)·문녀(文女)의 모친

...장헌세자를 죽게한 자녀의 죄에 연좌(緣坐)하여...

영조의 아들 장헌세자(愼)은 이복형인 효장(孝章)세자가 불과 4세에 요절한 다음 뒤를 이어 세자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영조 25년(1749)부터 대청(代聽)을 맡았었는데 가끔 병적인 발작을 일으킴으로 왕의 총희(寵姬) 문숙의(文淑儀·文女) 등이 간신인 김상로 등의 무리와 한 패가 되어 세자에 대한 조작된 상소문을 올렸다.

그 때문에 세자는 비명(非命)의 죽음을 했다. 그 때 나이 28세였다. 이것을 「임오옥(壬午獄, 영조 38년 · 1763)」이라고 한다. 영조는 뒤에 이를 후회해서 사도(思悼)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 정조가 즉위하자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고쳤다.

정조는 조부의 뜻을 이어 힘을 당파의 조정애 쏟고 인재를 기용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재능에 따라 결정, 결코 당파 여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침실에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걸어 많은 저항을 배제, 탕평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그렇게도 맹위를 떨치고 있던 당쟁도 크게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당쟁이 그친 것은 결코 아니다. 표면상은 평정(平靜)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안으로는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여전했다. 이래서 정조측에 붙어 장헌세자의 죽음을 탐탁스리 여기지 않는 일파와, 영조와 그 계비(繼妃 · 정순왕후)측에 붙어 장헌세자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파가 암암리에 대립하게 되었다. 전자는 「시파(時派)」, 후자를 「벽파(僻派)」라고 부른다.

영조가 세자를 「사도」라고 시호(諡號)한 것과 같이 장헌세자도 역시 당쟁의 희생이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부친의 비참한 죽음이 눈에 박혀있는 정조에게 있어 그 철천지통한(徹天之痛恨)을 그리 쉽게 없앨 수가 있었을까? 그는 그 당시 정계의 정화를 꾀하여 탕평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당리당락에 망집(妄執)하는 무리들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상로 · 정후겸 등의 악당들은 이미 처단되었지만, 장헌세자의 모살(謀殺)에 궁중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다한 문성국(文聖國)의 일족에게도 추상같은 단죄가 내려졌다. 문성국은 문녀(文女 · 昭儀)의 오라비이다.

영조조에 문녀가 선발되어 궁에 들어가 숙원(叔媛)¹⁴³이 된다. 그 덕분으로 성국은 궁감(宮監)¹⁴⁴이 된 것이다. 그는 본디 찌부러진 농민의 아들임으로 배움이 없고 교활하여 술을 마시면 진수성찬을 대접한다. 궁감이라는 지위를 십분 악용해서 크게 권세를 떨쳤던 것이다. 비복(婢僕)을 앞뜰에 집합시켰을 때 쯤엔 마치 홍청거리는 저자와도 같은 호사스러운 살림, 언제나 시가지로 나갈 때는 반드시 백마에 은(銀)의 안장이라는 씩씩한 모습으로 제세상인양 돌아다니는 등 포학상(暴虐相)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예부터 「자만(自慢)은 자멸(自滅)을 부른다」고 했는데 바로 그대로 되었다. 그 해의 8월 10일에 문녀(시녀)는 무턱대고 사사되었으며 문성국은 노륙(拏戮)¹⁴⁵되고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비(官婢)로 보내졌다.

<李朝黨爭史話·조선인명사전>

단혜(丹惠)·덕순(德順)

…가족의 모반죄(謀反罪)에 연좌하여…

연좌(緣坐·連坐)의 제도는 조선왕조시대의 형사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특징을 이루고 있다. 연좌(緣坐)란 「가인범법 죄급가주(家人犯法 罪及家主)」¹⁴⁶이라는 법언(法諺)이 있는 바와 같이 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구나 범죄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연좌제에 의해 처형된 것은 조선봉건사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혈연적 유대가 가장 강인했던

143) 종4품의 內命婦계급.

144)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 각 궁으로부터 보내져 온 사람.

145) 처자와 함께 죽이는 일.

146) 집안 사람이 법을 범하면 죄는 가장에게 미친다.

조선봉건사회에 있어서 그것은 특히 심각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사기(史記)」에 말하는 「삼족(三族)의 죄」는, 한 사람의 죄에 의해 부모·형제·처자의 삼족이 살육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성록(日省錄)」에서 그 일례를 들면, 정조 즉위의 해(1776) 4월 「……정법죄인(正法罪人), 재한(載翰)의 응좌제인(應坐諸人)을 찾아내어 혜진(惠鎭)·임통(任通)·계룡(繼龍)의 3인은 연령이 미만(未滿)임으로 교형(絞刑)을 면했지만, 혜진은 부령부(富寧府)의 종으로, 임통은 해남현의 종으로, 계룡은 진도군의 종으로 했다. 형인 재득(載得)은 경흥부(慶興府), 동생인 재유(載由)는 온성군(穩城郡), 동생인 재천(載天)은 종성부(鐘城府)·재측(載則)은 무산부(茂山府), 재옥(載玉)은 경원부(慶源府)에 각각 종으로 보내지고 처인 단혜(丹惠)는 제주목의 노비가 되었다.

첩인 명희(明喜)는 회령부(會寧府)에, 신섬(新暹)은 진도군에 각각 노비가 되고 딸인 순덕(順德)은 제주목의 여자종으로 보내졌다」고 되어 있다. 이것도 아마도 당시 지배권력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본때 보이기 위한 위협과 후환(後患)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전 가족을 갈라놓아 별도의 지방에 유배시킨 것이겠지. 이와 같이 모반대역죄에 있어서는, 범인은 주범·종범을 구별하지 않고 일족 중 남자는 교살(絞殺)하고 여자는 노비로 보내지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이는 호적이 어떻든 간에 3천리의 유배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日省錄>

이최중(李最中)

…정조 8년의 무옥(誣獄)에 연좌되어…

이최중(李最中·1715~84)은 자를 계량(季良) 또는 인부(仁夫), 호를 위

암(韋庵)이라고 했다. 영조 20년(1744) 사마(司馬)에 합격하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문과에 급제하고 있다. 홍문관의 제학, 이조판서 등의 현직(顯職)을 거친 다음 우참찬¹⁴⁷⁾으로 있을 때 병환 때문에 퇴관하여 삼계(三溪)의 소운암(巢雲庵)에서 은거생활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것이다. 우연히 정조 8년(1784)의 무옥(誣獄)에 연좌되어 추자도에 감금되어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망했다. 자성(資性)이 강직하고 청렴했으므로,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홍국영(洪國榮)¹⁴⁸⁾이 국권을 좌우하기에 이르러 그의 청명(淸名)을 좇아 현직(顯職)에 붙게 하고자 사람을 보내 권장했지만 그는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정(英·正) 2조(朝)에 서길 30년, 독립독행(獨立獨行)하여 홍국영이 정권의 자리에서 배제될 때에도 초연했다. 사람이 모두 일대(一代)의 청조(淸操)를 갖고 이에 돌아간다고 전해지고 있다. 저서에 「위암집(韋庵集)」 6권이 있다. <柳汀遺稿>

혜암유장(惠菴琉藏)

...전라도 관찰사에게 무고(誣告) 당해서...

혜암대강사(惠菴大講師)는 본디 대흥사(大興寺)¹⁴⁹⁾에 있었는데 후에 화엄사(華嚴寺)¹⁵⁰⁾로 옮겨 강석(講席)을 마련했다. 그 때 자그만치 1천5백

147) 三議政의 보좌관.

148) 1748~80, 세도가.

149)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三山面 九林里).

150)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의 청중이 그를 좇아 쇄도하여 연일 이상한 흥청거림을 보였다.

어느 날 전라도관찰사¹⁵¹⁾ 조모라는 자에 대해 있지도 않은 조작을 한 때문에 까닭도 없는 죄를 뒤집어 써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러자 승도(僧徒)들은 연명으로 상소하여 그의 신원(伸冤)을 계속 빌었다. 그 덕으로 그는 방환되었지만 이번엔 거꾸로 그를 구무(構誣)한 조관찰사가 「무고죄」로 제주도로 폄류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선(有船)과 적선(謫船)이 바다 위에서 격렬히 부딪쳤다. 그것이 정조 8년(1784)의 일이었다. 그 때문에 호남지방의 승도들은 이 두 선박의 충돌을 흔히 「혜암(惠菴)의 난」이라고 칭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부모의 부음(訃音)에 접해 강론(講論)을 그만두고, 일이 있을 때마다 충효의 성의를 다하고 있다. 본디 선비의 집에 태어나 일찍이 한 번은 정사(政事)로써 일생의 사업으로 삼은 일도 있었지만 상문(桑門)¹⁵²⁾에 들어간 다음에도 군국(君國)에 대해서 충성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李朝佛教>

조정철(趙貞喆)

…세도권신(勢道權臣) 홍국영(洪國榮)의 미움을 받고…

조정철(趙貞喆 · 1751~1831)은 자를 성경(成卿), 호를 정헌(靜軒)이라고 했다. 참판 영순(榮順)의 아들이다. 영조 51년(1755)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판서(법무대신)까지 올라 나이 80에 천수(天壽)를 다하고 있다.

정조 원년(1777) 7월 홍국영은 정조(正祖)의 외척¹⁵³⁾으로서 도승지¹⁵⁴⁾

151) 지방장관.

152) 佛門.

의 관직에 올라 정권을 독점했다. 그 후 정철은 미움을 받아 제주도로 정배되었던 것이다. 재적(在謫)하길 29년. 순조(純祖) 5년(1805) 7월에 사면되어 돌아와 생모를 재회할 수 있었다. 그 2년 후의 7월에 자청하여 제주목사가 되어 부임해 크게 덕정(德政)을 베풀어 도민의 은혜에 보답했다. 그의 저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은 제주 적거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느낀 소회(所懷)를 시가(詩歌)로 나타낸 것을 모은 것으로 전후 12년에 걸쳐고 있다. 유배인의 생활·제주의 풍속·기후·산물 등을 상술(詳述)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참고로 할만한 것이 매우 많다.

그가 제주에 유배되어 5년째인 정조 5년(1781)에 홍국영이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릉(江陵)에서 적사(謫死)하고 노론의 시파(時派)와 소론이 때를 만났는데 전라감사인 박좌원(朴佐源)은 시파이며 제주목사 김기구(金耆耆)는 남인이었다. 박은 김과 연락하여 조정철을 비롯 관내의 노론벽파(僻派)의 적객을 없앨려고 기도해 조정철의 감시를 한층 엄중히 하면서 어떤 구실을 포착하려고 했다. 드디어 「남몰래 읍비(邑婢)를 범했다」는 한가닥을 얻어 그를 힐문(詰問)하고 또 상대방인 읍비 홍의랑(洪義郎)을 규문(糾問)했다.

홍의랑의 이름은 윤애(允愛), 향리(鄉吏)¹⁵³⁾ 홍처훈(洪處勳)의 딸이다. 그가 섬에 도착하면서부터 그의 적사에 출입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었다. 김목사는 어떻게든 실토(實吐)케 하려고 모진 고문을 가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이를 부인했다. 드디어 장(杖) 70에 이르러 쓸어져 죽었다. 때는 윤5월 5일이었다. 6월 2일 새벽에 성의 남쪽에 묻었다.

153) 누이동생이 정조의 元嬪(제1왕비).

154) 왕의 비서실장.

155) 지방출신의 하급관리·아전.

조정철이 적은 바에 의하면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고 5월 15일에는 「맹풍괴우(盲風怪雨)가 분을 뒤엎고 나무를 꺾으며 천지가 암참(暗慘)했다. 여랑(女娘)의 원기(冤氣)가 초래한 일」이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제주 고로(故老)가 전하는 바는 크게 다르다. 고로의 말로는 5월에 목사 앞으로 감사(監司)로부터 밀사가 와서 그(조정철)를 적당한 죄명아래 장살(杖殺)하라고 했다. 그는 법정에 끌려나와 심한 매를 맞고 거의 시체가 되어 법정 밖으로 운반되어 나갔다.

이 때 홍량이 달려들어 그의 몸에 아직 온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입에 오줌을 부어놔 소생시켰다. 당시의 법은 장사(杖死)했다고 해서 버려진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또다시 죽이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끝내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홍량은 중죄인으로서 교살¹⁵⁶⁾되었다고 한다.

제주도 민요에 이런 것이 있다.

「아침 저녁 여닫는 각적(角笛)소리 우리 목사님께서는 풍류(風流)일뿐 육각(六角)의 소리는 백성의 성문(洞門)·서문·남문) 통행의 시종을 고하는 법이 정한 소리다. 실로 몸에 스며들만큼 엄중한 그 소리다. 그러나 목사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풍류악(風流樂)의 소리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관존민비의 이러한 차등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를 들면

형방(刑房)님의 나를 벌하는 상신(上申)은
붓을 잡을 때부터 나는 아노라

156) 목을 졸라 죽임.

형방은 목사 아래 있는 형사계의 이원(吏員)이다. 죄는 우선 형방리의 취조를 받고 그 판단서가 목사에게 상신(上申)되어 목사가 판결을 내린다. 붙잡힌 사람의 유죄·무죄는 형방의 심증(心證)으로 우선 결정된다. 형방에게 미움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특히 여자의 심정은 예민하다. 내가 벌을 받게 되느냐 마느냐는 형방의 심정은 그가 붓을 들고 종이에 써놓으려 하는 그 때에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철은 제주도에서 29년이라는 오랜 유적생활을 보내고 순조 5년의 7월에 사면되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동안의 고절(苦節)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얼마없어 다시 중앙 관계로 돌아가 2년 후 제주목사로 착임해와 일찍이 자기 때문에 원사(冤死)한 홍의랑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워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다.

瘞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旻
黃泉路遽歸何賴	碧血藏深死亦緣
千古芳名蘅杜烈	一門高節弟兄賢
烏頭雙闕今難作	青草應生馬鬣前

옥을 묻고 향기 덮은지 몇 년인가
어느 장수가 너의 원한을 저 하늘에 호소하리
조용한 황천길을 누굴 의지해 돌아가며
질은 피 깊이 감춰 죽음 또한 인연인데
오랜 세월 꽃다운 이름 곰취향기 같이 뚜렷하고
한 집안의 높은 절개 형 동생이 뛰어났네
오두의 두 기둥을 지금 세우기 어려우니
말 갈기 앞에는 응당 풀이 자라 푸르겠지

그 스스로 주(註)를 덧붙여 홍씨의 언니는 이참판형규(李參判亨逵)의 부실(副室)¹⁵⁷⁾이 되어 참판¹⁵⁸⁾에게 순사(殉死)하여 독을 마셨다. 이것을 일문쌍절(一門雙節)이라고 했다. 홍의랑도 정현(靜軒)의 이 시문을 얻고 구천(九泉) 아래 눈을 감았을 것이다.

그는 또 섬 해녀의 고역(苦役)과 진상(進上) 부담의 괴로움을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潛女衣裳一尺短 赤身滅沒萬傾波
邇來沒重魚難得 鞭扑尋常幾處衛

잠녀(해녀)의 옷이 짧아서
벗은 몸으로 만경창파에 몸을 묻힌다
그렇게 힘들어도 고기를 얻기 어려워
아무일 없는 듯 채찍질하며 몇 군데를 둘러본다

즉 해녀에게 부과된 진상용 어개(魚介)가 정수(定數)대로 납품이 안될 때는 관아에 끌려가서 문책된 다음 지독하게 맞았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진공상납(進貢上納)의 무거운 부담은 섬의 여자들에게 노래가 되어 원망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마셔보세요 작은 접시의 물을
마셔보세요 큰 접시의 물을
물 맛에는 변함이 없는데

즉 작은 접시의 물도 큰 접시의 물도 물 맛에 변함은 없는데 어찌

157) 첩.

158) 육조(六曹)의 하나. 아당(亞堂)이라고도 함.

서 이토록 제주 산물(産物)만을 먹으려고 엄청나게 진상시키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항의 뜻을 나타낸다. 더욱 그녀들은 노래한다.

썩은 나무에 나오는 버섯인 표고는
무엇이 좋다고 진상시키나
맛이 좋으므로 진상시킨다고야

우연히 맛 좋은 표고가 나는 곳에 태어난 우리가 불행한 것이라고 한탄하는 것이다. 조정철은 섬의 풍속에 대해 이렇게 읊은 한편으로 도민이 나타(懶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의 다사(多事) 과로를 동정하고 있다. <靜軒集瀛海處坎錄·순조실록>

안조환(安肇煥)
...공문서위조죄로...

안조환(安肇煥)은 정조조(正祖朝)의 문신이다. 그가 대전별감(大殿別監¹⁵⁹)으로 있을 때 직권 남용과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죄를 문책한 결과, 추자도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인 「만언사(萬言詞)」는 추자도에 유배되기 전의 생활을 조용히 회상하면서 유배인 생활의 실감을 노래한 것이다. 그 가사 「만언시」는 작자 자신의 가련한 유적생활과 비탄에 저르는 심정을 절절히 왕에게 호소한 데 대해, 섬 사람들이 그의 애원(哀願)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만언사답(萬言詞答)」과를 전·후편으로 하고 있다. 「만

159) 宮中掖庭署에 소속한 관직.

언사」는 일명을 「사고향(思故鄉)」이라고도 한다.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신은 박약하다고는 하나 유배인의 눈에서 본, 당시의 봉건사회의 세태나 풍속 등을 상당히 실감적으로 재현한 점에 그 특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歌詞選集>

천주교(天主教)의 박해(迫害)

조선에 있어서의 천주교(그리스도교) 전래의 경로를 더듬어보면, 1601년 야소회(耶蘇會)¹⁶⁰⁾의 선교사 아테네 릿치(利瑪竇)가 북경(北京)에 들어가 천주당을 세워 포교에 종사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조선에서 사절로서 북경에 가는 자가 천주교와 동시에 유럽의 사물에 접촉하여 세계에 관한 지식을 넓히기에 이른 것은 이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구라파여지도(歐羅巴與地圖)」가 처음으로 1603년에 도래했다고 되어있으며 또 천주실의(天主實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천주교 잠점(潛漸)의 시기이며 또한 천주교와의 접촉에 의해 서양문명의 조선 침입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인조치세(仁祖治世・1623~49) 때는 진주사(陳奏使) 정두원(鄭斗源・壺亭)이 인조 9년(1631)에 명에 가서 북경의 주교 조안 로드리게스(陸若漢)로부터 천리경(千里鏡)¹⁶¹⁾・일외관(日外觀)¹⁶²⁾・자명종(自鳴鐘)¹⁶³⁾・서양화포(西洋火砲)¹⁶⁴⁾・자목화(紫木花)¹⁶⁵⁾나 그 밖의 천문・지리에 관한 도서를 얻고 돌아와 왕에게 헌상한 것도, 다음에 봉천(奉天)에서 9년간 유거(幽居)의 달을 쳐다보고 있던 인조의 세자(昭顯世子)가 인질에서 풀려, 그 귀국에 즈음해서 북경의 주교 애덤샤르(湯若望)로부터 천문산학(天文算學) 등의 서적과 천구의(天球儀) 등의 증여를

160) 그리스도교의 異稱.

161) 망원경.

162) 해시계.

163) 시계.

164) 뇌관총.

165) 紫花의 繡.

받은 것도, 동왕의 23년(1645)이며, 다음에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김옥(金瑬)¹⁶⁶⁾이 북경에 가서 시헌력(時憲曆)을 갖고 돌아온 것도 동왕 22년(1644)이고 보면 어느 것이나 모두가 인조의 치세 때 일어난 사안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세기 이래 수입된 천주교에 관한 도서는 당시 눈부신 당쟁에 패하여 정권과 떨어져있던 남인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 대표적 학자는 이익(李瀾)¹⁶⁷⁾ 및 안정복(安鼎福)¹⁶⁸⁾이었다. 성호는 천주교에서는 영혼불멸(靈魂不滅)·천당지옥(天堂地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결국 불법(佛法)의 별파(別派)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하여 이단사학(異端邪學)이라고 물리치고 순암도 또 야소에 관한 사실을 고증하여 「천학문답(天學問答)」을 저술하여 성인(聖人)의 길을 천주의 가르침과 다른 제점(諸點)을 들어, 이학(異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청년연구자들 안에는 이미 신앙의 경지로 나아간 자도 생기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승훈(李承薰·1756~1801)은 부친 동욱(東郁)이 정조 7년(1783)에 동지사겸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 황인점(黃仁点)의 서장관(書狀官)¹⁶⁹⁾으로서 연(燕)에 들어갈 때 사비수원(私費隨員)으로 따라가 자금성전무(紫禁城宣武)안의 남천주당에서 세례를 받고 또 많은 서교(西敎)의 서적을 손에 넣어 이듬해 3월에 귀국했다.

여기에 있어서 그의 인척인 이가환(李家煥) 및 정약용(丁若鏞)¹⁷⁰⁾의 형제를 비롯해서 갑자기 많은 열성적 연구자를 낳아 그 유명한 권근

166) 1580~1658, 호는 潛谷.

167) 1681~1763, 호는 星湖.

168) 1712~91, 호는 順菴.

169) 사신을 보좌하는 관리.

170) 1762~1836, 호는 茶山.

(權近¹⁷¹)의 후예인 권철신(權哲身)·권일신(權日身) 형제도 또 이 길에 들어섰다. 권일신은 호를 이암(移庵)이라고 했다. 양근(楊根·楊平)사람. 안정복(安鼎福)의 사위이다. 그는 이승훈의 권장으로 입교(入敎)해, 정조 9년(1785), 이승훈의 주재로 서울 명동 김우범(金禹範)의 집에 수십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신부로 뽑혀 천주교의 지도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 교명(敎名)을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한다. 그는 또 크게 이 종교를 사람들에게 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주교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천주교의 교리가 파죽의 세력으로 전국적으로 전파해서 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사상상의 일대변화를 낳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제사를 폐지하고 조상의 위패를 없애는 등 종래의 유교도덕과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정치적으로 문제화되어 교도가 「사옥(邪獄)」의 죄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신유사옥(辛酉邪獄·1801)」과 「기해(己亥)사옥」은 처참한 대탄압이었다. 따라서 정조 10년(1786) 이후 때때로 하교(下敎)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도서수입을 금지하고 또 영을 내려 서양관계의 도서를 모아 이를 불태우도록했다. 이어 동왕 15년에 전라도 수산군(修山郡)의 윤지충(尹持忠)·권상연(權尙然)의 두 사람은 선비이면서 부모 및 조상의 위패를 불태워 그 재를 뜰에 묻은 이유로 해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정조의 말엽, 서인과 남인의 사류(士類) 사이에 서원¹⁷²·향교¹⁷³·제사문제를 넘어서서 「천명(天命)」을 논의하고 인생문제에 대한

171) 1352~1409, 호는 陽村.

172) 유교의 담론을 한다든지 선현 지사를 모시는 곳.

173) 지방의 학교.

철학적 논쟁이 대두했다. 이것은 천주교인 서학(西學)과 정주학(程朱學)인 동학(東學)과의 사상적 이념의 상위(相違)·대립의 항쟁이었다.

당시 천주교는 「무군무부(無君無父)」의 교(敎)로 간주되어 조선봉건사회에 있어서의 국민도덕의 근거(根底)인 유교도덕을 뒤엎으려는 사학(邪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위험사상으로 취급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천주교의 유포를 금지토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정조는 직접 가혹한 탄압정책을 취하는 일은 안했다. 또 정조에게 신임을 얻고있던 남인파의 영수 채제공(蔡濟恭)¹⁷⁴⁾이 정권을 잡아있는 동안은 잔혹한 박해도 가하지 않았고 권일신·이승훈·이가환 등의 남인과 청년재사(才士)인 신자도 비교적 관대히 취급되었다.

그런데 정조 23년(1799)에 영의정 채제공이 사망하고 더욱이 그 이듬해에 정조가 서거하자 형세는 일변하여 드디어 천주교의 수난시대가 출현하게 된 것이었다.

1800년에 즉위한 순조(純祖)가 어린 때문에 대왕대비¹⁷⁵⁾인 김씨가 정치를 후견(後見)하게되자, 그 이듬해에는 천주교도에 대해서 일대철폐가 내려졌다. 즉 신유년(1801) 천주교의 교서를 중심으로 사류학구(士類學究)의 사이에 논의·당쟁이 격화하여 정계에 일대참극이 연출된 것이다. 이 교옥(敎獄)의 우익은 노론당의 서인파(僻派)며 좌익은 노론당의 남인파(時派)였지만, 남인파는 사교도(邪教徒)의 각인(刻印)이 찍혀 패자의 참화를 입지 않으면 안되었다.

174) 1720~1799, 호는 樊巖.

175)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권일신(權日身)

...천주교의 주교(主教)라고 해서...

권일신(權日身)은 정조 15년(1791)경에 이승훈(李承薰)과 서학서적을 간행했다고 해서 천주교 반대파인 홍락안(洪樂安)이 적발하여 법정에 끌려나왔지만 준형혹벌(峻刑酷罰)에도 꾀꾀하게 잘도 참아내어 끝내 제주도로 유배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의 학덕을 아쉬워하여 어떻게든지 구해주고 싶다고 여겨 다시 한번 그에게 관리를 보내 설득했다. 그 관리는 상당한 재주꾼이었던 듯, 처음부터 「배교(背敎)하라」고 명하면 그가 더욱 굳어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경이 제주도로 보내지면 올해 80세가 되는 노모를 누가 돌볼 것입니까. 부디 조금이라도 임금님이 뜻하시는 바에 좇아 제주도 대신에 좀 더 가까운 땅으로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고 그를 설득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반석(磐石)과도 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권일신도 노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결심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스로 왕명에 따르겠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쓴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관리였다고도 한다.

권일신에 대해서 「조선인명사전」에는 「정조 15년에 제주도에 유배·위리(圍籬)되어 끝내 병사했다」고 쓰여있으며 「국사대사전」에는 「제주도에 유배된 후에 예산(禮山)으로 옮겨져 회개서(悔改書)를 썼으므로 석방되었다고 되어 있다. 잘 검토해보면 후자 쪽이 정확한 것 같다.

<朝鮮基督教及外交書・朝鮮殉敎史>

순조조(純祖朝 · 재위 1800~34)

이치훈(李致薰)

…신유사옥(辛酉邪獄 · 1801)에 관련되어…

조선에 있어서의 천주교의 개교연기(開教緣起)는 이승훈(李承薰 · 1756~1801)에게서 시작된다. 근세의 정교사(政敎史)에서 그 이름은 불멸이다. 서구의 전도자나 종교가에게서 기적자(奇蹟者)로써 경탄받는 인물이다. 이치훈(李致薰)은 그 동생이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북경으로부터 귀국하자 곧 교회제도의 실시에 들어가, 이(李)베드로(돌이라는 뜻의 聖名) 승훈은 신지식으로서 교수(敎首)로 받아들여 이베드로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상황을 보고있던 그의 부친은 이것이 당쟁의 구실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당(黨)과 자기집을 파멸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승훈의 종교적 활동을 엄금했다. 또 한쪽의 반대당(僻派)은 서학(천주교)의 수괴자로서 승훈을 배격했다.

정조 15년(1791)의 사옥(邪獄)에 권일신 등과 함께 붙잡혀서 드디어 배교(背敎)했지만 1795년에 북경주교로부터 비밀리에 파견된, 최초의 중국인선교사 잭 · 주(周文謨)가 압록강을 넘어 조선에 잠입해오자, 그는 배교의 의장(擬裝)을 벗고 포교활동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얼마없이 박해의 손이 뻗쳐 동년 7월 예산에 정배되었다.

그러나 그 후도 「전서죄인(傳書罪人)」으로서 집중공격을 받았다. 주문모의 입국은 밀고자에 의해 어느 새 관헌이 알게 되어 정부의 단속은 엄중하기 짝이 없었는데 주문모가 공교롭게 관헌의 눈을 피해 7년간을 포교한 결과, 다수의 신자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여기에서 신유(辛

西·1801) 1월 26일 대박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정조가 24년의 6월 28일 서거, 세자(純祖)가 겨우 11세로 이듬해의 7월 4일에 즉위하여 정순왕후¹⁷⁶⁾인 김씨가 정치를 후견(後見)하게 되자, 벽파가 그 뜻을 이를 기회를 얻어, 즉시 채제공(蔡濟恭)의 관작을 추탈(追奪)해서 그 한패를 물리쳐 천주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신유의 정월 11일 사학(邪學·西學) 엄금의 영이 발포됨과 동시에 청천의 벽력과도 같이 돌연 대박해가 천주교도의 머리 위에 가해져, 그들 신자는 일망타진으로 붙잡힌 것이다.

그 때 수천명에 이르렀던 신도들 가운데 처형되던지 옥사한 자는 합계 3백명에 이르렀다. 이 박해로 이승훈을 비롯 이가환·정약중(丁若鐘) 등 남인의 재사(才士) 6명은 의금부(최고재판소)의 재판을 받아 서문밖(昭義門)에서 참수(斬首) 당했다. 세상에서 이를 「신유의 사옥」이라고 한다. 그 후 황사영(黃嗣英)의 백서(帛書)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의 서학 타도는 당쟁으로부터 국책(國策)으로 전진(轉進)하여 엽근(葉根)을 함께 잘라내는 방침으로 전환, 동년 음11월 5일 사망한 아버지 동욱의 관직을 추탈하고 동생인 이치훈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朝鮮西學史·正祖純祖實錄>

황사영(黃嗣永)의 처 정소사(丁召史)

...남편의 백서(帛書) 사건에 연좌(緣坐)되어...

1801년의 천주교 대박해는 시·벽(時·僻) 양파의 당쟁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결코 종교만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176) 영조의 계비로 金漢壽의 딸.

서 황사영(黃嗣永)의 백서(帛書)사건은 유력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황사영(1775~1801)의 백서란 도대체 무엇이나고 하면, 이것은 황사영의 찬문(撰文)으로서 황심(黃心)177)의 이름으로 천주교 박해의 경위와 박해의 상황, 수난자의 약력과 당시의 국내사정을 기록한 후에 조선의 교회를 구제하는데 가능한 방책을 북경의 사교(司敎) 알렉산드로·드·구베에카(湯士選)에게 비밀리에 보내기 위해 쓰여진 서한이다.

이 서한은 길이 62cm 너비 38cm 크기의 비단에 쓰여진 것이었다. 더구나 정중히 접어있어 국경을 통과할 때는 쉽게 옷 안에 감출 수가 있었다. 그 문서의 능필(能筆)과 그 섬교(纖巧)함은 어느 것이나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이 서한은 1백10자씩 1백21행에 쓰여져있어 총자수 1만3천자 이상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것은 끝내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전에 관헌에게 붙잡혀 그것을 몰수 당함과 동시에 황사영과 황심(黃沁)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황사영은 자를 덕소(德召)라고 했다. 교명(敎名)을 알렉산드로 황이라고 한다. 경상도 창원(昌原)사람. 16세로 진사(178)에 급제하고 남인시파(時派)의 중진 정약전(丁若銓)의 딸에게 장가들어, 정약중(丁若鐘)의 문하에서 천주교를 추구하고 중국인 사제(司祭) 주문모(周文謨)에게 사사(師事)했다. 그 문재(文才)와 열렬한 기백은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에 머물러 교내(敎內)의 과감한 투사로서 신복(信服)받았다.

신유년의 정월, 박해의 손이 뻗히자 제빨리 서울 계동용암영(桂洞龍岩塋)의 노파 집으로 도망쳤지만 그녀의 밀고 때문에 삼청동(三清洞) 산으로 뛰었다. 석정동(石井洞)의 교도(敎徒) 권상술(權相述)을 찾은 다음

177) 토마스 황.

178) 고등문관시험인 과거의 예비시험합격자.

동대문 내의 조각업(彫刻業) 송재절(宋載絶)의 집에 머물고 여기서 망명을 결심, 삭발했다. 여자교도 최설애(崔雪愛)는 그를 위해 변장용 상복(喪服)을 만들었다. 2월 15일 먼저 도망친 교우 김귀동(金貴同)을 좇아 충청도제천읍(堤川邑)으로부터 17km의 주론(舟論)에 도피했다. 그는 곧 이(李)로 성을 고쳐 「서울 이상인(李喪人)」이라고 했다. 6월 2일 교우 김한빈(金漢彬)은 제천에 잠입해서 붙잡혔지만 도망해서 주론에 들어가 상황이 급함을 고했다. 거기서 그는 신변을 걱정하여 토굴에 숨었다. 한편 교도인 황심은 8월 23일 서울에 숨어들어 상황을 살피고 즉시 주론을 찾아, 신부 주문모의 처형을 보고했다.

주문모를 행형(行刑)할 때 「그는 제주도 사람이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조(朝)·중(中)의 국제법을 속이려는 정부의 간계(奸計)였다고 황사영의 백서에 지적되어 정부를 당황케하는 역사상 유명한 사건이 되었다.

황사영은 그 토굴 안에 숨어서 북경 주교에게 보내는 소원서(訴願書)-황사영의 백서라고 불리는 장문을 적었던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다음의 3부분으로 요약된다.

- (1) 신유의 박해에 있어서의 약 30명의 순교자의 사력(事歷).
- (2) 박해의 동인(動因)으로서의 당쟁의 새로운 전개.
- (3) 조선천주교의 부흥책.

이상의 세 가지가 백서 구성의 주체를 이루는 것으로 괴멸(壞滅)에 막 닥뜨린 천주교의 부흥책을 상술(詳述)하고 있다. 이것은 5계(計)로 이뤄지고 있다. 즉 ①재정적 원조, ②북경 천주교와의 연락방법, ③로마법왕과의 논서(論書) 간청, ④조선감호책(監護策)¹⁷⁹⁾, ⑤무력개방...이상이 백서의 골자이지만 요컨대 천주교 재흥(再興)의 방책으로서는 외

¹⁷⁹⁾ 보호국 취급.

력(外力)의 유도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있다.

또 백서에는 당시의 국내정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본국의 사대부들이 2백년래 분당각립(分黨各立)하여 남인·노론·소론·소북의 4색(色)의 눈(黨畛)이 있어 선왕(정조)의 말년, 남인은 또 둘로 나뉘었다. 이가환·정약용·이승훈·홍낙민(洪樂敏) 등 젊은이는 모두 종전과 같이 주(主)를 믿고, 투생배교(偷生背敎)의 사람들은 외성교(外聖敎)를 해친다해도 중심에 아직 사신(死信)이 있으나 그 수가 아주 적으며, 다른 일파 즉 홍의호(洪義浩)·목만중(睦萬中) 등 진심해교(真心害敎)의 사람들은 10년 이래 원수처럼 되었고 노론도 또 시파와 벽파의 둘로 나뉘었다. 이들이 상호 비방하고 모략·박해함에 선왕(정조)이 갈팡질팡했다」는 요지이다. 이 박해의 배후에는 외척세력으로서 대두해온 노론파, 안동김씨의 일파가 남인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일으킨 정치적 대립이 개재해 있던 것이다.

어떻든 황사영의 백서는 전대미문의 흉서(凶書)로서 조선을 진해(震駭)시킨 괴문서였다. 더구나 무서운 것은 위협적인 수단을 써서 외국군함의 파견과 구원을 요청한 일이다. 그 결과 당시 위정자들은 천주교의 배후에는 외국의 군함이 따라다닌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천주교도는 외국과 짜서 국가를 파괴하려한다고 단정하여 더욱 엄중히 이를 금지할 필요를 통감한 것이다. 같은 해, 왕은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내려 백성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글월에서 「사영측재백서(嗣永則裁帛書) 욕초해박(欲招海舶) 흉도역절어사위급(凶圖逆節於斯爲急)…황사영의 백서가 외국선박을 끌어들이려하니 그 흉계가 위급하다」고 하고 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종래와 같이 단순히 위험사상으로 이를 단속하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서 정치적 음모로 보아 절대로 금알(禁盥)¹⁸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전파한 천주교신앙의 불길은 꺼질줄 모르고 오히려 요원의 불길처럼 타 올랐다. 말하자면 유교정치의 파탄에 의해, 그 질곡(桎梏)으로부터 벗어나려하는 일부의 식자나 민중들은 유교이념에 대체하는 새로운 신앙에 정신적 활로를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동년 9월 15일에 황심이 포박되고 그 자백에 의해 동월 29일 황사영도 체포되어 백서를 비롯 수 많은 비밀문서와 함께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10월 3일에 의금부로 이송되어 동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준엄한 취조가 행해진 다음 동월 5일 대역범인으로서 능지처참(陵遲處斬)의 극형에 처해졌다. 그 때 그의 나이 27이었다. 더구나 그의 전 가산은 관에 몰수되고 죄는 삼족에 미쳐 어머니는 거제도, 처인 정소사(丁召史)는 제주도에 노비로 보내지고 아이들은 추자도에 유배되어 일가족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만난 것이다.

<황사영 백서의 연구·순조실록·역사학 연구 10>

180) 막아낸다.

헌종조(憲宗朝 · 재위 1834~49)

강시환(姜時煥)

...국정(國政)을 모독했다고 해서...

강시환(姜時煥)은 헌종조(憲宗朝)의 문신이다. 헌종 2년(1836) 그가 부사직(副司直)¹⁸¹⁾으로 있을 때, 순원왕후(純元王后)¹⁸²⁾의 수렴(垂簾)정치¹⁸³⁾를 혹독하게 비난한 위에 권성학(勸聖學) · 홀민은(恤民隱) · 입기강(立紀綱) · 절제용(節制用) · 할용정(詰戎政) · 혁과폐(革科弊)의 6조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국내의 정치정세로 보아 가장 유효적절한 정치라고 상소했다. 그것이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려 국정을 모독했다고 해서 추자도¹⁸⁴⁾로 유적된 것이다. <헌종실록>

김정희(金正喜)

...윤상도(尹尙度)의 흉소(凶疏) 사건에 관련했다고 해서...

김정희(金正喜 · 1786~1856)는 근대조선의 유학계에 실사구시(實事求是)¹⁸⁵⁾의 신학(新學)을 불어넣어 일대 생면(生面)을 전개한 조선의 위대한 존재였다. 경사(經史) · 천산(天算) · 금석(金石) · 시문(詩文) · 서화(書畵)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과 비길 데 없는 조예(造詣)로는 바로 조선 희유

181) 종5품.

182) 純祖妃김씨.

183)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한다.

184) 당시는 전남 靈岩郡.

185) 공허한 思辨에 빠지지 않고 사실을 토대로해서 진실을 탐구하는 일.

(稀有)의 통유(通儒)라고 칭할만 하다. 그리고 시문의 비본(秘本) 특히 청유신저(淸儒新著)의 풍부한 수록(收錄)과 그 자재(自在)한 활용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김정희의 독무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 있었다.

자는 원춘(元春), 호는 완당(阮堂)·추사(秋史)·예당(禮堂)·시암(詩庵)·갑파(甲波)·노과(老果) 등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거의 서른 이상의 아호(雅號)가 있지만 그는 견문한 사물에서 특히 흥미를 느낀 것은 모조리 자신의 아호로 했다고도 전해진다. 경주 사람. 참판이었던 노영(魯永)의 양자로 생부(生父)는 이조판서 노경(魯敬)¹⁸⁶이다. 즉 월성위 한신(月城尉 漢璽)¹⁸⁷의 증손이다. 어머니 유씨(兪氏)는 임신 24개월만에 정희를 낳았다는 전설조차 있다.

김추사는 55세 때 제주로 유배되었는데 현종 6년(1840)부터 14년까지의 9년간을 제주나 대정지방에서 망향의 생각에 잠기면서 비고(悲苦)의 유적생활을 보내었다. 그 덕분에 도민들도 그로부터 학문·서도·회화는 물론 모든 정신생활에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할 수가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유적중에 편지나 저술을 통해 섬 안의 색 짙은 풍경·도민의 생활풍습·진기한 화조(花鳥) 등을 내외에 널리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제주도에 유배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섬의 유교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한 사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우(交友)가 많고 기우(氣宇)가 온화해서 사람들과 말하는데 점잖아 환대를 받았다. 더구나 외유내강의 공명정대하고 근엄실직(謹嚴實直)한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일단 논의가 의리에 미칠 때

186) 1766~1837, 호는 酉堂.

187) 1720~58, 영조의 부마.

등엔 논조가 날카로와, 듣는 이는 그 격렬함을 두려워해 더욱 더 경복(敬服)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완당은 약관으로서 백가(百家)의 군서(群書)에 관철하여 그 지식이 하해(河海)와도 같았다고 한다. 순조 9년(1809) 생원시(生員試), 동 19년에 문과에 오르고 설서(說書)188)을 시작으로 병조참판189)까지 승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그의 경학상(經學上)의 경향과 서도의 연마 및 금석학 등에 대해서 한 마디 해두고 싶다. 추사는 소년시대에 이미 대학자이며 또한 청조(淸朝)문화의 선각자이기도 한 북학파의 박제가(朴齊家)190)에게 학문의 지도를 받았을뿐 아니라 청국의 제일류 명유(名儒)라고도 할만한 각로·완원(閣老·阮元)191)과 홍려경 옹방강(鴻臚卿 翁方綱)192)을 북경으로 찾아가 그들로부터의 간절한 지도를 직접 받고 왔다. 따라서 그의 학문상의 경향은 청조고증학(淸朝考證學)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조 9년 10월, 그의 나이 24세때 생부인 김유당(金酉堂·敬魯)을 좇아 동지겸사절사(冬至兼謝節使)에 참가, 대망의 첫 입연(入燕)의 기회를 얻었다. 연경(燕京·북경)에 이르러 우선 그가 찾은 것은, 일찍부터 조선 선비들과 관계가 깊었던 조옥수(曹玉水)이며, 다음에 홍유(鴻儒)로서 그 명성을 천하에 떨치고있는 옹방강과 완원의 두 경사(經師)를 새로이 만나 이상하리만큼의 애고(愛顧)를 받았다. 그게 바로 완당·김정희로 하여금 해동(海東) 제일의 통유(通儒)로 만들어낸 동기이다.

188) 세자에게 經史와 도의를 가르치는 정7품관.

189) 국방차관급, 종2품관.

190) 1750~1815, 호는 楚亭.

191) 1764~1849, 호는 藝台.

192) 1733~1818, 호는 潭溪.

옹방강은 그 때 78세의 노학자였다. 김추사를 만나자마자 「해동(海東)의 영물(英物)이라고 칭찬하고 청나라의 여러 대가들조차 구경한 일 없는 노스승의 비급(秘笈)¹⁹³⁾ 가운데서 진시(陳示)된 금석서화의 진품이나 소동파(蘇東坡)의 자필첩(自筆帖)과 천제조운첩(天際鳥雲帖)을 비롯한 송판(宋板)의 진서(珍書)와 당대(唐代)의 탁본 등 여러 점을 보여주면서 학문상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설명해주었던 것이다.

옹방강은 학문상의 경향에서 보면 경학(經學)상의 입장은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의 절충론자인 것 같았는데 추사는 이런 면에서도 지도된 것으로 상상된다. 완원은 건(乾)·가(嘉)·도(道)의 삼조(三朝)에 걸친, 청조 제일류의 명유(名儒)로 그 청조문화의 발전 완성에 바친 공헌이 위대한, 거의 달리 필주(匹儔)¹⁹⁴⁾를 볼 수 없는 바 인데 당시 47세라는 젊은 학자였다. 김정희는 가경(嘉慶) 15년(1810) 정월, 북경 연성공(衍聖公) 저택 안 태화쌍비지관(泰華雙碑之館)에서 친히 완원과 면접하여 보통을 넘는 권우(眷遇)¹⁹⁵⁾와 지도를 받았을뿐 아니라 초본(抄本)을 찾아주고 더구나 수 많은 진품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화산묘비탁본(華山廟碑拓本)이라는 천하의 지보(至寶)도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도 정희의 기중(器重)¹⁹⁶⁾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렇듯 정희는 그들 두 사람으로부터 많은 저서와 진품 등을 얻고 돌아온 것이다.

완예대(阮藝臺)가 순전한 한대의 학풍을 견지하고, 표방하는 것은 이른바 「실사구시의 학」이었다. 말하자면 완예대는 송학이 빠지기 쉬운 주관적인 공허한 폐풍(弊風)을 타파하고 새로운 패턴을 내세운 청조학

193) 책상자.

194) 상대.

195) 친절한 대접.

196) 재주와 기량이 중합.

(淸朝學)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따라서 정희는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완원의 인간성과 학풍에 대한 경모(敬慕)의 염(念)이 더더욱 두터워져 완원의 「완(阮)」자를 따서 「완당(阮堂)」이라 칭하고 때때로 글을 보내 기르침을 청하고 일편단심 연마를 거듭한 결과, 경학·서예·금석학에 있어서 새로운 권위를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김정희는 또 서도에 있어서는 중국의 왕희지(王羲之)·구양수(歐陽修) 등의 명필을 습득하여 만년에는 서법에 있어 독창적인 「추사체(秋史體)」라는 경지를 개척, 패기 넘치는 독특한 필법과 서체를 완성하여, 세인으로부터 조선 제일의 「서성(書聖)」이라고 일컬어지게까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김추사는 종래의 조선 학문의 패턴을 타파하여 「실사구시」의 학풍을 내세운 위대한 경학자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천상지리(天象地理)·산수(算數)·금석비첩(金石碑帖) 등의 온갖 분야에 걸쳐 묘(妙)를 추구했으므로, 실로 조선의 문단은 오히려 추사가 있었기에 내외를 향해 부끄럽잖은 지보(地步)를 굳혔다고 해서 결코 과장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추사는 일찍이 함흥 황초령(咸興 黃草嶺) 및 양주 북한산(楊州 北漢山)의 신라 진흥왕(眞興王)의 고비(古碑)를 연구해서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을 저술, 특히 북한산비가 종래 잘못 알았던대로 승 무학(無學, 속성은 박씨,諱는 自超)이 세운 비로만 믿어져왔던 것을, 추사가 여기에 이르러 신라 진흥왕의 정계비(定界碑)란 것을 밝혀내어, 이 비가 세워진 것은 동왕 29년(566) 남천주(南川州)를 둔 다음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금석대가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서울 남대문의 「숭례문(崇禮門)」이라는 편액(懸版)이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제자(題字)라고 전해져 온 것을 신색(申

檣)¹⁹⁷⁾의 글이라고 고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불교에도 정통해서 탁월한 일가견을 갖고있었다. 즉 그는 불가(佛家)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거질(巨秩)의 「법원주림(法苑珠林)」·「종경대전(宗鏡大全)」 및 반야(般若)·법화(法華)·화엄(華嚴) 등의 불경을 모조리 독파하고 있으며 또 해남에 있는 대오사(大興寺)의 주지 야의선사(野衣禪師)와도 친교가 있었다. 만년에는 선리(禪理)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그가 무슨 죄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는가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자.

순조 30년(1830)에 대리청정을 하고있던 왕세자(翼宗으로 追尊)가 22세 때 서거했다. 그런데 동년 8월, 전 대관(臺官)이었던 윤상도(尹尙度)가 아들인 간모(幹謨)와 연서해서 상소했다. 그 내용은 호조판서 박종훈(朴宗勳)·전 유수 신위(留守 申緯)·어영대장 유양(御營大將 柳亮) 등이 행대 호군 김로(行大護軍 金路)에게 아첨하여 국용물(國用物)을 남용했을뿐 아니라 못백성을 침학(侵虐)하여 관물(官物)이던 뇌물이던 닥치는대로 쓸 어담는 탐관오리일뿐 아니라 심지어는 세자를 업수이 여겼다고 하는 흉소(凶疏)가 사간원에 제시되었다. 그것이 첫째로 그의 유죄(流罪)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이 흉소사건을 야기시킨 윤상도의 부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무고죄」로 추자도에 정배되어 김로는 해남현에 안치(安置)당하는 쓰라림을 겪었다.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때가 시파와 벽파의 대립항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을 때인만큼 헌종 6년(1840)에 이르러 대사헌(大司憲)인 김홍근(金弘根·春山)이 10년 전의 윤상도 흉소사

197) 申叔舟의 아버지.

건을 끄집어내어 재심의 논죄(論罪)를 상고했다. 그 결과 윤상도 부자는 추자도로부터 초라한 모습으로 서울로 호송되어와 드디어 「대역무도죄」의 판결을 받아 어이없게 처형되었다. 이어 그들과 정반대의 관계에 있던 다른 자들도 다시 체포되어 새로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리중에 맞아 죽은 자도 있고 원류(遠流)에 처해진 자도 적지않다.

이 사건을 흔히 「경자옥사(庚子獄事)」라고 칭하는데 최초 사건의 사실관계를 취조 중에 피의자인 전 이조참판 김양순(金陽淳)의 공술(供述)에 「김정희가 흉소문을 기초하여 남이익(南履翼)에게 보냈다」는 것이 크게 떠올랐다. 그 때문에 그의 죄상(罪狀)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어 김정희는 곧 체포되어 가혹한 형문(刑問)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모진 고문으로 뼈가 부셔져도 요지부동으로, 그것은 전혀 김양순의 허위 진술이라고 뻔히면서 시종일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이 때엔 이미 김양순을 비롯한 연좌죄인 모두가 맞아죽어 있었으므로 정희의 무실을 입증해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념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의정인 조인영(趙寅永)¹⁹⁸⁾의 간절한 조명(助命)탄원 덕으로 죽음에서 감일등되어 동년 9월 제주 도대정현에 위리안치토록 명령이 내려졌다.

김정희는 즉시 금오랑(金吾郎)¹⁹⁹⁾의 경호로 서러운 유배의 길로 출발했다. 9월 27일 아침, 배는 아득한 남쪽 끝의 절도(絶島)로 향했다.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 안의 모두가 벌벌 떨었지만 정희만은 의연히 뱃머리에 앉아 시를 지어 소리 높이 읊으면서 사공들을 격려했다. 그러자 배는 거친 흰 물결을 차면서 질주, 아침에 떠난 배가 저녁에

198) 1782~1850, 호는 雲石.

199) 의금부의 羅將.

제주에 도착했다. 섬사람들은 그 빠름에 놀라 「비도(飛渡)했다」고 감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사는 처음으로 제주목 화북포²⁰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음과 같은 감회(感懷)의 시를 읊고 있다.

瀛州禾北鎮途中

村里兒童聚見那 逐臣面目可憎多
終然百折千磨處 南極星光海不波

화북진을 향하면서

시골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보는가
쫓겨온 신하의 면목이 알뜰기만 하구나
끝내 꺾이고 갈리어온 곳에는
잔잔한 바다 위에 남극성이 빛나는구나

추사는 그 날 밤 화북성 아래 있는 민가에 숙박하고 뒷날 아침 배 안에서 친해진 전 이방 고한익(高漢益)의 집으로 숙소를 옮기고 있다. 그의 배려에 깊이 감격했다고 한다. 뒷날은 폭풍이 불어 거리에 나설 수 없었고 또 그 뒷날인 10월 1일, 그는 금오랑의 경호 아래 대정성으로 향발했다. 통로는 처음엔 울퉁불퉁한 돌길이 이어져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였는데 반 길이 지나자 지경도 넓고 길은 다소 평탄해진 위에 길 양 옆은 밀림이 울창해 마치 푸른 터널 모양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밀림은 커다랗고 아름다운 나무가 하늘을 지르고 그 밀림 속에서 새빨간 단풍이 더욱 아름다워 줌처럼 떠나기 힘들만큼 신비스러운 곳이었다고 한다.

200) 別刀浦라고도 했다.

유배인인 김정희 등은 저녁에 대정성에 당도했다. 일행 가운데 정모라는 자가 먼저 들어가, 동문 안의 새동(塞洞)²⁰¹⁾에 사는 교리(校吏)·송계순(宋啓純)의 집을 적사(謫舍)로 정해있었으므로 거기로 들어갔다. 적사는 국법의 규정대로 가시로 집을 둘러싸고 정계(庭階)에 식사 차입소(差入所)를 만들어 유죄(流罪)의 김정희를 가두었다. 이렇게 그의 유적 생활은 시작된 것이다. 그의 큰형 김명희(金命喜)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송계순에게는 적객(謫客)을 싫어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고 매우 소박하고 근면·친절하다고 그 인품에 대해 감동적으로 써놓고 있다.

「완당집」에 따르면 헌종 7년(1841) 5월말께 강풍이 몰려와 큰 나무들이 탕탕 쓸어지고 파도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벽력(霹靂)이 친다. 지선민은 그 소란한 상황을 보고, 지난 48년(정조 18년 갑인년의 대풍) 이래 처음 보는 태풍이라 하고 또 헌종 11년(1845) 6월 영국선(사마랑호)이 돌연 정의지방에 습래(襲來)해옴으로써 전도가 소연(騷然)했다고 되어있다. 또 읍내에는 샘물이 없어 5리쯤 떨어진 산기슭으로부터 음료수를 날라왔다고도 한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일까, 추사는 적사를 나와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가 인정된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은 적사를 이웃인 강도순(姜道淳)²⁰²⁾택의 사랑방으로 옮기고 있었으며 또 몇 년인가 뒤엔 식수가 불편한 때문에 안덕면창천리(倉川里)로 옮긴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 래서 때때로 수정과 같은, 돌 위를 흐르는 물도 청冽(淸冽)하여 주변에 원시림이 퍼지고 그야말로 산책에 알맞은 환경-깊은 푸르름과 아름다운 계류(溪流·안덕계곡)에 둘러싸인 조용한 산천-창천리까지 발을 뻗혀 한 밤의

201) 속칭 막은굴.

202) 姜文錫의 증조부.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또 대정 적거중에 수선화가 만개(滿開)한 것을 보고 신흥촉발(神興觸發), 호이장(胡以莊)²⁰³⁾의 「수선화부(水仙花賦)를 쓰면서 회포를 풀고 있다. 앞의 책에 따르면 대정지방에는 마을 안이든 들이든 아무데나 수선화가 피어있어 다시 없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선화는 특히 꽃잎이 커서 개화기인 정월말부터 3월까지의 개화기에는 그것이 마치 백설이 대지를 완전히 덮어 있어 몸도 마음도 수선화 속에 녹아드는 것 같다고 그 풍물을 절찬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수선화가 얼마나 진귀한 꽃인가를 생각도 않고 오히려 귀찮은 잡초와 같이 여겨 낫으로 베어버린다는가 소·말로 하여금 쥐어뜯게 하거나 끝내는 짓밟아 버린다. 인간들이 귀하게 여겨야 할 수선화를 이토록 학대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당시 그의 심경을 헤아려보면 그가 수선화에게 보내는 애정은 그의 안타까운 처지에 비해서 한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밖에 감등(柑橙)·귤유(橘柚) 등이 많이 생산되어 그 아름답고 진귀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여러 가지 나무와 푸른 풀이 서로 어울려 한 겨울에도 항상 푸릇 푸릇한 것이, 그 이름을 하나 하나 거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진귀하고 미묘로움이 달리 비할 바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한라산의 영기(靈氣)가 실로 탐라의 식생(植生)에게만 응축되어있는게 아닌가고 감탄하여 제주도의 산천초목의 미를 매우 찬탄하고 있다. 확실히 그가 말하듯 제주도는 조선의 식생의 원점(原點)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사의 수선화에 대한 찬시(讚詩)는 많다. 그 속에서 두 수(首)만을

²⁰³⁾ 이름은 敬.

여기에 신겠다.

一点冬心朵朵圓 品在幽澹冷雋邊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 ※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慳
鋤頭葉擲尋常物 供養窓明兀淨間

한점의 하얀 꽃이 떨어마다 둥글둥글
차갑고 뛰어난 곳에 들어난 품격
매화의 고상함도 뜰을 떠나지 못하는데
맑은 물에서 해탈한 신선을 보았으니

※ ※

푸른 바다 푸른 하늘에 한번 얼굴 펴고
신선과 인연됐지만 아낌 받지 못하네
호미 끝에 버려지는 평범한 저 물건이
맑은 창 말끔한 책상위에 올려졌구나

추사는 대정 적거 중에 사랑하는 부인이 타계했다는 부음에 접하여
시 한 수를 짓고 애도의 뜻을 바치고 있다.

那呼月姥訴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教君知我此心悲

어쩌면 월로를 불러 저승사자에게 하소연 할까
다음 세상에선 아내와 남편 지위가 바뀌어서
천리 밖에서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있어
그대에게 내마음 슬픔을 알게 했으면

※ 冥司=저승의 관리

또 그의 재적 중의 시가(詩歌)는 헤일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의 「마구가(馬臼歌)」를 소개해 보자.

人十能之馬一之 三家村里詔神奇
大機大用元如此 還笑宗風老古確
引泉爲確亦巖村 嘶嘔春歆莫見猜
似向先天探至像 恍疑龍馬負圖來

열 사람 할 일을 한 마리의 말이 한다
마을 안 세 집안이 신기한 한물건 의지해서
큰 기계 크게 쓰임은 원래 저러한 것
오히려 종풍의 옛 땀돌이 우습구나
물을 끌어 방아 찧는 일 거칠고 촌스럽구나
절구와 방아소리 시기하지마라
아마도 선천의 지극한 형상 더듬어서
용마가 지고온 그림인 듯 황홀하구나

또 동양화의 태두(泰斗)라고 일컬어지는 허소치(許小痴)²⁰⁴⁾가 추사에 게 사사(師事)해서 삼절(三絶)로써 명성(名聲)을 세상에 떨쳤는데 특히 묵화(墨畵)를 잘 하고 그 가운데서도 묵죽(墨竹)은 그를 넘어설 자가 없었다고 한다. 「상종완옹어영주해중(嘗從阮翁於瀛洲海中)」이라고 되어있듯이 허소치는 대정에 유배되어있는 김추사를 찾아 서화의 지도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제주 바다를 왕래하고 있다. 그는 완당을 더 없이 경모하여 서도에 있어서도 추사체는 잘 썼다고도 전해진다. 그것은 허씨만이 아니다. 추사를 만나기 위해 중앙이나 지방의 유자(儒者)·문사·

204) 1809~94, 관직은 知中樞府事.

묵객 등이 끊임없이 대정현에 운집했으므로 한때는 대정현의 산간벽지도 북적거렸다고 제주도출신 고로(古老)들은 지금도 말한다.

허소치가 추사의 제주적거생활에 대해서 태극도(太極圖)에 추사(拙寫)하자 추사는 그것을 보고 다음의 한 시를 짓고 있다.

居鄉何必異京華	隨俗和光在自家
所遇若令心火動	其方莫如耳風過
惡將除去無非革	好取看來總是花
古調峨洋山水外	滄浪一曲爲君歌

시골에 산다고 반드시 서울과 달라야 하는가
습속을 따르면 집에 있는거나 마찬가지로인 것을
만나는 것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마치 췌전을 스치는 바람과도 같으리
아무렇게나 제거하려면 고치지 못할 게 없고
좋게 보면 모두가 꽃이 아닌 것이 없는데
높은 산 넓은 물 옛 곡조의 밖에서
푸른 물결의 노래를 그댈 위해 부르네

허소치가 추사를 만나러 현종 13년(1847), 제주도로 건너갈 때 현종은 일부러 그를 불러들여 추사의 적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듣고 있다.

왕 : 추사의 일상생활은 어떻던가?

답 : 가시덩쿨의 담장을 한 토막(土幕)에 서북창(왕이 있는 방향)으로 정좌하여 조석 묵상하며 스스로를 엄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 : 그러면 식생활은 어떠했는가?

답 : 선어(鮮魚)는 많았지만 코를 찌를만큼 비린내가 심함으로 비위에 맞지

않고 또 때때로 마을사람들이 반찬을 갖다줍니다만 이게 또 너무 짜서 크게 괴로운 모양입니다.

왕 : 어떻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답 :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읽기 쓰기를 가르치며 매일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왕 : 제주의 풍토와 백성들의 살림은 어떤가?

답 : 산야·초목·인물·금수(禽獸)·가옥·농경의 모두가 본토와는 완전히 달라 어딘가 이국(異國)에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이상은 간단한 문답 내용이지만 왕이 추사에 대해 얼마나 각별히 배려하고 있었는가를 이것으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적사에 있어서 「원근에서 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저자와 같고 유화(儒化)가 크게 일어난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도내의 유생(유학자)나 학도들은 경학(經學)·시문·서화 등에 대해서 한 나라의 거사(巨師)를 섬에 맞아 들여 크게 공부했으므로 학문·예절은 말할 것 없고 서도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는 지금까지도 추사체를 잘 쓰는 사람이 있다. 제자 중에는 강도순(姜道淳)·김구오(金九五)(제주시)·박계첨(朴季簷·곽지리)의 세 사람이 유명하다. 추사에 이어 박희영(朴禧英)·이승헌(李承憲)·맹학술(孟鶴述)·이중협(李鐘協)이 유배되어 온다.

또 제주도 출신 고로들 사이에 전해지는 에피소드에 따르면 밤중에 동네사람들이 제사를 마쳐 제수(祭需)²⁰⁵⁾를 보내왔다. 김정희가 누구의 제사냐고 물으니 증조부²⁰⁶⁾의 제사라고 답했다. 당신은 몇 대까지의 조상 제사를 모시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종손임으로 고조부²⁰⁷⁾

205) 조상 제사에 올렸던 음식.

206) 자신으로부터 3대 올라간 조상.

까지 모시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감탄해서 서울의 명문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집안도 고조부까지 모시는 가문은 별로 없다고 했다.

김추사는 헌종 14년(1848)말에 방면되어 9년간에 걸친 쓰라린 유배 생활을 마쳐 귀경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철종 2년(1851) 영의정 권돈인(權敦仁)²⁰⁸가 헌종묘천론(憲宗廟遷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러 추사도 또 그에 동조했다고 해서 호중(湖中)²⁰⁹에 유배된 후 북청(北靑)²¹⁰로 옮겨졌다. 그 때 나이 66세. 두 사람의 동생은 늙은 형의 손을 잡고 통곡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정색하여 두 동생에게 말하길, 「범용한 사람은 논할 것 없다. 책을 읽는 너희들조차 또 이 모양인가」고, 그래서 답소하고 위로하며 스스로 서적을 정리한 다음 씩씩한 모습으로 유적지로 떠났다고 한다.

이듬해 석방되자 고향인 과천(果川)²¹¹으로 돌아가 오로지 학문의 길에 열중하여 유유자적의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71세로써 파란 많은 생애를 마쳤던 것이다. <헌종실록·완당집·金石過眼錄>

207) 4대째로 거슬러 올라간 조상.

208) 1783~1859, 호는 彝齋.

209) 충청도지방.

210) 함경도지방.

211) 서울의 남부.

철종조(哲宗朝·재위 1849~63)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파탄(破綻)

이하전(李夏銓)

...대역무도죄로 논급(論及)되어...

조선조 말기로 다가감에 따라 유형자가 속출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부패와 무능에 있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왜냐면 왕정(군주정치)은 명목뿐인 것이 되고 세도에 의해 새로운 형태가 싹 트기 시작해 외척이나 양반관료의 전횡이 정계에 뻗혀 그 정치적 부패와 타락이 왕조의 말기적 증상으로 발전하여 그것이 정치적 혼란을 초래, 끝내는 경국(傾國)의 운명을 촉구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순조 이후의 역대의 왕은 모두가 로봇과 같은 존재로, 왕실의 외척인 안동김씨(安東金氏)와 풍양조씨(豐壤趙氏)가 정치를 좌지우지 했던 것이다. 따라서 외척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실제로 문벌정치를 의미하며 정치의 기반이 단순한 혈연집단으로 위축돼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왕실의 외척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그 척족(戚族)의 일문에 의해 정부의 고관·현직(顯職)을 독점 당하는 형태로 나타나 정치기강을 더욱 혼란시켰다. 그 때문에 민심은 위정자로부터 떠나갔었다.

1811년의 「홍경래의 난(洪景來 亂)」, 1860년의 「동학당 창시(東學黨 創始)」, 1862년의 「삼남 민란(三南民亂)」이라고 일컬어진 각지에서의 격

렬한 농민폭동 등 이들 사건은 정치의 문란과 경제의 피폐(疲弊), 사회적 불안이 요인이 되어 발생했다. 역사적 부산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특히 척족세도는 종친·왕족에 대한 일종의 공포정치를 만들었다. 왕가의 일족은 왕도(王都)를 두려워해서 향리의 가까운 사람 집에 몸을 숨긴다든지 혹은 문을 닫아서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에 전념했으므로, 그들은 정신적으로 위축하여 자포자기될뿐 아니라 경제생활 상태는 볼품도 없이 영락(零落)해진 상태였다.

철종(哲宗)도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그 날 그 날의 생활이 궁핍한 가정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 영은부원군 김문근(永恩府院君 金汶根)²¹²⁾의 딸을 왕비로 맞았으므로 세도는 물론 정권의 일체가 노론파인 안동김씨 일족에게로 자연히 온존(溫存)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왕가의 척족에 대한 박해는 가혹해지고 그 경향은 더욱 증대했다.

그 일례를 들면 철종 11년(1860) 11월, 종친 경평군 이세보(慶平君 李世輔)는 척신(戚臣)의 거두 김좌근(金左根)·김문근 등을 중상·비방했다는 이유로 작위(爵位)를 박탈 당하고 족보(가문의 系圖)를 단절 당해 완도군신지도(莞島郡薪智島)에 유배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척족들의 작위적(作爲的)인 작태였다.

철종 2년(1851) 1월 채희재(蔡喜載)²¹³⁾, 김응도(金應道) 일당의 모반사건을 비롯해서 동4년의 11월, 김수정(金守禎) 등의 모반사건, 동 13년(1862)에는 김순성(金順性) 일파의 반란사건이 잇따랐다. 그리고 철종 11년(1860)에는 돈의문(敦義門, 서대문의 原名)에 「이씨왕조가 지금 타성

212) 1801~63, 호는 魯夫.

213) 정조 때의 영의정, 채제공의 증손.

(他姓)에게 위협을 받고있으므로 조속히 그 화근(禍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벽보가 붙여질만큼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왕실의 근친이나 외척이 권세를 잡아 멋대로 하는 정치)가 행해졌다.

도정관(都正官)²¹⁴⁾인 이하전(李夏銓)²¹⁵⁾은 왕가의 준영(俊英)으로써 주목 받아 영의정인 권돈인(權敦仁)의 지지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왕위 계승의 후보자로 여겨졌던 인재이다.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인가 척족 일문의 시기와 적개심을 사는 목표가 되어 끝내 인생의 파국을 맞게 되었다. 철종 13년(1862) 7월 영상(領相: 수상) 권돈인이 진조천례(眞祧遷禮)를 논한 것이 화가 되어 정계로부터 추방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오위장(五衛將)²¹⁶⁾ 이재두(李載斗)의 무고에 의해 이하전의 최후의 날이 왔다. 이하전은 그 지지자 김순성·이공산(李兢山) 등과 함께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의 죄명으로 이듬해에 제주도로 유배되어 15일 쯤에 사약형(賜藥刑)이 집행되었다.

원죄(冤罪)를 용서하도록 자꾸 절규되었으나 말할 것도 없이 행차후의 나팔이었다.

<철종실록>

이명혁(李明赫)·최봉주(崔鳳周)

…김수정(金守禎) 등의 모반사건에 연좌됐다고 해서…

철종 4년(1853) 11월에 김수정(金守禎)들의 모반미수사건이 일어났다. 주모자인 김수정은 「대역부도죄」로 참수(斬首)되고 그 음모에 가담한

214) 종친부돈녕부(宗親府敦寧府)로 종실·왕실·외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3품의 관직.

215) 完昌君 李時仁의 아들.

216) 수도 경비책임을 담당하는 정3품의 무관직.

이명혁(李明赫)은 동월 25일에 제주목에, 최봉주(崔鳳周)는 추자도에, 이규화(李奎和)는 흑산도에 위리안치의 형에 처해졌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고종(高宗) 원년(1864)의 7월 11일, 이명혁은 제주도의 적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그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리운 고향을 머리에 그리면서 오랜 유배인생을 제주에서 보낸 셈이 된다. 그동안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한때인 최봉주는 고종 3년(1866)까지 추자도에서 외로운 유배인생을 하고있었는데 끝내는 다시 가죄(加罪)되어 전라도 능주목(陵州牧)에 옮겨져서 「대역부도죄」로 능지처참되었다.

<철종실록>

염희영(廉羲榮)

...아버지의 과오사건에 연좌되어...

염희영(廉羲榮)은 철종 12년(1861) 11월 15일, 아버지인 종수(宗秀)²¹⁷⁾ 사건에 연좌(緣坐)하여 제주목의 관노(官奴)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는 고종 원년(1864), 조대비의 특사에 의해 석방되어 귀경하고 있다. 적소 생활이 2년 8개월에 이른다.

<철종실록>

백낙신(白樂莘)

...탐학불법죄(貪虐不法罪)에 의해...

중앙의 정치기강의 혼란은 곧 지방의 행정·재정의 난맥을 초래했

217) 당시 三道兵使.

다. 이래서 지방의 수령이나 이서(吏胥·鄉吏)·아전(衙前)²¹⁸들의 부정·잔학(殘虐)스러움은 19세기의 세도정치 아래 현저히 격심해져 갔다. 그에 따라 철종조(哲宗朝)의 말기가 되자 국가의 3대 재정기반이라고도 할, 「삼정(三政)」이라고 불리우는 전정(田政·田稅)·군정(軍政·軍布)·환정(還政·還穀)의, 국가재정의 수취체제(收取體制)가 극도로 문란했다. 대개의 경우 증회(贈賄)로 관직을 손에 넣은 수령들은 지방출신의 하급관리(吏胥)와 결탁하여 지방의 토지대장과 호적장부의 정리를 고의로 해태하여 황폐전(荒廢田)에서 징세(徵稅)한다든지 죽은 사람에게 군역세(軍役稅)를 부과하여,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미곡(米穀)의 취급을 속였다.

이와같이 지방관과 양반권세가나 토호(土豪)들이 간활(奸猾)한 아전·이서들과 결탁하여 사익(私益)을 탐내는 부정·부패가 격화함에 따라 농민생활의 궁핍과 불안은 더욱 심각화되어 갔다. 농민은 인권을 무시당하고 가렴주구(苛斂誅求)²¹⁹의 박해에 울지않으면 안되었다. 어떤 세상에도 이런 악마와 같은 인간이 있어, 보이지않는 거미줄을 쳐서 양민을 괴롭히고 부정하게 얻은 돈을 잡고 싱글벙글하지만, 조선 말기에도 이런 건달들이 횡행한 것은 슬픈 사실이다.

그러나 기아(飢餓)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언제까지나 압제(壓制)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정(三政)」의 난리나 탐관오리²²⁰의 가렴주구는 드디어 빈곤과 절망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저항의 전선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두 번의 민란(民亂)을 비롯해서

218) 지방의 하급관리.

219) 세금 같은 것을 모질고 심하게 받아낸다.

220) 부패한 관리.

전국각지에서 30여건의 민란이 잇따라 발생했다. 그 중에서 주된 것만 골라보면, 경상도(13건), 전라도(8건), 충청도(5건) 등이 있으며 또 철종 원년(1850)부터 동 9년(1858)에 이르는 사이에 불법 수령의 적발건수는 거의 390건에 오른다. 즉 경상도(117건), 강원도(19건), 황해도(25건), 전라도(89건), 충청도(46건), 경기도(21건), 평안도(47건), 함경도(20건)으로 되어있다. 이것으로도 농민들에 대한 지방관의 포악스러움을 살펴볼 수가 있다.

철종 13년(1862) 3월 18일 우선 진주(晉州·경상도)에서 대규모의 농민 폭동이 발생했다. 그것이 이윽고 전국적인 농민봉기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진주의 민란은 3월 18일 진주 읍내에 모여든 수만의 반란민중이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목봉(木棒)을 들어 지방관현의 불법적 박해와 탐학(貪虐)을 규탄, 부자와 향리(鄕吏)들 집에 불을 지르고 이어 관청을 파괴하며 간리(奸吏) 등을 살상(殺傷)하든지 부정한 공문서를 불태우는 등 격렬을 극한 것이었다. 봉기한 민중의 최대 공격목표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서 새로 부임한 백낙신(白樂莘)의 지나친 포학(暴虐)함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는 온갖 명목으로 거액의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해서 사복(私腹)을 살찌우고 수만량의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으로 민중의 재물을 빼앗았다.

정부는 이 민란의 보고를 듣고 우병사(右兵使:兵官) 백낙신과 진주목사 홍병원(洪秉元)을 파면하고 그 지방에 사신을 파견하여 민중을 진정(鎮靜)시켜 실정을 조사, 보고토록 했다. 「임술록(壬戌錄)」에 「금차진주란지기노(今此晉州亂之起鬧) 전유어전우병사(專由於前右兵使) 백낙신탐철침학지고시백호(白樂莘貪婪侵虐之故是白乎)」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당시 실정을 조사시키기 위해 파견된 안핵사(按覈使)²²¹가, 진주민란의 발단

은, 백낙신의 부정·침학(侵虐)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백낙신은 그 죄에 의해 임시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그는 위관(委官: 재판관)으로부터 「탐학불법죄(貪虐不法罪)」²²²⁾로, 동년 4월 전라도강진현고금도(康津縣古今島)로 유배됨과 동시에 범장물(犯贓物)은 법조(법무부)에 남김없이 몰수되었다.

그로부터 얼마없어 백낙신의 범죄는 단순한 유배로서는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져 갔다. 정부도 할 수 없이 그를 배소선(配所先)에서 서울로 호송해와 재심(再審)했다. 그 결과 그는 제주목에 위리안치되는 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전리방축(田里放逐)²²³⁾되고 있다.

<壬戌錄·韓國村落社會연구>

김시연(金始淵)

...민란의 책임을 물어...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나서 40일째에 충청도 익산(益山)에서도 불길이 올라 농민을 기축(基軸)으로 하는 민란이 발생했다. 거의 때를 같이 해서 민란은 삼남(三南) 일대에도 번져 경상도의 개녕(開寧)·인동(仁同)·성주(星州)·밀양(密陽)·함양(咸陽)·선산(善山)·상주(尙州)·거창(居昌), 전라도의 함평(咸平)·고산(高山)·부안(扶安)·김구(金溝)·순천(順天)·장흥(長興)·충청도의 회덕(懷德)·연산(連山)·공주(公州)·은률(恩律) 등의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221) 지방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관직.

222) 재산을 불법수단으로 이루고 백성을 괴롭힌 죄.

223) 관직을 박탈해서 향리로 추방하는 형이지만, 이것은 주로 유형(流刑)에서 감형(減刑)될 때 쓰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란의 양상에는 한결 같이 공통의 성격이 보인다. 그것은 익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원시적인 무기로 무장한 3천여의 군민이 군청을 습격해서 군수인 박희순(朴希淳)은 4천량(兩)을 불법으로 수탈했다고 해서 내쫓겨졌다.

그 때 전라도 감사(監司)였던 김시연(金始淵)²²⁴은 민란이 발생하자 즉시 익산(益山)군수를 파면하고 죄상을 지적하면서 엄벌에 처하도록 왕에게 장계(狀啓)²²⁵했다. 그것은 동년 4월 1일의 일이었다. 그 보고를 받은 의정부²²⁶는 당황하여 제빨리 부호군(副護軍)²²⁷ 이정현(李正鉉)을 익산군안핵사로 임명하여 현지에 급파시킴과 동시에 전라도관찰사도 또 김시연을 면직하고 새로이 정헌교(鄭獻敎)를 전라감사에 임명함으로써 긴급사태의 수습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격노한 민중은 그런 미지근한 미봉책에는 까딱도 안했다. 사태는 더욱 악화의 일로를 더듬어갔다. 이렇게 되자 정부로서도 민중의 봉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지에 있어서의 삼정(三政)의 혼란과 지방관리의 부패·부정·침학(侵虐)의 사실을 인정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패정치를 개혁하는 전제조건으로 각군 수령을 처벌함과 동시에 민란의 정치적 책임을 김시연에게 지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동년 5월에는 장령(掌令)인 정동도(鄭東道)가, 6월에는 집의(執義)인 윤치현(尹致賢)이 각각 상소하고 이어 익산안핵사 이정현이 장계했으며 그 위에 양사(兩司)²²⁸으로부터 김시연에 대한 엄정한 처단을

224) 延安金氏, 자는 元初.

225) 지방관의 서면보고.

226) 조선 행정부의 최고기관.

227) 五衛에 속한 정4품의 무관직.

228) 사헌부·사간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청죄(請罪)의 상소가 뒷따랐다. 그 때문에 그는 7월 10일, 제주도로 유배되어 1년간 위리안치라는 냉혹한 생활을 보내고 이듬해의 7월 30일께 전리축방(田里逐放)된 것이다.

그런데 그 해의 12월 8일 철종이 서거하여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익종(翼宗)의 비 조대비(趙大妃)²²⁹⁾가 수렴(垂簾)정치를 하게되자 경기도 고양(高陽)에 방축중인 김시연을 다시 체포해서 제주도에서 위리안치하라고 의금부에 명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이듬해 1월 10일의 일이었다.

그는 3월 12일 제주도로 다시 호송되어 또 다시 가극형(加棘刑)에 처해지는, 중범(重犯)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또 이듬해의 1월 1일에 전리방축되었다. 그리고보면 그는 전후 만2년간을 가시로 둘러싸인 제주 적사에서 냉혹한 금단(禁斷)의 생활을 보낸 셈이 된다. 다행히 그는 그 후 다시 관으로 돌아가 형조 판서까지 영전하고 있다. <철종실록>

229) 趙万永의 딸.

고종조(高宗朝 · 재위 1863~1907)

영(英) · 정(正) 두 왕의 정치정화와 윤리확립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권력 쟁탈의 보기 흉한 당쟁의 폐해는 크게 완화되었다. 이에 이어 일어선 것이 순조(純祖)이며 그 다음의 헌종(憲宗) · 철종(哲宗)의 두 왕은 모두가 어렸기 때문에 외척이 정권을 좌지우지 했지만 다행히도 그 전의 각 시기에 보았던 것과 같은 참극(慘劇)은 보지않고 지날 수가 있었다. 이는 오로지 앞의 두 왕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팔역지(八域志)」의 저자 이중환(李重煥)²³⁰⁾은 말한다. 「성기혈투(盛氣血鬪)의 습속은 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나 위미(萎靡)²³¹⁾ · 퇴타(頹沓)²³²⁾ · 연숙(軟熟) · 유활(柔滑)²³³⁾의 새로운 병이 생겨, 공적 좌석에서 조정의 일에 말이 미치게 되면 조금도 모 나는 애기를 얹으며 만당에 웃음소리만 들린다. 정사를 보는 데는 이기(利己)를 도모하고 진정으로 우국봉공(憂國奉公)을 하는 자가 적으며 관작을 우습게 보고 재상(宰相)은 중용(中庸)을 현(賢)으로 보며 삼사(三司)는 침묵을 높이 보고 지방관은 청렴(淸廉)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니 침침하기만 하여 어쩔 수도 없구나, 고 한탄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선비들이 지위와 생명을 걸고 당파를 위해 싸웠던 기개가 소침(消沈)해서 이기(利己) · 비굴(卑屈) · 타약(懦弱)에 빠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당시 인심의 동향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해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최초의 10년간은 대원군이 정

230) 영조조의 實學者, 호는 淸潭.

231) 시들고 느슨해짐.

232) 쇠약하고 나태함.

233) 부드럽고 매끈하다.

치를 총괄했다. 당시는 전조(前朝)로부터 잇따라 노론(老論) 전성(全盛)의 시기로, 소론(少論)은 약간 채용됐지만 남인·북인 같은 것은 거의 외면당했다.

1864년 국민의 대망(待望) 속에 등장한 대원군인만큼, 그 자신도 중대한 각오와 결심 아래 정체위축(停滯萎縮)되어있던 국정의 타개를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성이 강의과감(剛毅果敢)하며 총명 기민했던 그는 불우했던 젊은 때로부터 외척 전횡(專橫)의 이면(裏面)과 만백성의 격정과 괴로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체험하고 있었던 만큼 서정(庶政) 개혁에는 용기와 결단을 잘 발휘했다.

그는 우선 인사행정의 개혁에 착수했다. 사색당파(노론·소론·남인·북인)와 지방차별을 철폐하고 노론·소론을 눌러 남인·북인을 등용함과 동시에 이때까지 요직에 붙을 수 없었던 서북(西北)인사와 개성왕씨(開城王氏)의 자손까지 등용했다. 인사에 있어서는 사적(私的)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젊었을 때 자기를 구타한 이장림(李章瀾) 같은 무인(武人)까지도 일약 금위대장(禁衛·近衛大將)에 발탁한다는 일막도 있었다. 이와같이 그의 대영단에 의해 인사행정면에 있어서는 구투악습(舊套惡習)이 크게 개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 11년(1874)에 외척인 민승호(閔升鎬)·겸호(謙鎬)·규호(奎鎬)·대호(垓鎬) 등의 무리가 실권을 잡아서부터는 모처럼 대원군의 탕평책에 의해 등용된 남인·북인들은 「운변(雲邊)」²³⁴⁾이라고 해서 고위·현직(顯職)은 허용하지 않고 주로 노당(노론)만을 우대했다. 그것도 민족(閔族)이거나 또는 민씨와 인연이 깊은 자가 아니면 채용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민당(閔黨)」의 「운변」에 대한 박해는 지독하여 이른

234) 대원군이 雲峴宮에 살고있었으므로 그 당을 운변이라고 했다.

바 「계미팔가(癸未八家)로서 판서(대신) 조병창(趙秉昌), 그 아들인 참판 채하(采夏), 승지 이원진(李源進)(이상 4인은 소론), 판서 이회정(李會正), 판서 임응준(任應準 : 소북) 참관 정현덕(鄭顯德 : 남인), 승지 이재만(李載晩 : 노론) 등 8인이 참살(慘殺)되고 그 밖의 사족(士族)²³⁵ 이서(李胥) 이하는 연좌되어 처형된 자도 많다.

따라서 그 간의 당쟁이라고 하면 오로지 「운변 대 민당」으로 그 험악한 정쟁(政爭)과 유혈의 내홍(內訌)은 국가 민족을 위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태였을까.

1894년 6월 26일, 왕명을 빌어 대원군 주재 아래 일본측의 요구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신설되고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단행되었다. 의안(議案)으로 「문벌 · 양반 · 상민 등의 귀천을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한다」가 의결 · 공포되었다. 이렇게 해서 싫든 좋든 당파에 의한 채용이라는 폐풍(弊風)은 타파되고 개화의 풍조에 젖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심이택(沈履澤)

…정부미(政府米)를 부정유용(不正流用)한 죄목에 의해…

심이택(沈履澤)은 조선 말의 세도가문인 청송심씨(靑松沈氏)의 후예로 철종 말기에 형조판서를 지낸 의린(宜隣)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영의정 ·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²³⁶ 등 한 때 정계를 주름잡은 순택(舜澤)은 그의 친형이다. 심순택은 청송군(靑松君)에 봉해졌는데 이는 조선에서 생전에 공(公)에 봉해진 첫 케이스이다. 그는 철종 8년(1857) 정시병과(

235)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양반.

236) 별격 고관의 하나로 왕비 · 황태후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직위.

庭試丙科)에 급제, 관도(官途)로 나가 육조(六曹)²³⁷⁾의 판서·성균관대사성(大司成)·판의금부사·홍문관제학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이른 바 고종 중기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심이택이 어찌서 제주도에 유배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종의 즉위 후 암행어사인 이응하(李應夏)가 의주부(義州府) 관내를 잠행(潛行)하면서 관리의 부정행위나 민정을 살폈을 때, 의주(義州) 부윤(府尹)²³⁸⁾이었던 심이택의 포박한 짓을 적발하고 「탐람불법죄(貪婪不法罪)」로 처벌해야 된다고 장계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섭정(攝政) 조대비는 곧 그를 검거해서 취조하도록 의금부에 명했다. 의금부가 그를 붙잡아 사실 유무를 엄중히 추궁한 바, 거의 전면적으로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그를 종로에 끄집어내어 공개태형(笞刑)을 집행한 후 곧 제주도로 보내져 위리안치에 처해졌다.

그래서 암행어사의 보고 내용을 봤더니 의주부(義州府)에 대여(貸與)된 양곡이 모자람으로 그는 군량(軍糧)을 부정 유용했다. 그 때문에 보유미(保有米)는 날로 줄어갔다. 그래서 그는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 농민들로부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공출(供出)을 강제하거나 그들이 속해있는 관청의 세곡(稅穀)이나 세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등으로 해서 농민이 도탄(塗炭)의 괴로움을 맛보게했다.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실수(實數)에 맞는 세액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상신하고 있다.

당시 농민에 대한 미곡의 대여(還穀)는 지방관청의 재정이 궁핍해짐

237) 吏·禮·戶·刑·兵·工.

238) 현재의 시장급.

에 따라 관청의 재원으로서 일찍부터 영리수단으로 되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중앙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즉 쌀의 대여제도는 관영의 「고리대금(高利貸金)제도」로 변질해 있었다. 그러나 빈번히 되풀이되는 재해 등으로 곤궁해진 농민은 「고리대금」과도 같은 부채를 생각대로 상환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식까지 원래의 대여미에 가산되어 말하자면 복리계산으로 부채만 가중되는 짜임새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관청마다의 대여미의 보유량은 장부상으로만 계산되어 실제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허위의 기록으로 되어있었다. 이 맹점이 수령이나 간리(奸吏)들이 대여미를 복잡하게 조작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 이 고리대금적인 영리행위는 관리의 사욕에 의해 고리대금적 자본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았다. 그것은 농촌사회의 몰락을 더욱 촉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심이택은 또 의주부윤이라는 수령의 지위를 악용하여 정부의 대여미를 자본으로 해서 고리대여를 하여 사복(私腹)을 살찌운 반면에 국가의 수취(收取)제도를 일층 혼란시킨 것이 암행어사에게 적발 당한 것이었다. 그가 제주도에 위리안치된지 사흘만에 그의 부친도 또 사판(仕版)²³⁹⁾에서 삭제되어 향리추방의 형에 처해졌다. 이유는 인현왕후(仁顯王后)²⁴⁰⁾의 옛 집(感吉堂)을 자기 주거지로 했을뿐 아니라 정부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수리해서 노복(奴僕)들을 살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양사(兩司)로부터 심하게 탄핵되었다. 드디어 그에게 향리 추방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자 조신(朝臣)들은 일제히 그의 죄

239) 관리의 명부.

240) 조선조 19대 숙종의 비.

를 재심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그는 공주목(公州牧)에 유배된 것이다. 심이택은 제주에 도착하자 인정사정없이 가극형(加棘刑)에 처해졌다. 그는 고종 2년(1865) 1월 15일, 향리추방될 때까지의 1년 8개월간을 마치 구멍과 같은 집에 격리되어, 고향에 있는 처자식을 그리워 하며 고독한 날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5년 2월에 전리방축(田里放逐)의 죄까지 풀려 다시 관계로 복귀, 승진을 거듭하여 공조판서(工曹判書)²⁴¹⁾ · 한성부윤(漢城府尹)까지 역임하는 등 동28년(1891)까지 화려한 양반 관료생활을 보내고 있다.

<고종실록>

정만식(鄭晩植)

...정씨정권(鄭氏政權)을 꿈 꾸다가...

19세기에 들어서서 외척의 세도(勢道)가 심해지고 기강이 더욱더 혼란해짐에 따라 민심도 위정자로부터 멀어져나갔다.

순조대(純祖代)에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한 꾀서(掛書: 벽보)사건이나 비기(秘記) · 참설(讖說)의 유행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조정을 비방(誹謗) · 저주(詛呪)한다든지 또는 왕조의 쇠망(衰亡)을 암시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 속에는 노래가 되어 일반민중 사이에 유포된 것도 있다.

그러한 민심의 동요는 1812년 초에 발발한 「홍경래(洪景來)의 난」 이후 거의 전국적이며 계속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기강의 혼란은 수렁이나 향리 · 토호들의 부정 · 부패를 더욱더 자극했을뿐 아니라 거

241) 상공대신.

들되는 재해와 역병(疫病)의 유행은 농민들을 더욱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이와같은 사회불안은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비기나 참설이 민중 사이에 유포케되는 온상이 되었다. 정부는 최후까지 민란의 발생을 막는 발본책(拔本策)을 세울 수 없어 일시적인 수단으로 시종했다. 따라서 사회의 불안과 민심의 동요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한층 더해갈 뿐이었다. 이러한 사회정세가 일부의 민심을 천주교에로 끌어들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정감록」은 이씨왕조의 신경을 건드리는 금단(禁斷)의 글이었다. 즉 이씨조선은 5백년 후에 멸망하고 새로이 정씨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鷄龍山)에 신 도읍²⁴²⁾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조씨(趙氏)의 가야산(伽倻山), 범씨(范氏)의 완산(完山), 왕씨시대가 차례로 도래한다는, 일토당토 않은 유언비어를 민간에게 유포시킴으로써 민심을 현혹했다.

이와같은 예언사상은 현실 부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치적·사회적 불만은 이 「비기」에 의해 표기되고 그것이 다시 반란에 이용되었다. 선조 22년(1588)의 「정여립(鄭汝立)사건」을 비롯해서 정조 9년(1785)의 홍복영 옥사(洪福榮 獄事), 고종 5년(1868)의 정덕기(鄭德基) 반란 사건은 그 모두가 정감록의 비기를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고종 7년(1870) 8월에 일어난 정만식(鄭晩植)·이필제(李弼濟) 등의 모반사건도 또한 수령·향리의 주구(誅求)와 토호의 전횡에 의한 사회불안 아래, 「정감록」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신분은 확실치 않으나 정만식·이필제 등은 사족(士族)의 후예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종 6년(1869) 12월의 어느날 그들은 경상도 고운현(高雲縣)의

242) 이른 바 木子亡奠邑興.

강가에 있는 박만원(朴晩源)의 정각(亭閣)에 모여 모의를 했다고 한다. 「조선 말년에 정씨의 진인(眞人)²⁴³⁾이 나타나면 이씨가 멸망하고 정씨가 그에 대신하여 정권을 잡게된다」고 하는 참설을 광범하게 유포시켜서 진주·통영(統營)²⁴⁴⁾ 지방을 점령하는 농민폭동의 수순을 용의주도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그게 사전에 발각되어 끝내 실패했다. 그 때문에 정만식은 체포되어 제주목 추자도(그 당시는 전라도)에 유배되어 「정씨정권」은 꿈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는 20여년간 이 섬에서 살을 에이는듯한 외로운 유배인생화를 보내었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그 때 일망타진되어 전라도에 산재하는 여러 섬에 각각 유배되었던 것이다.

<承政院日記>

최익현(崔益鉉)

...대원군의 독재정치를 격렬하게 탄핵한 때문에...

조선 말기에 수 많은 정치범이 제주도에 유형수(流刑囚)로서 보내져 왔지만 그 적객(謫客)들의 유배사실은 뜻 밖에도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최익현(崔益鉉)만은 조선 중엽에 유배된 김정(金淨)·정온(鄭蘊)·송시열(宋時烈)의 삼사(三士)와, 말엽에 유배돼온 김정희(金正喜)·김윤식(金允植)·이승오(李承五)·박영효(朴泳孝) 등 사사(四士)와 더불어 도민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최익현(1833~1906)은 자를 찬겸(贊謙)이라 하고 호를 면암(勉庵)이라고 했다. 경기도 포천(抱川)에서 태어났는데 최대(崔岱)의 아들이다. 그는

243) 道敎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244) 경상도지방.

25세 때, 즉 철종 6년(1855) 을묘정시병과(乙卯庭試丙科)에 합격하여 관계에 들어가, 성균관전적(典籍)·사간원정언(正言)·사헌부지평(持平)·조선정랑(吏曹正郎) 그리고 신창현감(新昌縣監) 등 약 12년간의 관리 생활을 보내다가 고종 3년(1866) 5월 어머니 상을 만나 일단 관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항로(李恒老)²⁴⁵⁾의 고제(高弟)이며 유림의 중진으로서 문도(門徒) 수천이라고 일컬어졌다.

당시 당파나 족벌세력의 배경을 전혀 갖지 않은, 몰락 왕족의 몸으로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²⁴⁶⁾은 전제적 탄압정치-외척 김씨 세력의 배제·양반세력에 대한 탄압·천주교에 대한 박해·경복궁의 재건과 노역의 강제-를 강행한 때문에 척족(戚族)·양반세력은 물론 일반국민으로부터도 적잖은 반감을 사고 있었다.

철종시대에 정권을 독점하고 있던 안동김씨의 일족은 대원군이 정권의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배제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원군과는 적대관계에 있었다. 거기에다 정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지배하게되었던 풍양 조씨 일파도 대원군의 과도한 전제정치를 좋아하지 않았다.

양반계급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그 정책, 특히 지방의 유생들의 본거지가 되어있던 서원(書院)을 강제적으로 철폐한 일이나 양반에 대해서도 호포(戶布:軍布)를 징수하기로한 일 같은 것은 전국의 양반이나 유생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천주교를 박해했을 때의 처참한 살육(殺戮)은 국민을 전율과 공포 속으로 떨어뜨렸고 대공사를 위한 과도한 징세와 악화(惡貨)의 남발 등은 사회경제면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같은 사면초가 속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에 처해

245) 1792~1868, 호는 華西.

246) 1820~98, 李昰應.

있던 대원군의 전제의 뒤에서는 민비(閔妃)²⁴⁷⁾를 중심으로 하는 또한 별도의 새로운 외척세력이 대두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정권을 잡자 제빨리 척족에 의한 세도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우선 고종의 왕비로 일부러 자신의 처의 집안으로서 몰락해 있던 민치록(閔致祿)의 딸(명성왕후)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대원군이 국정에 바빠 돌아다니는 사이에 민비와 그녀의 친오빠이면서, 양자로서 민치록의 가계를 계승한 민승호(閔升鎬)를 중심으로, 반(反) 대원군의 세력이 은연히 성장하고 있었다.

마침 그 때 대원군이 추진하고 있던 대토목공사와 수렴(收斂)정치에 대해, 그 집권 초기부터 경복궁의 중건(重建)에 따른 악세(惡稅)의 징수는 민생을 죽이는 것이라, 즉시 이를 중지하여 대원군을 퇴위시키라고 반대운동의 봉화를 든 이항로의 문인 최익현은, 은사의 뜻을 받들어 대원군의 전제정치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해 나갔다.

최익현은 고종 5년(1868) 9월에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되었지만 소(疏)를 올려 그것을 사퇴했다. 그 상소에서 익현은 시폐(時弊) 4항목을 들어 논했다.

1. 경복궁의 무리한 중건을 중지하고 만백성을 이 이상 괴롭혀서는 안된다.
2. 원납전(願納錢)²⁴⁸⁾을 폐지함과 동시에 수렴을 중지하라.
3. 당백전(當百錢)의 제도를 없애라.
4. 도성 4대문을 출입할 때 징수하는 성문세(城門稅)를 폐지하라.

고 하는 언론의 극한을 다한 사직소(辭職疏)를 상주(上奏)한 때문에 그

247) 고종의 비.

248) 기부한 자에게는 관작을 주기로 한 것.

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 당한 것이다. 경복궁의 대공사에는 제주도민도 징발(徵發)되어있는 것 같았다.

갑자(甲子) 4월 사흘의 날
경복궁의 대보청(大普請)
석회(石灰)를 쪼던 그 소리다

이 노래는 경복궁의 토역(土役)에 다녀온 섬의 남자들이 우연히 비슷한 토역을 만나 왕년의 대보청²⁴⁹⁾을 회상하여 불렀던 것이다.

민씨 일파와 일맥상통하고 있던 최익현은 고종 10년(1873)에 한 날 유생으로서 대원군의 실정(失政)을 격렬히 비난하고 이어 동년 10월 10일, 수천단어에 이르는 「5조대의(五條大義)」라고 하는 일대 상소²⁵⁰⁾를 올려 국사(國事)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원군을 정면으로부터 규탄했다. 그것은 ①만동묘(萬東廟) 및 서원의 철폐 ②북인·소론·남인 등 정적(政敵)의 신원(伸冤) ③원납전의 폐지 ④왕실·종친의 정사 개입의 배격 ⑤왕의 친정(親政) 등인데, 그는 「대원군의 섭정은 이미 10년을 겹쳐 국왕은 성인이 되었으므로 그 영지(英智)·인덕(仁德)으로서 베푸는 것이 지당하다」고 직언(直言)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 그 녹(祿)을 두텁게 한다 해도 국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것은 대원군의 섭정(攝政) 봉환(奉還)을 진언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드디어 왕명에 의해 구현되었다. 그러나 대원군을 대신하여 민씨정권이 등장함과 동시에 조선 말기의 저 구제불능(救濟不能)인 망국(亡國)의 비극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최익현의 상소는 「상소논쟁절박(上疏論爭切迫)」이라고 되어있듯이 당

249) 널리 시주를 청하는 것.

250) 이것에는 많은 유생의 공동서명이 있었다.

시로서는 단단히 결심한, 자극적인 것이었다. 그는 상소로부터 8일째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²⁵¹에 임명되었지만 사헌부 집의 권중록(權鐘錄) 등이 그 상소를 논박하여, 익현을 「범상(犯上)의 죄인」으로서 유배에 처해야 한다는 탄핵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사직하여 시골로 돌아가 사서(史書)를 갖고 즐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그에게는 제주도에서의 위리안치의 형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11월 11일에 「양사우연차(兩司又聯筭) 청주최익현(請誅崔益鉉)」이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양사에서는 그의 참형(斬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대원군의 세력이 쇠퇴하고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유배형은 대원군 일파의 테러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보전책이었다고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실치가 않다. 그가 유배의 명을 받은 것은 동월 9일이며 제주목에 호송된 것은 그 이틀 뒤이다. 그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그의 적소는 성내 칠성동(七星洞)의 윤규환(尹奎煥)의 집이었는데 지방유생들에게 많은 교화를 주고 있다. 해방 직후 애국적 인사들이 면암유적지에서 성대한 추도식을 올렸다고도 한다.

「우재적허비(尤齋謫墟碑)」라는 제목으로 면암 최익현은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一宿楚山感慨多 余心到此更如何
種董編禮當年事 猶有清水拂面過

초산에서 하루밤 묵으니 감개가 많구나
이 곳에서 온 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는가
생강을 심고 예서를 편찬했던 그때의 일
오히려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네

²⁵¹) 정3품관.

당시의 제주목사 이복희(李宓熙)는 익현이 제주목에 유배된 이듬해 7월 살인사건에 관련된 수회(收賄)사건이 발각되어 파면되고 그 후임에 민비정권으로부터 이희충(李熙忠)이 파견되어 왔다. 따라서 면암은 대원군의 무모한 정책을 반대했을뿐 아니라 왕과 중전(中殿)²⁵²에게 신임 받고있던 유학의 거두인만큼 적객(謫客)이라고는 하나 그들에게 각별히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동년 11월 최익현에게 엄형(嚴刑)을 주장한 때문에 영돈령부사 홍순목(洪淳穆)·좌의정 강로(姜澔)·우의정 한계원(韓啓源) 등의 수뇌가 해임된 사건을 보아도 민비정권이 얼마나 최익현의 존재를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원군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외척 안동김씨의 문중으로부터 김병국(金柄國)²⁵³을 영의정에 기용하고 그가 유배중인 익현을 석방한 일로도 그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는 고종 12년(1875) 2월 9일 특사령에 의해 석방되었다. 유배로부터 만1년 3개월만의 일이다. 옛날부터 이름있는 학자가 섬에 건너오면 유생들은 기꺼이 그들을 맞아들여 가르침을 청했던 것이다. 그것이 적객이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접촉하여 경의를 담아서 배우는 것이 유생들의 일치된 바람이었던 것이다.

최익현은 귀경 날짜를 늦춰서 한라산에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의 「한라산기(漢拏山記)」의 개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현 제주시오라동에 사는 선비 이기온(李基璫·橘巖), 말하자면 이응호(李膺鎬)의 선친과 3월 7일에 청장년 10여명 및 5~6인의 하인을 데리고 남문 밖을 출발하여 대자연과 천고(千古)의 역사를 방불케 하는

252) 왕후.

253) 1825~1909, 호는 景用.

한라산으로 향했다. 익현의 일행은 우선 이름이 있는 방선문(訪仙門)²⁵⁴⁾을 찾아 눈앞에 벌어진 갖가지 광경에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렸다. 이끼 낀 푸른 절벽이 양쪽에 솟아있으며 웅덩이그렇하니 구멍이 열려있는 것이 마치 문과 같이 떠올려지고 있다. 암반 위는 넓은 잔디밭으로 수십명이 앉을 수 있으며 주변에는 청석(淸石)이나 흰돌이 곱게 빛나고 있어 황홀하게 느껴진다. 바위 그늘의 철쭉의 꽃송이도 아름다우며 암반의 하상(河床)을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장관에 황홀했었다고. 처음 이곳을 보는 그는 정말로 기묘한 절경(絶景)이라고 「한라산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익현은 선인(先人)들이 새겨놓은 「방선문(訪仙門)」·「등영구(登瀛邱)」라는 여섯 글자와는 별도로 여섯 자를 써놓고 있다. 그러는 중에 석양은 잔뜩 저물어 일행은 방선문에서 동쪽으로 약 10리 가량 떨어진 죽성(竹城)이라는 마을에서 하루 밤을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곧 비가 올 것 같이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익현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이 들지않아 이리저리 뒹구는 사이에 언젠 줄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보니 날씨는 간밤과 변함없이 짙은 안개가 끼어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10명중 8~9명이 일단 되돌아가서 새로 날을 보아 오르는 게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익현은 그에 상관하지 않고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국 한 그릇을 배에다 흘려보내고는 갑자기 말에 채찍질하며 달려나가자 모두가 내키지않으면서도 따랐다. 험악한 산길을 5리 가량 가자 높은 언덕에 이르렀다. 거기서 말을 돌려보내고 걸어서 오르기로 했다. 그 때 햇별이

254) 현 제주시 연동.

순간적으로 바다를 비치는가 했더니 차츰 운무(雲霧)가 개이면서 산의 모습이 뚜렷히 떠올랐다. 그는 하얀 숨을 내뿜으면서 길이 없는 길을 기어올라 겨우 산정에 다다랐다. 그 순간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엔 말이 없었다. 보아하니 커다란 못(백록담)에 푸른 하늘이 녹아들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仙境(仙境)에 있는 느낌이다. 그는 여기서 더욱 감격스러운 감회를 이렇게 말했다. 「한라산의 산정에 서 보니 평평하게 넓혀진 기슭에 배넛머리 같이 부드러운 푸르름이 희미하게 스며 있고 그다지 시계(視界)가 어둡지않아 인간세계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하늘로부터는 성좌(星座)가 가까워오고 아래로부터는 천계(天界)를 우러러볼 수 있다. 오른쪽 아득한 바다 멀리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고 망막한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웅대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내륙(內陸)이 대기하고 있다. 「남쪽나라의 바다는 넓구나!」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만큼 가슴 부푼 느낌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다. 물결이 반짝거리는 바다 위에는 갯가지 섬이 바둑알 같이 산재하고 있으며 커다란 섬은 마치 조각구름과 같고 섬은 새알 같이 보인다.

익현의 일행은 백록담 곁에서 갯 지은 점심을 먹은 다음 못의 물을 마셨다. 물은 맑고 맛이 좋다. 모두가 「이게 금정옥액(金精玉液)²⁵⁵⁾이 아니냐」고 감탄한다. 드디어 일행은 함께 하산 길에 나섰다. 개미목(蟻項)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 황혼이 가까워져 그들은 서쪽 2리가량 떨어진 곳에서 노숙(露宿)했다.

그래서 뒷날 「영실기암」이란 데서 기막힌 조망(眺望)을 즐긴 다음 거의 20리쯤 내려간 데서 말을 타고 마중나온 일행과 합류하여 성내

255) 썩 잘 듣는 약이란 뜻.

로 돌아왔다고 「한라산기」에 전하고 있다.

또 그 기록에 따르면 개미목 부근에 삼한(三韓)시대의 봉수대(烽燧臺)가 있으며 백록담으로부터 1리 남짓 북쪽에 혈망봉(穴望峰)이 솟아있고 「마애명(磨崖銘)」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되어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이 시대까지 한라산에는 아득한 옛날의 봉수대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새삼스러히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암벽에 「마애명」이 있다는 것도 이 기록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고보니 유원(悠遠)한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환영(幻影)이 아직까지도 그곳에 남겨져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더욱 흥미 깊은 것은 제주도의 사방을 지형상으로 보아, 섬 사람들은 흔히 한라산의 정점(頂點)을 중심으로 하여 동은 마(馬), 남은 불(佛), 서는 곡(穀), 북은 인(人)이라고 말한다.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굴(屈)·신(伸)·고(高)·저(低)」는 마치 깎아낸 암벽이 층(層)을 이루어 사뭇 불상(佛像)이 서로 손을 맞잡고 늘어선 것 같다. 멀리 넓고 평평하게 퍼져있는 모습은 마치 곡물(穀物)이 흩뿌려진 것 같으며, 팔짱을 끼고 북쪽으로 향해 서 있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훌륭하여 마치 인간과 같다. 따라서 말은 동쪽에 놓고 곡물은 서쪽에 잘 되며 부처는 남쪽에, 그리고 인물은 북쪽에 집중한다. 나라에 대한 지성(至誠)이 다른 지방과 다른 데가 있을까」고 방언(放言)한다.

그는 또 말한다. 한라산은 남쪽 맨끝의 바다에 솟아있어 조선에서 가장 높고 추위도 심하다. 심신이 건강한 자가 아니면 오를 수 없다. 단순히 사람들의 관상에 어울리는 지리산이나 금강산과 같이 봐서는 안된다. 더구나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군사상 주춧돌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섬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도(孤島)로서 우리나라의 관문(關門)이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외적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고 산해진미의 산물이 많아 왕에게 헌상할 뿐 아니라 고관대작으로부터 만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생활필수품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6~7만에 이르는 도민들이 마련하는 생산물로 충분함으로 국민에게 적잖은 이익과 혜택을 주고있다고 찬양한다. 이 시기에 대원군의 미움을 산 남정호(南廷浩)와 박영훈(朴泳薰)도 유배되고 있다.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어있는 사이 나라의 내외정세는 급격히 변화해 갔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제2의 투쟁대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자본주의 열강(列強)은 통상수교를 구실로해서 민비정권에 압력을 가해 왔다. 특히 일본의 정한(征韓)운동은 조선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일반국민의 동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불온한 저류(底流)에 있어서도 민비정권은 국가의 위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사치와 방탕의 생활을 즐기고 또 왕조의 태평을 바란다는 명목아래 불사(佛寺)의 제사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여 국가 정권은 한층 더 궁핍해졌다.

고종 12년(1875) 8월 21일 운양호(雲揚號)의 강화도(江華島) 침입은 처음부터 조선측의 포격(砲擊)을 기대하는 계획적인 양동작전(陽動作戰)이었다. 이것을 국실로 해서 일본은 강대한 근대적 무력의 협박을 배경으로 수교조약(修交條約)의 체결을 민비정권에게 강요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주체의식을 잃은 민비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굴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강화도 담판은 일방적인 게임으로 시종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재기를 노리는 대원군 일

파와 최익현을 필두로 하는 유생들은 강화도 회담의 반대론을 전개하고 주전론(主戰論)이 외쳐졌다. 정부에 있어서는 김병학(金柄學)²⁵⁶⁾ 등 보수파는 척사론(斥邪論)을 강조하고 우의정 박규수(朴珪壽)²⁵⁷⁾ 등은 개국론(開國論)으로 기울어졌다. 민비당(閔妃黨)의 대부분은 대원군 반대의 입장을 고집하여 청국(淸國)의 의견에 맹종하는 개국론에 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앞서 세자책봉사로서 청국에 파견됐던 이유원(李裕元)²⁵⁸⁾이 귀국해서 개국을 주장하면서, 개국을 권장하는 이홍장(李鴻章)의 서신을 국왕에게 올렸다. 여기서 조선의 쇄국정책(鎖國政策)은 하루 아침에 급전직하(急轉直下), 개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드디어 고종 13년(1876) 2월 22일, 굴욕적인 강화조약(丙子條約)은 체결됐던 것이다.

바로 그 한 달 전, 최익현은 「오란망(五亂亡)이라고 하는 척왜소(斥倭疏)를 고종에게 상정하여 다시 천하를 크게 소란케 했다. 그의 주장은 현재의 일본인은 「양이(洋夷)」²⁵⁹⁾와 다름 없다고 하는 「이적관(夷狄觀)」과 강화(講和)가 성립되면 사교(邪敎)²⁶⁰⁾가 유폐된다고 하는 척사론(斥邪論)이 기초가 되어있지만 그 위에 한층 현실적인 역사적 통찰을 가한, 「그들의 물질은 모두 음사기완(淫奢奇玩)의 것, 이에 대해 우리 물화(物貨)는 목숨을 이을만큼의 민명소여(民命所興)의 것임으로 그들과 통상하면 몇 년 안가서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五亂亡의 셋째 항목)」고 되어있었다. 말하자면 강화를 하게되면 장차 집요하게 계속될 일본

256) 1821~79, 호는 穎樵.

257) 1807~76, 호는 桓齋.

258) 1814~88, 호는 橘山.

259) 당시 침투해왔던 歐美人의 총칭.

260) 천주교.

세력의 침투와 그 약탈행위를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일본의 공업제품이 흘러들어 조선의 쌀이 유출(流出)하게 되면 조선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놓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민비정부는 이 개국 반대의 상소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를 체포·투옥하고 동년 1월 27일에 다시 전라도 흑산도에 위리안치의 혹형(酷刑)을 명했다. 그러나 익현의 척사론은 유림을 강력하게 자극했다. 전국 방방곡곡에 통상수교 반대의 소리가 넘쳤다. 이때까지 대원군을 공격하고 친정(親政)을 주장했던 유림까지도 3년도 되기전에 오히려 대원군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를 예찬(禮讚)하는 소리까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풍조는 단지 유림만이 아니라 일반민중에게까지 퍼져 결과적으로 민비일파는 국내·외로부터 위협 받고 점점 괴로운 입장에 몰리게 되었다. 그 위에 고종 17년(1880) 8월, 제2차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²⁶¹⁾ 등 일행이 일본으로부터 귀환하여 도쿄(東京)에서 견문한 일본의 군사·산업·문화의 위대한 근대화를 예찬하고 주일청국공사(駐日淸國公使) 황준헌(黃遵憲)이 저술한 「조선책략(朝鮮策略)」이라는 책을 왕에게 올렸다.

이 서책은 근대적 국제정세를 분석해서 이에 대응하는 조선의 나아갈 길을 해명한 내용의 것이었지만 전국의 유생은 그 책을 민족을 멸망시키고 국난을 초래할 악마와도 같이 배격하고 탄핵하는 소동을 벌였다.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최익현은 만 3년의 형기를 마치고 고종 16년(1879) 2월 9일, 전리방축되었다. 그는 집에 집거하면서 제자의 교육에 정혼(精魂)을 기우려 많은 일재(逸才)를 세상에 배출했다. 제자들은 또 은사의 「위정척사(衛正斥邪)」²⁶²⁾ 사상을 이어받아 침략세력과 잘 싸

261) 1842~96, 호는 道園.

왔다.

그 후 약 20년간 그는 침묵했다. 그러나 고종 31년(1894), 갑오농민 반란(甲午農民反亂)·일본군의 왕궁 점령·청일(淸日)전쟁·갑오개혁 등 내외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중대국면을 맞게 되자 그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동년 공조판서에의 취임명령을 거부했다. 이어 만인연판(萬人連判)의 「만인소(萬人疏)」²⁶³⁾를 올려 개화당 정부의 개국정책을 비난 공격하면서 일체의 제도를 개혁 전의 구제(舊制)로 돌려야 한다고 논했다. 또 정부가 단발령(斷髮令)을 내려 고종이 머리를 자르고, 또한 유길준(兪吉濬)²⁶⁴⁾이 그를 불러 단발을 하라고 했을 때는 「내 목을 자른다해도 이 머리털만은 자를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면서 유길준에게 「금수(禽獸)에게 예(禮)를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까지 극언했다.

반일의병투쟁(反日義兵鬭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김홍집내각에 대신하여 등장한 박정양(朴定陽)내각이 단발을 「사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鎗)을 거두지 않고 기세는 더욱 높아갔다.

1895년으로부터 96년에 걸쳐 민비살해사건 및 단발령에 격분하는 반일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 국왕은 익현을 선유대원(宣諭大員)으로 기용하여 의병의 설득을 맡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의병은 대의(大義)를 따르는 것이라고 찬양하면서 선유의 명령을 거부함과 동시에, 만일 일어서라는 명령이 있으면 의병의 선두에 설 결의(決意)가 있다고 대답했다.

262) 正學을 지키고 邪學을 물리친다.

263) 같은 요구를 내걸고 많은 유학자들이 함께 상소하는 일.

264) 1856~1914, 호는 矩堂.

고종 41년(광무 8년·1904) 2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성립하자 익현은 그것을 성토(聲討)해서 일어섰다. 상소해서 「매국난정(賣國亂政)의 적(賊)」을 단죄하고 정권을 덕망가(德望家)에게 맡겨 서정(庶政)을 개혁하고 왜적을 내쫓으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 상소는 곧 황성(皇城)신문에 게재되었다. 그것을 본 주한공사(駐韓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이에 대해 조선정부에 항의하고 그를 일본헌병대로 구인했다. 익현은 일본의 불의부정을 들먹이면서 헌병대장에게 야단을 쳤다.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永)도 하야시공사에게 엄중 항의하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드디어 일본헌병에 의해 향리로 강제송환되었다.

그 때 그의 가족은 포천(抱川)으로부터 충청도 정산(定山)²⁶⁵에 옮겨져 있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²⁶⁶이 일본의 강제에 의해 체결되자 익현은 동월 29일 「앞서 체결한 한일협상조약은 일본의 협박 아래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농공상대신 권중진(權重鎭) 등이 마음대로 조인한 것이지만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대신(參政大臣)의 인가를 받고있지 않으므로 이 조약은 무효란 것을 일본공사관에게 통첩했다. 동시에 각국의 공사관에도 일본의 강제로 체결한 사실을 성명(聲明)하십시오. 그래서 박제순 이하 오적(五賊)을 「매국의 죄」로 참형(斬刑)에 처해야할 것입니다」고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러나 이젠 그 직언(直言)·간언(諫言)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힘으로 대항하는, 유일한 길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불사조(不死鳥)와 같이 사라질 줄을 모르는 그의 빛나는 투쟁사에 마지

265) 지금의 靑陽郡末面松巖洞.

266) 제2차 한일협약.

막을 장식할 의병궐기의 날이 왔다. 1906년 6월 4일, 그 때 그는 73세라는 고령이었다. 이날 그는 전 군수이며 제자이기도 했던 임병찬(林炳瓚)과 수백의 의병을 거느리고 태인(泰仁)²⁶⁷⁾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기병(起兵)의 봉화를 올렸다. 그는 기병한 사실을 왕에게 상소하는 한편 전라도의 각군(郡)에 의병결기촉구격문(義兵決起促求檄文)을 보냈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면 우리 3천만 인민은 모두 노예이며 신첩(臣妾)이다」 타인의 노예가 되고 신첩이 되어 산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만 같지 못하다. 하물며 그들의 호기저사(狐欺狙詐)²⁶⁸⁾로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우리 사람들을 이 나라 안에 남겨두지 않으려는 것이 명백하다. 인민들은 여러 곳의 철도 역부(役夫)와 노일전쟁시의 일꾼으로 하여 소와 같이 채찍질하고 돼지와 같이 쫓으며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풀을 베듯 포살(砲殺)하고 우리 백성의 부자형제로 하여금 원(冤)을 품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소(伸訴)할 수 없게 했다. 벼슬아치나 일반백성이 전후하여 상소, 모두 국가를 위해 충모(忠謀)²⁶⁹⁾를 권했던 것인데 즉시 포박하고 구육(拘辱)하여 비록 대신·중신이라 해도 조금도 예우를 하지 않고 우리를 능욕했을뿐 아니라 사인(私人)을 각부에 배치해서는 고문관이라면서 두툼한 봉급만을 주는 등, 그 하는 일은 모두 우리를 피폐케 하는 등 그들만을 위하는 것 뿐이다.

이와같은 불법부도(不法不道)에다 압박억탈(壓迫抑奪)한, 큰 것만을 들어도 이 모양이니 그 약속해서 지키지 않고 맹약(盟約)해서 고수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는 마관조약(馬關條約)²⁷⁰⁾으로부터 노일선전서(露日

267) 전북지방.

268) 여우·원숭이의 속임수.

269) 충성스러운 꾀.

270) 下關조약.

宣戰書)에 이르기까지 대한의 자주독립을 똑똑히 성명했었을뿐 아니라 우리 영토를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익현은 성의가 얹고 힘이 부쳐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여 환난을 막지 못하고 슬기롭게 몸을 던져 나라에 순(殉)하고 민기(民氣)를 고발(鼓發)하지 못했으므로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내려다봐도 부끄러워, 살아서 우리 수 천만 동포를 대할 수 없으며 죽어서 2공(二公)²⁷¹⁾과 지하에서 만나 뵈울 수가 없다. 여기서 감히 비열(卑劣)을 돌아보지 않고 오늘날 시국 태세를 건문한 바를 간략하나마 온 백성에게 포고함으로, 바라건대 온 백성은 익현의 노후장사(老朽將死)의 말이라고 곧 버리지 말고 각자가 자면자려(自勉自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종(人種)을 달리하려고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 다행이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그는 또 일본의 「기신배의16죄(棄信配義十六罪)」를 문책하는 글을 만들어 일본정부에 송부했다. 그는 일본이 강화조약 이래 조선인을 지독한 고난으로 몰아 넣은 16항에 걸친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한 후, 동양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일본·청나라 3국이 협력해서 구미(歐美)에 대항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에는 일본이 「기신배의」의 죄를 자각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존중하는 일이 선결(先決)이라고 했다. 그의 국제인식의 발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가 거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의 인민은 앞을 다투어 이에 호응했다. 익현은 4월 13일 태인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정읍(井邑)·순창(淳昌)·곡성(谷城)을 해방하고 순창을 거점으로 해서 각지의 군아(郡衙)를 습격, 총기를 빼앗고 공격태세를 갖추었지만 20일이 되자 전주 및 남원(南原)의 진위대(鎭衛隊)²⁷²⁾가 전주·남원·광주의 3방면으로부터

271) 閔泳煥·趙秉世.

터 순창을 포위, 공격해와 끝내 요로(要路)가 절단 당한 때문에 최익현 등 13명은 안타깝게도 체포되고 말았다.

최익현·박병찬·유준근(柳濬根) 등은 일본군사령부의 감방에 보내져 한국평리원(平理院)²⁷³⁾에서 재판에 회부된 결과 8월 4일, 최익현에게는 3년, 임 등에게는 2년의 금고형이 언도되었다. 이어 그들은 쓰시마 이즈하라(對馬島 嚴原)의 경비대 감옥에 가두어졌다.

익현은 쓰시마에 있어서도 일본군의 단발·탈관(脫冠)의 강요에 대해 단식으로 항거했다. 일본에게 굴복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이 주는 것은 일체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갇혀있는 임병찬에게 국왕에게 유소(遺疏)를 구술(口述)하여 필기시켰다. 그 속에서 「죽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역적을 치지 못하고 원수를 멸망시키지 못하며, 국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강토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4천년 화하(華夏)²⁷⁴⁾의 정도(正道)가 더러운 땅(糞壤)에 빠져도 이를 도울 길 없고 삼천리 선왕(先王)의 적자(赤子)가 화(化)해서 고기밥이 되는데도 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 후 식비는 조선정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대장의 말을 들어 단식을 중지했지만 차츰 더 쇠약해져 11월 5일에 쓰시마 병영에서 병몰했다. 그 때 나이 74세였다. 유해가 부산에 돌아오자 그것을 맞은 수만의 민중은 「춘추대의(春秋大義) 일월고충(日月高忠)」이라고 쓴 조기(弔旗)를 높이 들고 통곡, 그 순국(殉國)의 행동을 찬양했다.

<勉庵集·漢拏山記·梅泉野錄·大韓季年史·朝鮮儒學史>

272) 국왕의 군대.

273) 최고재판소.

274) 중국사람이 자기나라를 자랑으로 일컫는 말.

조병창(趙秉昌)

...민비정권을 개문영적(開門迎賊)했다고 공격한 때문에...

의금부²⁷⁵⁾ 판서의 자리에 있던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 일파로 간주되어 민비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1876년 2월의 한일수호조규(修好條規), 이른바 강화도조약이 한·일 양국 간에서 논의되고 있을 즈음이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운양호사건을 객체(客體)²⁷⁶⁾로 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제2단계 방책을 취해 삿슈파(薩州派)의 육군중장 겸 참의(參議)·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清隆)를 특명정권대사로, 초오슈파(長州派)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을 부사(副使)로 해서 7척의 함대를 편성하여 강화도로 파견했을뿐 아니라 교섭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 대비해서 육군경(陸軍卿)인 야마가타 아리도모(山縣有朋)는 일부러 시모노세키(下關)까지 출장해서 히로시마(廣島)·구마모토(熊本)의 육군 3개대대의 동원준비를 갖추었다.

2월 11일에 척족정권(戚族政權)으로부터 파견된 접견대관(接見大官) 판중추부사(中樞院부원장) 신현(申櫓)²⁷⁷⁾와 동 부관 윤자승(尹滋承) 등을 상대로 정식회담이 열렸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군사적 위협 속에 담판은 일방적 게임으로 시종하여 끝내 「강화도조약」은 체결된 것이다.

그것은 조선에게 있어 최대의 치욕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의 위협과 기만책에 의해 당시의 민비정권은 무지와 비굴과 졸속만으로

275) 왕명에 의해 고관을 치죄하는 고등재판소.

276) 口實.

277) 1810~1888, 初名 觀浩.

대처하여 완전히 말려드는 결과로 끝났다. 당면한 개화도 중요했던 것은 틀림없지만 처음부터 주체의식을 상실한 임시방편의 개화책이었으므로 「개문영적(開門迎賊)」의 역효과 이상으로 참다운 근대화의 자주적인 방향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조병창은 아들인 채하(采夏)와 연서해서 동년 1월 26일에 상소하여 주체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척족정권에 대해, 무골군상(無骨群像)과 같은 무능과 비굴한 태도로 언제까지나 기만적인 미봉책으로 시종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공격하고 더구나 「개문영적」²⁷⁸⁾했다고 정면으로부터 규탄하는 날카로운 현실 고발의 논진(論陣)을 폈다. 조병창은 이(吏)·예(禮)·공(工)의 삼조(三曹)의 판서(대신)을 역임했으며 아들인 채하도 또 예조참판(문교차관)을 지낸 요인(要人)인만큼 그들의 날카로운 상소장은 민비정권을 낭패시켰을 뿐 아니라 조야에 일대충격을 주어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에 장단을 맞추듯 재야의 정적인 대원군 계열만이 아니라 서원철폐 때문에 대원군을 공격해 왔던 유림(유학자단체)들도 쫓기해서 척족정권이 「개문영적」했다고 잇따라 규탄하였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대원군과가 혼미에 빠져있는 정세를 이용해서 서서히 세력을 되찾고 있을 때인만큼 민비정권은 척족세도를 유지하기 위한 발판을 굳히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이러한 때에 조병창의 부자가 정부의 무위무책(無爲無策)을 격렬히 탄핵했으므로 이거야말로 큰 일이라고 민비 일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 부자를 조속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조병창 부자는 체포되어 봉건식 가장재판(家長裁判)이란 것도 없이, 조병창은 정부를 비방하고 민심을 소

278) 문을 열어 적을 맞았다.

란시켰다는 죄목으로 추자도에 위리안치되고 아들인 채하는 그 방조 죄(幫助罪)로 위원군(渭原郡)²⁷⁹⁾에 유배된 것이다. 잇따라 정태호(鄭泰好)는 제주에 배류되었다.

그 후 조병창은 추자도에서 냉혹한 유배인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종 16년(1879) 3월 9일 흑산도에 배적(配謫)되어있던 최익현 등과 향리방축된 후 동년 12월 27일 다시 사면되어 전면적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로부터 요주의 인물의 낙인이 찍혀, 민비 일파의 엄중한 감시 하에 두어졌다.

그런데 대원군파와 민비파와의 사이에 험악한 정쟁과 내홍(內訌)은 날로 격화의 일로를 더듬었다. 그 때문에 조병창부자에게 새로운 비극적 운명이 덮치는 날이 서서히 찾아왔다. 말하자면 고종 19년(1882) 6월 9일 무위영군졸(武衛營軍卒)이 주동이 되어, 썩을대로 썩은 민비정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바로 그것이다. 민비정권은 일본식의 제도개혁을 단행했지만 특히 그 「군제(軍制)개편」은 열악하고 난맥을 극한 것이었다.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일본공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종래의 오영(五營)을 폐지하고 새로이 무위(武衛)·장어(莊禦)의 2영을 설치했지만 1882년 1월, 이미 일본의 육군소위 호리모토 레조선(堀本禮造)을 교관으로 초빙하여 별기군(別技軍: 倭別技)을 양성하고 있었으므로 1881년 4월 구식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 신·구 군대에 대한 차별대우도 심했을뿐 아니라 재정난을 이유로 구식군에는 다달의 봉급미(俸給米)의 급여도 오랫동안 끊겨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거리를 헤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쓰여있는 군인의 급료를 보면 보병의 평균급료는

279) 평안도지방.

매달 쌀 5두에 매년 포(布) 2필뿐으로 되어있다. 가족이 있는 병사는, 때로는 아침 점호(點呼)만 마치면 총을 들고 나가 전당포에 맡겨 떡을 사먹고 퇴근시간까지 백방으로 돈을 마련하여 저당물을 찾아 퇴근한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같이 왕실의 부패타락에 기인(基因)하는 민비 척족의 탐학축재(貪虐蓄財)·오살양민(誤殺良民)·국고남비(國庫濫費)·교통양왜(交通洋倭) 등 문란한 정치에 대한 군민의 불만은 폭발 전야에 있었다.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는 농민의 생활은 82년의 봄부터 한발이 계속되었으므로 전국의 민심은 전전긍긍해졌다.

이렇듯 불온한 저류(底流) 속에서 발생한 부정사건을 계기로 군인들이 드디어 봉기했다. 즉 고종 19년(1882) 6월 5일 구식 군인들에게는 13개월만에 봉급이 지급되었지만 그 분배는 불공평할뿐 아니라 모래가 섞여있던지 썩은 것도 있어 분량조차 부족하고 있었다. 격앙한 군인들은 주모자인 김춘영(金春永)·유복만(柳卜萬)·정의암(鄭義岩)·강명준(姜命俊) 등을 선두로 과감한 항쟁을 시작했는데 그 위에 대원군의 세력과 결부함으로써 「민씨정권타도」·「일본세력 배격」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군인들은 민씨 일족을 습격하여 감옥이나 무기고를 부수고 민비정권의 요인(閔謙鎬·閔昌植·李最應·金輔鉉)들을 처단했다. 민비는 변장해서 가까스로 충주장호원(忠州長湖院)으로 난을 피했다. 군인들은 그 위에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죽이고 일본공사관을 협박했으므로 공사하나부사는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관원들과 함께 인천으로 피신, 영국의 측량선에 편승하여 나가사키(長崎)로 돌아갔다. 군인들의 항쟁은 6

월 9일부터 10일까지의 2주야에 걸쳐 결행되었지만 민비정권은 이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대원군은 만 8년만에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임오군란」에 의해 정계에 재등장한 대원군은 민비정권에 박해받고 개화정책에 반항해서 유배되었던 수많은 죄인의 석방을 결정, 6월 12일에 제1차 특별석방명령을 내렸다. 그 덕분에 조병창 부자도 석방되어 병창은 의정부 좌참찬(左參贊)²⁸⁰에 기용된 다음 예문관 제학(提學)²⁸¹으로 전직되었다.

그러나 그를 강타하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 국내외에 신장되고 있어 재물락의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다. 천하에 호령하고 있던 대원군은 재기(再起) 10개월만에 민비 일파의 이면공작에 의해 청군(淸軍)에게 붙잡혀 청국으로 납치되고 말았다. 대원군은 납치 당시의 심경을

颯然一身頓無他計 悠然去之國難開言
身無依託冷逼氣盡 昏倒驕內不省人事

이 한몸에 별다른 계책없이 유연히 떠나가니 나라의 어려움을 어찌 말하랴. 몸을 의탁할 곳 없이 싸늘함에 기운이 다하여, 교자 안에서 혼도하여 사람이 할 일을 살피지 못하였다.

라고 읊조리고 황해를 건너면서

280) 정2품관.

281) 대학의 학부장급.

有意山川依故國 無邊江海是吾家

뜻 있는 산천은 바로 내 고국
끝 없는 강과 바다는 바로 나의 집

라고 했다. 동년 8월 1일에 환궁한 민비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군란의 수모자(首謀者)는 말할 것 없고 이듬해의 4월에는 배일(排日)선봉인 정현덕(鄭顯德) 등 8명의 고관을 대원군 계열이라고 해서 모두를 한 묶음으로 처형함과 동시에 조병창·채하의 부자도 별수없이 살해되었다. 6월에는 또 허옥(許煜)·장순길(張順吉) 등 많은 유능한 인사가 단지 대원군파라는 이유로 무참히 참수(斬首)당한다고 하는, 군민에 대한 추격이나 보복은 실로 가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척족권력의 야만스러움, 잔혹함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보복의 몇 배나 되는 정치적 보복을 계속하여 동족상잔의 극한투쟁과 정치보복을 이렇게 되풀이한 것이다.

이러한 「운변(雲邊)」²⁸²⁾ 대 「척족일문」²⁸³⁾의 추악한 정쟁(政爭)과 무서운 파괴와 살벌행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태였을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고종실록·大韓季年史>

김평묵(金平默)

…척양(斥洋)·척왜(斥倭)의 소(疏)를 초안했다고 해서…

김평묵(金平默·1805~1882)는 자를 치장(稚章), 호를 중암(重菴)이라고

282) 대원군파.

283) 민비파.

했다. 청풍(淸風) 사람. 처음으로 사관(仕官)하여 감역(監役)²⁸⁴에 이르렀으나 취업하지는 않았다.

1880년대의 개화기에 있어서 국내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과 항쟁은 치열했다. 「개문영적(開門迎賊)」이라고 일컬어진 외적이 「임진왜란」 이래의 역사적 숙원(宿怨)이 씻겨져있지 않은 왜적(倭賊)²⁸⁵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머물지 않고 왜적의 뒤를 쫓아 서학사교(西學邪敎)의 양이(洋夷)까지도 도입(導入)하겠다고 하자, 「동방예의의 나라」의 전통을 지키는 전국의 유림들이 잠자코 있을 리가 없었다.

안동(安東)·상주(尙州)의 영남 유림들이 빈번히 회합, 「척사위정론(斥邪衛正論)²⁸⁶을 내세워 민씨 세도정권의 개화정책을 정면에서 비난 공격하고 서학사교의 외국세력을 배척해서 동방 유학의 정교정도(正敎正道)를 호위할 것을 주장했다. 그 때 수신사(修信使)²⁸⁷ 김홍집(金弘集)이 주일청국참사관(駐日淸國參事官) 황준헌(黃遵憲)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소책자를 소중하게 갖고 돌아와 국왕에게 헌납한 후 그 사본을 정부 요로에 공람(供覽)시켰는데 이에 의해 야기된 찬반 양론의 파문과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영남 유림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생들은 속속 상경하여 만인연판의 만인소(萬人疏)²⁸⁸를 작성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다. 고종 18년(1881) 2월에는 이만손(李晩孫)²⁸⁹을 대표로 하는 만인소가 조정에 상소문을 올려 천하의 이목을 모았다. 김평묵은 그 「척사위정」의 상소문

284) 膳工監의 종9품관.

285) 일본에 대한 敵稱.

286) 正學을 지키고 邪學을 배척한다.

287) 친선사절.

288) 上奏文.

289) 李退溪의 후손.

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 거사(擧事)는 우리 동인(東人)으로 하여금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을 했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내용은 조선책략(朝鮮策略)과 김홍집을 공격하고 황씨를 가리켜 「일본을 위한 세객(說客)이며 서학사교를 전파하는 「사문난적(邪門亂賊)」이라 규정하고 책자를 모두 몰수하여 소각할 것을 요구했고 동시에 끝내는 김홍집내각타도를 성명했다.

그 후 김평묵은 척양·척왜의 상소문을 기초(起草)한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끝내 제주도로 유형에 처하여졌다. 그 이듬해의 8월에 사면되어 돌아와 나이 70으로 세상을 떴다. 저서에 「학통고(學統考)」·「해상필어(海上筆語)」·「경장문답(更張問答)」·「봉사잡록(鵬舍雜錄)」·「해상록(海上錄)」·「대곡문답(大谷問答)」·「삼강문답(三江問答)」·「귀곡문답(龜谷問答)」·「벽산심설연원(槧山心說淵源)」·「척양대의(斥洋大義)」·「남정기문(南征紀聞)」·「우촌수담(雨村手談)」·「노강수록(鷺江隨錄)」 등 문고(文庫) 25권이 있다.

<梅泉野錄·고종실록·儒教淵源>

이태현(李泰鉉)

...「탐람학민죄(貪婪虐民罪)」에 의해...

고종 18년(1881) 4월 26일 돌연 함경도관찰사(知事) 김유연(金有淵)으로부터의 밀보(密報)가 정부에 당도했다. 내용은 함경남도병사(兵使)²⁹⁰⁾ 이태현(李泰鉉)에게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다. 관심을 갖고 수사해 주기 바란다는 고발이었다.

즉 이태현은 병사라는 직권을 이용, 삼정(三政)의 그늘에 숨어 박

²⁹⁰⁾ 병마절도사의 약칭, 종2품의 무관직.

해·수탈·착취를 마음대로 하고 거액의 장물(贓物)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풍문이 향간에 넘쳐 주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사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차(怨嗟)의 소리가 차츰 높아져 이제는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왕은 이 보고를 듣고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한탄하면서 의금부에 대해 곧 그를 붙잡아 사실의 진부(眞否)를 확인하도록 밀명을 내렸다. 정부는 그 뒷날, 그가 아직 현역 병마절도사임으로 서상악(徐相岳)을 그 후임으로 앉혀 직무를 인계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현지(北靑)에 급파, 태현을 서울로 호송해 와서 옥에 가두었다. 정부는 이 경우(李景宇)²⁹¹⁾를 의금부 위관(委官)²⁹²⁾으로 임명해서 임시 법정을 개설, 사실관계를 엄중히 추궁했다. 과연 그는 자신의 부정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놀랍게도 금액으로 해서 6만2백69량(兩)의 대금이 은익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동년 6월 13일, 「탐람학민죄(貪婪虐民罪)」²⁹³⁾가 선고되어 감췄던 돈은 몽땅 몰수되고 30대의 태형(笞刑)이 가해진 다음 제주목에 위리안치되기에 이르렀다. 뒷날 그는 거리의 형장에 끌려 나왔다. 거기엔 많은 수의 정부 요인이나 제주목으로부터 상경한 관리들도 입회해 있었다. 드디어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목을 하나 둘 세면서 태형이 집행되었다. 그것이 끝나자 그는 의금부도사의 호위 아래 제주목에 압송된 것이다. 그의 적소가 제주의 어디였는가는 뚜렷치 않으나 당시의 제주목사는 박선양(朴善陽)이었다.

291) 초명은 景純, 자는 雲瑞.

292) 재판관.

293) 금품을 약탈해서 백성을 괴롭힌 죄.

이태현은 고종 14년(1877), 황해도 봉산군수(鳳山郡守)로 재직중에도 난폭한 행패를 부리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가렴주구를 해서 사복(私腹)을 채운, 말하자면 이름 난 탐관오리였다.

그후 그는 전라도 익산군(益山郡)에 감등이배(減等移配)되었으나 제주목에서는 1년 반에 걸쳐 창살없는 감옥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했다. 고종 21년(1884) 1월, 그는 방면된 다음 복직하여 친위대(親衛隊 : 근위대)의 대대장을 맡는 등 고종조 말까지 군관(軍官)으로 근무했다. <고종실록>

이재선(李載先)

...왕위폐립(王位廢立)의 쿠데타 때 수령(首領)으로 추대돼서...

유림 중심의 「척사위정(斥邪衛正)」운동은 전근대적 문화와 전통을 자랑해온 왕조사회의 보수세력에 의한 것으로 권력쟁탈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의 민족수호의 본능적 항쟁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척족정권도 이 운동이 대두하자 정적(政敵) 대원군과의 편승과 책동을 날카롭게 경계하면서도 유림이 내놓은 주장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든지 반박하지는 않고, 대거 상경하여 거소항쟁(舉疏抗爭)하는 그들의 행동을 단지 과격하다, 무례하다고 해서 단속하고 이것을 탄압하는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1881년 5월, 정부는 「척사위정의 기본과업은 정부도 실천한다」고, 관제(官製)의 척사운동을 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의 개화정책의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의 척사운동은 더욱 치열해졌으므로 정부도 드디어 부패관료와 간신도배를 규탄한 결과, 국왕까지도 「불사학문(不事學問)」이라

고 따져든 강원도 유림의 대표 홍재학(洪在鶴)²⁹⁴⁾을 참형에 처해서 강경한 탄압정책을 취한 것이다.

그 후 일부 유림의 사이에서는 10여년 전의 서원철폐(書院撤廢)의 숙원(宿怨)도 있고 외척정권의 정적이며 쇄국양이(鎖國攘夷)의 지주(支柱)였던 대원군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예찬하는 소리까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리를 놓칠 대원군 일파는 아니었으므로 이른 바 「남인파(南人派)」의 일부 인사와 대원군 측근의 사람들은 「척사위정」 운동을 마치 자기자신들을 위한 운동인양 싱글벙글, 운현궁의 정치세력 만회를 위해 심상치 않은 책동을 시작했다.

즉 전 승지²⁹⁵⁾ 안기영(安驥泳)·권정호(權鼎鎬) 등이 주모자가 되고 유림의 강달선(姜達善)·이두영(李斗榮)·이중학(李鍾學)·이종해(李鍾海)·이철구(李哲九)·이연응(李然應)·조중호(趙中鎬)·이병식(李柄植)·정건섭(丁建燮) 등과 결탁해서 표면으로는 전국 유림의 개화반대와 배일 기운(氣運)을 포착해서 「척사토왜(斥邪討倭)」의 의거라고 하면서 이면에서는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李載先)을 추대해서 왕위폐립의 쿠데타의 음모를 추진했다. 말하자면 국왕 이하, 민중전(왕비)과 외척계열의 친일 개화정책을 맹렬히 비난, 더욱 그들을 배제해서 대원군의 재집권을 실현하려는 음모였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 아래 그들은 군자금을 확보하여 동지를 규합, 동년 8월 2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초시(初試)²⁹⁶⁾일에 거사기로 했다. 그 음모계획의 내용은 「초시일에 모여들 유생 속에 섞이어 「척사토왜」

294) 1848~81, 자는 聞叔.

295) 국왕의 비서관.

296) 관리등용시험.

의 의거를 일으키면 유생과 거리의 건달들도 호응한다. 그렇게되면 이재선을 선두에 내세워 전 군중을 셋으로 나누어 제1대(天)는 창덕궁에 침입해서 왕위폐립의 쿠데타를 감행하고 제2대(人)는 왜노(倭奴)와 접근하여 수교를 한 척족(戚族)과 제신(諸臣)을 살해한다. 제3대(蜂)는 서대문 밖의 일본공사관(淸使館—天然亭)과 별기군영(別技軍營)을 습격해서 일본인들을 죽이고 무기를 탈취한다」고 하는 줄거리였다.

그러나 이런 분별없는 계획이 실현될 리가 없었다. 거사 당일이 되어도 그들 사이에서 내분(內紛)이 되풀이되어 그런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고 있던 광주장교(廣州將校) 이풍래(李豐來)의 배신으로 고발되어 연루자 전원이 검거, 투옥되어버렸다. 그들의 음모에 대한 형육(刑戮)은 참으로 처참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동년 9월 6일 영돈령(領敦寧)²⁹⁷⁾ 홍순목(洪淳穆)·판돈령부사²⁹⁸⁾ 한계원(韓啓源)·좌의정 김병학(金柄學) 등의 중신이 중심이 되어 재판이 열렸다. 사건을 조사한 바 그것이 낱조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주심(主審)인 한계원은 기소를 각하하고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안상순(安祥淳) 등은 이에 이론(異論)을 주창하고 판관들을 본사건의 동류(同類)라고 꾸짖어 처벌해야한다고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끝내 사건은 재심케 되었다. 그 결과 겨우 별기군(別技軍)의 윤웅열(尹雄烈)·한성근(韓聖根)만이 무죄방면되고 나머지 연루자 30여명은 「모반역죄(謀反逆罪)」 또는 「모역부도죄(謀逆不道罪)」로 10월 10일부터 차례 차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이재선은 국왕의 사친(私親)²⁹⁹⁾이라는 신분과 정신착란이라는 이유로 죽음에서 감일등(減一等)하여 「가애부

297) 별격 고관의 하나로 왕비 또는 황태후의 아버지에게 수여하는 직위.

298) 돈령부의 종1품관.

299) 庶長子.

죽주(可哀不足誅)』로서 제주도 유배의 왕명이 내려졌다. 그러나 승정원과 삼사(三司)의 제신(諸臣)이 극형을 계속 주장한 때문에 사약(賜藥)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에 의해 민비 일파는 대원군의 재기를 저지했을뿐 아니라 그렇게 끈질겼던 유림의 거소항쟁(學疏抗爭)에도 죽음의 위압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일석조선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왕실 안은 골육상쟁의 싸움터가 되어 국운(國運)의 쇠미(衰微)를 한층 촉구하는 결과가 되었다. <日省錄·承政院日記·大韓季年史>

백낙관(白樂寬)

...친일·용이정책(親日容夷政策)을 규탄하고 봉화를 올린 때문에...

백낙관(白樂寬·1846~83)은 자를 경교(景敎), 호를 추강(秋江)이라고 했다. 충청도 보령(保寧) 사람, 그의 아버지는 헌종(憲宗)초에 대과에 급제, 병조참판(兵曹參判)³⁰⁰까지 지냈지만 그의 아들인 백낙관은 난맥(亂脈)을 드러낸 과거제도를 외면, 고고(孤高)한 태도를 지켜 수험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체의 관직에도 취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형적인 재야(在野)의 유생이었다.

척족정권의 대일외교(對日外交)나 개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국가운명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고종 19년(1882) 5월 한·미, 한·영조약에 이어 한·독(韓·獨)조약이 체결되고 독일의 주청공사(駐淸公使) 프렌트가 군함으로 인천에 내항중(來航中)이라고 해서 서울의 거리는 심상치않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동월 4일, 서울의 남

³⁰⁰) 국방차관.

산봉화대로부터 돌연 검은 연기가 자욱히 오르는 것을 본 서울시민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란때 외엔 멋대로 피울 수 없는 남산의 봉화대에 더욱 놀란 것은 왕실과 정부였다. 즉시 진상을 조사해보니, 척사소(斥邪疏)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충청도 유생, 백낙관의 행위였다. 즉 그는 친일·용이정책(親日·容夷政策)을 한탄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한 소장(疏狀)을 상정하기 위해 봉화를 올린 것이었다. 백낙관은 체포되었지만, 유림의 정통(正統) 이항로(李恒老)-최익현(崔益鉉)-홍재학(洪在鶴)의 흐름에 맞춘 그의 소장은 국왕과 정부요로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소장의 내용은

- ① 현재의 정신(廷臣)은 조국의 미곡을 먹으면서, 왜양(倭洋)의 옷을 입고, 관록(官祿)은 우리나라에서 받고있지만, 일은 그들을 위해 꾸며지고 영사해공(營私害公)해서 국정을 그르치고 있다.
- ② 세자(동궁)을 책봉하는 문제를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의뢰 청탁했다고 들리는데 만일에 전하가 홍거(薨去)하여 세자가 즉위하게 될 때에는 하나부사는 반드시 사사건건 이에 은혜를 입히는 듯한 언동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③ 임진(壬辰·日本), 병자(丙子·淸國)의 두 난리 이후 우리 국민이 화전(和戰) 양면에서 중대 국난을 극복해 왔던 것에 비추어 민족정기를 분명히 한 후에도 그들의 간계사술(奸計邪術)을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부사의 계략에 말려들면 국가는 망할 뿐이라는 것.

조정 중신으로서 외세에 영합해서 화의(和議)를 주장해 온 무리들은 참형에 처하라고 상소한 때문에 그는 투옥되고 의금부판서 이원명(李源明)의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남산의 봉화와 상소의 경종(警鐘)은 사

라지지 않았다. 백낙관이 투옥되어서 불과 1개월만에 「임오군란」이 폭 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에게 있어 비극의 시작이었다. 「임오군란」에 대해서는 앞에 약간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지만 고종 19년(1882) 6월 9일, 군란의 날, 운현궁의 광장에 수천의 군중이 몰려들어 그 진퇴를 따졌다. 그것은 대원군의 재기를 촉구하고 난군(亂軍)의 지휘를 바라는 시민의 결집이기도 했다. 실의중(失意中)인 대원군은 겉으로는 병사들의 과격행동을 진무(鎮撫)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뒤에서는 김장손(金長孫)·유춘만(柳春萬) 등의 심복을 불러들여 민씨정권의 실정(失政)을 설명하고 앞으로 취할 행동지침을 주었을뿐 아니라 측근의 허옥(許煜) 등을 병사로 변장시켜서 군의 지휘를 맡도록하여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해나갔다.

대원군이 이 음모의 장본인이라는 소문은 당시 널리 퍼졌던 사실이지만 그 기세에 편승한 반란군은 운현궁을 나오자 즉시 동별궁(東別宮)을 습격, 무기고를 부수어 무기를 탈취하고 그 발로 바로 포도청을 습격하여 감금중인 척왜의사(斥倭義士) 백낙관 등을 구출해냈다. 그러나 백낙관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유교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왕명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워 출옥 후에도 자기 발로 입옥(入獄)할 만큼의 강직한 인물이었다. 뒷날인 10일에는 군난(軍亂)의 양상은 더욱 확대 일방이었다. 여기에 이르러 고종도 겨우 군란의 배후에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국왕은 오랫동안 대면도 안했던 아버지 대원군을 급히 입궐하도록 소명(召命)을 내리고 대원군이 군졸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궁중에 들어가자 「지금부터 대소 정무(政務)는 대원군 앞에서 품결(稟決)하라」고 선포했다.

이렇게해서 정사를 위임받은 대원군의 특사(特赦)에 의해 백낙관 등

의 의사는 정식으로 석방되고 다시 등용되었다. 대원군은 권모술책이 일단 성공하여 하여 이래 9년만에 다시 집권의 자리에 앉아 그 목적이 성취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면 서정(庶政)의 개혁은 뜻대로 되지않을뿐 아니라, 과거에 유능하게 보였던 심복은 이미 민비당의 손으로 모조리 도태되어 현존(現存)하지 않고, 그 때문에 인사기구(機構)의 면에서 대원군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앞길에는 일·청 양국의 무력간섭이 끊이질 않아 파란의 수난(受難)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년 8월 21일 전 정언(正言)³⁰¹⁾ 김재봉(金在鳳) 등의, 백낙관을 포함한 대원군 계열의 잔당(殘黨)에 대한 논죄(論罪)의 상소가 있었다. 이것을 받은 국왕은 「당연히 나름대로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뒷날 백낙관은 왕명에 의해 의금부(최고검찰청) 감옥에 처넣어졌다. 10월 6일 민중전(왕후)이 환궁하고 척족배가 다시 부활하자 같은 날, 백낙관에 대해 제주목에의 위리안치형이 하달되었다. 그 때 그는 37세라는 젊은 청춘이었다. 그가 제주목 어디에 유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제주목사는 무관출신인 박선양(朴善陽)이었다. 아마도 그의 부친과는 친교(親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행여나 목숨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보복을 노리는 민비일당이 그를 살려둘 리가 없었다. 이듬해의 6월 10일, 그는 제주목으로부터 의금부에 호송되어 채수감되었다. 그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고문을 받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상(慘狀)이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죽음을 결심, 아

301) 사간원의 정6품관.

무엇이나 추관(推官)³⁰²⁾이 말하는대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결과 그는 「범상부도죄(犯上不道罪)」³⁰³⁾라는 죄명 아래 사형이 선고되었다. 고종 20년(1883) 8월 29일 그는 서소문 밖의 형장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형에 처해졌다. <騎驢隨筆·고종실록·국사대사전>

안효제(安孝濟)

…요녀(妖女)를 참(斬)하라고 상소한 것이 신노(宸怒)에 저촉되어…

안효제(安孝濟)³⁰⁴⁾는 경남의령(宜寧) 출신으로 조선 말기의 애국자이다. 고종 20년(1883)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³⁰⁵⁾가 된다. 그 이듬해의 7월, 일본의 내정 간섭에 의한 사회체제의 개혁은 그 도(度)를 넘어 일반의 관습에까지 미쳐, 민중의 관습을 법령에 의해 개혁하려고까지 했다. 당시, 실제적인 시대의 요구가 되어있었던 것으로 복장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갑신정변(1884) 이전에도 일부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그것을 이 때부터 조복(朝服)³⁰⁶⁾이나 관청 안에서 입는 사복(私服), 일반국민의 복장까지, 지금까지의 것보다 간소한 것을 착용토록 했던 것이다. 특히 일반백성에게는 넓은 소매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 그 위에 민족의 기호(嗜好)에 속하는 장죽(長竹)³⁰⁷⁾의 사용을 금하고 짧은 담뱃대를 쓰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내정(內政)의 개혁을 강요해온 일본의 저의(底意)는, 그 개

302) 심문관.

303) 국왕의 권위를 범한 죄.

304) 1850~1912, 호는 守坡.

305) 종9품.

306) 조회 때 입는 관리의 복장.

307) 긴 담뱃대.

혁의 실효(實効), 즉 조선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사회체제를 일본의 그것과 같게 개혁함으로써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세력의 침투를 신속,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야망이 도사려있을뿐이었다. 그래서 안효제는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강력히 반발하여 즉시 상소, 이것들은 모두가 일본의 침략정책에 기인(基因)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한 뒤, 직장을 버리고 하야해버렸다.

그러나 그는 고종 24년(1887)에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채용된 다음, 사헌부 지평(持平)으로부터 사간원 정언으로 영전되었다. 그 때 관왕녀(關王女)³⁰⁸라고 자칭하는 요녀(妖女)³⁰⁹가 왕의 총애를 얻어 궁중에 수시로 출입, 스스로 관운장(關雲長)의 영혼을 이은 딸이라고 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공교롭게 조종하는 등 한 때는 세도가 대단했다. 끝내 왕은 그녀를 진령군(眞靈君)에 봉하고 숭동(崇洞)에 북전(北殿)을 세워 살도록 했다. 그러자 안효제는 언론의 극한을 다하여 「국가의 현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여인은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현혹시키는 존재인으로 즉시 그 요녀를 베라」고 상소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국왕은 그의 애국적인 진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노하여 고종 30년(1904) 8월, 안효제를 추자도로 유배했고 그로부터 얼마없어 임자도(荏子島)로 옮겨진 것이다.

그 이듬해 유형이 해제되자 춘추관(春秋館) 정언 등의 요직이 맡겨졌지만 그는 모두 사퇴해서 야인이 되었다. 그 후 흥해군수(興海郡守)에 임명되자 그는 백성을 위해 덕정(德政)을 펴는 등 크게 치적(治績)을 올렸다.

308) 金昌錫의 여자.

309) 요염한 여자.

고종 32년(1906) 3월에 공사복(公私服)을 개정하여 「관민 모두가 흑색을 착용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그는 단호히 반대하여 군수를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 동년 8월에 민비가 일본의 독수(毒手)에 살해되자, 참판 이용원(李容元)·최익현 등과 짜서 민비의 복위를 건의함과 더불어 「단발령」에 강력히 반대하여 「척사위정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그디어 일제(日帝)의 무력적 탄압으로 한일합병이 조인되자, 그는 망국의 한을 가슴에 품고 속세를 떠나 산수간(山水間)에 기거하면서 고독하고 쓰라린 나날을 보내고 있는 터에 동년 11월 은사금(恩賜金)의 통지가 보내져오자 그는 노발대발하여 그것을 되돌려보냈다. 그 때문에 그는 창녕(昌寧)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했지만 그 후도 일관해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반대해서 싸웠다. 일제의 경찰은 그를 몇 번이나 투옥했지만 그의 애국지성(愛國至誠)을 꺾을 수는 없었다. <韓國季年史·騎驢隨筆>

이민광(李敏宏)·이충구(李忠求)·전우기(全祐基)·노흥규(盧興奎)
...춘생문(春生門) 사건에 연좌해서...

청일전쟁의 승리에 의해 청의 세력을 조선으로부터 구축하는데 성공한 일본은, 이번엔 러시아 세력과 대치하게되어 조선 정부도 변전하는 정세 속에서 배일친로적(排日親露的)인 경향을 띄기 시작했다. 그 때 새로 부임해온 군인출신의 미우라 고로(三浦梧樓)³¹⁰⁾ 일본공사는 고종 32년(1895) 2월, 일찍이 역사상에서 유례(類例)를 볼 수 없을만큼의 악

310) 長州軍閥의 간부급.

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민비를 직접 죽이고 대원군을 다시 끌어내어, 민비 일파와 그에 결부되고있는 친로파를 배격하려고 한 것이다. 이 음모는 실제로 훈련대(訓練隊)³¹¹⁾가 해산되기 직전에 계획대로 수행되었다. 동년 10월 8일의 깊은 밤, 훈련대와 일본의 수비대 및 낭인부대(浪人部隊)³¹²⁾가 경복궁을 습격, 호위병과 궁내부대신(宮內部大臣) 이경식(李耕植)과 연대장 홍계훈(洪啓薰)을 살해한 뒤, 궁내에 깊이 난입해서 민비를 찾아내어 벤 다음 아직 절명(絶命)하지 않은 몸에 석유를 뿌려 태워죽였다. 이것은 비극이 많았던 근세 왕조의 최후의 참사였다. 그래서 그들은 국왕에게 강요해서 친로파를 배제한 김홍집내각을 성립시켰다.

일본인의 난당(亂黨)이 민비를 살해했을 때, 궁내에서는 시위대(侍衛隊)의 교관인 미국인 「다이」와 러시아인 기술자 「사바틴」이 일본인의 포악무도한 행동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이 석유를 뿌려 민비를 태워죽인 것은 증거인멸을 위함이며, 왕비가 행방불명됐다는 풍문을 흘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미우라공사 이하의 흉악한 주동자들은 건청궁(乾淸宮)³¹³⁾에서의 참사를 될 수 있는대로 감추면서 내외의 이목을 흐트러지게 하기위해 일본의 괴뢰(傀儡)가 된 김홍집 신내각으로 하여금 기괴한 조칙(詔勅)이나 고시(告示)를 남발시켰다. 그 속에는 8월 20일자 조칙 「금후 짐의 내각과 궁내부가 관제(官制)로 정한대로 각자의 권역(權域)을 지키고 모든 정령(政令)은 모두 내각대신과 의론하도록 하라」는 것도 있으며 내무대

311) 2개대대 정도의 정부직속부대.

312) 자발적으로 아시아 침략의 첨병이 된 민간인.

313) 국왕과 왕비의 거소.

신 박정양(朴定陽)의 고시 「훈련대 해산의 논의 때문에 병사들이 격동하여 궁중에 난입했지만 진압되어 궁중은 안태(安泰)되었으니 내외 인민은 각자 안심하여 그 업에 종사하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백일하에 연출된 그들의 만행이 그 정도의 기만책으로 합리화 될 수가 없었다. 이 때 열강 여러 나라도, 아무리 약육강식의 국제사회라고는 하나 그와 같은 만행이 백주에 감행되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으므로 삼국간섭(三國干涉) 이상으로 일본에 대한 세계의 공론은 악화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미우라공사도 다소 당황한 듯 민비의 행방에 대해 앞뒤를 맞추려고 했다. 미우라는 김홍집내각에 압력을 가해 국왕에게 강요해서 왕후폐립(王后廢立)의 조칙(8월 22일자)을 내리도록 했다. 「교칙(矯勅)」이라고 일컬어진 이 조칙의 내용은 「.....왕후 민씨가 구악(舊惡)을 개전(改愆)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자 짐과 떨어져 그 몸을 피하여 임오(壬午)의 지난 날을 답습,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짐은 여기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민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칙(矯勅)」은 말할 것도 없이 녹원(鹿園)의 재(灰)가 된 민씨를 가리켜 「찾아도 출현하지 않는, 행방불명」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본인의 범행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3일의 조칙에서는 시위대를 훈련대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훈련대로 하여금 왕궁의 경호를 담당케 하기로 했다. 미우라공사의 꿍ail 줄 모르는 야심은 왕궁의 주권을 사로잡아 요리하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파렴치하게도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으로 하여금 폐위조칙(廢位詔勅)의 내용을 외국사절에게 갖고 돌며 관계 열강의 반응을 타진시켰다.

그런데 주한열국(駐韓列國) 외교사절들의 태도는 경화(硬化)하기 일방

이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당황하기 시작, 외무성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국장을 서울로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시킴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명했다. 8월 27일 고무라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여 모살(謀殺)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안되어, 일본인 폭도의 범행은 전 세계의 이목으로부터 감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일본정부는 그 비난의 회피수단으로서 미우라공사 이하 50여 명의 용의자 가운데 48명을 히로시마(廣島) 형무소에 투옥했다. 일본정부는 또 고무라를 미우라의 후임으로 임명해서 잇따라 사건을 수습토록 했다.

이 단계에 「춘생문(春生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흉변(凶變)이래 왕궁은 백귀야행(百鬼夜行)과 같이 친일정객에 포위되어 왕은 밤낮 불안과 공포에 고민했다. 거기서 민비는 살해되고 국위를 떨어뜨린 국왕의 근친과 친일파를 제외한 양반층은 그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는 없었다. 시종(侍從)인 임최수(林最洙)·참령(參領)³¹⁴ 이도철(李道徹)·정위장교(正尉將校) 이민평(李敏宏)·전 위원인 이충구(李忠求)·중추원의 안경수(安駟壽)·사계국장(司計局長) 김재풍(金在豐)·사과(司果)³¹⁵ 이진(李鎭)·중대장 남만리(南万里)·김우기(金祐基)·노흥규(盧興奎)³¹⁶ 등이 중심이 되고 이범진(李範晉) 등의 친로·친미파가 이에 호응해서 국왕을 남몰래 궁성 밖으로 피난시킨 다음, 국모살해사건의 책임을 규탄하여 김홍집내각을 일거에 타도하고 정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그들은 10월 12일 친위대(親衛隊)³¹⁷의 장병까지 규합하여 대거 삼청

314) 영관급 장교.

315) 정6품의 군사직.

316) 이 둘은 楊州의 평민.

317) 시위대와 훈련대가 통합.

동쪽의 북장문(北牆門)과 춘생문을 뛰어넘어 궁중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친위대 대대장 이진호(李軫鎬)가 배신, 그 음모를 정부에 밀고했기 때문에 쿠데타 발생 후 즉시 반격을 당해 임최수 이하 40~50명이 검거되어 투옥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측은 기다렸었다는 듯 「일부의 구미인들도 가세한 친로·친미파의 국왕납치 미수사건」이라고 과장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민비 모살의 흉도(凶徒) 48명도 「증거불충분」이라는 구실로 이듬해의 1월, 면소 석방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이 사건의 책임을 미우라공사에게 전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써놓은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았다.

춘생문사건 후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완전히 일본의 괴뢰가 돼버린 김홍집내각은 열강(列強)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배후 조정대로 대원군을 다시 배제해버리고 왕후 살해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 군부협판(軍部協辦) 이주회(李周會)·친위제1대대 부위(副尉) 윤석우(尹錫禹)와 서울시내의 부랑패 박선(朴銑) 등을 살해의 하수인이라고 해서 교수형에 처해 면목을 세웠다. 그리고 11월 15일 특별법원(재판장 張博)에서 춘생문사건을 일으킨 시종 임최수·전 훈련제2대대장 이도철 등은 사형에 처해지고 정위 이민평·이충구·전우기·노홍규 등은 종신형을 언도받아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이재선은 왕족이기 때문에 향리에 축방되고 안경수·김재풍·남만리 등은 태형 1백대에 징역 3년에 처해졌지만 집행유예가 되었으며 이창근 이하 23명은 무죄방면이 되었다.

그런데 전국 각지의 유생들은 내정 개혁에 따라 몰락해가는 운명에

있으면서, 국모살해에 대한 복수와 강제적인 단발령에 대한 반대를 슬로건으로 하여 일본인과 친일정권에 대한 무력항쟁을 위해 붓을 총으로 갈아잡고 「의병」이 되어 봉기했다.

그 의병투쟁은 순식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다시 동란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되었다. 외국인 헐버트는 「전국이 들끓는 대동란이 되었다. 국민들 가운데서도 남자들은 그들의 정부에 대해 이를 갈면서 항쟁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과장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 이듬해, 즉 1896년 2월 11일, 국왕의 「아관파천(俄館播遷)」과 김병시(金炳始·1831~98)를 수반으로 하는 친로정권이 성립되자 이민궁 등 7명은 유배됐던 제주도로부터 귀환했다. 그리고 3월2일에는 이민궁은 친위대 제2대대중대장에, 전우기는 동제3대대에, 노홍규는 경무청 총순(警務廳 總巡)에, 이충구는 경무사(警務使)에 각각 임명되고 있다.

<大韓季年史·日省錄>

서주보(徐周輔)·정병조(鄭丙朝)·김경하(金經夏)
이범주(李範疇)·이태황(李台璜)
...친일파라고 해서...

민비 살해의 책임을 자기나라 국민에게 덮어씌우고 살해사건의 일 단락을 선언한 김홍집 내각은 일본측이 열강을 향해 성명한대로 스스로 내정 개혁의 실적을 보이기 위한 조치를 급히 서둘렀다. 일본의 권고에 따라 관제(官制)를 고치고 고종 32년(1895) 11월 17일(양력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채용, 연호를 건양(建陽) 원년으로 하기로 했다.

동시에 「갑오개혁」 이래의 현안이었던 단발령을 즉시 실시하고 그에 알맞게 의관복식(衣冠服飾)의 제도를 고쳤다. 그날부터 정부의 관리·경관·군인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강요했다. 경찰이나 군인을 「채두관(剃頭官)」으로 삼아 요소마다에 세워 왕래하는 시민의 상투나 긴 총각머리를 닦치는대로 깎았다.

이에 반대하는 의병들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일반대중의 선두에 서서 결사적 항쟁을 전개했다. 김홍집내각은 친위대의 잔류병력과 포병(砲兵)까지 출동시켰으므로 수도 서울 성내의 경비를 소홀히 해버렸다.

이와같은 정세와 기회를 포착한 이범진(李範晉)·이완용(李完用)³¹⁸⁾ 등의 친로파는 다시 고개를 들어 중대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의병들의 치열한 항쟁을 주시하면서 러시아의 웨벨공사와 결탁하여 한 번 좌절된 쿠데타의 재연(再演)을 도모해서 용의주도한 준비를 하고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궁녀 김씨와 민비의 사후(死後) 국왕의 총애를 한 몸에 모으고있던 엄상궁(嚴尙宮)³¹⁹⁾ 등을 통해 놀라운 정보가 국왕의 귀에 그럴 듯하게 속삭여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대원군과 일본인 및 그 주구(走狗)들이 목하 국왕 폐립(廢立)의 음모를 추진시키고 있으므로 왕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국왕은 극비리에 아관(俄館)³²⁰⁾으로 옮기는 것이 득책(得策)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2월 11일 새벽 국왕과 왕세자는 엄상궁 등이 준비한 2인의 궁녀승용 교자(轎子)에 몸을 감춰 영추문(迎秋門)³²¹⁾으로부터 경복

318) 춘생문사건 뒤에 몸을 감추고 있었다.

319) 英親王 垠의 생모.

320) 러시아공관.

321) 神武門說도 있다.

궁을 탈출하여 정동(貞洞)의 러시아공관으로 무사히 파천(播遷)하는데 성공했다. 러시아공사관에 도착한 국왕은 이범진·이완용 등의 영접을 받았다. 얼마없어 경무관 안환(安桓)을 불러들여 김홍집(金弘集)·유길준(兪吉濬)·정병하(鄭秉夏)·조희연(趙羲淵)·장박(張博) 등의 다섯 대신을 역적으로 체포하여 즉시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그 날 경복궁에서는 이 뜻 밖인 국왕의 「아관파천」 사건에 총리 이하 정부 각 대신이 구수협 의(鳩首協議)하여 일단 아관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와 각자의 신변을 경계할 필요에서 각자가 궁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들의 체포에 나선 순검대(巡檢隊)나 살기 등등한 군중의 떠드는 소리가 귓청을 찢는 듯 했다.

이래서 총리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대신 정병하가 광화문 앞에서 경사(警使)에게 체포되어 경무청으로 연행되는 도중, 흥분한 군중과 순검 등에게 맞아 죽었고 탁지부(度支部)³²²⁾대신 어윤중(魚允中)은 고향인 보은(報恩)으로 도피하는 도중 난민(亂民)의 습격을 받아 살해되었다. 유길준·조희연·장박·권영진(權潐鎭)·우범선(禹範善)·이두황(李斗璜)·이범래(李範來)·이진호(李軫鎬) 등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일본인 보호 아래 일본으로 망명했다.

또 동월 23일에는 친일내각원(親日內閣員)인 법협(法協)³²³⁾ 정인흥(鄭寅興)·형사국장 조중응(趙重應)·궁협(宮協) 정만조(鄭萬朝)·그 동생인 계방(桂坊) 정병조(鄭丙朝)·궁내관(宮內官) 서주보(徐周輔)·정운봉(鄭雲鵬)·정일빈(鄭日斌)·김준기(金俊基)·외부참서(外部參書) 육종윤(陸鍾允·倫)·승지 김경하(金經夏)·위원군수(渭原郡守) 이범주(李範疇)·부위(副

322) 재무부.

323) 법무차관.

尉) 이태황(李台璜) 등이 모두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친일파로서 재판에 회부되어, 그 가운데 서주보·정병조·김경하·이범주·이태황 등은 종신 또는 10년의 유죄(流罪)가 선고되어 제주목(성내)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그들은 제주에서 옥중생활이 시작되는데 1898년 2월말에 보석(保釋)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大韓季年史·日省錄>

이근용(李根潯)·김낙영(金洛榮)·김사찬(金思燦)
장윤선(張允善)·이용호(李容鎬)·한선회(韓善會)
...국왕의 환궁(還宮)을 위한 군사쿠데타를 기도(企圖)하여...

이렇게해서 친일내각을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친로(親露)내각이었다. 박정양(朴定陽·1841~1904)이 총리와 궁내대신을 임시겸무하고, 이완용(李完用·1858~1926)은 외무대신으로 학무·논상공대신을 임시 겸무했다. 법무대신에는 조병식(趙秉植)·군무대신 겸 경무사(警務使)에 이윤용(李允用)·탁지부대신에 윤용구(尹用求)가 임명되었다. 수일 후 친로파의 두목 이범진이 법무대신 겸 경무사에 발령되고 이완용·이윤용의 형제와 더불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해 버렸다.

그러나 국왕의 환어(還御)에 대한 요청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당장 사회의 여론이 되고있었다. 그래서 수구파(守舊派)인 이근용(李根潯)³²⁴⁾·김낙영(金洛榮)³²⁵⁾·김사찬(金思燦)³²⁶⁾·장윤선(張允善)³²⁷⁾·이용호(李容鎬)³²⁸⁾·한선회(韓善會)³²⁹⁾ 등은 1897년(광무1년) 10월부터 11월에

324) 후에 根澤으로 개명, 친위대 제3대대장.

325) 전 의금부都使.

326) 布衣.

327) 전 監察.

걸쳐 이완용 등의 정부요인이 김홍목(金鴻睦)³³⁰ 등과 짜서 정권을 농단하는 친로정권을 타도하고 대군폐하(大君陛下)의 왕궁에의 환어를 기도하기 위한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밀의(密議)를 했다.

그래서 동년 11월 21일 그들은 비밀회합을 갖고 그 뒷날 독립협회 연회일³³¹에 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유진구(兪鎭九)·유기환(兪起煥)·전인규(田仁奎) 등이 배신, 음모를 경무청에 고발해버렸다. 그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앞에 든 주모자들은 일망타진되었다. 결국 그들은 고등재판소³³²에서 재판받아 한선희·장윤선·김사찬·이용호·이근용 등은 태형 1백대에 15년의 유형이 언도되었다. 이들은 3월 15일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김낙영도 또 이듬해 11월 29일 재판결과, 고발인인 유진구 등의 증언과 무기류의 물적증거 제출에 의해 범행이 명백하다고 태형(1백대)이 가해진 위해 15년의 유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동년 12월 29일 제주목에 유적되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근용(근택)은 한말의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규탄의 대상자였다. 그는 1897년 3월 1일 제주도에 유배되어 이듬해에 방면되고 있지만 그는 반동적인 황국협회(皇國協會)와 결탁하여 민회(民會)지도자의 대량투옥을 책동했다. 수구파들은 시위대 제3대대장 이근용을 표면에 내세워 박영효(朴泳孝)와 내통하여 고종의 폐위와 공화제(共和制)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윤세포(尹世浦)를 고용하여 이승만(李承晩) 등 민회 지도자를 체포하고 최

328) 진 校吏.

329) 진 중추원參事官.

330) 러시아어 통역관으로서 문교차관.

331) 독립문의 定礎日.

332) 재판장 趙秉植.

정덕(崔廷德) 등 수명에게 체포령을 내는 등, 악랄하기 그지없는 반동을 했다. 말하자면 썩을대로 썩은 지배권력과 결탁해서 모처럼 빛나기 시작한 민족의 섬광(閃光)을 무참하게 뭉개어 끄려고 암약했던 것이다.

당시 이근택(근옹)의 매국적 행위에 이를 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오직 가운데 가장 불쾌하고 몹서리 나는 인물이었다.

<大韓季年史・續陰晴史>

김윤식(金允植)

...김홍집친일내각(親日內閣)의 외무대신이라고 해서...

김윤식(金允植·1835~1922)은 자를 순경(洵卿), 호를 운양(雲養)이라고 했다. 청풍(淸風)사람. 효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정치가이기도 하고 실학사상의 선구자이기도 한 김육(金堉)³³³의 9세손이 된다. 그는 유신환(兪莘煥)³³⁴에게 배워 학문에 깊고 그 도(道)에 이르러, 고종 11년(1874) 문과에 급제, 고종 18년(1881) 왕명으로 영선사(領選使)³³⁵가 되어 38명³³⁶의 유학생을 데리고 북경(北京)으로 파견되었다. 그것은 천진기기국(天津機器局)에서 외국어 및 병기와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치는 군비의 근대화를 위해 취해진 기본적인 노력이었다. 또 김윤식에게 있어서도 정치가로서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일본의 침입과 민비 일파의 압제(壓制)에 반대

333) 1580~1658, 호는 潛谷.

334) 1801~59, 호는 鳳樓.

335) 해외유학생 등을 인솔하는 특별 외교사절.

336) 학도 20, 工匠 18.

해서 군인의 폭동이 일어났다. 세상에서 말하는 「임오군란」이다. 이 군인폭동에 의해 일본이 그동안 조선에서 쌓아올린,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렸다. 그것은 당시 조선에서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 위해 착착 공작을 진행시키고있던 청국에 있어서는 조선 진출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군란이 일어나자 곧 척족정권은 천진 주재의 김윤식·어윤중 등과 연락을 취해 군란의 상황을 청국에 보고하고 원병(援兵)을 요청했다. 이 보고를 받은 청국정부는 일본의 기선(機先)을 제압해서 간섭책을 취했다.

우선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과 외교부장관인 마건충(馬建忠)이 군함 3척과 수사습류군(水師習流軍) 1천명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했다. 잇따라 광둥수사(廣東水師) 오장경(吳長慶)이 이끄는 경군육영(慶軍六營) 3천여명이 남양(南陽)·마산포(馬山浦)에 도착했다. 그들은 민비 일파인 조영하(趙寧夏)·김홍집(金弘集)의 영접을 받으며 4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막료(幕僚) 오유조(吳有兆)·원세개(袁世凱)³³⁷⁾ 및 같은 배로 귀국한 김윤식·어윤중 등과 함께 수원(水原) 경유로 7월 10일, 12일의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입성, 군란의 탄압을 도모했다. 그 뒷날에는 정권의 자리에 막 앉은 대원군을, 군란의 선동자 내지는 책임자로서 납치하여 다음 날 군함으로 천진에 호송하여 보정(保定)에 유배해 버렸다. 그 결과 충주 장호(長湖)의 민응식(閔應植)의 집에 잠복해있던 민비는 8월1일 청병의 호위 아래 서울로 돌아왔다. 이래서 「임오군란」은 청국의 군사개입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또다시 민비와 그 일파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조선을 둘러싼 청·일 사이의 불화는 날로 높아져갔다.

³³⁷⁾ 위안 스카이.

이와같은 정세 속에서 청을 따르는 사대당(事大黨·보수당)과 개화독립을 주장하는 독립당(개화당)이 격렬히 대립하게 되었다. 사대당에는 주로 민비 일파가 속하고, 독립당에는 김옥균(金玉均)³³⁸⁾을 필두로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홍영식(洪英植)·서재필(徐載弼) 등 소장기예(小壯氣銳)의 정치가가 속해 있었다. 김옥균 등은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의 경험을 표본 삼아 일본의 힘을 빌어 청국의 세력을 배제하려고 하고있었다.

1884년, 이 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던 안남(安南)³³⁹⁾의 종주권(宗主權)문제는 청(淸)·불(佛) 양국간의 전쟁으로 발전하여 프랑스함대가 남양(南陽)함대를 전멸시켜 대만의基隆(基隆)을 점령하는 등 청국의 패색(敗色)이 깊어졌다. 이것은 독립당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다. 김옥균 등은, 청이 조선에 간섭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와의 밀의(密議)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주둔병력(2백여)을 이용해서 국왕을 옹호하여 정변(政變)에 의한 혁신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우정국(郵政局) 개설축하만찬회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결행하기로 했다. 만찬회는 예정된 시간(12월 4일)에 내외 귀빈을 맞아 개최되었다. 사대당의 요인을 차례차례 살해하고 국왕 고종에게는 청군이 변을 이르켰다고, 허위보고를 하여 일본군의 호위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왕을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긴 다음 즉시 신내각을 조직했다. 이때 김윤식은 예조판서³⁴⁰⁾로써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원세개가 이끄는 청군(2천여)이 개입하여 일본군을 내쫓고 말았다.

338) 1851~93, 호는 古筠.

339) 지금의 베트남.

340) 문부대신.

그 때문에 독립당의 정치혁명은 글 그대로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갑신정변(甲申政變)」인 것이다.

이 정변 후, 김윤식은 외무독판(外務督辦)³⁴¹⁾으로서 외교문제를 처리하는 총책임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광주유수(廣州留守)³⁴²⁾를 겸임했다. 그런데 고종 24년(1887)에 부산첨사(釜山僉使)³⁴³⁾ 김완수(金完洙)가 어떤 일본상인으로부터 5천엔을 차용했지만 약속기일까지 반제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우연히 이 건에 대해서 김윤식이 결재 날인했던 일을 문제삼아, 국가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면천(沔川)³⁴⁴⁾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석방되어 중앙 정계로 복귀했다. 말하자면 청의 내정간섭, 청국상인의 횡포에 의해 국민들 사이의 반청(反淸) 감정이 차츰 높아가는 가운데, 당시 정계의 중진이었던 김홍집·김윤식 등은 한쪽에선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민비 일파와 연대해서, 결국은 청에 의존하면서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 기간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모자가 되어, 일본을 멀리하고 친로(親露)정책을 획책하는 민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김홍집내각은 이 문제 처리의 잘못으로 해서 민중의 반발을 사, 김홍집 등은 맞아 죽고 김윤식은 한 때 몸을 감추었지만 끝내 붙잡혀, 종신유형(流刑)의 몸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생사의 구별은 있으나 김홍집내각은 보기에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즉 1896년(건양 원년) 3월, 김홍집내각이 타도된 후, 김윤식은 경기도 광주(廣州)의 방이동(芳莢洞)에서 근신대죄(勤愼待罪)를 했는데 6월 8일

341) 외무대신.

342) 주요도시·군·섬의 장관.

343) 僉節制使·종3품의 무관직.

344) 충청도 康津郡.

이종열(李宗烈)의 상소·탄핵에 이어 이시우(李時宇) 등 50여 명의 거듭 되는 탄핵이 잇따랐기 때문에 광무원년(光武元年·1897) 12월 20일 끝내 제주도로 종신정배(定配)가 결정된 것이다.

이승오(李承五·奎瑞)

...그도 역시 종신정배(終身定配)되었다...

김윤식(金允植)은 똑같이 종신정배가 결정된 전 판서 이승오(李承五)와 함께 일단 고등재판소에 구류된 후, 이듬해의 1월 6일 인천에서 용해함(龍海艦)에 탑승, 제주도 산지항(山地港)에 도착한 것은 1월 11일의 일이었다. 윤식에게는 그와 고락을 함께 하기 위해 나인영(羅寅永)이 동행했으며 또 잔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기동(奇童)이 따라갔다. 『속음청사(續陰晴史 권8)』에 따르면 산지항에 도착한 김윤식과 이승오는 금오위장(金吾衛將)의 안내를 받고 이선달 집에서 잠깐 쉬 다음 말에 타서 제주성에 들어가 관문(官門)밖의 박양노(朴陽魯)의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당시의 제주목사는 이병휘(李秉輝)였는데 그들에게 즉시 옥문에 들어가도록 명령했다. 옥에 들어가보니 모두가 구면이었다. 참사(參事) 서주보(徐周輔)·세마(洗馬)³⁴⁵ 정병조(鄭丙朝)·승지 김경하(金經夏)·위원군수(渭原郡守) 이범주(李範疇)·부위(副尉) 이태황(李台璜) 등이었다. 모두가 종신 또는 10년의 유배라는 것이었다.

김윤식은 이승오와 더불어 옥중에 있길 40일만인 2월 20일 보석되어 제주읍교동(校洞)의 김응빈(金應斌)댁으로 옮겼다. 그들에 이어 정병조·서주보·김경하·이태황 등도 보석되었다. 객객 이용호(李容鎬)³⁴⁶

345) 왕세자궁인 동궁에 근무하는 하급관리.

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제주에는 13명의 유배인이 있다고 한다. 윤식은 「제주에 이렇게 적객(謫客)이 많았던 일은 없을 것이다. 장차 그들로해서 섬이 가득 찰터인데 우습고 통탄할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 그는 현지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까지 낳아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게된다. 또 귤원(橘園)이라는 시회(詩會)를 24회에 걸쳐 열고 있다. 적객만으로 시작된 이 시회에는 차츰 제주출신 문인들도 참가하여 시의 교환(交歡)을 하고 있다. 그들의 시를 모아 제명(題名)을 「귤원아집(橘園雅集)」이라고 했다.

그 사이 1898년(광무 2년) 2월에는 제주목사 이병휘의 가혹한 백성수탈에 항의해서 수백명의 마을사람들이 관정(官庭)에 들어섰다. 방성칠(房星七)은 그들의 수령으로서, 화전세(火田稅)·목마장세(牧馬場稅) 및 호포(戶布)³⁴⁷의 과봉(過奉)³⁴⁸, 관이 사환미(社還米)³⁴⁹를 조작하여 수탈하는 폐단을 시정할 것도 요구했다.

제주도 민요를 상기(想起)해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강한 북풍 북풍님아
돌려야될 고리미(高利米)가 있는가
빌린 빛이 있는가
등 꼬부리고 구석에 오무라든다

여기에서 북풍에 몸이 오무라드는 상황은, 빚쟁이를 만난 가난뱅이에게 비유한 착상(着想)인데 참으로 재미있다.

346) 진 校吏.

347) 집집마다에서 綿布 및 苧布를 견워들이는 세금.

348) 지나친 징수.

349) 흉년 또는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여해주었다가 풍년 또는 추수기에 반납시키는 환곡제도.

이목사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은밀히 조천포(朝天浦)로부터 장정 60명을 모아 이것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 돌아, 3월 1일 봉기했다. 그 때 적객들은 방성철의 포섭공작을 두려워하여 각지로 도망쳤다. 그 공작에 호응해서 봉기군의 좌우대장이 된 것이 역시 유배인인 김낙영(金洛榮)³⁵⁰⁾과 최영순(崔永淳)³⁵¹⁾이었다. 그것은 적객 이용호(李容鎬)의 꼬임으로, 내부로부터 봉기군을 와해시킬려는 목적을 갖고 들어간 것이다. 그 때문에 김낙영은 남수구(南水口)의 성 위로부터 밀려 떨어져 민중에 의해 타살되었던 것이다. 김윤식과 이승오는 조천·김녕·행원을 거쳐 종달리(終達里)³⁵²⁾로 피했다.

아무튼 방성철의 난은 불과 반 달만에 진압되었지만 난 중에 도주하고있던 목사 이병휘가 원직(原職)에 돌아가려하자 민중은 팔을 걷어부치고 머리를 흔들며 「이병휘의 죄는 방역(房逆)³⁵³⁾보다 심하다. 온 백성은 그 살을 씹어먹고 싶을 정도이다. 어찌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겠오」라고 누구 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종달리로 난을 피해있었던 김윤식 등은 제주성의 수복과 동시에 성내로 돌아왔다. 도중 「연북정(戀北亭)」에 오르고 있다. 연북정이란 글 그대로 유배인들이 여기에 올라 국왕이 있는 북쪽, 서울을 우러르던 곳이다. 거기에는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선생의 시도 있었다.

亭臨海浜	帆檣如林
俯視千井烟火	眺望万里波濤

350) 진 都事.

351) 亨淳.

352) 구좌읍.

353) 방성철.

해변의 연복정에 오르니 돛대는 숲과 같고
 내려다보니 인가에서
 불을 때는 연기가 나고
 바라보니 만리의 파도가 보이는구나

광무 2년(1898) 5월 6일 현익선(顯益船)으로 종신형의 이세직(李世植)³⁵⁴⁾이 유배되어 왔다. 그는 성내에서 학도들을 모아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동년 10월 3일 추자도로 옮겨지고 있다. 오현단(五賢壇)³⁵⁵⁾은 남성(南城) 아래 있는데 지난날의 굴림서원(橋林書院)의 유허(遺墟)이다. 윤식은 「過五賢遺墟有感」³⁵⁶⁾는 글귀를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往時茫茫一島過	五賢遭遇亦風波
吾行非敢前修儼	此地能無曠感多
謾說雲門遊布襪	空憐笠澤帶魚蓑
平生瘦信最蕭瑟	況乃逢秋意若何

지난날 망망하게 이 섬을 지나갔던
 오현들은 모두가 풍파를 만나서였네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선인들과 비길 바는 아니로되
 이곳에서 슬픈 생각이 없을 수 없구나

354) 이세직은 일명 일식(逸植)이라고도 했다. 조선 말기의 자객(刺客)이다. 갑신정변 후 민비정권의 보복수단으로 세도정권의 거물 민영소(閔泳韶)의 밀지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개화당의 김옥균·박영효를 암살하려고 했다. 당시 프랑스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린 홍종우(洪鍾宇)와 짜서 종우는 김옥균을 상해(上海)서 암살하고 자신은 박영효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영효의 동지인 이규완(李圭完) 등에게 붙잡혀 일본 경찰에 인도된 후 조선에 송환되고 그 죄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355) 敬仁齋.

356) 오현 유적을 지나려니 감회가 새롭다.

운문에서 베버선으로 놀던 일 말하지 말게
집에서 편지가 많지않음이 애처롭구나
유신의 평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인데
향차 가을을 맞았으니 생각이 어떨는지

김윤식은 이 밖에도 제주성 주변의 명승(名勝)을 찾아서는, 이승
오³⁵⁷⁾ · 김사찬(金思燦) · 서주보(徐周輔) · 정병조(鄭丙朝) · 이용호(李容鎬)
· 한선회(韓善會) 등의 적객 등이나 홍종시(洪鐘時 · 研農) · 김종하(金鐘
夏 · 南波) 등의 여러사람과 술자리를 베풀고 부시(賦詩) · 위기(圉基) 등을
즐기고 있다. 그것은 사형에 이은 중형수(重刑囚)의 생활이라기 보다는
중앙의 정관계에서 은퇴한 자의 유유자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광무 5년(1901) 5월에 「신축년(辛丑年)의 교난(敎難)」³⁵⁸⁾이 일어났다.
즉 광무 3년(1899) 12월에 목사 박용원(朴用元)과 교대하여 병사(兵使)출
신의 이상규(李庠圭)가 취임함과 동시에 횡포를 부려 부자로부터 6만
량을 수탈, 본토로 실어나르려 했는데 전라도 안렴사(按廉使)³⁵⁹⁾ 이도
재(李道宰)의 염객(廉客)³⁶⁰⁾ 강태흠(姜台欽)은 「이게 모두 제주도민의 고
혈(膏血)이다. 바로 안렴사의 처분을 기다려 민간에게 돌려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반출해서는 안된다」고 저지했다. 그 때문에 그는 광무 5년
(1901) 2월에 면직되었다.

그런데 앞의 이상규의 하수인이 되어 전재(錢財)를 빼앗은 무리들이
거의가 천주교에 들어가 있어 구(舊) 목사에 대한 원념(怨念)은 동시에
천주교도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세관(奉稅官) 강봉

357) 1900년 9월 5일 제주에서 병사.

358) 흔히 말하는 李在守亂.

359) 지방장관의 일종.

360) 비밀 염탐꾼.

헌(姜鳳憲)이 중앙의 탁지부(度支部·재무부) 및 내장원(內藏院)의 훈령에 의해 지세(地稅)를 비롯 온갖 잡세(雜稅), 심한 경우는 가축이나 수목, 달걀의 수까지 하나하나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천주교를 내세워 그 세금들을 받아들이어 절반씩 나누었던 것이다. 김윤식은 이렇게 쓰고 있다. 「산천초목, 조수어별(鳥獸魚鼈)이 모두 떨어져나가고 삼읍(三邑)의 돈이 말라, 우마전토(牛馬田土)가 이 때문에 값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소요(騷擾)가 어찌 민란(民亂)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재수난은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것이다. 또 그는 「세폐(稅弊) 및 교폐(敎弊)가 뼈에 사무친다」고도 쓰고 있다.

드디어 민중이 사망에서 모여들어 제주성을 공격할 단계에 이르자, 6월 10일, 제주 유배인의 타도이배(他島移配)가 결정되어 7월 10일 장윤선(張允善)과 최형순(崔亨順)은 금갑도(金甲島), 서주보는 여도(呂島), 한선회는 추자도, 이용호와 이범주는 신지도(薪知島), 김경하는 녹도(鹿島), 이태황은 사도(蛇島), 정병조는 위도(蝟島), 김사찬은 임자도(荏子島), 김윤식은 지도(智島)에 각각 이배(移配)케 되어 산지향을 출발했다. 김윤식은 제주에서 4년 반의 유적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해서 배소(配所)에 있길 10년, 1907년(융희 1년)에 사면 받고 돌아와 제실제도국(帝室制度局) 총재, 회계감사원경(會計監查院卿)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중추원 의장이 되었다가 한일병합의 조인(調印)에 가담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1919년 「3·1 독립운동」에 동조하여 작위를 반납함으로써 동포 사이의 신망을 회복했던 것이다. 당대의 석학(碩學)으로 문명(文明)이 자자했고 일본학사원(學士院)의 회원에 추대되어 많은 저서를 남겼다. <承政院日記·日省錄·續陰淸史·三千里 6호·濟州島歷史誌>

이원균(李源兢)·여규형(呂奎亨)·지석영(池錫永)·안기중(安沂中)

...자주민권운동을 했는데 인심을 혼란(惑亂)시켰다고 해서...

갑신정변(1884) 때,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로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徐載弼·1866~1951)은 박영효로부터 1895년 3월 1일자로 대역부도죄가 사면됐다고 들었고, 그의 권고에 따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결심하여 1896년 1월 귀국했다. 그는 우선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자주독립의 의식과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책이나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지탄할 필요성을 통감하여 신문 간행에 착수했다. 그래서 그는 동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을 발간했으나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의 신문의 효시(嚆矢)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탄압으로 1899년 12월 4일에 폐간되었다. 이제야말로 국가존망(存亡)의 위기에 있는 만큼, 청국 의존의 사대사상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그 상징적인 「영은문(迎恩門)」을 부수어 거기에 「독립문」이라는 이름의 기념문을 세움과 동시에 자주독립을 위해서도 「독립협회」라는 강력한 정치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독립신문을 통해서 「독립문」의 건립과 「독립협회」의 창립에 대해 제의(提議)했다. 바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시기인 만큼 관민을 말할 것 없이 자주독립의 의식이 높아지고 또 자주독립을 실현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독립협회」는 관민 30여명이 발기인이 되어 1896년 7월 2일에 창립되어 전 국민의 지원을 호소하는 「독립협회품고(稟告)」가 채택되었다. 그 창립의 목적은 여론을 환기해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시켜 국가의 자원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데에 있

었다.

독립협회는 창립 후 불과 3개월만에 이미 회원 1만여를 헤아리는 커다란 정치단체로 발전했다. 그러나 창립초기는 고급관료가 주도하여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의 건립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발기위원이 5백10원의 기금을 각출하여 만 1년만에 그 건설을 마쳤다. 그들은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왕궁에 돌아와 국왕과 정부가 자주독립의 체제를 갖춰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여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의 교육과 그 훈련을 실시했다. 이 시기는 민중의 진출기이며 독립협회가 토론회에 총력을 결집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은 더욱 발전하여 드디어 민중이 주도권을 잡아 구국선언(救國宣言)을 상소하는 등 본격적인 민주·민권·자강(自強)의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수구파정부의 부패와 무능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와같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정부에 대한 규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처음엔 연합해있던 정부의 요인과 독립협회의 주도자 간에 균열(龜裂)이 생겨 서로 대립하는 형세가 생겨났다. 수구파의 고급관료는 협회로부터 탈락하고, 이완용³⁶¹⁾과 같은 매국노는 회로부터 제명되고 참답게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선각적 지식인들이 독립협회를 주도했다. 그 결과 독립협회와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은 한층 강화·확장되었다.

이 추세에 두려움을 느낀 수구파의 정부는 독립협회가 서재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국외로 추방하려는 음모를 진행시켰다. 또 협회의 운동이 이권(利權)을 점탈(占奪)한 열강에 대한

361) 1858~1926, 호는 一堂.

반항이었다는 데서 외국공사들의 책동도 있어 정부는 조병식(趙秉式)·이기동(李基東) 등을 지휘자로 해서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³⁶²⁾나, 상주백정(尙州白丁)이면서 복술(卜術)로 출세한 길영수(吉泳洙)·박유진(朴有鎭) 등이 앞장 서, 어용행상대(御用行商隊)인 보부상(裸負商)과 관료자본가들을 동원해서 「황국협회(皇國協會)」라는 테러단을 만들어내어 독립협회를 때려부술려고 했을 뿐 아니라 협회원에 대한 테러·박해도 날로 심해져갔다.

그런데 뜻 밖에도 정부는 황제의 특명에 의해 광무 2년(1898) 3월 15일에 독립협회원인 전 승지(비서관) 여규형(呂奎亨)·전 관찰사(도지사급) 지식영(池錫泳)·전 부사(시장급) 이원균(李源兢)·전 군수 안기중(安沂中) 등 네사람을 체포하여 투옥했다. 또 협회 대표위원 정교(鄭喬)³⁶³⁾를 러시아의 절영도(絶影島)³⁶⁴⁾ 조차(租借) 반대의 문제로 러시아와의 불화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는 제빨리 탐지하여 지하로 숨어버렸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총대위원(總代委員)에 이건호(李建鎬)를 선출하여 3월 20일에 항의문을 경무사(警務使)³⁶⁵⁾ 김재풍(金在豐) 앞으로 송부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 (1) 작년 11월 2일에 반포한 법률 제2호제11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혐의로, 또한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를 명백히 하고, 체포후 24시간 이내에 송치토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요즘 경무청은 사람을 체포하여 며칠씩이나 구속해두면

362) 그 공으로 해서 제주목사가 됨.

363) 1856~1925, 호는 秋人. 1904년에 제주군수.

364) 지금의 부산시 영도.

365) 경무청장관.

서 송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칙령(勅令)과 법률의 위반이다.

- (2) 지금 독립협회 회원 수명이 체포되어 있는데 그 체포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속히 명시하라, 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황제의 조명(詔命)으로 이원궁·여규형·지석영·안기중 등 4명은 「유언비어(流言蜚語)를 전파하여 세상과 민심을 현혹시킨 죄」로 10년의 유형을 받아 제주목에 정배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수구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제 자신이 바로 새로 제정된 법률의 존재를 무시하여 종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踏襲), 황제의 자의(恣意)에 의해 형량을 정해 유배시킨 것이다. 그뿐 아니다. 죄명조차 「유언비어의 전파」라고 하는 실로 추상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신법률과 장정(章程)에 대해, 황제의 전제권(專制權)을 남용한 조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독립협회는 수구과정권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탄압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6일, 독립관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협의한 결과, 이홍식(李弘植)·장봉(張鵬) 등을 총대위원으로 선출해서 법무대신 이유인(李裕寅) 앞으로 강경한 항의문을 보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1) 국민에게 법률이 공정하게 행사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이 법률을 신뢰하여 징려(懲勵)되는 것이다.
- (2) 우리나라의 구식(舊式)에 있어서도 중죄인에 대해서는 국청(鞠廳)³⁶⁶을 마련하여 취조한 전례가 있으며 신식(新式)으로서는 대체로 크고 작은 죄인을 사법관이 따져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조규(條規)가 있다.
- (3) 이번의 지석영 등 4인에 대한 죄안(罪案)은 「마음씨가 음비(陰秘)

³⁶⁶) 중죄인을 신문(訊問)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된 役所.

하고 동시에 민심을 혼란(惑亂)시켰다」고 되어있지만 죄안이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년의 유형이 어떤 형률(刑律)에 저촉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 (4) 재판의 판결이 없으므로 인민은 그것에 의구(疑懼)를 갖게되고, 인민이 의구를 품게됨으로써 법률을 신뢰 않게 된다. 그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해치게 된다.
- (5) 제정된 국가의 법률을 운용하는 것은 사법관의 직권이다. 따라서 법무대신은 직권으로써 4인의 죄상을 재심리하여 그것이 형법의 몇 조에 해당했는가를 재판 명정(明定)하여 전 국민으로 하여금 법률에 의해 징려(懲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회답을 조속히 바란다고 되어있다.

이와 동시에 독립협회의 회원들은 3월 27일 제24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나 인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을 긴급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테마 아래 인권옹호가 강하게 외쳐지고 황제와 법무부의 횡포를 신랄하게 규탄했다. 그 결과 고종은 동년의 6월 29일 앞서 제주도에 불법유죄(流罪)된 지석영 등 4명을 사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大韓季年史・獨立協會研究>

순종조(純宗朝 · 재위 1907~10)

박영효(朴泳孝)

...대신(大臣)암살의 음모를 문책 받아...

박영효(朴泳孝 · 1861~1939)는 갑신정변 후 처형된 판서 박원양(朴元陽)의 차남으로 태어나 자를 자순(子純)이라고 했다. 철종왕의 사위로 뽑혀 정1품의 금능위(錦陵尉)³⁶⁷⁾의 영작(榮爵)을 얻은 인물이다. 더구나 초기 개화파의 지도적 멤버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후일 그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신사상은 나의 족문(族門)인 환재 박규수(朴珪壽)³⁶⁸⁾댁의 사랑방에서 태어났다. 김옥균 · 김윤식 · 홍영식 · 서광범 · 서재필 · 나의 백형(伯兄 · 泳敎) 등과 때때로 제동(齊洞 · 서울)의 박규수 댁에서 회합했던 것이다」(東光誌 9호). 이밖에 어윤중(魚允中) · 백춘배(白春培) · 정승하(鄭乘夏) 등 소장정치인도 중국에의 사신으로 왕래했던 박규수, 또는 통역관으로서 사신에 수행했던 오경석(吳慶錫) · 의약업에 종사하고 있던 유대치(劉大致)³⁶⁹⁾ 등의 국제문제와 개화사상의 영향은 컸다.

유대치 등은 일찍부터 개국을 논하고 유신사상을 선전해서 동지를 모았다. 뒤에 개화당의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 배후에서 정국에 작용을 미쳤으므로 「백의정승(白衣政丞)」이라고 불리었다. 박규수나 유대치 등과 같은 선각자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은 박영효는 근대조선의

367) 국왕의 사위에게 수여되는 명예직.

368) 雅號 瓚齋. 1807~76, 조선 실학파인 燕岩 朴趾源의 손자로, 평안감사 시절에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람.

369) 洪基라고도 했음.

개명적(開明的)인 정치가로서 적잖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정치가로서 두각(頭角)을 나타내는 것은 고종 19년(1882) 임오군란의 사후처리문제로서 제물포(濟物浦)³⁷⁰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의 「대신과 국서(國書)를 보내어 일본국에 진사(陳謝)한다」고 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왕명을 받아 수신사(修信使)가 되어 수행원 15명을 데리고 8월 9일 인천으로부터, 메이지마루(明治丸)의 선객이 되어 일본으로 갔을 때부터일 것이다. 그가 약관 22세 때였다.

그들 일행은 근대조선의 혁명아(革命兒) 김옥균 등 그야말로 신흥(新興)근대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혁신적 의기에 불타는, 귀족 명문의 청년들의 일단(一團)이었다. 이 때 메이지마루의 배 안에서 고안한 것이 지금의 「태극기」인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청국의 대한간섭(對韓干涉)의 대항책으로서 수신사 박영효 등의 소장파 개화인사를 회유(懷柔)하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그 때 일본은 이미 근대제국주의가 대외 식민정책으로 흔히 써온 「병 주고, 약 주고」식 외교술책에 익숙해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중병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약해줄 정도의 친절과 정중함을 보였다.

박영효 일행은 11월 하순, 신임 주한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와 함께 귀국했다. 그 사이 정부기구도 대폭으로 개편되어, 요직(要職)의 대부분이 사대보수의 척족(戚族)계열에 점유 당해, 문명개화와 자강독립의 혁신정책을 구현하기에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양상(樣相)이 짙었다. 박영효는 복명(復命) 수일 후에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임명되었지만 곧 광주유수(廣州留守)³⁷¹으로 좌천되었고 개화독립을 지향하고 있던 소장정치

370) 仁川.

371) 兵權을 갖는 경기도지방관.

가들도 요직에서 밀려났던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일단 총후퇴하고 서서히 재흥(再興)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당간부들은 일본의 조언(助言)과 협력을 끝이끝대로 믿어, 내정 개혁을 위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중대한 음모를 진행시켰다. 그들은 9월 17일께 박영효택으로 남몰래 모여들어 시마무라(島村)일본대리공사까지 함께 정적인 친청사대당(親淸事大黨)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대담한 쿠데타계획을 모의했다. 그들은 우정국(郵政局) 개설피로연의 날(10월 17일) 쿠데타를 결행하여 하루 밤에 척족 6대신과 환관(宦官) 1명을 희생의 제물로 한 다음, 18일에는 신내각의 멤버와 10개조의 혁신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일본의 배신과 청군의 개입으로 「3일천하」의 참패로 끝났다.

박영효·김옥균 등은 치토세마루(千歲丸) 선장의 용기와 의협(義俠)덕분으로 가까스로 일본에 망명할 수가 있었다. 박영효는 김옥균이 상해(上海)에서 홍종우에게 사살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상의 차이로 헤어져 서광범과 함께 구미(歐美)를 만유(漫遊)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본의 정략에 의하여 비밀리에 인천의 외국조계(外國租界)로 돌아와 국왕에게 혈서로써 귀순(歸順)을 애원했다. 그 때 마침 청일전쟁의 평양대회전(平壤大會戰)에서 일본이 대승한 때였으므로 민비의 정치적 산하(傘下)에 포섭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정계에 복귀한 그는 스스로 친일혁신파를 자임(自任)하여 궤멸 직전의 민비당 세력의 재건에 전력을 다하는 전신(轉身)을 했다.

그래서 왕실의 신임을 확보해서 정치무대로 뛰어나온 박영효는, 대원군 계열의 혐기(嫌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정부 안의 개화파는 그의 출현으로 정치적 권력이 분할될 것을 우려,

박영효의 발언을 보이콧하는 태도를 취했다. 안경수(安卿壽)³⁷²⁾·김가진(金嘉鎭)³⁷³⁾ 등이 주동이 되어 그를 「양합음거(陽合陰据)³⁷⁴⁾하는 자」라고 비난한 것으로도 그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치정세 속에서 지금까지 큰소리 치던 친일정책의 기염은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영효일과는 공공연히 내외로부터 적대시(敵對視) 당해 어느새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말하자면 대외적으로는 일본인의 조계확장안(租界擴張案)에 반대한 때문에 일본측의 미움을 샀고,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 이후의 척족계열의 반감이 재연(再燃)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영효 일과는 일종의 자위책으로, 왕실과 척족의 동향을 감시·경계하면서 왕비가 중심이 되어있는 친로적(親露的) 경향을 지적하여 일본측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또 기정방침에 따라 친일세력의 직계로 간주되는 훈련대에게 왕궁의 호위를 담당시켜 왕궁과 외부와의 접촉을 다잡으려고 했으나 이 일로 박영효 일과는 신내각·국왕과 정면충돌하고 말았다. 흥분한 국왕은 다음과 같은 전례없는 발언을 했다. 「호위병의 교대는 짐이 바라는 바가 아님으로 강권(強勸)하지 말라. 기정의 방침이라고는 하나, 작년 6월 이후의 칙령, 기타의 재가사항은 어느 것 하나 짐의 의지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는 것. 즉 갑오년(1894) 6월 이후 「경장(更張)」이라든지 「개혁(改革)」이라고 칭하여 제정·발포한 수백의 칙령과 법률이 일본의 협박과 친일정책들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왕 스

372) ?~1900, 채무차관.

373) 1846~1923, 궁내차관.

374) 겉으로는 영합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에서는 배척한다.

스로 폭로했으므로 그 발언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실로 컸다. 당면의 문제로서는 성립되어 얼마 되지 않는 박정양(朴定陽)내각이 붕괴되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무서운 음모가 작용해서 무참한 「왕실의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 가장 주목됐던 것은 이노우에(井上)공사의 태도였다. 이노우에가 박영효를 미워해서 버렸던 후였으므로 재경(在京) 일본인의 일부는 이번의 정치활동을 유발한 박영효에 대해 갖가지 중상·모략을 하고있었다. 윤5월 14일, 일본인 사사키 모(佐佐木 某)란 자가 「박영효 등이 왕비살해의 대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궁중에 밀보(密報)했기 때문에 그 날 밤 박영효에 대해 비밀체포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어디서 그것을 들었는지, 박영효는 체포 직전에 자택에서 탈출하여 부하인 이규완(李奎完)·신응희(申應熙) 등과 더불어 일본으로 망명해버렸다.

그 후 그는 1907년에 귀국하여 일제(日帝)의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지지로 죄를 용서받아 헤이그밀사사건(密使事件·1907) 후의 정미정변(丁未政變)³⁷⁵⁾에선 송병준(宋秉峻)³⁷⁶⁾에게 협력을 약속하여 고종 폐위에 즈음해서는 이완용내각이라는 매국(賣國)정권의 궁내대신에 임명되었지만 고종의 양위(讓位)에 반대, 파면 당하여 결국은 대신암살음모사건을 추궁 받게 되고 제주도에 2년간 유배되었다. 그것은 융희원년(1907) 8월 27일의 일이었다. 그는 제주에 도착하여 옥에 갇혀졌을 때 감회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고 제주출신의 고로(古老)는 말한다.

375)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376) 維新會두목.

曉蜩逃生無跡去 夕蚊永死有聲來

새벽의 빈대가 살아서 도망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저녁의 모기는 영영 죽으면서 소리를 낸다

그는 옥에서 보석된 뒤 한 때는 조천리에 사는 김희주(金熙胄·전 제주 군수)집에 머물렀었지만 그 후 제주읍 광양동(廣壤洞)의 적사로 옮겨 현지의 여자에게 장가 들어 구남천(九南泉)이란 데에 과수원³⁷⁷⁾을 마련, 도저히 유배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보냈던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 2년간 유적되었다가 방환(放還)되었는데, 그 후도 일본의 침략정책에 시종 협력하여 합병 후, 일본인에 의해 후작(侯爵)을 하사받고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고 있다. <국사대사전·韓民族의 閃光>

이승훈(李昇薰) 이하 20여명

…데라우치(寺內)총독 암살사건에 연좌해서…

이승훈(李昇薰·1864~1930)은 조선의 독립운동가이며 뛰어난 교육자이기도 했다. 일명을 인환(寅煥)이라고도 했고 호를 남강(南岡)이라 했다. 그는 어릴 때 부모와 사별(死別)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는커녕 막바로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10세 때 정주(定州)³⁷⁸⁾에 사는 임일권(林逸權)의 집에 고용되어 일찍부터 상업에 눈을 떴다.

나이 30쯤에 자립하여 점포를 차렸는데 생각 외로 번창하여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18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자 그는 협회에 가입해서

377) 일반에서 박관서과수원이라고 불렀다.

378) 평안북도 지방.

재무를 담당, 자주·민권운동의 선두에 섰다. 32세 때 정주 오산면용동(五山面龍洞)에 이주한 다음엔 오로지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우선 그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강명의숙(講明義塾)을 설립하여 교육이나 결사(結社)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드디어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어가는 가운데 독립협회 평양지회가 쾌재정(快哉亭)에서 결성되었다. 그 때 그는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1878~1938)의 시국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조선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조선이 자주독립을 하고 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신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최선결(最先決)문제라고 재인식했다. 그는 향리에 돌아가자마자 전 재산을 내놓아 민간의 유지들로 하여금 정주에 오산(五山)학교를 설립했다.

오산학교는 안창호 등이 평양에 설립한 대성(大成)학교의 건학정신(建學精神)³⁷⁹⁾에 입각하여 자주독립을 위한 민주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애국적 인재 양성을 맡았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이용후생(利用厚生)·부국강병(富國強兵)·실사구시(實事求是)³⁸⁰⁾의 이념에 중점을 두었다. 1907년 12월 24일 개교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식사(式辭)를 술회했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손을 가슴에 대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 못할 일이다. 이 아름다운 강산,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일제가 하는대로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총을 짊어진 사람, 칼을 찬 사람도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인민이 자각하여 일어서는 일이다. 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379) 점진적으로 대성한다.

380) 사실에 바탕을 두어 진리를 구한다.

되어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을 한시라도 바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급한 일이다. 우리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자를 나무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시원찮기 때문에 놈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옛 성인의 말씀에 『人必自侮而後 人侮之(사람이 자신을 업신 여기면 남들도 업수이 여긴다)』고 했다. 내가 이 학교를 설립한 것도 후진을 교육하고 만분의 일이라도 국가를 위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7명의 학생 밖에 없지만 이제부터 더욱 발전하여 언젠가는 7백명에 이를 날도 그리 멀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힘을 합쳐 사랑하는 조국을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만큼의 강한 인간이 되어 주길 바란다……」 (『남강 이승훈(南岡 李昇薰)』)

이러한 지방의 사립학교 설립은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인재 양성이라는 민족적 요망에 부응한 것이며, 이들 사립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은 전통적인 유교교육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교육으로 전환을 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했다.

한편 평안도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新民會)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신민회는 1906년 을사조약 체결 후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이갑(李甲)·전덕기(全德基)·양기탁(梁起鐸)·안태국(安泰國)·이동녕(李東寧)·이동휘(李東輝)·조성환(曹成煥)·신채호(申采浩)·노백린(盧伯麟) 등과 조직한 민족운동의 비밀결사로, 그 산하에 청년학우회·대성학교·대극서원(大極書院)·대한매일신보·회사경영체 등의 기관을 마련하여 교육·문화·경제면에서 민족의 역량을 양성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때 이승훈은 신민회의 간부이면서, 산하의 산업기구로서 평양 마산동(馬山洞)에 자기(磁器)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부흥에 노력하는 한편, 국권회복의 자강운

동(自強運動)의 선두에 서서 크게 활약했다.

이래서 1910년을 전후하여 황해도·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배일(排日) 독립운동이 비밀리에 전개되기 시작하자, 1910년 5월에 제3대 통감(統監)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조선에 있어서의 헌병경찰제를 강화해서 이 운동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건을 날조해서 그 조직적인 활동을 탄압하고 해산시켰다.

안중근(安重根)의사의 종제 안명근(安明根)은 황해도의 신천(信川)지방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1910년 12월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철교 준공식에 참석하는 기회에 그를 암살하고 북간도로 망명하려고 계획했지만 그것이 밀고 때문에 폭로된 때문에 일본의 경찰은 안명근을 체포한 위에 김홍량(金鴻亮)·김구(金九·1876~1949) 등 황해도 일대의 자산가나 지식인을 대량으로 검거했다. 이들 인사는 안악(安岳·황해도)에서 양산(楊山)학교를 설립하여 면학회(勉學會)·기독교의 집회 등을 통해서 독립사상을 고취했을뿐 아니라 간도(間島)에의 망명활동을 획책하는 등, 직·간접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중심적 인물이었다. 일제는 큰사건을 날조하여 17명을 체형에, 또 20여명을 제주도 유형에 처했다. 그것이 이듬해 5월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같이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음모」 사건을 날조하여, 이승훈·양기탁·유동열(柳東說)³⁸¹⁾ 등의 신민회 간부와 기독교인 등 6백여명을 체포하여 120명을 투옥하여 그 중 105명을 유형(流刑)에 처했다.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 이승훈은 이 사건에 의해 1911년 5월에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은 일제(日帝)가 날조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법정투쟁을 전개

³⁸¹⁾ 1878~? 拉北.

했지만 결국 6명만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승훈은 그 6명 중의 한 사람인데 동년 9월 제주도에서 서울로 호송되어 4년 2개월의 옥고를 치렀던 것이다. 출옥 후 그는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神學)을 닦고 한 때 목사직에 있었지만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즉시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항일운동에 몸을 던져 싸웠다. 그 때문에 다시 투옥되어 3년간을 복역했다. 출소 후 동아일보 사장 등 언론·교육계에 있어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계속 고취시키고 있었으나 1930년 5월 9일 아깝게도 67세의 나이로 파란만장의 생애를 마쳤다.

<南岡李昇薰·3·1독립운동秘史>

후문(後文)에 대신해서

－ 제주의 人脈과 流人文化에 대해 －

지금까지 고려조(高麗朝)로부터 조선 말까지의 유형(流刑)을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정리와 후문으로서 섬 유배에 얽힌 제주의 인맥과 유배인문화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해 두겠다.

제주인맥의 형성과정

제주도는 과도가 거친 황해의 한가운데에 떠 있고 그 중앙에는 조선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한라산이 뚜렷히 솟아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와 같이 왕년에는 절해(絶海)의 원류(遠流)의 섬으로서 반갑잖은 어두운 이미지가 없지도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역사의 섬, 낭만의 섬, 자연의 관광의 섬으로서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한 없는 흥미와 감동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아득한 옛날, 지금부터 850여년 전까지는 조선반도 왕국

안의 한 도서(島嶼), 즉 군현(郡縣)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된 하나의 섬나라(島國)로서 인정되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고 풍성한 역사를 갖춘 섬나라였던 것이다. 그런만큼 섬의 개국신화도 또한 우주기원신화(宇宙起源神話)에 없는, 땅 속으로부터 시조(始祖)가 출현했다는 모티프로 말해지고 있다. 「고려사(高麗史)」나 「탐라지(耽羅誌)」 등 갖가지 고문헌에 쓰여있는 신화에 의하면 「그 옛날, 사람이 아직 이 섬에 살고 있지 않았을 때, 삼신인이 이 구멍(삼성혈)으로부터 지상에 나타났다. 그 최초에 나타난 것이 고을나(高乙那), 다음에는 양을나(良(梁)乙那), 막내는 부을나(夫((孚))乙那)라고 불렀다. 삼신인은 언제나 수렵을 해서 수육(獸肉)을 먹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보니 낚선 하나의 석함(石函·돌상자)이 표착하고 있었다. 세 여자와 오곡과 가축이 나왔다. 그래서 고·양·부 세사람은 각각 한 사람씩의 여자를 얻어 세 쌍의 부부가 되었다. 세 부부는 일도(一都)·이도(二都)·삼도(三都)라고 하는 세 군데에 살아서 끝내 현재의 제주도민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고·양·부의 3성(姓)은 모두가 선조의 발상지라고 해서 제주를 본관(本貫)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곧 「삼국지(三國志)」나 「후한서(後漢書)」의 한전(韓傳) 등에 전해지고 있는 「마한(馬韓)의 서쪽 바다의 섬에 주호국(州胡國·제주도)이 있는데 그 나라의 사람은 키가 낮고 몸뚱이가 작다. 이곳 사람은 머리를 깎고 다룬 가죽(鞣革)의 옷을 입고있지만 그 옷은 상부만 있고 하부가 없다. 또 이곳 사람들은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우며 배를 타서 섬과 섬 사이나 연안을 왕래하면서 한(韓)³⁸²⁾의 가는 곳마다에서 장사를 하

³⁸²⁾ 한족의 거주지.

고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건너와서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지껏 확실치 않다.

아무튼간에 주호인(州胡人)들이 생활했던 원시사회는, 한라산의 대폭발에 의해 괴멸상태(壞滅狀態)가 되고 그 후에 고·양·부라는 삼을나의 신화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비록 한라산의 대분화(大噴火)로 섬이 폐허화했다고는 하나 겨우 그들 3삼인만이 살아남을 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을 것이다. 그들 셋이 화산 폭발의 전후(前後)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지배자에 유사한 모습과 형식을 갖고 존경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섬의 개조(開祖)신화로서 후세에 전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원주민으로서의 고·양·부라고 하는 삼을나 씨족이 우선은 섬의 대지(大地)를 개척하고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동으로는 일본의 규슈(九州)지방, 남은 류큐열도(琉球列島), 서로는 중국의 산둥(山東)지방, 북으로는 조선반도로부터 흘러들어온 제족(諸族)이 섬나라 만들기에 참여했을 것이다. 섬은 반드시 인종단위(人種單位)가 아니었을 것이다.

섬의 민요가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일본서도 드러온 새야
강^{*}남서도 드러온 새야
오늘가저 널가저 흐는
청대썰에 이실이 지언
늘개젓언 못날암서라

(주) 일본서도 들어온 새야
강남(江南)서도 들어온 새야

오늘 간다 내일 간다더니
청대(靑竹)앞에 찬 이슬이 내려서
날개가 젖어 못 날더라

× × ×

강남 가는데는 햇님 보고 가라
이허도(離虛島)가 반길이라고하지
이허라고 말고 가라
말하지 않았다고 남이 웃을까
이허라고 말고 가라
이허라고하면 나는 눈물난다

(주) 이어도여 이어도여
이어 이어 이어도여
이어하는 소리만 들어도 나 눈물난다
이어도 말은 말고서 가라
강남가는 해남(海南)길로 보면
이어도가 절반(切半)이라더라

※ 이어도(離於島・離虛島)=제주도의 서남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섬

※ 강남(江南)=중국을 말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주)는 홍정표(洪貞杓) 저 「제주도민요해설」에 따름

× × ×

예래당포(猯來塘浦)에 일본배는 들라
칠성과 같이 흠어지는 형제
명성과 같이 모여드는데

※ 칠성(七星)=북두칠성

※ 명성(明星)=셋별・금성

섬의 농민이나 고로(古老)들 사이에서 이력저력 전해지는 전설이나,

이들의 민요로부터도 그 옛날 일본이나 중국과 제주도가 가까이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고려조까지는 섬의 상선(商船)은 이웃을 찾아가는 기분으로 강남(江南)이나 규슈(九州)지방을 왕래하고 그들의 배도 또한 이 섬에 자주 왕래했을 것이다.

그 후 제주도는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476)에 부용국(附庸國)이 되어 있었다. 「당서 동이전(唐書 東夷傳)」에 「당의 고종(高宗) 용삭(龍朔·661)·인덕(麟德·664~5) 연중에는 한 나라의 국주(國主)로서 사신을 보내어 입조(入朝)했고 또 당의 유인원(劉仁願)·유인궤(劉仁軌)가 백제를 멸당시켜 개신하자, 신라의 사자(使者)와 백제·탐라 및 왜(倭)의 3국의 대표자를 영솔(領率)해서 고종황제를 따라 태산(泰山)에 합사(合祀)했다」고 되어 있다. 이와같이 삼국시대의 제주도도 육지의 큰 나라나 마찬가지로 부용국으로서 어울렸지만 결코 그 치하(治下)의 군현으로서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신라가 망해 고려로 되자 태조(太祖·王建) 21년(938)에 탐라국의 태자 말로(太子 末老)가 입조하자, 태조는 신라의 예를 따라 성주(星主)¹⁾·왕자(王子)의 작(爵)을 수여했지만, 제주도를 하나의 군현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이 섬에 대한 지배권은 착착 강화되어져 이미 현종(顯宗) 2년(1011) 9월에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탐라에 「주기(朱記)」²⁾를 하사했다고 하며, 또 문종조(文宗朝·1046~83)에는 예빈성(禮賓省)³⁾ 안에 탐라구당사(耽羅勾當使)⁴⁾라는 관직이 있었다. 또 동왕 11년(1057) 정월,

1) 尊長에게 수여하는 호칭.

2) 고려의 郡縣제도에 편입된 사연을 국왕이 증명한 것.

3) 빈객이나 宴享을 관장했던 관청.

4) 지방에 파견되는 관직명.

고유(高維)를 우습유(右拾遺)⁵⁾로 임명했으나 중앙의 최고의정기관인 중서성(中書省)은 상주해서, 고유가 제주도 사람임으로 우습유와 같은 언관(言官) 즉 간관(諫官)⁶⁾을 수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때문에, 문종은 할 수 없이 그에 따라 타관(他官)으로 임명했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탐라 고씨의 고려에의 서사(筮仕)⁷⁾는 고유로부터 시작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그 아들로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⁸⁾에 이른 고조기(高兆基)⁹⁾와 같은 사람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이와같이 제주인은 고려로부터 이민족시(異民族視) 당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탐라국의 종말

고려의 내외정책이 정비·강화됨에 따라 이 섬의 고려화(高麗化)는 더욱 진행되어 드디어 숙종(肅宗) 10년(1105)에 새로이 탐라군(耽羅郡)이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반독립적(半獨立的)인 탐라국은 드디어 종말을 고하고, 조선왕국의 치하(治下)에 완전히 들어가 그 군현에 편입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되돌아볼 때 이 개혁이 과연 도민들에게 호감으로 맞아졌는가, 또 그들은 평화스러운 고려 백성으로서 왕명에 복종했는가, 어떤가는 크게 의심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제주도에 있어서의 삼별초난(三別抄亂·1270~73)을 4년에 걸쳐 겨우 진

5) 종6품.

6) 사간원·사헌부의 관원의 통칭.

7) 처음으로 仕官하는 것을 말함.

8) 정3품.

9) 호 鷄林.

정(鎭定)한 것도 도민의 고려조에 대한 적개심(敵愾心)을 이용한 것으로 볼만한 것이 아닐까……. 적어도 당시의 도민은 고려조의 충순(忠順)한 백성이 되지않았다는 것은 상상해볼만 하다.

원(元·蒙古)과의 혼혈

여·몽(麗·蒙)연합군이 삼별초난을 제주도의 주전장(主戰場)에서 평정한 후에도 송(宋)을 멸망시킨 몽고인의 원(元)왕조는 일본정토(征討)의 중요거점(據點)이 되는 이 섬을 병참지(兵站地)로서 강점(強占)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¹⁰⁾을 두어 직할통치(直轄統治)했다. 그뿐 아니라 원은 도민의 반원운동(反元運動)을 위협시하여 많은 도민을 육지로 내몰았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自逆賊之亂 元令島民陸居 而耽羅別屬於元

역적의 난이 있어 원의 명령으로 도민을 육지에 살게했다 제주는 원에 별도로 속한 땅

이라는 기사나 「고려사」에

平賊後，耽羅人外令出陸，依舊安業

적을 평정한 후 제주인을 육지로 내보냈다

고 하는 기록은 틀림없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고려는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에 「제주도루인물추쇄도감(濟州逃漏人物推刷都監)」이라는 관직을 두어 원이 강제로 출륙(出陸)시킨 도민을 찾아내어 섬에 돌아가도록 했다.

더구나 만족할줄 모르는 포학(暴虐)을 다한 원제(元帝)는 여기에 목장

10) 몽고인의 牧官.

을 두어 말을 기르고 또 이 섬에 중죄인을 유배시켜 식민(植民)을 장려했다. 「동사회강」에 「원의 시대, 유진(留鎭)·목마(牧馬)를 위해 원인(元人)의 제주 왕래가 매우 많았다. 충렬왕조, 원은 죄인 40명을 이 섬에 유배했다. 때문에 제주에는 원 사람의 자손이 많다. 지금 조(趙)·이(李)·석(石)·초(肖)·강(姜)·정(鄭)·장(張)·송(宋)·주(周)·진(秦)의 적(籍)을 원으로 하여금 성관(姓貫)으로 하는 자가 그들이니라. 명(明) 초에 운남(雲南)을 평정한 후 양왕(梁王)의 가족(家屬)을 제주로 옮겼다. 이제 양(梁)·안(安)·강(姜)·대(對)의 적(籍)을 운남(雲南)¹¹⁾으로 성관을 삼는 자가 그들이니라……」는 기록을 볼 때, 원의 점령기에 상당수의 원 사람이 이 섬에 이주하여 그 자손을 남긴 것 같다. 아직도 이 섬에 몽고의 풍속이 남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산물(產物)로서, 섬의 풍속이 본토와 다소 다른 것이 눈에 띄는 것도 당연하다.

원은 또 제주도를 고려의 한 군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국(島國)으로 보았던 것이다. 「원사(元史)」 탐라전(耽羅傳)에 「탐라·고려여국야(耽羅·高麗與國也)」라는 간단한 기사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원사(元史)가 특히 「탐라전」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라고 여겨진다.

원이 제주도를 강점하여 정동행성(征東行省)을 두고 일본 원정의 계획을 진행시킴에 따라 도민도 매우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되어 조선조항(造船造餉)의 역에 혹사 당했다. 이러한 막대한 병량(兵糧)과 사역은 무자비한 살육약탈자인 몽고병의 유린에 피폐해있던 도민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에 의한 도민의 반원(反元)감정은 소용돌이 치고 반원운동도 치열했다고 사실(史實)은 전하고 있다.

11) 중국남부 운남성.

탐라를 제주로 개명

원(몽고)의 일본 대원정(大遠征)이 완전히 실패하고 대원(大元)의 위광(威光)이 땅에 떨어져 그 후에도 세조(世祖)¹²⁾는 더 예의(銳意) 재정(再征)을 도모했지만, 내외의 정세가 도저히 허용하지 않고, 세조가 죽자 충렬왕 등이 상주(上奏)하여 동정(東征)의 불리(不利)를 역설했기 때문에 새로이 일어선 성종(成宗)도 동정을 단념하여 탐라를 고려에 반환했다. 그래서 고려는 섬 이름을 고쳐 「제주」라고 한 것이다. 이리하여 제주도는 고려의 군현으로서 세부(稅賦)를 부담하고 또 원의 조공국(朝貢國)으로서 그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원(麗·元)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이중 삼중으로 억압·착취 당한 도민의 괴로움은 상상을 넘는 것이었다.

정쟁에 의한 유배와 낙향

그런데 1368년 3월, 명(明)의 서달(徐達)의 군대가 대도(大都)에 들어가, 원의 순제(順帝)는 응창(應昌)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 순제는 병난(兵亂)을 제주도로 피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 최후까지 원의 세력이 남아있던 것은 운남(雲南)이지만 홍무(洪武)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한 명제(明帝)는 여기서 붙잡은 원의 양왕(梁王) 가족을 제주도로 옮기고 이어 원의 황족(皇族) 80여호를 제주도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들 사실은 순제의 이궁(離宮)이 제주도에 있었던 까닭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그로부터 한참 내려와서 영락(永樂) 4년(1406), 명의 성종이 내

12) 후비라이.

사(內使)를 조선에 보내어 부모의 공양을 위해 제주도의 동불(銅佛)을 갖고오도록 한 일이 있는데 그 때 명사(明使) 한첩목아(韓帖木兒)는

濟州法華寺彌陀三尊 元朝時良工所鑄也

제주법화사의 아미타불 삼존은 원나라의 뛰어난 공인이 주조한 것이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상도 순제가 제주도에 보낸 재보(財寶)의 일부였을 것이다. 즉 지금의 중문면하원리(河源里)에 법화사가 원조말(元朝末)의 순제 피난궁(避難宮)으로서 세워진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순제가 이곳에 피난하기 전에 원조는 주정권(朱政權)의 명에게 멸망당하고만 것이다.

이와같이 원의 1백여년간의 점령기, 특히 원으로부터 명으로의 교체기에 있어서 원의 지배층은 명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사람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 선주민 속에 들어가 생활을 개척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은 오랜 세월 동안에 본관(本貫)을 본토의 적당한 곳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잖으면 본토에서 온 성(姓)을 썼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은 원의 자손이라든가 윤남인의 자손이라고 지적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튼 우리들의 선조는 조선인 전체의 변이폭(變異幅) 안에 있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동시에 이 섬의 고대문화는 동중국해의 해상에 위치하는 하나의 섬으로서 잡다한 이 해역(海域)의 여러 문화 요소를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배인문화의 문제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되자 고려왕조의 존영(存榮)을 바라는 충

절(忠節)의식을 자랑삼아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른 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두문파계열(杜門派系列)의 유배·추방이 잇따라, 이 섬에 유배·낙향되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중기(中期)부터는 사화(士禍)·당쟁(黨爭)과 궁정을 둘러싼 음습한 권력투쟁이 격렬히 전개되어 정치적 보복이 되풀이 될 때마다 적대분자로 지목된 자는 인정사정없이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 때문에 근연자(近緣者)들은 화를 두려워해서 이 섬에 낙향하는 자가 잇따랐다. 이래서 제주도는 사화·당쟁의 희생자들의 수용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력적인 반권력적 사상을 날라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서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존경의 심경으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본토의 문화 흡수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성이 일반화되고 많은 사람이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고려 문종조(文宗朝·1046~83)부터이지만 고·양·부라고 하는 토성(土姓) 이외의 성이 먼저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남평문씨남제공파(南平文氏南濟公派)의 제주입도조·문작(文緯)¹³⁾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고려 명종(明宗) 24년(1194) 대제학(大提學)¹⁴⁾으로 있을 때 문교선화(文教宣化)의 임무를 띠고 입도, 중앙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도민 교화에 노력하여 그 자손들이 땅에 살도록 한 것이다. 이어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선조가 낙향해 온다. 그 입도조라고 전해지는 김윤조(金胤祖)는 형인 흥조(興祖)가 공민왕(恭愍王) 17년(1363)에 김정(金精)·조사공(趙思恭)등과 손을 잡고 간신신돈(奸臣 辛屯)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지만 끝내 발각되어 형이 피살되는 것을 목격, 연좌(緣罪)를 두려워해서 제주로 낙향한 것이다. 이 섬에

13) 加那君 司簡公.

14) 종2품.

낙향해온 자의 동기를, 도내의 각씨족 족보에서 살펴건대 거의가 정치적 박해를 두려워해서 피난해온 자들이다. 그 때문인지 상당한 위계(位階)를 지닌 지식인들이었다. 지금 도내에 90여의 성씨가 살고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오랜 전부터 정착하여 자손이 번성해있는 성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족보로부터 그 인맥, 낙향동기, 연대를 더듬어 보면 대체로 별표와 같이 되어있다.

제주문화의 원류(源流)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도민 스스로 구축한 독자 문화와 고려시대에 분류(奔流)와 같이 흘러들어온 문화, 그리고 유배인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배인문화의 상징적인 것은 오현단(五賢壇)이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유교문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오현사(五賢士)¹⁵⁾에게 보내는 추모(追慕)는 뒤의 사람들이 속하는 사색(四色)¹⁶⁾의 숨결을 뜨겁게 느끼게 한다. 왜냐면 왜냐면 유배자 가운데는 오현사보다 더 도민을 계몽·교육하고 중앙문화를 의욕적으로 전파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난한 도민들은 고명한 유배학자들로부터 상류(上流)문화를 흡수할 만큼의 생활문화의 기층(基層)문화가 없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섬에 부임해오는 대부분의 수령(목사·군수·현감 등의 지방관)은 도민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전혀 없어, 일단 목숨을 걸고 폭풍의 암야(暗夜)를 항행해 오면, 권력을 마음대로 흔들며 원한을 갚기 위해 죄없는 도민을 주구·침학(誅求·侵虐)하여 굶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닥치는대로 굶어모으고 착취할 수 있는 것은 이러 저러한 수단으로 인정사정없이 착취한다. 그들에게 가장

15) 김정(金淨)·송인수(宋麟壽)·김상헌(金尙憲)·정온(鄭溫)·송시열(宋時烈).

16) 노론·소론·남인·북인의 4당파.

主要 姓氏 入島 狀況

本貫	姓氏	派	入島祖名	理由	入島年代
濟州	高氏	長興派・開城派	高乙那(中始祖, 高末老)	流寓	三國時代(三世紀初 17世紀中葉까지)
濟州	良(梁)氏	司直公派・千戶公派・中郎將公派	良乙那(新羅眞興王朝(540-575)에 良宕이 新羅에 入朝 賜姓에 依해 梁姓으로 改稱)	"	"
濟州	孚(夫)氏		孚乙那(中始祖, 夫彦景・夫繼良이 新羅武烈王朝(654-661)에 入朝, 夫氏의 姓 下賜받음)	"	"
南平	文氏	南濟公派	文綽(號・南濟)	文化宣撫, 定着	高麗明宗24年(1194)
"	"	江城君派	文仁烈	"	그 以降
大元	秦氏		秦季伯	元에서 歸化	恭愍王20年(1371)
清州	左氏		左亨蘇	"	高麗末
羅州	金氏		金仁忠	落鄉	禡王朝(1374-88)
清州	韓氏		韓藏	流配	恭讓王4年(1392)
金海	金氏	左政丞公派	金萬希(號-汝雲)	流配	1392
"	"	京派	金敦	落鄉	李朝仁祖朝(1620頃)
"	"	四君派	金膺珠	流配	光海朝(1608-23)
"	"	四君派의 別派	金寬	落鄉	燕山君朝(1494-1506)
"	"	三賢派	金福模	"	1600年頃
陽川	許氏		許慇	流配	1392年
信川 谷山	康氏		康永	"	太宗2年(1402)
全州	李氏	桂成君派	李彭馨	落鄉	宣祖30年(1596)
"	"	海岸大安君派	李富美	"	顯宗15年(1674)

本貫	姓氏	派	入島祖名	理由	入島年代
全州	李氏	安陽君派	李萬壽	"	燕山君4年(1498)
"	"	海岸大安君派의 別派	李壽億	"	肅宗23年(1697)
"	"	孝寧大君派	光賓	"	1910년
慶州	李氏	益濟公派	李美(號-西齊)	流配	太宗元年(1401)
慶州	"	菊堂公派	李翼(艮翁)	流配	光海君11年(1618)
"	"	尙書公派	李熙寬	落鄉	燕山君4年(1498)
古阜	李氏		李世蕃	流配	中宗15年(1520)
星主	李氏		李星宇	落鄉	燕山君朝(1494-1506)
遂安	李氏		李宝雲(流配者李枝達의 아들)		顯宗朝(1659-74)
碧珍	李氏		李由春(節制使의 아들로 定着)		成宗11年(1480)
昌寧	曹氏		曹命南	落鄉?	肅宗朝(1674-20)
江陵	咸氏		咸裕千	流配	宣祖9年(1576)
豐川	任氏	崔文公派	任崔文	戰亂에 의한 避難	宣祖29年(1595)
"	"	承彥公派	任承彥	"	"
"	"	承旨公派	任瑩	定着	肅宗6年(1680)
"	"	海隱公派	任性登	流配	中宗朝(1506-44)
"	"	吏曹正郎公派	任應昌	入居	肅宗元年(1675)
"	"	忠南公派	任忠男	"	未詳
天安	全氏		全禹善	落鄉	顯宗朝(1659-74)
漢陽	趙氏		趙邦輔	"	中宗14年(1519)
延州	玄氏		玄思敬	牧使辭任後 定着	李朝初期
南陽	洪氏		洪允康	落鄉	太宗2年(1402)

本貫	姓氏	派	入島祖名	理由	入島年代
全州	崔氏		崔治敬	定着	1807年
曲阜	孔氏		孔萬源	落郷	1800年
慶州	金氏		金儉龍	"	定宗初(945)
平澤	林氏		林亨秀	濟州牧使로 左遷	仁宗1年(1544)
晋州	姜氏	水山派	姜哲	落郷	中宗1年(1506)
		大靜派	姜孝孫	"	"
昌原	黃氏	濟州市中心	黃呂宗	落郷	明宗中期(1500年前後)
		大靜武陵中心	黃明元	"	"
利川	徐氏		徐希禮		光海君朝(1608-23)
順興	安氏	翰林公派	安得敬	落郷	世宗32年(1450)
順興	安氏	監察公派	安秀道	"	宣祖19年(1585)
"	"	參贊公派	安壽億	"	光海君3年(1610)
"	"	副提學公派	安應祖	"	仁祖3年(1625)
居昌	愼氏		愼明麗	"	仁祖6年(1628)
仁同	張氏	太當卿公派	張漢輔	"	光海君朝(1608-32)
		南山派	張紀一	"	仁祖14年(1636)
"	"	眞佳派(三陽張氏)	張允泰	流配	宣祖末期(1609年頃)
延安	金氏		金安宝	落郷	定宗朝(1398-1400)
密陽	朴氏	銀山君派	朴厚信	"	太宗12年(1412)
"	"	糾正公派(清齊公派)	朴良好(郭支朴氏)		仁祖初期(1623年頃)
"	"		朴孝臣(月汀坪岱朴氏)		未詳
咸陽	朴氏		朴泰祖	落郷	4代에 지나지 않음

本貫	姓氏	派	入島祖名	理由	入島年代
原州	邊氏		邊世淸	"	太宗朝(1400-18)
礪山 恩津	宋氏	元尹公派	宋嘉錦	"	明宗14年(1559)
		知申公派	宋楠	"	둘은 서로 전후해서 入島하고 있다
		正嘉公派		"	
			宋愼良	定着	壬辰倭亂(1592-98)때
平山	申氏		申彦淑		
軍威	吳氏		吳碩賢	落鄉	世祖1年(1456)
和順	吳氏		※ 吳太古(前期)	"	仁祖17年(1640)
"	"	濟州派	吳聖允(後期)		英祖5年(1729)
※ 吳太古의 아버지, 德立은 文科에 及第한 뒤, 承政院左承旨를 거쳐 松禾縣監職에 있었지만 仁祖反正後, 政局이 混亂하고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 南以恭, 朴承祖등 權臣들의 노여움을 사, 大靜縣仁城에 오래도록 流配되어있었다.					
坡平	尹氏	四諱公派	尹滋璟	落鄉	1870年(아직 4代밖에 안된다)
		版圖公派	尹斌(號-湖西)	宣傳官으로 赴任後 定着	中宗 32年(1538)
平康	蔡氏	明淡派	蔡膺智	落鄉	仁祖朝(1623-49)
松都	金氏		金赫	審藥 (從9品)	지금부터 180年前後
(註) 落鄉은 대개가 政治的 迫害에 따른 것이다. 定着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官員으로서 濟州島에 赴任해온 者가 解任後, 언제 끝날지도 모른 政爭에 싫증을 느껴 끝내 섬에 살게 된 者를 말한다.					

충실한 토착좌수(土着좌首)¹⁷⁾들도 수령이라는 엄청난 힘을 지닌 권력자의 의향에 영합하기 위해 강자(强者)의 악(惡)을 지키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약자 위를 더욱 덮쳤다.

김정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말한다. 「품관(品官) 이하 말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뇌물에 의해 조정의 고관들과 연결되고 그 가운데서 가장 권력을 쥐어흔드는 것이 진무(鎭撫)¹⁸⁾이다. 다음에 여사(旅師)¹⁹⁾·서원(書員)²⁰⁾·지인(持印)²¹⁾·공생(貢生)²²⁾ 등 날마다 이권(利權) 챙기기를 일로 삼으며, 다소에 상관없이 뇌물을 통례(通例)로 하여 조금의 염치도 없으며 강(強)으로써 약(弱)을, 폭(暴)으로써 인(仁)을 제압하고 있다.

그들을 계몽하는 국왕의 교시도 없고 그 때문에 관원들이 뇌물을 주고 받아도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어쩌다 청렴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이 있어도 뇌물을 수수(授受)하는 무리들은 비웃을 뿐이다.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그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는 한, 폐풍(弊風)을 고칠 기회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사리·사욕에 치달아, 그 때문에 청렴결백한 자는 적시(敵視)해서 이를 피하는 것이다. 그들을 계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약 연변(言辯)이 좋은 고승(高僧)이 있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혹은 효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선 그 승도(僧徒)도 또 마을에 처자식을 두어 목석과 같은 철면피의 무리들 뿐이다」고 했는데 바로 그대로이다. 하지만 슬프구나! 수난(受難)이 끊이지 않는 남쪽 하늘에 도민의 원망소

17) 지방관청의 長.

18) 무관으로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직.

19) 제주수위병의 지휘관.

20) 사무관.

21) 비서.

22) 향리.

리가 빨리 들어가도 열풍과 노도(怒濤)가 부서지는 바닷소리에 막혀 중앙에 도달하지 않고, 불만이 있어도 정면으로 저항할 수가 없다.

신관이영 일콧두 말라
구관이영 해콧두 말라
산지물을 사흘을 먹으난
원의 공스 혼콩스려라

(주) 구관(舊官)이라고 해롭게 말하지말고
신관(新官)이라고 기리지도 말아라
산지(山地)샘물을 사흘 먹고나니
원(院)의 공사(公事) 한 공사란다
※ 「제주도민요해설」에서

옛날 중국의 탐천(貪泉)²³⁾과 같이 탐관오리가 안되는 자는 없다고
섬 사람들은 냉혈(冷血)의 관리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렇듯 부패가 번지는 속에도 제주문화는, 도민들이 오랜 열등의식과
비논리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되어간 것이었다.

제주문화의 발달과정을 더듬어보면 다음의 세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로 3읍²⁴⁾ 향교(鄕校)²⁵⁾에 있어서 관리나 향반(鄕
班)²⁶⁾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둘째로 지방의 유력자가 학덕이 높
은 적객에게 사사(師事)해서 경사학문(京師學問)을 수학(修學)한 일, 셋째

23) 중국의 廣東省에 있었다는 샘. 그 물을 마시면 누구나 탐욕스러워진다는 전설의 샘.

24) 제주·대정·경의.

25) 지방의 文廟에 附設된 학교.

26) 향촌에 사는 양반.

로 조선 후기의 각지에 있어서의 서숙수학(書塾修學)이었다. 이 섬에 유배·망명·좌천·자유이주자(移住者) 등은 고급관인(官人)인 동시에 고명한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풍속·습관·언어가 다른 토지에서 혹독한 풍토와 싸우면서 섬의 인문(人文)을 개척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1세기에 걸쳐 심어진 원(元)의 잔재유풍(殘滓遺風)을 개혁할만큼의 힘은 없었다. 그러나 저변(底邊)의 민중적 환영과 존경을 받은 유적·망명 지식인들에 의해 섬의 대중적 문화는 계발(啓發)되었다고 해서 지나침은 없을 것이 아닌가.

유배자들은 제주목사의 지시에 의해 연금되든가, 산간벽촌에 제한되든가, 그렇잖으면 성내(城內)나 양촌(陽村)에 배치되든가, 하는 것이었다. 수령 가운에는 적객(謫客)에게 동정하는 자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거의가 그들은 정적이라고 혹독하게 굴었다. 당시 노론계열의 지방관이 남인계열의 적객을 탄압한 것은, 당쟁의 비정한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법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배인은 조선의 인생의 축도(縮圖)였다고도 할 수 있다.

거기서 고뇌하는 유배지식인들의 혼(魂)을 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 것은 결국, 불모의 비문화지대의 서민계층 뿐이었다. 섬의 서민들은 유배인은 유교문화를 전해주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능력있는 자는 주거의 일부를 개방하여 살도록 했고 식사도 자신들은 잡식을 하면서도 유배인에겐 쌀로 밥을 지어 먹일 정도였다. 이래서 유배인들로서는 혜택받은 생활을 보낸 셈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적거중에 원죄자(冤罪者)로서의 불행을 자위하고 유적·망명의 시간을 철학하면서 토착민들에게 문물을 공급함으로써 그 삶에 긍지를 가졌던 것이다.

또 「약과만록(藥坡漫錄)」의 정온(鄭溫)조에 「謫島十餘年有一妾…(유배생활 10여년에 첩이 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서울의 유배인으로서 섬의 여자와 간친(懇親)을 맺기에 이른 자도 적지않다. 그 때문에 「제주의 인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유배인이나 망명자의 낙윤(落胤・妾子)도 적잖다. 그들의 자녀는 아버지인 서울사람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노래한다.

서울장안 아버지 계시네
서울장안 가는 사람 있으면
내 아버지께 편지 올리겠오
편지 보거든 데려가 달라고

양반유배인들은 일 잘 하는 섬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여성 특유의 자잘한 노동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섬의 여자들도 서울 양반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날랑 죽건 펄에나 묻엉
숭어 생선 몸에나 강
서울 양반 밥상에 올랑
무낭 저로 갈너나 보게

(주) 내가 죽거든 개펄에나 묻혀서
숭어 생선의 몸에 들어가
서울 양반의 밥상에 올라
흑산호 저로 짚어나 보게

※ (역자 주) 이 원문 앞에는 다음의 4행이 누락되어있음이 「홍정표 저·제주민요해설」에서 확인 되었다.

<원문 누락부분>

날랑 죽건 독 밭에 묻어
나 우이랑 종이독 날라
그 독으로 종이랑 맨들건
삼천선비 글밭에나 놀게

(주) 내가 죽거든 닥나무(楮) 밭에 묻어서
내 무덤 위엔 닥이 나거라
그 닥으로 종이를 만들거든
삼천(三千)선비의 글밭에 놀게

그것도 무리한 얘기는 아니다. 섬의 남자들은 기껏해야 서리(胥吏·衙前)로, 집사예속(執事隸屬)의 무리가 관부(官府)에 출입하고 약간 관 뉘새를 풍기는 자들까지 모두 특권계급인양 크게 거들먹 거렸다. 「주기(州記)」에

京城隔遠仕官爲難 土人有方望者皆以執事官衙爲榮 不知京職之貴
서울은 멀어 벼슬살이가 어렵다. 섬 사람은 모두가 집사 아전을 광영으로 여겼다. 서울 벼슬살이의 귀함을 모르고

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의 청현관직(淸顯官職)은 섬 사람들에게는 생각도 못할 고귀한 것이었다.

이런 때문에 섬 사람들은 냉혹한 지배자들에 의한 차별·학대·착취의 희생자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은 불순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권력적인 유배인에게 동정도 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실학사상(實學思想)을 흡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주문화의 본질은 절망·체념·원한·저주·향수·우수(憂愁)에 대한 부정적인 것과 저항적 진보적인 것과는 찌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왕조는 그러한 유배인을 다수 배출하여 이 섬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유배인의 호송경로(護送經路)

유배인이 배지(配地)로 보내질 때 개중에 특별한 은전(恩典)에 의해 노비 동반을 허락받는 자도 있었지만 대개는 홀로 배지로 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호송관리가 지키는 유인선(流人船)은 해창포(海蒼浦)로부터 출발해서 물결 사이를 나뭇잎처럼 흔들리면서 남길도(南吉島)를 거쳐 제주 화북포(禾北浦)에 도착한다. 주성(州城)으로 직행하여 유배인을 제주목사에게 인도한다. 그 도중 악질적인 호송관리들은 형정(刑政)의 문란(紊亂)을 이용, 유배인을 거친 바다에 밀어넣어 죽인 다음, 그대로 해남포(海南浦)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럴 경우, 호송 도중 폭풍우를 만나 유배인은 물에 빠졌다고 보고하면 그만인 것이다.

제주해협외의 관탈도(冠脫島)는 그 이름과 같이 유인선이 이 섬 부근을 통과하게 되면 유적관인(流謫官人)들은 「아! 여기까지 왔으니 끝이다. 이 관복(冠服)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숨 쉬면서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차림을 했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또 섬의 근해엔 때때로 거친 파도가 일므로 유배인들을 살해한 다음 본토로 돌아가, 해상에서 난파하여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유배인은 파도에 삼켜 수장(水葬)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자도 있었다고 전해진

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극히 드문 일로, 아무리 기강이 문란한 시대였다고는 하나 정치적인 중죄인을 취급하는데 있어 당쟁계보(系譜)에 따른 외척(外戚)들의 추상열일(秋霜烈日)과도 같은 단죄명령(斷罪命令)이 허용될 리가 없다. 그들 적객은 제주목의 영역에 끌려가면 즉시 그곳에 안치(安置)된다. 주성 안에 정배(定配)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대개는 중산간의 한촌(寒村)에 배정된다. 배소(配所)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리안치(圍籬安置)라든지 가자형(加刺刑) 등의 무거운 정치범이 되면 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항상 처형의 공포에 떨며 죽음에 등을 대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정치범 속에서도 왕공족(王公族)이나 고급사대부(士大夫)들은 제주목의 주성 안에 안치되고 정의·대정지방에 안치된 도배수(徒配囚)는 강인한 반체제적 정치지식인이 많았다. 특히 대정현은 정치적 중죄인의 배소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것은 서울로부터의 절연악지(絶緣惡地)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제주목사로 있었던 김석철(金錫哲)²⁷⁾의 상계(上啓)에 따르면 「경중(京中)의 범죄자로서 제주도에 유배되는 자는 모두 대정현에 정배시켜서 잔현(殘縣)²⁸⁾을 충실(充實)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종실록)」고 진언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당(唐)이 유배인의 무리를 월(越)로 내쫓은 것과 같이, 대정현은 조선시대의 강제적 이민정책의 한 지방으로서 시끌벅적한 최악의 배소로 되어있던 것이다. 그 덕으로 김추사(金秋史)의 문인(門人)으로서 뛰어난 많은 명사가 배출되었던 것이다. 김추사의 대정 배소는 조선말기의 한 지방의 서숙(書塾)으로써는 긍지 높은 것이었다.

27) 당시 漢城判尹.

28) 피폐한 현.

더구나 대정·정의지방에 유배된 사람들은 제주 성내에 유배된 왕공족이나 사대부들과는 달리 현지 사람들의 따뜻한 심정과 원망(願望)을 받아들여 진실하게 민중속으로 파고들어 뛰어난 학문이나 저항사상을 고취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일 당시의 유배지식인들이 왕년의 영광을 잊고 정치·사회적으로 품었던 관념을 깨끗이 버려, 도민의 문화발전에 좀 더 열의를 다했다라면 보다 훌륭한 문화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맺음말

아무튼 조선의 격렬한 정쟁(政爭)은 도민에게 있어서 대안(對岸)의 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생각지도 않은 화재의 불뚝은 남해 멀리에 떠있는 절해고도에까지 날라들어 도민을 역모사건의 참화(慘禍)로 끌어들이는 풍운(風雲)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 결과 왕공족이나 사대부 등의 고귀한 사람들이 잇따라 유배돼와서, 섬의 각처에서의 적거생활은 도민 전래의 특수한 언어·풍속·습관·예절 등을 순화(醇化)시켜 소박한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저명한 정객·관인·명현(名賢)·거유(巨儒) 등과 끝내는 유명무명의 각계각층의 적객들은 섬의 도처에서 냉혹한 유적생활을 보내면서도 섬의 뒤떨어진 학문이나 문화의 사도(使徒)가 되어 마을 만들거나 산업개발의 기사(技師)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은 도민에게 있어 학문의 등불이 되고 문화의 꽃이 되어 뜻 밖의 행운이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선량한 도민들을 모역(謀逆) 속에 끌어들여 「반역향(反逆鄉)」의 낙인이 찍히고 중앙으로의 인출을 저해했다는 것도 부

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섬에 유배되어 왔던 대다수의 적객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박학한 애국지사들이었다. 그 사상적 영향력은 이 땅에 깊이 뿌리 박혀 도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그것은 문화 도덕 등의 정신생활에 있어 가난한 도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긍지 높은 것으로 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반골적인 저항정신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 그 학문 사상의 훈도(薰陶)를 받은 제자들에게 계승됨으로써 도민 사상의 근간(根幹)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은 대체로 순정 소박하여 신의를 무겁게 여기고 간계(奸計)를 미워하며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는 기개(氣概)를 지니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그들의 사상적 영향력이 다소 컸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든 아득한 옛날부터 이 섬에 유배되어왔던 수 많은 지식인들은 화조풍월(花鳥風月)과 춘풍추우(春風秋雨)에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독·비에·실망·우울한 마음을 섬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섬의 문화 발전과 건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준 것이다. 그 불굴의 정신과 문화업적에 대한 감사의 염(念)은 도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1956년 1월

저자 김 봉 현

찾아보기



- 가극형(加棘刑) 359, 365
- 가락천(嘉樂泉) 111, 239
- 가렴주구(苛斂誅求) 63, 355
- 가선대부(嘉善大夫) 195, 230
- 가야산(伽倻山) 366
- 가인범법(家人犯法) 30, 315
- 가자형(加刺刑) 459
- 가장재판(家長裁判) 385
- 가죄(加罪) 27, 43, 98, 110, 215, 354
- 가주유형제도(家洲流刑制度) 35
- 가파인망(家破人亡) 175
- 감산리(柑山里) 216, 250, 284
- 감조관(監造官) 214
- 감진어사(監賑御史) 293
- 감찰대(監察臺) 59
- 감찰대부(監察大夫) 58
- 감찰사(監察司) 49
- 갑술경화(甲戌更化) 233
- 갑술옥사(甲戌獄事) 233
- 갑신정변(甲申政變) 78, 415
- 갑오개혁(甲午改革) 362, 415
- 갑오농민반란(甲午農民反亂) 379
- 강달선(姜達善) 394
- 강도순(姜道淳) 344, 349
- 강로(姜淩) 372
- 강릉(江陵) 319
- 강릉부사(江陵府事) 244
- 강명의숙(講明義塾) 433
- 강명준(姜命俊) 387
- 강변칠우(江邊七友) 173
- 강봉헌(姜鳳憲) 421
- 강불화(姜不花) 59
- 강빈(姜嬪) 202, 207
- 강시(姜蓍) 71
- 강시환(姜時煥) 336
- 강영(康永) 83
- 강윤충(康允忠) 55, 59
- 강진(康津) 296, 303
- 강진현(康津縣) 129
- 강진현고금도(康津縣古今島) 357
- 강찬(姜贊) 60
- 강치성(康致誠) 87
- 강태흠(姜台欽) 420
- 강필발(姜弼發) 308
- 강홍립(姜弘立) 181
- 강화도(江華島) 376
- 강화도교동(江華島喬洞) 40
- 강화조약(江華條約) 77

개경(開京) 79
 개국론(開國論) 377
 개국훈신(開國勳臣) 72
 개녕(開寧) 357
 개성(開城) 19
 개성왕씨(開城王氏) 361
 거상제도(居喪制度) 65
 건청궁(乾淸宮) 403
 건학정신(建學精神) 433
 경국대전(經國大典) 34, 75
 경군육영(慶軍六營) 413
 경기감사(京畿監司) 205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22
 경릉참봉(敬陵參奉) 221
 경무사(警務使) 407, 410, 424
 경무청(警務廳) 407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356
 경성(京城) 22
 경세치국(經世治國) 74
 경신대옥(庚申大獄) 236
 경신환국(庚申換局) 215, 224
 경안군(慶安君) 205, 217
 경우궁(景祐宮) 414
 경운궁(慶運宮) 186
 경원부(慶源府) 24, 316
 경자옥사(庚子獄事) 342
 경종(景宗) 264, 282
 경주(慶州) 81
 경주이씨국당파(慶州李氏菊堂派) 169
 경평군(慶平君) 352
 경학(經學) 85, 127, 339, 349
 경흥(景興) 79, 80
 경흥부(慶興府) 60, 316
 계룡산(鷄龍山) 366
 계류(溪流) 344
 계림군(桂林君) 125, 196
 계비(繼妃) 84, 122, 163, 308, 314
 계비김씨(繼妃金氏) 154
 계축화옥(癸丑禍獄) 178
 계해년(癸亥年) 188
 고경명(高敬命) 150
 고금도(古今島) 41
 고려사(高麗史) 438
 고만첩(高万瞻) 239
 고부이씨(古阜李氏) 121
 고운현(高雲縣) 366
 고유(高維) 442
 고을나(高乙那) 438
 고제영(高濟英) 284
 고조기(高兆基) 442
 고종(高宗) 354, 441
 고증학(考證學) 338
 고한익(高漢益) 343
 고흥산(高荊山) 103
 고흥진(高弘進) 169
 곡산강씨(谷山康氏) 74
 곡성(谷城) 382
 공민왕(恭愍王) 45, 447
 공신전(功臣田) 73
 공신희(功臣號) 54
 공조(工曹) 103
 공조판서(工曹判書) 365

공주(公州) 40, 357
 공주목(公州牧) 365
 과거(科擧) 102, 156
 과거제도(科擧制度) 257
 과장구폐절목(科場擧弊節目) 260
 과전법(科田法) 70
 과천(果川) 261, 350
 곽지박씨(郭支朴氏) 187
 곽지악(郭支岳) 79
 관노(官奴) 88, 354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326
 관속(官屬) 146, 176
 관찰사(觀察使) 186
 관탈도(冠脫島) 458
 관학과(官學派) 89
 광산김씨(光山金氏) 447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237, 245
 광양(光陽) 294
 광양동(廣壤洞) 432
 광종(光宗) 257
 광주(光州) 128, 245, 289
 광주(廣州) 415
 광주부사(光州府使) 194
 광주유수(廣州留守) 415, 428
 광평대군(廣平大君) 302
 광해군(光海君) 41
 광해세자(光海世子) 149
 괘서(掛書) 365
 괴벽사건(怪壁事件) 126
 괴산군(槐山郡) 226
 구라과여지도(歐羅巴與地圖) 325
 구봉서(具鳳瑞) 206
 구성희(具星喜) 261
 구인후(具仁堉) 194
 구주(九州) 439, 441
 국마(國馬) 145
 국사범(國事犯) 36
 국자감(國子監) 258
 국정문란죄(國政紊亂罪) 279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304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32, 362
 군문처참(軍門處斬) 281
 군부협판(軍部協辦) 406
 군산도(郡山島) 41
 군역세(軍役稅) 355
 권겸(權謙) 66
 권경우(權景祐) 90
 권근(權近) 327
 권달수(權達手) 96
 권대운(權大運) 226
 권돈인(權敦仁) 350, 353
 권민수(權敏手) 107
 권발(權撥) 125
 권상술(權相述) 332
 권상연(權尙然) 327
 권상하(權尙夏) 227
 권석화(權石和) 68
 권성학(勸聖學) 336
 권익(權億) 194
 권영진(權滢鎭) 409
 권오복(權五福) 90
 권일신(權日身) 327, 329

권정호(權鼎鎬) 394	기축옥사(己丑獄事) 142, 148
권종록(權鐘錄) 371	기황후(奇皇后) 56
권주(權柱) 96	길삼봉(吉三峰) 141, 143
권중경(權重經) 244	길영수(吉泳洙) 424
권중진(權重鎭) 380	길운절(吉雲節) 142
권진응(權震應) 307	김가진(金嘉鎭) 430
권처경(權處經) 227	김경서(金景瑞) 230
권철신(權哲身) 327	김경오(金景五) 166
굴림서원(橘林書院) 117, 164, 229, 419	김경하(金經夏) 409, 416
굴원(橘園) 417	김계창(金季昌) 87
굴원아집(橘園雅集) 417	김광준(金光準) 124
금갑도(金甲島) 41, 421	김광필(金宏弼) 96, 118
금강사(金剛寺) 111	김구(金絿) 102
금군별장(禁軍別將) 292	김구(金溝) 357
금능위(錦陵尉) 427	김구(金九) 435
금부당상(禁府堂上) 266	김구오(金九五) 349
금부도사(禁府都事) 176, 226	김귀동(金貴同) 333
금산(錦山) 109	김근한(金近漢) 230
금산(金山) 211	김기구(金耆耆) 319
금산사(金山寺) 213	김낙영(金洛榮) 410, 418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 340	김난상(金鸞祥) 124
금석비첩(金石碑帖) 340	김남득(金南得) 68
금오위장(金吾衛將) 416	김노현(金老鉉) 249
금옥형(禁獄刑) 36	김대(金大) 60
기로과(耆老科) 259	김덕룡(金德龍) 172
기로소(耆老所) 267	김덕원(金德遠) 227, 231
기사관(記事官) 87	김덕항(金德恒) 239
기사환국(己巳換局) 228	김동필(金東弼) 288
기삼만(奇三萬) 56	김득배(金得培) 63
기신배의십육죄(棄信配義十六罪) 382	김룡(金龍) 189
기자헌(奇自獻) 168	김류(金瑬) 162

김만애(金万埃) 227	김식(金湜) 102, 119
김만일(金万鎰) 169	김안로(金安老) 117
김만중(金万重) 245, 250, 298	김양순(金陽淳) 342
김만희(金萬希) 79	김양필(金良弼) 114
김명희(金命喜) 344	김억(金億) 144
김백안첩목아(金伯顔帖木兒) 65	김영해(金寧海) 292
김병국(金柄國) 372	김예보(金禮寶) 230
김병시(金柄始) 407	김예정(金禮正) 189
김병학(金柄學) 377, 395	김오랑(金吾郎) 109
김보(金普) 64	김옥균(金玉均) 414
김복택(金福澤) 300	김완(金完) 209
김사찬(金思燦) 410, 420	김완수(金完洙) 415
김삼달(金三達) 253	김요경(金堯鏡) 280
김상로(金尙魯) 302, 309	김용(金鏞) 62
김상헌(金尙憲) 117, 144, 201	김용택(金龍澤) 274
김상현(金象鉉) 249	김우기(金祐基) 405
김석경(金石經) 249	김우범(金禹範) 327
김석주(金錫胄) 218, 235, 289	김우상(金遇祥) 59
김석철(金錫哲) 459	김원재(金遠材) 298
김성(金成) 59	김유(金庾) 60
김성복(金性復) 261	김유경(金有慶) 286
김성탁(金聖鐸) 292	김유당(金酉堂) 338
김세한(金世翰) 121	김유연(金有淵) 391
김수온(金守溫) 93	김육(金堧) 326, 412
김수정(金守禎) 352, 353	김운식(金允植) 41, 367, 404, 412, 416
김수천(金壽天) 273	김운조(金胤祖) 447
김수항(金壽恒) 214, 235, 245	김응도(金應道) 352
김순성(金順性) 352	김응빈(金應斌) 416
김순손(金舜孫) 91	김응주(金膺珠) 209
김시습(金時習) 93	김익훈(金益勳) 235
김시연(金始淵) 358	김인(金寅) 240, 244

김인손(金麟孫) 114
 김인찬(金仁贊) 74
 김일경(金一鏡) 265, 279
 김일손(金駟孫) 89
 김자점(金自点) 181, 203, 208
 김장생(金長生) 220
 김장손(金長孫) 398
 김재봉(金在鳳) 399
 김재풍(金在豐) 405, 424
 김저(金儲) 124
 김전(金銓) 103, 119
 김정(金淨) 192, 367
 김정(金精) 447
 김정원(金庭元) 161
 김정희(金正喜) 336, 367
 김제남(金悌男) 155, 167, 172
 김종직(金宗直) 89, 92, 101
 김종하(金鐘夏) 420
 김좌근(金左根) 352
 김준(金俊) 51
 김준기(金俊基) 409
 김준엽(金峻業) 156
 김준원(金俊元) 254
 김중기(金重器) 292
 김직재(金直哉) 165
 김진구(金鎭龜) 170, 237, 245
 김진용(金晉鎔) 169
 김집(金集) 221
 김창집(金昌集) 264
 김천일(金千鎰) 150
 김추사(金秋史) 459

김춘언(金春彦) 172
 김춘영(金春永) 387
 김춘택(金春澤) 232, 242, 245
 김충립(金忠立) 175
 김택(金澤) 189
 김평묵(金平默) 389
 김한빈(金漢彬) 333
 김해(金海) 40, 75, 79, 209
 김해김씨(金海金氏) 210
 김해성(金海成) 240, 244
 김호(金蒿) 296
 김홍근(金弘根) 341
 김홍량(金鴻亮) 435
 김홍목(金鴻睦) 411
 김홍집(金弘集) 378, 390, 409, 413
 김효원(金孝元) 136
 김희주(金熙胄) 432



나로도(羅老島) 295
 나인영(羅寅永) 416
 나주(羅州) 141, 262, 279
 낙형(烙刑) 34
 난장형(亂杖刑) 34
 남강(南岡) 432, 434
 남곤(南袞) 103
 남구만(南九萬) 228, 241, 288
 남길도(南吉島) 458
 남만리(南萬里) 405
 남수구(南水口) 418

남양(南陽) 92, 413, 414
 남양군(南陽君) 103
 남양태수(南陽太守) 92
 남원(南元) 141
 남원(南原) 382
 남이공(南以恭) 152
 남이익(南履翼) 342
 남인파(南人派) 394
 남정(南庭) 308
 남정호(南廷皓) 262
 남정호(南廷浩) 376
 남천주(南川州) 340
 남치훈(南致勳) 226
 남태징(南泰徵) 292
 남형(濫刑) 35
 남효온(南孝溫) 92, 96
 노론(老論) 361
 노백린(盧伯麟) 434
 노수신(盧守愼) 126, 142, 147
 노흥규(盧興奎) 405
 녹도(鹿島) 421
 능양군(綾陽君) 162
 능양군(陵陽君) 181
 능주목(陵州牧) 354
 능지처참(陵遲處斬) 30, 335
 능창군(綾昌君) 155



단발령(斷髮令) 379
 단양군(丹陽君) 71

단종(端宗) 260
 달노화적(達魯花赤) 443
 달달친왕(達達親王) 45
 담양부사(潭陽府使) 105
 당백전(當百錢) 369
 당의통략(黨議通略) 76, 243
 대동법(大同法) 178
 대마도(對馬島) 383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20
 대사간(大司諫) 107, 163, 202, 302
 대사성(大司成) 51, 66, 363
 대사헌(大司憲) 107, 341
 대역무도(大逆無道) 89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 353, 422
 대전별감(大殿別監) 323
 대전통편(大典通編) 28
 대전회통(大典會通) 28, 35, 44
 대정(大靜) 242
 대정배소(大靜配所) 247
 대제학(大提學) 71, 298, 447
 대흥사(大興寺) 317
 덕산현감(德山縣監) 234
 덕유산(德裕山) 164
 덕종(德宗) 97
 덕흥군(德興君) 65
 도감초관(都監哨官) 189
 도관찰사(道觀察使) 38
 도병마사(都兵馬使) 51
 도산(島山) 433
 도순무사(都巡撫使) 292
 도순문사(都巡問使) 71

도순변사(都巡邊使) 148	마산동(馬山洞) 434
도승지(都承旨) 107, 205, 287	마산포(馬山浦) 413
도안무사(都按撫使) 81	마애명(磨崖銘) 375
도정관(都正官) 353	마한(馬韓) 438
도침의좌정승(都僉議左政丞) 79	만덕사(萬德寺) 58
도총관(都總管) 103	만언사(萬言詞) 323
도평의사(都評議司) 64	만언사답(萬言詞答) 323
도학소장과(道學少壯派) 119	만왕태후(萬王太后) 225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257	만인소(萬人疏) 379, 390
동경(東京) 378	망경루(望京樓) 182
동계유허비(洞溪遺墟碑) 163	명종(明宗) 122, 130, 447
동계집(洞溪集) 161	명치유신(明治維新) 414
동래(東萊) 173	모반대역(謀反大逆) 30
동래부사(東萊府使) 171	모반역죄(謀反逆罪) 395
동래현(東萊縣) 24	모역부도죄(謀逆不道罪) 395
동래현령(東萊縣令) 59	목마장세(牧馬場稅) 417
동사강목(東史綱目) 443	목호룡(睦虎龍) 266, 268, 274, 279, 300
동성군(東城君) 281	몽고(蒙古) 45
동지겸사절사(冬至兼謝節使) 338	무군부도죄(無君不道罪) 270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286	무오사화(戊午士禍) 90
동지사겸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 326	문성국(文聖國) 314
동천동(東泉洞) 249	문세걸(文世傑) 114
동평군(東平君) 238	문숙의(文淑儀) 313
동학(東學) 198, 328	문암(文菴) 290
동학당(東學黨) 351	문암집(文菴集) 291
등영구(登瀛邱) 373	문주왕(文周王) 441
	문충기(文忠基) 142
	민겸호(閔謙鎬) 387
	민기문(閔起文) 124
	민란(民亂) 355, 421
	민비(閔妃) 238, 241, 369



마건충(馬建忠) 413
 마관조약(馬關條約) 381

민수(閔粹) 86
 민승호(閔升鎬) 361, 369
 민암(閔黯) 232, 238, 246
 민영서(閔泳序) 262
 민응식(閔應植) 413
 민제인(閔齊仁) 124
 민중전(閔中殿) 245
 민진원(閔鎭遠) 268, 284
 민치록(閔致祿) 369
 민형수(閔亨秀) 298
 민환(閔煥) 56
 밀사사건(密使事件) 431
 밀양(密陽) 40, 357
 밀양부원군(密陽府院君) 185
 밀직부사(密直副使) 56, 61
 밀직사부사(密直司副使) 64
 밀직제학(密直提學) 71
 밀직지신사(密直知申事) 65
 밀풍군(密豐君) 292



박계첨(朴季簪) 349
 박광우(朴光佑) 124
 박근(朴頴) 205
 박귀근(朴貴根) 240
 박규수(朴珪壽) 377, 427
 박란(朴蘭) 59
 박만원(朴晩源) 367
 박몽준(朴夢俊) 177
 박상(朴祥) 102, 105

박상검(朴尙儉) 265, 289
 박선(朴銑) 406
 박선양(朴善陽) 392, 399
 박세채(朴世采) 225
 박세휘(朴世徽) 218
 박순(朴淳) 153
 박승조(朴承祖) 185
 박승중(朴承宗) 185
 박양노(朴陽魯) 416
 박영효(朴泳孝) 367, 411, 414, 427
 박영훈(朴泳薰) 262, 376
 박용원(朴用元) 420
 박원양(朴元陽) 427
 박원중(朴元宗) 98, 105
 박유진(朴有鎭) 424
 박응서(朴應犀) 157, 173
 박의길(朴義吉) 240
 박자여(朴自與) 186
 박정양(朴定陽) 379, 404, 410, 431
 박제가(朴齊家) 338
 박제순(朴齊純) 380
 박종훈(朴宗勳) 341
 박좌원(朴佐源) 319
 박중경(朴重慶) 254
 박춘남(朴春南) 189
 박충황(朴忠一兄) 142
 박치도(朴致道) 219
 박치의(朴致毅) 173
 박치인(朴致仁) 173
 박태보(朴泰輔) 231, 238
 박태항(朴泰恒) 270

박필몽(朴弼夢) 265
 박홍구(朴弘耆) 188
 박훈(朴薰) 102
 박희순(朴希淳) 358
 박희영(朴禧英) 349
 반원운동(反元運動) 443
 반일의병투쟁(反日義兵鬪爭) 379
 반청분자(反淸分子) 222
 방선문(訪仙門) 373
 방성칠(房星七) 417
 방조죄(幫助罪) 386
 방호소(防護所) 129
 배소이탈(配所離脫) 109
 백낙관(白樂寬) 396
 백낙신(白樂莘) 356
 백담사(百潭寺) 130
 백령도(白翎島) 40
 백록(白鹿) 297
 백백태자(伯伯太子) 45
 백유양(白惟讓) 142
 백의정승(白衣政丞) 427
 백인결(白仁傑) 124
 백제본기(百濟本記) 18
 백춘배(白春培) 427
 범상부도죄(犯上不道罪) 313, 400
 별기군(別技軍) 386, 395
 별도진(別刀陣) 129
 별도포(別刀浦) 214, 284, 343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250
 병자조약(丙子條約) 377
 병자호란(丙子胡亂) 200
 병조정랑(兵曹正郎) 121, 147, 282
 병조참지(兵曹參知) 302
 병조참판(兵曹參判) 396
 보부상(祿負商) 424
 복창군(福昌君) 235
 복평군(福平君) 235
 봉림대군(鳳林大君) 200
 봉산군수(鳳山郡守) 166, 393
 봉상첨정(奉常僉正) 86
 봉성군(鳳城君) 123, 126
 봉세관(捧稅官) 420
 봉수대(烽燧臺) 375
 봉은사(奉恩寺) 130
 부가형(附加刑) 36
 부관참시(剖棺斬屍) 90, 96
 부사과(副司果) 270
 부사직(副司直) 336
 부산첨사(釜山僉使) 415
 부제학(副提學) 87, 121, 287
 부종인(夫宗仁) 164
 부호군(副護軍) 358
 부호장(副戶長) 258
 북경(北京) 62, 325, 412
 북헌집(北軒集) 249
 봉당(朋黨) 103, 138, 139, 217
 봉당정치(朋黨政治) 40
 비관잡기(裨官雜記) 112
 비변사(備邊司) 144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38, 41



- 사간(司諫) 124, 291
사대부(士大夫) 205, 459
사림(士林) 94, 196
사림사화(士林土禍) 110
사림파(士林派) 88
사마시(司馬試) 99, 195, 220
사마진사과(司馬進士科) 120
사미인곡(思美人曲) 249, 290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245
사약형(賜藥刑) 353
사화(土禍) 75, 209, 447
사화(史禍) 88
산지(山地) 454
산지향(山地港) 416
삼국유사(三國遺事) 17
삼국지(三國志) 20, 438
삼도감사(三道監司) 176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234
삼별초(三別抄) 45
삼별초난(三別抄亂) 442
삼천서당(三泉書堂) 230
상주(尙州) 40, 262, 357, 390
서광범(徐光範) 414
서북면도순무사(西北面都巡撫使) 60
서양갑(徐羊甲) 157, 173
서양화포(西洋火砲) 325
서원철폐(書院撤廢) 394
서재필(徐載弼) 414, 422
서종하(徐宗廈) 265
서종하(徐宗廈) 280
서주보(徐周輔) 409, 416, 420
서천길(徐天吉) 60
서학(西學) 328
서학당(西學堂) 230
서학사교(西學邪教) 390
성리학(性理學) 118
성석린(成石隣) 71
성석용(成石溶) 71
성세창(成世昌) 122
성종(成宗) 27, 34, 75, 445
성주(星州) 249, 357
성호빈(成虎彬) 244
성희안(成希顔) 98, 105
세마(洗馬) 189, 416
세제책봉(世弟冊封) 280
세조(世祖) 34, 260, 445
세종(世宗) 74
소덕유(蘇德兪) 142
소동파(蘇東坡) 339
소현세자(昭顯世子) 200, 217, 292, 325
속동전(贖銅錢) 24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290
속음청사(續陰晴史) 117, 416
손대손(孫大孫) 189
손수경(孫守卿) 58
손용(孫湧) 58
손홍적(孫弘績) 128
송강(松江) 250
송계순(宋啓純) 344
송길유(宋吉儒) 50

송문규(宋文奎) 198	승지(承旨) 63, 160, 166, 175, 307, 310
송병준(宋秉駿) 431	승지원(承知院) 125
송상민(宋尙敏) 217	시강원(侍講院) 282
송상인(宋象仁) 166, 171	신광(申鑛) 293
송상주(宋尙州) 255	신돈(辛屯) 47, 67
송순(宋諄) 166	신득연(申得淵) 205
송시열(宋時烈) 117, 220, 367	신립(申立) 148
송언신(宋言愼) 151	신명규(申命奎) 213, 267
송인명(宋寅明) 300	신명인(申命仁) 108
송인수(宋麟壽) 117	신무문(神武門) 105
송재절(宋載絶) 333	신문고(申聞鼓) 216
송죽사(松竹祠) 164	신민회(新民會) 434
송준길(宋浚吉) 221	신사옥사(辛巳獄事) 248
송희규(宋希圭) 124	신수근(愼守勤) 105
쇄국양이(鎖國攘夷) 394	신수영(愼守英) 99
쇄국정책(鎖國政策) 377	신숙주(申叔舟) 86
수신사(修信使) 378, 390, 428	신우석(申遇石) 254
수양대군(首陽大君) 260	신유대훈(辛酉大訓) 306
수정사(水精寺) 61	신유사옥(辛酉邪獄) 327
수호조규(修好條規) 384	신응희(申應熙) 431
순원왕후(純元王后) 336	신의왕후(神懿王后) 84
순조(純祖) 259, 285, 319, 328, 331, 360	신익성(申翊聖) 206
순창(淳昌) 382	신임무옥(辛壬誣獄) 295
순창군수(淳昌郡守) 105	신임화옥(辛壬禍獄) 268
순천(順天) 357	신지도(薪智島) 41, 421
숭교사(崇敎寺) 47	신창현감(新昌縣監) 368
숭례문(崇禮門) 340	신채호(申采浩) 434
숭록대부(崇祿大夫) 97, 287	신천강씨(信川康氏) 83
승문원(承文院) 231, 400	신축옥(辛丑獄) 266
승정원(承政院) 151, 238, 262	신희업(辛喜業) 172
	실리외교(實利外交) 181

실사구시(實事求是) 336, 433
 실학사상(實學思想) 457
 심기원(沈器遠) 194, 200
 심내복(沈來復) 294
 심상운(沈翔雲) 312
 심양(瀋陽) 200, 207, 222
 심양관소(瀋陽館所) 200
 심양사옥(瀋陽事獄) 201
 심연원(沈連源) 121
 심우영(沈友英) 157, 173
 심원(深遠) 212
 심의겸(沈義謙) 136
 심이택(沈履澤) 362
 심익현(沈益顯) 312
 심정(沈貞) 103, 105
 심희(沈澮) 96
 심희수(沈喜壽) 161, 198



아관파천(俄館播遷) 407
 아사달(阿斯達) 17
 아산(牙山) 282
 안경수(安駟壽) 405, 430
 안귀서(安龜瑞) 260
 안기영(安驥泳) 394
 안기중(安沂中) 424
 안남(安南) 414
 안동(安東) 307, 390
 안동김씨(安東金氏) 351
 안렴사(按廉使) 68, 420

안명근(安明根) 435
 안명세(安名世) 128
 안무사(按撫使) 53
 안상순(安祥淳) 395
 안성군(安城君) 64
 안성리(安城里) 161
 안악(安岳) 435
 안악군수(安岳郡守) 141
 안언상(安彦庠) 51
 안정복(安鼎福) 326, 327
 안정와(安定窩) 266
 안조환(安肇煥) 323
 안중근(安重根) 435
 안찰사(按察使) 51
 안처근(安處謹) 102
 안치주해(安置註解) 27
 안태(安泰) 404
 안태국(安泰國) 434
 안핵사(按覈使) 293, 356
 안효제(安孝濟) 400
 알성시(謁聖試) 118, 259
 압슬형(壓膝刑) 34
 애안첩목(愛顔帖木) 46
 애월면곽지리(涯月面郭支里) 187
 애월포(涯月浦) 79
 야별초(夜別抄) 50
 야소회(耶蘇會) 325
 양광도(揚光道) 68
 양기탁(梁起鐸) 434
 양녕대군(讓寧大君) 128, 340
 양주(楊州) 185, 295, 340

양천허씨(陽川許氏) 74
 어등포(於等浦) 182
 어사(御史) 144, 252
 어세겸(魚世謙) 96
 어영대장(御營大將) 234, 341
 어우야담(於于野談) 133
 어유귀(魚有龜) 265
 어윤중(魚允中) 409, 427
 억불승유정책(抑佛崇儒政策) 73
 여규형(呂奎亨) 424
 역모(逆謀) 176
 역모죄(逆謀罪) 157
 연북정(戀北亭) 418
 연산군(燕山君) 88
 연안부사(延安府使) 186
 연안태수(延安太守) 267
 연잉군(延祔君) 264, 268, 274, 288
 연좌율(緣座律) 32
 연좌형(緣座刑) 26
 연주(延州) 75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167, 172
 염희영(廉義榮) 354
 영광(靈光) 286
 영남(嶺南) 90
 영남감사(嶺南監使) 293
 영능봉심관(寧陵奉審官) 214
 영돈녕(領敦寧) 172, 395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362
 영림부령익수(靈林副令翼秀) 214
 영빈이씨(映嬪李氏) 308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352
 영조(英祖) 34, 267, 276
 영주(永州) 63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224, 265
 영창대군(永昌大君) 154
 예문관(藝文館) 27, 71
 예빈성(禮賓省) 441
 예안현감(禮安縣監) 289
 예조(禮曹) 261
 예조참의(禮曹參議) 171
 예조판서(禮曹判書) 103
 예종실록(睿宗實錄) 26
 오경석(吳慶錫) 427
 오광운(吳光運) 293
 오두인(吳斗寅) 232, 238
 오명항(吳明恒) 292
 오시복(吳始復) 244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 97
 오위장(五衛將) 129, 353
 오유조(吳有兆) 413
 오장경(吳長慶) 413
 오정빈(吳廷賓) 215, 239
 오정위(吳挺緯) 226
 오조참판(五曹參判) 286
 오현단(五賢壇) 117, 419, 448
 오현사(五賢士) 448
 옥구현감(沃溝縣監) 268
 온성군(穩城郡) 316
 완도(莞島) 41
 완산(完山) 366
 왕건(王建) 61
 왕세제(王世弟) 269, 292

왜적(倭賊) 390	위원군(渭原郡) 386
외국조계(外國租界) 429	위원군수(渭原郡守) 409, 416
외무독판(外務督辦) 415	위장소(衛將所) 260
외방별시(外方別試) 259	위정척사(衛正斥邪) 378
외부참서(外部參書) 409	위화도(威化島) 69
용문사(龍門寺) 211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 225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69	유공량(柳公亮) 165
우범선(禹範善) 409	유공수(柳公樹) 234
우상(右相) 161, 232	유구열도(琉球列島) 439
우선언(禹善言) 93	유기환(俞起煥) 411
우성범(禹成範) 70	유길준(俞吉濬) 379, 409
우재적허비(尤齋謫墟碑) 371	유대치(劉大致) 427
우정국(郵政局) 414, 429	유동열(柳東說) 435
우정승(右政丞) 65	유두립(柳斗立) 189
우좌참찬(右左參贊) 237	유명현(柳命賢) 246
우참찬(右參贊) 204, 311	유몽인(柳夢寅) 133
운남(雲南) 45, 444, 445	유몽정(柳夢井) 142
운양호(雲揚號) 376	유배(流配) 76
원각사(園覺寺) 93	유배선(流配先) 36
원경하(元景夏) 311	유복만(柳卜萬) 387
원납전(願納錢) 369	유봉휘(柳鳳輝) 265, 270, 288, 301
원당봉(元堂峰) 46	유성룡(柳成龍) 147
원두표(元斗杓) 204	유성추(柳星樞) 273
원성왕(元聖王) 257	유수항(柳壽恒) 289
원세개(袁世凱) 413	유숙(柳淑) 63
원숙강(元叔康) 87	유순정(柳順汀) 98, 105
원종공신(原從功臣) 98	유신환(俞莘煥) 412
원주(原州) 40, 70, 188, 196, 231	유악남용사건(油幄濫用事件) 234
월계정사(月溪精舍) 230	유영경(柳永慶) 152, 154, 172
위리안치(圍籬安置) 158, 459	유영근(柳永謹) 166
위암집(韋庵集) 317	유영길(柳永吉) 151

유인궤(劉仁軌)	441	윤안성(尹安性)	166
유인숙(柳仁淑)	123	윤여필(尹汝弼)	106
유인원(劉仁願)	441	윤용구(尹用求)	410
유자광(柳子光)	89	윤웅열(尹雄烈)	395
유적비(遺跡碑)	117	윤원로(尹元老)	125
유준근(柳濬根)	383	윤원형(尹元衡)	122
유진구(俞鎭九)	411	윤인(尹訥)	160
유춘만(柳春万)	398	윤인경(尹仁鏡)	126
유혁연(柳赫然)	233	윤임(尹壬)	122
유형수(流刑囚)	367	윤임(尹任)	125
유효립(柳孝立)	189	윤자승(尹滋承)	384
유희춘(柳希春)	124	윤중(尹拯)	225
육군경(陸軍卿)	384	윤지(尹志)	279
육성선(陸性善)	190	윤지완(尹趾完)	233
육약한(陸若漢)	325	윤지충(尹持忠)	327
육종윤(陸鐘允)	409	윤치현(尹致賢)	358
육창명(陸昌明)	238, 244	윤필상(尹弼商)	96
윤계륜(尹繼倫)	189	윤환(尹桓)	53
윤귀설(尹貴說)	260	윤훤(尹暄)	166
윤규환(尹奎煥)	371	윤휴(尹鑄)	223, 235
윤극(尹極)	225	윤희(尹禧)	244
윤두수(尹斗壽)	150	율곡(栗谷)	220
윤빈(尹彬)	226	은신군(恩信君)	310
윤상도(尹尙度)	341	은언군(恩彦君)	310
윤석우(尹錫禹)	406	은천군(銀川君)	58
윤선거(尹宣舉)	236	은천옹주(銀川翁主)	60
윤성시(尹聖時)	265, 270, 280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380
윤세포(尹世鋪)	411	을사오적(乙巳五賊)	411
윤순명(尹順命)	247	을사옥(乙巳獄)	126
윤승길(尹承吉)	187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63
윤심형(尹心衡)	302	의금부(義禁府)	39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284, 392	이근(李根) 410
의병(義兵) 148	이근택(李根澤) 380
의병결기촉구격문(義兵決起促求檄文) 381	이금산(李莚山) 353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267	이기(李芑) 123, 125
의주(義州) 22, 148, 165, 292, 363	이기동(李基東) 424
의주부(義州府) 363	이기온(李基璫) 372
의주판윤(義州判尹) 286	이기홍(李箕洪) 227
의창부원군(義昌府院君) 60	이년(李年) 59
이가환(李家煥) 326	이덕인(李德仁) 194
이거원(李巨源) 281	이덕일(李德一) 153
이건(李健) 192	이도재(李道宰) 420
이건명(李健命) 265, 271	이도철(李道徹) 405
이건창(李建昌) 76, 139	이동녕(李東寧) 434
이건호(李建鎬) 424	이동설(李東高) 254
이경록(李慶祿) 132	이동휘(李東輝) 434
이경석(李景奭) 209	이두영(李斗榮) 394
이경식(李耕植) 403	이두황(李斗璜) 409
이경여(李敬輿) 200, 206	이등박문(伊藤博文) 431
이경우(李景宇) 392	이류(李瑠) 196
이경준(李耕俊) 173	이만손(李晩孫) 390
이계(李桂) 205, 207	이명언(李明彦) 289
이관명(李觀命) 283	이명익(李明諠) 265, 281
이괄(李适) 163	이명환(李明漢) 206
이광좌(李光佐) 270, 284, 291, 295, 301	이명혁(李明赫) 354
이귀(李貴) 162, 181, 190	이목(李穆) 90
이규완(李奎完) 431	이미(李美) 81
이규채(李奎采) 301	이민굉(李敏宏) 405
이규화(李奎和) 354	이발(李潑) 142
이극균(李克均) 96, 99	이방원(李芳遠) 71
이극돈(李克墩) 89	이범래(李範來) 409
	이범주(李範疇) 409, 416

이범진(李範晉) 405, 408	이안(李安) 60
이병식(李柄植) 394	이애길(李愛吉) 215
이병휘(李秉輝) 416	이약빙(李若氷) 126
이복희(李必熙) 372	이어도(離於島) 440
이봉년(李鳳年) 281	이언(李彦) 124
이봉상(李鳳祥) 292	이언적(李彦迪) 122
이사성(李思晟) 292	이연응(李然應) 394
이산해(李山海) 147	이완용(李完用) 380, 408, 410
이삼(李森) 266	이용원(李容元) 402
이상규(李庠圭) 420	이용호(李容鎬) 410, 416, 418, 420
이상인(李喪人) 333	이운(李耘) 114, 115
이상징(李象徵) 244	이원굉(李元紘) 71
이서(李胥) 362	이원궁(李源兢) 424
이선신(李善信) 189	이원기(李元紀) 298
이성계(李成桂) 18	이원로(李元老) 182
이세번(李世蕃) 118	이원명(李源明) 397
이세좌(李世佐) 96	이원익(李元翼) 151, 161, 198
이세직(李世植) 419	이원조(李源祚) 163
이세화(李世華) 238	이원진(李源進) 362
이수(李隨) 174	이위경(李偉卿) 157
이수민(李壽民) 274	이유림(李有林) 188
이승기(李昇基) 214	이유원(李裕元) 377
이승만(李承晩) 411	이유인(李裕寅) 425
이승오(李承五) 367, 416	이유태(李惟泰) 223
이승헌(李承憲) 349	이윤(李潤) 170
이승훈(李承薰) 326, 329, 330	이윤신(李潤身) 301
이승훈(李昇薰) 432	이윤용(李允用) 410
이시방(李時昉) 183	이응하(李應夏) 363
이시우(李時宇) 416	이응호(李膺鎬) 372
이시필(李時弼) 275	이의징(李義徵) 232, 246
이신(李伸) 81	이의철(李宜哲) 290

이이(李珥) 132, 141	이종성(李宗城) 291
이이명(李頤命) 265, 298	이종열(李宗烈) 416
이이첨(李爾瞻) 154, 172	이종학(李鐘學) 394
이익(李穡) 167, 326	이종해(李鐘海) 394
이인거(李仁居) 188	이종협(李鐘協) 349
이인석(李仁錫) 86	이주(李冑) 96
이인좌(李麟佐) 292, 294	이주회(李周會) 406
이일원(李一元) 194	이중발(李重發) 239
이자(李紆) 102	이중환(李重煥) 360
이잠(李潛) 247, 263	이증(李增) 304
이장곤(李長坤) 119	이지달(李枝達) 216
이장림(李章濂) 361	이지용(李址鎔) 380
이재(李紱) 269, 291	이진(李鎭) 405
이재두(李載斗) 353	이진상(李震尙) 254
이재만(李載晩) 362	이진유(李眞儒) 265, 280, 288
이재선(李載先) 394	이진호(李軫鎬) 406, 409
이정(李漬) 218	이창수(李昌壽) 41
이정경(李楨慶) 172	이창준(李昌俊) 166
이정현(李正鉉) 358	이천기(李天起) 298
이제(李濟) 260	이철구(李哲九) 394
이조(吏曹) 136, 148, 258	이최중(李最中) 316
이조(李肇) 270	이축(李軸) 141
이조법전고(李朝法典考) 44	이충구(李忠求) 405
이조정랑(吏曹正郎) 368	이충탁(李忠卓) 132
이조좌랑(吏曹佐郎) 172	이치훈(李致薰) 330
이조참의(吏曹參議) 163	이태조(李太祖) 21
이조참판(吏曹參判) 107	이태현(李泰鉉) 391
이조판서(吏曹判書) 147	이태항(李台璜) 410, 416
이존오(李存吾) 67	이파(李坡) 96
이존중(李存中) 302	이풍래(李豊來) 395
이종백(李宗白) 293	이필제(李弼濟) 366

이하영(李夏永)	380	익종(翼宗)	341, 359
이하응(李昞應)	77	인목대비(仁穆大妃)	167, 172, 186
이하전(李夏銓)	353	인선대비(仁宣大妃)	223
이하징(李夏徵)	279	인성군(仁城君)	163, 187
이항로(李恒老)	368, 397	인제(仁濟)	169
이해자(李海者)	293	인조(仁祖)	38, 163, 176
이행(李荇)	96, 107	인조반정(仁祖反正)	163, 171
이향령(李亨齡)	165	인종(仁宗)	122, 257
이허도(離虛島)	440	인현왕후(仁顯王后)	231, 364
이현기(李玄紀)	226	일성록(日省錄)	316
이현명(李顯命)	254	임경은(任慶恩)	189
이현일(李玄逸)	293	임관주(任觀周)	307
이현장(李顯章)	279	임군보(任君輔)	65
이형익(李馨益)	201	임권조(林權助)	380
이형하(李滢夏)	259	임몽정(任蒙正)	151
이호(李浩)	142	임백령(林百齡)	123
이호민(李好閔)	166	임병찬(林炳瓚)	381
이홍노(李弘老)	147	임사홍(任士洪)	97
이홍식(李弘植)	425	임오군란(壬午軍亂)	77, 386
이홍장(李鴻章)	377	임오옥(壬午獄)	314
이황(李滉)	116, 147	임윤화(任允化)	195
이회정(李會正)	362	임응준(任應準)	362
이후원(李厚源)	204	임인무옥(壬寅誣獄)	271, 280, 310
이희당(李禧巖)	262	임일권(林逸權)	432
이희손(李希孫)	128	임자도(荏子島)	41, 401, 421
이희지(李喜之)	300	임주운(林朱雲)	60
이희충(李熙忠)	372	임중보(林仲甫)	58
익산(益山)	142, 357, 358	임징하(任徵夏)	249, 282
익산군(益山郡)	393	임창군(臨昌君)	217, 220
익성군(益城君)	165	임최수(林最洙)	405
익성정(益城正)	165	임해군(臨海君)	155, 220

임형수(林亨秀) 126

임홍성(任弘聖) 282



자의대비(慈懿大妃) 223

장경왕후(章敬王后) 105, 106

장능참봉(長陵參奉) 291

장령(掌令) 124, 132, 143, 222, 224,
282, 306, 358

장소의(張昭儀) 226, 233, 237

장수당(藏修堂) 230

장순길(張順吉) 389

장윤선(張允善) 410, 421

장헌세자(莊獻世子) 309

장호원(長湖院) 387

장희빈(張禧嬪) 231

장희재(張希載) 240

재령군수(載寧郡守) 142

적려유허비(謫廬遺墟碑) 308

전록생(田祿生) 60

전민변정치도감(田民弁整治都監) 56

전유어전우병사(專由於前右兵使) 356

전인규(田仁奎) 411

전제개혁안(田制改革案) 69

절도(絶島) 27, 41, 268, 342

절도안치(絶島安置) 25, 305

절도편배(絶島編配) 28

절영도(絶影島) 424

절제사(節制使) 43

정감록(鄭鑑錄) 366

정개청(鄭介淸) 142

정건섭(丁建燮) 394

정계비(定界碑) 340

정광사(淨光寺) 212

정광필(鄭光弼) 110, 119

정국공신(靖國功臣) 102

정당문학(政堂文學) 71

정덕기(鄭德基) 366

정도전(鄭道傳) 70, 83

정동도(鄭東道) 358

정동행성(征東行省) 54, 444

정두원(鄭斗源) 325

정만식(鄭晩植) 366

정만조(鄭萬朝) 409

정만중(鄭萬鐘) 130

정몽주(鄭夢周) 18, 70

정미정변(丁未政變) 431

정미환국(丁未換局) 284

정방길(鄭方吉) 53

정배(定配) 37, 145, 172, 197, 253,
303, 416, 459

정법죄인(正法罪人) 316

정병조(鄭丙朝) 409, 416, 420

정병하(鄭秉夏) 409

정성왕후서씨(貞聖王后徐氏) 308

정세공(鄭世功) 59

정세운(鄭世雲) 64

정순명(鄭順明) 123

정순왕후김씨(貞純王后金氏) 308

정승하(鄭乘夏) 427

정약용(丁若鏞) 326

정약전(丁若銓)	332	정태화(鄭太和)	222
정약중(丁若鐘)	331, 332	정택뢰(鄭澤雷)	199
정양사(正陽寺)	212	정헌교(鄭獻敎)	358
정언각(鄭彦愨)	126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319
정언신(鄭彦信)	142	정현덕(鄭顯德)	362, 389
정언지(鄭彦知)	142	정호관(丁好寬)	160
정언황(丁彦璜)	204	정호선(丁好善)	166
정여립(鄭如立)	141	정후겸(鄭厚謙)	312
정여립(鄭汝立)	366	정희등(鄭希登)	124
정여창(丁汝昌)	413	정희량(鄭希良)	292, 295
정여창(鄭汝昌)	96	제물포(濟物浦)	428
정온(鄭溫)	117, 367, 456	제술과(製述科)	257
정온(鄭溫)	156, 190	제주도루인물추쇄도감(濟州逃漏人物 推刷都監)	443
정운봉(鄭雲鵬)	409	제주도조(濟州島祖)	230
정원군(定遠君)	155, 162, 181	제주소견(濟州所見)	250
정읍(井邑)	227, 382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192
정의(旌義)	215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113, 453
정의암(鄭義岩)	387	제천읍(堤川邑)	333
정인홍(鄭仁弘)	155	조관빈(趙觀彬)	295
정인홍(鄭寅興)	409	조광조(趙光祖)	101
정일빈(鄭日斌)	409	조득구(趙得求)	55
정자(鄭磁)	126	조병식(趙秉植)	410
정조(正祖)	32, 76, 164, 276, 310, 318	조병식(趙秉式)	424
정종(定宗)	84	조병창(趙秉昌)	362, 384
정주(定州)	432	조사공(趙思恭)	447
정주학(程朱學)	328	조성복(趙聖復)	269
정중음(靜中吟)	161	조성환(曹成煥)	434
정창손(鄭昌孫)	96	조소용(趙昭容)	207
정창연(鄭昌衍)	161	조영규(趙英珪)	71
정철(鄭澈)	147, 290	조영하(趙寧夏)	413
정태호(鄭泰好)	386		

조옥수(曹玉水)	338	주자(朱子)	220
조운규(趙雲逵)	280	주자가례(朱子家禮)	74
조익청(曹益淸)	53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229
조인벽(趙仁璧)	61	주자학(朱子學)	73
조인영(趙寅永)	342	주자학자(朱子學者)	101
조일신(趙日新)	63	주청공사(駐淸公使)	396
조정빈(趙鼎彬)	268	주한공사(駐韓公使)	380
조정철(趙貞喆)	318	주한열국(駐韓列國)	404
조준(趙浚)	69	주호국(州胡國)	438
조중명(趙重明)	306	주호인(州胡人)	439
조중응(趙重應)	409	죽림(竹林)	93
조중호(趙中鎬)	394	죽산(竹山)	189
조지겸(趙持謙)	235	죽성(竹城)	373
조천관(朝天館)	175	죽첨진일랑(竹添進一郎)	414, 428
조천포(朝天浦)	418	중랑장(中郎將)	53
조태구(趙泰耆)	265, 288	중문면 예리(中文面 貌里)	215
조태억(趙泰億)	270, 284, 286	중서성(中書省)	442
조태채(趙泰采)	265, 268, 295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442
조헌(趙憲)	150	중종(中宗)	75
조현명(趙顯命)	293, 294, 298	중종반정(中宗反正)	91
조희연(趙義淵)	409	중추원(中樞院)	384
종달리(終達里)	418	중형수(重刑囚)	420
종성판관(鐘城判官)	157	즉위교서(卽位敎書)	21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	305	증광시(增廣試)	259
좌정승(左政丞)	54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	64
좌찬성(左贊成)	125	지리산(智異山)	212
좌찬성사(左贊成事)	54	지봉유설(芝峰類設)	132, 325
좌참찬(左參贊)	266, 388	지석영(池錫泳)	424
주문모(周文謨)	330, 332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123, 267
주일청국공사(駐日淸國公使)	378	직제학(直提學)	104, 156
주일청국참사관(駐日淸國參事官)	390	직제학수찬관(直提學修撰官)	209

진능군(晉陵君) 165
 진도(珍島) 39, 41, 109, 191
 진령군(眞靈君) 401
 진사(進士) 79
 진사과(進士科) 147
 진성대군(晉城大君) 98
 진세(塵世) 153
 진양군(晉陽君) 233
 진원군(晉源君) 71
 진주(晉州) 356
 진주강씨(晉州姜氏) 75
 진주사(陳奏使) 325
 진흥왕(眞興王) 340
 집의(執義) 124, 213, 269, 301, 358



찬성사(贊成事) 56
 창녕(昌寧) 53, 402
 창녕현감(昌寧縣監) 200
 창의소(倡義所) 292
 창주정사(滄洲精舍) 308
 창천리(倉川里) 280, 307, 344
 채제공(蔡濟恭) 328, 331
 채희재(蔡喜載) 352
 척사론(斥邪論) 377
 척사륜음(斥邪綸音) 334
 척사위정(斥邪衛正) 393
 척사위정론(斥邪衛正論) 390
 천구의(天球儀) 325
 천리경(千里鏡) 325

천세환(千歲丸) 429
 천주실의(天主實議) 325
 철도(鐵島) 40
 철종(哲宗) 352, 360
 청성군(淸城君) 236
 청성군(靑成君) 71
 청송군(靑松君) 362
 청송심씨(靑松沈氏) 362
 청주(淸州) 40, 70, 117, 308
 청주성(淸州城) 292
 청평산(淸平山) 133
 청풍김씨(淸風金氏) 261
 청풍대(淸風臺) 111
 최규단(崔圭端) 292
 최극형(最極刑) 40
 최대(崔岱) 367
 최덕림(崔德林) 63
 최명길(崔鳴吉) 206
 최봉주(崔鳳周) 354
 최석기(崔錫基) 260
 최석항(崔錫恒) 266, 289
 최선결(最先決) 433
 최설애(崔雪愛) 333
 최숙빈(崔淑嬪) 239, 240
 최영(崔瑩) 69
 최영경(崔永慶) 142
 최영순(崔永淳) 418
 최유(崔濡) 65
 최이헌(崔而憲) 215, 219
 최익현(崔益鉉) 367, 397
 최익현(崔益鉉) 371

최인철(崔仁哲) 61
 최정덕(崔廷德) 412
 최철관(崔哲寬) 87
 최학령(崔鶴令) 306
 최항(崔恒) 34
 최항(崔沆) 50
 최형순(崔亨順) 421
 추자도(楸子島) 290
 춘천(春川) 40, 262
 춘추관(春秋館) 85, 401
 충군정역(充軍定役) 26
 충군제도(充軍制度) 25
 충군형(充軍刑) 29, 129, 260, 262
 충렬왕(忠烈王) 443
 충목왕(忠穆王) 56
 충숙왕(忠肅王) 45, 65
 충암김정선생적려(沖庵金淨先生謫廬) 117
 충암묘(沖庵廟) 117
 충정왕(忠定王) 54, 58
 충주(忠州) 40, 96, 148
 충청수사(忠淸水使) 99
 충혜왕(忠惠王) 45
 친원분자(親元分子) 66
 친원파(親元派) 69
 친청론자(親淸論者) 201
 친청사대당(親淸事大黨) 429



탁지부(度支部) 409, 421
 탐라(耽羅) 57, 444

탐라구당사(耽羅勾當使) 441
 탐라군(耽羅郡) 442
 탐라잡영(耽羅雜詠) 297
 탐라전(耽羅傳) 444
 탐라지(耽羅誌) 46, 438
 탐람불법죄(貪婪不法罪) 363
 탐람학민죄(貪婪虐民罪) 392
 탐학불법죄(貪虐不法罪) 357
 탕평책(蕩平策) 278
 태배형(答背刑) 34
 태안군(泰安郡) 66
 태조(太祖) 69, 441
 태종실록(太宗實錄) 24
 태학(太學) 120
 태형(答刑) 36, 128, 235, 363, 392



과평부원군(坡平府院君) 89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71
 판서정(判書井) 117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 237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207, 232
 팔역지(八域誌) 41, 136, 360
 평안강계도(平安江界道) 22
 평양감사(平壤監司) 268
 폐비신씨(廢妃愼氏) 105
 폐위조칙(廢位詔勅) 404
 포도청(捕盜廳) 173
 풍신수길(豐臣秀吉) 148
 풍양조씨(豐壤趙氏) 351



하성부원군(夏城府院君) 54
하원군(河原君) 165
하원리(河源里) 446
하의생(河義生) 189
하인준(河仁俊) 196
한계사(漢溪寺) 134
한계원(韓啓源) 372, 395
한광조(韓光肇) 308
한라산기(漢拏山記) 372
한림(翰林) 205
한명회(韓明澮) 86, 96
한배하(韓配夏) 270
한상경(韓尙敬) 71
한선회(韓善會) 410, 420
한성근(韓聖根) 395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267
한성부윤(漢城府尹) 230, 365
한성시(漢城試) 259
한성판윤(漢城判尹) 428
한세량(韓世良) 260, 270
한양윤(漢陽尹) 60
한응연(韓應演) 308
한응인(韓應寅) 142
한익모(韓翼謨) 312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380
한중혁(韓重赫) 232, 246
한첩목아(韓帖木兒) 446
한치향(韓致享) 96
한태동(韓泰東) 235

한희길(韓希吉) 173
함덕포(咸德浦) 209
함양(咸陽) 89, 177, 357
함의완(咸義完) 246
함평(咸平) 357
함흥(咸興) 340
해남(海南) 64, 110, 142, 227, 440
해남면(海南面) 267
해남포(海南浦) 458
해능군(海陵君) 305
해미현감(海美縣監) 209
해원군(海原君) 193
해창포(海蒼浦) 458
향국홍언죄(向國凶言罪) 275
향현당(鄉賢堂) 230
향현사(鄉賢祠) 196
허견(許堅) 235, 244
허균(許筠) 196
허목(許穆) 223
허반(許盤) 90
허소치(許小痴) 347
허옥(許煜) 389, 398
허자(許磁) 123
허적(許滴) 189
허적(許積) 218, 234
허정(許迨) 189
헌종(憲宗) 163, 360, 396
헌종묘천론(憲宗廟遷論) 350
현량과(賢良科) 102, 259
현익선(顯益船) 419
현종(顯宗) 205, 257, 441

형조(刑曹) 22, 37, 255
 형조좌랑(刑曹佐郎) 171
 형조판서(刑曹判書) 107
 혜암(惠菴) 318
 호조(戶曹) 103
 호조참판(戶曹參判) 270
 홍경래(洪景來) 77, 351, 365
 홍경원(洪敬源) 142
 홍계(洪桂) 59
 홍계훈(洪啓薰) 403
 홍계희(洪啓禧) 309
 홍국영(洪國榮) 317
 홍낙민(洪樂敏) 334
 홍락안(洪樂安) 329
 홍무(洪武) 445
 홍무적(洪茂績) 199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 170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107
 홍법사(洪法寺) 47
 홍병원(洪秉元) 356
 홍복영(洪福榮) 366
 홍서봉(洪瑞鳳) 207
 홍순목(洪淳穆) 372, 395
 홍언박(洪彦博) 65
 홍여순(洪汝諄) 151
 홍영식(洪英植) 414
 홍유손(洪裕孫) 92
 홍의(洪義) 64
 홍의랑(洪義郎) 319
 홍의호(洪義浩) 334
 홍인한(洪麟漢) 312
 홍장(洪莊) 53
 홍재학(洪在鶴) 394, 397
 홍종시(洪鐘時) 420
 홍준(洪峻) 58
 홍중원(洪仲元) 60
 홍처훈(洪處勳) 319
 홍천(洪川) 40, 203
 홍화각(弘化閣) 210
 화가위국(化家爲國) 225
 화북(禾北) 296
 화북포(禾北浦) 82, 458
 화엄사(華嚴寺) 317
 화엄종(華嚴宗) 213
 화전세(火田稅) 417
 황감시(黃柑試) 259
 황국협회(皇國協會) 411, 424
 황사영(黃嗣英) 331
 황사영(黃嗣永) 332
 황인점(黃仁点) 326
 황준헌(黃遵憲) 378, 390
 황혁(黃赫) 166
 회헌집(晦軒集) 296
 효수(梟首) 60, 176, 200
 효종(孝宗) 209, 222, 312
 후금(後金) 180
 훈구파(勳舊派) 89, 103
 흑산도(黑山島) 41, 26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77, 368
 흥왕사(興王寺) 65
 흥해군수(興海郡守) 401

▣ 역자 소개



洪 性 穆

- 1933.10.17 출생
- 제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제주신문 편집국장 · 상임논설위원
- 한라일보 상임논설위원 · 편집국장 · 주필
- 한라일보 이사 겸 논설고문(현)
- 제주도문화상, 새마을훈장, 덕산문화상 수상
- 칼럼집 「나아가며 되돌아보며」
- 「20세기전반의 제주도자료집」(역)

濟州島流人傳

인쇄일 : 2005년 6월 5일

발간일 : 2005년 6월 15일

저 자 : 金 奉 鉉

역 자 : 洪 性 穆

발행인 : 洪 性 豪

발행처 : 도서출판 濟州文化

인쇄처 : 耕 信 印 刷 社

☎ (064) 746-2044

<300부 한정판>

값 30,000원

ISBN 89-88949-51-4-94910

ISBN 89-88949-00-5(세트)